

발간등록번호

11-1541000-000377-10

2009~2010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이용자를 위하여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는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의 현황과 정책동향에 대한 종합보고서로 농정에 대한 역사적 기록 확보와 농정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높이기 위해 毎年 발간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연차보고서는 '67년 「農業基本法」에 따라 농업의 생산·경영·가격·소득 및 농민의 생활수준 등에 관한 정책 및 농업동향을 내용으로 하여 『농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로 첫 발간되었습니다.

'99년 농업기본법이 「農業·農村基本法」으로 변경되면서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라 농업뿐만 아니라 농촌 동향 및 정책을 포함한 『농정에 관한 연차보고서』로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08년 농림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의 정부조직개편 및 농업·농촌기본법 개정으로 '09년부터는 「農漁業·農漁村 및 食品産業 基本法」에 따라 기존 농업에서 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동향·정책이 추가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 『2009-2010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가 기존 연차보고서와 다른 특징은 그 동안 연차보고서가 전년도 및 당해 연도 상반기의 성과를 담았으나 이번 연차보고서는 전년도 성과('09년)만을 담고 평가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편하였고 향후에도 이러한 형식으로 연차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이번 연차보고서는 ▲1편 2009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동향 ▲2편 2009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3편 2009년 수산업 동향 ▲4편 2009년 수산업 정책 등 총 4편으로 구성되어 있고 1편, 3편은 농어업, 농어촌 경제동향, 농식품 수급동향 등 관련 주요 지표 및 통계를 제시하여 분석하였고 2편, 4편은 2009년 농업, 수산분야 주요정책의 성과 및 평가·향후계획을 담았습니다.

참고로 이번 연차보고서 개편에 따라 '09년 연간 성과만을 담은 만큼 표제를 2009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로 하는 것이 적합하나 '09년 발간한 연차보고서 표제와 동일하게 되는 이유로 『2009-2010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로 표제를 정하게 되었으니 독자들의 혼란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내년부터는 1년 단위로 연차보고서 표제를 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연차보고서가 우리 농어업 및 식품산업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농어업 관련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되길 바랍니다.

2010년 12월

[차례]

제1편 2009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동향

제1장 농업·농촌 경제동향

제1절 농업구조 _5

1. 농가호수와 농가인구 _5
2. 농경지 _6

제2절 농가경제 _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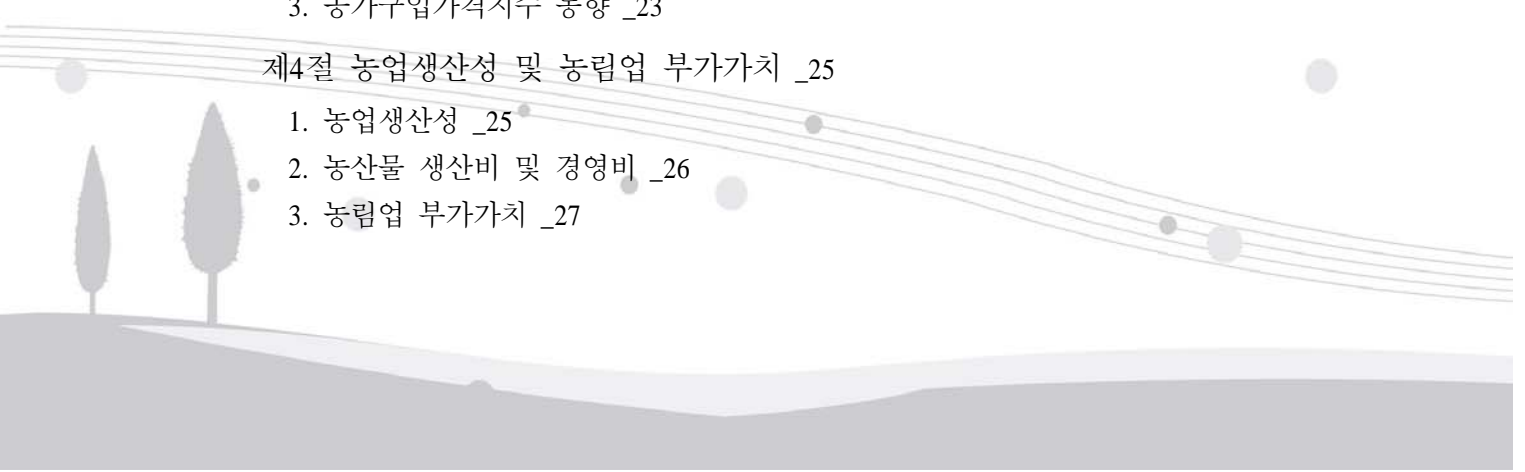
1. 소득 동향 _9
2. 가계지출 동향 _13
3. 처분가능소득 및 잉여 _14
4. 농가자산 동향 _14
5. 농가부채 동향 _15
6. 전업농가·겸업농가의 주요지표 _16
7. 주·부업별 지표 _16
8. 영농형태별 주요지표 _17
9. 경지규모별 주요지표 _18
10. 경영주 연령별 주요지표 _19
11. 지역별 주요지표 _19

제3절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 지수 _21

1. 개 황 _21
2. 농가판매가격지수 동향 _21
3. 농가구입가격지수 동향 _23

제4절 농업생산성 및 농림업 부가가치 _25

1. 농업생산성 _25
2. 농산물 생산비 및 경영비 _26
3. 농림업 부가가치 _27





제2장 국내 농식품 수급동향

제1절 국내 주요 농산물 수급동향 _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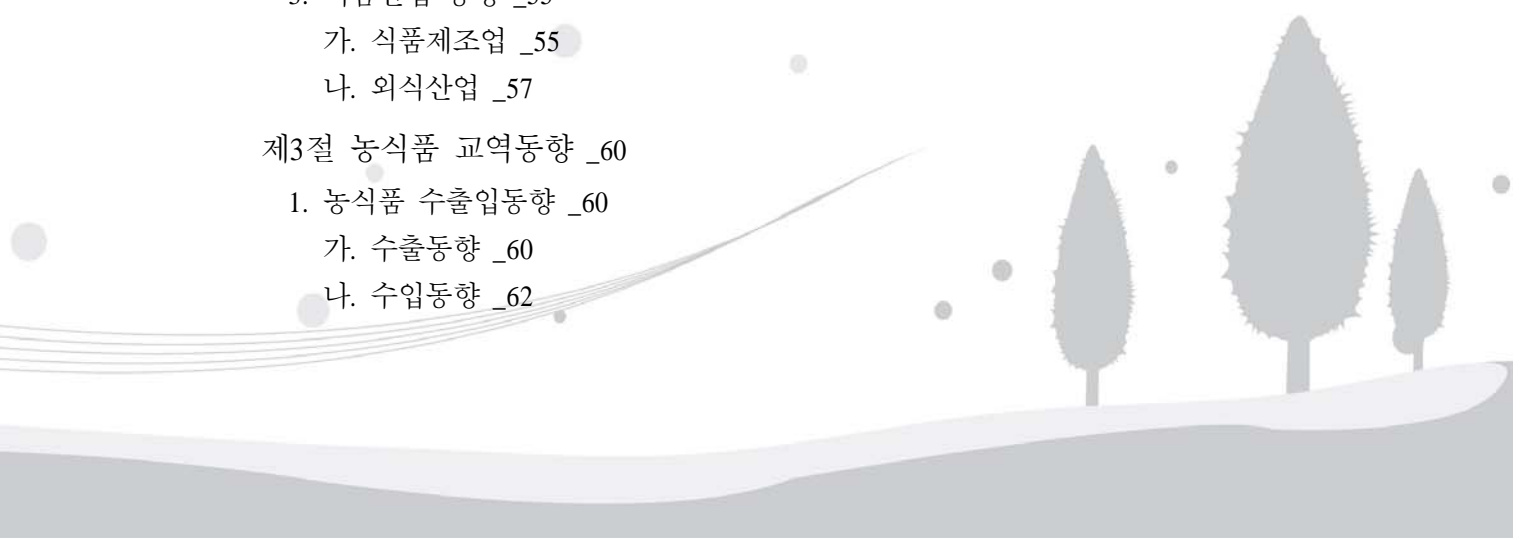
1. 식량작물 _31
2. 원예·특용작물 _34
 - 가. 채소류 _34
 - 나. 과실류 _35
 - 다. 화훼류 _36
 - 라. 특용작물 _37
 - 마. 인삼류 _39
3. 축산물과 사료작물 _40
 - 가. 축산물 _40
 - 나. 사료작물 _43

제2절 식품 수급동향 _45

1. 식품 소비와 식생활의 변화 _45
 - 가. 식품비 지출구조의 변화 _45
 - 나. 소득계층별 소비 지출액 비교 _46
 - 다. 식품영양소 수요구조의 변화 _47
2. 식품 수요현황 _49
 - 가. 1인당 식품공급 현황 _49
 - 나. 식품자급률 수준 _51
 - 다. 식품 및 영양공급량의 국제비교 _53
3. 식품산업 동향 _55
 - 가. 식품제조업 _55
 - 나. 외식산업 _57

제3절 농식품 교역동향 _60

1. 농식품 수출입동향 _60
 - 가. 수출동향 _60
 - 나. 수입동향 _62



[차례]

- 2. 농식품 남북교역 동향 _64
 - 가. 농식품 교역규모 _64
 - 나. 농식품 교역동향 _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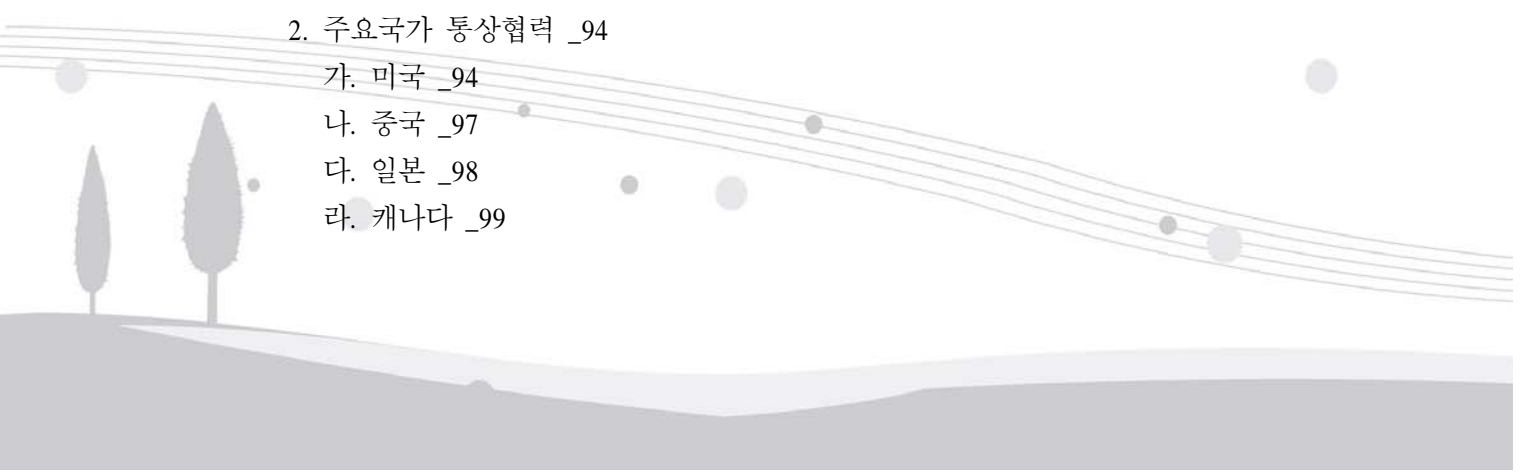
제3장 국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동향

제1절 국제 곡물 수급과 가격동향 _69

- 1. 국제곡물 수급동향 _69
 - 가. 개 요 _69
 - 나. 쌀 _69
 - 다. 밀 _69
 - 라. 옥수수 _69
 - 마. 대두 _70
- 2. 국제곡물 가격동향 _71
 - 가. 쌀 값 동향 _71
 - 나. 밀 값 동향 _72
 - 다. 옥수수 값 동향 _72
 - 라. 콩 값 동향 _73

제2절 주요국가 농업 동향 및 양자 간 통상협력 _74

- 1. 주요국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동향 _74
 - 가. 미국 _74
 - 나. 중국 _80
 - 다. 일본 _84
 - 라. 유럽연합(EU : European Union) _87
- 2. 주요국가 통상협력 _94
 - 가. 미국 _94
 - 나. 중국 _97
 - 다. 일본 _98
 - 라. 캐나다 _99





- 마.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_101
- 바. 중남미 국가 _102
- 사. 아시아·아프리카 국가 _104

제2편 2009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제1장 총론 _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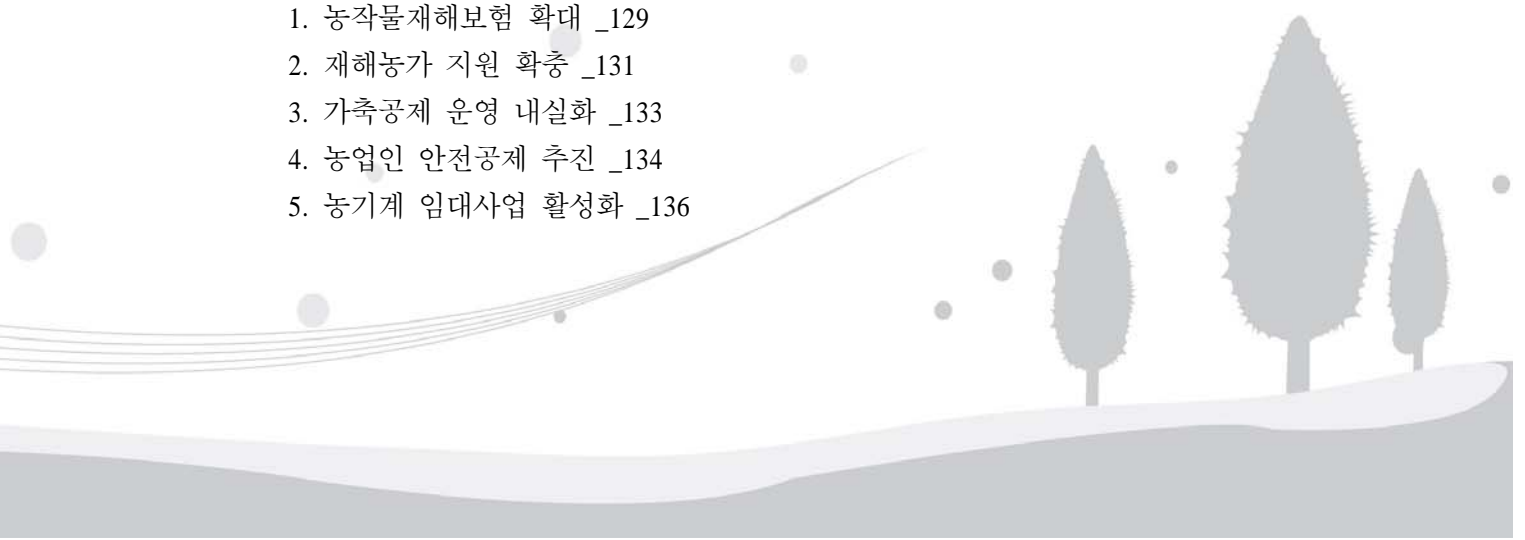
제2장 농가소득 증대 및 경영 안정화

제1절 농업인 소득 증대 _115

1. 직불제 개편 추진 _115
2.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_117
3. 경영이양직불제 _120
4.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 _122
5. 친환경 안전축산물 직접지불제 도입 _123
6.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_124
7. 경관보전직불제 확대 _125
8. 농가단위 소득안정제 추진 _127

제2절 농가 경영안정 지원 _129

1. 농작물재해보험 확대 _129
2. 재해농가 지원 확충 _131
3. 가축공제 운영 내실화 _133
4. 농업인 안전공제 추진 _134
5.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_136



[차례]

제3절 농업경영회생 상시 지원시스템 구축 _138

1. 농가부채 경감대책 추진 _138
2.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확대 _140
3.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확대 _141

제4절 농업금융·세제 개선 _143

1. 농업정책금융 지원제도 개선 _143
2. 농어업부문 세제지원 _145

제3장 농업경영체 육성

제1절 농업 핵심인력 육성 _1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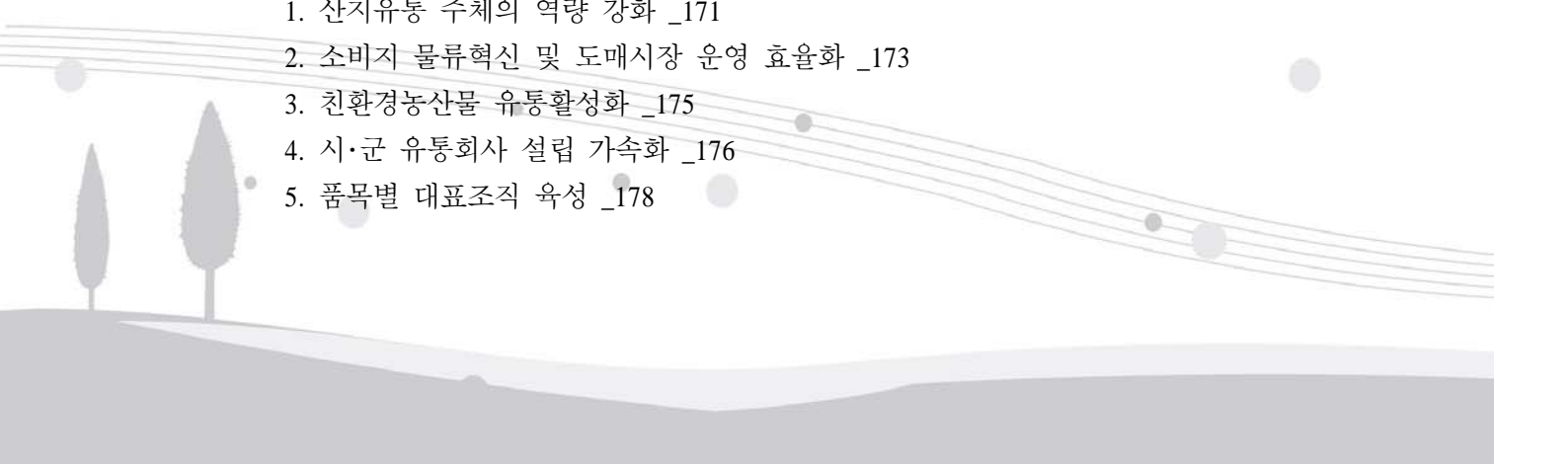
1. 농업신규인력 육성 _153
2. 농업 교육훈련 _156

제2절 농업 전문경영체 육성 _159

1. 농어업법인 활성화 _159
2. 농업벤처 육성 _162
3.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_163
4. 대규모 농어업회사 육성 _165
5. 영농규모화 촉진 _167

제4장 농식품 유통 활성화 및 안정적 공급

제1절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 _171

1. 산지유통 주체의 역량 강화 _171
 2. 소비자 물류혁신 및 도매시장 운영 효율화 _173
 3.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_175
 4. 시·군 유통회사 설립 가속화 _176
 5. 품목별 대표조직 육성 _178
- 



제2절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_181

- 1. 정부 양곡 관리 _181

제5장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

제1절 농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_189

- 1. 농산물안전성조사(LMO 수입승인 및 안전관리) _189
- 2. 농수산물원산지 표시 관리 _190
- 3.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 및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조기 정착 유도 _192
- 4. 농산물 안전성조사 강화로 부적합품 시장유통 방지 _194
- 5. 쇠고기 이력제 추진 _196
- 6. 농식품 안전정보관리 _198

제2절 축산물 질병예방 및 동식물 검역 강화 _201

- 1. 축산물 위생·안전성 관리 강화 _201
- 2. 가축질병 방역대책 추진 _203
- 3. 동물 및 축산물 검역강화 _208
- 4. 동물보호·복지대책 추진 _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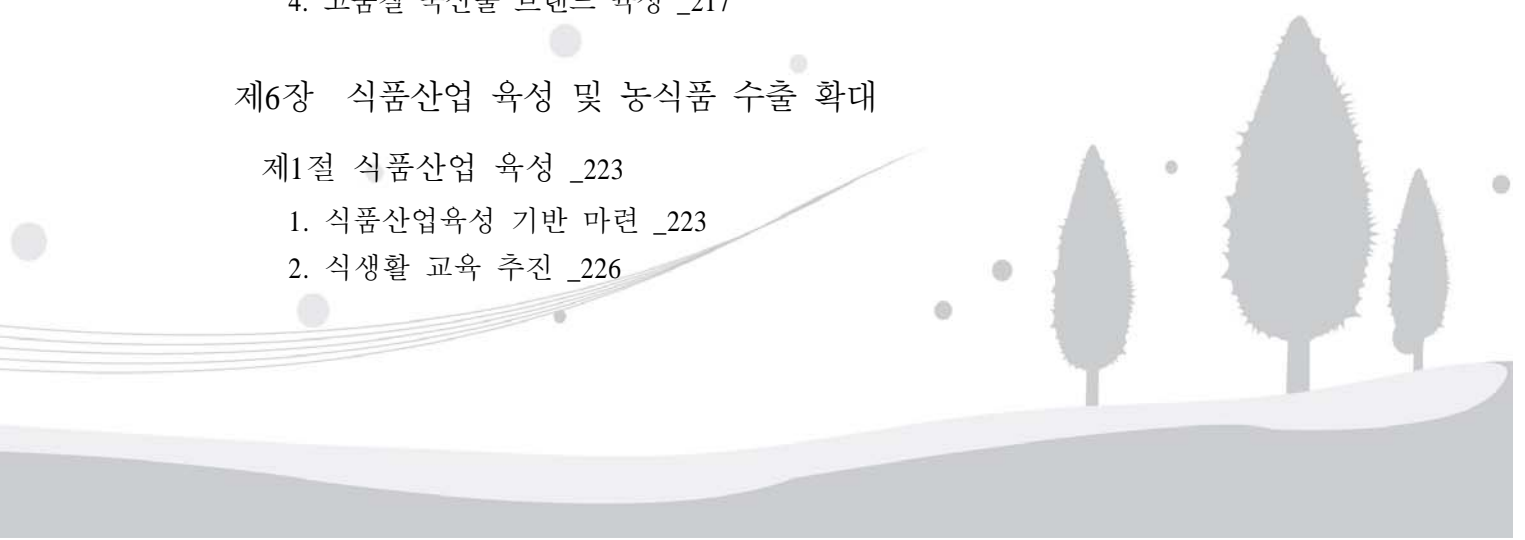
제3절 고품질·친환경 농축산물 공급 _212

- 1. 친환경농업 육성 _212
- 2.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 _214
- 3. 고품질 원예브랜드 육성 _216
- 4. 고품질 축산물 브랜드 육성 _217

제6장 식품산업 육성 및 농식품 수출 확대

제1절 식품산업 육성 _223

- 1. 식품산업육성 기반 마련 _223
- 2. 식생활 교육 추진 _226



[차례]

3. 전통·발효식품 산업 육성 _227
 - 가. 전통·발효식품 산업 _228
 - 나. 천일염 산업 육성 _230
 - 다. 전통주 산업 육성 _231
4.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강화 _233
5. 동북아 식품시장 허브 역할,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_235

제2절 농식품 수출 확대 및 한식세계화 _238

1. 농식품 수출 확대 _238
2. 외식산업 육성 및 한식세계화 _242

제7장 농어업인 복지 및 생활환경 개선

제1절 농어업인 복지 _247

1. 농어민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_247
2.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_250
3. 여성·취약농가 인력 지원 _252
4.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기본계획 수립·추진 _254
5. 농지연금 시행 준비 _259
7. 귀농·귀촌 종합대책 추진 _260

제2절 농업·농촌 생활 인프라 확충 _262

1.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_262
2.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_264
3. 전원마을 조성사업 _267
4.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 _269
5. 농어촌 뉴타운 조성 _271
6.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지원 _273
7. 농업·농촌 정보화 기반 확충 _274





제8장 농촌 활력 증진 및 농업생산기반 조성

제1절 농어촌 자원의 산업화 _281

1. 농촌 활력 증진사업 _281
2. 농공단지 조성사업 _283
3. 향토산업 육성사업 _285

제2절 농촌 체험·관광산업 촉진 _287

1.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_287
2.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 _288
3. 도시와 농촌의 교류 활성화 _2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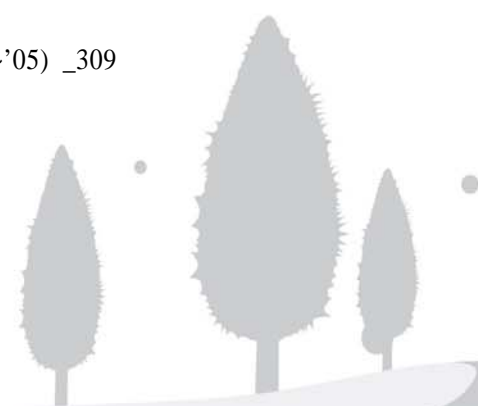
제3절 농업생산기반 유지 및 효율적 농지 이용 _293

1.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_293
2. 밭 기반 정비사업 _294
3.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_295
4. 수리시설 개보수 _296
5. 배수개선사업 등 기타 기반정비사업 _298
6. 농촌용수 개발사업 _299
7. 대단위 농업개발 및 간척사업 _302

제9장 대외협상 및 국제협력 강화

제1절 체계적 협상으로 농어업개방 대응 _309

1. WTO 활동 _309
 - 가. DDA 협상 출범에서 홍콩각료회의까지 추진경과('01~'05) _309
 - 나. 홍콩각료회의 이후 협상 추진경과('06~'09) _310
2. OECD 활동 _314
3. FAO 활동 _321
4. ASEAN+3 농림장관회의 _325



[차례]

제2절 FTA 협상의 체계적 대응 _330

1. 한·미 FTA 협상 _330
2. 한·EU FTA 협상 _331
3. 한·페루 FTA 협상 _333
4. 한·콜롬비아 FTA 협상 _334
5. 한·GCC FTA 협상 _335
6. 한·호주 FTA 협상 _336
7. 한·뉴질랜드 FTA 협상 _337
8. 한·인도 CEPA 협상 _338

제3절 농업관련 국제 기구활동 및 국제농업협력 사업 확대 _340

1. 세계식량계획(WFP) _340
2.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_340
3. 아프리카·아시아농촌개발기구(AARDO) _341
4. 국제농업협력 사업 확대 _3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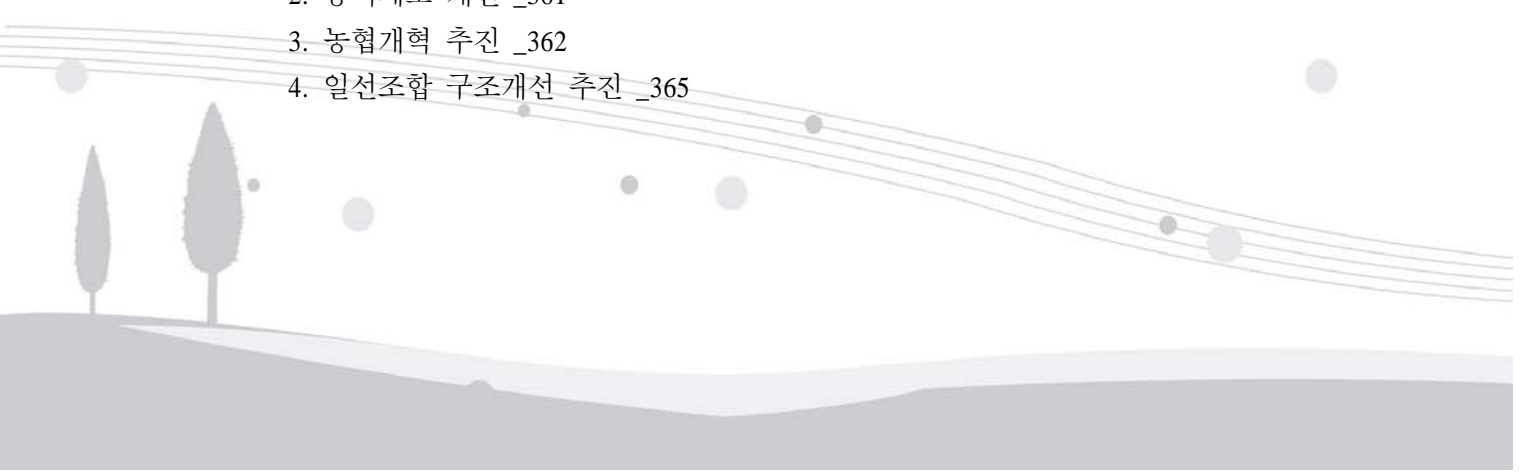
제10장 녹색성장 및 新 성장동력 확충

제1절 농식품분야 녹색성장 _347

1. 농림수산식품분야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전략 마련 _347
2. 농림기술개발사업 _351
3. 신성장동력 고부가 식품산업 추진 _353

제2절 미래성장동력 마련 _357

1. 농어업선진화위원회 _357
2. 농지제도 개선 _361
3. 농협개혁 추진 _362
4. 일선조합 구조개선 추진 _365





제3편 2009년 수산업 동향

제1장 수산업 경제 동향

제1절 어업구조 _371

1. 어가인구 _371
2. 어업 총생산 _373
3. 어선등록 현황 _374
4. 이용어장 _376
5. 어업 경영체 _379

제2절 어가 경제 _385

1. 어가소득 _385
2. 어가 가계지출 _386
3. 어가자산 _387
4. 어가부채 _3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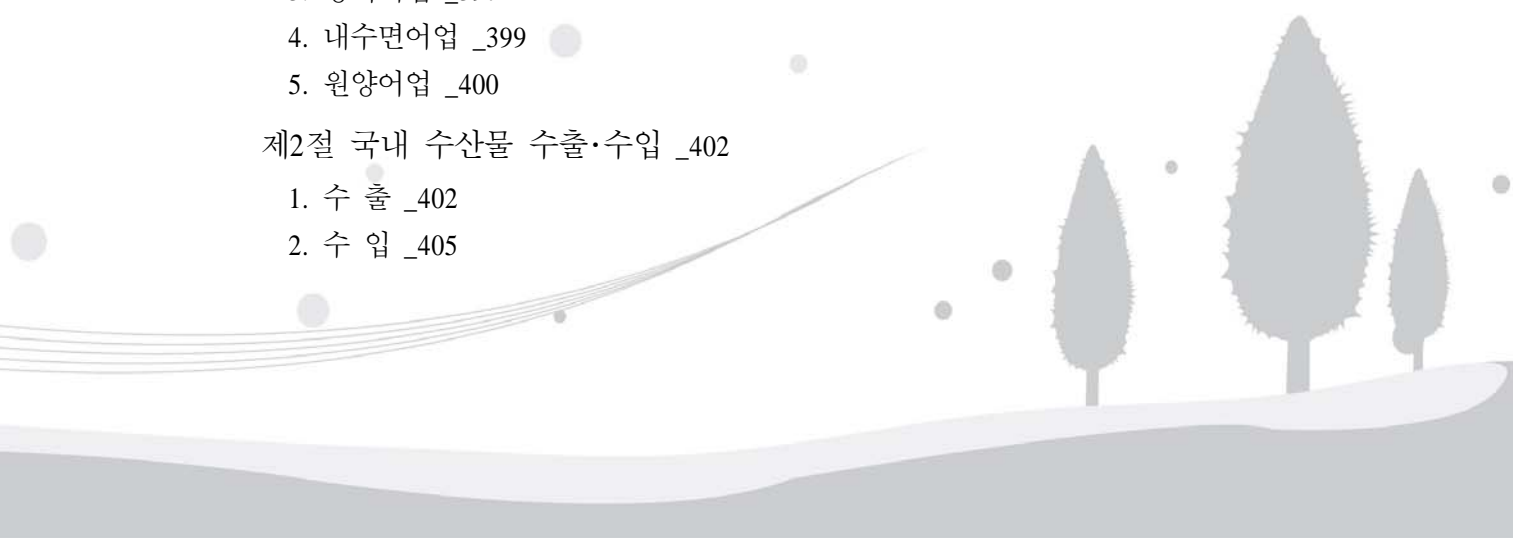
제2장 국내·국제 수산물 동향

제1절 국내 수산물 생산 _391

1. 생산동향 _391
2. 연근해어업 _392
3. 양식어업 _397
4. 내수면어업 _399
5. 원양어업 _400

제2절 국내 수산물 수출·수입 _402

1. 수출 _402
2. 수입 _405



[차례]

제3절 국내 수산물 수급 및 가격 _408

1. 수 급 _408
2. 소 비 _409
3. 가 격 _409

제4절 국내 어업 및 어장환경 _411

1. 어 황 _411
2. 자원동향 _412
3. 연안어장 및 환경변화 _413

제5절 국제 수산업 동향 _416

1. 세계 수산물 생산 _416
2. 세계 수산물 교역 _417

제4편 2009년 수산업 정책

제1장 총 론 _4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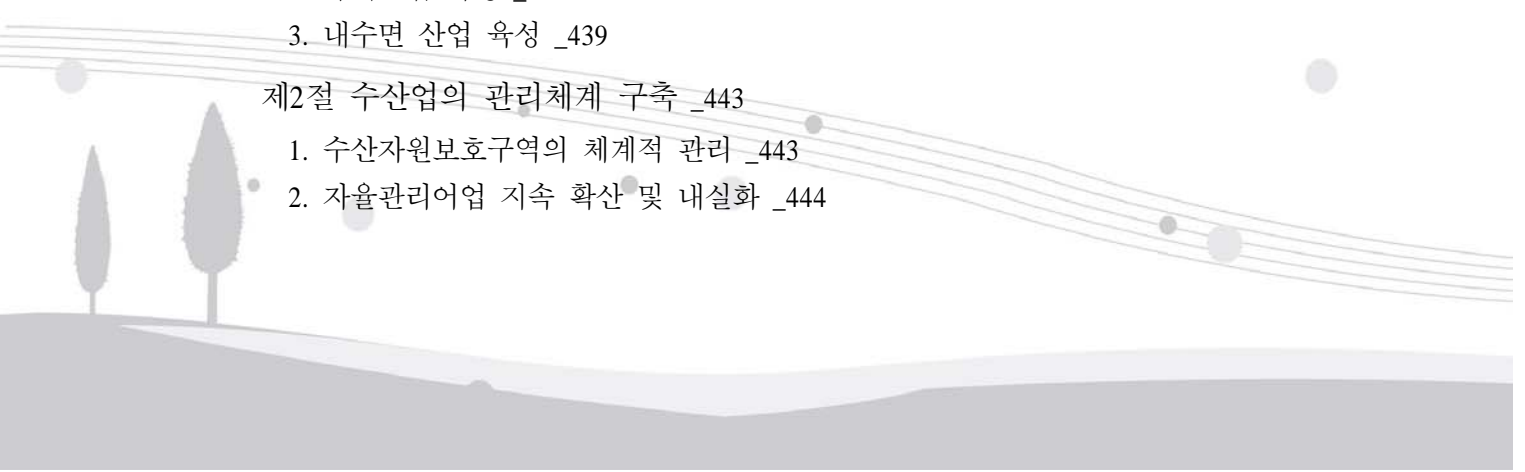
제2장 수산업의 자생력 확보 및 관리체계 구축

제1절 수산업의 자생력 확보 _431

1. 수산자원 회복정책의 체계화 _431
2. 유어산업 육성 _436
3. 내수면 산업 육성 _439

제2절 수산업의 관리체계 구축 _443

1.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체계적 관리 _443
2. 자율관리어업 지속 확산 및 내실화 _444





제3장 연근해어업 구조개편 및 어업질서 확립

제1절 연근해 어업 구조개편 _451

1.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_451
2. 자원관리형 어업생산구조 정착 _453
3. 연근해어업 총조사 _455
4. 연근해어업 경쟁력 강화 _456
5. 어업분쟁조정 기반 강화 _458

제2절 어업질서 확립 _460

1. 어업지도단속 내실화 _460
2. 어업지도선 건조 및 장비 확충 _462
3. 어업인 자율어업질서 참여 유도 _463
4. 연근해어선 안전조업지도 대책 추진 _464

제4장 수산업·어업인 경영지원 대책 마련

제1절 수산업 경영지원 _469

1. 수산업협동조합 개혁 추진 _469
2. 수산보전제도 도입 _472
3. 수산업 경영자금 지원 확대 _4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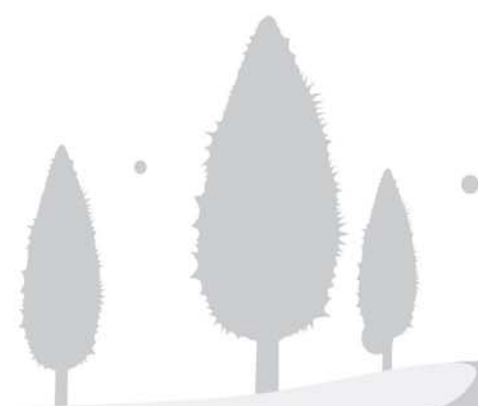
제2절 어업활동 지원 _478

1. 어업보험 내실화로 어업경영 안전장치 확충 _478
2. 허베이 스피리트 유류오염사고 피해어업인 지원 _480
3. 수산직불제 도입기반 마련 _488

제5장 수산 전문인력 양성 및 살기 좋은 어촌개발

제1절 어촌 전문인력 양성 _493

1. 수산경영 전문인력 양성 _493



[차례]

- 가. 어업인후계자 육성 _493
- 나. 수산계고교 특성화 사업 지원 _495
- 2. 어촌지역 개발 전문인력 양성 _496

제2절 살기 좋은 어촌모델 개발 기반 구축 _499

- 1.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로드맵 마련 _499
- 2. 어촌 종합개발사업 체계개편 _501
- 3. 어촌관광 S/W 지원 강화 _502
- 4. 어항시설 확충 _505
- 5. 어촌·어항 관광개발 _507
- 6. 어촌·어항 관광 기반 조성 _510

제6장 수산물 생산·관리·공급체계 개선

제1절 안전한 수산물 생산관리체계 강화 _5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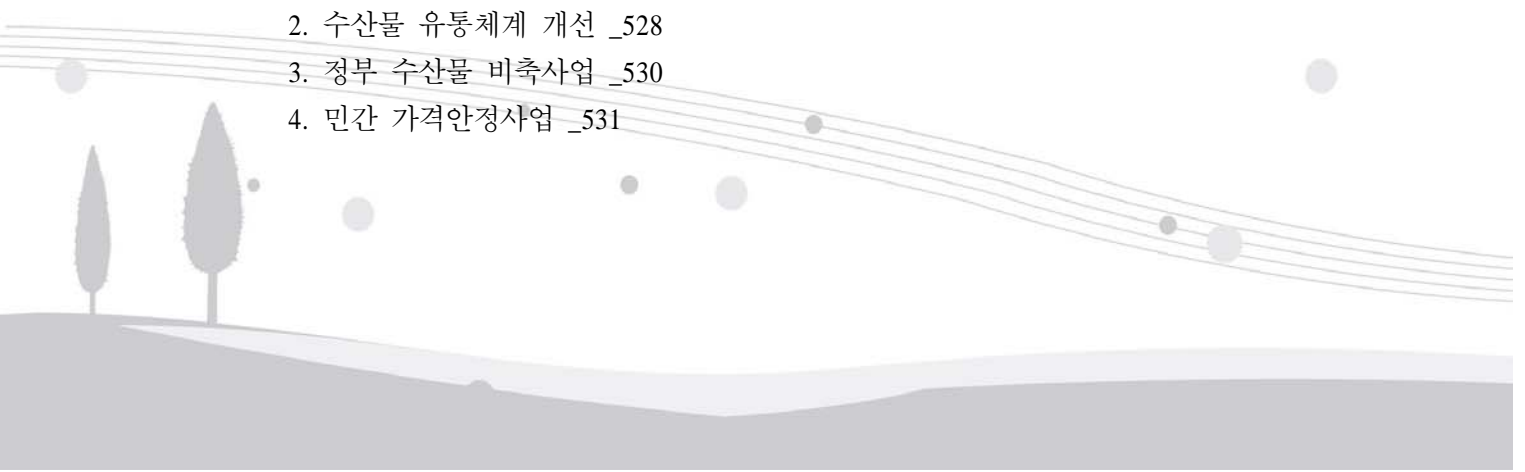
- 1. 국내 수산물 위생관리기반 구축 _515
- 2. 수출·수입 수산물 위생관리 강화 _516
- 3. 수출·수입 수산동식물 검역기반 구축 _518

제2절 친환경 양식 확대 및 수급조절 기능 강화 _520

- 1. 친환경 양식 생산 _520
- 2. 양식수산물 수급조절 강화 _521
- 3. 양식어장 환경 개선 _523

제3절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유통체계 개선 _526

- 1.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_526
- 2. 수산물 유통체계 개선 _528
- 3. 정부 수산물 비축사업 _530
- 4. 민간 가격안정사업 _531





제7장 대외협상 및 해외 수산자원 확보

제1절 국제협상 강화 _535

1. WTO-DDA 수산분야 협상대응 _535
2. FTA 수산분야 협상동향 및 대응 _538
3. 연안국 협력 및 국제 수산기구 활동 강화 _540
 - 가. 연안국과 어업협력 강화 _540
 - 나. 국제수산기구와의 협력 _542
4. 주변국 간 입어협상 및 민간 간 어업자원 협력 _548
 - 가. 한·일 어업협정 _548
 - 나. 한·중 어업협정 _551
 - 다. 한·러 어업협정 _554
5. 남북 수산협력사업 추진 _557

제2절 해외 수산자원 확보 _560

1. 원양어업의 경쟁력 강화 _560
2. 해외어장의 지속적 확보 _561
3. 원양업체 경영 지원 _563
4. 노후 원양어선 신조 대체 _564
5. 수산물 수출 진흥 _565
6. 체계적인 수입수산물 관리 _5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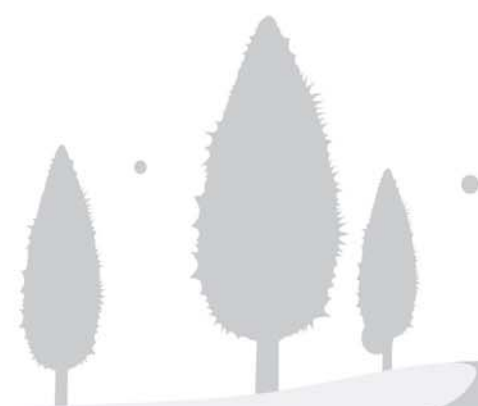


표차례

- <표 1-1-1> 농가호수와 농가인구 _6
- <표 1-1-2> 농경지 사유별 증감내역 _7
- <표 1-1-3> 농경지 이용현황 _8
- <표 1-1-4> 휴경면적 _8
- <표 1-1-5> 농가소득 _9
- <표 1-1-6> 농가소득 구성비 _10
- <표 1-1-7> 농업소득 _10
- <표 1-1-8> 농업총수입 _11
- <표 1-1-9> 농업총수입 구성비 _11
- <표 1-1-10> 농업경영비 _12
- <표 1-1-11> 농업외소득 _12
- <표 1-1-12> 이전소득 및 비경상소득 _13
- <표 1-1-13> 가계비 지출 _13
- <표 1-1-14> 가처분소득 / 잉여금 _14
- <표 1-1-15> 농가자산 _15
- <표 1-1-16> 농가부채 현황 _15
- <표 1-1-17> 2009 전업농가/겸업농가 주요지표 _16
- <표 1-1-18> 2009 주·부업별 지표 _17
- <표 1-1-19> 2009 영농형태별 주요지표 _18
- <표 1-1-20> 2009 경지규모별 주요지표 _19
- <표 1-1-21> 2009 경영주 연령별 주요지표 _20
- <표 1-1-22> 2009 지역별 주요지표 _20
- <표 1-1-23> 농가교역조건지수 동향 _21
- <표 1-1-24> 농가판매가격지수 동향 _23
- <표 1-1-25> 농가구입가격지수 동향 _24
- <표 1-1-26> 농가호당 생산요소 투입량 _25
- <표 1-1-27> 농업생산성 지표 _25
- <표 1-1-28> 주요 농산물 생산비 및 경영비(10a당) _26
- <표 1-1-29> 농림어업 부가가치 및 증감률 _27



- <표 1-2-1> 주요작물의 경지이용면적 추이 _32
- <표 1-2-2> 연도별 전체양곡 수급상황 _32
- <표 1-2-3> 1인당 연간 양곡소비량 추이 _33
- <표 1-2-4> 채소류 수급동향 _34
- <표 1-2-5> 과일류 수급동향 _35
- <표 1-2-6> 화훼산업 현황 _36
- <표 1-2-7> 특용작물 수급동향 _37
- <표 1-2-8> 버섯류 수급동향 _38
- <표 1-2-9> 버섯종류별 수출액 _38
- <표 1-2-10> 인삼 생산동향 _39
- <표 1-2-11> 쇠고기 수급동향 _40
- <표 1-2-12> 사료 수급 추이 _43
- <표 1-2-13> 배합사료 용도별 생산량 _44
- <표 1-2-14> 초지조성 실적 _44
- <표 1-2-15> 식품류별 월평균 소비 지출액 추이(도시가구평균) _45
- <표 1-2-16> 소득계층별 소비 지출액 비교(2009년도 도시가구평균) _46
- <표 1-2-17> 1인 1일당(전국평균) 식품영양소별 섭취량 추이 _47
- <표 1-2-18> 영양소별 영양섭취 기준에 대한 섭취비율의 변화 추이 _48
- <표 1-2-19> 품목별 1인당 연간 공급량 _50
- <표 1-2-20> 연도별 자급률 추이 _52
- <표 1-2-21> 주요국별 1인 1년간 식품공급량 비교 _53
- <표 1-2-22> 주요국별 1인 1일당 영양공급량 비교 _54
- <표 1-2-23> 식품제조업 연도별 추이 _55
- <표 1-2-24> 업종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출하액(2008) _56
- <표 1-2-25> 규모별 추이 _57
- <표 1-2-26> 외식산업 연도별 추이 _58
- <표 1-2-27> 업종별 사업체수 및 매출액(2008) _59
- <표 1-2-28> 규모별 추이 _59
- <표 1-2-29> 농식품 수출실적 _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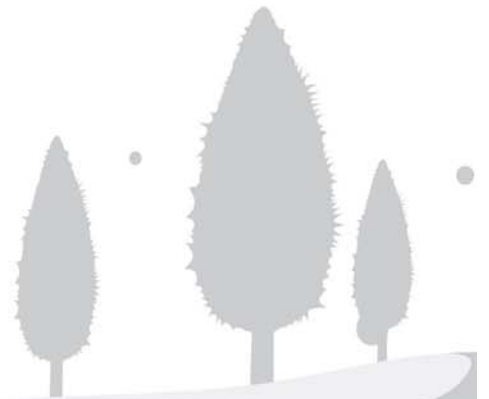


표차례

- <표 1-2-30> 국가별 농식품 수출실적 _62
- <표 1-2-31> 농식품 수입실적 _63
- <표 1-2-32> 국가별 농식품 수입실적 _63
- <표 1-2-33> 남북교역 동향 _64
- <표 1-2-34> 주요 품목별 반출실적 _65
- <표 1-2-35> 주요 품목별 반입실적 _66
- <표 1-3-1> USDA 주요곡물 수급총괄 _70
- <표 1-3-2> 세계 곡물가격 동향표 _73
- <표 1-3-3> 한미 주요 농업지표 비교 _75
- <표 1-3-4> 주요 농산물 생산량(2007년) _76
- <표 1-3-5> 개정 농업법 주요 내용 _79
- <표 1-3-6> 2009년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대비 상승폭 _80
- <표 1-3-7> 2009년 인구수 및 인구구성 _81
- <표 1-3-8> 일본의 주요농업지표 _84
- <표 1-3-9> EU의 주요 농업지표(2006-2007) _88
- <표 1-3-10> 농산물 교역 동향 _95
- <표 1-3-11> 주요 수출 품목 _96
- <표 1-3-12> 주요 수입 품목 _96
- <표 1-3-13> 농축수산물 수출입 실적 _100
- <표 1-3-14> 주요 수출 농축수산물 _100
- <표 1-3-15> 주요 수입 농축수산물 _100
- <표 2-2-1> 국내 직불제 현황 _115
- <표 2-2-2> 직불제 개편방향 _116
- <표 2-2-3> 친환경안전축산물 직접직불제 지원 단가 _124
- <표 2-2-4> 경관보전직불제 지원 실적 _126
- <표 2-2-5> 농작물재해보험 성장추이 _130
- <표 2-2-6> 가축공제 가입률 _134
- <표 2-2-7> 농업인 안전공제 추진실적 _135
- <표 2-2-8>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지원 실적 _142



- <표 2-2-9> 농업정책자금 지원규모 및 취급기관(2009년 말 기준) _143
- <표 2-2-10> 농업종합자금 지원 실적 _144
- <표 2-2-11> 연도별 조세감면 현황 _147
- <표 2-2-12> 농어업용 면세유 현황 _147
- <표 2-2-13> 농업부문 영세율 세부내역 _148
- <표 2-2-14> 농업부문 부가세환급 세부내역 _148
- <표 2-2-15> 어업부문 영세율 세부내역 _149
- <표 2-2-16> 어업부문 부가세환급 세부내역 _149
- <표 2-3-1> 2009년도 창업 후계농업경영인 선정현황 _154
- <표 2-3-2> 농어업 법인 현황 _160
- <표 2-3-3> 농업법인 현황 _160
- <표 2-3-4> 어업법인 현황 _161
- <표 2-3-5> 제8회 농업벤처창업경연대회 수상 _163
- <표 2-3-6> 경영컨설팅사업비 지원현황 _164
- <표 2-4-1> 28개 품목현황 _180
- <표 2-4-2> 의무 수입물량 _181
- <표 2-4-3> 국가별 쌀 약정 현황 _183
- <표 2-4-4> 연도별 쌀소득보전직불 지급액 _184
- <표 2-4-5> 쌀 생산 환경 변화(예측) _186
- <표 2-5-1> 농산물우수관리제도 및 농산물이력관리 추진 실적 _193
- <표 2-5-2> 주요가축전염병 발생현황 _203
- <표 2-5-3> BSE 검사현황 _205
- <표 2-5-4> 소 브루셀라병 발생동향 _206
- <표 2-5-5> 수출입 동·축산물 검역·검사 추진 현황 _209
- <표 2-5-6>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사업 추진실적 _215
- <표 2-6-1> 국가경제 17대 신 성장동력 _223
- <표 2-6-2> 식생활교육자원법 주요내용 _226
- <표 2-6-3> 최근 연도별 농식품 수출동향 _239
- <표 2-6-2> 최근 5개년도의 세부 수출동향 _2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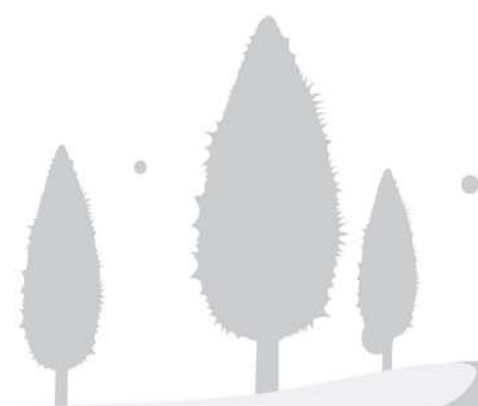


표차례

- <표 2-7-1>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실적 _248
- <표 2-7-2>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기준 및 금액 _249
- <표 2-7-3>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실적 _249
- <표 2-7-4> 학자금 융자 현황 _251
- <표 2-7-5> 지원 대상 및 지원수준 변동 추이 _253
- <표 2-7-6> 영농, 가사도우미 추진실적 _253
- <표 2-7-7> 제1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주요 추진 실적 _256
- <표 2-7-8>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 및 항목별 목표치(안) _257
- <표 2-7-9>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 _263
- <표 2-7-10> 생활환경정비사업 추진실적 _266
- <표 2-7-11> 도시민의 연도별 귀농현황 _267
- <표 2-7-12> 전원마을조성사업 연차별 추진실적 _268
- <표 2-7-13> 상수도 보급현황 _270
- <표 2-7-14> 농어촌뉴타운조성 시범사업 대상지 및 사업규모 _272
- <표 2-7-15>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 예산 지원율 _272
- <표 2-7-16> 주택개량사업 지원 실적 _274
- <표 2-7-17> 정보화교육 실적(1998~2009) _276
- <표 2-7-18> 농림수산정보망 현황 _277
- <표 2-8-1> 농촌활력증진사업비 지원 현황 _282
- <표 2-8-2> 부처별 지원 현황 _283
- <표 2-8-3>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 실적 및 계획 _286
- <표 2-8-4>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추진현황 _294
- <표 2-8-5> 밭 기반 정비사업 추진현황 _295
- <표 2-8-6>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현황 _296
- <표 2-8-7> 경과연수별 수리시설 현황 _297
- <표 2-8-8>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추진현황 _297
- <표 2-8-9> 배수개선사업 추진현황 _299
- <표 2-8-10> 연도별 논 및 수리답 현황 _300
- <표 2-8-11> 중규모 농촌용수개발 추진 현황 _301
- <표 2-8-12> 소규모 농촌용수개발 추진 현황 _301
- <표 2-8-13> 지표수 보강개발 추진 현황 _301



- <표 2-8-14> 대단위 농업개발사업 시행중 지구 개발유형 _303
- <표 2-8-15> 대단위 농업개발사업 완료지구 _304
- <표 2-8-16> 대단위 농업개발사업 시행중 지구 _305
- <표 2-9-1> ASEAN+3 각국 쌀 약정물량 _327
- <표 2-9-2> 아세안 식량안보정보시스템 교육현황 _327
- <표 2-9-3> AI 등 가축전염병 방역기술 연수현황 _328
- <표 2-9-4> 농업부문 중소기업을 위한 수확 후 관리기술 연수현황 _329
- <표 2-10-1> 농림수산식품분야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전략 _349
- <표 2-10-2> 농림수산식품분야 저탄소 녹색성장 50개 실천 프로젝트 _349
- <표 2-10-3> 농림기술개발사업 유형 _352
- <표 2-10-4> 농림기술개발사업 과제관리 현황 _352
- <표 2-10-5> 농림기술개발사업 완료과제 성과활용 현황 _353
- <표 2-10-6> 3대 분야 17대 新 성장동력 선정 결과 _354
- <표 3-1-1> 어가호수와 어가인구 _371
- <표 3-1-2> 어업종사자 성별·연령별 구성 _372
- <표 3-1-3> 전업·겸업별 어업가구 _372
- <표 3-1-4> 어업형태별 어업가구 _372
- <표 3-1-5> 어업생산 현황 _373
- <표 3-1-6> 어업총생산(부가가치) 현황 _373
- <표 3-1-7> 어선등록 현황 _374
- <표 3-1-8> 선질별 어선등록 현황 _375
- <표 3-1-9> 톤급별 어선등록 현황 _375
- <표 3-1-10> 품목별·연도별 양식어장 면허면적 _378
- <표 3-1-11> 종류별·연도별 양식어업 허가면적 _378
- <표 3-1-12> 연안어업 경영체 추이 _380
- <표 3-1-13> 근해어업 경영체 추이 _381
- <표 3-1-14> 양식 면허어업 경영체 추이 _382
- <표 3-1-15> 소유자별·연도별 양식어장 면허면적 _383
- <표 3-1-16> 원양업체 경영규모 추이 _383
- <표 3-1-17> 어가소득 _385
- <표 3-1-18> 어업소득 _3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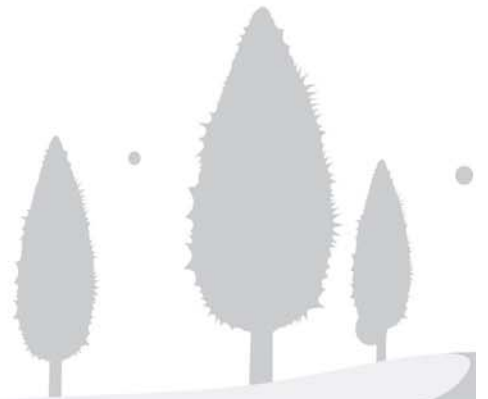


표차례

- <표 3-1-19> 어업외 소득 _386
- <표 3-1-20> 가계지출 _386
- <표 3-1-21> 어가자산 _387
- <표 3-1-22> 어가부채 _388
- <표 3-2-1> 어업별 생산현황 _391
- <표 3-2-2> 부류별 생산현황 _392
- <표 3-2-3> 연근해어업 주요 품종별 생산현황 _393
- <표 3-2-4> 연근해어업 업종별 생산현황 _397
- <표 3-2-5> 양식어업 품종별 생산현황 _398
- <표 3-2-6> 내수면어업 품종별 생산현황 _400
- <표 3-2-7> 원양어업 어종별 생산현황 _401
- <표 3-2-8> 수산물 수출현황 _402
- <표 3-2-9> 품목별 수출현황 _403
- <표 3-2-10> 국가별 수출현황 _404
- <표 3-2-11> 주요 어종별 수출현황 _404
- <표 3-2-12> 수산물 수입현황 _405
- <표 3-2-13> 품목별 수입현황 _406
- <표 3-2-14> 국가별 수입현황 _406
- <표 3-2-15> 어종별 수입현황 _407
- <표 3-2-16> 수산물 수급동향 _408
- <표 3-2-17> 연간 1인당 수산물 소비현황 _409
- <표 3-2-18> 동물성 단백질 공급현황 _409
- <표 3-2-19> 소비자 물가동향 _410
- <표 3-2-20> 주요 수산물 생산국 현황 _416
- <표 3-2-21> 세계 수산물 수출추이 _417
- <표 3-2-22> 세계 수산물 수입추이 _418
- <표 4-2-1> 신 수산정책 30개 프로젝트 개요 _426
- <표 4-2-2> 2009년도 어종별 총허용어획량 _433
- <표 4-2-3> 시·도별 인공어초 시설 _434



- <표 4-2-4> 국내 낚시 인구 현황 _437
- <표 4-2-5> 낚시행위에 의한 조획량(추정) _437
- <표 4-2-6> 낚시어업권 현황 _440
- <표 4-2-7>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현황('09년 말) _443
- <표 4-2-8> 자율관리 참여공동체수 _445
- <표 4-2-9> 2009년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 지원 현황 _446
- <표 4-3-1>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소요 _452
- <표 4-3-2> 유실율이 높은 어업별 평균 어구사용량 _453
- <표 4-3-3>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추진실적 및 투자계획 _454
- <표 4-3-4> 연도별 불법어업 단속현황 _460
- <표 4-3-5> 연도별 중국어선 불법어업 단속현황 _461
- <표 4-3-6> 2009년도 불법어업 없는 우수마을 선정현황 _464
- <표 4-4-1> 수산분야 직접지불제 예산 현황 _473
- <표 4-4-2> 연도별 어업별 생산금액 동향 _475
- <표 4-4-3> 2009년 영어자금 공급현황 _475
- <표 4-4-4> 2009년 수산발전기금 운용 총괄표 _476
- <표 4-4-5> 어선원 및 어선 보험료 국고보조금 지원 실적 _478
- <표 4-4-6> '선주 책임제한 채권' 신고 현황(2009.5.8 현재) _481
- <표 4-4-7> 수산분야 세부업종별 신고내역 _482
- <표 4-4-8> 허베이 스피리트호 피해 배(보)상 추진 현황(2009.12.31 현재) _483
- <표 4-4-9> 접수, 사정 및 지급 추이 _483
- <표 4-4-10> 직불제(순직불제) 사업별 현황 _489
- <표 4-5-1> 어업인후계자 육성실적 _493
- <표 4-5-2> 어업인후계자 지원실적 _494
- <표 4-5-3> 사업별 사업개요 _499
- <표 4-5-4> 사업별 성과지표 실적 현황 _500
- <표 4-5-5> 어촌종합개발사업 사업개요 _501
- <표 4-5-6> 어촌종합개발사업 지원 실적 및 계획 _502
- <표 4-5-7> 어촌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 _503



표차례

- <표 4-5-8> '08~'09년 어촌체험마을 운영실태 현황 _504
- <표 4-5-9> 어항지정 현황 _505
- <표 4-5-10> 시·도별 국가어항 현황 _506
- <표 4-5-11> 시·도별 지방어항 개발현황 _506
- <표 4-5-12> 시·도별 어촌정주어항 개발현황 _506
- <표 4-5-13> 어촌어항 관광개발 사업개요 _507
- <표 4-5-14> 시·도별 어촌체험마을 배정 및 지원 현황 _508
- <표 4-5-15> 어촌어항관광개발사업 지원 실적 및 계획 _508
- <표 4-5-16> 어촌관광모델개발 사업내용 _509
- <표 4-5-17> 다기능어항개발사업 지원 실적 및 계획 _510
- <표 4-5-18> 다기능어항개발 사업내용 _511
- <표 4-6-1> 수산물 이력제 등록현황 _516
- <표 4-6-2> 양식장 HACCP 등록현황 _516
- <표 4-6-3> 어장정화사업 추진실적(누계) _524
- <표 4-6-4> 친환경수산물 인증대상 품목 _527
- <표 4-6-5> 수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현황 _527
- <표 4-6-6> 2009년도 정부비축사업 실적 _530
- <표 4-7-1> 양국 간 수산협력약정 체결현황 _542
- <표 4-7-2> 우리나라의 국제수산기구 활동현황 _545
- <표 4-7-3> 선박자동위치감시시스템(VMS) 설치 실적 _547
- <표 4-7-4> 2009년 한·일 EEZ 입어실적 비교(총괄) _549
- <표 4-7-5> 2009년 한·일 EEZ 어종별 어획실적 비교 _550
- <표 4-7-6> 우리어선의 일본수역 어종별 어획실적 _550
- <표 4-7-7> 일본어선의 우리수역 어종별 어획실적 _550
- <표 4-7-8> 한·중·일 어업협정 개요 _552
- <표 4-7-9> 러시아수역 명태쿼터 확보 동향 _555
- <표 4-7-10> 남북수산협력 사업 주요 추진경과 _558
- <표 4-7-11> 해외어장자원조사 추진실적 _562



- <그림 1-1-1> 경지면적 변동추이 _7
- <그림 1-3-1> 제도개요 _85
- <그림 2-4-1> 양곡관리 시스템 _182
- <그림 2-4-2> 쌀소득보전직불제 _184
- <그림 2-5-1> 농림수산물 LMO 안전관리체계 _189
- <그림 2-6-1> 식품산업발전 종합계획 _225
- <그림 2-6-2> 국가전체수출대비 농식품수출 비중 _239
- <그림 4-2-1> 인공산란장 조성현장 및 어란 부착 모습 _440
- <그림 4-2-2> 논 생태 양식 개념도 _441
- <그림 4-3-1> 유실된 통발·자망의 유령어업 및 서식장 파괴 _455
- <그림 4-3-2> 분쟁조정 절차 _458



제1편

2009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동향



제1장

농업·농촌 경제동향



1. 농가호수와 농가인구

(정책통계팀 사무관 김규섭)

2009년 12월 1일 현재 농가 수는 1,195천 가구로 전년의 1,212천 가구보다 17천 가구(1.4%) 감소하였으며, 농가인구는 3,117천 명으로 전년의 3,187천 명보다 69천 명(2.2%)이 감소하였다. 가구원이 농업에만 종사하는 전업농가는 전체농가의 58.0%인 693천 가구로 전년의 707천 가구(58.3%)보다 가구 수는 14천 가구가 감소하였으나, 비중은 0.3%p 감소하였다. 가구원이 농업과 농업이외 일을 함께하는 겸업농가는 전체농가의 42.0%인 502천 가구로 전년의 505천 가구(41.7%)보다 3천 가구가 감소하였다.

농가인구의 고령화로 인하여 연령층이 60대인 경영주가 32.4%(387천 명), 70세 이상 경영주는 30.5%(370천 명)에 이르며, 전체농가에서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영주가 차지하는 비중(65.0%)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60세 미만 경영주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전체인구(48,747천 명)중에서 농가인구(3,117천 명)가 차지하는 비중은 6.4%로 전년보다 0.2%p 감소하였으며, 고령화율을 나타내는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중은 34.2%로 2008년 33.3%보다 높아져 전국(2008 : 10.3% → 2009 : 10.7%)에 비해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농가인구를 성별로 보면 남자가 1,510천 명(48.4%), 여자가 1,607천 명(51.6%)으로 여자의 비중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1> 농가호수와 농가인구

구 분	단위	1995년	2000년	2005년	2008년	2009년	2008년 대비		
							증감	증감률(%)	
농 가 호 수	천 호	1,501	1,383	1,273	1,212	1,195	△17	△1.4	
농 가 인 구 (총인구비중)	천 명 (%)	4,851 (10.9)	4,031 (8.6)	3,434 (7.1)	3,187 (6.6)	3,117 (6.4)	△70	△2.2	
호당농가인구	명	3.23	2.91	2.70	2.63	2.61	△0.02	△0.8	
연령별 농 가 인 구	50세 이상 (구성비)	천 명 (%)	2,122 (43.7)	2,009 (49.9)	1,952 (56.8)	1,970 (61.7)	1,970 (63.2)	0	0.0
	50세미만 (구성비)	천 명 (%)	2,729 (56.3)	2,022 (50.1)	1,482 (43.2)	1,217 (38.3)	1,147 (36.8)	△70	△5.8
성 별 농 가 인 구	남 자 (구성비)	천 명 (%)	2,373 (48.9)	1,971 (48.9)	1,677 (48.8)	1,542 (48.4)	1,510 (48.4)	△32	△2.1
	여 자 (구성비)	천 명 (%)	2,478 (51.1)	2,060 (51.1)	1,757 (51.2)	1,645 (51.6)	1,607 (51.6)	△37	△2.3

자료 : 통계청 농업조사

2. 농경지

(정책통계팀 사무관 김규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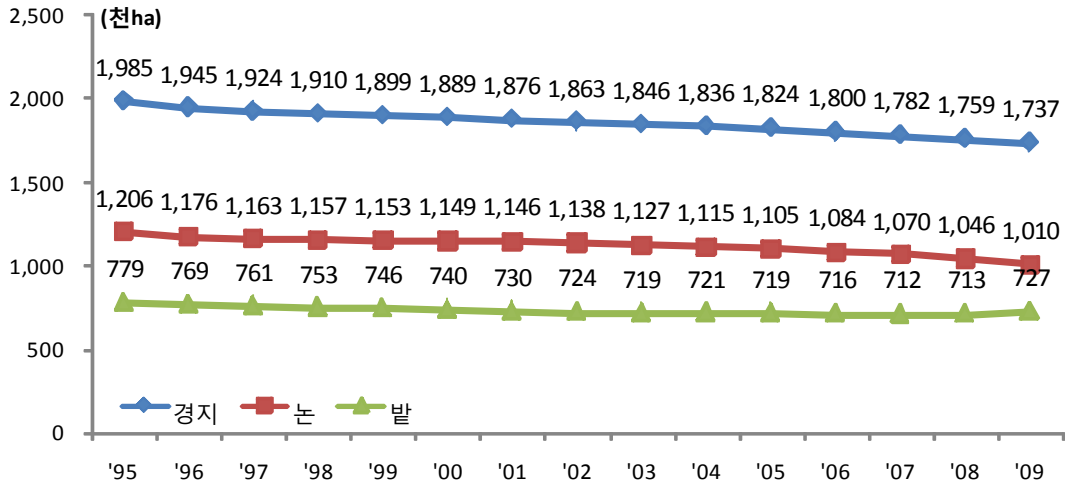
농경지 면적은 도시화에 따라 건물건축, 공공시설 등 타 용도 전환면적이 증가하여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말 경지면적은 전년보다 22천ha 줄어든 1,737천ha로, 이 가운데 논 면적은 1,010천ha로 전년에 비하여 36천ha 감소하였으며, 밭 면적은 727천ha로 14천ha가 증가하였다.

경지면적의 변동요인을 살펴보면 건물·건축(15.2천ha), 공공시설(13.9천ha), 기타사유(19.6천ha)로 인하여 총 48.7천ha의 경지가 감소한 반면, 개간(23.0천ha), 복구 등(3.7천ha)으로 총 26.7천ha 경지가 증가해 전체적으로는 22.0천ha가 감소하였다.

2009년의 경지 이용면적은 1,873천ha로 전년보다 39천ha가 증가하였고, 경지이용률은 전년의 107.1%에서 110.8%로 높아졌다. 경지 이용면적 중 식량작물은 1,125천ha로 전년보다 18천ha 감소, 채소는 216천ha로 7천ha 감소, 과수는 151천ha로 2천ha 증

가하였다. 한편 휴경면적은 45.4천ha로 전년보다 7.4천ha 증가하였고, 전체 경지면적 중 휴경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보다 0.5%p 증가한 2.7%로 나타났다.

<그림 1-1-1> 경지면적 변동추이



자료 : 통계청 경지면적통계

<표 1-1-2> 농경지 사유별 증감내역

(단위 : 천ha)

연도별	증 가				감 소				증 감 면 적
	계	개간	간척	기타	계	건물건축	공공시설	기타	
2000	9.0	5.6	1.0	2.4	19.1	5.3	5.2	8.6	△10.1
2001	7.6	4.3	1.0	2.3	20.3	5.6	5.5	9.2	△12.7
2002	4.5	3.3	0.3	0.9	18.0	6.4	4.4	7.2	△13.5
2003	3.2	2.3	0.0	0.9	19.9	7.9	4.8	7.1	△16.6
2004	8.2	7.2	0.3	0.6	18.6	6.7	5.7	6.2	△10.4
2005	1.7	1.0	0.4	0.3	13.3	5.2	3.5	4.6	△11.6
2006	4.5	4.2	0.0	0.4	28.1	9.8	6.3	12.0	△23.6
2007	4.3	3.4	0.6	0.4	23.2	10.2	4.1	8.9	△18.9
2008	5.6	4.6	0.4	0.5	28.4	9.8	5.2	13.4	△22.8
2009	26.7	23.0	2.7	1.0	48.7	15.2	13.9	19.6	△22.0

자료 : 통계청 경지면적통계

<표 1-1-3> 농경지 이용현황

(단위 : 천ha)

구 분	1995년	2000년	2005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08년 대비	
							증감	증감률(%)
경지이용면적	2,197	2,098	1,921	1,856	1,834	1,873	39	2.1
식량작물	1,346	1,318	1,234	1,161	1,143	1,125	△18	△1.6
(미곡)	(1,056)	(1,072)	(980)	(950)	(936)	(924)	(△12)	(△1.3)
(맥류)	(90)	(68)	(61)	(56)	(56)	(54)	(△2)	(△3.6)
(두류 등)	(200)	(177)	(193)	(155)	(151)	(147)	(△4)	(△2.6)
경제작물	851	780	689	694	691	748	57	8.2
(채소)	(322)	(296)	(240)	(222)	(223)	(216)	(△7)	(△3.1)
(과수)	(172)	(169)	(150)	(148)	(149)	(151)	(2)	(1.3)
(기타) ¹⁾	(357)	(315)	(299)	(324)	(319)	(381)	(62)	(19.4)
경지면적	1,985	1,889	1,824	1,782	1,759	1,737	△22	△1.3
경지이용률(%)	108.1	110.5	104.7	103.1	107.1	110.8	3.4	3.5
(논)	(104.1)	(106.3)	(102.9)	(104.7)	(107.9)	(112.0)	(4.1)	(3.8)
(밭)	(114.7)	(116.9)	(107.3)	(100.6)	(105.9)	(109.0)	(3.1)	(2.9)

주 : 1) 특·약용작물, 뽕밭, 관상수 심은 밭, 묘포, 기타를 뜻함
 자료 : 통계청 경지면적통계

<표 1-1-4> 휴경면적

(단위 : 천ha)

구 분	1995년	2000년	2005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08년 대비	
							증감	증감률(%)
휴경면적	64.6	16.8	44.2	37.2	38.0	45.4	7.4	19.5
논	33.5	4.3	24.1	14.8	14.3	13.9	△0.4	△2.8
밭	31.1	12.5	20.1	22.5	23.7	31.5	7.8	32.9
휴경율(%)	3.2	0.9	2.4	2.1	2.2	2.7	-	-

자료 : 통계청 경지면적통계

제2절

농가경제

1. 소득 동향

(정책통계팀 사무관 김규섭)

가. 농가소득

2009년도 농가의 평균소득은 연간 30,814천 원으로서 전년(30,523천 원)에 비해 1.0%(291천 원) 증가하였다. 농업소득은 전년대비 0.5% 증가하였으나, 비경상소득은 17.0%로 비교적 크게 감소하고, 농외소득과 이전소득은 각각 6.8%, 3.6% 증가하였다.

<표 1-1-5> 농가소득

(단위 : 천 원, %)

구 분	1995년	2004년	2005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08년 대비	
							증감	증감률(%)
농 가 소 득 ¹⁾	21,803	29,001	30,503	31,967	30,523	30,814	291	1.0
경 상 소 득	21,803	24,600	25,778	26,462	26,296	27,306	1,010	3.8
○ 농 업 소 득	10,469	12,050	11,815	10,406	9,654	9,698	44	0.5
○ 농 외 소 득	6,931	9,544	9,884	11,097	11,353	12,128	775	6.8
○ 이 전 소 득	4,403	3,006	4,078	4,959	5,289	5,481	192	3.6
비 경 상 소 득 ²⁾	-	4,401	4,725	5,506	4,227	3,507	△720	△17.0

주 : 1) 농가소득=경상소득(농업소득+농외소득+이전소득)+비경상소득

2) 비경상소득 : 우발적인 사유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경조수입, 퇴직일시금, 사고보상금 등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농업의존도)은 31.5%로 나타났으며, 전년에 비해 0.1%p 감소하였다.

<표 1-1-6> 농가소득 구성비

(단위 : %)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7년	2008년	2009년
농 가 소 득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경 상 소 득	81.9	84.8	84.5	82.8	86.2	88.6
- 농 업 소 득 ¹⁾	39.3	41.6	38.7	32.6	31.6	31.5
- 농 외 소 득	35.0	32.9	32.4	34.7	37.2	39.4
- 이 전 소 득	7.6	10.4	13.4	15.5	17.3	17.8
○ 비 경 상 소 득	18.1	15.2	15.5	17.2	18.0	11.4
< 일 본 > ²⁾						
○ 농 업 소 득	25.4	24.8	24.6	24.7	23.2	-

주 : 1) 농업의존도는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임

2) 일본은 2003년 조사체계개편(경영주 부부 및 농업관련 세대원 중심으로 파악)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일본 농림수산성 농업경영통계

나. 농업소득

농업총수입은 3.0% 증가하고 농업경영비 또한 4.5% 증가하였으나 농업총수입 증가금액이 농업경영비의 증가금액보다 많아 농업소득은 9,698천 원으로 전년(9,654천 원)에 비해 0.5%(44천 원) 증가하였다.

<표 1-1-7> 농업소득

(단위 : 천 원, %)

구 분	1995년	2004년	2005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08년 대비	
							증감	증감률(%)
농 업 소 득 ¹⁾ (농업소득률)	10,469 (65.4)	12,050 (45.3)	11,815 (44.6)	10,406 (39.9)	9,654 (37.4)	9,698 (36.4)	44	0.5
○ 농업총수입	16,012	26,623	26,496	26,102	25,843	26,621	778	3.0
○ 농업경영비	5,543	14,572	14,681	15,696	16,189	16,924	735	4.5

주 : 1) 농업소득 = 농업총수입 - 농업경영비, 농업소득률 = (농업소득/농업총수입)×100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농업총수입은 26,621천 원으로 전년(25,843천 원)에 비해 3.0%(778천 원) 증가하였다. 미곡과 과수는 각각 11.4%, 1.3% 감소하고, 축산과 채소는 각각 30.7%, 7.7% 증가 하였다.

<표 1-1-8> 농업총수입

(단위 : 천 원, %)

구 분	1995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08년 대비	
								증감	증감률(%)
농업총수입	16,012	26,623	26,496	27,322	26,102	25,843	26,621	778	3.0
○ 미 곡 수 입	5,450	8,653	7,264	7,578	7,296	7,364	6,522	△842	△11.4
○ 축 산 수 입	3,981	5,021	6,386	6,403	5,145	5,336	6,972	1,636	30.7
○ 채 소 수 입	3,386	6,538	6,388	6,758	6,817	5,755	6,198	443	7.7
○ 과 수 수 입	1,542	2,964	2,945	2,915	3,192	3,398	3,355	43	△1.3
○ 기 타 수 입 ¹⁾	1,653	3,447	3,513	3,668	3,652	3,990	3,574	△416	△10.4

주 : 1) 서류, 두류, 맥류, 화훼, 잡곡수입 등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농업총수입 구조를 보면 축산수입(26.2%), 미곡(24.5%), 채소(23.3%), 기타(13.4%) 및 과수수입(12.6%) 순으로 나타났다.

<표 1-1-9> 농업총수입 구성비

(단위 : %)

구 분	1995년	2004년	2005년	2007년	2008년	2009년
농업총수입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미 곡 수 입	34.0	32.5	27.4	28.0	28.5	24.5
○ 축 산 수 입	24.9	18.9	24.1	19.7	20.6	26.2
○ 채 소 수 입	21.1	24.6	24.1	26.1	22.3	23.3
○ 과 수 수 입	9.6	11.1	11.1	12.2	13.2	12.6
○ 기 타 수 입	10.4	12.9	13.3	14.0	15.4	13.4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농업경영비는 16,924천 원으로 전년(16,189천 원)에 비해 4.5%(735천 원) 증가하였다. 노무비와 임차료는 각각 4.9%, 8.8% 감소하였으나, 양축비는 사료값 상승으로 10.1% 증가 하였다.

<표 1-1-10> 농업경영비

(단위 : 천 원, %)

구 분	1995년	2004년	2005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08년 대비	
							증감	증감률(%)
농업경영비	5,543	14,572	14,681	15,696	16,189	16,924	735	4.5
○수선 및 농구비	807	335	318	326	329	327	△2	△0.6
○노무비	441	952	913	958	886	843	△43	△4.9
○양축비	1,261	2,607	2,747	2,440	3,340	3,676	336	10.1
○비료·농약비	695	1,587	1,624	1,822	1,806	2,078	272	15.1
○임차료	1,070	1,318	1,096	1,133	992	905	87	△8.8
○기타비용 ¹⁾	1,269	7,773	7,983	9,017	8,836	9,095	259	2.9

주 : 1) 감가상각비, 종묘비, 기타, 광열비, 수리비, 위탁영농비, 조세 및 부담금, 지급이자, 영농잡비용, 보험료 및 수수료, 기타판매 및 관리비 등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다. 농업외소득

농업외소득은 12,128천 원으로 전년(11,353천 원)에 비해 6.8%(775천 원) 증가하였다. 겸업소득은 13.7% 증가하고, 사업외소득도 4.5% 증가하였다.

<표 1-1-11> 농업외소득

(단위 : 천 원, %)

구 분	1995년	2004년	2005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08년 대비	
							증감	증감률(%)
농업외소득	6,931	9,544	9,884	11,097	11,353	12,128	775	6.8
○겸업소득 ¹⁾	1,527 (22.0)	2,342 (24.5)	2,531 (25.6)	2,959 (26.7)	2,900 (25.5)	3,296 (27.2)	396	13.7
○사업외소득 ²⁾	5,404 (78.0)	7,201 (75.5)	7,353 (74.4)	8,138 (73.3)	8,453 (74.5)	8,832 (72.8)	379	4.5

주 : 1) 겸업소득은 임업, 어업, 제조업 등 농업의 사업을 경영하여 얻은 소득
 2) 사업외소득은 노임, 급료, 임대료 등 사업의 활동을 통하여 얻은 소득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라. 이전소득 및 비경상소득

이전소득은 3.6% 증가하였으나, 비경상소득은 17.0% 감소하여 합계는 전년에 비해 528천 원(5.5%) 감소한 8,988천 원으로 나타났다.

<표 1-1-12> 이전소득 및 비경상소득

(단위 : 천 원, %)

구 분	1995년	2004년	2005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08년 대비	
							증감	증감률(%)
합 계	4,403	7,407	8,803	10,465	9,516	8,988	△528	△5.5
○이 전 소 득 ¹⁾	-	3,006	4,078	4,959	5,289	5,481	192	3.6
○비 경 상 소 득	-	4,401	4,725	5,506	4,227	3,507	△720	△17.0

주 : 1) 2003년부터 이전소득 중 경조수입, 퇴직일시금 등은 비경상소득으로 분리 신설됨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2. 가계지출 동향

(정책통계팀 사무관 김규섭)

2009년 가계비는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을 합하여 26,574천 원으로 나타났다. 소비지출은 20,017천 원으로 전년(20,328천 원)에 비해 1.5%(311천 원), 비소비지출은 6,557천 원으로 전년(6,773천 원)에 비해 3.2%(216천 원) 감소하였다.

<표 1-1-13> 가계비 지출

(단위 : 천 원, %)

구 분	1995년	2004년	2005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08년 대비	
							증감	증감률(%)
가 계 비	14,782	24,691	26,649	28,048	27,102	26,574	△528	△1.9
○소 비 지 출	14,782	18,386	19,378	20,510	20,328	20,017	△311	△1.5
○비 소 비 지 출 ¹⁾	-	6,305	7,271	7,538	6,773	6,557	△216	△3.2
농업소득의 가계비 총족도 (농업소득/가계비)	70.8	48.8	44.3	37.1	35.6	36.5	-	-
평 균 소 비 성 향 (소비지출/처분가능소득 ²⁾)	68.3	81.0	83.4	84.0	85.6	82.5	-	-

주 : 1) 2003년부터 조세, 사회보험 등으로 구성된 비소비지출이 분리 신설됨
 2) 2003년부터 처분가능소득 = 농가소득 - 비소비지출
 2003년 이전 처분가능소득 = 농가소득 - 조세·부담금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3. 처분가능소득 및 잉여

(정책통계팀 사무관 김규섭)

농가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제외한 농가의 처분가능소득은 2009년 24,257천 원이고,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제외한 순수한 농가 잉여금은 4,240천 원으로 전년(3,421천 원)에 비해 23.9%(819천 원) 증가하였다. 이는 소비지출은 311천 원 감소하고, 처분가능소득은 510천 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표 1-1-14> 가처분소득 / 잉여금

(단위 : 천 원, %)

구 분	1995년	2004년	2005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08년 대비	
							증감	증감률(%)
○ 처분가능소득 ¹⁾	21,629	22,696	23,232	24,429	23,749	24,257	510	2.1
○ 소비지출 (분가지출)	14,782 (548)	18,386 -	19,378 -	20,510 -	20,328 -	20,017 -	△311	△1.5
○ 잉여금 ²⁾	6,299	4,309	3,854	3,919	3,421	4,240	819	23.9

주 : 1) 2003년부터 처분가능소득 = 농가소득 - 비소비지출
 2003년 이전 처분가능소득 = 농가소득 - 조세·부담금
 2) 2003년부터 잉여금 = 처분가능소득 - 가계지출 중 소비지출
 2003년 이전 잉여금 = 처분가능소득 - 가계비 - 분가지출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4. 농가자산 동향

(정책통계팀 사무관 김규섭)

2009년 말 현재 가구당 평균자산은 358,029천 원으로 전년(341,227천 원)에 비해 4.9%(16,802천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정자산은 2.0% 증가에 그쳤으나, 예·저금 및 미처분 농산물 등 유동자산이 19.3%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표 1-1-15> 농가자산

(단위 : 천 원, %)

구 분	1995년	2004년	2005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08년 대비	
							증감	증감률(%)
농 가 자 산	158,171	243,665	298,178	395,981	341,227	358,029	16,802	4.9
고 정 자 산 ¹⁾	134,334 (84.9)	194,401 (79.8)	238,399 (80.0)	315,569 (79.7)	283,826 (83.2)	289,539 (80.9)	5,713	2.0
유 동 자 산 ²⁾	23,837 (15.1)	49,264 (20.2)	59,779 (20.0)	80,412 (20.3)	57,401 (16.8)	68,490 (19.1)	11,089	19.3

주 : 1) 토지, 건축물 및 구축물, 기계·기구·비품, 대동·식물, 무형자산

2) 미처분농축산물, 미사용구입자재, 소동물 등의 재고자산 및 현금, 예금 등 당좌자산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5. 농가부채 동향

(정책통계팀 사무관 김규섭)

농가부채는 2009년 말 현재 가구당 26,268천 원으로 전년(25,786천 원)에 비해 1.9%(482천 원) 증가하였다. 이 중 농업용 부채는 13,150천 원으로 전년(13,600

<표 1-1-16> 농가부채 현황

(단위 : 천 원, %)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³⁾	2009년	증감('09/'08)	
						금 액	증감률
농 가 부 채	27,210	28,161	29,946	25,786	26,268	482	1.9
농 업 용 부 채 (구 성 비)	16,315 (60.0)	16,042 (57.0)	16,486 (55.1)	13,600 (52.7)	13,150 (50.1)	-450	-3.3
농업용 이외부채 ¹⁾ (구 성 비)	10,895 (40.0)	12,118 (43.0)	13,460 (44.9)	12,186 (47.3)	13,118 (49.9)	932	7.6
당 좌 자 산	54,354	66,806	74,634	52,118	63,493	11,375	21.8
단기부채상환능력 ²⁾ (부채/당좌자산)×100	50.1	42.2	40.1	49.5	41.4		-8.1%p
농 가 자 산	298,178	356,963	395,981	341,227	358,029	16,802	4.9
장기부채상환능력 ²⁾ (부채/농가자산)×100	9.1	7.9	7.6	7.6	7.3		-0.3%p

주 : 1) 농업용 이외 부채는 가계용+접업용+기타용 부채임

2) 자산 대비 부채가 적을수록(수치가 적을수록) 부채상환능력이 개선됨을 의미

3) 2008년은 통계청 표본개편(5년 주기)에 따라 시계열 단층현상이 발생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결과

천 원)에 비해 3.3%(450천 원) 감소하였고, 농업용 이외부채는 13,118천 원으로 전년 (12,186천 원)에 비해 7.6%(932천 원) 증가하였다.

농가의 「단기부채상환능력」 평가지표인 당좌자산 대비 부채비율(41.4%)은 전년 (49.5%)에 비해 개선되었으며, 「장기부채상환능력」 평가지표인 농가자산 대비 부채 비율(7.3%)도 전년(7.6%)에 비해 개선되었다.

6. 전업농가·겸업농가의 주요지표

(정책통계팀 사무관 김규섭)

전·겸업별 농가소득은 전업농가보다 겸업농가의 소득이 높고, 제2종 겸업농가의 소득이 38,175천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업농가의 소득은 제2종 겸업농가의 66.1% 수준이었다.

<표 1-1-17> 2009 전업농가/겸업농가 주요지표

(단위 : 천 원, %)

구 분	평 균 (A)	전업농가 (B)	겸업농가		전국평균 대비		
			제1종(C)	제2종(D)	B/A	C/A	D/A
농 가 구 성 비 ¹⁾	100.0	58.0	12.6	29.4	-	-	-
농 가 소 득	30,814	25,223	35,121	38,175	81.9	114.0	123.9
가 계 지 출	26,574	21,860	28,768	33,379	82.3	108.3	125.6
자 산	358,029	332,983	387,286	386,860	93.0	108.2	108.1
부 채 (부채 / 자산)	26,268 (7.3)	23,722 (7.1)	35,209 (9.1)	26,713 (6.9)	90.3 -	134.0 -	101.7 -

주 : 1) 2009년 농업기본통계 전·겸업별 농가의 구성비임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평균 농가자산은 358,029천 원이며 「제1종 겸업농가」의 자산이 387,286천 원으로 가장 많고, 부채 또한 「제1종 겸업농가」가 가장 높은 35,209천 원으로 나타났다.

7. 주·부업별 지표

(정책통계팀 사무관 김규섭)

주업농가 중 전문농가의 소득이 38,754천 원으로 자급농가(27,762천 원)의 1.4배 수준이고, 전문농가의 자산은 449,665천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급농가는 (256,429천 원) 전문농가의 57.0%에 지나지 않았다. 자산대비 부채비율도 3ha이상 경지를 보유한 전문농가가 9.8%로 가장 높았다.

【주·부업농가 기준】

- 주업농가 : 경지규모가 30a 이상 또는 연간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200만 원 이상인 농가 중에서 농업수입이 농업이외수입보다 많은 농가
- 전문농가 : 경지규모가 3ha 이상 또는 연간 농축산물 판매금액 2,000만 원 이상
- 부업농가 : 경지규모가 30a 이상 또는 연간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200만 원 이상인 농가 중에서 농업이외수입이 농업수입보다 많은 농가
- 자급농가 : 경지가 없거나, 30a 미만의 농가 중에서 연간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200만 원 미만인 농가

<표 1-1-18> 2009 주·부업별 지표

(단위 : 천 원, %)

구 분	평 균	주 업 농 가		부업농가	자급농가
		전문농가	일반농가		
농 가 구 성 비 ¹⁾	100.0	19.5	41.5	20.7	18.3
농 가 소 득	30,814	38,754	17,909	37,281	27,762
가 계 지 출	26,574	30,060	17,101	33,222	25,295
자 산	358,029	449,665	249,203	408,620	256,429
부 채 (부 채 / 자 산)	26,268 (7.3)	43,883 (9.8)	10,203 (4.1)	29,520 (7.2)	13,269 (5.2)

주 : 1) 2009년 농업기본통계 주·부업별 농가의 구성비임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8. 영농형태별 주요지표

(정책통계팀 사무관 김규섭)

영농형태별 농가소득은 축산농가가 48,762천 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화훼농가가 38,021천 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농가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논벼농가의 소득은 21,824천 원으로 평균 농가소득(30,814천 원)의 70.8% 수준이다.

농가자산은 화훼농가의 자산이 549,492천 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축산농가(451,400천 원), 과수농가(372,287천 원) 순서였다.

부채/자산비율은 축산농가가 13.4%로 다른 농가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고, 논벼농가는 4.3%로 가장 낮았다.

<표 1-1-19> 2009 영농형태별 주요지표

(단위 : 천 원, %)

구 분	평 균	논벼	과수	채소	특·약용	화훼	전작	축산
농 가 구 성 비 ¹⁾	100.0	47.8	12.4	21.6	3.7	1.1	6.3	6.7
농 가 소 득	30,814	21,824	29,469	25,813	37,343	38,021	14,999	48,762
가 계 지 출	26,574	21,734	24,037	22,818	26,769	37,912	16,607	29,578
자 산	358,029	340,304	372,287	311,083	279,571	549,492	207,846	451,400
부 채 (부 채 / 자 산)	26,268 (7.3)	14,463 (4.3)	33,334 (9.0)	25,554 (8.2)	36,795 (13.2)	34,913 (6.4)	17,963 (8.6)	60,394 (13.4)

주 : 1) 2009년 농업기본통계 영농형태별 농가의 구성비임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9. 경지규모별 주요지표

(정책통계팀 사무관 김규섭)

농가소득은 경지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비교적 높으며 특히 7.0ha 이상 농가의 소득은 5,000만 원 이상인 반면, 2.0ha미만은 3,000만 원대 이하로 나타났다.

농가자산 또한 경지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토지자산이 많아 상대적으로 자산규모도 크며, 부채/자산비율도 경지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20> 2009 경지규모별 주요지표

(단위: 천 원, %)

구 분	평균	0.5ha 미만	0.5~ 1.0	1.0~ 1.5	1.5~ 2.0	2.0~ 3.0	3.0~ 5.0	5.0~ 7.0	7.0~ 10.0	10.0ha 이상
농가구성비 ¹⁾	100.0	40.6	25.1	12.7	7.3	6.9	4.6	1.5	0.8	0.5
농가소득	30,814	28,333	26,493	27,898	30,321	33,545	36,664	46,291	51,884	68,693
가계지출	26,574	25,453	23,114	23,746	26,406	27,642	33,368	40,998	39,126	36,176
자산	358,029	267,284	292,551	302,497	392,581	435,808	479,894	698,344	667,201	720,213
부채	26,268	16,504	20,616	19,127	32,382	31,227	34,852	61,858	82,235	73,307
(부채/자산)	(7.3)	(6.2)	(7.0)	(6.3)	(8.2)	(7.2)	(7.3)	(8.9)	(12.3)	(10.2)

주: 1) 2009년 농업기본통계 경지규모별 농가의 구성비임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10. 경영주 연령별 주요지표

(정책통계팀 사무관 김규섭)

농가소득은 40대 연령층의 소득이 44,754천 원으로 가장 높고, 70세 이상 연령층의 소득은 19,953천 원으로 가장 낮았다. 농가자산은 40대가 4억 7,000만 원, 50대가 4억 4,000만 원, 60대가 3억 9,000만 원순이다. 농가부채는 40대가 80,026천 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39세 이하 49,128천 원, 50~59세가 42,772천 원이나 70세 이상은 8,004천 원으로 경영주 연령 간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표 1-1-21> 2009 경영주 연령별 주요지표

(단위 : 천 원, %)

구 분	평 균	39세 이하	40~49	50~59	60~69	70세 이상
농 가 구 성 비 ¹⁾	100.0	1.7	10.2	23.1	32.4	32.6
농 가 소 득	30,814	33,713	44,754	43,936	31,507	19,953
가 계 지 출	26,574	34,964	38,919	37,959	26,480	17,638
자 산	358,029	355,519	468,328	441,897	392,840	256,313
부 채	26,268	49,128	80,026	42,772	24,188	8,004
(부채 / 자산)	(7.3)	(13.8)	(17.1)	(9.7)	(6.2)	(3.1)

주 : 1) 2009년 농업기본통계 경영주연령별 농가의 구성비임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11. 지역별 주요지표

(정책통계팀 사무관 김규섭)

경기와 제주지역 농가소득이 가구당 4,000만 원 내외 수준의 높은 소득을 올리고, 전남과 경남지역이 2,500~800만 원 내외 정도로 다른 지역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자산은 토지가격이 높은 경기지역이 7억 원대로 월등히 높고, 부채는 경기(41,392천 원), 제주(40,172천 원)지역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표 1-1-22> 2009 지역별 주요지표

(단위 : 천 원, %)

	전 국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농가구성비 ¹⁾	100.0	11.5	6.3	7.1	13.3	9.3	15.2	16.8	11.7	3.0
농 가 소 득	30,814	34,262	34,126	31,876	32,864	30,641	25,216	31,296	28,173	35,037
가 계 지 출	26,574	35,919	26,159	28,108	27,401	24,009	22,794	22,513	25,362	30,798
자 산	358,029	701,109	341,817	285,208	380,488	278,085	217,668	278,923	286,915	421,703
부 채	26,268	41,392	26,166	20,553	27,114	19,358	19,929	20,282	32,302	40,172
(부채 / 자산)	(7.3)	(5.9)	(7.7)	(7.2)	(7.1)	(7.0)	(9.2)	(7.3)	(11.3)	(9.5)

주 : 1) 2009년 농업기본통계 지역별 구성비임(특·광역시 5.9% 제외)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제3절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 지수

1. 개황

(정책통계팀 사무관 김규섭)

2009년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01.0으로 전년에 비해 1.6%p 상승하였으며 농가구입가격지수도 120.4로 전년대비 5.1%p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농가교역조건지수는 83.9로 나타났다. 여기서 농가교역조건이 100 이하인 것은 농가채산성이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1-23> 농가교역조건지수 동향

구 분	(2005=100)				
	2004년	2005년	2007년	2008년	2009년
농가판매가격지수(①)	104.2	100.0	101.4	99.4	101.0
농가구입가격지수(②)	96.3	100.0	104.8	115.3	120.4
농가교역조건지수(①/②×100)	108.2	100.0	96.8	86.2	83.9

자료 : 통계청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지수

2. 농가판매가격지수 동향

(정책통계팀 사무관 김규섭)

2009년도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01.0로 청과물(3.9% ↑), 축산물(11.1% ↑)은 전년에 비해 올랐으나, 곡물(7.2% ↓), 특용작물(0.7% ↓)이 내려 전체적으로는 전년에 비해 1.6%p 상승하였다.

가. 곡 물

2009년도 곡물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00.0로 전년에 비해 7.8%p 하락하였는데 품목별로는 미곡(△6.4%), 겉보리(△3.0%), 쌀보리(△6.0%), 맥주맥(△9.8%), 팥(△20.9%) 등이 전년보다 하락하였다.

나. 청과물

2009년도 청과물 농가판매가격지수는 95.9로 전년대비 3.6%p 상승하였다. 채소류의 경우 전체적으로는 전년도보다 4.5%p 상승하였는데 품목별로는 상추(34.9%), 깻잎(7.5%) 등 엽채류가 전년보다 10.4%p 상승하고, 무(△5.2%) 등 근채류는 5.7%p 하락하였다.

건고추(14.5%), 마늘(36.5%), 양파(8.4%) 등 조미채류는 전년보다 20.8%p 상승하였으며, 참외(△7.2%), 수박(△5.4%) 등 과채류는 13.1%p 하락하였다.

과실류의 경우 복숭아(△4.4%), 감(△11.3%) 등이 하락하였으나 사과(후지 11.5%), 배(16.5%) 등이 상승하여, 전체적으로는 전년보다 1.8%p 상승하였다.

다. 축산물

2009년도 축산물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03.3으로 유우송아지 암컷(△36.0%)은 감소하였으나, 한우암소(11.3%), 한우송아지 암컷(12.2%), 수컷(18.5%), 돼지(9.3%), 새끼돼지(11.7%) 등이 올라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10.3%p 상승하였다.

라. 기타농산물

특용작물·화훼·부산물 등 기타 농산물의 2009년도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22.1로서 전년대비 6.8%p 상승하였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참깨(△7.9%), 인삼(△11.3%), 들깨(24.5%), 땅콩(17.5%), 송이버섯(11.5%) 등 특용작물은 전년에 비해 0.7%p 하락하고, 국화(25.7%), 장미(17.0%) 등 화훼류는 27.4%p 상승하였다.

<표 1-1-24> 농가판매가격지수 동향

(2005=100)

구 분	가중치	지 수				전년대비 등락률	
		2005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08년	2009년
총 지 수	1,000	100.0	101.4	99.4	101.0	△2.0	1.6
곡 물	338.3	100.0	100.2	107.8	100.0	7.6	△7.2
미 곡	277.3	100.0	98.5	104.4	97.7	6.0	△6.4
맥 류	9.1	100.0	98.4	95.0	89.1	△3.5	△6.2
잡 곡	6.2	100.0	106.5	117.5	114.3	10.3	△2.7
두 류	19.5	100.0	83.8	112.9	109.1	34.7	△3.4
서 류	26.2	100.0	129.0	142.3	117.4	10.3	△17.5
청 과 물	339.9	100.0	105.7	92.3	95.9	△12.7	3.9
채 소	226.0	100.0	109.1	96.9	101.4	△11.2	4.6
(엽 채 류)	45.1	100.0	87.6	56.0	66.4	△36.1	18.6
(근 채 류)	12.1	100.0	188.8	110.0	104.3	△41.7	△5.2
(조 미 채)	83.5	100.0	103.5	111.6	132.4	7.8	18.6
(과 채 류)	85.3	100.0	114.6	102.3	89.2	△10.7	△12.8
과 실	113.9	100.0	98.9	83.1	84.9	△16.0	2.2
축 산 물	249.5	100.0	93.3	93.0	103.3	△0.3	11.1
가 축	168.1	100.0	91.9	87.0	97.4	△5.3	12.0
유 란	81.4	100.0	96.3	105.6	115.5	9.7	9.4
기 타 농 산 물	72.3	100.0	114.7	115.3	122.1	0.5	5.9
특 용 작 물	48.5	100.0	99.7	95.0	94.3	△4.7	△0.7
화 훼	20.6	100.0	148.9	162.3	189.7	9.0	16.9
부 산 물	3.2	100.0	121.6	119.1	108.5	△2.1	△8.9

자료 : 통계청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지수

3. 농가구입가격지수 동향

(정책통계팀 사무관 김규섭)

2009년도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20.4로 가계용품(2.9%), 농업용품(7.7%), 농촌 임료금(4.2%) 등이 올라 전체적으로 전년에 비해 5.1%p 상승하였다.

가. 가계용품

2009년도 가계용품의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13.9로 식료품(6.2%), 피복 및 신발(4.2%), 보건의료(2.4%), 교육(2.9%) 등이 올라 전년보다 3.2%p 상승하였다. 품목별로는 광열수도(△7.6%)비가 하락하였다.

나. 농업용품

2009년도 농업용품의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38.4로 비료(16.1%), 가축(7.9%) 등이 올라 전년보다 9.9%p 상승하였다. 품목별로는 영농광열(△25.6%)비가 하락하였다.

다. 농촌임료금

2009년도 농촌임료금 구입가격지수는 116.4로 전년보다 4.7%p 상승하였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농업노동임금은 남자노임(5.5%)과 여자노임(5.3%) 모두 상승하여 전년보다 6.2%p 올랐으며 쌀 도정료는 3.5%p 상승하였다. 농기계임차료는 전년보다 2.9%p 상승하였다.

<표 1-1-25> 농가구입가격지수 동향

(2005=100)

구 분	가중치	지 수				전년대비 등락률	
		2005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08년	2009년
총 지 수	1,000	100.0	104.8	115.3	120.4	10.0	4.4
가 계 용 품	660.4	100.0	104.9	110.7	113.9	5.5	2.9
농 업 용 품	255.9	100.0	104.8	128.5	138.4	22.6	7.7
중 자	18.0	100.0	96.6	96.9	105.3	0.3	8.7
비 료	23.5	100.0	121.0	207.5	241.0	71.5	16.1
농 약	22.0	100.0	99.9	104.2	120.8	4.3	15.9
농 기 구	49.1	100.0	106.5	114.1	119.1	7.1	4.4
영 농 광 열	16.8	100.0	112.7	148.7	110.6	31.9	△25.6
가 축	34.6	100.0	86.6	69.3	74.8	△20.0	7.9
사 료	66.3	100.0	112.1	155.5	179.5	38.7	15.4
영 농 자 채	25.4	100.0	97.6	123.3	117.6	26.3	△4.6
농 촌 임 료 금	83.7	100.0	103.5	111.7	116.4	7.9	4.2
농 업 노 동 임 금	44.5	100.0	103.0	113.1	119.3	9.8	5.5
도 정 료	3.6	100.0	100.5	107.3	110.8	6.8	3.3
농 기 계 임 차 료	35.6	100.0	104.6	110.3	113.2	5.4	2.6

자료 : 통계청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지수

제4절

농업생산성 및 농림업 부가가치

1. 농업생산성

(정책통계팀 사무관 김규섭)

농가에서 영농작업에 투입한 주요 생산요소를 보면, 2009년 호당 노동시간은 1,171시간으로 전년대비 4.7% 감소하였으며, 농업자본액은 52,517천 원으로 전년보다 2.6% 감소하였다. 또한 호당 경지면적은 1.45ha로 전년 수준이었다.

<표 1-1-26> 농가호당 생산요소 투입량

(단위 : 시간, 천 원, ha)

구 분	1995년	2000년	2005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08년 대비	
							증감	증감률(%)
영 농 시 간	1,376	1,253	1,487	1,368	1,229	1,171	△58	△4.7
농 업 자 본 액	21,323	31,425	49,721	51,418	53,931	52,517	△1,414	△2.6
호당경지면적 ¹⁾	1.32	1.37	1.43	1.45	1.45	1.45	-	-

주 : 1) 호당경지면적 = 경지면적 / 농가수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표 1-1-27> 농업생산성 지표

구 분	단위	1995년	2000년	2005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08년 대비	
								증감	증감률(%)
노동생산성 ¹⁾	원/시간	9,387	11,778	12,297	12,839	13,157	14,061	904	6.9
토지생산성 ²⁾	천 원/10a	954	1,051	1,141	1,077	1,178	1,229	51	4.3
자본생산성 ³⁾	원/원	0.61	0.47	0.36	0.34	0.30	0.31	0.01	3.3
노동집약도 ⁴⁾	시간/10a	102	89	93	84	90	87	△3	△3.3
자본집약도 ⁵⁾	천 원/10a	1,575	2,237	3,138	3,187	3,929	3,921	△8	△0.2

주 : 1) 노동생산성(농업부가가치/자연농업노동시간) : 투하된 노동력과 그 결과로써 얻은 생산량의 비율
 2) 토지생산성(농업부가가치/경지면적) : 토지면적 단위당 생산량
 3) 자본생산성(농업부가가치/농업자본액) : 투입된 자본에 대한 생산량
 4) 노동집약도(자연농업노동시간/경지면적) : 일정 경지면적에 대해 투하된 노동량
 5) 자본집약도(농업자본액/경지면적) : 일정 경지면적에 대해 투입된 농업자본액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2009년 노동생산성은 시간당 14,061원으로 전년 13,157원보다 6.9% 증가하였고, 자본생산성은 0.31원으로 전년보다 3.3% 증가하였다. 단위면적당 투입되는 노동시간을 나타내는 노동집약도는 87시간으로 전년보다 3.3% 감소하였으며, 단위면적당 투입되는 자본액을 나타내는 자본집약도는 3,921천 원으로 전년보다 0.2% 감소하였다.

2. 농산물 생산비 및 경영비

(정책통계팀 사무관 김규섭)

2009년 10a당 생산비는 논벼가 625천 원으로 전년 630천 원보다 0.8% 감소하였으며, 마늘은 1,676천 원으로 전년 1,677천 원보다 0.1% 감소하고, 양파는 1,372천 원으로 전년 1,286천 원보다 6.7% 증가하였으며, 고추 또한 1,848천 원으로 전년 1,732천 원보다 6.7% 증가하였다.

<표 1-1-28> 주요 농산물 생산비 및 경영비(10a당)

(단위: 천 원)

구 분		1995년	2000년	2005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08년 대비	
								증감	증감률(%)
논 벼	조수입(A)	737	1,041	879	854	1,013	944	△69	△6.8
	생산비(B)	412	538	588	607	630	625	△5	△0.8
	경영비(C)	198	280	334	364	389	395	6	1.5
	순수익(A-B)	325	503	292	247	384	319	△65	△16.9
	소 득(A-C)	539	761	546	490	624	549	△75	△12.0
마 늘	조수입(A)	2,001	1,427	2,007	2,347	2,129	2,201	72	3.4
	생산비(B)	1,067	1,226	1,423	1,535	1,677	1,676	△1	△0.1
	경영비(C)	582	683	798	904	983	999	16	1.6
	순수익(A-B)	934	201	584	812	452	525	73	16.2
	소 득(A-C)	1,420	744	1,209	1,443	1,146	1,202	56	4.9
양 파	조수입(A)	1,178	1,519	1,908	1,725	3,148	2,936	△212	△6.7
	생산비(B)	733	921	1,048	1,186	1,286	1,372	86	6.7
	경영비(C)	414	485	610	732	803	892	89	11.1
	순수익(A-B)	445	598	860	539	1,862	1,564	△298	△16.0
	소 득(A-C)	764	1,034	1,298	994	2,345	2,043	△302	△12.9
고 추	조수입(A)	1,613	1,837	2,209	2,544	2,636	2,857	221	8.4
	생산비(B)	937	1,127	1,497	1,581	1,732	1,848	116	6.7
	경영비(C)	347	428	638	752	814	855	41	5.0
	순수익(A-B)	676	711	712	963	904	1,009	105	11.6
	소 득(A-C)	1,266	1,410	1,572	1,793	1,822	2,001	179	9.8

자료: 통계청 농산물생산비통계

2009년 10a당 경영비는 마늘이 999천 원으로 가장 많고, 양파가 892천 원, 고추 855천 원, 논벼가 395천 원으로 나타났다.

2009년 조수입에서 경영비를 차감한 10a당 소득을 보면 양파가 2,043천 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고추 2,001천 원, 마늘 1,202천 원, 논벼 549천 원 순으로 나타났다.

2000년 대비 생산비 증가폭이 가장 큰 품목은 인건비 비중이 높은 고추가 64.0% 증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양파 49.0%, 마늘 36.7%, 논벼 1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 농림업 부가가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한석호, 초청연구원 반현정)

2009년 농림어업 총부가가치는 2005년 가격 기준으로 29조 2,980억 원 수준이며, 실질로는 전년대비 1.6% 증가하였다. 이 중 농업 부가가치는 전년대비 1.6%, 어업부문은 1.0% 증가하였다.

농업 부가가치 중 재배업은 전년대비 1.1%, 축산업은 4.8% 증가하였다. 농업 부가가치는 특히 재배업 중 과실류의 생산액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축산업은 한육우, 돼지, 닭 등 주요 가축의 생산액이 증가하였다. 어업 부가가치는 어류, 갑각류, 패류 등 일반 해면어업과 천해양식 생산액은 증가하였으나 원양어업 생산액은 감소하여 전년대비 1.0% 증가에 그쳤다.

<표 1-1-29> 농림어업 부가가치 및 증감률

(단위 : 10억 원, %, 2005년 기준가격)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p	
농 립 어 업	23,387	25,512	25,853	26,240	27,294	28,827	29,298	
실 질 증 감 률	농 립 어 업	△5.4	9.1	1.3	1.5	4.0	5.6	1.6
	재 배 업	△7.0	11.4	0.0	△0.6	1.2	5.0	1.1
	축 산 업	△4.6	5.5	0.7	3.4	9.1	10.6	4.8
	임 업	△5.1	4.6	4.4	7.7	11.0	2.8	3.3
	어 업	3.9	△2.4	11.1	11.3	12.7	1.9	1.0
	농 립 어 업 서 비	14.4	14.0	11.2	△3.2	△1.1	3.5	2.0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제2장

국내 농식품 수급동향



1. 식량작물

(식량정책과 서기관 송태복)

2009년도의 식량작물 재배면적은 2008년도의 1,145천ha보다 20천ha가 줄어든 1,125천ha 수준이며, 식량작물 중 벼 재배면적은 전년의 936천ha보다 12천ha가 줄어든 924천ha이었다. 이는 쌀 수급균형 회복을 위한 정부의 벼 적정생산 유도정책 실시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전체 경지 이용면적 중 식량작물 재배비율은 전년도 62.4%에서 60.1%로 소폭 감소하였는데 이는 벼와 맥류, 두류의 재배면적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맥류의 경우는 재고량의 증가추세를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적정 재배면적 유도에 따라 전년도에 비해 2천ha 감소하였다.

전체곡물 생산량은 매년 다소 차이는 있지만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총 5,489천 톤이 생산되어 전년도 5,044천 톤에 비해 445천 톤이 증가되었는 바, 이는 국내곡물생산량의 90%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쌀의 생산량이 기상여건 양호로 대풍년이 들었기 때문이다.

소비량은 2008년도의 18,160천 톤보다 2,425천 톤이 증가된 20,585천 톤이며, 이는 해외 곡물가 급등으로 수요가 감소된 사료용 곡물의 수요가 가격 하락에 따라 다시 증가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쌀의 경우 국민식생활 변화 등에 따라 식용소비는 2008년보다 71천 톤 수준 감소한 반면, 식품가공용 물량은 2008년도 보다 31천 톤이 증가한 321천 톤을 공급하였다. 또한 수입쌀 재고감축 노력으로 2009년도는 89천 톤을 주정용으로 공급하였으며, 2009양곡년도 말 국가전체 쌀 재고량은 995천 톤 수준이다.

<표 1-2-1> 주요작물의 경지이용면적 추이

(단위 : 천ha, %)

연도	경지 이용 면적	식 량 작 물					채 소		과 실		기 타	
		소계	구성비	미곡	맥류	기타 품목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1990	2,409	1,669	69.3	1,244	160	265	277	11.5	132	5.5	331	13.7
1995	2,197	1,346	61.3	1,056	90	200	322	14.7	172	7.8	357	16.2
1997	2,097	1,314	62.7	1,052	70	192	285	13.6	174	8.3	324	15.4
1998	2,118	1,331	62.8	1,059	83	189	278	13.1	173	8.2	336	15.9
1999	2,116	1,325	62.6	1,066	77	182	289	13.7	171	8.1	331	15.6
2000	2,098	1,316	62.7	1,072	68	176	296	14.1	169	8.1	317	15.1
2003	1,936	1,234	63.7	1,016	65	153	245	12.3	159	8.2	298	15.4
2004	1,941	1,231	63.4	1,001	63	167	255	13.1	153	7.9	302	15.6
2005	1,921	1,232	64.1	980	61	191	240	12.5	150	7.8	300	15.6
2006	1,860	1,178	63.3	955	58	165	234	12.6	147	7.9	301	16.2
2007	1,855	1,161	62.6	950	56	155	222	12.0	148	8.0	324	17.5
2008	1,834	1,145	62.4	936	56	153	223	12.1	148	8.1	318	17.3
2009	1,873	1,125	60.1	924	54	147	216	11.5	151	8.1	381	20.3

주 : 기타는 시설작물, 수원지, 기타작물임
 자료 : 통계청 농어업생산통계과

<표 1-2-2> 연도별 전체양곡 수급상황

(단위 : 천 톤)

양곡년도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생 산	7,048	7,102	7,013	5,816	5,931	5,720	5,433	5,315	5,044	5,489
수 입	5,051	5,051	10,022	14,258	14,624	13,860	14,099	13,852	13,798	15,003
소 비	12,596	14,667	16,282	19,974	19,961	19,779	19,771	19,382	18,160	20,585
- 식량용	10,124	9,921	9,981	10,601	10,014	10,892	10,479	10,487	9,755	10,690
- 사료용	2,472	4,746	6,301	9,373	9,285	8,887	9,292	8,895	8,405	9,895
연 말 재 고	2,179	2,280	3,657	3,119	2,625	2,507	2,189	1,975	2,660	2,567
자 급 률 (%)	56.0	48.4	43.1	29.1	29.7	29.4	27.7	27.2	27.8	26.7
(사료용 제외시)	(69.6)	(71.6)	(70.3)	(55.7)	(55.6)	(54.0)	(52.7)	(51.6)	(51.7)	(51.4)
1인당 연간 소비량 (kg)	195.1	181.7	167.0	160.5	153.3	137.5	134.4	131.9	129.6	129.6

주 : 곡물자급도는 생산/수요, 식량자급도는 생산/(소비-사료) 비율임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원예정책관

2009년도 전체 곡물자급도는 26.7%로 2008년보다 1.1% 감소되고 사료용을 제외하면 전년도 51.7%보다 0.3%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9년도 국민 1인당 양곡소비량은 2008년도와 동일한 129.2kg 이었다.

곡종별로 보면 쌀이 전년도 75.8kg에서 1.4kg이 줄어든 74.4kg으로 나타났으며, 보리쌀은 1.1kg으로 전년과 동일하였고, 밀은 33.0kg에서 33.4kg으로 증가하였으며, 옥수수는 4.5kg에서 5.0kg으로 증가하였고, 콩의 경우도 7.6kg에서 8.0kg으로 증가하였다.

<표 1-2-3> 1인당 연간 양곡소비량 추이

(단위 : kg)

양곡년도	계	쌀	보리쌀	밀	옥수수	콩	서 류	기 타
1970	219.4	136.4	37.3	26.1	1.1	5.3	10.2	3.0
1980	195.1	132.4	13.8	29.4	3.1	8.0	6.3	2.1
1985	181.7	128.1	4.6	32.1	3.1	9.3	3.1	1.4
1990	167.0	119.6	1.6	29.8	2.7	8.3	3.3	1.7
1995	160.5	106.5	1.5	33.9	3.3	9.0	3.0	3.3
1998	156.4	99.2	1.5	34.6	4.8	9.7	3.2	3.4
1999	156.9	96.9	1.5	35.8	5.8	9.9	3.8	3.2
2000	153.3	93.6	1.6	35.9	5.9	8.5	4.3	3.5
2001	145.5	88.9	1.7	34.4	6.3	8.2	2.5	3.5
2002	144.0	87.0	1.5	34.6	5.7	8.4	3.4	3.4
2003	138.0	83.2	1.0	32.7	6.2	8.0	3.2	3.7
2004	138.5	82.0	1.1	34.1	5.6	8.5	3.1	4.1
2005	137.5	80.7	1.2	33.2	4.9	9.3	4.2	4.0
2006	134.4	78.8	1.2	33.3	4.6	8.9	3.5	4.12
2007	131.6	76.9	1.1	33.7	4.5	8.5	3.3	3.9
2008	129.6	75.8	1.1	33.0	4.5	7.6	3.5	4.1
2009	129.2	74.0	1.1	33.4	5.0	8.0	3.6	4.1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원예정책관

2. 원예·특용작물

가. 채소류

(채소특작과 농업사무관 김도범)

2009년 채소류의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4.5% 감소한 262.9천ha이었고, 생산량은 전년보다 0.5% 감소한 9,886천 톤이었다.

봄무·배추 재배면적은 28.2천ha로 전년에 비해 11.7% 감소함에 따라 생산량도 지난해에 비해 11.9% 감소한 1,308천 톤이었다. 고랭지무·배추는 재배면적이 7.6천ha로 전년대비 15.1% 감소하였고 생산량은 270천 톤으로 작황이 좋았던 전년보다 16.5% 감소하였다. 가을무·배추의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5.93% 감소한 22.2천ha이었고, 생산량은 작황이 좋아 1.3% 증가한 2,207천 톤이었다.

고추는 재배면적이 44.8천ha로 전년보다 8.2% 감소하였다. 생산량은 전년 124천 톤보다 5.0% 감소한 117천 톤이 생산되었다. 마늘은 재배면적이 26.3천ha로 전년보다 7.4% 감소하였고 생산량은 4.8% 감소한 357천 톤이 생산되었다. 양파는 전년 대비 재배면적이 20.3% 증가한 18.5천ha가 재배되었고 생산량은 32.6% 증가한 1,372천 톤이 생산되었다.

<표 1-2-4> 채소류 수급동향

(단위 : 천 톤)

구 분	1990년	1995년	2000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수요	계	8,697	10,670	11,502	10,520	10,971	10,193	10,730	10,224	10,753	10,557
	내 수	8,677	10,611	11,461	10,484	10,915	10,104	10,658	10,155	10,658	10,450
	수 출	20	59	41	36	56	89	72	69	95	107
공급	계	8,697	10,670	11,502	10,520	10,971	10,193	10,730	10,224	10,753	10,557
	생 산	8,677	10,586	11,282	10,068	10,468	9,605	9,994	9,394	9,935	9,889
	수 입	20	84	220	452	503	588	736	830	818	668
1인당소비량(kg)	132.6	160.6	165.9	152.6	156.8	145.5	153.8	149.2	153.6	-	

주 : 1인당소비량은 농촌경제연구원 자료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원예정책관

나. 과실류

(과수화훼과 농업사무관 김기주)

과수 총재배면적은 1997년 176.1천ha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는데, 2009년은 157.1천ha로 전년에 비해 3.4천ha가 증가하였다. 과종별로는 단감 1.5천ha, 배 1.2천ha, 포도 0.2천ha가 감소하였으나, 사과 0.5천ha, 복숭아 0.4천ha, 감귤 0.2천ha, 기타 과실 등이 전년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다.

과실 생산량은 2,881천 톤으로 전년보다 183천 톤이 증가하였는데, 배와 단감은 재배면적 감소로 생산량이 줄었으나 사과와 복숭아는 성목(成木)면적 증가로 소폭 증가하였으며, 감귤은 해거리 현상으로 인해 생산량이 116.4천 톤이나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1인당 소비량은 67.7kg으로 전년에 비해 2.2kg이 증가하였다.

과실가격은 생산량 증가에 따른 공급량 증가로 전년에 비해 하락세를 보였으나, 감귤은 생산량 증가로 품질이 나쁜 감귤은 시장에 출하하지 못하도록 하는 감귤유통조절 명령을 시행하여 수급을 안정시켰다.

<표 1-2-5> 과실류 수급동향

(단위 : 천 톤)

구 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수요	내수	1,790.4	2,472.7	2,746.7	3,028.5	3,030.1	3,294.4	3,181.9	3,298.5
	수출	13.0	10.9	20.2	36.1	24.8	30.5	39.0	51.0
공급	생산	1,766.2	2,300.1	2,428.7	2,593.0	2,504.1	2,749.8	2,697.7	2,881.0
	수입	37.2	183.5	338.2	471.6	550.8	575.1	523.2	468.5
1인당 소비량(kg)		41.8	54.8	58.4	62.7	62.8	67.9	65.5	67.7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과수화훼과

다. 화훼류

(과수화훼과 농업사무관 김을수)

화훼류의 2009년도 재배면적은 6,639ha, 재배농가수는 10,685호로 2008년 대비 각각 6.1%와 7.8% 감소되었으며, 이는 택지개발 등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수용, 유류·자재비 등 생산비 증가에 따른 생산여건 악화, 실물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위축 등이 원인으로 보인다.

생산액은 2008년도 대비 3.7%가 감소한 8,640억 원으로 조사되었으며, 1인당 연간 소비액은 약 17천 원으로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다.

수출은 1990년대 시설투자와 노후화된 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생산기반 조성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신상품 개발 및 선도 조직을 통한 안정적 물량 공급 등으로 주 수출시장인 일본으로의 주요 절화품목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2009년도 수출은 전년보다 1.3% 증가한 77,179천 달러를 기록하였다.

반면, 수입금액은 지속적인 증가세가 그치면서 전년보다 10.9% 감소된 38,107천 달러를 기록하여 2009년도 무역수지 흑자금액은 39,072천 달러로 나타났다.

<표 1-2-6> 화훼산업 현황

구 분	1990년	1995년	2000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재배농가 (호)	8,945	12,509	13,080	13,159	12,859	12,440	12,021	11,588	10,685
재배면적 (ha)	3,674	5,343	6,047	7,522	7,950	7,688	7,509	7,073	6,639
생산액 (억 원)	2,628	5,090	6,650	9,218	10,105	9,411	9,237	8,969	8,640
수출액 (천\$)	1,443	6,363	28,888	48,527	52,142	40,414	58,089	76,222	77,179
수입액 (천\$)	5,907	26,738	19,472	23,366	28,845	35,819	40,974	42,757	38,107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과수화훼과

라. 특용작물

(채소특작과 농업사무관 박윤식)

참깨 생산량은 1997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9년산 생산량은 2008년 생산 대비 34% 감소한 12.7천 톤, 2009년 자급률은 15% 수준이다.

* 생산량 : (1997) 33천 톤 → (2000) 32 → (2005) 23.5 → (2009) 12.7

참깨 수입은 연간 약 60~70천 톤 내외 수준이며 수입물량의 대부분이 시장접근물량 도입사업(추천대행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을 통해 수입되어 국내시장에 공급되고 있다.

땅콩 생산량은 1998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9년산 생산량은 2008년 대비 37% 증가한 10.2천 톤이며, 2009년 자급률은 24.3% 수준이다.

* 생산량 : (1998) 14천 톤 → (2000) 9 → (2005) 6.6 → (2009) 10.2

<표 1-2-7> 특용작물 수급동향

(단위 : 천 톤)

구 분	참 깨						땅 콩						
	1990년	1995년	2000년	2003년	2005년	2009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3년	2005년	2009년	
수 요	계	57.8	88.9	101.6	112.2	100.6	90.5	44.2	29.7	42.9	44.3	40.8	41.9
	당년소비	56.8	86.3	94.6	104.6	90.7	84.9	40.1	25.1	41.0	43.8	39.9	41.9
	수 출	0.4	-	-	-	-	-	-	2.3	0.4	-	-	-
	차년이월	0.6	2.6	7.0	7.6	9.9	5.6	4.1	2.3	1.5	0.5	0.9	0
공 급	계	57.8	88.9	101.6	112.2	100.6	90.5	44.2	29.7	42.9	44.3	40.8	41.9
	전년이월	4.7	19.0	7.5	7.2	13.1	6.5	8.1	3.3	2.7	0.0	1.1	1.0
	생 산	38.1	27.9	24.1	23.8	20.9	12.7	28.7	16.8	12.4	11.2	8.3	10.2
	수 입	15.0	42.0	70.0	81.2	66.6	71.3	7.4	9.6	27.8	33.1	31.4	30.7
자급률(%)	67	32	30	23	23	15	72	67	30	26	21	24	

주 : 생산량은 전년도 실적 적용
자료 : 농림수산물부 식량원예정책관

버섯 생산량은 소득 향상과 식품의 고급화에 따라 수요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2009년 농산버섯 생산량은 2008년 대비 3% 감소한 154.4천 톤이며, 양송이, 느타리, 팽이, 새송이버섯 등 4품목 생산량이 150천 톤으로 전체 생산량의 93.5%를 차지한다.

* 생산량 : (1997) 114천 톤 → (2000) 117 → (2005) 162 → (2009) 154

<표 1-2-8> 버섯류 수급동향

(단위 : 천 톤)

구 분	1990년	1995년	2000년	2003년	2005년	2009년	
수 요	계	58.4	103.3	126.8	157.6	174.2	165.8
	당년소비	55.4	103.2	126.6	157.3	173.7	149.6
	수 출	3.0	0.1	0.2	0.3	0.5	16.2
	차년이월	-	-	-	-	-	-
공 급	계	58.4	103.3	126.8	157.6	174.2	165.8
	전년이월	-	-	-	-	-	-
	생 산	55.3	95.8	117.6	145.3	162.1	154.4
	수 입	3.1	7.5	9.2	12.3	12.1	11.4
자급률(%)	100	93	93	92	93	103	

주 : 생산량은 전년도 실적 적용

수출은 팽이, 새송이버섯의 생산기술 향상에 의한 가격·품질경쟁력이 높아지면서 2006년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09년 수출액은 2008년 대비 42% 상승한 33,038천 불이다.

* 수출액 : (2000) 5,562천 불 → (2008) 23,185 → (2009) 33,038

<표 1-2-9> 버섯종류별 수출액

(단위 : 천 불)

구 분	'95년	'06	'07	'08	'09
수출액(천 불)	1,226	4,166	8,633	23,185	33,038
팽 이	-	1,747	3,449	11,259	21,276
영 지	383	291	383	508	463
양 송 이	36	17	48	118	51
느 타 리	-	140	693	1,347	6,494
기 타	807	2,535	4,060	9,952	4,754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원에정책관

마. 인삼류

(채소특작과 사무관 김영만)

고려인삼은 우리민족 고유의 특산품으로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요 수출 상품이며, 우리나라의 인삼 가공기술은 세계 선두로서 해외에서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인삼의 재배면적은 1990년 이후 계속 감소 추세였으나, 1996년 홍삼전매제 폐지 이후 '97년부터 증가세로 반전되었으며 2009년 인삼 전체 재배면적은 2008년에 비해 1.5% 증가한 19,702ha이다.

인삼재배 농가 수는 2009년 23,285호로 전체농가의 1.6%에 불과하나, 2009년도 인삼수출액은 108,916천 불로서 전체 농축산물 수출의 3.3%를 차지하여, 인삼은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전략 품목으로 자리 잡고 있다.

<표 1-2-10> 인삼 생산동향

구 분	1990년	1995년	1996년	2000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면 적	12,184ha	9,375	8,940	12,445	14,153	16,405	17,831	19,408	19,702
생 산 량	13,889톤	11,971	10,147	13,664	14,561	19,850	21,818	24,613	27,460
농 가 수	36,404호	23,172	23,304	23,011	15,793	15,856	19,850	24,298	23,285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원에정책관

인삼의 생산동향을 살펴볼때 '96년 이후 생산량이 늘어나는 추세로 향후 인삼 생산량은 27~30천 톤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3. 축산물과 사료작물

가. 축산물

(축산경영과 서기관 이흥철, 사무관 변동주·우만수)

1) 쇠고기

쇠고기 소비량은 2003년 말에 발생한 미국과 캐나다의 광우병 여파와 국내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2004년과 2005년에 감소세를 보이다가 2006년 이후 증가세로 전환되어, 2009년도 국내 소비량은 전년보다 8.3% 증가한 396천 톤이었다.

2009년도 소비량 중 수입산은 198천 톤으로 전년보다 3.4% 증가하였고, 국내산은 198천 톤으로 13.8% 증가하였다. 한편, 연간 1인당 쇠고기 소비량 또한 8.1kg으로 전년보다 8.0% 증가하였다.

<표 1-2-11> 쇠고기 수급동향

(단위 : 천 톤)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 총 소비량	403	390	328	317	330	369	365	396
- 국내산	147	142	145	152	158	171	173	198
- 수입산	255	248	183	164	172	198	191	198
○ 1인당 소비량(kg)	8.5	8.1	6.8	6.7	6.8	7.6	7.5	8.1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산지 소 값은 2003년 12월 미국과 캐나다의 광우병 발생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2004년 5월 350만 원(큰 수소 기준)까지 하락하였다가 쇠고기 소비촉진 홍보 등 산지 소 값 안정대책의 추진으로 소비가 회복되면서 2005년 465만 원, 2006년 425만 원, 2007년 475만 원대로 보합세를 유지하였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한미 FTA협상 체결에 따른 여파로 2008년 8월 344만 원까지 하락하였으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08.7월) 및 쇠고기이력제 전면 시행('09.6월), 한우산업발전대책('08.12월) 추진 등으로 소비가 회복되면서 2009년 12월에는 579만 원까지 상승하였다.

소 사육두수는 산지 소 값이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2003년 3월 이후 증가세로 전환되어 2004년에는 1,666천두, 2005년에는 1,819천두, 2006년에는 2,020천두, 2007년에는 2,201천두, 2008년에는 2,430천두로 매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09년도 사육두수는 2,635천두로 전년보다 8.4% 증가하였다.

한편, 한육우 사육 가구수는 2007년 12월 184천호, 2008년 12월 181천호에서 2009년 12월 175천호로 3.3% 감소하였으며, 가구당 평균 사육두수는 2007년 12월 11.9두, 2008년 12월 13.4두에서 2009년 12월 15.1두로 규모화가 진전되고 있다. 이러한 사육두수 증가는 가임 암소 수 증가, 정액공급량 증가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 돼지고기

돼지고기의 2009년 총 소비량은 2008년 927천 톤보다 0.5% 증가한 932천 톤이며, 1인당 소비량은 2008년 19.1kg에서 2009년 19.1kg으로 비슷하게 소비되었다.

한편 돼지 사육두수는 축사시설 현대화 및 서코백신 지원으로 생산성이 향상되어 2008년 12월 9,087천두에서 2009년 12월에는 9,585천두로 5.5% 증가하였고, 2009년 12월 모돈 수는 966천두로 2008년 12월 913천두보다 5.8% 증가하였다.

사육 가구수는 2008년 12월 7.7천 가구에서 2009년 12월 8.0천두 가구로 3.7% 증가하였으며, 가구당 평균 사육두수가 2008년 12월 1,183두에서 2009년 12월 1,203두로 증가하여 규모화 및 전업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산지 돼지가격은 2008년 연간 평균가격이 303천 원/110kg이었으나 2009년은 국내산 선호도 증가와 원산지 표시 강화 등으로 332천 원/110kg으로 크게 상승하였다.

3) 닭고기

08년 AI 발생 이후 소비회복 및 2008년 말 음식점원산지 표시제 도입 이후 국산 닭고기 수요 증가 등으로 2009년 닭고기 총 소비량은 46.9만 톤이며, 1인당 소비량은 9.6kg으로 2008년도 총 소비량 43.6만 톤, 1인당 소비량 9.0kg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닭고기 산지가격은 전년보다 23.5% 증가하여 연평균 1,936원/kg이었으며, 2009년 12월 기준 전체 사육수수는 전년보다 23.3% 증가한 67백만 수였다.

전체 사육농가의 수는 2009년 12월에 1.6천호였으며, 호당 사육수수는 43,018수였다. 30,000수 이상 전업가구 수는 2008년보다 23.3% 증가한 1,078호로 규모화·전업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4) 계란

계란의 2009년 총 소비량은 58만 톤으로 2008년보다 6.8% 증가하였고, 1인당 소비량은 6.3% 증가한 11.9kg이었으며, 산지 계란가격은 전년보다 9.7% 증가한 1,173원/10개(특란 기준)이었다.

5) 우유

2009년 원유 총 생산량은 2,110천 톤으로 2008년 2,139천 톤 대비 1.4%(29천 톤) 감소하였다.

유제품 소비량(수출포함)은 3,110천 톤(치즈, 분유 등의 수입 유제품 포함)으로 2008년 3,035천 톤 보다 2.5% 증가하였고, 시유 소비량은 2009년 1,702천 톤으로 2008년과 동일하였다.

1인당 연간 유제품 소비량은 62.3kg으로 2008년 61.3kg보다 1.6% 증가하였으나, 음용유 소비량은 34.9kg으로 전년 35.0% 보다 다소 감소하였는데, 저출산, 대체음료 개발 등으로 우유 및 유제품 소비량이 최근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

2009년도 국산원유 2,110천 톤 중 유제품 가공에 직접 투입한 양은 1,889천 톤(백색시유 1,397, 가공시유 172, 기타 유제품 320)으로서 전년도 투입량 1,856천 톤에 비해 1.8% 증가하였으며, 잉여량(분유가공량)은 전년 283천 톤에 비해 21.9% 감소한 221천 톤 수준이었다.

우유 자급률은 국내 생산 감소와 국내 소비 감소로 전년에 비해 3.2% 감소한 69.5%를 기록하였으며, 원유 생산비의 경우 배합사료 가격인상 등으로 전년 585원/L 보다 5% 높아진 614원/L로 조사되었다.

젖소 사육두수는 2009년 12월 445천두로 지난해 446천두 보다 0.2% 감소하였으며, 젖소 사육 농가수도 2008년 12월 7,000천호에서 2009년 12월 6,767호로 3.3% 감소하였다.

낙농업의 전업화로 인해 가구당 사육두수는 2009년 12월 65.7두로 2008년 12월 63.7두 보다 3.1% 증가하였다.

나. 사료작물

(축산경영과 서기관 이흥철, 사무관 변동주·우만수)

2009년 가축용 사료의 총 수급량은 24,547천 톤으로 전년(23,833천 톤) 보다 3.0%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농후사료(농가자급사료 포함)가 19,344천 톤, 조사료가 5,203천 톤을 차지하였다. 농후사료 중 배합사료의 생산은 16,665천 톤으로 전년 (16,323천 톤)보다 2.1% 증가하였다.

<표 1-2-12> 사료 수급 추이

(단위 : 천 톤, %)

구 분	1990년	1995년	2000년	2006년	2008년 (A)	2009년 (B)	증감률 (B/A)
합 계	17,116	23,302	19,289	21,271	23,833	24,547	3.0
농 후 사 료	11,173	15,700	15,897	17,049	18,779	19,344	3.0
- 배 합 사 료	10,529	14,856	15,105	15,693	16,323	16,665	2.1
- 농가자급사료	644	844	792	1,356	2,456	2,679	9.1
조 사 료	6,003	7,763	3,392	4,222	5,054	5,203	2.9
- 사료작물 및 목초류	2,832	2,498	992	1,326	1,792	2,101	17.2
- 산야초, 볏짚 등	3,171	5,265	2,400	2,896	3,262	3,102	△4.9

주 : 조사료는 건물(乾物) 상태 기준임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관실

축종별로는 양계용 4.1%, 양돈용 0.5%, 한육우용 3.5% 증가한 반면, 젖소용은 4.3% 감소하였다. 지난해에 비하여 젖소를 제외한 전 축종의 사육두수 증가 등으로 2009년도 전체 배합사료 생산량이 전년대비 2.1% 증가하였다. 기타 가축용 배합사료 생산량도 4.5% 증가하였다.

옥수수 등 사료용 원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축산업은 해외곡물가격, 해상운임 및 환율변동에 따라 국내 사료가격이 크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사료

곡물의 국제가격 변동에 따라 사료가격 변동을 흡수할 수 있는 국내기반이 취약하다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2008년 10월 이후 옥수수, 대두박 등 국제곡물가격의 안정과 해상운임(Ocean Freight)의 하락으로 인하여 배합사료가격은 2009년 6차레에 걸쳐 약 33.3% 인하되었다.

<표 1-2-13> 배합사료 용도별 생산량

(단위 : 천 톤, %)

구 분	1990년	1995년	2000년	2003년	2006년	2008년 (A)	2009년 (B)	증감률 (B/A)
합 계	10,529	14,856	15,105	15,436	15,693	16,323	16,665	2.1
양 계 용	3,274	3,766	3,867	3,907	4,267	4,286	4,463	4.1
양 돈 용	3,551	4,725	5,215	5,663	5,175	5,307	5,332	0.5
젖 소 용	1,790	2,905	1,891	1,774	1,539	1,370	1,311	△4.3
한육우용	1,667	3,681	3,340	2,926	3,574	4,165	4,310	3.5
기 타	247	589	792	1,179	1,138	1,195	1,249	4.5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관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국내 사료자원 개발을 통한 사료 자급도를 높이고 건전한 축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는 초지개발과 사료작물 재배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2009년에 신규로 147ha의 초지를 조성한 바 있다.

<표 1-2-14> 초지조성 실적

(단위 : ha, 천 톤, %)

구 분	1995년	1999년	2000년	2003년	2006년	2008년 (A)	2009년 (B)	증감률 (B/A)
신규 조성 면적	413	430	253	58	25	26	147	465
관 리 면 적	66,301	53,783	51,870	46,546	42,114	40,790	40,057	△1.8
목 초 생 산 량	462	371	364	343	294	286	280	△2.1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관실

2009년 현재 초지 총 관리면적은 40천ha으로 280천 톤(말린 무게 기준)의 목초를 생산하였고 전년보다 2.1% 감소하였다. 이는 환경문제로 인한 규제강화와 지가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신규 초지조성은 어려운 반면, 레저·관광산업용으로 전환함에 따라 관리체의 면적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하고 있다.

제2절

식품 수급동향

1. 식품소비와 식생활의 변화

(정책통계팀 사무관 김규섭)

가. 식품비 지출구조의 변화

2003~2009년간 연평균 식료품비 지출액의 증가율은 2.6%로 같은 기간 소비 지출액 증가율 3.7%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다. 식품류별로는 유지류(7.5%), 빵 및 떡류(6.7%), 과일 및 과일가공품(5.1%)이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채소 및 채소가공품(0.1%), 수산물 및 수산물가공품(1.4%)은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식료품비 지출의 식품별 비중을 보면 외식비가 2009년 47.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육류 및 육류가공품(8.9%), 곡류 및 곡류가공품(6.3%)의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반면, 유지류(0.5%), 해조 및 해조가공품(0.7%), 조미식품(1.8%)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표 1-2-15> 식품류별 월평균 소비 지출액 추이(도시가구평균)

(단위 : 천 원, %)

연도	소비 지출	식료품	곡류 및 곡물가공품	빵 및 떡류	육류 및 육류가공품	수산물 및 수산물가공품	유제품 및 알	유지류	과일 및 과일가공품	채소 및 채소가공품	해조 및 해조가공품	당류 및 과자	조미식품	기타 식품	차, 음료, 주류	외식비
2003	1,757.1	505.5 (100)	37.8 (7.5)	12.6 (2.5)	42.0 (8.3)	31.4 (6.2)	21.9 (4.3)	1.9 (0.4)	26.8 (5.3)	31.8 (6.3)	5.8 (1.1)	16.6 (3.3)	9.4 (1.9)	7.0 (1.4)	20.7 (4.1)	239.9 (47.5)
2004	1,848.7	541.3 (100)	41.4 (7.6)	12.8 (2.4)	40.9 (7.6)	32.2 (5.9)	23.2 (4.3)	2.2 (0.4)	31.2 (5.8)	32.6 (6.0)	6.0 (1.1)	17.5 (3.2)	12.1 (2.2)	6.3 (1.2)	22.1 (4.1)	260.7 (48.2)
2005	1,925.6	546.6 (100)	39.2 (7.2)	12.9 (2.4)	43.5 (8.0)	32.1 (5.9)	24.8 (4.5)	2.3 (0.4)	32.2 (5.9)	31.8 (5.8)	6.2 (1.1)	17.6 (3.2)	11.6 (2.1)	7.7 (1.4)	21.8 (4.0)	262.7 (48.1)
2006	2,000.4	552.6 (100)	36.6 (6.6)	13.7 (2.5)	45.0 (8.1)	33.4 (6.0)	24.0 (4.3)	2.4 (0.4)	33.9 (6.1)	32.9 (5.9)	6.3 (1.1)	16.4 (3.0)	11.7 (2.1)	8.5 (1.5)	22.6 (4.1)	265.2 (48.0)
2007	2,074.4	564.8 (100)	35.5 (6.3)	14.9 (2.6)	46.1 (8.2)	34.0 (6.0)	23.8 (4.2)	2.3 (0.4)	34.1 (6.0)	33.9 (6.0)	6.5 (1.2)	16.7 (3.0)	10.2 (1.8)	8.8 (1.6)	22.7 (4.0)	275.3 (48.7)
2008	2,183.3	606.1 (100)	39.3 (6.5)	17.6 (2.9)	50.6 (8.3)	35.3 (5.8)	27.0 (4.5)	2.8 (0.5)	36.4 (6.0)	33.4 (5.5)	6.9 (1.1)	18.7 (3.1)	10.9 (1.8)	9.4 (1.6)	24.8 (4.1)	293.1 (48.4)
2009	2,187.8	591.1 (100)	37.2 (6.3)	18.6 (3.1)	52.4 (8.9)	34.3 (5.8)	28.8 (4.9)	2.9 (0.5)	36.1 (6.1)	32.1 (5.4)	3.9 (0.7)	19.8 (3.4)	10.9 (1.8)	9.0 (1.5)	24.4 (4.1)	280.8 (47.5)
03-09	3.7	2.6	-0.2	6.7	3.8	1.4	4.6	7.5	5.1	0.1	-6.4	3.0	2.5	4.1	2.8	2.7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나. 소득계층별 소비 지출액 비교

2009년의 경우 소득계층별로 소비 지출액을 비교하면,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지출액은 대부분 증가추세를 보이는데 식품류에 따라 증가정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간소득계층(3분위) 근로자가구를 기준으로 할 경우 소득 증가에 따른 지출액 증가정도가 큰 품목은 외식, 빵 및 떡류, 과일 및 과일가공품, 육류 및 육류가공품, 차·음료·주류, 기타식품, 당류 및 과자 등으로 나타났다. 소득 증가에 따른 지출액 증가정도가 작은 품목은 조미식품, 곡물 및 곡물가공품, 채소 및 채소가공품 등이다.

<표 1-2-16> 소득계층별 소비 지출액 비교(2009년도 도시가구평균)

(단위 : 천 원)

구 분	1·2분위		3분위		4·5분위	
	액	비율	액	비율	액	비율
소 비 지 출	1,388	(66.7)	2,082	(100)	3,041	(146.1)
식 료 품	417	(69.9)	597	(100)	762	(127.6)
곡류 및 곡류가공품	35	(94.9)	37	(100)	39	(106.0)
빵 및 떡류	13	(68.1)	19	(100)	25	(132.5)
육류 및 육류가공품	40	(76.5)	52	(100)	66	(126.7)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29	(87.6)	33	(100)	40	(118.7)
유 제 품 및 알	22	(73.4)	30	(100)	35	(119.2)
유 지 류	2	(83.4)	3	(100)	3	(115.9)
과일 및 과일가공품	26	(72.2)	36	(100)	47	(131.2)
채소 및 채소가공품	30	(95.9)	32	(100)	34	(108.3)
해조 및 해조가공품	3	(81.3)	4	(100)	5	(113.5)
당 류 및 과 자	14	(68.9)	21	(100)	25	(117.5)
조 미 식 품	11	(101.9)	10	(100)	11	(107.5)
기 타 식 품	7	(74.9)	9	(100)	11	(123.6)
차 · 음 료 · 주 류	18	(74.7)	25	(100)	30	(123.7)
외 식 비	167	(58.2)	287	(100)	391	(136.1)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다. 식품영양소 수요구조의 변화

식품 소비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식품영양소의 수요구조도 변화한다. 영양소별로 1인 1일당 에너지는 대체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지방과 비타민C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8년을 기준으로 섭취량은 에너지 1,838kcal, 단백질 65.8g, 지방 38.8g, 철 12.9mg, 비타민C 96.3mg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17> 1인 1일당(전국평균) 식품영양소별 섭취량 추이

	에너지 kcal	단백질 g	지방 g	칼슘 mg	철 mg	비타민A (IU/R.E)	티아민 mg	리보플라빈 mg	나이아신 mg	비타민C mg
1985	1,936	74.5	29.5	569	15.6	1,846	1.34	1.21	25.7	64.7
1990	1,868	78.9	28.9	517	22.7	1,662	1.15	1.27	21.6	81.2
1991	1,930	73.0	35.6	518	23.0	550	1.27	1.24	17.5	92.2
1992	1,875	74.2	34.5	538	22.9	535	1.22	1.22	17.4	102.5
1993	1,848	72.6	36.9	523	22.4	440	1.37	1.11	16.5	92.6
1994	1,770	71.9	35.9	556	22.0	411	1.12	1.19	16.6	93.5
1995	1,839	73.3	38.5	531	21.9	443	1.16	1.20	16.7	98.3
1998	1,985	74.2	41.5	511	12.5	625	1.35	1.09	15.7	123.1
2001	1,976	71.6	41.6	497	12.2	624	1.27	1.13	16.9	132.6
2005	2,016	75.8	46.0	553	13.6	782	1.30	1.20	17.1	98.2
2007	1,810	65.4	37.7	462	12.9	711	1.24	1.05	14.7	92.8
2008	1,838	65.8	38.8	476	12.9	721	1.22	1.11	14.9	96.3

주 : 1) 1991년부터 비타민A의 단위는 RE

2) 1998년도에는 식품성분표 제5개정판(농촌진흥청 농촌생활연구소, 1996)을 이용함에 따라 쌀의 철 함량이 3.7mg/100g에서 0.5mg/100g으로 하향 조정된 수치를 적용하여 환산함

3) 1995년 이전에는 가구별 칭량법, 1998년도는 개인별 24시간 회상법에 의해 실시된 결과임

4) 2001년도는 식품성분표 제6개정판(농촌진흥청 농촌생활연구소, 2001)을 이용함

5) 2007년도는 식품성분표 제7개정판(농촌진흥청 농촌생활연구소, 2006)을 이용하였음

6) 2005년도는 새로 설정된 한국인 영양섭취기준(한국영양학회, 2005)에 근거함

자료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2009.

평균 영양소 섭취량을 2005년 11월 개정된 한국인 영양섭취기준(한국영양학회)과 비교한 결과, 대부분 해당 영양소의 권장섭취수준과 유사했으나 칼슘섭취량은 권장량의 65.4%로 매우 낮았다. 철의 경우 1995년까지 권장량을 초과하다가 1998년 미달수준을 보이게 된 것은 1998년 식품성분표상에 쌀의 철 함량이 하향 조정된 데 기인한

다. 단백질(143.8%), 철(119.4), 티아민(113.1%),비타민A(110.9%), 나이아신(104.1%)은 섭취기준을 다소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에너지는 89.0%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표 1-2-18> 영양소별 영양섭취 기준에 대한 섭취비율의 변화 추이

(단위 : %)

연도 영양소	1983	1985	1987	1989	1991	1993	1995	1998	2001	2005	2007	2008
에 너 지	90.4	91.1	87.7	87.5	93.1	90.0	88.6	94.5	94.8	98.4	87.5	89.0
단 백 질	96.9	110.4	107.7	118.2	118.1	117.9	116.7	117.8	127.0	169.0	142.9	143.8
칼 슈	69.4	93.0	78.1	76.2	82.3	84.0	75.4	72.8	71.0	76.3	63.4	65.4
철	109.4	112.0	167.7	156.7	177.3	176.0	159.5	91.9**	95.2	126.3	119.8	119.4
비타민 A	108.7	81.2	53.6	77.2	84.3	67.7	67.2	95.6	95.4	121.9	108.4	110.9
티 아 민	128.1	122.9	95.2	99.3	120.7	140.1	108.8	126.3	119.8	122.3	114.4	113.1
리보플라빈	82.0	93.8	87.3	85.0	98.4	97.3	96.0	86.2	91.0	95.8	82.5	87.0
나이아신	161.1	182.1	127.8	133.5	126.7	120.6	119.8	110.8	119.4	121.5	102.6	104.1
비타민 C	141.0	125.0	98.8	119.7	175.8	175.6	185.4	234.0	197.1	106.6	99.3	103.3

- 주 : 1) 1995년까지는 가구별 칭량법, 1998년도부터는 개인별 24시간 회상법에 의해 조사된 결과임
 2) 1998년도에는 식품성분표 제5개정판(농촌진흥청 농촌생활연구소, 1996)을 이용함에 따라 쌀의 철 함량이 3.7 mg/100g에서 0.5mg/100g으로 하향 조정된 수치를 적용하여 환산하였음
 3) 2001년도는 식품성분표 제6개정판(농촌진흥청 농촌생활연구소, 2001)을 이용하였음
 4) 2007년도는 식품성분표 제7개정판(농촌진흥청 농촌생활연구소, 2006)을 이용하였음
 5) 2005년도는 새로 설정된 한국인 영양섭취기준(한국영양학회, 2005)에 근거함

자료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2009.

섭취에너지의 영양소 구성 비율은 2008년을 기준으로 당질 63.6%, 단백질 13.7%, 지방 22.7%로 나타났다. 당질의 에너지 구성 비율은 감소추세에 있으며, 단백질의 에너지 구성 비율은 1985년 이후 큰 변동이 없다. 반면 지방은 1990년대 접어들어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 식품 수요현황

(정책통계팀 사무관 김규섭)

가. 1인당 식품공급 현황

2008년 곡류는 기후조건이 양호하여 생산량이 증가하였으나 수입량 감소로 전년대비 식용공급량이 감소한 반면, 채소류는 주요 작물의 재배면적 증가와 일기호조의 영향으로 생산량이 증가하여 식용공급량이 증가하였다. 과일류는 사과, 배 등의 주요 작물을 제외하고는 가뭄과 해거리 등의 영향으로 생산량이 다소 감소하여 식용공급량이 감소하였다. 육류는 생산량은 증가하였으나 수입량이 감소하여 식용공급량이 감소하였으며, 서류는 재배면적 증가와 기후의 영향 등으로 생산량이 증가하여 식용공급량이 증가하였고, 해조류는 생산량 증가로 식용공급량이 증가하였다.

쌀 생산량이 272천 톤 감소하고 쌀 소비가 감소하는 추세이나 수입량이 12천 톤 증가하고 가공용 수요가 56천 톤 감소하여 1인당 식용공급량이 82.78kg에서 86.22kg으로 다소 증가하였다. 밀 생산량과 이입량은 각각 전년대비 3천 톤, 51천 톤 증가하고 사료용 수요가 721천 톤 감소하였으나, 수입량이 830천 톤 감소하여 1인당 식용공급량이 32.97kg에서 32.59kg으로 다소 감소하였다.

감자는 전년도 고가 형성의 영향으로 재배면적이 증가하였으며 작황 호조에 의해 생산량이 2.9천 톤 증가하고 수입량도 5천 톤 증가하여 식용공급량이 전년대비 다소 증가하였다. 고구마는 생산량이 전년대비 66.5천 톤으로 증가하여 1인당 식용공급량이 3.94kg에서 5.01kg으로 증가하였다.

채소류는 배추(368천 톤), 무(208천 톤), 마늘(27천 톤) 등의 생산량 증가에 의해 전체 생산량이 460천 톤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1인당 식용공급량이 149.9kg에서 153.6kg으로 2.5% 증가하였다. 배추는 전년도 가격호조로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작황도 호조를 보여 2008년에는 생산량이 전년대비 16.6% 증가하였다. 수입김치 공급증가와 국내 배추 생산량 증가는 식용공급량을 증가시켰다. 무의 재배면적은 전년대비 6% 증가하고 작황도 호조를 보여 생산량이 전년대비 17.4% 증가하여 식용공급량이 증가하였다.

<표 1-2-19> 품목별 1인당 연간 공급량

(단위 : kg, %)

품 목	2007(확정)	2008(잠정)	증가율(%)
곡 류	150.23	149.06	△0.78
쌀	82.78	86.22	4.16
보 리	1.01	1.09	7.92
밀	32.97	32.59	△1.15
옥 수 수	30.87	26.41	△14.45
기 타	2.60	2.76	6.15
서 류	12.90	14.10	9.30
감 자	8.96	9.08	1.34
고 구 마	3.94	5.01	27.16
설 탕 류	20.27	23.69	16.87
두 류	10.71	9.65	△9.90
콩	8.69	7.67	△11.74
팥	0.60	0.62	3.33
기 타	1.42	1.36	△4.23
견 과 류	1.46	1.38	△5.48
종 실 류	0.74	0.70	△5.41
참 깨	0.31	0.33	6.45
기 타	0.42	0.37	△11.90
채 소 류	149.90	153.60	2.47
과 실 류	45.02	43.95	△2.38
육 류	40.87	40.66	△0.51
쇠 고 기	7.36	7.27	△1.22
돼 지 고 기	18.64	18.49	△0.80
닭 고 기	6.99	7.01	0.29
부 산 물	7.87	7.90	0.38
계 란 류	9.51	9.43	△0.84
우 유 류	55.20	52.77	△4.40
우 유	54.27	51.77	△4.61
어 패 류	42.10	39.10	△7.13
어 류	26.08	24.01	△7.94
패 류	16.02	15.08	△5.87
해 조 류	14.37	15.83	10.16
유 지 류	18.20	12.32	△32.31
식 물 성	17.87	11.94	△33.18
동 물 성	0.33	0.38	15.15
주 류	74.08	76.22	2.89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8 식품수급표』, 2009.

과실의 생산량은 사과, 배 등의 주요 품목을 제외하고 가뭄과 해거리 등의 영향으로 생산량이 전년대비 527천 톤 감소하여 1인당 식용공급량이 감소하였다. 사과는 타 과수작목에 비해 수익성이 높아 재배면적이 증가하였으며 일기 상태가 양호하여 생산량이 35천 톤 증가하였다. 배는 가격하락의 영향으로 재배면적이 감소하였으나 작황호조의 영향으로 생산량이 4천 톤 증가하였다. 귤은 수익성의 감소로 인해 재배면적이 전년대비 다소 감소하였으며, 해거리의 영향으로 생산량이 전년대비 42천 톤 감소하였다. 이밖에 포도는 생산성이 낮은 과원의 폐원으로 재배면적은 감소하였으나 작황이 비교적 양호하여 생산량이 6천 톤 증가하였다.

쇠고기는 2007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잠정 중단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판단한 농가들이 입식을 늘려 사육두수가 증가하여 생산량이 2.6천 톤 증가하고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로 수입량이 21.3천 톤 증가하였으나 이월량이 32.8천 톤으로 증가하여 1인당 식용공급량이 다소 감소하였다. 돼지는 생산량이 전년대비 3.7천 톤 증가하였으나 수입량이 33.9천 톤으로 감소하여 1인당 식용공급량이 다소 감소하였다. 닭고기는 AI발생의 영향으로 인한 사육수수 증가로 생산량이 3.8천 톤 감소하였으나, 수입량과 이입량이 10.1천 톤, 0.9천 톤으로 증가하여 1인당 식용공급량이 6.99kg에서 7.01kg으로 다소 증가하였다.

어류는 2008년도 생산량이 전년대비 98.9천 톤으로 증가하였으나 수입량이 369.8천 톤 감소하여 1인당 식용공급량이 감소하였다. 패류는 생산량, 수입량, 이입량이 전년대비 134.8천 톤, 20.6천 톤, 10.5천 톤 감소하여 1인당 식용공급량이 16.02kg에서 15.08kg로 감소하였다. 해조류는 김, 다시마, 미역 등의 생산 증가로 생산량이 123.9천 톤으로 증가하여 1인당 식용공급량이 14.37kg에서 15.83kg으로 증가하였다.

식물성 유지는 생산량이 증가하였으나(4.5천 톤) 수입이 크게 감소하여(310.2천 톤) 1인당 식용공급량이 17.87kg에서 11.94kg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동물성 유지는 어유의 생산이 전년대비 1.0천 톤으로 증가하여 1인당 식용공급량이 0.33kg에서 0.38kg으로 15.2% 증가하였다.

나. 식품자급률 수준

주요 식품의 자급률 추이를 보면 곡류, 채소류, 과실류, 육류, 우유류, 어패류, 유지류 등 대부분 식품의 자급률이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곡류자급률은 1990~

2008년간 43.8%에서 28.4%, 채소류는 98.9%에서 91.0%, 과일류는 102.5%에서 84.8%, 육류는 92.9%에서 78.6%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유류는 92.8%에서 72.3%, 어패류는 121.7%에서 72.4%, 유지류는 8.0%에서 3.3%로 하락하였다.

<표 1-2-20> 연도별 자급률 추이

구 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공급 영양 자급률	칼로리	62.6	50.6	50.6	45.4	44.9	44.3	48.7
	단백질	67.8	57.2	52.8	47.0	46.3	46.9	49.5
	지 방	30.3	26.8	21.4	18.1	17.6	17.7	22.6
물량 기준 자급률	곡 류	43.8	30.0	30.8	29.4	27.8	27.4	28.4
	쌀	108.3	91.1	102.9	96.0	95.3	98.3	94.4
	두 류	24.5	11.7	8.2	10.7	14.2	11.6	9.3
	채소류	98.9	99.2	97.7	94.5	92.2	90.4	91.0
	과실류	102.5	93.2	88.7	85.6	82.7	83.5	84.8
	육 류	92.9	89.2	83.9	81.6	78.4	78.2	78.6
	쇠고기	53.6	50.8	53.2	48.1	47.8	46.4	47.6
	돼지고기	100.3	96.6	91.6	83.7	77.4	75.8	76.5
	닭고기	100.0	98.1	79.9	84.3	82.6	87.7	86.4
	계란류	100.0	99.9	100.0	99.3	99.4	99.4	99.7
	우유류	92.8	93.3	81.2	72.8	72.4	70.8	72.3
	어패류	121.7	100.4	87.7	60.0	64.0	72.3	72.4
	유지류	8.0	4.8	3.2	2.8	1.9	1.7	3.3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8 식품수급표』, 2009.

칼로리 자급률¹⁾은 1970년 79.5%, 1990년 62.6%, 2008년 48.7% 수준으로 1970년 이후 감소추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백질 자급률은 1970년 80.1%에서 2008년 49.5%로 칼로리 자급률과 비슷한 감소추세를 보인다. 반면 지방 자급률은 1980년까지만 하더라도 64.2%를 유지하던 것이 1990년 30.3% 수준으로 급속하게 감소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1980년대 후반 이후 수입자유화의 영향으로 육류

1) 1999년부터 『식품수급표』(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새로운 산정방식에 근거하여 공급영양소 자급률을 발표함. 새로운 산정방식은 1인 1일당 순식용 공급칼로리 중에서 국내산 공급칼로리의 비중으로 계산되며, 사료 자급률을 육류에서 감안한다는 특징이 있음.

및 유지류 수입이 크게 증가한 데 기인한다. 지방 자급률은 2008년 22.6% 수준이다.

다. 식품 및 영양공급량의 국제비교

우리나라 국민 1인 1년당 식품 공급량(조식품기준)은 유럽국가와 비교할 때 곡류(158.8kg), 채소류(173.9kg), 어패류(81.3kg) 등은 비교적 많은 반면, 두류(13.8kg), 과실류(55.5kg), 육류(43.4kg), 우유류(52.8kg) 등은 비교적 적다.

곡류 공급량은 조식품 기준으로 158.8kg으로서 쌀을 주식으로 하는 일본(173.4kg)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나 대만(91.1kg)에 비해서는 많은 편이며 유럽국가에 비해서도 많은 수준이다. 한편 두류의 1인 1년당 공급량은 13.8kg으로 대부분의 국가들보다 적다.

채소류의 연간 공급량은 조식품 기준으로 2008년에 173.9kg으로 대부분의 유럽국가들과 일본, 대만, 미국 등의 국가들보다 높은 수준이다. 한편 육류의 공급량은 43.4kg으로 일본, 파키스탄 보다는 많은 편이지만, 유럽국가들과 미국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계란류(11.0kg), 우유류(52.8kg)의 공급량도 미국 및 유럽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다. 어패류의 공급량은 81.3kg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편이다.

<표 1-2-21> 주요국별 1인 1년간 식품공급량 비교

(단위 : kg)

연 도	한 국	일 본	대 만	미 국	독 일	파키스탄
	2008	2005	2005	2005	2005	2005
곡 류	158.8	173.4	91.1	177.2	137.7	153.7
서 류	13.1	38.4	21.4	57.4	74.1	13.8
설탕류	14.4	119.3	24.6	173.9	205.7	224.7
두 류	13.8	73.7	26.1	86.9	63.5	54.4
채소류	173.9	130.7	113.2	125.5	133.6	29.6
과실류	55.5	58.4	138.6	122.8	135.1	31.0
육 류	43.4	34.8	78.2	93.7	77.3	15.0
계란류	11.0	18.7	18.0	14.8	11.8	2.1
어패류	81.3	64.8	31.0	23.4	14.3	1.8
우유류	52.8	75.5	21.5	256.5	308.0	151.4
유지류	0.4	0.5	24.0	1.4	2.6	0.9

주 : 1) 조식품 공급량 기준임(단, 대만은 순식품 공급량 기준임)

2) 두류에는 종실류와 견과류, 어패류에는 해조류가 포함됨

3) 설탕류에는 당료작물이 포함됨(단, 한국과 대만은 설탕)

4) 유지류에는 동물성만 포함됨(단, 대만은 식물성도 포함)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8 식품수급표』, 2009.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국민 1인 1일당 공급 에너지는 대체로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증가세가 다소 완화되고 있다. 1980년 2,485kcal에서 2000년에는 3,010kcal로 증가하여 연평균 0.6%씩 증가하였으나 2001년 이후로는 대체로 감소하여 2001년에는 3,000kcal에서 2008년도에는 2,840kcal로 감소하여 연평균 0.8%씩 감소하고 있다.

미국과 독일,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등의 유럽국가의 1인 1일당 공급 에너지는 3,400kcal 이상으로 우리나라보다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는 주로 육류와 우유류 등 축산물과 유지류의 소비량이 많은데 기인한다.

쌀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전분질 식품으로부터의 에너지 공급은 2008년 현재 에너지원의 57.2%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낮지 않다. 그러나 이 비율은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빠르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동물성식품으로부터 공급되는 에너지의 구성비는 소득 향상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도에는 16.3%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비율은 유럽 국가와 미국 등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표 1-2-22> 주요국별 1인 1일당 영양공급량 비교

연 도	한 국	일 본	대 만	미 국	독 일	파키스탄
	2008	2005	2005	2005	2005	2005
에너지(kcal)	2,840	2,837	2,955	3,690	3,584	2,422
전 분 질(%)	57.2	65.4	41.2	57.1	48.6	64.8
설 탕(%)	8.8	7.6	9.0	8.0	10.9	13.0
동 물 성(%)	16.3	20.5	21.4	27.7	32.0	17.8
유 지 류(%)	10.7	0.4	19.6	0.9	1.8	0.9
기 타(%)	7.0	6.0	8.9	6.4	6.7	3.5
1인당GNI(\$)	19,231	38,950	16,067	43,560	34,870	690

주 : 1) 한국, 대만은 순식품 공급량 기준이며, 기타국은 조식품 공급량 기준임
 2) 설탕류에는 당료작물이 포함됨(단, 한국과 대만은 설탕)
 3) 유지류에는 동물성만 포함됨(단, 대만과 한국은 식물성도 포함)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8 식품수급표』, 2009.

3. 식품산업 동향

(식품산업정책과 서기관 정병우)

가. 식품제조업

2008년 식품제조업체수(종사자 10인 이상 사업체)는 4,061개로 1999년(3,329개)보다 21.9% 증가하였고, 종사자수는 161천 명으로 1999년(155천 명) 보다 3.8% 증가하였다. 시장규모를 나타내는 출하액은 2008년 55.2조원으로 1999년 33.3조원 대비 65.7% 증가하였다.

2008년 식품제조업 1개 사업체당 출하액(출하액/사업체수)은 136억 원으로 1999년 100억 원보다는 36% 증가하였다. 한편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부가가치/종사자수)는 1.3억 원으로 1999년(0.96억 원) 대비 35.4% 증가하였고, 부가가치율(부가가치/출하액)은 2008년 37.4%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1-2-23> 식품제조업 연도별 추이

(단위 : 개, 천 명, 10억 원, 백만 원/개소, 백만 원/명, %)

	1999년	2000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사업체수(A)	3,329	3,431	3,932	4,057	4,257	4,061
○종사자수(B)	155	155	158	157	163	161
○출하액(C)	33,320.5	34,071.6	43,668.2	44,381.4	48,149.1	55,211.7
※업체당 출하액(C/A)	10,009.2	9,930.5	11,105.8	10,939.5	11,310.6	13,595.6
※1인당 부가가치	96.3	97.1	112.9	113.1	119.5	128.3
※부가가치율	44.8	44.2	40.9	40.0	40.4	37.4

자료 : 통계청 제조업통계조사 '음식료품 제조업'(종사자 10인 이상 사업체 대상)
 1인당 부가가치 = 부가가치 / 종사자수, 부가가치율 = 부가가치 / 출하액 × 100

식품제조업 내 세부업종별 현황을 보면 기타 식품제조업의 출하액이 14.4조원(전체 식품제조업의 26.1%), 사업체수 1,372개(33.8%)로 전체 식품 제조업 중 가장 큰 비중을 나타냈다. 또한, 2008년 음료 제조업 규모는 사업체수 260개(6.4%), 출하액 8.1조원(14.6%) 수준을 보였다.

2007년 품목별 식품제조업체 구분을 보면 사업체수가 가장 많은 업체는 기타 육류 가공 및 처리업(288개), 과일 및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281개),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279개),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215개) 순서이고, 출하액이 가장 많은 업체는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7.9조원), 액상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4.5조원), 도축업(3.7조원) 순서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구분해 보면 전국 식품제조업체 중 24.1%가 경기지역(977개)에 분포되어 있고, 다음으로 충남(393개, 18.2%)지역에 사업체수가 많이 있었다. 출하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14.4조원), 충남(6.5조원) 순서이며, 업체당 출하액은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데(최고: 인천 274.2 원, 전남: 58.2억 원), 이는 지역에 분포된 주요 업종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표 1-2-24> 업종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출하액(2008)

(단위: 개, 명, 백만 원)

	사업체수	종사자수	출하액	비중(%)
□ 식품 제조업	4,061	160,584	55,211,670	100.0
○ 식료품 제조업	3,801	147,636	47,153,673	85.4
- 도축, 육류 가공·저장처리업	585	25,610	7,346,040	13.3
- 수산물 가공·저장처리업	790	22,481	3,073,177	5.6
- 과일·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	423	13,484	1,835,904	3.3
-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65	2,470	2,459,571	4.5
- 낙농제품, 식용빙과류 제조업	103	9,530	5,850,301	10.6
- 곡물 가공품, 전분·전분제품 제조업	248	7,198	4,268,484	7.7
- 기타 식품 제조업	1,372	59,303	14,428,019	26.1
- 동물성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215	7,560	7,892,177	14.3
○ 음료 제조업	260	12,948	8,057,997	14.6
- 알콜 음료 제조업	93	6,478	4,570,749	8.3
- 비알콜 음료, 얼음 제조업	167	6,470	3,487,248	6.3

자료: 통계청 제조업통계조사 '음식료품 제조업'(종사자 10인 이상 사업체 대상)

2008년 종사자 10인 이상 식품제조업체 중 종사자 50인 미만 사업체수가 전체의 81.5%이고 1999년 이후 79% 수준에서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며, 식품제조업체 중 대

기업(종사자 300인 이상)의 비중은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1999년 : 642개소 → 2008년 : 710개소). 또한, 식품제조업체의 81.5%에 달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의 종사자수 비중은 전체의 41.4%, 출하액 비중은 27.5%에 불과해 영세한 업체가 많이 있음을 보여준다.

2008년 종사자 10인 이상 식품제조업체 중 출하액이 10억 원 미만인 사업체는 전체의 22.9%이고, 10억 원에서 1,000억 원 사이의 업체는 73.9%, 1,000억 원 이상인 업체는 3.2%에 그쳤다.

<표 1-2-25> 규모별 추이

(단위 : 개, %)

	1999년	2000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 업체수	3,329	3,431	3,932	4,507	4,257	4,061
○종사자규모별						
- 50인 미만	79.0	79.5	82.0	82.4	82.6	81.5
- 50~300인	19.3	18.9	16.9	16.6	16.4	17.5
- 300인 이상	1.7	1.6	1.1	1.0	0.9	1.0
○출하액규모별						
- 10억 원 미만	41.7	39.1	29.3	24.8	26.9	22.9
- 10~100억 원	43.9	45.6	53.3	55.9	55.1	56.6
- 100~1,000억 원	12.3	13.1	14.9	15.2	15.6	17.3
- 1,000억 원 이상	2.1	2.1	2.5	2.2	2.3	3.2

자료 : 통계청 제조업통계조사 '음식료품 제조업'(종사자 10인 이상 대상)

나. 외식산업

2008년 외식산업 사업체수는 57만 7천개로 지난 10년간 55만개 수준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종사자수는 1,578천 명으로 1997년 1,279천 명보다는 23.43% 증가하였고, 2008년 외식산업의 매출액은 64.7조원으로 1997년 30.2조원에 비해 114.2% 증가하여 큰 증가세를 보였다.

외식산업 1개 사업체당 매출액(매출액/사업체수)은 2008년 112.2백만 원으로 1997년 54.9백만 원에 비해 104.4% 증가하였고, 종사자 1인당 매출액(매출액/종사자수)은 2008년 41.0백만 원으로 1997년 23.6백만 원에 비해 73.7% 증가하였다. 2008년 외

식산업 건물 연면적(m²)당 매출액(매출액/건물연면적)은 1,105.0천 원으로 1997년 636.8천 원에 비해 73.5% 증가하였다.

<표 1-2-26> 외식산업 연도별 추이

(단위 : 천개, 천 명, 10억 원, 백만 원/개소, 백만 원/명, 천 원/m²)

	1997년	2000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 사업체수(A)	550.5	570.6	531.9	546.5	577.3	577.0
○ 종사자수(B)	1,279	1,430	1,445	1,450	1,567	1,578
○ 매출액(C)	30,229.9	35,472.2	46,252.5	50,892.3	56,365.4	64,711.9
※ 업체당 매출액(C/A)	54.9	62.2	87.0	93.1	97.6	112.2
※ 1인당 매출액(C/B)	23.6	24.8	32.0	35.1	36.0	41.0
※ 건물 연면적(m ²)당 매출액	636.8	780.3	936.1	954.5	993.1	1,105.0

자료 : 통계청 도소매업통계조사 '음식점업'

업종별 내역을 보면 한식당 사업체수가 279.7천개, 매출액은 32조원으로 전체 음식점업 사업체 및 매출액의 48.7%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업체당 매출액은 기관구내식당, 일식, 서양식이 다른 업종에 비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구분을 보면 경기(111.1천개)와 서울(106.9천개) 지역에 전국 음식점업 사업체 중 37.7%가 분포하고 있고, 종사자수 및 매출액도 서울과 경기지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당 매출액은 서울(1.8억 원), 경기(1.3억 원), 인천(1.1억 원), 대전(1.0), 부산(1.0), 제주(1.0)지역이 1억 원 이상이고, 울산(76.9백만 원), 강원(74.4백만 원), 전남(74.1백만 원), 경북(62.5백만 원) 지역이 8천만 원 미만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였다.

2008년 전국 음식점업체 중 종사자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수는 89.8%이고, 지난 10년간 90%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한편, 종사자 1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는 2%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사업체수의 89.8%에 달하는 5인 미만 소규모 음식점업체의 종사자 비중은 전체의 74.2%, 매출액 비중은 57.8% 수준인 반면, 사업체 중 1.9%에 해당하는 10인 이상 대규모 음식점업체는 매출액 비중이 19.7%로 나타났다.

2008년 매출액이 1억 원 미만인 사업체는 전체의 70.5%로 1997년 90.2%에 비해 19.7%p 감소하였고, 매출액이 1억 원에서 10억 원 사이인 업체는 전체의 28.5%이고 1997년 9.7%에 비해 18.8% 증가하였다.

<표 1-2-27> 업종별 사업체수 및 매출액(2008)

(단위 : 개, 10억 원, 백만 원/개소)

	사업체수 (A)	매출액 (B)	업체당매출액 (B/A)
음식점 및 주점업	576,990	64,711.9	112.2
□ 음식점업	420,708	51,941.9	123.5
○ 일반음식점업	317,077	38,887.0	122.6
- 한식	279,702	31,538.8	112.8
- 중식	21,771	2,688.9	123.5
- 일식	6,022	1,948.6	323.6
- 서양식	8,856	2,541.6	287.0
- 기타 외국식	726	169.0	232.8
○ 기관구내식당업	4,309	2,741.4	636.2
○ 출장 및 이동음식점업	473	135.1	285.6
○ 기타 음식점업	98,849	10,178.5	103.0
- 제과점업	12,513	2,410.9	192.7
-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음식점업	11,799	2,088.6	177.0
- 치킨 전문점	24,906	1,924.3	77.3
- 분식 및 김밥 전문점	45,701	2,802.4	61.3
- 그 외 기타 음식점업	3,930	952.3	242.3
□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	156,282	12,770.0	81.7
○ 주점업	130,003	10,847.2	83.4
○ 비알콜 음료점업	26,279	1,922.8	73.2

자료 : 통계청 도소매업통계조사 '음식점업'

<표 1-2-28> 규모별 추이

(단위 : 천개, %)

	1997년	2000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 업체수	550.5	570.6	531.9	546.5	550.8	577.0
○ 종사자규모별						
- 5인 미만	92.0	95.3	89.6	90.4	89.9	89.8
- 5~10인	7.0	3.9	8.5	7.9	8.2	8.2
- 10인 이상	1.0	0.8	2.0	1.8	1.9	1.9
○ 매출액규모별						
- 100백만 원 이상	90.2	86.2	79.1	75.0	71.3	70.5
- 100~1,000백만 원	9.7	13.7	20.4	24.3	27.9	28.5
- 1,000백만 원 이상	0.1	0.1	0.5	0.7	0.7	1.0

자료 : 통계청 도소매업통계조사 '음식점업'

제3절

농식품 교역동향

1. 농식품 수출입동향

(식품산업진흥과 사무관 김상진)

가. 수출동향

2009년도에는 상반기 글로벌 경제위기의 본격화에 따른 세계 교역량 감소, 고유가 지속 등으로 수출 여건이 악화되었으나, 식품의 글로벌화 및 웰빙 건강식품의 인식 확산, 하반기 해외수요 회복, 정부와 수출업체의 적극적인 수출확대 노력으로 농식품 수출이 전년보다 7.0% 증가한 4,809.3백만 불을 기록하였다.

부류별 수출동향을 보면, 신선 농식품은 버섯, 가금육류, 과일류 등 대부분의 부류에서 수출이 증가하였으며, 김치, 인삼 등 국가 대표 품목의 수출이 전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호조세를 보여 전년 보다 9.5% 늘어난 739.3백만 불 수출을 기록하였다.

<표 1-2-29> 농식품 수출실적

(단위 : 천 톤, 백만 불,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증감률 (B/A)
		물 량	금액(A)	물 량	금액(B)	
농림수산식품	3,759	2,211.2	4,496.5	2,634.3	4,809.3	7.0
○ 농 식 품	2,532	1,625.9	3,048.2	1,982.1	3,298.1	8.2
(신선농식품)	(597)	(252.5)	(675.0)	(309.2)	(739.3)	(9.5)
(가공농식품)	(1,935)	(1,373.4)	(2,373.2)	(1,672.9)	(2,558.8)	(7.8)
- 농 산 물	2,222	1,450.3	2,714.6	1,753.7	2,990.8	10.2
- 축 산 물	182	98.3	215.1	59.7	139.6	△35.1
- 임 산 물	128	77.3	118.5	168.7	167.7	4.3
○ 수산식품	1,227	585.3	1,448.3	652.2	1,511.2	4.3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 aT, 2009년도 농림수산식품 수출입동향 및 통계

가공농식품은 상반기 대부분의 품목에서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수출이 감소하였으나, 하반기 경기회복에 따라 면류, 주류, 연초류의 수출이 증가하여 전년보다 7.8% 증가한 2,558.8백만 불 수출을 달성하였다.

수산식품은 해조류, 갑각류의 수출이 부진하였으나, 참치, 넙치, 전복, 고등어, 바지락 등 주요 품목의 수출 호조로 전년보다 4.3% 증가한 1,511.2백만 불을 수출하였다.

주요 국가별 수출 동향을 보면, 일본 수출은 과실류와 버섯류의 수출이 부진하였으나, 환율상승 및 중국산 식품의 안전성 문제 대두, 제주도산 돈육 수출 재개 등으로 대부분의 품목이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이 중 화훼류, 인삼류, 돼지고기 등의 증가가 현저하여 전년대비 9.9% 증가한 1,580.4백만 불 수출을 달성하였다.

미국은 경제 침체의 장기화에 따른 소비 부진과 이로 인한 현지 시장의 가격인하 경쟁 심화 및 환율 하락 등으로 물량은 전년 대비 11.1% 증가하였으나, 금액은 전년 대비 4.0% 증가한 467.3백만 불을 수출하였다.

중국은 양란, 오징어 등이 감소하였으나, 자당, 버섯류, 신선우유 등의 품목에서 호조를 보이며 전년 대비 4.8% 증가한 565.2백만 불 수출을 달성하였다.

홍콩은 광둥성 지역의 경기 부진으로 인한 선물용품 거래 감소로 인해 인삼류, 화훼류 수출이 감소하였으나, 채소류, 버섯류를 비롯한 신선농식품 및 가공식품의 수요 증가와 적극적인 판촉활동으로 전년 대비 13.9% 증가한 196.2백만 불을 수출하였다.

대만은 태풍 모라곶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로 과일과 채소 수요 증가, 인삼공사의 법인 설립 및 매장 증설 등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전년대비 23.2% 증가한 154.8백만 불 수출을 달성하였다.

러시아는 2009년 GDP 성장률이 -9.1%를 기록하는 등 세계 경제 침체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연초 루블화 평가 절하 등 지속된 경제 침체로 한국 식품을 포함한 대외교역량이 급감하여 전년대비 22.9% 감소한 226.3백만 불 수출에 그쳤다.

아세안은 당류, 커피류, 라면 등이 감소하였으나, 과채류, 가금육, 조제분유, 참치, 오징어, 고등어, 과자류, 닭고기 등의 수출호조로 전년대비 15.5% 증가한 521.1백만 불을 수출하였다.

EU는 그 동안 대폭 증가된 화훼류 및 버섯류 수출이 하락한 반면, 가공식품의 수출 신장으로 전년대비 5.5% 증가한 259.1백만 불 수출을 달성하였다.

<표 1-2-30> 국가별 농식품 수출실적

(단위 : 천 톤, 백만 불, %)

구 분	2008년(A)		2009년(B)		증감률(B/A)		점유율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합 계	2,211.2	4,496.5	2,634.3	4,809.3	19.1	7.0	100.0
일 본	573.9	1,438.4	687.5	1,580.4	19.8	9.9	32.9
중 국	376.1	539.4	414.8	565.2	10.3	4.8	11.8
미 국	158.0	449.2	175.5	467.3	11.1	4.0	9.7
러시아	122.6	293.4	100.8	226.3	△17.7	△22.9	4.7
홍 콩	169.3	172.3	177.5	196.2	4.8	13.9	4.1
대 만	66.3	125.7	86.4	154.8	30.4	23.2	3.2
아세안	331.4	451.3	486.9	521.1	46.9	15.5	10.8
E U	116.6	245.6	133.2	259.1	14.2	5.5	5.4
기 타	297.0	781.2	371.7	838.9	25.1	7.4	17.4

자료 : 농림수산물부 & aT, 2009년도 농림수산물 수출입동향 및 통계

나. 수입동향

2009년도 농식품 수입은 전반적인 국제 곡물가 하락, 경기 침체에 따른 국내 수요 둔화 및 주수입국인 중국 위안화 강세 등에 따른 채소류의 수입 감소로 전년 대비 8.4% 감소한 21,241백만 불이 수입되었다.

부류별 수입동향을 보면 과실류는 오렌지, 파인애플, 망고 등 열대과일 수입 감소로 전년 대비 13.1% 감소한 717.0백만 불이 수입되었다.

곡류는 전반적인 국제 곡물가 하락 및 옥수수, 보리 등의 수입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32.9% 감소한 3,005.8백만 불이 수입되었고, 채소류는 김치, 채소종자, 토마토 등 전반적인 수입 감소로 전년 대비 15.7% 감소한 490.6백만 불이 수입되었다.

축산물은 돼지고기 수입 감소, 쇠고기 및 낙농품의 수입 단가 하락 등으로 전년 대비 25.9% 감소한 2,485백만 불이 수입되었고, 임산물은 전년 대비 43.4% 증가한 4,108백만 불, 수산물은 6.0% 감소한 2,894백만 불이 수입되었다.

<표 1-2-31> 농식품 수입실적

(단위 : 천 톤, 백만 불, %)

구 분	2008년(A)		2009년(B)		증감률(B/A)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합 계	41,751.8	23,198.6	43,519.0	21,240.9	4.2	△8.4
곡 류	12,324.5	4,477.4	11,730.7	3,005.8	△4.8	△32.9
박 류	5,319.6	1,603.2	4,715.9	1,243.1	△11.3	△22.5
두 류	1,414.4	854.6	1,169.6	645.0	△17.3	△24.5
채소류	817.7	581.8	668.2	490.6	△18.3	△15.7
과실류	738.5	825.5	654.7	717.0	△11.3	△13.1
화훼류	7.5	42.8	9.1	38.1	21.3	△11.0
인삼류	0.2	5.0	0.2	3.1	-	△38.0
육류(포유가축)	576.6	1,942.0	557.1	1,588.5	△3.4	△18.2
어 류	749.6	1,735.8	762.6	1,567.4	1.7	△9.7
감각류	111.4	520.3	106.2	478.3	△4.7	△8.1
주 류	351.6	670.3	297.1	509.9	△15.5	△23.9
커피류	110.9	336.3	106.1	312.3	△4.3	△7.1
연초류	68.2	313.5	64.8	346.6	△5.0	10.6
기 타	19,161.1	9,290.1	22,676.7	10,295.2	18.3	10.8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 aT, 2009년도 농림수산식품 수출입동향 및 통계

<표 1-2-32> 국가별 농식품 수입실적

(단위 : 천 톤, 백만 불, %)

구 분	2008년(A)		2009년(B)		증감률(B/A)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합 계	41,751.8	23,198.6	43,519.0	21,240.9	4.2	△8.4
미 국	13,850.1	6,401.0	10,895.2	4,590.9	△21.3	△28.3
중 국	4,910.1	3,627.1	6,834.5	3,676.0	39.2	1.3
호 주	4,794.3	1,920.9	4,832.9	1,703.1	0.8	△11.3
브라질	1,489.9	950.6	2,983.9	1,471.1	100.3	54.8
캐나다	770.0	587.0	1,277.0	749.1	65.8	27.6
뉴질랜드	2,796.7	863.6	2,592.4	658.9	△7.3	△23.7
칠 레	248.5	316.3	723.2	580.9	191.0	83.7
ASEAN	6,336.7	3,111.6	5,823.4	2,758.1	△8.1	△11.4
E U	839.7	2,041.9	1,096.4	1,713.1	30.6	△16.1
기타국가	5,715.8	3,378.6	6,460.1	3,339.7	13.0	△1.2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 aT, 2009년도 농림수산식품 수출입동향 및 통계

주요 국가별 수입동향을 보면, 미국은 옥수수, 밀, 대두 등 곡물류 수입 감소로 전년 대비 28.3% 감소한 4,590.9백만 불이 수입되었고, 중국은 농산물, 수산물 수입은 감소하였으나, 성형 목재·열대산 단판 등 임산물 수입 증가로 전년 대비 1.3% 증가한 3,676.0백만 불이 수입되었으며, 호주는 쇠고기, 원목 수입 감소 및 밀·보리 등 곡류 수입단가 하락 등으로 전년 대비 11.3% 감소한 1,703.1백만 불이 수입되었다.

2. 농식품 남북교역동향

(다자협상협력과 주무관 박홍진)

가. 농식품 교역규모

2009년도 남북한 교역실적은 1,679.1백만 달러로 전년도 1,820.4백만 달러에 비해 7.8% 감소하였다. 이 중 농식품 교역실적은 238.1백만 달러로 전년대비 17.4%가 감소하였으며, 전체 남북교역규모 1,679.1백만 달러의 14.2%를 차지하였다.

<표 1-2-33> 남북교역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구 분	연도별 교역실적		
	2008년	2009년	증감률(%)
전 체	1,820.4	1,679.1	△7.8
농 식 품	288.3	238.1	△17.4

자료 : 남북교류협력 동향(통일부)

나. 농식품 교역동향

1) 반출입 통관실적 총괄

2009년도 농식품의 대북 반출입 실적을 살펴보면, 반출은 36.1백만 달러로서 전년도 80.4백만 달러보다 55% 감소하였고, 반입은 202.0백만 달러로서 전년도 207.9백만 달러 보다 2.8% 감소하였다.

2) 주요 품목별 반출입 실적

가) 반출실적

농식품 반출 총품목수는 127개 품목이며, 이중 농축산물은 감자, 밀가루, 대두유, 곡류가공품 등이고 임산물은 합판, 수목류 등이며, 수산물은 건조수산물 및 기타수산물가공품 등을 포함한다. 남북교역 경색으로 지난해에도 반출액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표 1-2-34> 주요 품목별 반출실적

(단위 : 톤, 천달러)

품 명	2008년(A)		2009년(B)		증감률(B/A, %)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합 계	64,302	80,362	30,328	36,143	△52.8	△55.0
비 료	4,174	2,123	880	420	△78.9	△80.2
쌀	329	646	381	491	15.8	△30.0
감 자	1,351	2,917	1,069	1,978	△20.9	△32.2
밀 가 루	6,026	4,439	1,996	1,374	△66.9	△69.0
마 늘	9,991	15,443	9,424	8,955	△5.7	△42.0
대 두 유	7,252	11,826	4,860	5,162	△33.0	△56.3
곡 류 가 공 품	759	652	1,036	2,321	36.5	255.9
빵	682	1,706	356	1,264	△47.8	△25.9
면 류	844	3,128	562	1,228	△33.4	△60.7
기타농산가공품	961	2,743	792	1,326	△17.6	△51.6
축 산 물	636	1,760	205	1,055	△67.8	△40.0
임 산 물	6,246	6,280	1,396	1,398	△77.6	△77.7
수 산 물	2,619	4,686	2,612	3,144	△0.3	△32.9

자료 : 남북교류협력 동향(통일부)

나) 반입실적

농식품 반입 총품목수는 77개 품목이며, 이중 농산물은 대두, 마늘, 한약재 등이고, 임산물은 고사리, 표고버섯 등이며, 수산물은 새우, 조개 및 건조 수산물 등이다. 반입 실적은 농식품이 202백만 달러로 전년대비 2.8% 감소하였으나 물량기준으로는 10.3% 증가하였으며, 특히 조개, 새우 등 수산물의 반입실적이 증가하였다.

<표 1-2-35> 주요 품목별 반입실적

(단위 : 톤, 천달러)

품 명	2008년(B)		2009년(B)		증감율(B/A, %)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합 계	88,429	207,914	97,503	201,994	10.3	△2.8
대 두	1,400	1,946	1,736	1,462	24.0	△24.9
녹 두	598	630	1,400	1,313	134	108.4
마 늘	8,502	19,809	8,069	13,828	△5.1	△30.2
고 사 리	1,336	9,583	1,500	11,345	12.3	18.4
표 고 버	552	4,731	614	5,697	11.2	20.4
밤	644	629	633	1,038	△1.7	65.0
식물성한약재	1,938	4,965	702	1,318	△63.8	△73.4
새 우	3,108	18,628	3,316	20,964	6.7	12.5
문 어	1,908	6,956	2,221	7,885	16.4	13.4
기 타 조 개	34,757	41,953	42,617	52,514	22.6	25.2
기타연체동물	12,573	15,465	15,722	18,071	25.0	16.8
건조수산물	1,949	18,638	2,126	21,245	9.1	14.0
기 타 수 산 물 가 공 산 품	5,188	21,378	4,180	16,249	△19.4	△24.0

자료 : 남북교류협력 동향(통일부)

제3장

국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동향



1. 국제곡물 수급동향

(식량정책과 사무관 정명호)

가. 개요

2010/11년도 세계 전체 곡물 생산량은 전년대비 1.5% 감소된 21억 9,527만 톤 수준으로 전망된다. 소비량은 전년보다 1.7% 증가한 22억 3,583만 톤, 기말재고량은 전년보다 8.5% 감소한 4억 3,911만 톤, 기말재고율은 2009/10년도보다 2.2% 포인트 낮은 19.6%가 될 전망이다.

나. 쌀

2010/11년도 쌀 생산량은 2009/10년보다 3.0% 증가된 4억 5,460만 톤 수준으로 전망된다. 소비량은 전년대비 3.8% 증가한 4억 5,437만 톤으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말재고량은 전년대비 0.3% 증가된 9,456만 톤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2010/11년도 기말재고율은 20.8%로 2009/10년도 보다 0.7% 포인트 하락될 전망이다.

다. 밀

2010/11년도 세계 소맥 생산량은 전년보다 5.5% 감소한 6억 4,301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량은 2009/10년보다 1.8% 증가한 6억 6,119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말재고량은 1억 7,779만 톤으로 전년보다 9.3% 감소될 것으로, 기말재고율은 2009/10년도 보다 3.3% 포인트 하락한 26.9%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라. 옥수수

2010/11년도 전 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전년보다 1.9% 증가된 8억 2,607만 톤으로

전망된다. 소비량은 전년보다 약 950만 톤 정도 늘어난 8억 2,950만 톤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말재고량은 전년보다 2.5% 감소된 1억 3,556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기말재고율은 2009/10년도 보다 0.6% 포인트 하락한 16.3%가 될 전망이다.

마. 대 두

<표 1-3-1> USDA 주요곡물 수급총괄

(단위 : 백만 톤)

구 분	2008/09	2009/10(A)	2010/11(B)	변동률(%)	
		(추정)	2010.9.(전망)	B/A	
전체곡물	생 산 량	2,241.18	2,228.19	2,195.27	▲ 1.5
	소 비 량	2,159.28	2,199.09	2,235.83	1.7
	교 역 량	285.72	280.52	273.54	▲ 2.5
	기말재고량	450.57	479.66	439.11	▲ 8.5
	(재고율%)	20.9	21.8	19.6	
쌀	생 산 량	448.23	441.15	454.60	3.0
	소 비 량	437.75	437.92	454.37	3.8
	교 역 량	28.97	30.09	30.95	2.9
	기말재고량	91.09	94.32	94.56	0.3
	(재고율%)	20.8	21.5	20.8	
밀	생 산 량	683.26	680.43	643.01	▲ 5.5
	소 비 량	642.50	649.53	661.19	1.8
	교 역 량	143.76	133.75	126.03	▲ 5.8
	기말재고량	165.07	195.97	177.79	▲ 9.3
	(재고율%)	25.7	30.2	26.9	
옥수수	생 산 량	797.84	810.97	826.07	1.9
	소 비 량	781.14	820.00	829.50	1.2
	교 역 량	84.42	90.39	91.69	1.4
	기말재고량	148.02	138.99	135.56	▲ 2.5
	(재고율%)	18.9	17.0	16.3	
대두	생 산 량	211.96	259.89	254.89	▲ 1.9
	소 비 량	220.79	237.31	252.56	6.4
	교 역 량	77.25	90.84	94.52	4.1
	기말재고량	43.97	62.85	63.61	1.2
	(재고율%)	19.9	21.5	20.8	
잡곡	생 산 량	1,109.69	1,106.61	1,097.66	▲ 0.8
	소 비 량	1,079.03	1,111.64	1,120.27	0.8
	교 역 량	112.99	116.68	116.57	▲ 0.1
	기말재고량	194.40	189.36	166.76	▲ 11.9
	(재고율%)	18.0	17.0	14.9	

자료 : 미국 농무부(USDA), 전체곡물 = 쌀 + 밀 + 잡곡(옥수수, 수수, 보리, 귀리, 호밀, 기장, 혼합곡)

2010/11년도 세계 대두 생산량은 2억 5,489만 톤으로 전년대비 1.9%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량은 2009/10년 2억 3,731만 톤보다 약 1,525만 톤 늘어난 2억 5,255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말재고량은 6,361만 톤으로, 기말재고율은 2009/10년도 보다 0.7% 포인트 하락한 20.8%가 될 전망이다.

2. 국제곡물 가격동향

(식량정책과 사무관 정명호)

가. 쌀 값 동향

미국 농무부(USDA)가 2010년 9월 13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미국 캘리포니아 중립종 쌀의 8월 공장출고가격은 전년 동월대비 23.8% 하락한 톤당 722달러, 태국산 장립종 쌀의 본선인도가격은 전년 동월대비 14.6% 하락한 톤당 472달러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중립종 쌀은 2002/03년 톤당 327달러에서 2004/05년 405달러, 2006/07년 538달러로 꾸준한 가격 상승세를 나타냈다. 2007년 상반기 550달러, 하반기에는 580달러 수준을 유지하였다. 2008년 이후 이집트의 수출통제 정책에 따라 9월에는 1,119달러까지 상승하였다. 2009년도 4월에는 이집트의 수출통제 연장 결정으로 1,208달러까지 상승하였으나, 중립종 신곡 증산 전망에 따라 7월부터 내림세로 전환되어 7월 1,067달러, 12월 794달러에 이어 2010년 5월에는 719달러까지 떨어졌다. 그 후 장기간 하락에 대한 반발 및 일기불순에 따른 파종지연으로 신곡출하시기가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오름세로 전환되어 8월 평균거래 가격은 722 달러를 나타냈다.

2010/11년 미국의 중립종 생산량이 전년대비 감소할 전망이고, 이집트의 식량수급 여건상 쌀 수출 통제가 지속될 것이므로 일본, 한국, 대만의 MMA 입찰시기를 맞아 수출가격 인상 시도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태국산 장립종 가격은 2002/03년 톤당 199 달러에서 2004/05년 278달러, 2006/07년 320달러로 꾸준한 상승세를 나타냈다. 세계 식량위기로 인도·베트남의 수출통제 정책에 따라 2008년 1월 384달러에서 5월에는 949달러까지 상승 한 후, 6월 베트남의

수출통제 해제에 따라 약세로 전환되어 12월에는 543달러까지 대폭 하락하였다. 2009년 12월 필리핀의 단기 집중적인 수입으로 톤당 605달러까지 오른 후 2010년 6월까지 내림세를 지속하여 6월은 톤당 463달러를 나타냈다. 그 후 회복세로 반전되어 8월 평균거래 가격은 472달러를 나타냈다. 2010/11년 태국 및 세계전체 장립종 생산량은 전년대비 소폭 증가될 전망이나 파키스탄, 필리핀의 작황부진 및 곡물가격의 전반적인 상승 영향으로 곡물가격의 강세가 전망된다.

나. 밀 값 동향

밀 선물가격은 2002/03년 톤당 137달러에서, 2004/05년 126달러로 내림세를 보인 후, 2006/07년 181달러로 회복됐다. 세계 식량 위기로 2007년 5월 177달러에서 6월에는 206달러로 급상승하기 시작하여 2008년 3월에는 424달러에 이르렀다. 그 후 금융위기 영향 등으로 12월에는 208달러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2009년 상반기는 200달러 이상을 유지하였으나, 7월 203달러, 9월 175달러로 하락하였다. 2010년에는 재고누적으로 1월 192달러에서 6월 176달러 수준으로 약세국면에 있었으나 흑해연안국의 가뭄피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알려지면서 7월 214달러, 8월 260달러로 급등세를 보였다.

9월 후반 현재 월평균 가격은 274달러로 급등세는 진정되었으나, 옥수수, 대두 등 주요 곡물가격이 동반 상승한 상태이며, 선물시장에 비상업적 거래를 위한 자금유입이 활발해 강세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 옥수수 값 동향

옥수수 선물가격은 2002/03년 톤당 94달러에서, 2004/05년 83달러로 내림세를 보인 후, 2006/07년에는 140달러로 크게 상승했다. 세계 식량 위기로 2007년 7월 130달러에서 12월에는 170달러로 상승하였으며, 2008년 6월에는 바이오 에탄올 수요증가 등으로 275달러에 이르렀다. 그 후 금융위기 영향 등으로 수요가 위축되면서 12월에는 145달러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2009년에는 1월 154달러에서, 6월 162달러, 12월 158달러로 안정세를 나타냈으며, 2010년 들어서는 상반기에는 1월 152달러에서 6월 137달러로 하향안정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7월 들어 가뭄피해로 밀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밀 가격 상승에 편승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점차 사료용 밀의 대체 수요가 증가되면서 꾸준한 오름세를 보여 9월 후반 현재 월평균 가격은 189달러를 나타내고 있다.

2010/11년도 세계 전체 생산량은 전년대비 소폭 증가될 전망이다, 주요 곡물가격이 동반상승한 상태이고, 선물시장에 투기자금 유입이 활발해 당분간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라. 콩 값 동향

콩 선물가격은 2002/03년 톤당 213달러에서, 2004/05년 219달러로, 2006/07년 267달러로 꾸준하게 상승했다. 세계 식량 위기로 2007년 1월 258달러에서 6월에는 303달러로, 12월에는 423달러까지 상승하였다. 2008년에도 오름세가 이어져 7월에는 553달러까지 상승하였으며, 8월부터 내림세로 전환하여 12월에는 319달러로 하락하였다.

2009년도에는 전반적인 경기침체 영향으로 1월 톤당 365달러, 6월 445달러, 12월 379 달러로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였다. 2010년 들어서는 상반기에는 1월 360달러에서 6월 349달러로 하향안정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7월 들어 밀 가격이 급등에 따라 동반상승 하는 경향을 보여, 9월 후반 현재 월평균 가격은 388달러를 나타내고 있다.

2010/11년도 세계 전체 생산량은 전년대비 소폭 감소될 전망이다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이 활발한 가운데 선물시장에 투기자금 유입 또한 꾸준해 당분간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3-2> 세계 곡물가격 동향표

(단위 : 달러/톤)

품 목	2007/08	2008/09	2009/10	2010/6	2010/7	2010/8	증 감 륜(%)		
							전년	전년동월	전월
쌀(중립종)	694	1,119	791	739	728	722	▲ 8.7	▲ 23.8	▲ 0.8
(장립종)	551	609	531	463	465	472	▲ 11.1	▲ 14.6	1.5
밀	315	247	192	176	214	260	35.4	36.8	21.5
옥수수	203	155	146	137	148	161	10.3	24.8	8.8
콩	462	373	359	349	371	379	5.6	▲ 6.7	2.2

자료 : USDA(쌀:FOB, 밀·옥수수·콩 : 선물가격)

제2절

주요국가 농업 동향 및 양자 간 통상협력

1. 주요국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동향

가. 미 국

(양자협상협력과 수의사무관 김용상)

1) 농업경제동향

미국의 농경지 규모는 전체 토지면적(9억 24백만 헥타르)의 약 20% 수준인 1억 8천만 헥타르로 세계1위를 차지한다. 2007년 미국 농업센서스 결과에 따르면, 전체 농가호수는 220만호로 2002년 대비 4% 증가하여 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경향을 보였던 것이 다시 반등한 것으로 보이나, 곡물, 유지작물 및 원예 재배농가와 소·돼지 사육농가의 경우는 오히려 감소하였다. 농장주의 평균연령은 57.1세로 2002년 55.3세에 비해 높아졌는데 특히, 2002년 대비 75세 이상의 농장주는 20% 증가, 25세 이하 농장주는 30% 감소하였다. 농가당 평균 농지규모는 170헥타르로 2002년 176헥타르보다 감소하였다. 농가의 농지소유비율은 62%로 큰 변동이 없었다.

농가의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2007년 농업센서스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연간 농산물판매액이 2,500불 미만인 농가수가 74천호, 50만 불 이상인 농가수가 46천호 각각 증가하였으며, 연간 농산물판매액이 25만 불 이상인 대규모 농가는 전체 농가수의 9%이나 전체 판매액의 63%를 차지한다. 전체 농가의 60%는 연간 농산물판매액이 1만 불 이하의 소농으로 전체 농가 중 45.5%만이 순수농업소득으로 생활한다.

국내총생산(2007)은 137,800억 달러로 이 중 농업분야가 약 1,654억 달러로 1.2%를 차지한다. 반면 농업인구(2005)는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 전체 실제고용노동력(2007) 중 농림수산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0.6%에 불과하다. 2003년 가치기준으로 미국의 10대 농산물은 옥수수, 쇠고기, 우유, 닭고기, 콩, 돼지고기, 밀, 면화(cotton lint), 계란 및 칠면조고기 순이다.

2006년 기준 미국 농가 전체 농산물 생산액은 2,557억 달러, 순수익은 590억 달러, 정부지불금(government payments)은 158억 달러에 이른다. 농산물판매를 통한 농가 수입은 2,393억 불에 이른다. 2007년 농산물 수출이 899억 달러, 수입이 719억 달러로 180억 불의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세계 최대 농산물 수출·수입 농업국가이다. 이는 전체 수출액의 9%, 수입액의 4%를 차지한다. 수출액은 전체 농업생산액의 22.1%를, 특히 수출비중은 면화 및 담배가 70%, 밀 및 쌀이 47.1%에 달한다.

<표 1-3-3> 한미 주요 농업지표 비교

	한 국 (2006)		미 국 (통계년도)	
		단 위		단 위
○ GDP	8,874	억 불	132,466	억 불(2006)
- 농림어업	241	억 불	1,370	억 불(2005)
- 농림어업 구성비	3.2	%	1.1	%
○ 총인구	48,297	천 명	299.8	백만(2005)
- 농가인구(명)	3,304	천 명	5.7	백만(2005)
- 농가인구 비중	6.8	%	1.9	%
○ 총가구(A)	16,158	천 호	105	백만호(2000)
○ 농가수(B)	1,245	천 호	2,121	천호(2003)
○ 소사육가구(C)	198	천 호	8105	천호(2003)
- 농가수 비중(B/A)	7.7	%	2.0	%
- 소사육가구 비중(C/B)	15.9	%	38.2	%
○ 총수출액	325,681	백만 불	10,240억	억 불(2007)
- 농림축산물수출액	2,304	백만 불	687	억 불(2006)
- 농림축산물 비중	0.7	%	6.7	%
○ 총수입액	309,309	백만 불	18,690억	억 불(2007)
- 농림축산물	13,327	백만 불	640	억 불(2006)
- 농림축산물 비중	4.3	%	3.4	%

자료 : USDA(www.ers.usda.gov) 및 농림통계 변형, 국회 답변자료

<표 1-3-4> 주요 농산물 생산량(2007년)

(단위 : 백만 톤)

	세 계 전 체(A)		미 국(B)		B/A(%)	
	생 산	교 역	생 산	교 역	생 산	교 역
밀	606	110.5	56	35.5	9.2	32.1
옥수수	780	97.7	332	63	42.6	64.5
콩	220	75.3	70	29.7	31.9	39.4
쌀	427	31.3	6.3	3.0	1.5	9.6

자료 : 미국 농업부 해외농업처(FAS), Foreign Agricultural Commodity Circular Series, periodic

2) 농업정책동향

미국의 농업정책 및 제도의 주요 특징은 다음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미국의 주요 농업정책은 사업내용, 지원 대상, 지원 단가, 연도별 예산 등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농업법(Farm Bill)으로 법제화하여 집행하고 있다. 2008년 정책사업은 2008년 농업법에 근거하고 있다.

2008년 농업법(Farm Bill)은 2008년 5월 14일 하원에서, 그리고 5월 15일 상원에서 가결된 후 2008년 6월 18일 정식 법률로 확정되었으며, 2008년부터 2012년까지(작물년도) 5년간 유효하며, 소요 예산은 2002년 농업법 보다 370억 불 증가한 5년간 총 3,050억 불로 예상하고 있다.

농업법은 1933년 제정된 농업조정법(Agricultural Adjustment Act)을 근간으로 발전하여 왔는데 기본적으로 1862년 미국 농업부(USDA) 창설 이후 가족농 중심의 소득 보존과 가격지지를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 가격지지는 직불제 형태로 생산조정과 재고관리를 시장기능에 따르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농업법은 미국 농업정책의 기본방향과 중점시책(policy + Program)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연도별 지원 예산규모를 명시, 규범법과 집행법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며, 1965년 농업법 이후 4~5년 주기로 개정·보완하고 있다.

둘째,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성 및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됨에 따라 국내 외산 농산물 및 식품의 위생검사기준과 통관절차, 유기농산물 규격 등의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국내 생산식품뿐만 아니라 수입식품의 안전성조치와 관련된 농무부와 식품의약품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여 농장에서 식탁까지(from farm to table) 전 단계를 감시하여 식품 안전성 보장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축산물 및 수산물에 적용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 :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를 과일, 채소 등의 분야까지 확대하였다. 특히, 2003년 12월의 BSE 발생 이후 소와 쇠고기의 안전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NAIS(동물개체식별시스템) 검역강화, 연구개발사업이 확충되어 실시되었다.

2001년 9.11테러를 계기로 2002년 11월 창설된 국토안보부는 농업과 식품분야를 국가안보의 핵심적인 부문으로 인식하여 동식물검역 및 식품 수입 절차도 바이오테러에 대비한 감시·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유기식품기준, 유전자변형농산물(GMOs)의 안전성 기준 및 표시제, 계란 위생기준, 식육의 원산지표시제도 도입 등에 관하여 꾸준히 논의되어 왔다. 미국 농무부는 유기농업인증제, 시범적인 유기농업지원제 등을 마련하여 유기농업을 적극 육성하여 나가고 있다. 원산지표시제도(COOL)의 경우 2002년 의회에서 1946년 제정된 농산물거래법에 추가하여 “2002 Farm Bill”에 포함하여 2004년 제정되었으나 그간 강제적 시행이 유예되어 오다 2009년 3월 16일부터 연간 매출액이 23만 불 이상 되는 식육 및 신선농산물을 판매하는 소매점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되었다.

환경농업정책의 일환으로 토양유실, 지하수 오염, 습지상실 등의 환경문제 방지를 위해 보전유보계획(Conservation Reserve Program, CRP)을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환경개선 장려계획(Environmental Quality Incentives Program, EQUIP)도 확충하였다. 이러한 환경농업정책은 국내적으로는 생산 감소 효과를 가져와 곡물의 과잉생산을 방지하는 효과는 물론 여가와 복지욕구의 충족 및 종합적인 국가안보 등 다양한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인식되고 있다. 여타 분야의 농무부의 예산 삭감에도 불구하고 환경보전을 위한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WTO 허용보조 프로그램은 향후에도 지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최근 미국농업정책의 주요 과제로 농산물 시장 확대 및 수출 증대를 목적으로 WTO, APEC, FTA 등 각종 국제기구 및 지역협정을 통한 무역자유화를 추진하고 있다.

시장 지향성이 강한 공화당 부시행정부의 농업정책은 농산물의 무역을 확대하기 위

하여 무역협상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 획득, 범미주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greement of the America)를 비롯한 지역FTA 정책 추진 등으로 강화하였다. 무역협상 권한은 2002년 8월 1일 상원을 통과하여 발효된 것으로 2007년 7월 1일까지 유효하였다. 동 법안은 대통령에 대한 무역협상권한(TPA) 부여, 무역으로 인한 실직 근로자에 대한 무역조정지원(TAA), 개도국에 대한 일반특혜관세(GSP)연장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부시행정부는 강력한 FTA 등 자유무역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2009년 2월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강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전 정부에서 합의되었던 한·미 FTA, 콜롬비아·미국 FTA 등이 아직 의회의 비준을 받지 못하는 등 FTA 추진은 상대적으로 소강상태에 머무르고 자국 산업의 이해를 더 많이 반영하여 FTA를 추진하려는 성향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넷째, 미국은 세계적인 농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생산성 향상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51년간 연평균 1.8%의 생산성 향상이 지속될 수 있었던 점은 연구개발에 대한 공공 및 민간의 투자, 농업 인프라에 대한 공공 지출, 비료나 농기계에 대한 기술향상 등 네 가지 요인에 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의 기술개발 지원은 농산물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 위하여 Bio기술, GM기술, 곡물연료 생산 및 사용기술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2006년 미 농무부가 발표한 “2005~2010회계연도 전략계획(Strategic Plan for FY 2005-2010)”에서 미 농무부는 6개의 전략목표를 제시하고 USDA의 역량을 집중토록 하고 있다. 6대 전략 목표로는 미국 농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농촌 및 농가경제의 경쟁력 및 지속 가능성 제고, 농촌에서의 경제적 기회 증가 및 삶의 질 향상지원, 미국 농업 및 식품공급의 보호와 안전성 제고, 미국인의 영양 및 건강증진, 미국의 자연자원 토대 및 환경의 보호 및 증진이다.

다섯째, 미국 정부는 농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기회 실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여섯 가지 핵심정책방향 즉, ① 농산물 수출증대, ② 바이오연료 및 재생가능 연료 생산 촉진, ③ 지역 농업생산과 지역 소비의 연계, ④ 미국 농촌에 초고속 통신망(broadband) 설치, ⑤ 야외 여가 시설에 투자, ⑥ 생태계 시장(ecosystem markets)의 활용을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3) 개정 농업법 주요내용

마케팅론 프로그램, 가격상쇄직불, 고정직불 등 작물소득 보전 관련 내용은 2002년 농업법 내용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입보전직접직불(ACRE)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였으며, 대상 농가를 농외소득은 50만 불 이하, 농가소득은 75만 불 이하, 경작면적은 10에이커 이상으로 변경하였다.

식품공급(104억 불) 및 환경보존(79억 불) 프로그램 예산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으며, 재생에너지, 바이오에너지 관련 용자 및 연구지원을 강화하고, 원예(과일, 채소) 및 유기농업에 대한 예산지원을 신규로 책정하였다. 또한 그간 수산물에만 적용되어오던 원산지표시제(COOL)를 육류 및 신선농산물로 확대하도록 하였다.

<표 1-3-5> 개정 농업법 주요 내용

구 분	개 요
작 물 (Commod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2년 농업법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되, 소득보전직접지불제도 도입 • 자격기준 변경: 농외소득 100만 달러에서 50만 달러 이하로 변경, 농가 소득 75만 달러 이하 • 일부 품목의 가격보전직접지불 목표가격의 인상 • 설탕 및 낙농 프로그램 확대 • 프로그램 작물 추가
환경보전 (Conserv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환경보전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79억 달러)
영 양 (Nutri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가격 인상에 따라 푸드 스탬프, 급식,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확대 (104억 달러) • 식품은행(food bank) 지원(13억 달러)
에너지 (Energ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생 에너지 산업의 신기술개발 지원(10억 달러) • 옥수수 에탄올에 대한 세금공제는 축소하는 대신 셀룰로오스 에탄올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바이오에너지 생산기업에 대한 용자보증프로그램 도입
원예 및 유기농 (Horticulture and Organic Agricultu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일과 채소에 대한 지원을 최초로 명시 • 지역 푸드네트워크 활성화 도모
축 산 (Livestoc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류 및 가공품의 원산지표시제 의무화 시행

나. 중 국

(양자협상협력과 사무관 김규)

1) 종합(中 농업총생산, 소비자물가지수)

2009년 국내총생산은 전년대비 8.7% 증가한 33조 5,353억 위안이고, 산업별 부가가치 증가액은, 1차 산업 35,477억 위안(4.2% ↑), 2차 산업 156,958억 위안(9.5% ↑), 3차 산업 142,918억 위안(8.9% ↑)이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대비 0.7% 하락하였고, 식품가격은 0.7% 상승, 농산물 생산가격은 2.4% 하락하였다.

<표 1-3-6> 2009년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대비 상승폭

(단위: %)

지표	전국		
	도시	농촌	
소비자물가	△0.7	△0.9	△0.3
식품	0.7	1.0	0.1
그중: 양식	5.6	5.7	5.5
가금육 및 제품	△8.7	△8.5	△9.2
유지	△18.3	△17.9	△18.8
계란	1.5	1.3	2.0
채소	15.4	15.0	16.7
과일	9.1	9.0	9.5
담배, 술	1.5	1.7	1.3
의복	△2.0	△2.2	△1.6
가정설비용품 및 서비스	0.2	0.3	0.0
의료보건 및 개인용품	1.2	1.1	1.5
교통, 통신	△2.4	△2.7	△1.8
오락, 교육, 문화용품 및 서비스	△0.7	△1.2	0.6
거주	△3.6	△4.6	△1.5

2) 농업 개황

작물 경작면적은 10,897만 헥타르(217만 헥타르 ↑), 면화 경작면적 495만 헥타르(80만 헥타르 ↓), 유료 경작면적은 1,360만 헥타르(76만 헥타르 ↑), 당료 경작면적은 188만 헥타르(11만 헥타르 ↓)이다.

작물 생산량은 53,082만 톤으로 전년대비 211만 톤 증가(0.4% ↑)하였고, 그 중 하곡 생산량은 12,335만 톤(2.2% ↑), 조도는 3,327만 톤(5.3% ↑), 추곡은 37,420만 톤을 생산(0.6% ↓)하였다.

면화 생산량은 640만 톤(14.6% ↓), 유료 생산량은 3,100만 톤(5.0% ↑), 당료 생산량은 12,200만 톤(9.1% ↓), 잎담배는 280만 톤(6.7% ↑), 차는 135만 톤 생산(7.1% ↑)되었다.

육류 총생산량은 7,642만 톤으로 전년대비 5.0% 증가하였다. 그 중 돼지고기는 5.8% 증가, 소 양고기는 각각 3.6%, 2.4% 증가하였다. 수산물 생산량은 5,120만 톤으로 4.6% 증가하였고, 목재 생산량은 6,938만^m로 14.4% 하락하였다.

신규 유효 관개면적은 147.1만 헥타르이고, 신규 용수절약 관개면적은 182.6만 헥타르이다.

3) 인구, 주민생활, 사회보장 (中 농업인구, 농민소득)

연말 전국 총 인구는 13억 3,474만 명으로 전년 말 대비 672만명 증가하였다. 출생 인구는 1,615만 명, 출생률은 12.13%, 사망 인구는 943만 명, 사망률은 7.08%, 자연성장률은 5.05%이다. 출생인구 성별비는 119.45이다.

<표 1-3-7> 2009년 인구수 및 인구구성

지표	(단위: 만명)	
	연말	비중(%)
전국 총 인구	133,474	100.0
그 중: 도시	62,186	46.6
농촌	71,288	53.4
그 중: 남성	68,652	51.4
여성	64,822	48.6
그 중: 0-14세	24,663	18.5
15-59세	92,097	69.0
60세 이상	16,714	12.5
그 중: 65세 이상	11,309	8.5

농촌주민 1인당 순수입은 5,153위안으로, 가격상승요인을 제외하면, 도시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은 17,175위안, 실제성장률은 9.8%이다. 농촌주민가정의 엔겔지수는 41.0%, 도시주민가정의 엔겔지수는 36.5%이다. 농촌 최하빈곤층 표준은 1,196위안 미만을 기준으로 추정하여 계산하는데, 연말 농촌 빈곤인구는 3,597만 명 수준이다.

2,716개현(시,구)에서는 신형농촌합작의료작업을 시작, 7.3억 명의 농민이 신형농촌합작의료작업에 참가하고 있다(참가율 94.0%). 신형농촌합작의료기금의 총 누계지출액은 646억 위안으로 누계 4.9억 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한 해 동안 도시 의료구조는 총 417.2만 건으로 전년대비 16% 증가하였다. 농촌의료구조는 688.4만 건으로 148% 증가하였다. 민간, 정부부문에서 농촌합작의료를 지원한 인구는 2,780만 명에 달한다.

연말까지 전국의 실업보험 수혜자 수는 235만 명으로 한 해 동안 2,347.7만 명(전년대비 12.9만 명 증가)의 주민이 정부의 최저생계보장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전년대비 453.8만 명 증가한 4,759.3만 명의 농촌주민이 정부의 최저생계보장 혜택을 누리고 있다.

4) 자원, 환경과 안전생산 (中 경지, 수자원, 조림, 해수, 자연재해)

한 해 동안의 건설점유경지는 31.9만 헥타르로서, 파괴된 경지는 2.48만 헥타르, 생태용도로 새롭게 사용된 경지가 0.76만 헥타르, 농업구조개선으로 줄어든 경지 2.49만 헥타르이다. 토지정리로 새롭게 개간한 경지는 26.9만 헥타르이며, 사라진 경지는 1.93만 헥타르이다.

한 해 동안의 수자원 총량은 23,763억³로, 전년대비 13.4% 감소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한 해 동안 1인당 평균 수자원은 1,784.9³로, 13.8% 감소하였다. 연말의 전국 대형 저수지(水庫) 물은 모두 1,805억³로, 전년 말 대비 156억³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 해 동안의 총 용수량은 5,933억³로, 전년대비 0.4% 증가하였다. 그중, 생활용수가 2.9% 증가, 공업용수는 0.6% 감소, 농업용수는 0.6%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萬元국내총생산 용수량은 209.3³로, 전년대비 7.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萬元공업부가가치증가 용수량은 116.4³로, 8.2%감소하였다. 1인 평균 용수량은 445.7³로 0.1% 감소하였다.

한 해 동안 완성된 조림면적은 588만 헥타르로 그 중 인공조림이 389만 헥타르이다. 임업(林業) 공정 활성화 조림이 447만 헥타르로 완성된 활성화 조림의 76.0%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의 의무 식수(植樹)량은 24.8억 그루다. 2009년 말까지, 자연 보호 구역이 2,529곳에 이르렀으며, 그 중 국가급 자연보호구역 319곳이다. 신규 토지유실관리 면적은 4.8만km²이며, 신규 토지유실지역 보호면적은 2.7만km²이다.

해안지역 301개 해수수질측정에서, 국가1, 2등급수질에 합격한 곳은 전체의 70.4%로 전년대비 7.6% 증가하였다. 3급 해수가 11.3%로 0.5% 감소하고 있다. 4등급 이하의 해수는 18.3%로 7.0% 감소하였다. 청정해역 수질기준에 미달인 해역면적은 13.7만 km²로, 전년대비 0.8만km² 감소하였다. 그 중 오염도가 심각한 해역면적이 2.5만km²이고, 오염이 심각한 보하이 해역 면적은 0.3만km²이다.

2009년 평균 온도는 9.8℃로, 전년대비 0.2℃ 하락하였다. 한 해 동안 태풍이 총 9회 상륙(전년대비 2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 도시 폐수처리공장의 1일 처리능력은 8,664만m³로 '08년 말대비 6.9% 상승했으며, 도시 폐수 처리율은 72.3%에 달한다(2.1%p↑). 집중 온수 공급 면적은 35.6만 m²로, 2.0% 상승했으며, 산림 녹지율이 34.4%로 1.1%p 상승하였다.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직접경제손실은 2,524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78.5% 하락하였다. 농작물 수해면적은 4,721만 헥타르로 18.1% 증가하였다. 그 중, 수확이 전혀 없는 면적은 492만 헥타르, 22.0% 증가하였다. 삼림화재사건은 13천 건으로, 45.2% 증가하였다. 홍수와 침수로 인한 직접경제손실은 655억 위안(0.5%↑), 902명이 사망(10.8%↓)하였다. 가뭄으로 인한 재해의 직접경제손실은 1,099억 위안으로 2.58배 증가하였다. 해양재해의 직접경제손실은 100억 위안으로 51.3% 하락하였다. 누적 적조면적은 14,102km², 2.7% 증가하였다. 각종 지질재해는 1.0만여 건으로, 33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직접경제손실은 18.3억 위안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 대륙에서 진도 5급 이상 지진발생은 24건으로, 이로 인해 사망 7만여 명, 직접경제손실 27.4억 위안이었다.

* 자료원 : 2009년 국민경제사회 발전 통계 공보(중국국가통계국, 10.02.25)

다. 일본

(양자협상협력과 사무관 김규)

1) 농업경제동향

일본의 2009년 농가인구는 총 인구의 5.5%(2008년 5.7%)인 6,979천 명이며, 경지면적은 국토 37,795천ha의 약 12.2%(2008년 12.2%)인 4,609천ha이다. 호당 경지면적은 1.85ha로 한국의 1.45ha보다 약간 많은 편이다. 농산물 수입액은 45,609억 엔으로 2008년 59,821억 엔 대비 약간 감소하였고, 수출액 2,637억 엔보다 약 17.3배 가량 많다. 일본의 식량자급률(2008년 기준)은 열량 기준으로 41%이며, 생산액 기준 65%이다. 이 중 쌀의 자급률은 95%이다.

<표 1-3-8> 일본의 주요농업지표

구 분	단 위		구 분	단 위	
○ 농가 인구(2009) - 총 인구 대비	천 명 %	6,979 5.5	○ 쌀 생산량(2009)	백만 톤 (현미 기준)	8.82
○ 농가 호수(2008) - 총 가구 대비	천호 %	2,521 4.8	○ 맥류* 재배면적(2008)	천ha	266
			○ 과실류 재배면적(2008)	"	287
○ GDP(2008)	억엔	4,941,987	○ 농산물 수출(2009)	억엔	2.637
○ 경지면적(2009) - 호당 (2009)	천ha ha	4,609 1.85	○ 농산물 수입(2009)	억엔	45.609

자료 : 1.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2010)
2. 일본 농림수산통계(2010), *맥류 4종

2) 농업정책동향

일본 정부는 2007년을 “농림수산 새로 태어나는 원년”으로 설정하고, 「식료·농업·농촌 기본계획」에 의거한 농업·농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식량자급률 하락, 농업인 고령화, 농지면적 감소 등 식료·농업·농촌을 둘러싼 정세의 변화, 국제화의 빠른 진전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61년 제정된 구 「농업기본법」을 대체하여 '99.7월 「식료·농업·농촌 기본법」을 제정하고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지난 2005년도에 기본계획을 재수립하였다.

「식료·농업·농촌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①농업정책, ②농촌정책, ③식료정책의 세 분야로 구분되어 있다.

첫째 농업정책의 주요 골자는 「품목 횡단적(농가 단위) 경영안정대책」을 '07년부터 실시하여 농업구조개혁을 가속화하는 데 있다.

둘째, 농촌정책의 경우는 지속적 농업발전과 다원적 기능발휘를 위해 “자원보전”과 “환경보전” 정책을 통합한 「자원·환경보전 직접지불제」를 '07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위의 품목 횡단적 경영안정대책과 자원·환경 직불제는 일본농정의 양대 축을 형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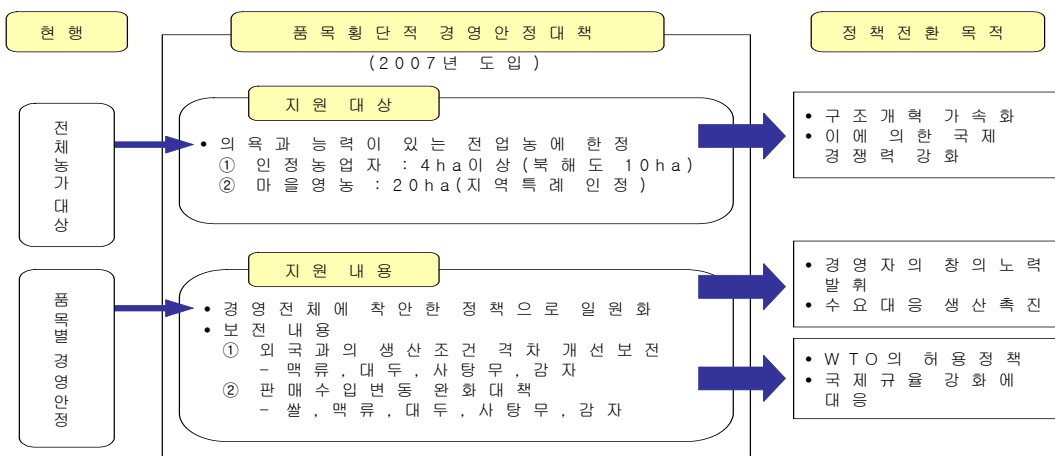
셋째, 식료정책에 따라 식량자급률 목표를 설정하고, 식품안전을 중시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일본의 세 가지 주요 농업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가) 품목 횡단적 경영안정대책

'05.3월 발표한 기본계획 중 정책개혁의 하나로 개정된 쌀 생산조정 대책이 본 대책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으며, 그 목적은 시장개방에 대한 손실을 직접지불로 보전하되, 정책대상을 극히 한정하는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구조개혁을 가속화하며, 농산물의 고품질화 등을 실현하는데 있다.

<그림 1-3-1> 제도개요



* 채소, 과일, 축산 등은 품목적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품목별 실시

나) 쌀 정책 개혁(품목 횡단적 경영안정 대책과 연동)

농림수산성은 쌀 정책의 방향을 전면적으로 전환하는 ‘쌀 정책 개혁 대강’과 ‘논 농업정책·쌀 정책 재구축 기본방향’을 2002.12월에 결정하였다. 그 주요 목적은 재고증가와 가격하락, 전업농을 중심으로 논 농업 경영이 곤란, 소비자의 요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이에 적절히 대응한 안정적 공급의 필요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쌀 정책 개혁의 주요 내용은 수급조정, 생산구조 및 조성체계를 조정한 데 있다. 수급조정의 경우 과거 일률적인 생산 조정, 획일적인 전작 유도에서 '07년부터 농업인 및 농업단체가 수급 조정하는 시스템으로 전환, 판매실적을 기초로 수량배분 방식을 도입하였다. 생산구조의 경우 과거 지역담당이 불확실하였으나, 이를 개혁하여 지역 논 농업 비전을 책정하는 지역담당자를 명확히 하고 있다. 아울러 조성체계의 경우, 과거 일률적인 요건 및 단가에서 산지 만들기 대책, 집하 원활화 대책, 벼농사 소득기반 확보 대책, 담당자 경영안정 대책으로 전환하였다.

유통제도도 적정표시제도, 추적가능성 시스템 도입, 식생활 지침의 보급 및 식육(食育) 추진 등 광범위한 국민운동 전개, 유통업자에 대한 신고제 도입, 100만 톤 정부비축 적정수준 설정 등을 주요내용을 개혁하였다.

다) 자원·환경보전 직접지불제

본 제도는 농지, 농업용수 등 농업자원과 농업생산 환경을 보전하거나 향상하는 것이 목적이다. 농촌자원 보전 활동과 친환경 농업생산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원 내용은 농지, 농업용수 등 자원보전을 위한 지역단위의 “공동 활동”, 농가단위의 환경보전을 위한 선진적인 “영농활동”, 공동 활동과 영농활동의 질적인 측면을 높이는 “추가활동” 등이다.

라. 유럽연합(EU : European Union)

(양자협상협력과 주무관 김윤희)

1) 농업경제 동향

유럽연합(European Union)은 2008년 현재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경제·정치적 연합체로서 GDP 12.3조유로(1인당 GDP 24,800유로)(2007), 인구 495,090천 명(2007), 면적 432,526천ha의 거대 경제권이다.

EU 27개 회원국 전체의 경지면적은 182,264천ha(2007), 농업분야 취업자 수는 12,218천 명(2007)으로 전체 취업자 수의 5.6%를 점유하고 있으며, 농업총생산액은 3,558억유로(2007) 정도이다. 2007년 농산물 생산액은 우유생산이 14.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곡물류 10.9%, 돼지고기 8.6%, 쇠고기 8.5%, 신선채소 8.5%, 신선과일 6.6%, 포도 및 포도액 4.6% 순이었다. 농업생산에서 회원국들의 비중(2007)을 보면 프랑스(18.7%), 독일(12.7%), 이탈리아(12.4), 스페인(11.4%), 네덜란드(6.5%), 영국(6.4%), 폴란드(5.6%), 루마니아(4.0%), 그리스(3.0%), 덴마크(2.6%), 벨기에(2.1%), 포르투갈(1.9%), 헝가리(1.9%), 오스트리아(1.8%), 아일랜드(1.7%), 스웨덴(1.4%), 핀란드(1.3%), 체코(1.2%), 불가리아(0.9%), 슬로바키아(0.6%), 리투아니아(0.6%), 슬로베니아(0.3%), 라트비아(0.3%), 사이프러스(0.3%), 에스토니아(0.2%), 룩셈부르크(0.1%), 몰타(0.1%)의 순이었다.

EU 전체로 볼 때 농수산업 종사자가 전체 고용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2007)은 5.6%이다. 국가별로는 영국(1.4%), 몰타(1.8%), 룩셈부르크(1.8%), 벨기에(1.9%), 독일(2.2%)은 그 비중이 낮은 반면, 루마니아(29.5%), 폴란드(14.7%), 포르투갈(11.6%), 그리스(11.5%), 라트비아(10.4%) 등은 높은 편이다. 신규 회원국을 중심으로 전체 고용인구 중 농수산업 종사자의 비중이 줄어드는 경향이다. 농업이 전체 GDP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2007)은 룩셈부르크(0.3%), 스웨덴(0.4%), 영국(0.4%), 독일(0.6%), 벨기에(0.8%)는 낮은 편이며, 루마니아(5.1%), 불가리아(4.2%), 사이프러스(3.6%), 그리스(2.8%), 폴란드(2.7%) 등의 국가도 농업이 전체 GDP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줄어드는 경향이다.

<표 1-3-9> EU의 주요 농업지표(2006-2007)

국 가 (27개국)	경지면적 (천ha)	농장수* (천개)	농장당 경지면적 (ha)	농업분야고용		농업 생산액 (백만 유로)	농업 부가가치 (백만 유로)	GDP 대비 (%)	농산물 무역			가계비중 식품비 (%)
				취업자 (천명)	전체 대비 (%)				수입 비중 (%)	수출 비중 (%)	무역 역지 (백만 유로)	
	2007	2007	2007	2007	2007	2007	2007	2007	2007	2007	2007	2006
EU_27	182,264	-	-	12,218	5.6	355,810	153,516	1.2	7.4	8.4	-696	16.2
벨기에	1,370	48	28.6	81	1.9	7,355	2,549	0.8	7.6	6.3	-1,909	16.5
불가리아	5,116	-	-	245	7.5	3,315	1,227	4.2	15.5	21.6	160	-
체코	4,254	39	89.3	176	3.6	4,325	1,205	0.9	3.2	5.3	57	22.8
덴마크	2,695	45	59.7	83	3.0	9,158	2,574	1.1	12.3	26.2	2,380	14.6
독일	16,954	371	45.7	859	2.2	45,363	15,008	0.6	6.6	3.8	-3,240	14.4
에스토니아	823	23	38.9	31	4.7	679	278	1.8	9.1	20.6	152	23.8
아일랜드	4,276	128	32.3	117	5.6	5,972	1,896	1.0	4.7	15.7	3,555	13.4
그리스	3,984	-	-	520	11.5	10,771	6,381	2.8	7.8	24.5	-97	20.1
스페인	24,991	-	-	926	4.5	40,708	23,118	2.2	8.5	11.2	-2,558	16.5
프랑스	29,414	527	52.1	880	3.4	66,540	29,217	1.5	6.1	12.5	8,379	16.4
이탈리아	14,490	1,679	7.6	924	4.0	44,365	25,213	1.6	6.6	6.9	-375	17.3
사이프러스	151	40	3.6	17	4.4	1,071	571	3.6	9.2	14.4	-111	21.9
라트비아	1,839	108	16.5	111	9.9	1,047	344	1.7	18.0	57.4	94	-
리투아니아	2,696	230	11.5	160	10.4	2,078	769	2.7	16.4	60.9	449	32.2
룩셈부르크	131	2	56.8	4	1.8	285	121	0.3	1.2	0.9	-45	18.2
헝가리	5,807	626	6.8	180	4.6	6,676	2,468	2.4	2.7	16.7	1,086	25.8
말타	10	11	0.9	3	1.8	295	129	2.4	6.7	3.8	-12	19.2
네덜란드	1,886	77	24.9	253	3.1	23,015	8,828	1.6	9.6	16.3	-3,191	13.8
오스트리아	3,239	165	19.3	231	5.7	6,343	2,777	1.0	8.5	8.5	590	13.7
폴란드	16,177	2,391	6.5	2,247	14.7	19,937	8,318	2.7	9.4	26.6	571	27.3
포르투갈	3,679	275	12.6	601	11.6	6,631	2,143	1.3	10.9	9.7	-580	20.5
루마니아	13,714	-	-	2,762	29.5	14,312	6,265	5.1	12.5	11.0	-486	33.0
슬로바니아	499	75	6.5	96	9.9	1,113	416	1.2	11.1	5.3	-243	19.4
슬로바키아	1,931	69	28.1	99	4.2	2,016	526	1.0	1.5	4.4	43	23.0
핀란드	2,255	68	33.6	113	4.5	4,511	1,497	0.8	4.0	4.2	294	17.3
스웨덴	3,121	73	42.9	102	2.3	5,078	1,479	0.4	7.2	4.3	32	15.7
영국	16,761	300	53.9	398	1.3	22,853	8,199	0.4	6.9	4.9	-5,691	12.7

* 농장수(agricultural holdings): 농업생산에 사용되는 단일 관리 단위로 농지, 건물, 산림 등을 포함하는 개념임

EU 역내 교역을 제외한 전체 역외 수출입액 중 농산물 및 식품이 차지하는 비중(2007)은 수출이 6.1%(총 12,744억 유로 중 780억 유로)이며, 수입은 5.4%(총 14,465억 유로 중 787억 유로)이다. 농산물 역외 수출의 주요 대상국은 미국(18.12%, 14,137백만 유로), 러시아(9.9%, 7,694백만 유로), 스위스(6.4%, 4,980백만 유로), 일본(5.2%, 4,020백만 유로) 등이며, 2006대비 8.0% 정도 증가하였다. 주요 수출품목은 주류 및 음료(17,436백만 유로), 낙농품, 달걀 및 벌꿀(6,355백만 유로), 담배 및 담배 원료(5,178백만유로), 밀가루 또는 전분제조품(4,525백만 유로), 육류(4,290백만 유로) 등이다. 농산물 역외 수입의 주요 대상국은 브라질(15.5%, 12,233백만 유로), 미국(9.0%, 7,104백만 유로), 중국(4.4%, 3,450백만 유로), 터키(4.0%, 3,127백만 유로) 등이며, 주로 과일 및 너트류(12,354백만 유로), 커피, 차 및 향신료(5,819백만 유로), 유지종자류(6,058백만 유로), 동물 또는 채소 지방 및 기름(5,728백만유로) 등이 주요 수입품목이다. EU의 농산물 교역은 역내 무역이 역외 무역에 비하여 비중이 크다. EU의 역외 농산물 무역은 2006년도에 46억 유로의 흑자를 보였으나, 2007년도에는 681백만 유로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자료출처: Agriculture in the European Union, Statistical and Economic Information 2008. 2009.3월)

2) 농업정책동향

EU는 1957.3월 로마조약에 의거 회원국 공통의 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CAP)을 실행하고 있다. 이 조약 내용을 살펴보면 EU농정은 단일시장(Single Market), EU 생산농산물 우선(Community Preference), 공동재정부담(Common Financial Responsibility)을 기본운용 원칙으로 삼고 공동농업정책(CAP)의 목표를 농업생산성 향상, 농민의 소득향상,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 적정한 소비자 가격유지에 두고 있다.

이러한 CAP도 1988, 1992, 1999년(Agenda 2000), 2003년 7월(MTR) 및 2008년 건전성 평가 등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수차례의 개혁을 겪었다.

1차 개혁(1988) 때는 농산물 과잉생산문제가 그 배경이 되었고, 2차 개혁(1992) 때는 UR협상에 대비 가격지지 축소 및 직접지불제 도입, 제3차 개혁(1999, Agenda 2000) 때에는 CAP 재정지출억제 등을 목표로 가격지지 축소, 직접지불 강화, 농촌개발정책 확대, 제4차 개혁(2003. 7)은 단일농가직접지불제도의 도입, 가격지지 축소, 환경과 농촌개발 강화가 주요내용이다.

Agenda 2000의 주요내용은 곡물분야에 대한 지지가격을 2000/2001년부터 2개년에 걸쳐 15% 감축하고, 소득 손실보상을 위한 직접지불금을 인상 지급한다. 직접지불을 조건으로 실시하는 의무 휴경비율을 기존 17.5%에서 2006/2007 까지 10%로 하향 조정하되 시장여건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쇠고기 분야는 광우병과동 등에 따른 공급통제로 재고가 낮아지고 있으나 2005년까지 재고가 늘어날 전망이므로 지지가격을 2000년 7월부터 3년간 균등비율로 20% 감축하고 장려금을 인상 지급하며 조방화를 위한 가축사양밀도는 ha당 2.0 가축단위로 계속 제한키로 하였다. 낙농분야에 있어서는 지지가격을 2005/2006부터 3년간 균등비율로 15% 감축하고 그에 따른 낙농보상금을 2005년부터 지급하되 젖소에 대해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것을 우유생산량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현행 쿼터제도는 2007/2008까지 연장하는 등 생산쿼터제도를 급격히 폐지하지 않기로 하였다. 또한 환경보전차원에서 CAP보조금 지급시 일정한 환경기준 준수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농가가 이를 위반할 시 농가에 대한 직접지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외 조기이농, 농업환경, 임업, 조건불리지역 등과 관련한 농촌개발정책, CAP수행을 위한 재정문제 등도 「Agenda 2000」의 공동농업정책에 포함되어 있다.

EU 공동농업정책 중간개혁안(MTR: Mid-term review)은 2003년 6월 26일 합의되었다. MTR은 전체 예산 규모 면에서는 Agenda 2000에서 설정된 수준과 같지만 CAP의 추가 개혁안으로 볼 수 없을 만큼 커다란 변화를 담고 있다. MTR에서는 새로운 농정수단과 운용체제가 도입되었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당부분의 블루박스에 해당하는 직접지불을 WTO 규정이 허용하는 그린박스의 형태로 전환했다. MTR은 보상 직접지불과 가축두수에 대한 프리미엄 등 블루박스의 대부분을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WTO상의 허용보조(그린박스)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지금의 다양한 직접지불을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형태로 통합해 농가당 단일 직접지불(single farm payment: SFP)로 지원하는 방안이다.

둘째, 일부 품목에 대한 가격보조를 폐지하거나 그 수준을 낮췄다. 독일에서 많이 생산되는 호밀에 대한 개입가격이 폐지되고, 쌀에 대한 개입가격은 지금의 1/2 수준인 톤당 150유로로 감축되면서 그 개입물량도 연간 7만 5,000톤으로 제한된다. 곡물에 대한 개입가격은 지금과 같은 톤당 101.31유로로 유지하기로 했다.

낙농제품에 대한 쿼터는 2006/07~2008/09년에 0.5%씩 늘어나고, 쿼터제도는 2014년까지 유지된다. 대신에 버터에 대한 개입가격은 2004년부터 4년 동안 모두 25% 줄고 개입물량도 7만 톤에서 3만 톤으로 감소된다. 탈지분유의 개입가격은 3년 동안 총 15%를 감축하지만 개입물량은 10만 9,000톤으로 유지된다. 우유에 대한 목표 가격은 없어졌다.

셋째, 환경과 농촌개발에 대한 조치가 강화됐다. 직접지불을 받기 위해 농가는 환경보전 등 기본적인 의무준수요건(cross-compliance)을 이행해야 한다. 이 의무준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수혜 농가에 벌칙(보조 규모의 감축)이 부과된다.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한 농업환경 조치(AEM)에서 회원국과 공동 부담하는 EU의 비율이 높아졌다. 1인당 GDP가 EU 평균의 75% 이하인 목표 1지역의 경우에 EU의 분담 비율이 최대 85%로 늘어나고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60%로 정해졌다.

2005년은 2003년 중간개혁에서 제외되었던 설탕 분야의 개혁 방안이 타결되었다. 2004년 6월에 집행위에서 설탕분야 개혁안을 발표한 이래 많은 토론과 의견수렴, 협상의 과정을 거쳐 2005년 11월에 정치적 합의를 도출하게 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지가격을 4년간 36% 인하하고 보조금 지급은 생산과 단절하되 소득손실의 64.2%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4개년간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공수매 등 시장 개입제도는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2006.12월 EU집행위는 농업부문에 대한 회원국가 보조금 지급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채택하였는 바, 기존의 복잡한 농업부문 국가보조금 가이드라인을 통합하여 2007-2013년까지 적용되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신설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기존의 농산물 상품광고, 도축장 폐기물 관련 국가 보조금 지급가이드라인 및 농업부문 단기정책 융자지원지침은 폐지되고, 용수 관련 지원, 에너지작물 및 전력 관련 소비세 면제 지원 내용이 국가 보조금 지급 범주에 추가로 포함되었다. 한편, 농산물 가공, 판매 관련 국가보조금 지급규정은 폐지되고, 일반 산업부문 국가보조금 지급 규정에 의해 규율하도록 하였다. 일정 수준(농가당 3년간 3,000유로) 이상 국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규율대상 국가보조금으로 보지 않는 de minimis 규정은 그대로 존속시켰다.

유럽연합은 7년간 중기 예산을 미리 정하는데, 2007-2013년간 중기예산을 확정하였다. 총예산 8,624억 유로 중 농업예산은 3,629억 유로이며 이 중 가격지지 및 직접

지불에 2,931억 유로, 농촌개발에 698억 유로가 배정되었다. 농촌개발정책 분야에 대한 예산은 분야별로 예산 배정 하한을 규정하였는데, 농업경쟁력 제고에 10%, 농촌경제 다각화에 10%, 환경 및 국토관리 지원에 25%, LEADER 방식에 5%를 최소로 배정해야 한다. 유럽농업지도보증기금(EAGGF) 등 여러 회계에서 농촌개발정책의 재원이 마련되고 있는데 이를 유럽농촌개발기금을 창설하여 재원을 통합하기로 하였다.

2008.11.20. EU 농업각료이사회는 지난 1년 간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논의되어 온 공동농업정책 건전성 평가법안을 정치적으로 합의하였다. 공동농업정책 건전성평가는 2003년 공동농업정책 중간평가개혁(Midterm Review) 이래 현재 중기재정개혁이 마무리되는 2013년까지 동 개혁방향을 유지하면서 정책을 보다 효율화하는데 중점을 둔 소규모 개혁조치로 2007.11.20. 집행위가 정책구상(communication)을 발표하고 회원국 반응을 감안하여 2008.5.20. 법안을 제안한 바 있다. 2013년 이후 농업정책개혁은 2009년 재정중간평가 기간 중 공식 논의될 예정인 바, 주요 합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가 보조금 생산 비연계(De-coupling)를 강화하였다. 밀, 올리브, 호프, 쇠고기, 살, 땅콩, 종자, 감자전분 등 현재 남아있는 생산연계성 직불금은 늦어도 2012년까지 생산 비연계 직불금을 전환하여 단일농가직불금에 통합한다. 단, 송아지, 양, 염소에 지급되는 생산연계 보조금은 현행수준을 유지하고, 농가직불금 지급과 연계하여 친환경, 동물복지, 식품품질기준 준수를 요구하는 상호준수의무(Cross-compliance)중 농가의 책임과 관련이 없는 기준은 폐지하는 등 간소화한다. 대신 강제휴경으로 유지되었던 환경이익유지, 물 관리 개선 등 의무사항을 추가하고, 농가지불금은 최소 250유로, 경작면적 1ha이상인 경우 지급한다는 원칙 하에 국가별로는 EU 평균 농가규모 및 지급수준과 비교한 상관계수를 적용하며, 에너지작물 지원금(45유로/ha)은 폐지된다.

둘째, 민감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관련, 회원국이 직접지불금 국가예산상한의 10% 범위 내에서 특별히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대해 친환경적 조치, 품질개선, 유통개선을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한 69조 조항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한다. 현재는 직접지불금을 지급한 동일분야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어렵거나 취약한 지역에서 우유, 쇠고기, 염소, 닭고기, 쌀을 생산하는 모든 농가에 사용이 가능(WTO 감축대상보조)하다. 또한 자연재해에 대비한 농작물 보험 등 위험관리를 위해 사용이 가능하며, 동물질병 발생에 대비한 상호부조기금 지원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단일면적직접지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신규 회원국도 적용 가능하며, 단일농가지불제도를 적용하는 회원

국은 68조 정책수단을 위해 국가재정할당(national envelope)된 재원 중 불용이 발생할 경우 농촌개발기금으로 전환된다.

셋째, 신규회원국(EU-12)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단일면적직접지불제도(SAPS)를 운영하는 신규 회원국가는 2010년까지 단일농가직불제도(SPS)로 전환해야 하나 이를 2013년까지 연장한다. 이에 따라 신규회원국 농가들은 보조금지급에 따른 상호준수(Cross-compliance) 의무 적용이 연장된다. 에너지작물 보조금을 폐지하고, 불용되는 9,000만 유로를 신규 회원국이 기존 회원국 수준으로 농가보조금을 받을 때까지 지원하여 68조에 명시된 어려운 지역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넷째, 농촌개발예산 확대 및 직불금 역진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5,000유로 이상 직불금을 지원받는 모든 농민에게 지원되는 농가직불금의 5%(2012년부터 10%)를 농촌개발예산으로 강제 전용하여 새로운 정책수요에 대응하고, 30만 유로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추가로 4%를 더 삭감하여 농촌개발예산으로 전용한다. 기후변화, 재생에너지물 관리, 생물 다양성, 혁신, 낙농분야 등 새로운 정책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농촌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EU집행위와 회원국이 재정을 공동 부담(EU 75%, GDP가 낮은 어려운 국가의 경우 90%)한다. 젊은 후계농을 위한 투자지원액을 현행 55천 유로에서 70천 유로로 증액한다.

다섯째, 농산물 시장관리수단을 대폭 폐지한다. 농지의 10%를 강제휴경(set-aside)하는 제도는 폐지하고, 2015년 우유쿼터가 폐지됨에 따라 2009/10년 - 2013/14년 기간 중 매년 1%씩 우유쿼터를 증량한다(단, 이태리의 경우 2009/10년에 5% 우유쿼터를 증량). 2009/10년 - 2010/11년 자신의 우유쿼터보다 6% 더 생산한 농가의 경우 정상 벌금보다 50% 높은 중벌금을 부과한다. 돼지고기, 쌀 시장관리제도는 폐지한다. 보리, 수수에 대한 수매량을 "0"으로 설정하고 밀은 300만 톤까지만 101.31유로/톤의 가격으로 수매가 가능하며 그 이상은 공매한다. 버터 3만 톤, 탈지분유 10만9천 톤 범위에서 수매하며 그 이상은 공매한다.

EU 각료이사회에서 합의한 공동농업정책 건전성평가 개혁법안은 당초 EU 집행위가 밝힌 구상과 법안에서 다소 후퇴한 모습이나 이는 회원국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타협하는 과정에서 불가피 한 조치로 판단되며, 피셔보엘 농업담당집행위원과 EU 집행위의 구상인 ① 단일농가직불금 생산 비연계(De-coupling) 강화, ② 수매, 쿼터 등 농산물 시장관리 수단 대폭 폐지, ③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물 관리 등 새로운 정책수요에 대

응한 농촌개발정책 강화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로써 EU는 농가에 지불하는 대부분의 직접지불금을 WTO 감축대상 보조(Amber Box, Blue Box)에서 허용대상 보조(Green Box)로 전환하는 계기가 마련하였으며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었던 농가보조금의 부농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농촌개발예산 확대를 통해 정책 목표달성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공동농업정책 시행 이래 계속되어온 수매, 쿼터 등 농산물 생산관리 제도를 대부분 폐지함으로써 농민들이 정부보다는 시장을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체제로 전환하게 되었다. 일단 건전성 평가개혁이 마무리된 만큼 2012년까지의 공동농업정책 틀은 완성되었으며, 앞으로 EU와 회원국은 2013년 이후 공동농업정책방향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2. 주요국가 통상협력

가. 미국

(양자협상협력과 수의사무관 김용상)

미국은 우리의 최대 농산물 수입국으로 미국입장에서도 한국은 캐나다·멕시코·일본·중국에 이어 제5위 수출국이다. 2008년에 옥수수·대두·밀 등 곡물류, 돼지고기·닭고기·낙농품 등 축산물, 오렌지·건포도·아몬드·양파·주류·과일 및 채소주스 등 과채류 및 가공품 등 거의 모든 농산물에 걸쳐 약 62억 달러를 수입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농산물은 연초, 배, 조제품 기타 등이 약 2~3억 달러 수준으로 수출실적이 저조하나, 미국은 일본, 중국과 함께 3대 수출시장에 속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미국 간에는 농산물 교역과정에서 크고 작은 통상현안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양국 간 농산물 통상현안은 동식물 검역과 생명공학 문제가 주조를 이루는 가운데 다자 및 양자 간의 관세인하 약속의 이행 등이 있다.

2007.4월초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협상이 타결되었으며, 2007년 5월 국제수역사무국에서 미국을 소해면상뇌증 위험통제국 지위를 부여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미국

산 쇠고기 수입허용 범위 확대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수입위험분석절차를 시작하여 2008.6월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제품 수입위생조건”을 맺고 30개월령 미만의 소에서 유래한 제품의 수입을 허용하였다.

미국은 국가별무역장벽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및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의 정책건의서 등을 통해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도입, 유전자변형 농산물에 대한 통제강화와 유전자변형 농산물 함유 가공품에 대한 ‘유전자변형’ 상표표시 의무화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산 감귤의 수출재개, 구제역 청정국 지위 인정, 삼계탕에 대한 수입허용절차의 조속한 진행 등을 요구하고 있다. 라면스프, 냉면육수 등과 같이 소량육류함유식품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 강화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여 합리적 해결 방안을 추구하였으며, 2007년도에 감귤의 알래스카주 수출이 허용되었으며, 여타 주로의 확대수출 조건에 대해 협의 중에 있다.

한·미간의 농산물 통상현안은 한·미 경제협의회, 한미통상현안 정례점검회의 및 한·미 동식물검역전문가회의 등의 정례회의와 이런 정기적 협의절차 이외에 주미 한국농무참사관의 외교활동과 주한 미국농무참사관 등과의 공식·비공식협의 등을 통해 일상적인 통상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1-3-10> 농산물 교역 동향

(단위 : 백만 불)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09/'07년(%)
수 출	합 계	400.9	449.2	467.3	16.5
	- 농산물	257.1	295.0	313.9	22.1
	- 축산물	38.1	32.4	15.3	△59.8
	- 임산물	6.8	8.0	9.1	33.8
	- 수산물	98.9	113.8	128.9	30.3
수 입	합 계	3,698.8	6,401.0	4,590.9	24.1
	- 농산물	2,596.3	5,026.7	3,264.5	25.7
	- 축산물	686.4	889.2	702.2	2.3
	- 임산물	271.5	345.2	500.8	84.5
	- 수산물	144.5	139.9	123.4	△14.6

자료 : 농수산물무역정보(KATI)

<표 1-3-11> 주요 수출 품목

(단위 : 백만 불)

2007년			2008년			2009년		
품목명	물량	금액	품목명	물량	금액	품목명	물량	금액
권 련	1.3	28.3	권 련	1.2	29.3	권 련	1.1	28.1
배	8.9	24.0	배	9.2	21.8	배	11.0	24.7
라 면	6.4	19.6	김	3.5	20.5	라 면	6.7	20.1
김	3.2	18.1	라 면	6.3	20.0	김	4.1	19.3
굴	3.4	15.1	굴	3.8	16.8	굴	3.2	15.5
참 치	1.4	13.3	비스킷	3.3	13.3	비스킷	3.3	13.1
비스킷	3.3	13.2	국 수	4.5	10.6	곡류조제품	2.7	10.5
소 주	5.5	10.3	곡류조제품	2.5	10.4	소 주	6.2	9.1
곡류조제품	2.6	10.2	소 주	5.5	8.9	오징어	6.5	9.0
국 수	3.8	9.1	오징어	6.8	8.7	국 수	4.2	8.3

자료 : 농수산물무역정보(KATI)

<표 1-3-12> 주요 수입 품목

(단위 : 백만 불)

2007년			2008년			2009년		
품목명	물량	금액	품목명	물량	금액	품목명	물량	금액
옥수수	4,416.7	988.6	옥수수	8,497.8	2,651.3	옥수수	5,929.7	1,324.4
밀	1,215.2	349.1	밀	1,505.4	722.7	밀	1,057.8	310.4
돼지고기	92.2	222.6	대두	512.6	283.5	쇠고기	61.5	285.5
사료용 근채류	747.4	194.4	돼지고기	106.4	250.3	대두	409.5	213.1
침엽수원목	656.0	136.0	사료용 근채류	732.8	217.5	돼지고기	95.9	201.9
로얄제리	5.5	130.4	쇠고기	32.4	197.1	펄프	357.4	195.3
오렌지	77.9	118.3	침엽수원목	722.5	168.9	혼합조제 식료품	10.6	173.7
소고기	14.1	94.0	로얄제리	6.8	135.5	사료용 근채류	653.9	153.9
명태	23.2	50.2	오렌지	106.2	116.1	침엽수원목	805.9	152.6
대두유	56.7	46.0	양조박	311.7	86.0	면	71.1	98.1

자료 : 농수산물무역정보(KATI)

나. 중국

(양자협상협력과 사무관 김규)

한국과 중국의 농식품 교역은 1992년 8월 한·중 수교 이래 급격히 증가되어 왔다. 2009년 기준 중국은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에 많은 농식품을 수출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일본 다음으로 중국에 많은 농식품을 수출하고 있다.

2009년 양국 간 농식품 교역량은 한국이 중국에 565백만 불을 수출하고 있고 중국은 한국에 3,676백만 불을 수출하고 있다. 전체산업 분야로는 한국이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농식품분야에 있어서는 대중국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양국 간 통상현안 협의는 매년 개최되는 한·중경제공동위원회와 한·중 무역실무회담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에 대한 전체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농식품의 대 한국 수출 증대에 관심이 매우 크다. 중국은 2001년부터 지속적으로 조정관세폐지 및 세율인하, 수입입찰제도개선, 중국산 과일수입문제 등 경제·통상분야의 관심사항을 제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요청사항에 대해 국제기준에 입각한 동·식물 검역제도 및 수입절차를 설명하고 상호간 협력을 통하여 무역마찰을 최소화하면서 공동 번영을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한편, 양국 간 농업의 상호보완적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1996년 한·중 농업분야의 전반적인 교류협력강화를 위해 양국 간 한·중 농수산협력위원회를 설치하였다. 2009년 6월 북경에서 제11차 회의를 개최하는 등 양국 농업분야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함에 따라 WTO, APEC등 각종 국제기구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2002년 제7차 회의시 한·중 농수산협력위 설치에 관한 양해각서를 개정하고 종전 정보교환 및 기술교류 위주의 협력을 농업정책 및 통상분야 협력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편, 2005년 11월 “김치 기생충알 파동”이 한·중간 통상 마찰로 촉발되면서 양국 간 농식품 안전성에 대한 교류 및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양국은 “한·중 품질감독검사검역협의체”의 조기 개최에 합의하고, 2006년 1월 제1차 회의를 북경에서 개최한 이래 양국 간 교대로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제3차 회의가 2008년 8월 북경에서

개최되었다. 본 협의회를 통해 공산품 뿐만 아니라 식품, 농식품의 검사검역을 논의함으로써 양국 간 농식품 안전성 제고를 위한 교류와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 일본

(양자협상협력과 사무관 김규)

일본은 세계 최대의 농산물 수입국으로서 우리 농수산물식품의 가장 큰 수출 시장이다. 2009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 일본 농수산물 수출 규모는 1,580백만 달러로 총 수출액 21,770백만 달러의 7.3%를 차지한다.

일본은 우리와 농업여건이 비슷하고 농업통상 분야에서 유사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 WTO, FAO, OECD, APEC 등 다자간 국제기구에서 상호 정보교류와 공조체제를 원만히 유지하고 있고, 양국 주재공관 등 외교채널을 통한 협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998년 10월 8일 한·일 양국 정상은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위한 행동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양국을 둘러싼 새로운 경제정세를 기초로 포괄적인 경제통상 분야의 협의를 위한 “한·일 고위경제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2008년 10월 제7차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어 다자 및 지역차원의 협력, 양국 통상 분야 협력에 대하여 폭넓게 논의하였다.

양국 정상간 합의에 따라 농업 분야의 고위급 대화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2003년 3월 21일 동경에서 제4차 한·일 농업각료회의를 개최하였다. 동 회의에서 양국 농업장관은 WTO 차기 농산물협상에서의 공동대응 합의 및 새로운 농업정책 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상시적으로도 각종 채널을 통해 정보 교환 및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한·일 양국은 상호보완적 농업기술협력의 필요성을 일찍부터 인식하여 1968년부터 한·일 농림수산물기술협력위원회를 매년 교환 개최하여 농업기술협력 및 정보교류를 추진하여 왔으며 제42차 회의를 2010년 1월 한국에서 개최하였다.

한편, 일본은 2003년 5월 식품위생법을 개정, 농림축산물의 생산·가공 단계 등에서 사용되어 식품에 잔류할 가능성이 있는 농약, 동물용 의약품 및 사료 첨가물을 적극적으로 규제하는 포지티브리스트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06.5.29일부터 동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동 제도 시행 전 일본과의 협의를 통해 일본 내 잔류허용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약 14개 종류에 대하여 우리 기준을 반영시켰으며, 관심 품목에 대한 우리 측 잔류기준을 추가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일본 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나가는 동시에 수출농산물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라. 캐나다

(양자협상협력과 수의사무관 김용상)

캐나다산 농산물은 2008년 약 5.9억 달러 수입되었으며, 주요 품목은 제분용밀·유채유·보리·알팔파·돼지고기·치즈·감자제품 등이다. 반면 우리나라 농산물은 라면·감귤·배·비스킷 등이 수출되고 있으며, 2007년 약 0.3억 달러에 그쳐 양국 간 농산물교역은 그리 활발한 상황이 아니다.

그러나 캐나다 경제의 많은 부분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문제점을 벗어나기 위해 최근 들어 우리나라 농산물 시장개척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세가 높거나 차별대우를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자국 관심품목에 대해 유사제품과 동일한 우대조치를 부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캐나다와는 한·캐나다간 자유무역협정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다. 캐나다측은 2003년 5월 광우병(BSE) 발생이후 금지된 자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와 2007년 5월 국제수역사무국에서 미국과 동일한 소해면상뇌증 위험통제국 지위를 부여 받은 것을 근거로 미국과의 차별 없는 수입조건 설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우리 측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양국 간 전문가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할 사항이라는 입장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캐나다측은 2009년 4월 9일 우리나라를 WTO에 제소하여 8월31일 분쟁패널이 구성되는 등 현재 WTO 분쟁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캐나다는 우리나라에 블루베리의 수입허용을 촉구하고, 캐나다는 2009년 8월 제정된 북미 식물검역보호기구(NAPPO) 지역위생기준을 통해 캐나다에 출입 또는 수출되는 선박과 화물에 대한 아시아매미나방(AGM) 무감염 증명 규정을 2012년 3월부터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 및 주한 캐나다대사관과의 공식·비공식 협의 등을 통해 통상현안 및 협력문제를 풀어가고 있다.

<표 1-3-13> 농축수산물 수출입 실적

(단위 : 천US불)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09/'08
수출	31,713	33,602	35,800	32,268	34,936	39,089	44,471	12.2%
수입	284,565	313,887	536,030	493,359	536,382	587,017	749,131	21.7%

출처 : 농수산물무역정보(KATI)

<표 1-3-14> 주요 수출 농축수산물

(단위 : 천US불)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09/'08
합계	31,713	33,602	35,800	32,268	34,936	39,083	44,471	13.8%
라면	8,188	8,012	8,070	4,680	3,947	4,000	3,780	-5.5%
곡류조제품	1,177	1,293	1,661	2,598	1,952	1,791	1,629	-9.1%
비스킷	475	913	1,131	1,436	1,727	1,824	1,685	-7.6%
김	1,317	1,594	1,834	1,758	1,661	2,412	3,090	28.1%
기타음료	161	250	637	1,230	1,527	1,614	1,853	4.4%
국수	631	825	974	989	1,502	1,720	1,535	-10.8%
기타 파스타	926	981	978	1,271	1,427	1,911	1,801	-5.8%
기타 식물성검질물	363	607	1,359	1,183	1,425	1,504	1,303	-13.4%
기타 베이커리제품	893	794	349	417	1,104	877	901	2.7%
미역	486	457	710	776	898	627	457	-27.1%
배	698	1,398	1,186	618	768	667	963	44.4%

출처 : 농수산물무역정보(KATI)

<표 1-3-15> 주요 수입 농축수산물

(단위 : 천US불)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09/'08
합계	284,565	313,887	536,030	493,359	536,382	587,017	749,131	27.6%
돼지고기	23,902	39,022	84,545	104,636	117,386	126,610	102,705	-18.8%
침엽수 원목	31,403	36,950	43,228	56,607	70,666	58,607	60,882	-4.3%
침엽수 제재목	18,693	32,653	25,807	35,167	47,230	43,668	39,620	-9.3%
밀	30,511	38,861	197,240	100,006	41,181	101,018	62,650	-38.0%
유채유	9,870	12,527	13,164	13,871	30,682	46,599	26,762	-42.6%
우지	5,732	15,861	19,224	26,910	25,897	25,188	26,458	5.0%
바다가재	24,791	21,831	17,709	18,055	19,598	17,818	14,508	-18.6%
우유조제품	3,917	13,440	12,736	14,825	19,432	815	-	-100%
사료용 근채류	2,281	5,136	10,792	11,860	12,259	7,245	2,445	-66.3%
파티클보드	2,964	1,765	3,288	7,131	11,349	7,261	9,957	37.1%
섬유판	8,376	2,619	1,284	2,268	10,783	6,431	652	-89.7%
보리	5,691	6,797	12,149	7,385	9,945	12,181	9,547	-21.6%
로얄제리	6,919	8,089	9,797	11,240	9,899	9,426	88	-99.7%

출처 : 농수산물무역정보(KATI)

마.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양자협상협력과 주무관 김윤희)

유럽연합(EU)과 우리나라와의 농림축수산물교역은 전체 규모에서의 비중은 크지 않으나, EU는 우리나라의 농림축수산물 수출액이 약 1.9억 불('08)로 세계 5번째로 큰 수출 대상국이며, 수입은 20.4억 불('08)로 미국, 중국에 이어 3번째로 큰 수입국이다. 이와 같이 농림축수산물의 경우, EU로부터 수입이 수출보다 월등히 많은 교역 구조이며, 한국과 EU간에는 주로 EU에서 한국으로의 농림축수산물 수출과 관련한 위생 및 검역 문제가 양측 간 통상현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위생 및 검역 현안의 대부분은 아직까지 한국으로의 수입이 허용되지 않은 EU 회원국산 동물·동물성산물 및 식물·식물성산물의 수입문제이다. 이들 현안들은 주로 한국과 EU개별 회원국의 관련 당국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해진 수입위험평가 절차에 따라 검토되고 있다. 이 이외에도 이미 수입이 허용된 품목의 교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안에 대하여도 개별 회원국과 기술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EU 집행위 차원에서는 2001년 4월 1일에 발효된 한·EU 기본협력협정 하에 설치된 한·EU 공동위원회에서 농업분야 의제도 포함하여 논의해 오고 있는 바, 특히 동 공동위원회 산하에 농업 실무 작업단을 구성하여 양자 간 농업통상 현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함으로써 통상현안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고 있다.

2009.2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7차 한·EU 공동위원회에서는 한국 측 관심사항으로서 한국산 분재 및 묘목의 EU 수출과 관련된 문제가 논의되었다. EU측은 한국산 편백나무속 등 3개 속의 분재에 대해 2~3년마다 수입허용기간을 설정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바, 한국 측은 검역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수입허용기간을 별도 설정하지 말고 수입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EU측은 '08.10월부터 산림해충의 일종인 알락하늘소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EU로 수출되는 동 해충의 기주식물(동 해충이 가해하는 식물)은 방충 시설이 구비된 장소에서 2년 간 재배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한국에서 EU로 수출되는 단풍나무 등의 묘목과 분재가 주로 이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는 바, EU측의 요건에 부합시키기 위하여 당장 방충시설을 설치하더라도 2년간은 수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측은 2년 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것을 요구하였으

나, EU측은 전 세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요건이기 때문에 한국에 대하여만 예외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EU측 관심사항으로는 EU산 쇠고기 문제 및 프랑스산 에멘탈 치즈 문제가 논의되었다. EU측은 관련 국제기준에 따라 유럽산 쇠고기의 수입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해 오고 있으며, 우리 측은 유럽산 쇠고기와 관련해서 소비자의 우려 및 정서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에멘탈 치즈와 관련해서는 에멘탈 치즈에서 검출되는 프로피온산에 대한 문제로서 한국은 수입 치즈에서 프로피온산이 정해진 기준(3g/kg)을 초과할 경우 불합격 처분하고 있는데, EU측은 프로피온산이 에멘탈 치즈 제조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우리 측은 자연 발생하는 프로피온산에 대하여는 인정 가능하나, 문제는 도착지 검역과정에서 검출시 프로피온산이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인지, 인위적으로 첨가한 것인지 구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CODEX(국제식품규격)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육류 수출작업장을 승인하는데 있어 일괄 목록 승인방식(pre-listing)을 채택하여 달라는 요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이 방식을 인정하나, 회원국별로 신청을 받아 위생상황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등 세계무역기구의 위생 및 검역협정(WTO·SPS), OIE, 국제식물보호협약(IPPC) 및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등 국제기준의 기초 하에서 이들 통상 현안에 대한 협의해 오고 있다.

바. 중남미 국가

(양자협상협력과 주무관 김윤희)

중남미 국가는 지정학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더욱이 농작물 및 가축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중해과실파리나 구제역 등이 발생하고 있어 농산물 수출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농산물 교역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등 일부 국가로부터 농산물 수입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동식물 검역상의 문제가 해소될 경우에는 농산물교역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브라질은 세계 제2위의 농업국가로서 생산량과 수출량에 있어서 세계 1, 2위를 다투는 옥수수, 대두박, 커피, 오렌지 등 검역문제가 해소된 농산물을 중심으로

한국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대두유, 옥수수, 대두박의 수출이 많은 편이다. 칠레와는 2004년 한·칠레 FTA 체결 이후로 포도, 포도주, 키위, 돼지고기 등을 중심으로 농산물 교역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남미국가는 동·식물 위생 및 검역 문제로 인하여 우리나라로 농산물을 수출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 때문에 ABC국가(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를 위시하여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들이 자국산 농산물에 대한 수입 허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 주요 국가 및 세부 품목을 살펴보면, 아르헨티나의 오렌지·쇠고기 및 가금육, 브라질의 망고·감귤류·쇠고기 및 돼지고기, 칠레의 블루베리, 쇠고기, 멕시코의 페르시안 라임 및 가금육, 페루의 포도, 우루과이의 감귤류 및 쇠고기 등이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들 지역에 상대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채소종자와 사과·배 등 과일류를 수출하기 위해 식물검역상의 수입제한조치가 해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브라질·아르헨티나·칠레 등의 열대과일 및 육류의 시장개방 요청에 대하여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WTO·SPS)」과 「국제식물보호협약(IPPC)」, 「국제수역사무국(OIE)」 등 국제기준에서 설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상대국의 위생상황에 따라 수입허용 여부를 결정하며, 그 외의 농산물의 경우 UR협상에서 양허한 범위에서 수입관리제도를 투명하게 운용하고 있음을 적극 설명하며 대응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식량 및 유전자원의 확보 등 자원 외교적 측면과 농업분야 국제협상에서의 협력 유도를 위한 여러 국가들 간의 농업협력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05년 5월에 중남미국가 중 처음으로 브라질과 「한·브라질 농업협력위원회 설치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바 있으며, 2006년 2월에는 브라질에서 1차 농업협력위원회 개최, 2008년 8월에는 서울에서 2차 농업협력위원회가 개최되는 등 양국의 농업부문 협력을 위하여 정보교환, 전문가 교환, 공동연구 등 농업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 아시아·아프리카 국가

(양자협상협력과 농업주사보 유미량)

아시아 및 아프리카지역은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나 농업협력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지역이나 풍부한 천연자원 등을 기반으로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세안 등 동남아국가들은 지리적으로 근접한 농업국가로 미작 농업을 위주로 하고 있는 등 우리나라 농업과 유사한 측면이 많아 이들 국가와의 농업교류를 통한 협력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이들 나라는 전통적인 농업국가로 우리나라와의 교역에서 무역적자를 내고 있는데, 매년 무역불균형 해소를 내세워 개별상품에 대한 관세인하, 검역기간 단축 및 절차간소화, 열대과일·축산물 등 농산물수입허용, 검역협정체결 등 자국산 농산물 대한국 수출 확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양국 정상회담을 비롯하여 농업장관면담, 경제공동위, 주한주재관 면담 등 다각적인 협의 통로를 통해, UR 등 국제적 협상 결과에 따른 우리나라 농산물수입관리 제도 이해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동·식물 검역현안에 대하여는 WTO·SPS규정 및 IPPC(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국제식물보호협약), OIE 등 관련 국제기준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입허용절차가 운용되고 있음을 설명함으로써 통상마찰을 예방하고 있다.

이에 더해 매년 ASEAN 회원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지역 검역 전문가를 초청하여 우리나라 검역시스템을 소개하고 참가국간 정보 및 의견을 교환하는 식물검역 전문가 초청연수 및 축산물안전관리세미나 등을 실시하여 우리나라 수입허용절차 등 동식물 검역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아시아·아프리카 각국과의 주요한 통상협력채널로는 ASEAN+3 농림장관회의,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이란, 남아공 등과의 정례적인 경제공동위 및 무역공동위를 개최하고 있으며, 수시로 농업장관회담 및 통상장관, 외무장관회담을 통해 양국 농업교류 확대 및 기술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제2편

2009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제1장

총론



1. 서론

(기획재정담당관실 서기관 박선우)

우리나라 농어업·농어촌은 대외적으로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적 실물경기 침체와 한·미 FTA, 한·EU FTA, 한·캐나다 쇠고기 협상, WTO·DDA 협상 진전 등에 따른 개방경제 추세로 인해 농어업분야 경쟁도 가속화되었다.

원화가치 하락으로 인한 사료·비료 등 농자재 가격의 불안요인 상존과 경기침체로 인한 대외수요 감소로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환율인상, 한식에 대한 관심 증대로 농식품 수출에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하여 농림수산물 수출액은 증가하였다.

대내적으로는 농수산물의 과잉생산기조에도 불구하고 경기불황에 따라 소비위축 등 농림수산물 관련 산업의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한식에 대한 관심 증대로 농식품산업 부가가치 중 식품제조업 부문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이후 식품구입시 안전성과 품질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등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졌으며, 주 5일 근무가 정착되면서 농산어촌 체험관광에 대한 수요와 관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대내외 여건 변화가 우리나라 농정에 미치는 영향에 적절히 대응하고, 우리 농어업·농어촌을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기를 넘어 새로운 농식품의 시대'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농정변화와 개혁, 농어업 역량 강화, 농수산식품 수요창출,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여 농어업 선진화 기반 마련, 농식품 R&D 추진체계 개편, 식품안전 유통투명성 제고, 식품산업 발전기반 마련, 농어가 소득·경영 안정 강화, 해외자원개발 및 협력 강화 등의 분야에서 각종 시책을 추진하였다. 2009년도에 추진된 농정 시책의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2009년도 농정 시책 주요 성과

가. 농어업 선진화 기반 마련

정부는 농어업계·소비자·정부가 참여하는 ‘농어업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동발표문을 채택('09.7월)함으로써 소통과 거버넌스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농협개혁의 1단계로 농협의 운영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의 농협법 개정(4월)을 추진하였고, 2단계로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을 추진 중에 있다(12월 농협법 개정안 국회 제출).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를 위해 농지법을 개정(11월)하여 한계농지 소유·전용규제 및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요건 등이 완화되었다.

나. 현장 수요자 중심의 농식품 R&D 추진체계 개편 추진

정부는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을 제정(4월)하여 농식품 R&D의 총괄조정 및 평가 기능체제를 구축하였다.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 구성,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및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설립 등의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농림수산식품 R&D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12월)하였다.

다. 식품안전 및 유통투명성 제고로 소비자 신뢰 향상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강화 및 쇠고기 이력제 확대 등으로 인해 '08.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이후 국내산 쇠고기 시장점유율이 상승하였으며, GAP·HACCP 등 생산단계 위해관리 시스템 및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여 안전성 적합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라. 식품산업 발전기반 마련 및 농식품 수출확대

정부는 식품산업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및 김치연구소 입지선정 추진과 우리 술 산업대책 및 쌀 가공 산업 대책 등을 마련하였다.

막걸리가 2009년도 히트상품 1위로 선정되는 등 한식세계화 붐을 조성하는데 노력함과 아울러 농식품 수출도 48억 불로 7%나 증가하는 등 식품산업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들을 이루었다.

마. 농어가 소득·경영 안정 강화

지역농협에 임대 전담센터 670개소를 설치하여 논농사용 중고농기계 매입 및 28천 ha 농작업을 대행하는 등 농기계 임대사업을 활성화하여 농가부담을 경감하였으며, 경영이양직불 지급 연령을 70세에서 75세로 상향조정하는 등 각종 직불제를 확충하였다.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매입을 통해 농가 경영회생지원을 강화하고 농어업 재해보험의 대상품목을 28개 품목('08)에서 34개 품목으로 확대 개편하였다. 또한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응하여 면세유, 화학비료, 사료 등에 대한 농어가 긴급 경영안정 지원을 추진하였다.

바. 해외농어업자원개발 및 국격 제고를 위한 해외협력 강화

정부는 민간주도의 식량 및 사료자원 확보를 위해 '해외농업개발 10개년 기본계획'을 수립(6월)하였다. 또한, 한·러 정상회담('08.9월)의 성과로 양국 간 불법어업방지 협정을 체결('09.12월)하고 '10년도 명태쿼터 45천 톤을 확보하였다.

적극적인 정상외교를 통해 인도네시아 및 캄보디아에 40만ha의 조림지를 확보하였으며, 아시아 기후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창설에 합의(6월)를 완료하여 '10년도에 설립을 추진 중에 있다.

제2장

농가소득 증대 및 경영 안정화



제1절

농업인 소득 증대

1. 직불제 개편 추진

(농업정책과 사무관 정용호)

가. 추진배경 및 개요

WTO 출범 이후 다양한 직불제를 도입, 농가 소득안정에는 기여 하였으나, 여러 유형의 직불제 혼재로 집행·관리비용 증가, 품목간 형평성(대부분 쌀에 집중) 문제 등이 발생하였다.

<표 2-2-1> 국내 직불제 현황

직 불 제 명	주 요 내 용	예산(억 원)	
		'08	'09
□ 공익형 직불제		7,837	7,943
쌀소득보전 고정직불('01,'05)	○'98~'00 논 농업이용농지(형상·기능유지), 평균 700천 원/ha	7,116	7,088
친환경농업 직접직불('99)	○친환경인증농가, 217~794천 원/ha, 3년간	263	423
조건불리지역 직접직불('04)	○경지율 22%이하, 경사도 14%이상, 200~400천 원/ha	432	336
경관보전 직접직불('05)	○경관작물재배, 마을협약체결, 1,000~1,700천 원/ha	26	96
□ 경영안정형 직불제		6,330	1,076
쌀소득보전 변동직불('02,'05)	○벼재배농지, 목표가격-쌀값의 85% - 고정직불	5,330	676
FTA피해보전직불('04)	○수입량증가·가격하락시 하락분80%, 시설포도·키위	1,000	400
□ 구조조정 직불제		1,300	1,345
경영이양 직접직불('97)	○65~74세, 진흥지역농지, 250천 원/ha	300	845
폐업지원('04)	○시설포도·키위·복숭아, 33~104백만 원/ha	1,000	500
□ 기타 직불제		1,032	1,537
농작물재해보험('01)	○70, 80% 보장, 20품목('09년 시범사업 5)	596	618
송아지생산안정사업('01)	○두당 10천 원납부, 최대 30만 원/두	149	641
축산공제료 지원('97)	○공제료 50%지원	287	278
□ 직불성 복지사업		2,976	3,399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04)	○5ha미만농가, 0~5세, 59~260천 원/월	411	406
농어민건강보험료지원('04)	○읍·면 농업인, 50%경감	1,356	1,707
농어민연금보험료지원('95)	○연금보험료 일부(최대 50%)지원	884	917
재해공제농업인지원('96)	○공제료 50%지원	278	322
취약농가인력지원('06)	○36,400원/일, 최대 10일 지원	47	47
계		19,475	15,300

이에 따라 농어업선진화위원회에서는 직불제 대상 및 목적에 따라 정책목표를 분명히 하고, 여러 가지 유형의 직불제를 전체적인 계획 하에 통합·개편하기로 하였다.(2009.7.27)

나. 추진내용 및 성과

각 직불제의 특성과 국내의 도입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행 직불제를 i)공익형 직불제와 ii)경영안정형 직불제 등 2가지 유형으로 통합·개편을 추진 중이다.

<표 2-2-2> 직불제 개편방향

구 분	공익형 직불	경영안정형 직불
목 적	농업의 다원적 기능 제고	농가의 경영위험 완화
보조성격	WTO 허용보조	WTO 감축보조
대 상	프로그램 참여 농가	경영위험이 큰 주업농
조건·기반	○ 합리적인 상호준수의무 프로그램, 마을계획 수립, 협약 체결 등 필요 ○ 행정수요·비용이 비교적 적게 발생	○ 농가별 소득정보의 체계적 파악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필요 ○ 모니터링 등에 많은 행정수요·비용 발생
대상직불제	쌀고정직불, 조건불리직불, 경관보전직불, 친환경농업(축산)직불	쌀변동직불, FTA피해보전직불
예산('09)	7,943억 원	1,076억 원
비 고	EU	미국, 캐나다

1) 공익형 직불

현재 쌀(논)고정직불을 전체농지로 확대하여 농업의 다원적 기능 제고와 함께 농가에 대한 기본적인 소득보전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2) 경영안정형 직불(농가단위 소득안정제)

공익형 직불의 기본적인 소득보전 바탕위에 농가별 경영위험까지 관리할 계획이다.

다. 평가 및 향후계획

현행 9개 직불제를 공익형과 경영안정형 직불제로 통합·개편함으로써 공익적 직불제를 통해 중소농에 대한 기본적인 소득보전 수준을 높일 수 있고, 주업농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안정형 직불제를 통해 규모화된 농가의 경영위험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직불제 개편을 추진 중이며, 경영안정형 직불제는 '10년도부터 도상연습을 실시하여 사업시행여건을 조성하고 문제점 보완 후 본격 시행할 계획이며, 공익형 직불제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세부실시 프로그램을 만든 후에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농가소득안정추진단 사무관 강경란)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쌀 협상이후 시장개방 폭의 확대와 쌀값 하락, 이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시장개방 폭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쌀 산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쌀값 하락으로 농가소득이 감소하더라도 적정수준의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영규모를 확대하고, 쌀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를 확충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쌀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업인들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기존 쌀소득보전기금법을 전면 개정한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종전 논 농업직불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WTO규정상 환경보전직불제로 분류되어 허용보조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환경농법과 일반농법과의 생산비 차액만큼만 지급되어야 하므로 지급단가를 지속적으로 또는 대폭 인상하기는 어려우며 또한 종전 쌀소득보전금은 WTO가 규정한 감축대상보조로 5개년 중 최고·최저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설정함에 따라, 쌀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경우 또는 쌀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이를 적절히 신속하게 보전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새로운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논 농업직불제는 생산중립적직불제(decoupled income support)인 고정형직불제로 전환하고, 쌀소득보전제는 쌀값하락에 따른 실질적인 보전이 되도록 쌀값 하락폭과 연동하는 변동형직불제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를 개편하여 시행(2005년 7월 1일)하였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는 정부가 목표가격을 정하고 수확기(당년 10월~익년1월) 산지 평균 쌀값이 목표가격보다 낮을 경우 떨어진 금액의 일정부분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목표가격은 5년마다 변경하되,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005년산부터 적용되고 있는 목표가격은 2001~2003년도 평균 수확기 산지 쌀값과 추곡수매제 직접소득효과, 2003년도 논 농업직불제 소득효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쌀 80kg 한 가마당 170,083원으로 설정하였다.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은 고정직접지불금과 변동직접지불금으로 나누어지며, 고정직접지불금은 쌀값과 관계없이 ha당 평균 70만 원을 벼 재배여부 및 타 작목 재배와 상관없이 지급하며, 변동직접지불금은 벼를 재배한 면적에 대하여 목표가격과 수확기 산지 평균 쌀값과의 차액의 85%에서 고정직접지불금 지급 단가를 빼고 남은 금액을 쌀을 생산한 농업인들에게 지급한다.

2008년도 하반기에 전문직 종사자 등 사회지도층 일부가 실제 논 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부당수령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국회에서는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부당수령사건실태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8년도에 국정조사를 실시하였고, 정부에서는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부당수령 여부에 대한 특별조사를 2008년 10월부터 추진하였으며, 2009년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제도를 개선하였다.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한 제도개선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쌀 직불금 신규 진입자 자격요건을 신설하였다.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쌀 직불금 지급대상자는 '05년부터 '08년까지 기간 중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로 한정하고, 후계농업경영인 등 “신규진입” 요건을 갖춘 자는 예외를 인정하였다. 다만, 도시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그동안 쌀 직불금을 1회 정당하게 받았을 경우에도 “농업을 주업”으로 해야 지급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강화하여 부채지주들이 부당하게 쌀 직불금을 받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였다.

또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 원 이상인 자는 쌀 직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쌀 생산 농업인들의 소득안정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는 쌀 직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등 사람에

대한 자격요건을 대폭 강화하였다.

둘째는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조정하였다. 대규모 농업경영체에 쌀 직불금이 과도하게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농업인은 30ha, 법인은 50ha까지만 쌀 직불금을 지급하는 지급상한 면적을 도입하였으며, 아울러 지금까지는 부당수령한 사람만 등록제한 조치하던 것을 2009년도부터는 부당수령한 사람이 소유한 농지도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하도록 지급대상 농지를 조정하였다.

셋째는 실제 논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이 부당하게 쌀 직불금을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경작 여부 확인체제를 강화하였다. 우선 쌀 직불금 등록신청 기관을 주소지 읍·면·동에서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으로 변경하고, 실제 경작여부 확인을 위해 경작사실 확인서(관내는 이장이 확인, 관외는 이장과 마을 주민 3명이 확인) 및 비료·농약구입 영수증 등 영농기록(관내경작자는 1건 이상, 관외경작자는 2건 이상) 제출을 의무화 하였다.

아울러 쌀 직불금 등록신청자들의 논 농업 종사 여부 확인을 강화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농업인단체, 이·통장 등 민간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부재지주들의 부당 수령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넷째는 쌀 직불금을 부당하게 신청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민간감시체계를 구축하였다. 논 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직불금을 수령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건당 10만 원, 연간 100만 원 범위 안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및 시·군·구 홈페이지에 쌀 직불금 신청자와 수령자의 성명(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을 최대 30일간 공개하도록 하여 쌀 직불금을 부당하게 신청하는 것을 방지하였다.

다섯째는 부당하게 등록한 자 또는 수령자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였다. 부당하게 등록 또는 수령한 자와 허위로 경작사실을 증명해 준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부당하게 쌀 직불금을 수령할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과 그 금액의 2배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고, 만약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9/100까지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또한 부당 등록자 또는 수령자는 종전에 3년간 등록제한 하던 것을 5년간 등록제한 하도록 대폭 강화하였다.

끝으로 종전 행정안전부의 쌀 직불금 농촌행정전산시스템을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 받아 새로운 Agrix시스템을 개발하여 사용함으로써 시·도 또는 시·군간 중복 신청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토지대장, 농지원부 등 관련 자료와 일괄 대조함으로써 부당하게

직불금을 신청하는 것을 시스템적으로 방지하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2009년도에는 '08년산 쌀 가격이 80kg당 162,307원으로 높게 형성되어 변동 직불금 지급요건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고정직불금을 80kg당 약 11,475원 지급함으로써 목표가격(170,083원/80kg) 대비 102.2% 수준의 소득을 보전하였다.

구 분	고정직불금			변동직불금			총지급액
	농가수 (천호)	면적 (천ha)	금액 (억 원)	농가수 (천호)	면적 (천ha)	금액 (억 원)	고정+변동 (억 원)
2009년산	866	891	6,328	815	809	5,945	12,273
2008년산	1,097	1,013	7,118	-	-	-	7,118
2007년산	1,077	1,018	7,120	1,020	933	2,792	9,912
2006년산	1,050	1,024	7,168	1,000	951	4,371	11,539

다. 평가 및 향후계획

쌀 소득 보전직불제는 2008년도 하반기부터 불거진 쌀 직불금 부당수령과 관련된 제도개선이 '09년에 마무리되었으며, 쌀 직불제가 쌀 생산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에 더욱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동 제도가 농업현장에 정착되도록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는 한편, 제도 운영상의 농업인의 불편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

3. 경영이양직불제

(농가소득안정추진단 서기관 김문갑)

가. 추진배경 및 개요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은퇴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전업농의 영농규모 확대를 촉진함으로써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라 '97년부터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동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직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에 종사한 농업인으로서 연령이 65세 이상 70세 이하인 농업인이 소유농지를 전업농 등에게 매도·임대하는 경우 연령에 따라 최장 10년간 ha 당 25만 원(연간 300만 원)을 매월 분할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 상한은 매도 및 임대 각각 2ha까지로 되어 있다.

특히, '09년도에는 한·미FTA 체결에 따른 국내 농업부분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를 확대·개편함에 따라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진흥지역 논에 한정 하던 것을 진흥지역 내 논·밭·과수원으로 확대하고, 신청연령을 63~69세에서 65~70세로 조정('09년 한시적으로 74세까지 신청 가능)하고, 지급기간을 75세까지 최장 10년으로 연장하며, 임대하는 경우에도 매도할 때와 마찬가지로 75세까지 분할지급하고 지급단가를 상향하는 등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을 개정하여 '09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경영이양직불사업은 '97~'09년까지 경영이양 농업인 87.6천 명에게 직불금 1,837억 원(1인당 21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경영이양 농지 61.6천ha를 전업농 59천 명에게 이양하여 전업농 1인당 1.04ha의 영농규모를 확대하였다.

다. 평가 및 향후계획

고령농업인의 강한 농지소유욕, 기계화 등으로 인한 농업경영의 편리성으로 경영이양직불사업에 참여하려는 고령농업인 감소로 예산 불용이 발생함에 따라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인 농지 양수대상자 범위를 농업경영 3년 이상인 45세 이하 농업인까지 확대하는 등 사업 활성화를 기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4.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

(친환경농업과 사무관 류성모)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친환경농업실천농업인의 초기소득 감소분 보전과 농촌 환경을 개선하여 친환경농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1999년부터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을 도입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는 그 동안 상수원보호구역 등 환경규제지역 내의 농경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실천기준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지원하였으나 2002년부터는 수준 높은 친환경농업으로 육성·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전국의 저농약 이상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소득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1999년부터 2001년까지는 10천ha를 대상으로 매년 57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2002년에는 5천ha에 30억 원을 지원하였고, 2003년에는 10천ha를 대상으로 30억 원, 2004년에는 13천ha에 45억을 지원하였다. 2005년에는 21천ha를 대상으로 82억 원, 2006년에는 35천ha를 대상으로 141억 원, 2007년 45ha를 대상으로 175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다. 2008년에는 63천ha를 대상으로 263억 원, 2009년에는 90천ha를 대상으로 345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2010년에는 141천ha를 대상으로 49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을 통하여 친환경인증면적이 매년 급속도로 증가하며 농업환경개선과 친환경농업 확산에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 친환경농산물생산은 2001년 전체농산물생산량의 0.2%에 그쳤으나 2009년에는 12.2%로 매년 20%이상 급성장하고 있으며 2001년 대비 60배 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화학비료 사용량이 1998년에 410kg/ha에서 2009년에는 267ka/ha로 큰 폭의 감소를 이루는 등 농업환경개선에도 일조하였다.

다. 평가 및 향후계획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은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실천 환경조성 및 농업환경개선에

기여를 하고 있다. 하지만 2003년에 설정된 지급단가는 친환경농업인의 소득감소분을 보전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지급단가 및 지급기간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개편을 통하여 실질적인 친환경농업 육성 및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5. 친환경 안전축산물 직접지불제 도입

(축산정책과 사무관 한철수)

가. 추진배경 및 개요

2004부터 2006년까지 3년간 친환경축산직불제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바 있었으나,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의 어려움 등 제도운영과정에서의 일부 문제점 발생 등으로 '07년부터 사업을 중단하였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건강과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축산정책을 2007년 무항생제 축산물인증제와 환경친화축산농장 제도 도입 등 친환경축산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고 경종농가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유기 또는 무항생제축산물 생산농가 등 친환경축산 실천 농가에 대한 새로운 지원방안이 필요하여 2009년부터 친환경 안전축산물 직접지불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사업목적은 환경보전, 축산물의 안전성보장 및 소득유지 등을 동시에 추구하고, 환경오염 발생 등을 최소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을 구축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통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사업주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담당하고, 지원대상은 HACCP 지정을 받은 농장 중 유기·무항생제 축산물을 생산·판매하는 농가이며, 지원 대상 축종은 한육우·젓소·돼지·닭 등 4개 축종을 정하여 추진하였다. 보조금 지급기준은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실적에 따라 지급하고, 지급기간은 경종농산물과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농가당 3년간 지원하기로 하였다. 농가당 지원한도는 20백만 원으로 제한하였으며 지원 단가는 <표2-2-3>와 같다.

<표 2-2-3> 친환경안전축산물 직접지불제 지원 단가

(단위 : 마리, L, 원/개)

구 분	한우	젓소(우유)	돼지	산란계(계란)	육계
유 기	170,000	50/L	16,000	10/개	200
무항생제	65,000	10/L	6,000	1/개	60

주 : 육우는 한우의 50%감액, 토종닭은 육계의 30%증액 지급

2009년도에는 예산 1,000백만 원 중 58농가에 743백만 원(유기 24, 무항생제 719)이 집행되었으며, 2010년에는 3,000백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다.

6.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농가소득안정추진단 서기관 김문갑)

가. 추진배경 및 개요

2005년 기준으로 농어촌 지역(읍·면)의 면적은 전 국토의 90%에 달하지만 농어촌 거주인구는 전체인구의 18.5%에 불과하며 그 비율이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다. 걱정 농어촌의 인구 확보 없이는 정주에 필요한 기초서비스 공급은 물론 새로운 경제활동 기회 창출도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농어촌의 인구과소화 및 지역사회 붕괴는 많은 농어촌 문제 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은 이러한 농어촌의 인구과소화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04~'05년의 시범사업을 거쳐 '06년부터 본 사업을 실시하였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지원대상이 되는 조건불리지역은 경지율이 22% 이하이고, 경지경사도가 14% 이하 경지면적이 50% 이하인 지역을 법정리 단위로 선정하고 있다. 직불금은 조건불리지역이 속한 읍·면 또는 해당 법정리에 연접하는 읍·면에 실거주하며 농지관리 의무를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지급되며, 직불금의 30% 이상을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2009년에는 기존의 사업대상 법정리 중 현행 조건불리지역 선정기준 적용시 제외되거나 추가되는 지역이 발생하여 동사업의 대상 법정리를 기존 3,185개에서 3,144개(전국 읍·면 지역 15,292개 법정리 중 20.6%)로 조정하였으며 297억 원의 직불금이 지급되었다.

다. 평가 및 향후계획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은 '04년 제도도입 당시의 지급단가가 변동없이 유지되어 그동안 꾸준히 지급단가 인상의 필요성이 논의되어 2010년부터는 밭 50만 원/ha('09년 40만 원), 초지 25만 원/ha('09년 20만 원)으로 지급단가를 25% 인상하였다.

향후, 조건불리지역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고려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비 부담완화를 직불제 제도개선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검토할 계획이다.

7. 경관보전직불제 확대

(지역개발과 사무관 유영수)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최근 도시민의 농촌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농촌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경관형성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어 도시민의 여가수요 증대에 부응하고, 농촌지역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05년부터 경관보전직불제를 도입하여 2007년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2008년부터 본 사업 확대시행 하고 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경관보전직불제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어 지역축제, 농촌관광 및 도농교류를 촉진하고,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지자체와 마을간 협약을 체결하고, 농지에 일반작물 대신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당해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005~2007(3년간)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경관작물의 범위를 유채, 메밀, 코스모스, 해바라기, 목화, 야생화 등 6개 품목에서 연, 자운영을 추가하여 8개 품목으로 확대하였다. 2008년부터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작물 선택이 가능토록 작물 범위를 시장·군수가 협약서를 심사하여 경관형성이 주목적이고 효과가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초화류(목본류 제외)로 확대하였다. 다만, 해당 품목에 정부수매, 종자대 지원 등 품목특정적인 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 중복지원을 금지토록 하였다.

신청절차는 마을주민들이 농촌경관을 유지·보전하기 위한 농촌경관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지자체장에게 신청하고, 지자체장은 마을의 경관보전계획을 심사·평가하여 선정된 마을과 협약을 체결한다. 지자체장은 협약에 따라 사업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보조금의 지급기준은 국고 70%, 지방비 30%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원 단가 하계작물이 ha당 170만 원, 동계작물은 ha당 100만 원이다.

2009년도에는 총 16,171ha를 선정하고 96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시행지역의 경관작물은 메밀, 연, 코스모스 등 하절기 작물 600ha, 유채, 자운영 등 동절기 작물이 15,571ha였다.

<표 2-2-4> 경관보전직불제 지원 실적

(단위: ha, 백만 원)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시행면적 계	470	470	800	5,814	16,171
동계작물	시범사업(구분 없음)			5,312	15,571
하계작물				502	600
예산	600	600	1,000	2,646	9,640

또한 '09년부터 마을경관보전활동비(30만 원/ha)를 지원하여 작물재배와 연계한 마을 진입로, 안길 꽃길 조성 등 경관보전 활동을 촉진하도록 하였고 "경관보전직불추진위원회"를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로 개편하여 경관보전보조금 신청 대상자 외, 대상 마을주민 및 농어촌 경관 또는 도농교류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고, 마을경관보전활동 계획 이행 등 협약의무사항을 규정하여 협약을 이행하도록 하였다.

다. 평가 및 향후계획

2010년에는 총 16,600ha에 157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행지역의 경관작물은 메밀, 연, 코스모스, 해바라기 등 하절기 작물 1,000ha, 유채, 자운영, 청보리 등 동절기 작물 15,600ha이며, 앞으로는 청보리, 밀 등 일부 동계작물의 경관기여도가 낮다는 평가가 있어, 동계작물보다는 하계작물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경관보전직불제는 마을경관, 역사·문화자원 보전활동을 포괄하는 마을경관개선활동 지원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8. 농가단위 소득안정제 추진

(농가소득안정추진단 사무관 김형식)

가. 추진배경 및 개요

FTA·DDA추진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농업소득의 불안정성은 증가하나 직불제를 통한 농가소득 지지는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며, 현행 직불금이 쌀에 집중되어 품목간 형평성 문제 등도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품목별 직불제에서 농가단위 직불제로, 가격보전에 서 소득보전으로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당해 연도 소득이 기준소득보다 낮을 경우 그 격차의 일부를 보전하는 농가단위 소득안정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2009년 7월 민·관 합동 농어업선진화 위원회에서 농가단위소득안정제 도입을 포함한 직불제 개편방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직불제 통합·개편 및 농가소득 안전망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합의한 바 있다. 단, 농가단위소득안정제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소득정보 파악 기반이 취약하고 조직과 인력이 구비되지 않은 현실을 감안할 경우 현 시점에서 바로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판단, 2010년부터 도상연습을 실시하여 문제점 해결 등 여건을 마련한 후 2013년 이후 본 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하였다.

다. 평가 및 향후계획

농가단위소득안정제의 시행을 위해서는 당해 농가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나, 농업소득세를 납부하는 미국·캐나다 등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농가소득신고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 농업인의 의식 등 인프라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농가별 농업소득 산정방법 등을 파악하고 필요한 소요인력 및 예산을 파악하여 본 사업 실시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상연습을 추진 중이다.

2010년 도상연습은 사업시행 주체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력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 도별 1개 읍·면 약 5,000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소득불안정성과 FTA 체결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중 9개 품목(쌀, 콩, 고추, 사과, 포도, 감귤, 한우, 돼지, 계란)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향후, 2011년에는 대상지역과 품목을 확대하여 도상연습을 진행할 예정이며, 문제점 등에 대한 보완 후, 2013년 이후에 본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1. 농작물재해보험 확대

(농업금융정책과 사무관 윤승우)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최근 지구 온난화 등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 현상으로 자연재해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지난 “루사(2002)”, “매미(2003)” 태풍으로 255명이 사망하고 약 9조 8천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등 매우 큰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재해 발생 시 정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해 “정책자금이자상환 연장, 학자금 지원, 대과비·농약대”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많은 재정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개별 농가의 입장에서 보면 그 지원수준이 미미하여 농가의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재해지원과는 별도로 재해 발생 시 실질적인 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재생산 유지를 위한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정부는 각종 직불제사업과 더불어 현재 WTO에서도 허용보조(Green Box)로 분류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제도를 2001년부터 도입하여 지원 규모 및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정부는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 보다 많은 농업인이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험료의 50%, 운영비의 100%를 지속 지원하고 있으며, 보험사업의 지속 및 보험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해 재해보험사업의 거대재해 위험(손해율 180% 초과)을 국가가 부담하는 국가재보험제도를 '05년부터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다.

<표 2-2-5> 농작물재해보험 성장추이

(단위: 백만 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대상품목 ¹⁾	6	7 (뽕은감 추가)	10 (밤·참다래·자두 추가)	15 (콩,감자,고추,양파,수박 추가)	20 (벼,고구마,옥수수,마늘,매실 추가)	
가입 실적	가입농가(호)	26,335	27,419	29,174	32,538	45,884
	가입면적(ha)	20,301	21,466	23,661	26,037	48,381
	가입률(%)	23.4	24.5	26.5	28.5	31.4
지원 규모	순보험료(%)	61.2	58.4	55.6	52.8	50
	운영비(%)	100	100	100	100	100
	국고지원액	49,371	50,783	49,280	49,063	53,351
지급 보험금	지급농가(호)	5,877	5,171	7,274	3,383	8,734
	보험금	23,871	21,112	61,464	24,932	66,176
	손해율(%)	43.5	36.6	110.4	45.0	105.8

주: 1) 본 사업 시작년도: 사과·배(2003), 복숭아·포도·단감·감귤(2004)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대상품목 확대

그동안 농작물재해보험은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을 거듭하였다. 대상품목의 경우 2001년 사과·배 2개에서 2009년 현재 20개로 매년 품목을 확대하였다. 또한, 질적인 면에서도 사업초기 과수작물에 편중되어 있었으나, 2007년 이후부터는 보험대상을 벼·콩·고추 등 식량·채소작물 등으로 전 농작물로 다양화하는 등 크게 성장하였다.

- * '09년 대상 농작물: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 뽕은감, 밤, 참다래, 자두, 감자, 콩, 양파, 고추, 수박, 벼, 고구마, 옥수수, 마늘, 매실
- * 전국단위 본 사업 품목: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 뽕은감

2) 대상재해 확대

대상재해의 경우도 태풍·우박·동상해 등 특정한 재해에 대해서만 보상하던 것을 2007년 이후부터 개발한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보상가능한 모든 자연재해를 포함하도록 확대하였다. 벼 품목의 경우에는 병충해의 일부(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와 야생동물 피해를 포함하는 등 보상범위를 더욱 확대하였다.

3) 보험 가입률 제고

2009년도에는 전년대비 7.4% 증가한 32,968농가가 재해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가입 면적도 2008년 24,009ha에서 26,388ha로 늘어 가입률 31.4%를 달성하였다. 특히, 사과·배의 경우 전국 대상면적의 약 60% 이상이 자발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과·배를 제외한 감귤·포도·복숭아 등의 경우 보험가입률이 20% 이내로 떨어지는 등 아직까지도 재해보험이 품목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점이 있으며, 과수작물 외에는 대부분의 작물이 시범사업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대다수 농업인에게 고른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 평가 및 향후계획

농작물재해보험은 그간 2009년까지 51천 농가에 2,972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농가의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하였고, 보험품목·대상재해의 지속 확대 등으로 농업인의 보험에 대한 인식이 좋아져 보험가입률 및 보험규모면에 있어 매년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는 2011년 까지 보험대상 농작물을 30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2011년 이후에도 농업인의 요구 등 보험수요가 있는 작물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품목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현재 시범사업 운용 품목의 경우 약 3년간 주산지 위주로 소규모로 사업 운영하면서 보험 상품을 개선·보완하여 연차적으로 전국적인 사업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농작물과는 별도로 농업시설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보험대상에 추가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앞으로 대상재해를 모든 자연재해로 확대하고, 병충해·야생동물피해·화재 등에 대해서도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보험 상품 형태에 대해서도 품목별 특성에 맞게 현행 수확량 보장방식에서 탈피하여 소득보험 등 다양한 형태로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2. 재해농가 지원 확충

(농산경영과 사무관 송인달)

가. 추진배경 및 개요

농업은 자연과 밀접하여 태풍, 집중호우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분야이다. 실제로 매년 많은 농업인들이 재해로 인한 극심한 피해를 받고 있다. 재해를 피하기 위한 여러 예방사업 및 예방책이 있으나 기본적으로 농업인 개개인이 대응하기는 역부족인 현실이다. 이러한 재해농가의 영농재개를 도모하기 위하여 '67년 농어업재해대책법이 제정되어 지금까지 재해농가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은 농작물, 가축 및 농업용 시설 등의 피해복구지원과 농가별 피해정도에 따른 생계비 지원, 학자금 면제, 영농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등 간접지원의 두 형태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은 농작물, 가축 및 농업용 시설 등의 피해복구지원과 농가별 피해정도에 따른 생계비 지원, 학자금 면제 등 간접지원의 두 형태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으며, 피해농가의 영농재개 도모와 복구부담 경감을 위하여 매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복구비용 산정기준 단가 인상 및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재해지원 현실화를 위해 2009년도에는 생계지원(양곡대), 콩치, 꽃게, 돔 등 19개 품목을 1.1~92.0%까지 인상하였고, 종오리사, 분뇨처리(오리), 농어, 전복, 양액재배 시설, 붕어(내수면양식생물) 등 26개 품목을 신설하였다.

다. 평가 및 향후계획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농업인은 1년 또는 다년간 피땀 흘려 노력한 것이 수포로 돌아가 금전적 피해와 함께 삶의 의지가 꺾이는 정신적 피해도 크게 받는다. 비록 재해 복구비는 손실액에 대한 피해보상금은 아니며, 복구비 또한 현실단가의 60% 수준으로 다소 부족하나 재해복구비 지원으로 농업인의 영농재개 의욕을 고취시키고 신속한 복구를 이뤄지게 하였다.

또한 지원기준 단가가 없거나 현실보다 적은 지원 단가에 대해서는 매년 재해복구비 산정기준단가 신설 및 인상을 통해 관계당국과 협의하여 지원 단가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금년과 같이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대규모 피해발생 시 신속한 재해농가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3. 가축공제 운영 내실화

(농업금융정책과 사무관 윤승우)

가. 추진배경 및 개요

가축공제는 자연재해, 화재 및 질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축피해를 보상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영회생을 도모하고자 1997년부터 도입한 제도로써 최근 태풍, 화재, 질병 등으로 인한 가축 피해가 증가하면서 농가의 공제가입건수 및 보험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대상품목 확대

1997년 “소” 1개 축종으로 시작한 가축공제 사업은 대상축종을 지속 확대하여 2009년에는 “소, 돼지, 닭, 말, 오리, 메추리, 꿩, 사슴, 칠면조, 거위, 타조, 양, 벌” 등 13개 축종으로 확대하였으며, 매년 제도개선을 통해 대상재해 및 보상수준을 확대하고 있다.

2) 가입률 제고를 위한 대책 추진

2009년에는 축산농가의 공제료 부담경감을 위해 공제료의 50%를 지속 지원하였고, 무료가축진료사업 추진, 대농업인 공제가입 홍보강화 등으로 공제가입률을 전년 45.9% 대비 2.2% 증가한 48.1%로 증가하였다. 아울러 현재 가축공제의 “축사보상 특약”의 경우 축사의 겨울철 주요재해인 “설해”를 추가하였고, 공제료 지원율도 가축과 동일하게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민영보험사(LIG 컨소시엄)에서 추진하는 가축보험의 대상축종을 13개로 확대하여 축산농가가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다. 평가 및 향후계획

2009년에는 자연재해·화재·가축질병 피해 등으로 433억 원의 공제금을 지급하는 등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에 기여하였다. 한편, 공제가입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돼지, 닭은 높은 반면 소는 낮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등 보험 상품을 개선하고, 재해 및 질병발생 예방을 위한 컨설팅 강화 등 제도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표 2-2-6> 가축공제 가입률

(단위 : %)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소	7.2	6.9	7.1	8.3	8.1	7.8
돼 지	48.2	57.2	66.7	63.2	65.0	77.0
말	2.1	4.9	6.7	7.2	7.9	8.6
닭	24.0	37.0	39.3	43.1	45.2	46.9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4. 농업인 안전공제 추진

(농업금융정책과 사무관 윤승우)

가. 추진배경 및 개요

농업은 광업, 건축업 등과 함께 작업상 사고나 질병의 위험이 높은 산업으로 농업인은 항상 농작업 과정에서 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농업인의 사고와 질병은 농가의 생활불안정 및 빈곤층 전략을 유발하므로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어 농업인 안전공제의 농업인 부담 공제료 50%를 국고보조하고 있다. 또한, 농업인은 농작업과 관련한 사고가 빈발함에도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있어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의의 사고시 농업인의 재산 및 신체를 보호할 수단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업인 신체사고 및 농기계 사고를 보상·지원함으로써 산재보험 등에서 배제된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가의 경영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농업인 안전공제사업을 '96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보상수준 확대 및 상품 개선

'09년도에는 농업인안전공제 사망시 보상수준을 '08년도 45백만 원에서 최고 60백

만 원으로 확대였다. 주요 상품 개선 사항으로는 일(열)사병 사망 기본계약을 신설하고, 산재보험의 장의비와 유사한 장제비 지원 특약을 운용하여 농작업 재해이외에 일반 사망시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종전의 개별약정 계약방식에서 '09년부터는 개별 및 단체계약으로 변경하여 조합원 단체일괄 가입시 일선영업점 및 농업인 모두에게 물적·시간적 비용절감과 편의를 도모하게 하였다.

2) 사업 홍보 강화 및 국고지원 확대 등으로 공제가입 농업인 증가

농업인에 대한 농민신문 및 지역 언론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강화와 지역농협의 조합원 총회 등 행사시에 공제 상품을 적극 알려 농업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농업인안전공제 공제로 국고지원은 '08년도 253억 원보다 9.9%(26억 원) 증가한 278억 원으로 확대 지원하여 농업인의 공제로 부담을 완화하였다. 이에 따라서 '09년도 농업인안전공제 가입자 수는 매년 농업인구수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08년도 764천 명 대비 3.5%인 791천 명이 증가한 791천 명으로 나타났다.

다. 평가 및 향후계획

농업인안전공제는 '96년부터 정부가 지원한 이래 <표 2-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09년까지 2,600억 원의 장해·사망 공제금 및 치료·입원비 지원으로 재해농업인 또는 유족의 생계비 일정부분을 보전하고, 농작업 재해사고 이후 농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과 동시에 농업인을 보호하여 사회안전망 확충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표 2-2-7> 농업인 안전공제 추진실적

(단위 : 천 건, 억 원)

구 분	합 계	2005년 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사업량 (계약건수)	9,613	6,658	658	742	764	791
지급공제금	2,600	1,345	201	284	367	403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협중앙회 전산자료

한편, 농업인은 재해·안전사고에 대비 농업인 안전공제 등 별도의 공제제도를 이용하고 있으나 아직도 일반 산재보험의 보상 수준에는 크게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10~'14)”

에 따라 안전공제 보상수준을 단계적으로, 현재 60백만 원에서 '14년까지 100백만 원으로 확대하고, 지속적인 상품개선을 통한 보장수준 상향 등으로 가입률을 '14년까지 60% 수준으로 높여 농가의 안정적인 농업경영 여건 조성과 농업인의 삶의 질 및 복지를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5.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농산경영과 공업사무관 김규욱)

가. 추진배경 및 개요

1990년 이후 부족한 농촌노동력을 대체하고 과학영농을 조장하기 위하여 농기계 공급을 늘려 나갔다. 2000년대 이후에는 노후한 소형 농기계를 대체하면서 중대형 농기계의 공급이 빠르게 늘어나 고가의 농기계 구입이 농업인의 부채 부담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중대형 농기계로 전환되고 있음에도 농작업의 계절적 특성 등에 따른 농기계의 이용 효율은 매우 낮은 상태로 유지되었다.

이에 따라, 중소규모의 농업인이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하지 않고도 농업 생산을 할 수 있도록 농기계를 저렴한 수수료를 받고 빌려주거나 농작업을 대행하여 주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농기계 임대사업은 1990년대 초부터 일부 지역농업이 영농관리센터를 설치하여 농작업을 대행하던 것을 2000년대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농업기술센터가 직접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대여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본격화되었다.

2004년부터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설치와 임대용 농기계 구입비용을 지원하면서 대폭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08년부터는 농협이 신용사업의 수익금을 활용하여 농가부채 탕감과 농기계

이용률 제고를 통한 농업생산비 절감을 목적으로 논 농업 중심의 농기계은행사업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농기계 임대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농업기술센터와 지역농협의 영농관리센터 두 축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농기계임대사업은 주로 밭 농업에 사용하는 소형작업기를 단기 임대하도록 하여 밭농사 기계화율을 제고하는 한편, 논 농업 중심의 농협 농기계은행사업과 차별화하도록 하였다.

정부는 2009년에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용 농기계 구입 및 임대 인프라 구축에 국고 200억 원을 지원하였고 농협중앙회는 2008년 하반기부터 3,000억 원을 투입하여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중고농기계 15,700대를 매입하여 농작업 대행에 활용하고 있다.

다. 평가 및 향후계획

농기계 임대사업이 지역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가 높고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10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설치와 임대용농기계 구입비용 250억 원을 국고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농협중앙회는 신규 임대용 농기계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농기계를 농가에 장기간 임대하여 운영하는 형태에서 지역 농협이 직접 농작업을 대행하여 주고 그 범위도 재배에서 방제, 수확 및 그 이후의 영농관리까지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지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업경영회생 상시 지원시스템 구축

1. 농가부채 경감대책 추진

(농업금융정책과 사무관 홍근형)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최근 농업이 규모화 되면서 시설투자 등으로 부채가 증가하고 있으나, 그에 상응하게 자산도 늘어나고 있어 전반적인 부채상환능력(부채/자산비율)은 점차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FTA진전, 농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농가경제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일부 농가의 경우 자력으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부채구조에 처해 있다.

특히 2009년에는 2004년 상호금융추가지원자금(2조원)의 상환기일이 집중 도래하고 있어 일시적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따라 2004년 상호금융추가지원자금 상환기간 연장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이 5월 27일 공포·시행되었으며, 이에 맞춰 농림수산식품부는 「2009년 농어가부채경감대책 시행지침」을 최종 확정·발표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2009년 부채경감대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2에 따라 '04~'05년까지 지원받은 상호금융추가지원자금(원금)의 잔액에 대하여 연리 5%로 5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게 된다. 둘째, '04년 지원받은 상호금융추가지원자금을 이번 조치에 의해 분할상환하지 않고, 당초 상환기한 내에 정상상환하는 농어업인은 납부한 이자액(최대 1년분)의 40%를 환급한다. 셋째, '04년 상호금융추가지원자금을 분할 상환 조건으로 변경한 농어업인이라도 약정 기일보다 1년 이상 조기 상환하는 경우 그 상환 원금에 대한 1년간 이자액의 40%를 환급한다. 넷째,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예·적금 등 금융자산으로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충분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부합산 연간 급여총액이 31백만 원 이상이거나, 본인 및 배우자의 예금 등 금융자산의 평균잔액이 총 부채액의 80%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본인 및 배우자의 기한부 예·적금이 16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금액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동 대책의 시행으로 13만여 농어가에서 향후 5년간 1,300여억 원의 이자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그동안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추진된 상환기간 연장 및 금리인하 등에 따른 금융기관의 이자차액을 보전(2009년에는 2,009억 원)해줌으로써 농업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해주었다.

다. 평가 및 향후계획

2001년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이후 2009년까지 6차례에 걸쳐 총 25조원에 대하여 상환기간 연장 및 금리인하 등을 실시하였고, 이에 따른 금융기관의 이자차액 2.9조원을 정부에서 지원하였다.

이러한 부채경감 지원으로 농업인의 금융부담 경감 효과는 발생하였으나, 부채경감 대책 실시에 따른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으며, 만기연장에 따른 상환지연과 저리지원에 따른 조기상환 유인부족으로 전체 부채규모는 증가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자산매각을 통한 부채상환 등 농가의 자구노력을 중점 지원하는 방향으로 부채경감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과 농업경영회생자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부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농어업재해보험 확대 및 농기계임대사업 활성화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 농업경영회생 자금지원

(농업금융정책과 사무관 홍근형)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재해, 가축질병 또는 농산물 가격의 급락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의 경영회생을 돕기 위해 2003년 시범사업 이후, 2004년부터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상시적인 경영회생지원시스템의 일환으로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연리 3%,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하고 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일시적 경영위기 기준을 1년 이상 연체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 특별재난지역의 신청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경우 지원 제외토록 되어있는 것을 자산 대비 부채비율 기준으로 200%를 초과하는 경우에 지원 제외토록 하는 등 심사기준 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선('08.12월)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09년에는 지원 실적이 점차 증가하여, 당초 지원계획 200억 원에서 100억 원을 증액하여 총 300억 원을 지원하였다. 다만,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특정 경영체에 대한 과도한 지원으로 소득분배 왜곡 및 형평성 문제 등이 우려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09년 9월에 농업인당 지원한도를 10억 원(농업법인 15억 원)으로 설정하였다.

다. 평가 및 향후계획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을 통해 재해·가축질병 또는 농산물 가격의 급락 등의 사유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이 경영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자가 높고 상환기간이 짧은 기존 채무를 장기저리자금(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3%)으로 바꿔줌으로써 농업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2009년은 46억 원)해 주었다.

향후 지원 실적 등을 보아가면서 지원조건 완화 등 제도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3.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확대

(농지과 사무관 정수경)

가. 추진배경 및 개요

농지 등이 금융기관에 담보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매도가 어렵고 경매시 유찰·저가 낙찰로 재산상 손실이 많은 점 등 농지자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농가가 담보농지를 처분하는 자구노력을 통해 부채를 상환하고, 그 생산수단(농지)은 계속 활용하게 함으로써 다시 회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자는 재해피해율이 50%이상 또는 부채 4천만 원이상 농업인(농업법인)의 경영위기 정도, 회생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영위기 농가 등의 소유농지 및 농지에 딸린 농업용시설(고정식온실, 축사, 버섯재배사)을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로 매입해주어 부채를 모두 상환하도록 하고, 매입농지 등을 해당농가에 임대시 관행임차료 수준보다 낮은 매입가격의 1% 이내로 임대(7년, 3년 연장가능) 해주어 계속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 회생을 지원하고 있다. 환매가격은 환매시점에 감정가액 또는 이자율(3%)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중 낮은 금액을 지원받은 농가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통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1,752농가의 농지 2,514ha를 매입, 4,270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2009년에는 농업인 경영안정 및 서민생활 지원을 통한 민생안정 강화를 위해 소요예산 250억 원을 추가 확보(당초 1,450억 원 → 1,700억 원)하여 635농가의 농지 878ha를 매입, 1,700억 원을 지원하였다.

한정된 재원으로 보다 많은 농업인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 농가의 부채기준을 완화(부채 5천만 원 이상 → 4천만 원)하였다. 또한, 지원농가의 환매부담 완화를 위해 매입대상을 농지 외에 농업용 시설로 확대하고 임대기간도 연장(5년 → 7년)하였으며, 환매가격을 감정평가액과 정책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변경하였다.

그간 본 사업을 통해 경영위기 농가들이 부채 등으로 인한 경영위기에서 벗어나 영농을 지속함은 물론, 경매시 정상가액의 60~70%수준 낙찰에 따른 농가자산 감소를 방지하고, 높은 연체이자(14~19%) 대신 낮은 임차료(매매가격의 1%이내)로 경작권을 부여함으로써 농가부담을 완화하여 파산위기에 처해 있던 농가들이 경영회생 하는데 도움을 제공하였다. 또한 지원 후에도 지원농가에 대한 꾸준한 경영지도 등을 통해 회생능력을 제고하여 '09년 말 기준, 지원농가 중 순자산이 전년보다 증가한 농가는 66.4%로 나타났다.

<표 2-2-8>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지원 실적

(단위 :호, ha, 억 원)

구분	합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농가수	1,752	183	444	490	635
면적	2,514	311	629	696	878
금액	4,270	422	953	1,195	1,700

다. 평가 및 향후계획

FTA 확대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경영위기 농가 증가에 대비하여 상시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엄격하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적격자를 선정·지원하여 지원농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계획이다.

2010년에는 보다 많은 경영위기 농가가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2,4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 농가의 부채기준 추가 완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4절

농업금융·세제 개선

1. 농업정책금융 지원제도 개선

(농업금융정책과 사무관 조정래)

가. 추진배경 및 개요

농업분야 금융시장은 낮은 수익률 등으로 시중은행이 진출을 꺼리는 등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실정임에 따라 정책금융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 동안 정책금융은 농업분야 성장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주로 농·수협 및 산림조합을 통해 지원됨에 따라 시장기능과 경쟁의 원리를 강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자원배분 기능을 제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농협 등을 통하여 주로 지원하여오던 농업정책자금의 공급방식을 완전 경쟁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시중은행에서도 취급을 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대상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표 2-2-9> 농업정책자금 지원규모 및 취급기관(2009년 말 기준)

(단위: 억 원)

구 분	계	농 협	산림조합	유통공사	농촌공사	시중은행
정부자금	농특회계	21,591	17,860	3,731	-	-
	채특회계	13,378	13,378	-	-	-
	소 계(a)	34,969	31,238	3,731	-	-
	농안기금	31,890	24,659	244	6,987	-
	농지기금	27,816	132	-	-	27,684
	축발기금	16,440	14,262	-	86	-
	FTA기금	3,137	1,674	-	5	1,458
	소 계(b)	79,283	40,727	244	7,078	29,142
계(A=a+b)	114,252	71,965	3,975	7,078	29,142	
차관자금(B)	91	91	-	-	-	
민간자금 (이차보전)	정책자금	80,692	79,642	1,050	-	-
	부채대책자금	52,637	52,059	578	-	-
	계(C)	133,329	131,701	1,628	-	-
합 계(A+B+C)	247,672	203,757	5,603	7,078	29,142	

자료 : 농협중앙회 농업금융부(농특회계, 공자기금, 이차보전 민간자금), 산림조합 신용사업부(농특회계, 이차보전 민간자금), 유통정책과(농안기금), 농지과(농지기금), 축산정책과(축발기금), 농업정책과(FTA기금)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정책자금 시중은행 취급 확대

2004년 8월부터 촉발기금으로 지원되는 일부 사업자금의 취급은행을 시중은행으로 확대한 데 이어, 2006년 1월부터 촉발기금의 모든 용자사업에 대해 개방을 하였고, 농특자금으로 지원되는 용자사업 중에도 2006년도에 농기계구입자금과 미곡종합처리장 운영자금을, 2007년도에는 축산분뇨처리시설자금과 농기계사후관리자금 및 후계농지원자금을 시중은행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정책자금 관리체계 확립

2004년 5월에는 재단법인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을 신설하여 농특회계 용자금의 관리 및 상시 검사체계를 확립하고, 2005년 4월에는 농작물재해보험기금의 관리업무를 위탁하였으며, 2008년 1월에는 부채대책 등 이차보전 자금을 관리토록 함과 아울러 6월에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기금에 대한 관리업무를 위탁함으로써 농업정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다.

3) 농업종합자금 지원

1999년부터 2006년까지 기존의 26개 개별사업을 농업종합자금으로 통합하여 대출 취급기관이 농업경영체의 사업계획의 타당성·경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대출 하도록 하였고, 기존에는 지역별·품목별·용도별로 구분하여 자금을 운용하였으나, 종합자금제도는 전국적으로 하나의 자금 풀(Pool)로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농업경영체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표 2-2-10> 농업종합자금 지원 실적

(단위: 억 원)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7,230	5,400	5,789	7,511	9,567	10,202	12,010	11,050

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지원

담보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의 원활한 생산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여력을 확대하고 건전운영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2005년 8월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농림수산업자신용보

증기금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출연을 확대(2005년 4,000억 원→2006년 5,780억 원→2007년 7,357억 원→2008년 6,952억 원→2009년 9,095억 원) 하는 한편, 농·수협중앙회의 출연요율 인상(0.2%→0.3%) 및 일선조합의 신규출연, 위탁보증수수료 인하(15%→10%), 부분보증 강화 등 제도개선을 통하여 운용배수가 안정화(2006년 96.0배→2007년 23.8배→2008년 14.6배→2009년 6.6배)되어 기금의 건전성을 확보함으로써 농어업인들에 대한 신규보증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평가 및 향후계획

앞으로 농업정책자금의 공급방식을 완전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등 시장 지향적 개편을 통해 농업인의 대출편익과 금융서비스의 질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며, 이러한 계획에 따라, 정책자금 취급을 시중은행에 지속적으로 확대 개방할 예정이다.

한편, 농축산경영자금은 영농규모에 상응한 적정규모의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소요경영비를 보다 엄격하게 심사한 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소요경영비 심사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여 동 자금의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지원이 되도록 하고, 사업 타당성 있는 우수 농업경영체의 신용대출 기회 확대 등 제도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원활한 보증지원을 위해서 정부 출연금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기금을 정상화하여, 농어업인에 대해 원활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정책자금(융자금)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의 검사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2004년 8명→2005년 13명→2008년 16명)함으로써 농업정책자금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2. 농어업부문 세제지원

(농업금융정책과 서기관 이시혜)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조세제도는 법과 제도, 공공인프라, 재정·금융지원과 더불어 산업을 육성·발전시키

고 개인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핵심적 정책 수단이다. 우리나라에서 농어업분야에 대한 조세정책은 다수의 조세감면으로 농어업생산을 장려하고, 농어업 종사자의 소득을 지원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전체적인 조세지원 중에서 농어업인 관련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2009년 농어민지원 15.9%)이 높은 편이며, 직접적 재정지출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농어업에 대한 상당한 규모의 조세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농어업인 관련 조세경감은 소득과세, 재산과세, 소비과세, 거래과세(취득, 등록세) 등에 걸쳐 폭넓게 시행되고 있다. 먼저 직접세의 경우를 살펴보면, 소득세의 경우 전담 임대소득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 이자소득세 감면이 있고, 양도소득세의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이 있으며, 증여세의 경우 영농 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 등이 있다. 농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특례,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감면 등 법인세에 대한 감면도 다양하며, 농협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 준비금 제도도 있다. 다음으로 간접세에 대해 살펴보면, 부가가치세의 경우 농축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감면되고 있으며 인지세의 경우에는 농협 조합원 예적금 증서, 용자서류에 대해 인지세가 면제되고 있다. 이밖에 미가공 농산물에 대한 면세 등 다양한 조세감면이 행해지고 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농어업부문의 조세감면 규모는 2009년 기준 연간 5조 867억 원으로, 부가가치세, 소득세·상속세·증여세·인지세 등 국세부문(30개 항목)이 4조 8,888억 원 (96.1%)이고, 등록세·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부문(21개 항목)은 1,979억 원(3.9%)이다.

국세부문 조세감면액 4조 8,888억 원 중 농업부문은 4조 58억 원, 수산부문은 8,830억 원인데, 농업 부문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농업용 기자재 영세율이고, 어업 부문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어업용 석유류 면세이다.

농어업부문의 연도별 조세감면 규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표 2-2-11>과 같다.

<표 2-2-11> 연도별 조세감면 현황

(단위 : 억 원)

연 도		2007년	2008년	2009년	
총 감면액		48,642	47,651	50,867	
주요 항목	■ 면세유	농 업	14,180	11,535	11,208
		어 업	7,542	5,816	7,321
		계	21,722	17,351	18,529
	■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농 업	9,228	10,793	12,108
		어 업	426	409	405
		계	9,654	11,202	12,513
	■ 기자재 부가세 사후환급	농 업	802	957	1,129
		어 업	115	148	155
		계	917	1,105	1,284
	■ 8년 자경농지 양도세 면제		7,737	9,992	8,766

석유류 면세는 1972년도에 어업분야에서 최초로 시행되었고, 농기계에 처음 도입된 것은 1986년 3월부터이다. 가장 최근에 농업용 무인 헬리콥터가 추가되어 2009년 말 현재 면세유 공급대상은 농업부문 37개 기종, 어업부문 14개 부문이고, 면세유류 공급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규정되어 있다. 자세한 농어업용 면세유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2-2-12> 농어업용 면세유 현황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공급물량 (천kl)	농 업	2,478	1,976	1,898
	어 업	1,253	969	1,098
	소 계	3,731	2,945	2,996
공급액 (억 원)	농 업	16,694	18,337	14,110
	어 업	6,355	7,269	6,541
	소 계	23,049	25,606	20,651
감면세액 (억 원)	농 업	14,180	11,535	11,208
	어 업	7,542	5,816	7,321
	소 계	21,722	17,351	18,529

* 2009년 농가당 평균 면세액 : 938천 원 (2009년 말 농가수 1,195천호 기준)

* 2009년 어가당 평균 면세액 : 10,311천 원 (2009년 말 어가수 71천호 기준)

농축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1989년도에 최초 도입되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으며, 2009년 말 기준 현행 적용품목으로는 비료·농약·농기계 33종, 사료, 축산기자재 39종, 임업용기자재 15종, 친환경농업용 기자재 3종, 어업용 37종이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은 2001년도에 최초 도입되어 현재 농업용 필름 등 28종, 어업용 22종에 적용되고 있다. 농축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사후환급 조세감면 규모는 다음과 같다.

<표 2-2-13> 농업부문 영세율 세부내역

(단위 : 억 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비 료	1,485	1,120	1,800
농 약	986	1,133	1,310
농기계	1,004	980	958
사 료	5,442	7,250	7,300
축산기자재	311	310	740
계	9,228	10,793	12,108

* 2009년 농가당 평균 면세액 : 1,010천 원 (2009년 말 농가수 1,195천호 기준)

<표 2-2-14> 농업부문 부가세환급 세부내역

(단위 : 억 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농업용 필름	230	238	257
농업용 파이프	160	185	212
농업용 포장상자	300	341	336
과일봉지	52	38	38
농업용 부직포	2	36	53
농업용 배지	69	30	36
농업용 무인헬리콥터	-	-	15
기타	102	89	182
계	915	957	1,129

<표 2-2-15> 어업부문 영세율 세부내역

(단위 : 억 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어업용 사료	112	94	95
로프	65	63	62
어선(20톤 미만)	59	53	53
선외내연기관	29	30	29
어망	30	29	28
양식용약품	28	28	28
기타	203	112	110
계	426	409	405

* 2009년 어가당 평균 면세액 : 570천 원(2009년 말 어가수 : 71천호 기준)

<표 2-2-16> 어업부문 부가세환급 세부내역

(단위 : 억 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어상자	45	41	45
양어장용 필름	6	6	6
양어장용 파이프	6	6	6
어업용 발전기	21	17	16
어선 및 어업용 방어도료	-	24	25
약사법에 의한 동물용 의약품	-	14	14
차광망	-	13	13
기타	37	27	30
계	115	148	155

다. 평가 및 향후계획

최근 정부는 FTA의 확대 등에 대응하면서 농수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러 정책들을 실행하고 있지만 조세측면에서의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금융위기 및 국제 유가·곡물 등 수입원자재 가격 급등의 여파로 농가 생산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농어가 소득 증대 및 농어업 생산성 향상과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질적인 세제지원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농수산 산업을 1차 산업에서 3차 생명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며, 녹색성장 정책의 확충, 우리 먹을거리의 세계화, FTA에 대한 대응 등 농수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업인 개인에 대한 세제지원보다는 조직화·규모화된 법인·(농)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농어업법인 조세제도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연구·검토하기 위해 2010년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10.4~8.) 이를 통해 농어업 부문 조세지원 정책의 틀과 내용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할 계획이다.

제3장

농업경영체 육성



1. 농업신규인력 육성

(경영조직과 사무관 김희중)

가. 추진배경 및 개요

농가인구의 감소 및 농업생산인구의 고령화로 향후 농업의 지속적 성장동력확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농업은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토지집약적 생산방식에서 벗어나서 기술·자본집약적 생산방식으로 전환하고 다양한 농업 비즈니스 창출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지식과 자본을 갖추고 도전과 열정으로 똘치고 유능한 전문 인력들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농업분야의 인적자원 개발 및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1981년도부터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영농종사를 희망하는 청장년을 후계농업인으로 선발하여 영농기반 확보에 필요한 농업 창업자금 및 경영개선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특히 45세 미만의 젊은 농업인력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하여 후계농업인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자금지원 외에도 후계인력의 원활한 유입을 위해 2005년부터 잠재농업인력 영농정착을 돕기 위하여 선도농가에 인턴으로 실무연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농산업인턴제를 실시하고 있고, 선정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창업농의 영농문제 해결을 돕기 위하여 창업농 멘토제(후견인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 감각을 갖춘 전문농업인력 육성을 위해 2009년부터 해외농업인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2008년까지는 창업농과 신규 후계농으로 이원화되어 지원대상자 선발 및 단가책정, 사후관리 등이 복잡하였다. 이에 따라 2009년부터는 35세와 45세로 구분했던 선발조건을 폐지하여 45세로 단일화하고, 5년과 10년으로 제한했던 농업경력 요건도 폐지하여 농업분야 조기 진입자에 대한 불이익을 해소하였다. 2009년 창업 후계농업경영인은 1,435명이 선정되었다. 농업계와 비농업계로 구분해 보면, 농업계 436명(30.4%), 비 농업계 932명(64.9%), 기타 67명(4.7%)이었으며, 이중 남성이 1,229명(85.6%), 여성 206명(14.4%) 이었다. 융자금은 944명에게 총 458억 원을 대출 실행하였다.

<표 2-3-1> 2009년도 창업 후계농업경영인 선정현황

(단위: 명)

	계	초 졸	중 졸	고 졸			전 문 대 졸			특수전문대			대 졸 이 상		
				소 계	농 업	비 농업	소 계	농 업	비 농업	소 계	한국 농업 대학	여주 농전	소 계	농 업	비 농업
계	1,435	10	57	600	88	514	254	65	189	174	164	12	333	109	227
남	1,229	6	44	486	81	408	224	60	164	165	155	12	299	102	199
여	206	4	13	114	7	106	30	5	25	9	9	0	34	7	28

1) 후계농업경영인 창업자금 지원

창업 후계농업인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군수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있다. 창업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되면 이들에게는 사업계획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연리 3%로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의 장기 저리로 1인당 2천만 원~2억 원의 사업비가 차등 지원된다. 2009년에는 지원대상자로 1,435명을 최종 선정하였으며, 이들에게 금리 3%,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2) 농업인턴제

영농창업에 관심 있는 젊은 인력이 선도농가에서 실무연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농업인턴제는 만 18세에서 45세 미만 미취업자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인턴 자격

으로 선도농가에 가서 현장실무연수를 하면서 영농기술과 경험을 얻도록 하는 제도이다. 인턴을 채용한 선도농가에는 인턴 1인당 월 60만 원 한도로 농업인턴에 지급하는 보수의 50% 이내로 연간 600만 원까지 지원되며, 2008년에는 191명, 2009년에는 275명을 선정·지원하였다.

3) 창업농 멘토(후견인)제

창업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영농정착 자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선도농가, 전문가와 협약을 맺어 기술과 경영 등에 대한 조언 및 교육,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008년 106명, 2009년에 102명을 선정하여 창업농을 후견하는 후견인에 대하여 창업농 1인당 월 50만 원, 연간 500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다.

4) 해외농업인턴제

2009년부터 해외의 영농기술과 경영기법 등의 연수를 통해 국제적 감각과 수출농산물 품목 개발능력을 갖춘 우수 농업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미국, 호주, 일본 등 농장에 파견하는 해외농업인턴사업을 새롭게 추진하였다. 국제 감각을 갖춘 전문농업인력 육성을 위해 인턴 1인당 630만 원의 해외연수비를 19명에게 지원하여 선진농업국의 농업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5) 우수농업인 추가 지원 사업

기존 후계농업인 지원 사업은 1회성 지원으로 이후에는 경쟁력 있는 농업인에 대한 농업종합자금 등의 지원만 있을 뿐 그 외 일반 후계농업인에 대한 마땅한 추가 지원책이 없었다. 따라서 2006년부터 후계농업인 선정 후 5년이 경과한 농업인 중 평가를 거쳐 우수한 자에 대해서는 최고 8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후계농업인 추가지원 사업을 도입하여 실시해오고 있다. 2009년에는 경영성과 및 발전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지원대상자로 1,328명을 최종 선정하였으며, 이들에게 금리 3%,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다. 평가 및 향후계획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을 통해 1981년부터 2009년까지 약 2조7천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여 우리 농업을 선도할 130천 명의 후계농업경영인을 확보하였다. 이들은 우리 농업·농촌의 활력을 높이고 농업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내외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농업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단순 자금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교육, 컨설팅, 사회복지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시스템으로의 개편이 필요하다.

앞으로 후계농업경영인이 전업농·신지식농업인으로 성장·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자금지원을 포함하여 교육과 컨설팅을 연계하고, 수요자 중심 및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2. 농업 교육훈련

(경영조직과 서기관 박영근)

가. 추진배경 및 개요

FTA 등으로 급변한 대내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업경쟁력 강화가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농업인에게는 전문적인 생산기술, 위기관리를 포함한 경영 혁신 역량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교육훈련을 통해서 역량 강화를 꾀하고, 정예농업인을 육성하고 있다.

실습위주로 수요자 중심 맞춤형 농업교육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선도농가 실습장, 전국대표실습장 지정 등 현장실습교육장 확충과 현장실습교육(WPL)을 운영하고 있다. 품목전문기술을 습득하여 기술력 향상과 소득 증대와 연계하는 짜임새 있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농업마이스터대학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농정 목표와 농업인 역량강화를 위하여 공모방식으로 기관과 과정을 선정한 전문농업경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해외연수 운영 전문기관을 추가 지정하여 연수기관 선택을 확대하고 있다.

예비농업인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농대 영농정착교육과정 및 농고현장체험교육을 현장실습중심 교육으로 진행하고 있다.

농업교육기관의 교육운영 평가, 통합농업교육정보시스템 운영 등으로 교육운영 전문성을 강화하고, 농업마이스터제도, 농업교육프로그램인증제 등 도입과 농업교육 인적자원지표 개발, 농업능력 표준점검으로 교육성과를 높여갈 계획이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선도농가실습장 45개와 전국대표실습장 8곳을 지정하여 농업인·농대생·농고생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실습교육(WPL)을 실시하고, 축산실습장, IT기반 첨단농업교육센터, 농업인종합교육문화센터, 그린낙농교육장 등 구축으로 교육인프라를 확대할 계획이다.

전국 9개 도 농업마이스터대학, 23개 캠퍼스에서 85개 과정의 교육을 2년 동안 40학점을 이수하는 체계적인 교육으로 품목별 전문기술 습득으로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농가 소득 증대로 연결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농정에 부합하도록 창업·경영·마케팅, 친환경·품목기술, 조직화·리더십·농촌, 소비자·청소년, 농업회계·경영장부, 비용절감, 지적재산권 등 분야에서 37개 기관 53개 과정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여 전문농업교육을 운영하였다. 이주여성농업인의 생활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영농교육후견인과 1:1 멘토·멘티 결연을 통한 영농기술교육을 위한 이주여성농업인과정을 운영하였다. 귀농자의 귀농지원을 위한 귀농자 교육도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운영하였다. 또한 9개 기관에서 2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선진 농업기술 습득과 해외 시장개척을 위한 해외연수를 실시하였다.

신규자원 확보를 위하여 농고, 농대에 지원도 확대하였다. 특성화 농고 10개교를 대상으로 농업에 흥미를 유발하고 농업경영을 체험할 수 있는 현장 중심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농과대학 및 선도농가의 네트워크도 강화하고, 농업에 대한 비전 제시와 인식전환을 위하여 71개 농고 대상으로 멘토링교육, 농고비전스쿨을 운영하였다. 또한, 농과대영농정착교육과정을 전국 11개 대학 대상으로 농대 2학년부부터 졸업시까지 부전공연계 등을 통해 체계적인 창업 준비에 필요한 경영 및 기술교육, 현장실습 등을 지원하였다.

공모과정, 농업마이스터대학, 농고·농대과정, 해외연수과정, 현장실습교육 등 5개 교육 유형 특성에 적합한 교육운영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전문가를 통해서 모든 교육과정에 대해서 자체평가·서면평가·현장평가·강의평가/모니터링 등 4단계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는 익년도 교육기관 선정에 반영하였다.

농업교육과정 정보 및 농업인 교육이력정보를 한눈에 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농업교육정보시스템에 대한 기능개선을 통한 시스템 고도화를 실시하고, 교육기관의 정산관리업무의 효율성 증진과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교육정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최고의 기술력과 경영능력, 타인을 지도할 수 있는 농업인을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으로 인증하기 위한 농업마이스터 시험제도 도입연구, 교육기획단계에서 사전에 검증하여 우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농업교육프로그램인증제 도입을 위한 인증모델개발과 운영매뉴얼 개발연구, 농업교육 관련 현황을 통계로 정리하여 교육성과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농업인적자원지표 개발연구와, 농업교육 전·후의 농업인 역량(능력표준)을 점검하고 교육성과를 평가하는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다. 평가 및 향후계획

농업교육훈련은 농업인 역량을 강화시키고, 생산성 증대로 연결되어 경쟁력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현장실습교육(WPL), 농업마이스터대학 과정 등 운영으로 기존에 이룬 중심의 교육을 실제 영농에 적용할 수 있는 실습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교육기관과 교육프로그램 선정을 공모방식으로 전환하면서 교육기관간의 경쟁이 발생하여 교육 품질을 높이는 효과가 발생했으며, 교육비 30% 이상의 교육생 부담을 원칙으로 하여 교육 참여에 대한 집중도가 향상되는 성과가 있다. 향후 농식품부는 농업교육 3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 전략에 의해서 농업 성과 중심의 교육운영으로 우수한 인적자원 축적과 능력 발전을 통해 농업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1. 농어업법인 활성화

(경영조직과 사무관 황규광)

가. 추진배경 및 개요

WTO·DDA 출범 등 대외개방의 확대와, 국제유가 급등, 친환경 농어업, 농수산물의 안전성 요구 증가, 각종 농자재 및 인건비 상승 등 농어업법인에 대한 경영상의 애로 요인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농어업법인 활성화에 주력하였다.

이를 위해 종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던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법인”이라 함) 설립 등의 근거규정을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관(제정, '09.4.1)하였고, 농업법인의 투명성 제고와 경영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영농조합법인이 총조합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를 거쳐 합명·합자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고, 농업법인의 유사명칭의 사용을 금지하였다. 그 외 어업회사법인의 설립근거 조항도 신설한 바 있으며, 최근의 주요 제도개선 내용을 보면, 농업법인 운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시장·군수) 근거 규정을 마련 하였고, 비농업인 출자한도 완화를 통한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농업회사법인의 비농업인 출자를 종전 비농업인 3/4이내에서 최대 90%까지 투자가 가능하도록 출자를 완화 하였다.

이와 같이 농어업법인의 설립·지원 근거 및 조직변경 근거와 제도개선을 통해 농업 법인에 대한 투자 확대, 경영규모화와 경영효율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2009년 말 현재, 농어업법인의 외형적인 성장을 보면 농업법인 수는 6,824개로 전년대비 8.2% 증가, 어업법인수는 605개로 3.8% 감소하였고, 농업법인 종사자수는 37.7천 명, 어업법인 종사자수는 2.9천 명으로 전년대비 각각 6.5%,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업법인의 판매액은 농업법인의 경우는 7조 2,796억 원, 어업법인은 3,994억 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25.7%, 36.1% 증가하였다. 경영규모도 '09년 농업법인 법인당 경지면적은 11.2ha로 전년대비 27.3% 증가, 어업법인 법인당 양식장면적은 6.0ha로 3.2% 감소하였다.

<표 2-3-2> 농어업 법인 현황

(단위 : 개, 명, 억 원, ha)

구 분	'08	'09	증감률	구 분	'08	'09	증감률
농업법인 수	6,306	6,824	8.2	어업법인 수	629	605	△3.8
종사자 수	35,392	37,681	6.5	종사자 수	2,793	2,866	2.6
판매액	57,901	72,796	25.7	판매액	2,935	3,994	36.1
법인당 경지면적	8.8	11.2	27.3	법인당 양식장면적	6.2	6.0	△3.2

또한 농업법인의 법인당 종사자 수는 7.7명, 상용근로자 4인 이하 규모 법인은 전체의 62.7% 수준이며, 사업유형은 농업생산을 주로 하는 농업법인은 39.8%, 유통판매는 21.5%, 가공판매는 17.4%로 나타났다. 판매액도 법인당 판매액은 14.9억 원, 전체 판매액 중 유통업은 35.5%, 농업생산수입 29.6%, 가공업 24.4% 수준이며, 재정상태의 경우는 법인당 자산은 15.2억 원, 부채는 9.6억 원이고, 자본대비 부채비율은 173.9%로 전년(193.3%)보다 19.4%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3> 농업법인 현황

구 분	2008년	2009년	증 감 ('09-'08)	증감률 ('09/'08, %)
법 인 수(개)	6,306	6,824	518	8.2
종사자수(명)	35,392	37,681	2,289	6.5
판 매 액(억 원)	57,901	72,796	14,895	25.7
경영경지면적(ha)	13,801	19,211	5,410	39.2

어업법인의 경우도 법인당 종사자 수 7.8명, 상용근로자 4인 이하 64.0%이며, 사업 유형과 판매액에서는 어업생산을 주로 하는 법인은 58.3%, 법인당 판매액은 10.8억 원, 어업생산수입은 전체 판매액 중 40.8%를 차지하였다. 재정 상태는 법인당 자산 11.2억 원, 부채 7.4억 원, 자본대비 부채비율 196.3%로 전년대비 45%p 감소하였다.

<표 2-3-4> 어업법인 현황

구 분	2008년	2009년	증 감 ('09-'08)	증감률 ('09/'08, %)
법 인 수(개)	1,629	605	△24	△3.8
종사자 수(명)	2,793	2,866	73	2.6
판 매 액(억 원)	2,935	3,994	1,059	36.1
양식장면적(ha)	1,368	1,342	△26	△1.9

다. 평가 및 향후계획

농어업 경영, 고품질 농수산물 생산, 소비자의 요구 증대 등 경영을 압박시키는 요인을 줄일 수 있는 비용절감을 추진하고, 농식품모태펀드 등 창업·투자유치 활성화와 세제지원, 농어업법인에 대한 전문화된 경영컨설팅 등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농어업법인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2010년에는 농어업법인에 대한 비농업인 출자한도를 현재의 최대 90%에서 추가 완화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비농업분야의 인력과 자본이 원활하게 유입될 수 있는 구조로 바꾸어 나갈 계획이다.

또한 2010년부터는 농식품모태펀드를 조성(약 600억 원)하여 농업분야 예컨대, 농어업법인을 비롯한 한우, 양돈, 양식업 등 생산분야,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유통분야, 농약, 종자 등 농업투입재산업,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등 에너지 절감 및 활용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가 가능하고 외부자본에 대한 투자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2. 농업벤처 육성

(경영조직과 사무관 홍승길)

가. 추진배경 및 개요

농업벤처는 농림업, 농업 전후방 연관산업 및 농촌과 관련된 분야에서 농업생명공학 기술 등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활용한 고위험-고수익의 중소형 모험 기업으로서 생산성 제고 및 농산물의 새로운 수요 창출 등을 통해 농업경쟁력 제고와 농업관련 산업의 발전 및 농업소득 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농업벤처를 적극 육성하기 위하여 2001년에 농업벤처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전문펀드 조성, 농업벤처창업보육센터 지원, 농업벤처창업경연대회 지원 등 관련 시책을 추진 중에 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정부와 민간이 공동출자하여 2001년(100억 원, 1호 조합)과 2002년(80억 원, 2호 조합)에 이어 2006년에 농업전문투자조합 3호(100억 원)를 결성하였으며, 2007년에 농업전문투자조합 4호(200억 원)를 결성하였다. 특히 2호 조합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농업벤처에 투자하여 코스닥에 상장시키면서 농업벤처펀드 최초로 147%(117억 원)의 이익을 회수하여 농업부문도 성장발전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또한 농업전문창업보육센터 9개소의 운영을 지원하였고, 지식농업실현 제8회 농업벤처창업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우수 창업아이템 10점을 선발하여 시상한 바 있다. 농업전문창업보육센터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권역별 보육센터 확충을 목표로 시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1차로 2005년에 영남지역(경상대학교), 2006년도에는 호남지역(전남대)에 이어 2007년도에는 강원, 충청, 제주지역에 농업특화 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하였다.

<표 2-3-5> 제8회 농업벤처창업경연대회 수상작

구 분	출품자	시상금	아 이 템
최우수	조석호	6백만 원	보리 발효물을 이용한 비만 예방 식품
우 수 (3)	강성희	4	고추 수확기
	김윤수	4	참쌀국수
	최영곤	4	건조떡 개발 및 생산계획
장 려 (6)	정석화	2	충전식 손수레용 농약살포기
	조호현	2	배즙 부산물을 이용한 고농축 천연 요리당
	성병훈	2	상황버섯 추출물
	임지환	2	대관령 프리미엄 컬러감자
	성삼섭	2	현미와 산뽕잎을 활용한 조청, 고추장
	안필웅	2	항균, 항산화 기능의 플리페놀 함량 밥

다. 평가 및 향후계획

2011년부터는 농업벤처업무를 식품산업정책과에서 기존의 농업벤처업무에 식품업무를 추가하여 농식품관련 창업지원 및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여 농업벤처 업무를 확대 발전시킬 계획이다.

3.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경영조직과 사무관 홍승길)

가. 추진배경 및 개요

농업경영의 상업화·규모화·전문화로 인한 농업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농축산물 생산 중심의 지도사업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부합하고, 개별농가 특성에 맞는 경영개선의 지원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농업인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1999년부터 민간컨설팅 회사를 통한 농업분야 컨설팅제도를 도입하였다. 컨설팅 사업은 농식품부의 대규모 기업농 대상 민간컨설팅, 민간컨설팅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반 농가를 중심으로 지도기관의 공적컨설팅, 농협 등의 농업인단체 컨설팅 등 다양한 계층의 농업인에게 제도적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경영능력을 향상시켜 농가의 자력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농림부와 해양수산부와의 통합으로 2009년 사업부터 어선어업, 양식어업, 종묘생산업, 수산물 유통·가공업체, 어촌계를 사업대상에 추가하고 어업분야 컨설팅을 담당할 컨설팅업체 인증을 통해 어업분야에 대한 컨설팅을 시작하였다. 또한 어선어업은 10톤 이상, 정치망어업 10h이상 등, 양식어업은 육상수조식 중 어류 등은 250평, 패류는 200평 이상, 육상축제식은 2ha 이상 등에 신청자격을 부여하여 중규모이상으로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농업분야와 균형을 맞추었다.

컨설팅업체의 인증기간은 2년으로 하고, 2년 경과 후 인증기간 준수여부 현지점검 및 사업수행 상황 설문조사 등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재인증 여부를 결정하여 업체간 경쟁 및 컨설팅 질 향상을 유도하였다.

일부 서식 및 별표를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에 등재하여 지침을 간소화하고, Agrix 운영활성화를 유도하였다.

Agrix에 제출된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분석하여 사업대상 농업경영체의 10%를 선정하고 컨설팅 전후 매출액, 소득 증가율, 부채 등 재무적 관점, 고객관계 방법 변화, 상품개발 여부, 생산성 변화, 마케팅추진, 업무추진 변화 등 학습과 성장 관점에서 성과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컨설팅 전후의 농가 소득 증가율이 37.3%라는 높은 성과를 이루었다.

<표 2-3-6> 경영컨설팅사업비 지원현황

구 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사업량(개소)	220	441	553	759	847	870	1,000	1,009	1,080	1,250	1,448
사업비(백만 원)	1,710	3,388	4,427	5,586	5,696	6,550	8,000	8,640	8,640	9,750	11,200
국 고	671	1,227	1,499	1,676	1,709	1,965	4,000	4,400	4,400	5,000	5,600

다. 평가 및 향후계획

농업경영컨설팅은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를 하였으며, 농가, 법인, 조직체에 컨설팅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인식시켜주었다. 2011년부터는 자부담을 현재 30%에서 50%로 확대하여 컨설팅을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4. 대규모 농어업회사 육성

(농촌정책과 사무관 김정욱)

가. 추진배경 및 개요

FTA 체결 가속화, WTO 보조금·관세 감축 등 시장의 개방 확대로 농어업분야도 무한경쟁시대를 맞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농가당 경지면적은 1.45ha로 농업선진국인 네덜란드의 1/16 수준이고 근로자 50인 이상은 전체 농업법인의 0.5%로 개방화에 대응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규모화된 농업경영체의 성장은 미흡한 상태이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규모화된 농업경영체 육성을 통한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08년 국가소유 대규모 간척지를 활용한 대규모 농어업 육성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국정과제로 추진하게 되었다.

이 사업은 가족농 근간인 기존 농정의 틀을 유지하면서 민간의 농어업분야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통해 개방화 시대에 경쟁력을 갖춘 수출지향형 농어업회사 설립하고 농어업을 2·3차 산업화 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정부는 사업추진을 위해 농어촌공사에 실무추진단인 기업농육성팀을 조직('08.4)하고 학계, 관련 단체로 구성된 자문·의결 기구인 대규모 농어업회사 육성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08.9)하여 토론회 개최, 지역주민 공청회 등 각계 의견 수렴을 통해 영산강산이 2-1공구(713ha), 새만금 광활면(700ha) 2개 지역을 사업대상지로 하는 내용으로 「대규모 농어업회사 육성사업」 세부계획을 확정('08.12)했다.

'08년 12월 영산강, 새만금 2개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공고 및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대상자를 공모하였다. 공모결과 총 32개 업체(새만금지구 20개, 영산강지구 12개)가 사업공모를 신청하였다.

'09.4월 학계, 연구원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평가단(지구당 10명)이 수출활성화 방안 등 5개 항목에 대해 서면 및 프리젠테이션 평가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새만금 지구 3개업체, 영산강 지구 4개업체)와 예비후보(새만금지구 2개업체, 영산강 1

개업체)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업체는 수출지향형 시설원예, 친환경 축산, 첨단기술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으며 각 업체별 사업신청 규모는 100~700ha였다.

사업자 선정을 위해 우선협상대상자 사업계획서 보완('09.4~7) 대규모농어업회사추진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임대료, 사업품목, 기반시설 지원범위 등 협상기준을 마련('09.7)하였다. 특히 사업품목은 수입품목, 수입대체 품목으로 한정하여 수출활성화 및 식량자급률 제고, 내수 시장의 교란 최소화 등의 효과를 도모했다.

'09.11월 영산강 지구 713ha에 대한 사업자 3개 업체(한빛들, 장수채, 삼호용양영농조합)와 협약을 체결하고, '10년 2월 1개업체(매봉합자회사)와 추가협약을 체결하였다. 새만금 지구는 '10년 4월 3개사업자(농산무역, 동부팜새만금, 초록마을)와 사업협약을 체결하였다.¹⁾

다. 평가 및 향후계획

대규모 농어업회사 육성 사업이 성공적 추진되면 그 동안 민간투자의 사각 지대였던 농어업분야가 새로운 민간 투자 모멘텀이 형성되고 농식품의 수출활성화 등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10년도에는 영산강지구를 대상으로 일시경작 등 본격적인 사업에 앞서 시험재배 등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영산강 및 새만금지구의 사업자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 및 점검 등을 할 계획이다.

1) 영산강지구 사업자 사업면적 및 품목 : 한빛들(190ha, 파프리카 등 시설원예), 장수채(140ha, 땅콩나물·새싹채소), 삼호용양영농조합(180ha, 친환경축산, 청보리, 무화과), 매봉합자회사(100ha, 양파·배추 등 신선농산물 및 가공식품), 새만금지구 농산무역(250ha, 파프리카 등 시설원예), 동부팜새만금(333.3ha, 시설원예, 사료작물, 유기한우 등), 초록마을(116.7ha, 사료작물, 유기한우, 가공식품 등)

5. 영농규모화 촉진

(농지과 사무관 정수경)

가. 추진배경 및 개요

농업개방 확대에 대비하여 영농의 규모화·집단화를 통한 경쟁력 있는 전업농을 육성하기 위해 1990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제정하여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영농규모화사업을 도입·시행하고 있다. 특히, 쌀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국내 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곡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쌀 전업농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규모화된 전업농 육성과 헌법의 경자유전(耕者有田)원칙 실현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가 주로 비농가, 전업 또는 은퇴하는 농업인들로부터 소유농지를 매입 또는 임차하여 이를 전업농육성대상자, 농업법인 등에게 장기저리 균분상환 조건으로 매도 또는 임대하거나, 농업인간의 교환·분합을 지원하여 영농의 규모화·집단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영농규모화사업」을 통해 1990년부터 2009년까지 총 6조 1,295억 원을 지원하여 154,587ha의 농지를 208,264농가에 규모화·집단화시켜 호당 평균 약 0.7ha의 규모 확대에 기여하였으며, 2009년에는 농지매매 1,966ha 1,696억 원, 농지임대차 3,238ha 798억 원, 농지교환·분합 16ha 18억 원 등 총 5,220ha 2,512억 원을 6,229농가에 지원하였다.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경영규모가 일정규모(논 1.5ha, 밭 1ha, 시설 0.3ha)이상인 전업농육성대상자 또는 벼(밭작물 포함)를 주 작목으로 설립된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5ha이상, 농업회사법인 10ha이상) 등에 대해 농가당 10ha(농업법인 20ha)한도 내에서 영농규모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쌀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2013년까지 6ha규모의 쌀 전업농 7만호가 전체 벼 재배면적의 50% 담당하는 것을 목표로 '95년부터 쌀 전업농육성대상자에 대해 영농규모 확

대를 집중 지원함에 따라 1995년부터 2009년까지 127천ha의 농지를 지원하여 쌀 전업농 수는 1995년 13천호에서 2009년 69천호로 늘어나고, 호당 경영규모는 1995년 2.5ha에서 2009년 5ha로 2배가 확대되었다.

* 쌀 전업농 호당 경영규모 : ('95) 2.5ha → ('05) 4.2 → ('09) 5.0

이는 2009년 쌀 재배농가 평균 경영규모 1.12ha의 4.5배 규모이며 2009년 말 쌀 전업농의 벼 재배면적(347천ha)은 전체 벼 재배면적(924천ha)의 38%로 쌀 전업농 중심으로 규모화가 촉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평가 및 향후계획

쌀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쌀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영농규모화사업을 통한 쌀 전업농육성대상자에 대한 경영규모 확대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2013년까지 6ha규모 쌀 전업농 7만호 육성목표 달성을 위해 2.5~4ha규모 쌀 전업농 육성대상자를 중점 지원하고, 농지은행 농지임대수탁사업(비예산), 자력확대 유도 등을 통해 영농규모화를 촉진시켜 나갈 계획이다.

제4장

농식품 유통 활성화 및 안정적 공급



1. 산지유통 주체의 역량 강화

(유통정책과 사무관 고정만)

가. 추진배경 및 개요

FTA, DDA 등 시장개방 확대, 대형유통업체 성장 및 소비자 기호변화 등 유통구조가 구매자 중심(buyer's market)으로 변화됨에 따라 생산자 단체 및 산지유통주체도 규모화·조직화·전문화를 통한 교섭력 역량 강화가 절실하다.

그러나, 상당수 산지유통조직이 지역조합단위 소규모 판매사업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경영면에서도 마케팅 경험과 능력이 있는 전문가를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상품화·브랜드화·고정거래처 확보 등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유통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농산물유통의 근본문제인 산지유통조직의 영세성을 극복하기 위해 시·군 단위 이상으로 농가를 조직화하고 공동브랜드를 사용하여 연간 100억 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상위 마케팅조직 육성이 필요하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00년부터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규모화·전문화된 산지 유통조직 육성을 위해 사업자금 융자 지원을 통해 대형(공동마케팅조직), 중형(전문조직), 소형(일반조직)으로 구분하여 자금을 차등지원, 단계별 발전을 유도하여 왔으며, 산지유통시설을 확충하는 등 마케팅의 규모화·전문화에 역점을 두어 2009년까지 공동마케팅조직(26개소) 및 전문조직(288개소) 등을 선정하였고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297개소를 지원함으로써 산지유통기반을 마련하였다.

공동마케팅조직은 2005년도에 최초로 9개 조직을 시작으로 2009년까지 공모를 통

해 농가조직화, 사업규모, 브랜드 능력, 경영성과, 향후발전계획 등에 대한 현지실사와 평가를 실시한 후 관계전문가로 구성·운영되는 산지유통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26개 조직을 선정하였다. 3년간 용자 1%의 유통정책자금, 1년간 무이자인센티브, 홍보 및 브랜드 개발지원 자금을 지원하였으며, 공동선별비 보조(20~50%), APC시설보완 사업자 우선선정, 공동마케팅조직 회원농가에 대한 농업종합자금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였다.

공동마케팅조직은 기존 산지유통조직을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 광역화된 사업 권역, 회원제 생산·출하관리 등 차세대 기업형 마케팅조직으로 육성해 가고 산지유통 전문조직은 매년 매출규모, 영업이익 등 경영성과를 분석, 농협군과 법인군으로 분리하고 상대평가하여 A~F등급(6개 그룹)으로 구분,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 금리를 1~3% 차등화하고 우수조직은 무이자 인센티브자금을, 하위 10%의 부진조직은 자금회수 및 사업 참여제한 등 구조조정을 통해 투자효율성을 제고하고 선택과 집중의 지원체계를 강화하였다.

아울러, 2004년 농협법 개정을 통하여 조합공동사업법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동마케팅조직으로 선정된 농협연합사업단에 법인화를 의무화 하고, 실질적인 경제사업에 전념하도록 함으로써 공동마케팅조직의 규모화·조직화가 더욱 촉진될 전망이다.

또한, 산지유통혁신을 위한 정보화 기반을 구축하고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케팅 전문화를 주도할 유통인재 활용을 촉진하고 수확후 관리기술도 적극 개발하여 APC 등에 보급하였다. 공동마케팅조직 및 산지유통전문조직에서 농산물 판매·유통·품질관리 등 경제사업에 종사하는 품질관리사에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농산물 품질·유통관리 인력에 대한 사기진작과 경제사업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유통인재 양성을 위한 「농산물 유통전문교육과정」을 지방대학과 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교육원 등에서 저온저장, 브랜드 개발, 안전성 관리, 물류개선, 수출마케팅 등 유통단계·분야별로 특화된 3~9개월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한편, 품목별 수확후 관리기술 매뉴얼을 개발하여 사이버컨설팅도 지원하였다.

'05년부터는 매년 산지유통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산지유통조직의 사업추진실적을 평가해 왔으며, 그동안 운용실적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사업체계 개선안을 마련('10.7월) 하여, 장기정체 조직의 지원중단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산지조직 간 합병·계열화를 통한 조직화·규모화 유인을 제고하고, 합병·계열화의 결과, 통합조직 또는 계열화 상위조

직으로 다량의 원물이 집중되어, 산지의 시장교섭력 제고 및 취급액 증대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다. 평가 및 향후계획

산지유통사업체계 개편안('10.7월)이 마련됨에 따라 장기정체 조직에 대한 지원중단 강화로 산지조직의 적극적 발전 유도가 가능하고, 산지조직간 수직계열화 촉진으로 산지 조직화·규모화 속도가 증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자금 지원이 중단된 조직이 자력으로 등급승급을 못할 경우, 상위등급 조직의 산하 계열조직으로 편입(상위등급 조직에 원물 공급)하여 상위등급조직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자금지원을 받도록 유도하여 산지조직간 연계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산지의 조직화·규모화를 가속화할 계획이다.

상위마케팅조직 중심으로 산지유통이 활성화되면 단순 공동판매에서 상품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산지-소비자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담당할 책임 있는 거래 주체로서 우리나라 농업경쟁력과 농가소득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산지유통 조직의 주요 원예농산물 유통점유비가 '17년까지 50%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소비자 물류혁신 및 도매시장 운영 효율화

(유통정책과 사무관 유창상)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최근 농수산물유통환경의 변화에 따라 소비자에게 품질이 높은 안전한 농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농산물도매시장의 안전성 검사를 '09.1.1부터 도입 하였다. 도매시장 안전성 검사는 도매시장 개설자가 검사체계, 검사시기와 주기, 검사품목, 수거시료 및 기준미달품의 관리방법 등을 포함한 안전성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도매시장 안전성검사 결과 기준 미달품으로 판정되면 출하를 제한하고 있으며, 도매시장의 안전성 검사를 위반한 자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09년부터 출하자 신고를 의무화 하였다.

또한, 도매시장의 거래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09년부터 일정기준 이상의 시설에 보관 중인 농수산물에는 견본만을 도매시장에 반입하여 거래할 수 있도록 하여 '07년부터 도입된 전자거래와 함께 농수산물의 물류효율화를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농식품부에서는 금년 4월 도매시장 개설자, 도매시장법인 및 도매시장 공판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여 도매시장 평가, 도매시장 운영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09년부터 추진 중인 도매시장 안전성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서 실시 중이며, 출하자 신고는 약 26만 명이 신고하였다.

또한, 농산물 상품성 향상을 위해 표준규격으로 출하하는 생산자 등에게 포장재비를 지원하고, 산지에서 농산물의 균질화·규모화를 통한 물류효율화를 촉진하기 위해 산지 유통전문조직 및 공동마케팅 조직의 표준규격으로 농산물을 공동선별·공동출하·공동계산 물량에 대한 공동선별비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2006년도에 수도권 8개 시장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배추 포장유통 사업을 2007년 1월부터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으로 확대하여 배추·무의 상품성 향상, 투명한 거래 정착, 도매시장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생산자·출하자의 포장재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08년까지 포장재비를 집중 지원했다.

다. 평가 및 향후계획

현재 유통환경 변화와 소비자의 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노후화된 도매시장의 시설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해 '07년에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계획을 수립하고, '08년 1월 시설현대화가 필요한 11개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 가락 등 8개 도매시장이 시설현대화를 신청하였다. 도매시장 시설현대화는 성장가능성, 시설의 노후화 정도 및 과부족 전망, 지자체의 의지 및 계획의 적정성, 시설정비에 연계한 운영 개선 방안 등을 종합평가하여 서울 가락, 광주 각화, 대전 오정을 선정하여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정부는 중앙도매시장을 우선 시설현대화를 추진하고, 향후 예산 범위 내에서 지방도매시장으로의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3.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친환경농업과 사무관 류성모)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친환경농업 확산으로 유기재배 농산물 등 친환경농산물의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의 신뢰도 제고 및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서 소비촉진 홍보, 구매자금 지원, 품질관리 강화, 친환경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 등 판매 및 유통지원대책의 추진을 강화하고 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자조금 단체를 설립하여 자조금을 2006년 8억 원을 신규로 조성하였고, 2007년에는 16억 원, 2008년에는 14억 원, 2009년에는 20억 원을 조성하였다. 2010년에 15억 원을 조성하여 각종대중매체 홍보, 판촉행사, 소비자 초청 체험행사, 친환경농산물 관련 축제지원 및 대량소비처 신규발굴 등을 추진하여 나아갈 계획이다.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소비자단체의 명예감시원을 중심으로 주기적인 유통실태 및 품질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인증농가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친환경농산물의 신뢰성을 높여 나가고 있다. 또한 다양한 유통경로 확보를 위하여 2009년부터 친환경농산물 사이버거래소를 농수산물유통공사에 개설 운영 중에 있다. 친환경농산물의 계약재배, 구매를 통한 안정적인 판로확보 및 집중출하 방지로 농가소득 제고와 친환경농업 저변확대 유도 및 연중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친환경농산물직거래매취자금을 1999년을 시작으로 2006년에 200억 원, 2007년에 200억 원, 2008년에 360억 원, 2009년에 400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0년에는 4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친환경농산물 자조금 이외에 소비촉진홍보사업을 통하여 학교급식과 같은 대량소비처 발굴 및 친환경농산물 홍보사업을 특화하고 있다.

더욱이 경기도 광주시에 건립 추진 중인 친환경농산물종합유통센터('09~'12년)는 친환경농산물의 중앙시장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이는 친환경농산물의 대표가격 제시, 가격의 투명성 확보 뿐만 아니라 대량수집과 분산을 통한 유통비용 절감에도 일조할

것이다. 친환경농산물종합유통센터는 유통기능과 더불어 최근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확대추진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센터기능도 할 것이다.

다. 평가 및 향후계획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농협, 친환경농업단체 및 소비자단체와 연계한 대량 수요처 발굴, 소비자의 현장체험 확대를 통한 신뢰도 제고, 구매자금지원 확대 등을 통한 안정적인 생산·유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친환경농산물의 우수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품질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친환경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유통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4. 시·군 유통회사 설립 가속화

(유통정책과 사무관 고경만)

가. 추진배경 및 개요

대형유통업체의 확산 등 소비자의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지유통조직의 규모화·전문화 등 혁신이 필요하나, 지역농협은 대부분 읍·면 단위의 소규모 조직으로 거래교섭력이 낮고 기업적 경영방식 도입에도 한계가 있다. 또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은 경영 전문성은 상대적으로 높으나 외부자본 조달의 어려움으로 규모화 수준이 미흡하고, 조합공동사업법인은 폐쇄적 자본구조, CEO의 독립성·전문성 부족 등으로 경영성과가 부진하는 등 영세한 산지유통조직으로는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키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시·군 단위 이상으로 규모화 된 농수산물 판매 전문회사 설립을 추진하여, 읍면단위의 산지유통조직의 한계를 극복하고 매출액 증가 등 시·군단위 산지유통의 성공 모델을 시현하고, 산지수집상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여 농가수취가격을 제고하는 등 시군유통회사 설립을 계기로 산지유통 혁신운동의 촉발을 도모한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기존 조직의 장·단점과 성과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08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09년부터 시군 유통회사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였고, 시장·군수 워크숍('09.4월), 유통회사 설립 관계자 워크숍('09.5·6월 2회) 등을 통해 농어업인 및 관계자 의견 수렴을 실시하였고,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법률·회계 자문단을 구성('09.7월), 정관작성 등 회사 설립업무를 지원하였다.

2010.10월까지 공모를 통해 신청한 조직(20개)에 대해 사업계획 적정성, 사업수행 능력, 조직형태 및 의사결정 구조, 지자체의 추진의지 등에 대한 3단계 평가(현장 확인·서면심사·공개발표평가)를 실시한 후 성공가능성이 높은 10개 조직을 시군 유통회사로 선정하였다.

시군 유통회사의 성공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가 조직화·교육, 홍보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3년간 총 20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연간 6.6억 원)하고, 원물확보 등에 필요한 운영활성화자금을 30억 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다.

그간 매출액 증가(고흥 53%, 의령 181%), 농협 산지유통 혁신 촉발 등 성과는 있었으나, 성공모델 시현에 일부 장애요소가 존재하고 있는데 농협 등 기존 산지조직과의 갈등으로 원물확보에 애로가 발생하고 있고, 시·군 및 농어업인 출자 등으로 지역 정치 쟁점화 우려가 있다.

또한 시·군 및 농어업인의 출자 참여로 의사결정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지자체의 경영간섭 등 민간주도의 책임경영에 한계가 있으며 기존 산지조직육성사업(산지유통활성화사업 등)과 연계성 미흡(별도의 선정·지원 체계)으로 산지유통계열화 체계의 혼란 등 정책효과가 반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그동안 운용실적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사업체계 개선안을 마련('10.7월)하여, 신규 사업자 선정 및 지원은 기존 대형조직(공동계산취급액 100억 원 이상) 중 일정정도 기반을 갖추고 발전가능성이 높은 조직과 관내의 기존 산지조직(농협, 농업회사법인 등)과 협력체계·계열화 수준 등을 반영하여 선정토록 개선하였다. 또한 기업적 경영방식(출자비례 의결권)과 전문CEO 책임경영체제 요건을 전제로 지역여건에 따라 다양한 모델(출자구조, 조직형태 등)을 수용하여 현행 지자체 출자형 회사구조 외에도 규모화·조직화 가능성 높은 유통조직(조합공동사업법인, 영농조합법인 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였다.

아울러 사업명도 “시군유통회사 설립·운영지원”에서 “광역유통주체 육성·지원”으로 변경하여 제도개선안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였다.

다. 평가 및 향후계획

기존 유통회사는 동일 시·군 내 시군유통회사와 기존 산지조직(농협 등) 간 경쟁관계 해소에 주력하여 “지역마케팅 협의회”(’10.3월)를 적극 활용하여 경영컨설팅, 마케팅 통합 등을 유도하고 있다. 시군유통회사에 산하 출자농협 등에 대한 자금배정 권한을 부여하여 산하 출자농협 등의 경우, APC·산지유통종합자금 등을 시군유통회사를 통해서만 신청토록 하여 시군유통회사를 중심으로 마케팅창구 일원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신규 유통회사는 사업체제 개선안이 정착할 수 있도록 매년 2~3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나 ’11년도에는 신규사업자 선정을 일시 중단하여 내실화할 계획이다.

시군 유통회사의 활성화를 통해 단순 공동판매에서 벗어나 규모화·전문화된 상품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산지-소비자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담당할 책임 있는 거래 주체로서 우리나라 농업경쟁력과 농가소득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 품목별 대표조직 육성

(채소특작과 농업사무관 김도범)

가. 추진배경 및 개요

그동안 품목 또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생산자조직과 소비자에게 농수산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조직된 자조금 단체 등이 활동하여 왔으나,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유통 환경과 개방화의 확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현행 자조금 단체의 경우 소비촉진 홍보 등 기능이 단순하여 산업전체를 견인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농수협은 여러 개의 품목을 종합적으로 취급함에 따라 품목에 대한 전문성·대표성이 취약한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DDA·FTA 등 개방화가 진전될 경우에는 관세 등 규제제도를 활용한 산업보호 기능이 갈수록 약화되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의 약화된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조직 육성이 시급하게 되어 정부에서는 품목별 대표조직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

대표조직은 각 품목의 생산에서 유통·소비 등에 관여하는 주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품목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해당 대표조직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스스로 해결하고, 해당품목 발전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주요 기능은 초기단계에는 자조금활동 등을 통한 소비 촉진홍보 및 관측정보 교환을 통한 자율적인 출하조절 등을 담당 하도록 하고, 조직의 사업수행 능력 등이 어느 정도 확보될 경우에는 품목문제에서 발생하는 애로요인 해소 연구(R&D) 및 능동적 시장 대응을 위한 마케팅 사업 등 종합적인 역할을 수행토록 함으로써 품목산업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에서는 조직화 정도에 따라 자조금사업 시행권을 대표조직에 이양하고, 정책수립시 대표조직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대표조직의 역할 강화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품목별 대표조직은 정부주도가 아닌 산업참여형으로 운영될 때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농업인 등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2009년 상반기 중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추진방향 설명 및 의견수렴 등을 실시하였다.

먼저, 농수산물중 생산액·수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9개 품목을 선정, 생산에서 유통·가공·수출·소비단계까지 가치사슬(value chain)분석 및 조직현황·설립여건 등을 검토하여 품목별 생산·유통구조개선대책(시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의견수렴을 위한 워크숍·간담회·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워크숍에서 추진방향 및 선진사례 소개와 품목발전을 위한 토론을 실시한 결과 급속한 시장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표조직 육성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일치되었다. 이에 따라 조직 설립이 가능한 28개 품목 단체가 대표조직을 출범하였다.

<표 2-4-1> 28개 품목현황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16	6	6
쌀, 배추, 고추, 마늘, 양파, 파프리카, 토마토, 딸기, 인삼, 버섯, 사과, 배, 포도, 단감, 감귤, 백합	한우, 돼지, 우유, 계란, 오리, 양봉	오징어, 고등어, 멸치, 넙치, 전복, 김

또한, 대표조직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114명으로 구성된 품목별 전문가 그룹을 편성하여 자문을 실시토록하고,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생산·유통·가공·수출 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품목별연구회를 설립하여 품목별 생산·유통구조개선대책 수립 및 대표조직 발전에 관한 사항을 연구하도록 하였다.

다. 평가 및 향후계획

2009년 하반기 28개 대표조직이 설립되었으나, 설립 초기 단계로 그 기능과 권한이 미약하여 결집력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표조직 기능 활성화 방안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정부와 대표조직간 정책파트너십 강화, 대표조직의 집행기구 설치 및 운용 규정 조기정비, 기능·권한 이양을 통한 회원 결속력 확보, 품목별 연구회의 위상과 역할 강화, 대표조직 역할의 제도적 뒷받침, 품목 현안사항 해결방안 강구 등이다.

특히, 품목별 비용절감 운동을 대표조직 중심으로 추진하여 비용절감 기술·기법 확산운동을 추진하고, 유통협약·명령 제안 및 생산 쿼터제 운영 역할을 부여함에 따라 향후 대표조직 중심의 산업체계 개편이 예상된다.

또한 중장기 발전방안을 수립하여 궁극적으로 대표조직이 마케팅보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제2절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1. 정부 양곡 관리

(식량정책과 서기관 송태복·사무관 이재갑, 농가소득안전추진단 사무관 강경란)

가. 추진배경 및 개요

공급부족의 시대에서는 쌀의 증산정책이 제1의 목표였다. '90년대까지는 쌀이 부족한 시기였다. 쌀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통일벼 등 다수확 품종의 육성, 생산기반 조성 등 증산위주의 쌀 생산 확대 정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이중곡가제도인 추곡수매제('48~'04년)를 통해 식량안보 확보, 농가소득 보장(쌀의 고가 매입), 서민생활 안정(쌀의 저가 판매)을 동시에 추진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90년대 이후에는 공급 과잉시대를 맞아 국제질서에 부합한 시장 지향적 정책으로 전환 하는 등 시장을 통해 쌀을 자율적으로 수급 조절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생산부문에서는 증산에서 품질위주로 전환하였으며, 생산조정제를 실시하고 있다. 유통 부문에서는 RPC(미곡종합처리장, Rice Processing Center) 구조조정을 통한 민간중심, 시장중심의 자율적 유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내 쌀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04년 WTO 쌀 협상 결과에 따라 의무수입물량(TRQ)은 '05년 225천 톤에서 '14년 409천 톤까지 증량되고 그 중 일정물량이 밥쌀용으로 시장에 공급되고 있다.

<표 2-4-2> 의무 수입물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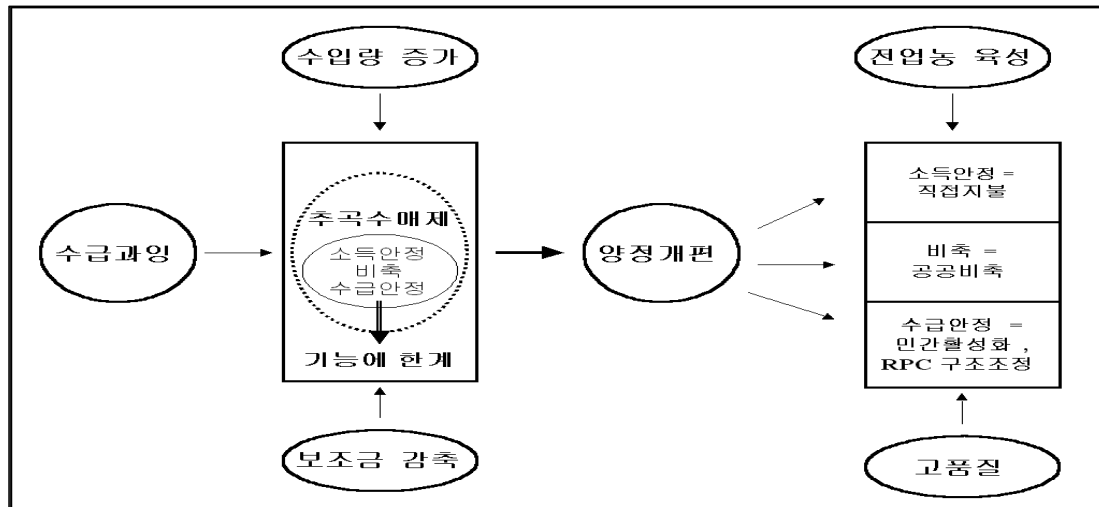
년 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총량(천 톤)	226	246	266	287	307	327	348	368	388	409

가격측면에서는 추곡수매제를 폐지('05)하여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하였으며, 쌀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예상되는 농가소득 감소분은 쌀소득보전직불제를 도입하여 보완하였다. 그리고 식량안보 차원에서 공공비축제를 도입하여 전시·자연재해 및 이에 준하는 비상시를 대비하여 식량을 비축하도록 개편하였다.

아울러 WTO보조금 범위 내에서 운용되던 추곡수매제도는 '95년 WTO체제 출범이후 지속적인 보조금 감축으로 국내생산량의 30% 수준에 달했던 정부수매량이 '04년도에는 생산량의 15%수준까지 줄어들게 되어 추곡수매제 본래의 소득지지기능과 물량흡수기능이 약화되었다.

추곡수매제의 기능 약화와 시장개방 폭 확대에 따른 쌀값 하락에 능동적으로 대응코자 반세기 이상 지속되어오던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와 쌀소득보전직불제를 도입하는 양정제도를 개편하였다. 이로써 그동안 추곡수매제도의 가격지지 중심으로 통합 운영되어오던 양곡유통정책이 식량안보용 비축은 공공비축제로 운영하고, 쌀값하락에 따른 소득보전은 쌀소득보전직불제, 수급조절은 민간유통활성화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그림 2-4-1> 양곡관리 시스템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공공비축제도 도입

공공비축제는 WTO허용보조 요건을 충족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보조금감축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고 급변하는 국내외적 시장상황에 능동적 대응이 가능한 제도이다. 공공 비축제가 WTO 협정상 허용보조가 되기 위해서는 제도화된 식량안보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재정적으로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시가로 매입하고 시가로 방출하여야 한다. 또한 공비축제는 재해,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여 일정수준의 재고를 안정적으로 유지함으로써 국민의 식량안보를 위한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제도로 운영된다.

< 정부비축미 물량 >

- 1차('05~'07년) : 864천 톤('05년 576천 톤, '06년 504, '07년 432)
- 2차('08~'10년) : 720천 톤('08년 400천 톤, '09년 370, '10년 340)

* 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에서는 국내 식용소비량의 17~18% 수준을 적정재고량으로 권장

공공비축제 도입과 함께 수확기 홍수출하물량 흡수를 위해 산물벼 처리능력 제고를 위한 건조·저장시설을 확충하는 등 산지 RPC를 중심으로 민간유통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고품질 쌀에 대한 소비자욕구가 늘고 있는 점을 반영, 품질 좋은 쌀이 시장에서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생산·유통측면에서도 시장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품질고급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아세안+3 쌀 비축제(APTERR, ASEAN Plus Three Emergency Rice Reserve)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ASEAN+3 국가에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각국에서 비축해 둔 쌀을 재해가 발생한 나라에 공급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동아시아 지역의 식량안보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최근 이 프로그램의 협정문이 잠정 타결되어 ASEAN+3 장관회의 서명을 준비 중에 있다.

<표 2-4-3> 국가별 쌀 약정 현황

(단위 : 천 톤)

중국	일본	한국	태국	베트남 미얀마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폴	라오스 브루나이 캄보디아	합계
300	250	150	15	각 14	각 12	6	5	각 3	787

2) 쌀소득보전직불제도입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정부가 목표가격을 정하고 산지 쌀값이 목표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떨어진 금액의 일정부분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목표가격은 쌀의 산지 수확기(10월~익년1월) 평균가격을 감안해 정한다.

목표가격은 3년마다 국회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게 되어 있으며 현재는 쌀 80kg 한 가마당 170,083원으로 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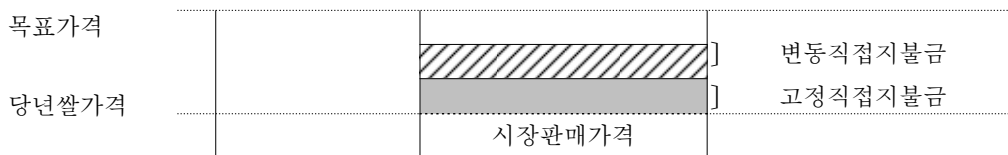
직불금은 그 지급방법에 따라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정직불금은 논 농업이 주는 사회 공익적인 차원에서 지불하는 금액의 성격이며, 변동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 보전 차원에서 지급하고 있다. 고정직불금은 쌀값 등락과 관계없이 ha당 평균 60만 원을 지급하며, 변동직불금은 목표가격과 산지가격과의 차이의 85%에서 고정직불금 지급단가를 뺀 금액을 쌀을 생산한 농업인들에 지급한다.

쌀직불금의 지급 대상농지는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1988.1.1부터 2000.12.31까지는 농업(벼·연근·미나리·왕골 재배)에 이용된 농지(농지법에 의한 농지)에 대해 지급하고 있다.

쌀직불금의 지급 대상자는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 경작하거나 경영하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포함)에게 지급하고 있다.

<그림 2-4-2> 쌀소득보전직불제

$$< \text{직접지불 금액(A)} = (\text{목표가격} - \text{당년쌀값}) \times \text{보전수준(85\%)} >$$



연도별로 지급한 쌀소득보전직불 규모는 다음과 같다.

<표 2-4-4> 연도별 쌀소득보전직불 지급액

연 도	'06	'07	'08	'09
지급액	1,160천 원	999천 원	700천 원	1,437천 원

다. 평가 및 향후 계획

WTO·DDA 등으로 쌀시장 개방 확대가 예상되는 등 양곡정책의 여건 변화에 따라 양곡관리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추곡수매제(국회동의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를 도입함으로써 시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쌀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쌀의 원산지표시를 강화하고 있다. 시중에 유통되는 쌀의 원산지를 관리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쌀로 만든 식품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가 구입하는 쌀의 품종과 생산된 년도, 쌀을 가공한 장소 등을 표시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고 있다.

양정제도를 개편하면서 쌀 생산농가의 소득을 보전하는 장치를 두기 위해 쌀 소득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우리 쌀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쌀소득변동직불기금을 통해 농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쌀 관련 정책을 실시한 결과 쌀의 식량자급률은 98%로서 안정적으로 쌀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세계 식량 수급예측에 의하면 세계 곡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 이변으로 재해가 발생하고, 개발도상국의 식량 소비량 증가 추세에 따라 곡물의 수급이 어려워질 것이다. 세계 곡물시장의 변화에 따라 식량의 무기화에 대한 우려도 덜 수 있다. 안정적인 식량의 공급, 특히 주곡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쌀 관련 정책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쌀 위주의 정책을 실시한 결과 밀이나 콩 등 다른 작물의 생산기반이 약화되었다. 2009년 기준으로 밀의 자급률은 0.9%, 옥수수 4%, 콩은 32.5%로서 일정수준 이상으로 품목별 자급률을 높이는 과제가 남아 있다.

향후 쌀 산업의 주요 현안은 생산과 수급이 균형을 잡는 일이다. 현재는 쌀의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실정이다. 식량으로 소비하는 쌀의 소비가 큰 폭으로 줄고 있고 MMA 수입쌀의 양도 매년 2만 톤씩 늘고 있다. 쌀의 균형 있는 수급 조정을 위해서는 쌀 생산조정제를 통해 생산량을 조정하고 쌀 가공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쌀의 수급조절을 위해 밥으로 소비하는 쌀은 고품질 쌀 생산기반을 정착하고 가공용으로 사용하는 쌀은 용도에 따라 품종을 개량하여 활용할 예정이다.

<표 2-4-5> 쌀 생산 환경 변화(예측)

700천ha	192천ha('14년까지)
◇ 친환경 고품질 밥쌀용 생산 * 생산량 350만 톤 수준	◇ 가공·특수미, 소득작물 재배 '10년 '14년 ■ 가 공 용 : 35천ha → 100 ■ 조사료용 : 3천ha → 40 ■ 주 정 용 : 1천ha → 5 ■ 타 작 물 : 14천ha → 47

이와 더불어 논에 타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쌀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2011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매년 4만ha씩 논에 타 작목을 재배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쌀 생산량을 연간 20만 톤 이상 감축해 나갈 예정이다.

가공용 쌀의 생산기반 확대와 가공 산업의 육성을 통해 쌀 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쌀 소비문화를 정착시켜 소비확대를 유도하고 쌀 가공 기술개발을 통해 밀의 대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중장기적인 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①쌀 생산농가의 소득 안정, ②생산 조정의 제도화, ③쌀 가공 산업 육성, ④쌀 유통시스템의 선진화 등이 필요하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장관 직속의 Task Force를 두어 운영하고 있으며 연말까지는 「쌀 산업 발전 5개년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제5장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



제1절

농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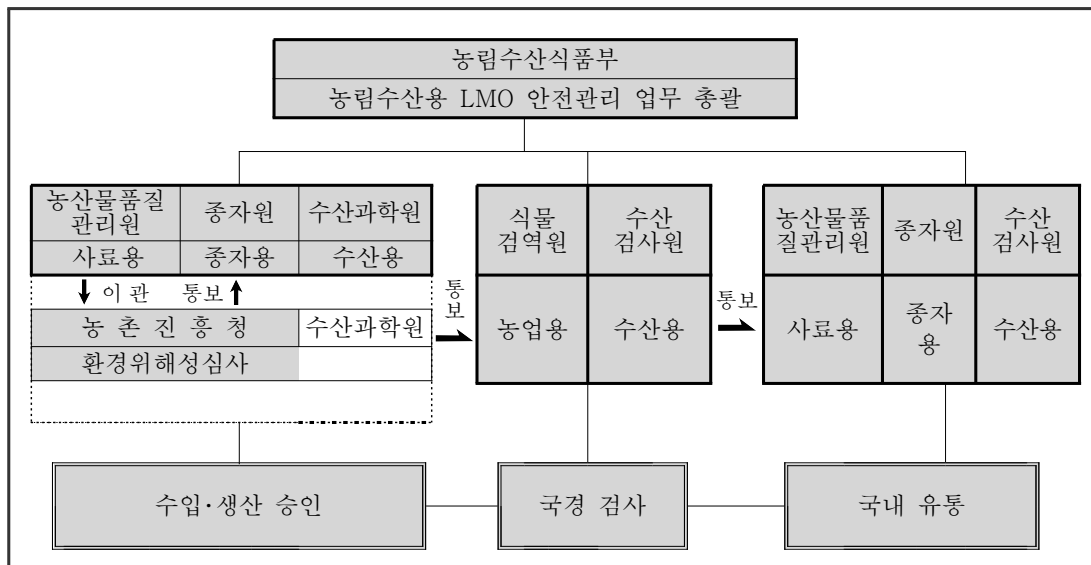
1. 농산물안전성조사(LMO 수입승인 및 안전관리)

(검역정책과 사무관 지일구)

가. 추진배경 및 개요

2008년 1월 1일부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국내에 수입·생산되는 농림수산물용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 LMO)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1차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농림수산물식품부 소속기관별 소관업무에 따라 LMO 안전관리 역할을 분담하여 연구개발 단계부터 수입·생산 및 국내 유통 단계에 이르기까지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였다.

<그림 2-5-1> 농림수산물용 LMO 안전관리체계



나. 추진내용 및 성과

사료용 LMO의 국내 비의도적 환경방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NGO단체 등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8개반 49명)하여 2009년 7월 7일부터 7월 24일까지 사료 공장 주변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4개 업체를 적발하였다.

LMO 표시제 정착을 위하여 관련협회, 유통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한국조리사회중앙회·YMCA 등 1,452명)을 실시하고, LMO 표시의 철저한 이행을 위하여 54천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표시위반 18건을 적발하였다.

다. 평가 및 향후계획

농림수산물 LMO의 안전관리는 2008년에 수립된 ‘제1차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계획’을 바탕으로 농림수산물 LMO 안전관리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물 LMO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앞으로도 사료용 LMO의 국내 비의도적 환경방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입항구, 사료공장 주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LMO 표시대상 품목에 대한 LMO 표시 이행 여부도 중점 조사해 나갈 계획이다.

2.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

(소비안전정책과 사무관 김평전)

가. 추진배경 및 개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는 최초 1991년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입 농수산물에 대해 원산지표시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이후 외국산 농수산물의 수입 증가와 국산 식생활패턴의 변화로 외식소비가 늘어나면서 값싼 수입수산물의 둔갑사례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산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유통질서의 확립과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94년부터 국내에서 유통되는 농수산물과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를 의무화한 것이다. 또한, 불량만두소, 김, 기생충 등 식품문제가 사회문제로 비화되면서 먹을거리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으며, 특히 미국산 쇠고기 파동으로 음식점에서 수입산 쇠

고기와 한우를 구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짐에 따라 2007년부터 음식점에 대해서도 원산지표시제를 도입하였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997년 대규모(300㎡ 이상) 일반 음식점에 구이용 쇠고기에 한해 원산지 표시제를 도입하였으며, 이후 2008. 7월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식품위생법을 근거로 하여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는 모든 음식점에 쌀, 배추김치는 100㎡ 이상 음식점으로 확대하였다.

* 2009년 현재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 531개 품목

- 국산 농산물 160, 국산 가공품 211, 수입 농산물 및 가공품 160
- 음식점 :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는 모든 음식점, 쌀·배추김치는 100㎡ 이상 음식점

원산지 표시 제도의 조기 정착과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자체 및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언론매체와 홍보책자 및 전단지 등의 배부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단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특별사법경찰공무원 1,100명과 원산지 단속 보조원 118명, 명예감시원 24천 명을 활용하고, 음식점 자율지도원 1,400명을 활용한 영업자 교육 및 지도를 실시하는 등 원산지 표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다. 평가 및 향후계획

이러한 원산지 표시제는 품질이 좋은 국내산 농산물의 수요기반 확충에도 큰 역할을 하였으며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시행되기 전인 2007년과 시행 후인 2009년을 비교해 볼 때 돼지고기 수입은 21%, 김치수입은 40% 감소하였으며, 특히 김치원료인 배추 수입은 96%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또한, 원산지 표시 이행률도 2009년 97.7%로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단속공무원의 확대는 물론 이들에 대한 전문교육 강화 등을 통해 원산지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원산지 표시 대상자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3.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 및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조기정착유도

(안전위생과 사무관 류평열)

가. 추진배경 및 개요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제도」는 2006년도부터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시행되었다. 시행 목적은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와 유통의 각 단계에서 재배포장(栽培圃場) 및 농업용수 등의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하여 안전·안심 농산물 생산·소비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이다.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는 2006년도부터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시행되었으며, 시행 목적은 농산물을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생산·유통관련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해당 농산물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농산물을 추적하여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이력등록대상자는 농산물생산자, 유통자, 판매자이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출장소)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농산물우수관리제도 활성화 지원 사업은 기존의 농산물산지유통시설에 위생시설을 지원하는 GAP위생시설보완사업(보조 : 국비 30%, 지방비 20)과 인증농가가 인증을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토양·용수·생산물에 대한 안전성분석 비용지원(국비보조 100%), 민간인증기관의 운영비(국비보조 100%) 등을 지원하고 있다.

GAP인증을 받고자 하는 생산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는 인증신청 이전에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민간인증기관에 인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은 신청농가에 대한 현장심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 때 인증기관은 신청농가를 방문하여 50개 항목(필수 26, 권장 24)의 농산물우수관리기준(농촌진흥청 고시)의 준수 가능성을 심사하고 심사결과 적격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도를 시행한 이후 정부와 민간의 성실한 노력으로 GAP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최근 추진실적이 다소 둔화됨에 따라 소비확대를 통한 생산유발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학교장, 영양사 등 학교급식관계자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전문가 양성을 위한 워크숍, 다양한 소비계층 확보를 위한 TV, 라디오, 지하철 광고, 차량 랩핑 등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는 '09년도에 대상 품목을 110개 품목에서 국내에서 식용으로 재배되는 모든 품목으로 확대하고, 이력추적관리 대상자 중 행장·노점상 등 단순판매자는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농산물이력추적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제도 확산기반 마련을 위해 농·축·수산물의 이력추적 조회 서비스 제공 시스템 구축하여 소비자가 농축수산물의 이력관리번호(식별번호)를 입력하면 이력조회가 가능하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표 2-5-1> 농산물우수관리제도 및 농산물이력관리 추진 실적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인증기관(개소)	21	31	38	43
GAP관리시설(개소)	190	316	417	484
인증 농가수(호)	3,659	16,796	25,158	28,562
인증 면적(m ²)	4,535	24,754	36,322	40,081
생산 계획량(톤)	101,354	331,421	419,842	434,047
농산물이력등록 농가수	8,808	30,557	48,214	70,612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다. 평가 및 향후계획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는 학교·군납·대량급식소 등의 안전·안심농산물 소비확대 추세를 감안할 때, 2010년 저농약인증제도의 폐지(기존 인증농가는 2015년까지 인증 유효기간 연장)는 결과적으로 인증 농산물의 공급부족과 연계될 수 있으므로 농산물이력추적제도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GAP인증 농산물의 수요가 대폭 증가될 전망이다.

따라서, GAP인증기관, GAP관리시설, GAP인증심사인력, 산지유통시설에 대한 컨설팅, 표준화된 재배 방법의 보급, 총체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민간전문그룹 조직 육성,

농산물우수관리기준의 선진적인 보완, GLOBAL GAP와의 관계설정 등 안정된 조직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는 농가의 등록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생산자가 시스템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고, 생산자의 고령화로 인한 컴퓨터 사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주요 경영체에 생산정보 대행입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향후 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력관리농산물의 유통을 확대하기 위해 학교급식관계자 교육을 강화하고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4. 농산물안전성조사 강화로 부적합품 시장유통 방지

(안전위생과 농업사무관 도현미)

가. 추진배경 및 개요

부적합품의 시장유입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생산·유통·판매단계에서 농약 등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매년초 안전성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수립된 계획에 따라 160여 품목의 생산·유통·판매되는 농산물, 농산물 생산에 사용되는 농지·용수·자재 등을 수거하여 분석하고 있다. 분석 결과 부적합 농산물에 대해서는 폐기, 출하연기, 용도전환토록 조치하고 있으며, 부적합 농지·용수·자재 등에 대해서는 객토, 정화, 유해물질 제거, 비식용작물 재배 등의 방법으로 개량하거나 일정기간 이용·사용 금지토록 조치하고 있다.

최근 소비자들의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안전성조사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2009년도에는 농산물 232개 품목을 대상으로 64천 건 조사하여 계획(57천 건) 대비 113.0% 초과 달성하였다. 유해물질별 조사실적을 살펴보면 농산물 잔류농약

59,104건, 중금속 3,316건, 병원성 미생물(기생충란 포함) 731건, 곰팡이 독소 331건, 농지·용수·자재 452건을 조사하였다.

2009년 안전성 조사 결과 1,503건의 부적합 농산물(2.4%)이 조사 되었으며, 이들 농산물에 대해서는 고발 4건, 폐기 303건, 출하연기 857건, 기타(용도전환 등) 339건으로 조치하였다.

2009년 안전성 조사 물량 확대 및 안전관리 강화로 부적합률이 '08년도 2.9%에서 09년 2.4%로 향상되었다. 또한 분석실의 국제공인인증(KOLAS) 취득을 9개소(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모든 지원)로 확대하고, 분석실(24개소)의 정도관리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분석업무의 투명성 및 신뢰도를 제고하였다. 아울러 소비자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합률 조사 결과 '09년 적합률은 99.3%로 전년도 99.2%대비 0.1% 증가되었다.

다. 평가 및 향후계획

2010년에는 조사물량과 조사대상 분야를 64,000건,(전년 계획대비 13.0% 증), 7개 유해물질 분야('09년 4개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농산물품질관리법의 개정('10. 12)으로 지난해까지 농식품의 안전성을 생산, 저장단계까지 관리하던 것을 '10년부터는 유통·판매 단계까지 영역을 확대하여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일관된 관리를 할 계획이다.

또한 일정 수준의 시설·장비를 갖춘 민간기관을 검사기관으로 지정, 분석 등 위탁하여 증가하는 안전성조사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며, 우리나라 농산물의 안전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잔류 조사(54품목, 14,000건)를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농산물 중금속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농산물 중금속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중금속(Pb, Cd) 안전관리 대상 농산물을 10개 품목('09. 12월말 기준)에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5. 쇠고기 이력제 추진

(동물방역과 사무관 손경자)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유럽, 일본, 미국의 BSE 발생 등으로 축산관련 단체의 요구와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변화에 대응하고, 가축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국내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쇠고기 이력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쇠고기 이력제는 소의 출생에서부터 도축·가공·판매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의 이력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위생·안전상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원인규명과 조치를 가능하게 한다. 이로 인해 소비자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둔갑 판매방지 등으로 국내산 쇠고기의 소비를 확대하고 종축개량 등을 위한 정보통합관리 등으로 한우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쇠고기 이력제는 2004년 10월부터 9개 우수 브랜드 경영체를 시작으로 시·군 및 전국으로 확대하여 소의 소유자 등의 신고 접수와 귀표부착, 이력정보의 전산입력 체계 등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원입법을 통해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을 2007년 12월 21일 제정·공포하여 제도적인 기반이 갖추어졌다. 또한, 2008년에는 동 법률 시행령('08.12.9) 및 시행규칙('08.12.19) 등을 제정하여 소의 출생·거래 등 신고절차와 도축·가공·판매단계에서의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 표시 및 판매실적 신고방법 등 세부사항 시행체계를 마련하였다.

1) 제도정비

2008년에는 법 시행에 대비하여 전국으로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하였고, 농협중앙회는 귀표를 구매하여 전국 위탁기관에 공급하고 농가 등에 대한 교육 등을 담당하도록 하고,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이력시스템 관리, 이력지원실 운영, 교육·홍보 등을 추진하도록 예산을 지원하였다. 또한, 2009년 6월 22일부터 유통단계까지 쇠고기 이력제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전국의 모든 소에 귀표부착을 완료하기 위해 소 출생 등 신고접수와 귀표부착

지원을 위한 위탁기관을 지역축협 등 135개소를 지정·고시하여 귀표 미부착 또는 이력 시스템 미 등록소의 도축금지로 인한 농가의 혼란과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였다.

이를 통해 모든 소의 이력제 등록 및 귀표부착을 완료하여 이력관리 하였으며, 6월 22일부터는 전국의 모든 도축장, 가공장, 판매장에서도 쇠고기 이력제를 시행하여 유통단계에서 소비자들이 원산지 확인 등 구입할 쇠고기의 이력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내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2) 사업의 조기정착 추진

2009년도에는 쇠고기 이력제가 유통단계까지 확대시행 됨에 따라 유통단계 시범실시를 통해 식육유통업체 등의 개체식별번호표시 및 거래실적의 기록관리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였다. 아울러 제도 시행에 따른 각종 문제점 등을 수시로 발굴하여 개선하고, 전산시스템의 단계적 고도화, 쇠고기 이력제의 사후검증 수단인 DNA 동일성검사 방안 정립 및 단속 활용, 이력지원실 운영을 통한 실시간 민원상담 등을 추진하였으며, 쇠고기 이력제 운영실무협의회를 통해 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보완하는 등 제도의 조기정착을 추진하였다.

이력제 시행으로 유통투명성 및 소비자 신뢰가 향상되어 국내산 쇠고기의 시장점유율이 2004년 44.2%에서 2006년 47.9%, 2008년 47.6%, 2009년 50.0% 점진적으로 상승하였고, 원산지를 둔갑하려면 연관된 개체식별번호까지 거짓으로 표시해야 함에 따라 식육판매업소의 원산지 둔갑 행위가 감소하는 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평가 및 향후계획

쇠고기 이력제도는 사육 및 유통단계까지 순조롭게 시행되고 있으나, 일부 사육농가와 영세 유통업체의 제도 이해 및 이행수준이 미흡하여 정확한 이력관리에 한계가 있고, 이력제 전산시스템 성능이 낮아 다양한 정보제공, 전산접속 속도 향상 등에 한계가 있어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2010년에는 이력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소 사육현황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이력시스템 등록정보 검증작업을 추진하고, 식육유통업체, 생산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DNA동일성검사 실험실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검사 장비를 확충하여 검사결과의 D/B화로 DNA동일성검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완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 질병 잠복기를 고려한 방역의 효율성 및 농가의 경각심 제고 등을 위해 신

고기한을 30일에서 5일로 단축하고, 질병 등에 취약한 젖소에서 태어난 육우의 초유 떼기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육우의 경우 귀표 부착기한을 30일에서 7일로 단축할 계획이다. 단축대상이 많은 판매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권한을 지자체 등에도 부여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이력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11년 예산에 이력시스템 고도화비용을 반영하여 다양한 통계기능 및 정보 제공 기능을 구현하고, 시스템 접속속도 등을 개선하여 이용자 편리성을 강화할 계획이며, 국내산 귀표 개발을 지원·개발하여 귀표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시장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소비자에게 이력조회 방법 등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로 소비자 감시기능을 활성화하여 유통업계 스스로 자발적인 관리노력을 유도하는 등 이력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6. 농식품 안전정보관리

(소비안전정책과 수의사무관 이성도)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최근 들어 국민의 소득 수준 향상과 크고 작은 식품사고의 발생으로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농·축·수산물 등의 식품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농식품 안전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상시 정보 운용체계의 구축과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의 운영·관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고, 농식품의 안전정보의 범위가 '생산에서 소비까지', '농어장에서 식탁까지'로 확대되어 농식품 안전에 대한 대국민 식품안전 인식의 향상과 이해당사자 간의 신뢰 형성이 매년 크게 요구되었으며, 이에 따라 농식품안전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 확대가 추진되어 왔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추진방향

식품안전에 대한 대국민 식품안전정보서비스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2003년 11월에

농식품안전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선정되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3차에 걸친 전자정부지원 사업으로 농축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며, 2009년 8월에 농산물안전정보시스템(AGROS)과 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FSIS)의 통합 사이트가 구축되었다.

가) 안전성검사의 과학적 기반 강화

농수산물의 안전성검사 규모는 매년 확대되고 있으나 과학적·통계적 근거가 미흡한 면이 있고 식품안전사고는 대부분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거나 예측하지 못한 유해물질에 오염되었을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규제조치의 검사만으로는 안전관리의 효과를 얻기 힘들었다. 이에 따라 검사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통계기반의 검사대상과 규모를 산정하여 식품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1,000건 정도의 예비적인 검사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유해물질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 체계를 갖추기 위해 검사와 별도로 조사(survey)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나) 소비자 수요 충족 및 지자체 등과 연계 강화

그 동안의 백화점식 안전성 검사로는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데 한계가 있어 축산물을 제외한 농수산물의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검사기관의 참여가 저조하였다. 이에 따라 2009년부터 지역특산물, 학교·군부대 등 대형급식소에 납품되는 농축수산물의 안전성 검사 과정에 소비자를 참여시키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검사기관의 역할을 높여 효율화해 나갈 방침이다.

다) 안전성 검사·조사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농축수산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용어를 정비하고 과학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위험평가, 잔류물질조사, 지자체와 민간검사기관 활용 등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나갈 것이다. 우선, 안전성검사 관련 고시·훈령과 행동지침을 조속히 개정하고,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을 통합하여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개정하고, 축산물가공처리법을 확대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개정해 나갈 것이다.

2) 추진성과

가) 식품안전정보 공개 사이트의 통합

농축산물과 수산물로 분리되어 운영하던 식품안전정보를 2008년 11월에 개설한 농식품안전상담 기능과 함께 2009년 8월에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로 통합하여 단일 사이

트를 통해 정보를 일괄 제공하고 정보연계 강화와 서비스 고도화를 통하여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시켰다.

나)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Foodsafety) WEB/WAS 서버 이중화 구성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의 안정성 확보와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장애 발생 시 장애복구 시간 확보 등 효율적인 시스템 구성을 위하여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의 WEB/WAS 서버 이중화를 구성하였다.

다)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 웹표준화 및 웹접근성 강화

전자정부 웹표준 및 웹접근성 강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농림수산식품분야 개선 사이트로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가 우선 선정됨에 따라 특정 브라우저와 OS에 종속되지 않고 어떤 환경에서도 이용 가능한 웹표준 및 웹접근성 강화시켜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실현을 구현하였다.

라) 식품정보교류의 강화

국민의 식품안전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의 참여를 확대하고 현장체험 등의 다양한 교류를 확대 추진하며, 소비자단체·식품업계·생산자단체·학계 등과 함께 정보와 의견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농식품안전정보교류회 등 네트워크 구축을 확대해 나가는 등 위험정보교류를 강화하였다.

다. 평가 및 향후계획

농식품부는 식품안전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정책기획 기능을 대폭 보강하고 의사결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분산된 정책부서의 통합을 추진해 나갔다. 또한, 2009년 4월에 소비안전정책관을 신설하였으며, 식품안전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험정보의 수집·공개를 개선하고 관련 법령의 정비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1. 축산물 위생·안전성 관리 강화

(안전위생과 수의사무관 강대진)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축산물의 위생·안전성 확보는 가축 사육단계부터 최종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에 대한 사전 예방적 관리를 추진하고 농장에서 식탁까지 (Farm-to-Table) 위생·안전관리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사육단계에서는 동물용의약품 등 유해물질이 축산물에 잔류하는 것을 방지하고 항생제 내성균의 내성률 감소를 위해 항생제 사용과 관련한 축산농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항생제 내성균의 출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사료첨가용 동물약품의 종류를 더욱 감축하여 18종에서 9종으로 줄일 계획이며, 이와 함께 가축사육 농가들이 항생제를 자유롭게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오남용의 우려가 있는 만큼 항생제에 대한 수의사 처방제를 도입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한편, 사육단계 HACCP 적용으로 항생제의 사용절감, 생산성 증가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된 바 있어 사육단계의 HACCP 적용은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도축단계에서는 2003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 HACCP 적용 의무화에 따라 도축장의 HACCP 운용여부를 점검하여 그 운용이 미흡하거나 운용하지 않는 도축장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할 것이다. 또한 소비자 단체가 주관하는 도축장 HACCP 운용수준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도축장 운영자금의 차등지원을 실시하는 등 도축장의 HACCP 제도 정착과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기립불능 상태의

소에 대한 소비자들의 BSE 우려를 감안하여 부상 등 식품안전과 무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도축을 제한하고, BSE 검사후 사체는 폐기하고 소유자에게 보상하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고자 한다.

가공단계에서도 HACCP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기관,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체 등에게 HACCP 적용 축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HACCP 적용업체에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축·가공단계의 위생수준 제고와 위해요소 제거를 위하여 식육에 대한 잔류물질과 미생물 검사를 지속 실시해 나가고 있다. 검사물량은 잔류물질 120천 건, 미생물 120천 건을 실시하며, 특히 잔류물질 검사의 경우 과거 잔류위반 농가나 긴급도축, 주사자국, 화농자국이 있는 등 잔류위반 가능성이 높은 가축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검사비용을 2009년 18.8%에서 2010년 20%이상으로 높여 잔류물질 검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2006년부터 시행된 식용란에 대한 미생물과 잔류물질 검사 역시 검사건수 증가 등을 통해 식용란의 위생관리도 강화하며, 특히 식용란의 유통·판매 주체에 대해 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축산물가공처리법령을 개정하고 이들에게 계란을 포장하여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축산물 유통단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HACCP 적용을 확대해 나가고 재래시장 등 축산물 위생 취약지역에 대해서 위생감시 및 수거 검사를 확대하는 등 점검을 강화할 것이다.

다. 평가 및 향후계획

축산물의 위생·안전성 대책은 가축 사육단계부터 최종 판매단계까지(Farm-to-Table) 일관된 대책을 시행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안심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사전 위해요소 관리를 위해 도입한 HACCP 제도의 지정과 지정 작업장에 대한 관리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 2008년 법정법인으로 출범하여 HACCP 지정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축산물HACCP기준원의 인력을 68명에서 91명으로 보강하여 공공성이 강한 HACCP의 지정 및 사후관리 업무추진이 한층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 가축질병 방역대책 추진

(동물방역과 서기관 오순민, 사무관 조옥현·이기중·조현준)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지난 2000년 이후 국내에서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축산농가 등의 피해가 점점 커지고, 국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및 미국·일본 등에 BSE 확산으로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악성가축질병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주요 축종별 질병근절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표 2-5-2> 주요가축전염병 발생현황

구 분	국 내	외 국	비 고
구제역	2000.3 발생 (2001.9.19 청정국) 2002.5월 발생 (2002.11.29 청정국)	중국, 홍콩, 러시아, 몽골 등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상재
BSE	미발생	2003년 캐나다, 미국 발생으로 총25개국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2003.12~2004.3(19건 발생) 2006.11~2007.3(7건 발생) 2008.4.1~2008.5.12(33건 발생)	2003.12~2008.12(태국, 베트남, 중국, 북한, 러시아, 카자흐스탄, 몽골, 터키,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우크라이나 등 50여 개국	동남아 상재
돼지열병	2005년 5건 2006년 2건 2007년 5건 2008년 7건 2009년 2건	독일, 이탈리아, 브라질 등	동남아 상재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구제역 방역대책

구제역 방역대책 기본방향은 발생 위험성이 높은 3~5월을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여 강도 높은 국경검역 및 국내방역을 추진하고, 특별대책기간 종료 후에는 평시 방

역으로 전환하여 지속적인 방역을 실시하는 것이다.

국경검역은 수입건초는 소독 및 검사 후 합격품만 반입하였고, 해외여행객 신발소독은 공·항만 입국장의 발판소독조를 운영하여 모든 입국자의 신발소독을 실시하였다. 휴대축산물은 발생국 여행객을 중심으로 탐지견 및 현장검역관 기동배치 등을 통해 검색하고 있다. 또한 휴대축산물의 반입신고 및 자체를 위해 재외공관을 통해 검역안내서를 배포하였고 검역전용전광판 제작·설치, 선·기내방송·리후렛 배포 등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국내방역은 우선 예찰요원을 동원하여 농장예찰 및 혈청검사 실시로 구제역 조기발견 및 신고체계를 확립하였고, 가축질병신고전화(1588~4060) 및 특별대책기간중 상황실을 운영하였다. 또한, 매주 수요일 “전국일제소독의날”을 운영하면서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소규모 농가에 대해 소독지원을 실시하였으며, 축산관련 외국인 연수생에 대하여는 농협에서 명단을 관리하고 지자체 및 검역원에서는 해당농장을 방문하여 방역교육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지자체는 초동능력 향상을 위해 가상방역훈련을 실시하였고 정기적인 방역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즉, 휴대축산물의 검색을 강화하고 주기적인 방역상황 점검으로 취약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보완 조치하였으며, 지자체 초동대응능력 향상 등을 통해 2002년 6월 이후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

2)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책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는 2003년 말부터 베트남 및 중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현재까지 아시아·북미·아프리카, 유럽 등 50여 개국)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3년 말과 2006년 말, 2008년 각각 발생하였으며, 발생원인 등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철새를 통한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부에서는 그 동안 매년 유입 가능성이 높은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기간”을 설정하여 AI 유입 방역에 역점을 두었으나, 2008.4.1~5.12까지 전국적으로 AI가 발생된 것을 계기로 다각적으로 원인을 분석하여 「AI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마련(7.22)하게 되었다.

2008년 고병원성 AI발생의 특징은 발생 초기 중·대형 가금농장에서 시작하여 소규모 육용오리 및 토종닭 사육농가 등 가내 사육 형태의 농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였

으나, 중반기에 강력한 방역정책과 농가, 업계, 관련협회·단체, 지자체 등의 자구노력에 힘입어 예전 100여 일의 발생기간을 감안해 볼 때 42일간이라는 단시일 내에 질병근절에 성공하여 UN에서는 우리나라를 AI 방역 대처에 성공한 AI 방역 모범 국가로 지목한 바 있다.

정부는 고병원성 AI가 전 세계적으로 연중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 인근 국가에 토착화되어 있으며, 철새와 교역 등에 의한 재유입 위험성이 상존하는 실정이므로 상시 방역 예찰체계를 구축하여 재유입 즉시 조기 검색과 진단을 통한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요인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

3) BSE 방역대책

BSE 예방을 위하여 BSE 발생국(25)과 위험국(9) 등 34개 국산 BSE 관련제품 수입금지와 함께 BSE 관련제품(HS code 680개)을 세관장 확인품목으로 지정하고 발생 국가산 제품이 제3국을 경유하여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1996년부터 국내산 소에 대하여 BSE 검사를 실시하여 연차적으로 BSE 검사물량을 증가시켰다.

2007년부터는 OIE(세계동물보건기구) 기준에 따라 BSE 위험소별 점수제로 바꾸고 2008. 5월부터 도축되는 모든 기립불능소에 대하여 BSE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09년 11월부터는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개정하여 기립불능소에 대한 도축을 금지하여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표 2-5-3> BSE 검사현황

년도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계
검사점수	5,516	10,708	5,852	3,814	50,587	163,525	190,049	430,049

2000.12월부터 반추동물용 사료에 반추동물 유래 동물성단백질의 사용을 금지하였고, 교차오염 방지를 위하여 반추 동물사료와 비반추 동물사료의 생산라인을 분리하여 사료내 육골분 혼입여부 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8년 12월 사료관리법을 개정하여 모든 동물성단백질사료를 반추동물에게 급여하는 것을 금지토록 하였다.

앞으로 동물성사료 원료의 반추가축 사료사용금지 규정 이행실태 지속점검, 동물성 사료 혼입여부검사 강화 및 모든 동물성 단백질을 반추동물 사료에 금지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이며, 모든 사료공장에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 제도를 2012년까지 도입하여 교차오염을 방지할 계획이다.

BSE발생에 대비하여 도축장에서 신경증상 소를 진단하고 BSE 검사시료를 채취하기 위한 검사보조원 150명을 배치하였고(2008), 특정위험물질(SRM)처리를 목적으로 LPC 등 10개 도축장에 SRM 제거시설을 설치한 바 있다.

4) 소 브루셀라병 방역대책

소 브루셀라병은 2013년 근절을 목표로 가축시장·도축장 및 문전 거래되는 모든 한육우 암소에 대한 검사증명서 휴대를 의무화하였으며, 1세 이상 모든 암소(연1회)와 수집상·증개상(연4회)이 사육하는 소, 자연교배 수소(연4회)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가축 및 사람 브루셀라병 예방을 위해 홍보리후렛을 제작·배포, 전문지 광고 등 예방수칙을 홍보·교육토록 하였다.

한육우 브루셀라병 발생은 지속적인 방역대책 추진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어 2013년 까지 근절목표를 달성하는데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소 브루셀라병 발생 확산방지를 위해서 현재와 같이 지속적인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표 2-5-4> 소 브루셀라병 발생동향

년 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전체	건수	172	711	2,590	4,498	2,333	1,826	1,090
	두수	1,088	5,383	17,690	25,454	11,547	8,409	6,568
젖소(건/두)	110/498	116/1,282	141/2,166	177/2,314	84/1001	78/691	43/615	
한우(건/두)	62/590	595/4,101	2,449/1,5524	4,321/23,140	2,249/8,220	1,748/7,718	1,047/5,953	

5) 돼지열병 방역대책

돼지열병은 2003년 72건 발생 이후 2004년 9건, 2005년 5건, 2006년 2건, 2007년 5건, 2008년 7건, 2009년 2건이 발생하여 발생건수가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돼지열병 청정화 추진계획”을 수립('09.1.9)하여 돼지열병 예방백신 100%접종(34백만 두), 항원·항체 검사 확대(1→2회/연, 26→40만두/연) 등의 근절기

반 구축을 추진하는 한편, '14년 돼지열병 청정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청정화 확인('11~'12년), 청정화 달성('13~'14)단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6) 공중방역수의사 제도 운영

최근 동·축산물 교역 증가 등으로 해외 악성 가축질병 유입 가능성이 증대되는 등 가축방역대책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나 현장 방역인력이 현저히 부족함에 따라 2007년부터 공중방역수의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공중방역수의사 제도는 수의학 과정을 졸업한 수의사가 3년간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할 경우 병역의무를 대체해 주는 제도로서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2006년 3월 24일) 및 하위법령(2006년 8월 29일)이 제정되어, 현재 433명('08년 132명, '09년 151명, '10년 150명)의 공중방역수의사가 시·군, 검역원,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등 일선 방역기관에 배치하여 방역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

앞으로 매년 150명의 공중방역수의사를 배치하여 연간 최대 450명의 인력을 운영할 계획이다.

다. 평가 및 향후계획

그간의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추진한 결과, '06년 이후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으며 농가의 생산성도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해외 유입질병 및 국내 상시발생 질병 등 가축질병의 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방역대책을 지속 추진하여 가축전염병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축산업 등록제 확대 및 농장 출입차량(관계자)에 대한 소독의무 강화 등을 통해 생산자 주도의 가축방역 체계를 구축하여 방역대책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3. 동물 및 축산물 검역강화

(검역정책과 수의사무관 장재홍)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우리나라는 구제역, 우역과 같은 해외악성가축전염병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수입되도록 철저한 검역을 실시해 오고 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동북아 등 가축방역 여건이 열악한 국가들과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해외악성가축전염병의 유입우려도 높아지고 있어 국경검역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위험국가(중국, 몽골 등) 중심으로 가축전염병 유입경로 차단을 위하여 건초소독, 실험실 검사 후 반입, 남은 음식물 처리업체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해외 여행객을 대상으로 휴대육류 신고, 반입자제 등 교육·홍보를 실시, 발생지역 여행자를 대상으로 검역탐지견을 집중투입하고, 신발 소독 실시, 외국인 연수생 및 해외 축산행사 참석자에 대한 방역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동물 및 축산물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 전 및 통관과정에서 철저한 검역이 이루어진다. 동물이나 축산물을 수입하기 이전에 해당국가에 대하여 수입위험평가를 실시하여 수입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수입허용 절차는 1단계 수입허용가능성 검토, 2단계 수출국 정부에 가축위생설문서 송부, 3단계 가축위생설문서에 대한 답변서 검토, 4단계 가축위생실태 현지조사, 5단계 수입허용여부 결정, 6단계 수출국과 수입위생조건안 협의, 7단계 수입위생조건 제정·고시, 8단계 수출작업장 승인 및 검역증명서 서식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각 단계에서 만족스러운 결과가 있을 경우에만 다음 단계로 진행되며, 철저한 검증을 통해 수입허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동물이나 축산물이 수입되면 검역계류장 또는 검역시행장에 별도 격리한 후 서류검사, 임상(관능)검사 및 정밀검사를 통해 그 안전성을 다시 한번 검증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국내 통관이 허용된다. 특히 동물이 수입되면 계류시설에서 일정기간 격리한 후 서류검사, 임상검사, 정밀검사를 받게되며, 축산물의 경우에는 검역시행장에 입고되어 서류검사, 관능검사, 정밀검사를 통해 그 안전성을 검증하여 이상이 없는 경

우에만 국내 통관이 허용된다.

<표 2-5-5> 수출입 동·축산물 검역·검사 추진 현황

구 분			'06		'07		'08		'09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동 물	수출	마리	13,848	192,177	6,729	255,299	6,721	217,523	6,956	33,241,930
		군	-	-	-	-	1	12	-	-
	수입	마리	6,778	1,079,829	7,608	1,085,087	7,377	1,175,977	7,186	1,318,808
	군	2	19	9	436	-	150	1	100	
	계	마리	20,626	1,272,006	14,337	1,340,386	14,098	1,393,500	14,142	34,560,738
		군	2	19	9	436	3	162	1	100
축 산 물	수출	톤	10,458	130,372	10,215	144,266	11,457	149,795	12,385	144,042
		천개	73	1	118	6	182	692	209	1,974
	수입	톤	149,507	1,896,605	126,107	2,025,954	127,596	2,048,973	128,761	1,937,033
		천개	248	741	293	764	318	663	367	717
	계	톤	159,965	2,026,977	136,322	2,170,219	139,053	2,198,768	141,146	2,081,075
		천개	321	742	411	770	500	1,355	576	2,691

다. 평가 및 향후계획

구제역 등 해외악성 가축전염병이 유입되지 않도록 공항만 국경검역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검색을 강화하며, 검역탐지견 투입을 늘리고, 외국 방문시 축산농가 출입자제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각국의 언론보도 내용을 수시로 검색, 신속하게 정보를 입수하여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하여 통상마찰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동물 및 축산물 수입으로 인한 악성가축질병이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하며, 수입단계부터 수입위생조건 준수여부 확인, 임상검사 또는 관능검사, 정밀검사를 보다 철저히 실시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동물 및 축산물이 수입되도록 철저한 검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4. 동물보호·복지대책 추진

(동물방역과 사무관 안유영)

가. 추진배경 및 개요

EU와 OIE를 중심으로 동물보호·복지시책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우선 '04년 EU헌법에 동물의 보호·복지 조항이 명문화되었으며, '06년에 EU집행위원회는 동물복지 제1차5개년 행동계획 2006~2010을 발표하였다. 동물실험제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EU에서는 개·고양이 가죽제품의 수입이 '07년부터 금지되었으며, 동물실험을 통해 생산된 화장품은 '09년부터 수입이 금지되었다.

OIE에서는 '02년부터 동물복지 작업그룹을 중심으로 육상·해상·항공 운송, 도축, 질병 방역 목적의 살 처분 등 5개 동물복지 가이드라인 개발을 추진하여 '06년에 이를 제정하였으며, 축사시설·사양관리 가이드라인도 제정 중에 있다.

국내의 경우 소득증대 및 독신 세대 증가 등 국민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따라 반려동물 사육가정의 규모가 늘어나고 있으며, 반려동물 보호문화 미성숙 등으로 유실·유기동물 발생량과 동물학대 행위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실험동물은 한해 약 100여만 마리가 사용되나 실험동물의 윤리적인 취급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국내 동물 실험결과의 국제적 신뢰도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며, 축산업은 규모화 등으로 선진화를 이루었으나 좁은 국토 여건 등으로 밀집사육 등이 일반화되어 동물복지와 관련된 국제 동향에 대한 대응과 국내 축산업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고, 생명의 존중 등 국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1년에 동물보호법을 제정하였으며, 2006년에 법률 및 그 하위법령을 제·개정하여 2008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제·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범위, 적정한 사육·관리, 동물학대의 금지, 동물의 도살방법, 벌칙 등이 대폭 강화·구체화되었으며, 특히 동물학대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벌금 20만 원에서 500만 원 이하로 강화되었다. 또한 동물등록제,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 동물판매업 등록제, 동물보호명예감시관제 등 동물보호·복지 증진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신규 제도가 신설되었다.

아울러 '09년에는 동물복지형 축산식품 표시제 도입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다. '09년 9월에 동물복지 산란계 농장 기준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같은 해 12월에 동물복지형 축산농장 인증 및 축산식품 표시방안을 마련하였다.

동물보호법의 실효성 증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과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를 추진하였다. 동물판매업자 교육세부실시요령과 동물보호명예감시관 교육 및 운영규정(고시)을 '09.3월에 개정하였으며, 유기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를 위해 '09년에 광주, 경기, 제주에 광역 유기동물 보호시설에 3.6억 원을 지원하였다. '09년에 동물보호감시관·동물보호명예감시관·유기동물 보호시설 운영자·동물판매자 등 약 1,000여명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였다. 일반인을 대상으로는 TV프로그램, 동물보호 문화·산업대전, 지하철 영상물 등을 통해 동물보호와 관련된 홍보를 실시하였다.

다. 평가 및 향후계획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동물보호법 실효성 증대 및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며,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와 관련하여 기준안 마련 및 동물보호법 개정 등을 통해 동 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동물보호 및 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등을 위해 일반인, 축산농가, 동물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워크숍, 캠페인, TV·신문매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육·홍보할 계획이다.

제3절

고품질·친환경 농축산물 공급

1. 친환경농업 육성

(친환경농업과 사무관 정경석)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소비자들의 식품안전 및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유기농산물을 비롯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또한 그간 증산위주의 농업정책 추진과정에서 화학비료와 농약의 과다사용, 축산분뇨 발생증가 등으로 인해 농경지와 농업용수가 오염되는 등 농업환경이 악화되어 지속 가능한 농업생산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우리 농산물의 품질경쟁력을 높이고, 환경보전과 농업생산의 지속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DDA/FTA 등 개방 확대의 국제무역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아울러, 「친환경농업육성법(1997.12)」을 제정하여 친환경농업육성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으며, 「제1차('01~'05)·제2차('06~'10)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친환경농업실천기반조성, 친환경농업기술개발,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및 유통활성화 등에 대한 중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였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우선, 유기질비료·토양개량제 및 녹비작물종자 공급 확대를 통해 화학비료 사용량 절감 및 토양유기물 함량을 증대함으로써 토양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2009년도에는 유기질비료 210천 톤(1,218억 원)을 공급하여 토양비옥도를 증진하였으며, 토양개량제 584천 톤(634억 원)을 공급하여 토양의 산성도 등을 완화하였다. 또한, 유희 농경지에 녹비작물(자운영, 청보리, 호밀, 헤어리베치 등) 138천ha(135억 원)를 조성하여 지력증진과 농촌경관을 개선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특히, 수입산 녹

비작물 종자(호밀)의 국산 녹비보리 대체연구(2007~2009년, 농촌진흥청)를 통해 종자 국산화 기반을 마련하였다.

둘째로, 합성농약에 의한 병해충 방제를 생물학적 방제(천적·미생물)방법으로 전환하여 농약 사용량을 줄이고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2009년도에는 시설원에 농가의 해충방제를 위한 천적 2,500ha(36.5억 원)를 지원하고, 친환경 인증 농가 등에 미생물농약 1,000ha(8.4억 원)를 지원하였다.

셋째로, 시·군단위의 친환경광역단지(1,000ha 이상)와 마을단위의 친환경농업지구(10ha)를 지정 확대함으로써 저탄소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 농업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2009년도에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 11개소(누계 20), 집단화된 친환경농업지구 43개소(누계 991)를 신규로 조성 지원(143억 원)하였다.

넷째로, 친환경농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 등 공익적 기능 제고를 위해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2009년도에는 친환경인증 논 52천ha, 밭 38천ha에 대한 친환경 농업직접지불금 401억 원과 친환경축산물 인증 58농가에 대한 친환경축산물직접지불금 7억 원을 지원하였다.

다섯째로,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유통 활성화를 위해 유통경로를 다양화 하고 학교급식 확산 등 대량 소비처 확보 및 소비촉진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2009년도에는 친환경농산물 전용 종합물류센터 조성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설계사업자를 선정(8억 원)하였으며, 생산자·소비자 단체에 매취자금과 산지유통활성화 자금을 지원(연중, 448억 원)하였다. 또한, 유치원 원장 및 학교급식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현장체험(27개교 828명)을 실시하고 TV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 및 이벤트를 추진하였다.

위와 같이 친환경농업육성 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2009년도 친환경 농산물 생산비중 12.2%(’01년도 0.2%보다 60배 증가),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 37,355억 원(’01년도 1,500억 원 보다 25배 증가), 화학비료 사용량 267kg/ha(’99~’03 평균 375kg/ha 보다 30% 절감)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다. 평가 및 향후계획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기반을 확대하여 안전농식품을 생산한다는 목표 아래 친환경

유기농식품 및 연관 산업을 차세대 녹색성장동력원으로 육성하고 소비대중화와 환경보전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과거 일률적인 화학비료 가격보조 대신 토양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비료를 지원('10년부터)하고, 퇴비의 품질등급제 도입과 차등지원으로 품질향상을 유도하며, 퇴비의 품질기준 및 검사를 강화하고, 국제수지 개선과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녹비작물 종자의 국산화 방안을 추진하여 연차적으로 수입 종자 사용량을 감축하여 '15년까지 전량 국산화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친환경농자재에 대한 R&D 지원확대를 통해 제제 개발사업 및 수출 활성화 등 생물학적 병해충 방제(천적·미생물)사업의 산업화 방안을 모색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광역단지 사업에 대한 성과제고와 사후관리 강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기농산물을 중심으로 친환경농업직불제를 개편하여 생산기반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량유통체계 구축 등 유통기능을 강화하며, 친환경농산물의 판매확대를 위한 소비촉진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학교급식 확대에 따른 친환경급식지원센터 및 전처리 가공 시설 확충 등 안정적 공급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 및 새로운 농식품 환경 여건에 부응하는 「제3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친환경농업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2.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

(농산경영과 농업사무관 홍인기)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우리나라의 쌀 브랜드 수는 1,873개에 달하고 있으며, 대부분 이름표 수준에 머물고 있어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브랜드는 드문 실정이다. 더욱이 쌀 시장의 전면개방은 예정되어 있고, 소비지시장은 대형마트 중심으로 재편되었지만, 산지의 RPC는 이

러한 여건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규모화된 RPC 중심으로 고품질 브랜드 쌀을 육성하여 우리 쌀의 품질경쟁력을 높여 외부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해나가기 위하여 '07년부터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사업은 쌀 주산지 위주로 규모화된 대표브랜드 100개소를 육성하여 대표 브랜드 쌀 유통 비중을 50%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09년까지 26개소가 선정되어 육성되었으며 대표 브랜드 쌀 유통비중은 20%로 확대되었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가공시설의 현대화에 필요한 자금 20억 원(국고 40%, 지방비 20%, 자부담 40%)과 농가에 대한 교육, 브랜드 쌀의 홍보, RPC 시설 및 운영에 대한 컨설팅에 필요한 자금 2억 원(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 20%)을 지원해 주고 있다.

<표 2-5-6>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사업 추진실적

(단위: 개소, %, 개)

연 도	2006	2007	2008	2009
고품질 쌀 브랜드 경영체(누계)	-	8	16	20
대표브랜드 유통비율	-	10	15	20
전국 쌀브랜드 수	1,873	-	1,721	1,650

다. 평가 및 향후계획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사업을 통하여 RPC간 통합을 촉진하여 규모화를 유도하고, 계약재배 확대 등을 통하여 쌀의 품질경쟁력이 향상되는 등 쌀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는 사업을 더욱더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에 사용되는 단위기계 및 장비에 대한 검정체계를 구축하여 시설의 효율적 설치 및 시설 성능향상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능력이 검증된 우수한 RPC가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사업 단가를 현실화하고 해당 RPC의 여건에 맞추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금액을 차등하여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3. 고품질 원예브랜드 육성

(채소특작과 기술서기관 강귀순)

가. 추진배경 및 개요

WTO/FTA 등 시장개방 확대, 농업SOC 정비로 농산물 공급능력이 증가되고 판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90년대 중반부터 농산물 브랜드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또한 소비자 기호변화, 정보흐름의 자유화, 경제 글로벌화 등으로 농산물 브랜드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어 앞으로 농산물 마케팅 전략의 핵심 포인트는 높은 수익성을 유지하며 성장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브랜드파워가 필수적이다.

농산물 브랜드가 양적으로는 크게 증가했으나 소비자들의 브랜드 인지도는 매우 낮은 실정으로 대부분의 농산물 브랜드는 포장용기 개발, 이름표(naming)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브랜드의 기본요소인 일관적인 품질관리(quality control) 및 안정적인 물량공급관리(quantity control) 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여 유통주체들이 균일한 상품을 생산·공급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정부는 2007년부터 농산물브랜드육성사업을 추진하였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농산물브랜드육성사업은 원예농산물과 밭작물로 구분되며, 농가 조직화 및 마케팅 비용, 종합처리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다.

원예브랜드육성사업은 2007년 총사업비 200억 원으로 조직화 및 마케팅, 종합처리시설 지원 등에 3년간 95억 원 규모를 지원하고, 농가의 개별생산시설, 원료구입자금 등으로 105억 원을 용자사업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사업초기 종합처리시설이 완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용자사업비의 집행실적이 저조하여 용자사업에 대한 규모를 축소하였고, '11년부터는 별도의 용자사업비를 지원하지 않고 산지유통활성화사업으로 통합 지원토록 하였다.

밭작물브랜드육성사업은 옥수수, 감자 등 밭작물의 유통규모화를 위하여 연간 10억

원 규모의 보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0년 현재 원예브랜드육성사업 대상 경영체는 17개소로 2개소는 사업을 완료하고, 15개소는 계속 진행 중이다. 또한 발작물브랜드육성사업은 '09년부터 시작하여 14개소를 육성하였다.

다. 평가 및 향후계획

농산물브랜드사업은 아직은 사업 초기단계로 그 성과가 크다고 할 수 없으나, 일부 경영체는 브랜드화를 통한 매출 증대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다. 특히, 경남 의령의 '토요애'와 전남 무안의 '황토랑' 등 일부 브랜드는 소비자의 인지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지속적인 사업 확대가 기대된다.

농산물브랜드육성사업은 향후 지원규모를 축소하되 보다 내실화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을 법인설립이 완료된 경영체로 한정하고, 용자사업비를 산지유통활성화 사업으로 통합하여 평가를 통하여 이자율 등을 차등 지원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4. 고품질 축산물 브랜드 육성

(축산경영과 사무관 이연섭)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축산구조를 우수 브랜드 경영체 중심으로 개편한다는 목표 하에 「축산물브랜드육성 대책」이 2004년 2월에 수립된 이래로 지금까지 축산물 브랜드의 개념, 육성 방향 등 기본체계 구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여 왔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브랜드 사육비중이 2004년에 한우가 24.8%, 돼지가 45.0%이던 것이 2009년에는 각각 42.4%, 62.7%로 크게 높아졌다.

지금까지 축산물 브랜드는 1단계 브랜드 대책 추진을 통해 기반형성기를 지나 성장 단계로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동안 브랜드 인증, 시설·운영자금 지원 등 전방위적 육성으로 브랜드 경영체의 가축 사육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소비자 인지도가 상승하고 있는 등 브랜드 활성화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FTA·DDA 등으로 대외 개방이 가속화 되는 상황에서 경쟁력을 갖춘 브랜드 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브랜드 육성방안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따라 2017년까지 브랜드 경영체 사육 비중을 소 60%, 돼지 80% 이상 달성한다는 목표 하에 「축산물브랜드 2단계 발전대책」이 2007년 11월에 마련되었다.

2008년은 「축산물브랜드 2단계 발전대책」 시행 원년으로서 ① 소규모 브랜드 통합으로 규모화·광역화를 추진하고, ② 우수 브랜드를 고품격 브랜드로 발전시키고, ③ 차별화된 컨설팅·교육·홍보로 성장을 뒷받침 한다는 기본전략 하에 대책을 실효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2009년도는 브랜드 경영체 운영자금(32개소, 1,140억 원) 지원기준을 강화하여 대규모·우수 브랜드에 중점지원 하되, 출하두수 한우 800두, 돼지 80천두 이하 브랜드는 지원에서 제외하여 통합·규모화를 촉진하였다.

또한 브랜드 우선순위에 따라 축사시설 현대화, 가축분뇨처리 사업 등 11개 사업(4,104억 원)을 통합하여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하여 브랜드 경영체의 편의 도모는 물론 투자의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하였다.

또한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소비자시민모임과 함께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사업 추진을 위한 인증기준 마련, 신청, 서류심사, 현지실사 등을 실시하였고, 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12월중에 2009년 인증 브랜드를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유통업체에서 소비자들이 추천하는 우수축산물 브랜드를 찾아 판매토록 하여 시장에서의 차별화와 함께 유통업체와의 교섭력이 확보되도록 하였다.

육류유통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과학적이고 제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과 소비자가 참여하는 감시체계를 구축하였다. 먼저 쇠고기 이력제 사업을 통한 유전자(DNA) 동일성 검사 제도를 도입하여 도축두수의 1% 수준의 검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판매단계까지만 실시해 오던 원산지표시제를 쇠고기를 소비하는 음식점에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를 위해 2007년 1월부터 구이용 쇠고기에 대하여 영업장 면적 300㎡ 이상에서의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였으며, 2008년 7월 8일부터(돼지고기 및 닭고기는 2008년 12월 22일부터) 쇠고기(구이용, 탕용, 찜용, 튀김용, 육회용)에 대해 식육점 등 모든 유통단계는 물론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집단급식소까지 확대하여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시·도 등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원산지를 집중 단속하여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다. 평가 및 향후계획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 및 국내산 수요 증대를 위한 직거래 기반을 확충을 위해 브랜드별 직영 판매시설 지원(12개소, 140억 원)으로 브랜드육 판로를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소비자 접근성이 좋은 대도시 근교에 브랜드육 판매점·음식점·전시관 등 복합시설로서 브랜드육 타운을 2009년부터 2010년까지 4개소를 건립하여 직거래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과 합리적 가격형성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FTA/DDA 등 시장개방 확대, 대형유통업체 성장 등 소비지 유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산에서 유통단계까지 일관된 품질관리, 안정적인 공급능력 확보, 마케팅시스템을 갖춘 우수 브랜드 경영체를 육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명품 브랜드 육성, 소규모 브랜드 통합, 차별화된 컨설팅·교육과 동시에 브랜드간 협력을 주요 전략 축으로 「축산물브랜드 2단계 발전대책」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제6장

식품산업 육성 및 농식품 수출 확대



제1절

식품산업 육성

1. 식품산업육성 기반 마련

(식품산업정책과 서기관 최정록)

가. 추진배경 및 개요

2008.2월 신 정부 출범과 더불어 기존 농림부와 해양수산부의 수산 기능, 식품산업 진흥 부분을 통합한 농림수산식품부가 출범하였다. 이는 기존 농어업 생산에만 집중되었던 정책이 푸드시스템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으로 확장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생산 중심의 농업정책으로는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에 제대로 부응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복잡다양한 푸드시스템을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표 2-6-1> 국가경제 17대 신 성장동력

3대 분야	17대 신 성장동력
녹색기술산업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에너지, 고도 물처리, 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 그린도시
첨단융합산업	고부가 식품산업, 방송통신융합산업, IT융합시스템, 로봇 응용, 신소재·나노 융합,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고부가서비스산업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 금융, 콘텐츠·소프트웨어, MICE·관광

이러한 바탕 위에 농식품부는 식품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2008.6.28일 식품산업진흥법 시행을 바탕으로 식품산업 진흥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어서 2008.11.13일 식품산업의 중장기 발전 방안을 제시한 ‘식품산업발전 종합대책’을 수립·발표하였다. 2009년도는 동 대책의 주요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식품산업 진흥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2009년 1월 국가경제의 17대 신 성장동력을 확정·발표하였는데, 고부가 식품산업²⁾이 여기에 포함되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식품산업발전종합대책 수립 경과

'08.3월 업무보고시 식품산업 발전 및 농어업과 연계강화 시책 등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계획을 보고한 이래, 관련업계·학계 등 분야별 전문가 협의를 거쳐 '종합대책(안)'을 마련하고 정책토론회, 공청회, 업계 및 지자체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08.10월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심의 및 부내 정책조정심의, '08.11월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거쳐 식품산업발전종합대책을 확정하였다.

2) 식품산업발전 종합대책 주요 내용

녹색성장을 견인하는 세계 일류의 식품산업 육성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2006년 기준 100조원인 식품산업 매출액을 2012년까지 150조원으로 확대, 38억 불 수준인 농수산물 수출을 100억 불로 증가, 2017년까지 우리 한식의 세계 5대 음식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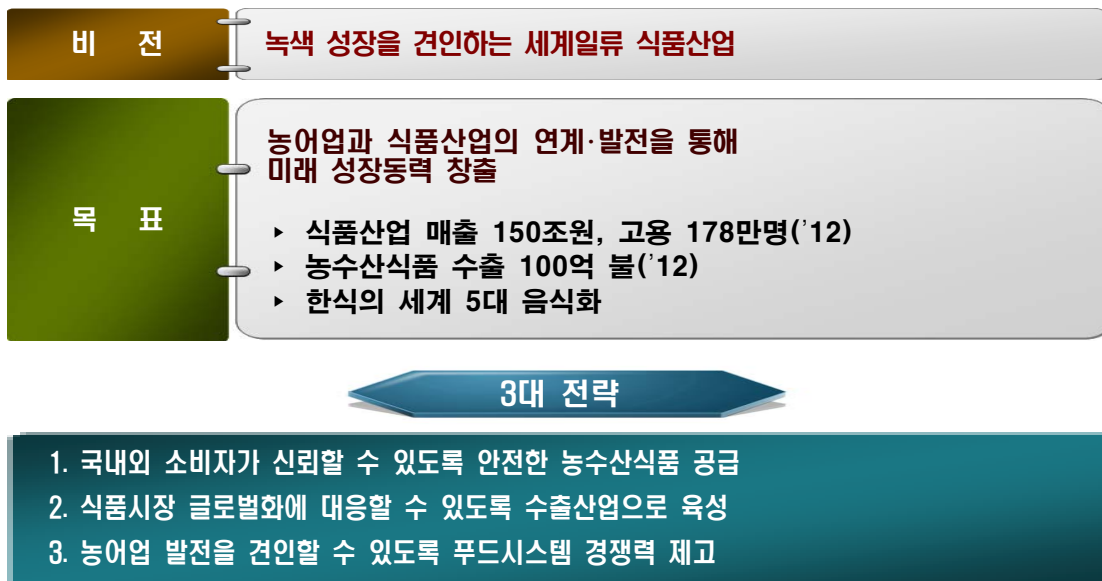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전략으로는, 첫째 국내외 소비자가 모두 신뢰할 수 있도록 안전한 농수산식품을 공급하고, 둘째 글로벌화되고 있는 식품시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식품산업을 수출산업으로 강화하며, 셋째 농어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식재료 산업 등 푸드 시스템 전반에 대한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① 안전한 농수산식품 생산·공급 강화 ② 식품 R&D 투자 확대 ③ 전통·발효 식품의 과학화·세계화 ④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 지원 ⑤ 규제혁신·인센티브 제공 ⑥ 식재료 산업 활성화 ⑦ 농어업·식품산업 연계 등 7대 핵심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08.12월 식품산업발전 종합대책을 토대로 농식품 100억 불 수출계획, 한식 세계화 기본계획,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계획이 수립되었고, '09.2월 식재료 수출활성화 기본계획, '09.4월 한식세계화 세부 추진전략, '09.6월 식품산업 R&D 증장기 계획, '09.8월 우리 술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등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이 수립되었다.

2) 고부가 식품이란 기존 식품의 전통적 개념(영양공급원으로서의 먹을거리)을 뛰어넘어 첨단기술과 다양한 아이디어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 고가에 판매가 가능한 식품을 일컫음. 고기능성 식품, 질병예방 식품, 특정성분 강화식품, 유기가공식품, 천연첨가물·소재, 발효기능 강화 식품, 나노식품, 우주식품, 레저식품, 실버식품, 편의식품, 대체식품 등 다양

<그림 2-6-1> 식품산업발전 종합계획



다. 평가 및 향후계획

2008년은 농림수산물부 출범, 「식품산업진흥법」 제정, ‘식품산업발전종합대책’ 수립 등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한 해였다면, 2009년은 식품산업 진흥기반을 확충과 전략품목의 육성 등 도약을 위한 준비의 해였다. 특히, 고부가 식품산업이 신 성장동력에 포함되었다는 것은, 기존 식품산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수요·시장 창출, 경쟁력 제고 등을 통해 식품산업이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원으로서 기능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 점, 미래 우리 식품산업이 가져야 할 비전과 전략 등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2010년에는 식품산업 진흥 정책의 2년간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식품산업발전종합대책을 보완하는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아직 식품산업 진흥정책이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앞으로 해야 할 과제는 수없이 많을 것이다. 식품업계와 학계, 소비자단체는 물론이고 전 국민이 우리 식품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식품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실천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협력해 나간다면 머지않아 세계 일류 수준으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2. 식생활 교육 추진

(식품산업정책과 사무관 윤영구)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최근 패스트푸드 위주의 서구식 식생활 및 수입식품의 확산으로 식(食)과 농(農)이 괴리되어 농식품 산업 발전과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식생활 교육을 적극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08.12월 수립한 '식품산업발전종합대책'은 3대 추진전략인 '안전 농식품 공급'의 세부 추진과제로 '전통 식생활 문화 교육·홍보 강화'를 제시하였다.

또한, '09.4월 「식생활교육지원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범국가적 차원의 식생활 교육 전개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동 법은 어릴 때부터 건전한 식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환경 친화적인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 계승·발전, 지역 농수산물 소비촉진 등을 통한 농식품 산업 육성과 국민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식생활교육지원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6-2> 식생활교육지원법 주요내용

<p><input type="checkbox"/> 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가정·학교·지역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 농어업인과 소비자간 교류촉진,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식생활 체험활동 활성화 등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 계획을 5년마다 수립 <p><input type="checkbox"/> 식생활 교육 위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위원장 : 농식품부장관, 민간위원 공동) ○ 시·도 및 시·군·구 식생활 교육 위원회(위원장 지방자치단체장) <p><input type="checkbox"/> 식생활 조사·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의 식생활 실태, 식품의 생산·유통·소비 등에 관한 조사·연구
--

식생활 지침 개발·보급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 또는 전통 식품을 이용한 식생활 지침 개발·보급

전통 식생활 문화 및 농어촌 식생활 체험 활성화

- 전통 식생활 문화 체험관 및 홍보관, 전통 식생활 문화 교육시설 건립 및 우수 농어촌 식생활 체험공간 지정

식생활 교육기관 지정

- 국·공립 교육시설, 대학 및 관련 기관·단체를 식생활 교육기관으로 지정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 교육교재 개발, 시설장비 지원, 식생활 교육 참여자(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관련 종사자) 식생활 교육 연수기회 제공

다. 평가 및 향후계획

「식생활교육지원법」의 제정은 농림수산식품부가 건전한 식생활 확산을 위한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동 법에 따라서 향후 5년간 식생활 교육의 목표 및 추진방향, 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간 교류 촉진,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및 체험활동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가 설치될 예정이다. 또한, '10년부터는 전통 식생활 문화 계승·발전, 지역 농수산물 소비촉진 및 친환경 식생활 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도 추진될 예정이다.

3. 전통·발효식품 산업 육성

(식품산업정책과 사무관 윤영구)

미국 건강잡지 ‘Health지’가 선정한 세계 5대 건강식품에 발효식품이 3개가 선정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발효식품은 건강식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 산업의 규모는 통계청 자료에 의해 약 4조 1천억 원(3,400여개 업체, 10인 이상기준)으로 추정되고 있어 식품산업 시장규모(100조 원)의 4%정도 차지하고 있으며, 발효식품의 경우에는 약 2조 2천억 원으로 전통발효식품 산업 규모의 53%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전통·발효식품을 세계적인 명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품질개선, R&D투자 확대, 시설현대화 등 기초 인프라 확충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천일염과 김치산업 육성, 전통주를 핵심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

가. 전통·발효식품 산업

(식품산업진흥과 사무관 이종태)

1) 추진배경 및 개요

최근 식품의 소비 형태는 기술과 경제여건 개선으로 품질 외에 편의성, 안전성, 건강기능성 등이 중요시되면서 유기식품(organic food), 기능성 식품 등 고부가 가공식품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김치가 미국 건강잡지 “Health지”에 세계 5대 건강식품 중 하나로 선정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영양학적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한류분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우리 전통식품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웰빙 식품을 찾는 세계적 추세에서 우리의 전통발효식품은 세계인의 건강식품으로 자리매김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발효기술 응용을 통한 다양한 고부가 전통발효식품 개발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중심의 생산 기반을 산업화·현대화하여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등 전통발효식품을 세계적 명품으로 육성하고자 한다.

2) 추진내용 및 성과

전통발효식품육성사업은 우리 전통발효식품의 품질개선·기능규명·R&D 투자확대 및 생산시설 현대화 등 기초 인프라를 확충하고 홍보·마케팅 등을 강화하기 위해 '10년도 189억을 편성하고 지원하였으며, 아울러 김치의 세계화 및 김치산업육성을 위해 김치 R&D, 브랜드·홍보, 체험·교육 등의 다목적 기능을 수행하게 될 세계김치연구소를 '11년도 완공을 목표로 '09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가) 전통발효식품의 시설현대화 등 기초인프라 확충

전통발효식품업체의 노후한 시설의 신축·증축·증설·개보수 등 생산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연 금리 3%,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 조건의 융자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09년도 92억 원, '10년도에는 134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나) 품질개선·기능규명·R&D 및 홍보·마케팅 지원

전통발효식품을 세계적 명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통발효식품 세계화 가능성 조사 및 전통식품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제품개발, 판매·유통망 구축 및 각종 국제박람회, 심포지엄 지원과 전통발효식품 현장탐방 등을 통해 명품화 지원 및 소비촉진을 연계 추진하고 있다. '09년도에는 15억을 지원하였으며, '10년도는 35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다) 전통 절임류 세계화 지원센터 구축 지원

규모화 및 계열화 기반이 구축되어 있는 순창군 장류밸리단지에 65개 업체의 공동 생산·유통·저장·마케팅 등을 위한 전통절임류 세계화 센터 건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동 센터는 지하 1층 지상 2층 건축 연면적 4,164㎡ 총사업비 100억 원(국고보조 50억 원)의 3개년 사업으로 '11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HACCP 기준에 맞는 종합가공시설 구축으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절임원료 계약 재배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라) 세계 김치연구소 건립 지원

김치 중주국으로서의 위상제고와 김치의 세계화를 위한 연구, 홍보, 마케팅, 체험 등의 다목적 기능과 관련 연구의 종합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연구소의 설립 필요성에 따라, '09. 6월 세계김치연구소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같은 해 7월 광주광역시를 세계 김치연구소 입지로 선정하였고, '11년도 완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184억('09년 30억 원, '10년 100, '11년 54)의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세계 김치연구소는 김치와 우리나라 전통발효식품에 대한 연구·전시 체험과 Pilot-plant 등의 다목적 기능을 수행하여 전통식품산업의 발전과 한식 세계화 추진을 위한 과학적 뒷받침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유산균을 활용한 치매예방, 항바이러스 등 고부가 기능성 물질을 개발하는 등의 미래 지향적 연구도 병행하여 추진함에 따라 세계 발효시장을 선점하는 세계 최고의 발효식품연구원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3) 평가 및 향후계획

전통발효식품산업육성은 1차 산업에 머물러 있던 우리 농어업을 2·3차 산업으로 성장시켜 농어가 소득향상은 물론 지역사회 고용창출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이다. 전통발효식품육성지원은 중소기업체 중심의 생산기반 현대화 및 품질개선, 홍보·마케팅 등 지원을 통해 우리 전통발효식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식품시장 규모를 확대해 나갔으며, 또한 세계김치연구소의 건립은 김치의 세계화·명품화 및 전통적인 미생물 발효산업 현대화를 통해 세계 발효시장을 선점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향후에도 전통발효식품의 품질개선, R&D 투자확대, 안정적인 원료공급체계 구축, 기초시설인프라 확충, 한식 세계화사업 등과 연계한 국내외 홍보 강화 등 전통발효식품의 세계 명품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나. 천일염 산업 육성

(식품산업진흥과 서기관 박승준)

1) 추진배경 및 개요

식품산업은 기존 산업육성 정책의 사각지대에 위치하였으나 MB정부 출범에 맞춰 조직개편으로 산업육성 정책기반이 마련되었으며, '08년 2월 소금이 광물에서 “식품”으로 가치가 전환되고, 농식품부 발족으로 천일염관리 업무가 기존의 지식경제부에서 '09.3월 농식품부로 이관이 되면서 소금산업 육성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소금은 국민건강과 직결되고 산업적 가치가 잠재되어 있는 소금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국가 경제 및 국민 식생활에 이바지할 필요성이 있으나 천일염이 45년간 광물로 취급되어 생산시설이 노후화되고 식품으로서 위생적인 시설개선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2) 추진내용 및 성과

해주, 소금창고, 산지종합처리장 등 시설현대화, 포장재 지원, 염전 바닥재 개선 등을 위해 '10년도에 87억 원을 지원하고 소금의 이력 추적제, 원산지 단속 등의 유통구조 개선과 소금산업육성을 위한 관련 법률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가) 생산 시설현대화 등 기초인프라 확충

염전생산에 필수요소인 해주와 소금창고의 신축·증축·개보수 등 생산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연 금리 3%,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 조건의 70% 융자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09년도 19억 원, '10년도에는 33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나) 천일염 수급조절을 통한 가격안정화를 위해 산지종합처리장 등 지원

생산자 개인이 각각 수행해 온 수집, 저장, 선별, 유통 시스템을 규모화, 집단화, 현대화하여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SPC : Salt Processing Complex)을 국고 40%, 지방비 30%, 자부담 30%의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환경호르몬 검출 논란이 있는 염전바닥재를 친환경 자재로 대폭 교체하기 위한 예산 20억 원을 '10년도에 처음으로 추진하고 있어 식품으로서의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다) 소금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법률 및 제도개선 추진

천일염의 명품화·세계화를 위한 천일염 포럼을 금년 2월에 창립하여 국제세미나, 소금산업 육성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공청회, 현장방문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소금산업육성대책을 12월중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3) 평가 및 향후계획

천일염시장에 식품대기업이 진출하여 천일염의 포장재, 디자인 개선 등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으며 천일염의 우수성이 임상실험을 통하여 밝혀지고 있어 향후 천일염산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 등 천일염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염전시설의 현대화 및 조직화·규모화를 통한 기초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며 천일염의 이력관리제, 품질인증제 등을 통하여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상품개발, 마케팅 홍보, 공동브랜드 관리 및 천일염 수출 선도 조직 육성 및 확대, 관광산업과 연계하는 등 천일염의 새로운 가치창출에도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다.

다. 전통주 산업 육성

(식품산업진흥과 사무관 박성기)

1) 추진배경 및 개요

국민소득의 증가, 웰빙 욕구 증가 등으로 전통적인 제조방법과 국산원료로 만든 우리 술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으나 저가 대중주 시장은 국내산 소주, 맥주가 고가 술 시장은 수입산 위스키, 와인이 주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술 시장 규모는 약 26조원(출고가 기준 8조6천억 원)으로 추정되며 전통주의 시장 점

유율은 막걸리·약주를 포함해서 4.5%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 술 산업을 활성화하여 한식 세계화와 함께 세계적인 명주로 육성하겠다는 「우리 술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2009년 8월 26일 발표하였으며, 금년 전통주의 등의 품질향상과 산업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우리 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2010.8.5) 하였다

2) 추진내용 및 성과

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전통주 등의 품질향상과 산업진흥을 통한 우리 술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국가경제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 도모를 목적으로 2010년 2월 4일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고, 이후 하위법령 제정을 추진하여 2010년 8월 5일 시행령·시행규칙이 동시에 시행되었다. 동 법률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발표한 「우리 술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법적으로 뒷받침 하고 전통주 산업활성화 및 기반조성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 경영개선 지원, 제조면허 추천, 통계조사, 사업자단체 설립, 건전한 술 문화 조성, 품질관리 강화를 통한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주류 품질인증 및 품평회, 제조원료에 대한 원산지표시제 등을 규정하여 전통주 등의 산업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나) 술 품질인증제 및 원산지표시제 실시

정부에서는 술의 품질향상, 고품질 술의 생산 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하였다. 품질인증대상 4개 품목(탁주, 청주, 약주, 과실주)을 2010년 8월 5일 고시하였으며 향후 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 리큐르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및 품질인증에 대한 세부 기준은 2010년 10월 11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고시하였다. 또한, 술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술을 제조·판매하는 자로 하여금 사용한 주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원산지표시제도 시행하였다.

다) 대한민국 우리 술 품평회

우리 술 품질향상 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고 대표 브랜드를 선정·육성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자 2010 대한민국 우리 술 품평회('10.9.30~10.2)를 개최하였다. 각 시·도 예비심사를 거친 7개 부문(주종) 107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평회를 통하여

7개 부문별(생막걸리, 살균막걸리, 약주·청주, 과실주, 증류주, 리큐르, 기타주류) 대표브랜드를 선정·제품 홍보 책자를 제작하여 국내외 유통업체, 해외바이어, 해외공관 등에 배포하고 각종 행사시 판촉 활동 지원과 해외 주류 박람회 출품지원 등을 할 계획이다.

라) 막걸리 홍보·판매행사 추진

막걸리잔의 표준화를 위해 막걸리 전용잔 공모전을 개최하여 선발된 막걸리 잔을 바탕으로 막걸리잔 16점을 개발·보급하였으며, 국내외 막걸리 붐을 지속·견인하고 월드컵 16강 진출을 기원하고자 16강 막걸리 선발대회('10.5.10)를 개최, 선정된 16종에 대해 대형유통점 판촉행사를 실시하였다. 2010년산 국내 햅쌀을 주원료로 생산된 막걸리의 출시를 기념하여 '2010 햅쌀막걸리' 출시홍보전('10.11.18~11.21) 및 전국대형유통매장에서 판촉전('10.11.18~12.17)을 실시하였다.

3) 평가 및 향후계획

「우리 술 경쟁력 강화방안」과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전통주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술의 다양화 및 고급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우리 술 산업진흥이 농업과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고 우리 술을 복원하여 계승·발전시키고 동시에 관광, 문화와 연계한 산업자원으로 활용하여 소득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술의 품질 고급화, 다양성 확대, 세계화 등 과제 추진을 통해 세계인이 사랑하는 우리 술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4.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강화

(식품산업정책과 서기관 최정록)

가. 추진배경 및 개요

2008.2월 신 정부 출범과 더불어 기존 농림부와 해양수산부의 수산 기능, 식품산업 진흥부분을 통합한 농림수산식품부가 출범하였다. 농어업의 문제를 식품을 매개로 해결해야 하려는 신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과거 생산 중심의 농업정책으로는 급

변하는 대내외 여건에 제대로 부응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복잡다기한 푸드시스템을 관리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강화를 통한 동반 성장의 도모는 식품산업발전 종합대책의 목표이자 7대 정책과제의 하나로서, 식품산업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게 되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품목을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산·학·연·관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1차 산업인 농어업을 2·3차 산업으로 연계·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광역클러스터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동 사업은 사업계획을 사업단이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지역별로 특화된 농산업을 중심으로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9년 현재까지 총 54개 사업단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2016년까지 사업단 100개소를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2) 산지·소비지 상생 협력

농산물 유통 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식품·외식·유통업체 등이 국내산 원료를 직거래할 경우, 원료 구매에 소요되는 자금을 용자지원해 주는 산지·소비지 상생협력 사업을 '09년 부터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농어업 산지와 실 수요 업체들간의 직접적인 교류 협력을 유도하여 농어업과 식품산업이 상생하는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생산자와 식품기업이 공동 출자한 융복합형 식품제조기업 육성도 '09년부터 지원 중에 있다. 동 사업을 통해 생산자에게는 원료의 안정적 판로 확보 및 추가 소득 배분, 생산기업에게는 안정적 원료 확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원료 생산자와 기업의 상생을 도모해 나가고 있다.

3) 식생활 교육 추진

한편, 민간 중심의 로컬 푸드(Local Food) 운동이 정착될 경우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09.5월 지역 농수산물 소비 촉진, 친환경 식생활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식생활교육지원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식(食)과 농(農)의 연계를 통한 전통식생활 계승·발전, 지역농수산물 소비촉진, 환경친화적인 식생활 교육 전개 등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2009년 12월 민간 차원의 '식생활 국민운동 본부'가

발족하였다. 민간 차원의 식생활 교육 운동이 확산된다면 농어업과 식품산업이 함께 발전해 나가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 평가 및 향후계획

농어업과 식품산업을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농어가 소득을 향상시키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지역전략식품산업의 경우 '05년부터 '09년까지 52개 사업단에 총 1,036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추진 이전보다 매출액이 3,782억 원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런 측면에서 지역 특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고 있는 지역전략식품산업, 생산자와 식품기업이 공동 출자하는 융복합형 식품 제조기업 육성 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향후에는 농어업의 2·3차 산업화를 더욱 촉진시켜 나가기 위해 농어가의 식품 가공·외식서비스 사업을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어가 식품가공·판매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의 개선 및 창업 매뉴얼 제공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5. 동북아 식품시장 허브 역할,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식품산업정책과 사무관 성병화)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우리나라는 최근 10년간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농·식품의 해외 의존이 심화되면서 국내 농업생산은 상대적으로 정체되고 있는 반면, 식생활소비 패턴이 외식중심으로 변화해가는 등 식품산업의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식품산업은 글로벌 경쟁력이 선진국에 비해 낮고, 소수 대기업 외에는 대부분 영세한 사업체로 자체적인 R&D투자 여력이 부족하고, 마케팅능력도 미흡하다. 5인 이상 식품제조업체 8.5천개 중 종업원 50인 미만이 92%를 차지하며, 기술수준도 선진국의 40~60%수준(국가과학위원회)으로 추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국내여건과 대외여건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식품산업도 혁신적인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시급해짐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가 식품산업 육성

정책을 담당하면서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어업과 연계강화를 위해 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동북아시아 식품시장의 허브(hub)」라는 비전을 가지고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융복합화를 통한 우리 농어업의 지속적 성장을 이끌어 냈고 동시에 국내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끌어 올려 국가 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기 위해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의 프로젝트 사업으로, 2008년까지 입지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009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였다.

< 그동안 주요 추진경과 >

- 제1차 균형발전 정책보고회에서 ‘식품클러스터 조성 방향’ VIP 보고(2007.11.27)
 - 광역 식품클러스터 사업지역 2007년 내 선정(민관 협의체 심의) 보고
- 신규사업 추진에 공모한 지자체(5개)를 심의한 결과, 전북도를 사업대상 지자체로 선정(2007.12.17)
-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국내보완대책 반영
 - 2008년 신규사업으로 예산 확보(국비 20억)
- 농식품부 기본구상안 마련(2008.12)
 - 연구용역(산업연구원 주관) 및 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 수행
- 입지선정에 공모한 전라북도 6개 시·군(고창, 김제, 남원, 부안, 익산, 정읍 응모)을 대상으로 심의한 결과, 익산시 일원을 최종입지로 선정 및 기본계획 발표(2008.12.26)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농업경쟁력강화방안 대통령 보고(2009.1)
 -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외자유치의 거점으로 육성
 - R&D중심의 식품전문 국가산업단지 조성 특성화 추진, 동북아식품시장의 허브로 육성
-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완료(2009.11.6)
- 국토해양부에서 국가산업단지 조성하기로 결정(2010.1.18)

나. 추진내용 및 성과

국가식품클러스터를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개발하여 145개 식품기업과 10개의 식품연구소를 유치 세계적인 클러스터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식품연구소, 식품관련 대학, 지역농업과 활발한 네트워킹을 구성하여 집적효과를 전국으로 확대하려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총 5,535억 원(국비 1,616억 원, 산업단지 조성 민간예산포함)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금년에는 식품산업진흥법을 개정('10.1.25)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육성 및 국

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의 설립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투자유치, 산단조성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단을 운영 중이다.

또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을 하나의 계(系)에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식품클러스터과를 신설하여 전체적인 식품클러스터 추진방향, 산업단지 조성 등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직제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를 추진 중에 있다.

2010년에 반영된 사업비 33억 원은 핵심아이템개발, 추진단 운영, 투자에이전시 운영, 교류협력 및 투자유치 5개 분야에 투입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조성되기 전 사전 기반마련에 사용할 계획이다.

핵심아이템 개발은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설립되는 클러스터 관리기구인 클러스터지원센터와 3대 R&D센터, pilot plant, 임대형공장 등 6개 기업지원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연구용역 사업이다.

투자유치, 산단조성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단을 운영하고, 해외 식품기업을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유치하기 위한 제반 활동을 수행할 국내외 민간기관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북미·중국·기타 담당),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 유럽 담당), 이토추증권사(일본 담당) 등 3개 기관을 투자에이전시로 선정하였다.

교류협력 및 투자유치 활동은 국내외 기업 및 민간연구소 유치를 위한 투자유치 설명회 추진, 식품 박람회 계기 홍보 및 개별기업 방문 등을 추진하고, 해외 우수 식품클러스터·연구소·대학 등과 세미나, 공동연구, 벤치마킹 등 교류협력 활동이 포함된다.

다. 평가 및 향후계획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동북아시아 식품시장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국내 식품산업의 집적을 통해 발전을 도모하고, 식품 R&D의 상용화를 실현하여 국내 식품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 연구소, 기업, 지역농업단체가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고 각자의 발전을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전체 식품산업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운영방안 마련이 요구되며, 활발한 네트워크를 위해서는 다양한 식품기업의 집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기업, 연구소 투자유치 활동을 지속 전개할 계획이다.

제2절

농식품 수출 확대 및 한식세계화

1. 농식품 수출 확대

(식품산업진흥과 사무관 김상진)

가. 추진배경 및 개요

농식품 수출은 개방화 시대에 우리 농어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농정시책이다. 특히, 농식품 수출은 파프리카 수출 농가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농어민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FTA/DDA 등 시장개방에 따른 수입 농산물 유입으로 부터 우리 농어업의 생산기반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뿐만 아니라 WTO 체제하에서 그 동안 정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해온 구조개선 사업의 성과를 간접적으로 평가받는 지표가 되며, 우리 농식품의 품질 향상과 규격 표준화 등 유통시스템 개선을 촉진시킨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농정시책이다.

최근의 농식품 수출 동향을 보면 이상 기후 현상으로 인한 국내 생산 감소 및 가격 상승, 주요 수출국의 안전성 규제 강화, 구제역 발생과 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수출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그 동안 수출 농식품의 품질 및 안전성 관리에 대한 수출농업인의 마인드 향상과 정부의 적극적인 해외 시장 개척 지원의 성과로 평가되며, 중장기적 수출농업의 발전방향에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다.

2009년 농림축산물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한 3,298백만 불을 기록하였으며, 채소·과실·김치 등은 증가하였으나 돼지고기의 수출액은 전년도에 이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도의 수출 실적을 통해 우리 수출 농업의 질적 성장 및 미래 발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세계적 소비위축으로 주요국 식품 수입이 크게 감소하였음에도 우리 농식품의 수출 물량은 증가하여 해외의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

였기 때문이다. 국제 시장에서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미국, 일본, 네덜란드 등 선진 수출 농업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진한 것도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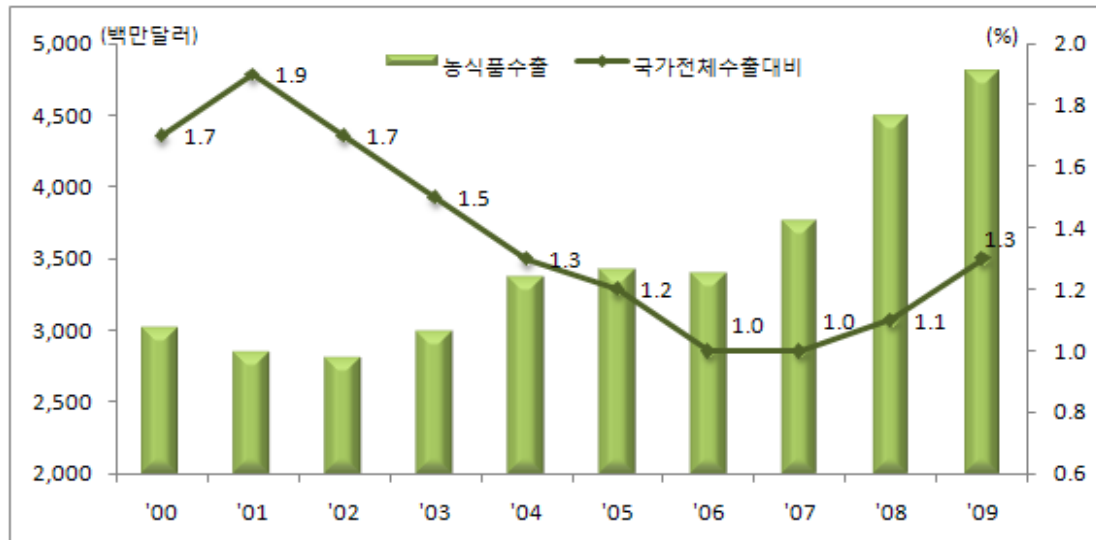
<표 2-6-3> 최근 연도별 농식품 수출동향

(단위 : 백만 불, %)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 농식품 수출액	3,012.4	2,851.5	2,801.3	2,990.6	3,365.2	3,415.8	3,394.8	3,759.3	4,496.5	4,809.3
(국가전체 수출대비)	1.7	1.9	1.7	1.5	1.3	1.2	1.0	1.0	1.1	1.3
-농림축산물	1,531.9	1,579.9	1,639.9	1,859.8	2,085.0	2,221.5	2,304.4	2,531.0	3,048.2	3,298.1
-수산물	1,503.3	1,271.8	1,161.3	1,130.8	1,280.2	1,194.3	1,090.4	1,227.5	1,448.3	1,511.2

자료 : 관세청 무역통계, 농수산물유통공사 KATI

<그림 2-6-2> 국가 전체 수출대비 농식품수출 비중



<표 2-6-4> 최근 5개년도의 세부 수출동향

(단위 : 천 불 %)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증감률 (’09/’08)
농림수산식품 합 계	3,415,797	3,394,787	3,759,269	4,496,494	4,809,286	7.0
<농식품>	2,221,520	2,304,361	2,531,757	3,048,189	3,298,056	8.2
□ 신선농식품	608,093	535,576	597,099	675,069	739,381	9.5
○ 채소류	138,467	133,608	121,092	148,627	161,548	8.7
○ 김 치	92,965	70,328	75,309	85,295	89,386	4.8
○ 인삼류	82,475	88,598	92,075	97,229	108,916	12.0
○ 화훼류	52,142	40,414	58,089	76,222	77,179	1.3
○ 과실류	120,882	98,427	144,903	154,942	172,566	11.4
○ 버섯류	2,819	4,166	8,633	23,185	33,039	42.5
○ 돼지고기	34,290	23,863	25,619	17,716	11,625	△34.4
○ 가금육	9,509	8,508	8,985	12,884	18,380	42.7
○ 산림부산물	77,363	71,830	71,026	58,969	66,742	13.2
□ 가공농식품	1,613,427	1,768,785	1,934,658	2,373,119	2,558,675	7.8
○ 가공식품	1,540,781	1,716,594	1,877,428	2,313,621	2,457,716	6.2
○ 목 재 류	72,646	52,191	57,233	59,498	100,959	69.7
<수산식품>	1,194,276	1,090,426	1,227,512	1,448,305	1,511,230	4.3
○ 어류	615,948	589,146	717,573	864,717	929,328	7.5
○ 연체동물	273,337	202,376	254,077	280,172	284,567	1.6
○ 갑각류	54,503	65,733	59,092	76,254	70,965	△6.9
○ 해조류	125,529	125,090	113,732	145,360	139,401	△4.1
○ 기타	124,955	108,075	83,038	81,802	86,969	6.3

나. 추진내용 및 성과

농식품 수출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은 2008년에 수립된 「12년 농식품 100억 불 수출 추진대책」에 따라 매 연도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되며 농식품 수출을 뒷받침할 농식품 수출 기반 조성, 농식품 수출을 견인할 수출 성장동력 확충 그리고 해외 마케팅 분야로 대별할 수 있다.

1) 농식품 수출기반 조성

품목별 수출선도조직(16개 품목 19개 조직)을 통합하여 농식품 수출 전문 경영체를

육성함으로써 수출 농산물의 규격화·표준화를 유도하고 원예전문생산단지에 대한 평가 및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우수 단지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였다.

또한, 현장 중심의 수출컨설팅을 매년 확대하여 실시함으로써 생산 및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요인 특히, 안전기준 위반에 따른 어려움을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WTO 체제하에서 지원이 허용되는 수출 물류비 지원(323억 원)과 수출업체의 운영자금 융자(5,170억 원)를 통해 수출 관련 경영체의 자금 부담을 크게 완화하였다.

한편, 국내외 수출관련 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위해 6개국 10개 해외 aT센터 또는 사무소에서 입수되는 수출관련 정보를 인터넷 정보망인 KATI(Korea Agriculture Trade Information, <http://www.kati.net>) 등을 통하여 실수요자에게 적시에 제공하여 활용토록 하고 있다.

2) 수출 성장동력 확충

첫째, 한국산 농산물의 세계 브랜드화를 위한 수출농산물 대표브랜드 휘모리(Whimori)의 대상 품목 및 업체를 확대(6품목, 11업체)하고 해외시장에서의 통합마케팅을 강화하여 휘모리(Whimori)를 통하여 수출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와 홍보 효과를 높이고 있다.

둘째, 해외시장에서의 동일 품목 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동일 품목을 수출하는 업체들 간의 품목별수출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동 마케팅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농식품 수출을 통한 농가 소득 효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3) 해외 마케팅

2009년 종합식품박람회 참가 지원(26회), 개별 업체의 박람회 참가지원(104회) 등을 통해 직접적인 수출계약과 동시에 신규 바이어 발굴 및 현지 소비자의 선호도에 맞는 제품 개발 등을 이끌어 내고 있다.

또한, 해외 대형유통업체와의 MOU 체결('09년 14회) 및 이와 연계한 판촉행사 개최('09년 68회), 대형 전문바이어 초청을 통한 수출상담회 개최(2회)를 통해 해외시장 다변화 및 한국 농식품의 대량수출체계 구축을 지원하였다.

이와 더불어, 재외공관 연계 농식품홍보(41회), 해외 농식품 홍보대사 등을 활용한 해외 마케팅을 실시하여 한국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 제고 및 수요 창출을 추진하였다.

다. 평가 및 향후계획

농식품 수출 확대 정책은 정체 상태인 내수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국내 농어업의 희망과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는 한편, 대외 개방이라는 불리한 환경 변화에 공세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으로서 지속적으로 그 비중이 커져가는 정책이다.

향후 정부는 농식품 수출이 농어업의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내 공급기반 구축 및 해외시장개척 활동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나갈 계획이다. 특히, 개별 수출업체가 수행하기 어려운 해외 시장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분석, 수출 관련 인프라 구축, 한국 농식품 전반에 대한 인지도 제고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정부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는 동시에 민간의 자생적인 역량을 배양하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2. 외식산업 육성 및 한식세계화

(외식산업진흥팀 사무관 이정삼)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우리 정부는 2005년부터 전통문화 콘텐츠를 산업화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국가 이미지를 고양시키고자 한식(韓食)을 포함한 한(韓)스타일³⁾ 육성정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특히, 2006년 6월 국가이미지위원회에서 ‘한스타일육성종합계획’중 한식 분야는 농림부가 주무부처로 추진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우리 부는 2007년 1월 ‘한식의 세계 5대 음식화⁴⁾’를 목표로 한 한식 세계화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한국 조리법

3) 한(韓)스타일(HanStyle)이란 우리문화의 원류로서 대표성과 상징성을 띠며, 생활화, 산업화, 세계화가 가능한 한글, 한식, 한복, 한옥, 한지, 한국음악(국악)등의 전통문화에 담겨있는 한국적 양식을 일컫는다.

표준화 및 해외 한식당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일본 실태조사 등 인프라 구축과, 해외 공관과 연계한 식문화 홍보 행사 등을 추진하여 왔다.

2008년 농림수산식품부가 2월에 출범하였고, 6월 28일 식품산업진흥법이 시행되는 등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조직과 법령이 정비되어 한식 세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2009년 4월에 “한식을 전 세계인의 식탁에 올린다”는 비전을 설정하고 「한식세계화 5대 전략⁵⁾」을 마련하여 국내외로 나뉘어 9대 중점과제⁶⁾를 확정하고 국내외 홍보와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한식의 국내 산업화, 추진체계 구축 등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한식세계화 전략 수립을 위해 전문가·자문단 회의 등을 거쳐 ‘한식 산업화 세계화 추진계획(안)’을 수립하고, 2009년 4월 7일 한식세계화 국제심포지엄을 통해 발표하였다. 이후 범부처적, 민간 참여적 한식세계화 추진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와 민간 전문가 등 총 36명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의 한식세계화추진단을 구성, 2009년 5월4일 출범회의를 개최하였다. 한식세계화추진단은 한식세계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협의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행정적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의 국장급으로 한식세계화추진 T/F를 구성하였으며, 한식 세계화사업 등 시행기구인 사무국 역할을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수행하였다.

2009년 한식세계화는 초기단계로서 홍보 등을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해외진출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주력하였다. 6월 2일 한·아세안 정상회의 등 국제행사시 한식 오·만찬 제공을 통해 한식을 해외에 자연스럽게 홍보하였으며, VANK⁷⁾와 한식홍보 협력 MOU를 체결하여 국내외 미디어와 인터넷 등을 활용한 한식홍보를 추진하였다. 이와 함께 CBS 등 해외 미디어를 통해서도 한식의 우수성 등을 홍보하였다. 해외 진출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미국, 일본, 중국의 시장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지의 한

4) 세계 5대 음식은 일반적으로 프랑스, 이탈리아, 중국, 일본, 태국을 일컬으며, 한식은 ethnicfood중 20위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됨(미국 NRA, 2002.)

5) 5대 전략 : ① 인프라 구축 ② R&D 확대 ③ 인력양성 ④ 기업투자 활성화 ⑤ 식문화 홍보

6) 9대 중점과제 : (국내) ① 법·제도 마련 등 한식 산업기반 구축 ② 한식 요리명장 양성 ③ 스타 한식당 육성 ④ 한식 체험 기회 확대 (해외) ⑤ 한식 세계화 R&D 확대 ⑥ 국산 식재료 공급 활성화 ⑦ 한식 이미지 제고 ⑧ 한식 문화 알리기 ⑨ 한식 브랜드 100 프로젝트

7) VANK(Voluntary Agency Network of Korea) : 한국 바로 알리기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식당 운영현황, 식재료 공급현황, 외국인 한식 반응조사, 권역별 유망한식 발굴 및 마케팅 전략, 한식 BI개발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국내 경험 많고 능력 있는 조리사를 스타쉐프로 육성하기 위한 ‘한식 스타쉐프 과정’(2개소 49명)과 지역 향토음식 육성을 위한 ‘향토음식전문가 과정’(5개소 100여명), ‘해외 한식당 종사자 및 재외공관 조리사 교육’(미국·일본·중국·유럽 672명)을 실시하여 현지 교육생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한식메뉴 124선에 대한 외국어표기안 및 스토리텔링을 3개 국어(영,일,중)로 제작·보급하고 한식메뉴 100선의 표준조리법을 4개 국어(영,일,중,불)로 제작·보급하여 외국인들에게 한식을 올바르게 알리고 친밀도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다. 평가 및 향후계획

정부의 본격적인 한식세계화 활동에 맞추어 언론 등에서도 한식세계화 필요성, 가능성 등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한식세계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2009년 9월 국내 여론조사결과 국민 93%가 한식세계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70%가 실현가능성에 공감하는 등 높은 국민적 관심을 얻었으며, 한식세계화 추진계획 발표 이후 언론의 우호적인 기사가 300건이 넘는 등 평가를 얻었다. 또한 국내 및 일본 등에서 막걸리 열풍이 부는 등 해외진출도 가시화 되었다. CJ가 비빔밥 프랜차이즈를 일본에 이어 LA, 싱가포르, 상해 등 진출을 추진하고, 막걸리, 고추장, 김치 등의 수출이 증가하였으며, 떡볶이 또한 국내외에서 많은 관심을 받으며 프랜차이즈기업이 확대되는 등 성과가 있었다.

2010년에는 초기 붐 조성과 기반조성을 바탕으로 한식당의 해외진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식당의 해외진출을 위한 컨설팅, 교육 등을 실시하고, 해외 현지 한식당 협의체를 구축, 협의체를 통한 현지 마케팅 및 공동구매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Korea Food Expo 2010, G-20정상회의, 한국방문의 해 등을 활용하여 한식의 우수성을 알려 세계인의 음식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간소하고 고품격의 식단을 개발하여 주요 행사의 만찬제공을 통해 한식을 세계인의 웰빙음식으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며, 해외 주요 박람회 등에 참가하여 한식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제7장

농업인 복지 및 생활환경 개선



1. 농어민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농촌사회과 사무관 전병순)

가. 추진배경 및 개요

1) 건강보험료 지원

농어촌 거주 농어민에 대한 보험료 경감은 1988년 농어촌 의료보험이 시작될 때 부터 추진되어왔던 사항으로 2000년 12월부터는 농어촌 지역의 의료서비스 이용상의 어려움, 경제능력 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 경감률을 22%로 확대(종전 : 15%)하였고, 2004년 1월에는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WTO/DDA 체제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2) 연금보험료 지원

농어촌 인구의 노령화, 농수산물 개방에 따른 소득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노후 생계보장을 위한 노후소득보장 제도로써 연금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1995년 7월 1일부터 농어촌지역 주민에 대하여 국민연금제도가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건강보험료 지원

농어민 건강보험료 국고지원율을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04년에는 8%, 2005년에는 18%, 2006년에는 건강보험료 국고지원율 목표치인 28%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휴폐경지 등에 대한 보험료를 경감, 재해 시 보험료 납부유예, 소득이 없는 경우 결손처분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도서·벽지 지역 등 요양기관과의 거리가

멀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50%를 경감해주고 있다.

<표 2-7-1>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실적

구분 \ 연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국 고 지원율	8 %	18 %	28 %	28 %	28 %	28%
월 평 균 지원세대	606천 세대	603천 세대	521천 세대	504천 세대	484천 세대	457천 세대
지원예산 (전년대비 증감)	340억	666억 (95.8% ↑)	1,339억 (68.4% ↑)	1,431억 (6.9% ↑)	1,559억 (8.9% ↑)	1,559억 (-)

농어민 건강보험료 국고지원 및 경감 대상 지역은 농어촌과 준농어촌이며, 준농어촌은 농어촌 외의 지역 중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에 한정되었다. 그러나 2006년 7월과 2008년 4월에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시행을 통해 취약지구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까지 준농어촌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농어촌 건강보험료 국고지원 및 경감 대상이 확대되었다.

2) 연금보험료 지원

1995년 7월에 전국 농어민과 군 지역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제도는 2009년 현재 월 평균 230천 명의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국민연금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1995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최저등급 보험료의 1/3을 매월 지원하였으며, 2003년부터는 이를 확대하여 최저등급 보험료의 1/2을, 2004년 7월부터는 기준등급 이하는 본인 보험료의 1/2 금액을 정률, 기준등급 초과는 해당 기준등급의 1/2 금액을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다.

2008년부터는 현행 등급체계로 되어 있는 표준소득월액을 폐지하고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하는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하여 지원함으로써 연금제도의 내실화를 제고하였다.

<표 2-7-2>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기준 및 금액

구 분	1995.7~ 2002.12	2003.1~ 2004.6	2004.7~ 2005.12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기준등급 (기준소득월액)	최저등급의 1/3	최저등급의 1/2	12등급 (440천 원)	13등급 (480천 원)	14등급 (520천 원)	620천 원	730천 원
지원금액(월/원)	2,200~ 4,400	4,400~ 7,700	8,800~ 19,800	9,900~ 21,600	9,900~ 23,400	9,900~ 27,900	9,900~32, 850

* 1995. 7월부터 2005. 7월까지의 지역가입자 단계별 보험료 확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짐

<표 2-7-3>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실적

(단위 : 억 원)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계획
221	293	271	399	502	605	673	731	793	888

다. 평가 및 향후 계획

1) 건강보험료 지원

건강보험료 지원은 전반적인 의료 시설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농어업인의 의료·보건 서비스를 보장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 고령화에 따라 농어업인의 의료·보건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건강보험료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업외 소득이 있는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보험료 지원을 배제하거나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차등 지원 추진을 위해 복지부와 협의하여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차등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2) 연금보험료 지원

연금보험료는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별다른 노후 대책이 없는 농어업인에게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령화 추세에 따라 연금보험료 수급 대상이 되는 농어업인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안정적인 농어업인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연금보험료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협업농업인 부부 중 소득원이 분명한 상대 배우자나, 부부 중 한쪽이 연금수급으로 국고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 그 상대방에게 농어업인 연금보험료를 지원하여 농어업인 연금가입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 농어업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유족·장애연금 등의 연금수급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며, 국민연금 보험료의 자동이체제도 및 선납·분기납제도 등 납부편의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징수율을 제고함으로써 연금제도가 농어업인의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제도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연금제도의 내실화를 기해 나갈 계획이다.

2.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

(농촌사회과 사무관 전병순)

가. 추진배경 및 개요

대학 등록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농어업인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최근 등록금 인상률은 6~9%에 달하며 국공립 대학의 경우에도 '08년 기준 평균 등록금이 400여만 원에 달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어업인의 교육비부담 경감과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해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융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융자를 위해 정부는 매년 융자재원의 일부를 사업을 위탁한 한국장학재단에 출연하고 있다.

학자금은 등록금범위내에서 신청액 전액을 무이자로 융자하고 졸업 후 1년 후부터 1학기 융자금을 1년 이내에 상환토록 하고 있으며,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 자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09년부터는 농어업인 본인 대학생도 지원가능하며, 직전학기 성적을 반영하

여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 이상인 대학생에 대해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연동되도록 하였다.

2009년도에는 정부가 475억 원을 출연하여 28,966명을 대상으로 929억 원(상환금 재용자액 포함)을 용자 지원하였다.

<표 2-7-4> 학자금 용자 현황

(단위 : 건, 명, 백만 원)

구분	출연금	용자현황	
		인원수	금액
'94	8,000	1,724	1,712
'95	22,000	19,177	19,089
'96	20,000	19,301	19,252
'97	12,400	19,936	19,849
'98	15,100	19,563	19,396
'99	17,300	20,123	19,579
'00	30,550	20,650	20,476
'01	18,000	18,017	25,023
'02	15,000	15,911	23,764
'03	4,000	19,649	36,698
'04	2,100	26,424	60,652
'05	12,733	25,206	63,702
'06	48,288	24,964	67,664
'07	44,097	26,333	76,942
'08	41,260	26,721	83,843
'09	47,500	28,962	92,916

다. 평가 및 향후계획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용자 지원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어업인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농어촌출신 대학생의 학업 유지에 기여를 하고 있다. 학생들이 보다 편리하게 동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고객 만족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 청년 실업률 및 첫 취업에 소요되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거치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3. 여성·취약농가 인력 지원

(농촌사회과 사무관 장현아·전병순)

가. 추진배경 및 개요

1) 영유아 양육비 지원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의 보육여건과 양육부담에 따른 젊은 층의 출산 기피 및 탈농현상에 따른 과소화·고령화 추세에 대응하여 농업 농촌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04년부터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 영농·가사도우미 지원

농어촌 고령화로 인해 사고 및 질병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아지고, 다문화, 고령농 등 취약 농가가 증가 추세에 있다. 농촌 인구 과소화 등으로 인해 농가가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 즉각적인 노동력 보충이나 보호가 필요할 때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확보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곤란에 처한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 및 기초적인 가사생활 보장을 위해 '05년에 관련 용역 실시 후, '06년부터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영농·가사도우미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영유아 양육비 지원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취학 전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04년 시설이용 아동에 대한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을 필두로 '06년에는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시설 미이용(자가보육) 아동에 대해서도 양육비를 지원하는 등 그 범위를 확대해 왔다. '08년부터는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과 일손돕기 지원 사업을 통합·운영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의 요건 완화 및 지원 수준 향상을 통해 농어업인의 영유아 보육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표 2-7-5> 지원 대상 및 지원수준 변동 추이

구 분		'04	'05	'06	'07	'11
지원 대상 (농지소유요건)		1.5ha 미만	2.0ha 미만	5ha 미만	5ha 미만	5ha 미만
지원수준 (지원율)	시설이용	50%	50%	50%	70%	70%
	시설 미이용	-	-	25%	35%	45%

* 지원율은 정부보육료 지원 단가에 대한 지원 비율임

2) 영농·가사도우미 지원

영농도우미는 농어업인이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해 일시적으로 영농이 어려울 경우 영농을 대행할 수 있는 도우미를 최대 10일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영농도우미의 1일 인건비 52천 원의 70%를 국고로 지원하며, 30%는 자부담이다. '07년까지는 65세 이하, 3ha 미만 농지 소유자에 대해서만 지원하였으나, 농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08년에는 69세, 5ha 미만, '09년은 70세 이하, '10년은 75세 이하까지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지원 조건도 '08년은 14일 이상 입원 시 지원하였으나 '10년부터는 10일 이상 입원 시 지원함으로써 조건을 완화하였다. 2009년도에는 12천 농가에 47억 원을 투입하여 영농도우미를 지원하였다.

가사도우미는 고령 가구, 다문화, 장애인, 조손가구 등 취약농가의 기초 생활 보장을 위해 가사도우미를 최대 10일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가사도우미의 1일 활동비 10천 원의 70%를 국고 지원하며, 30%는 농협에서 부담한다. '06년에는 65세 단독가구에 대해서만 지원하였으나, '07년에는 65세 이상 고령가구를 포함하였고, '09년에는 다문화 가정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다. 2009년도에는 19천 농가에 13억 원을 투입하여 가사도우미를 지원하였다.

<표 2-7-6> 영농, 가사도우미 추진실적

(단위 : 천호, 백만 원)

연도	계		영농도우미		가사도우미	
	지원 농가수	지원금액	지원 농가수	지원금액	지원 농가수	지원금액
'08	28	5,792	13	4,732	16	1,060
'09	31	5,992	12	4,732	19	1,260

다. 평가 및 향후계획

1) 영유아 양육비 지원

농어촌의 보육여건을 개선하여 젊은 층의 농어촌 거주를 유도하고, 고령화·과소화 되어가는 농어촌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농어업인의 시설이용 및 시설 미 이용 아동에 대한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보건복지부의 양육비 지원 사업과 통합하여 지원 대상 및 지원비율의 확대를 추진하고, 농어업인의 실질적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지원수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 영농·가사도우미 지원

영농도우미 지원으로 영농이 중단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농업인의 영농의욕을 높여 줄 뿐만 아니라 소득을 보장해 주고 있다. 또한, 가사도우미 지원을 통해 농촌 취약농가의 기초생활 유지에 기여를 하고 있다.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지원일수 증가, 대상 요건 완화 등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며, 가사도우미 지원 대상을 경로당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4.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기본계획 수립·추진

(농촌정책과 사무관 김보람)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정부는 DDA/FTA 등 개방 확대에 대응하고 낙후된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04.3월 공포)하고,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범정부적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매 5년마다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농산어촌 복지실태조사('04.8월~11월)를 실시하고 지자체, 농민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수렴을 거쳐 '05.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

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제1차 기본계획은 ‘삶과 휴양, 산업이 조화된 복합 정주공간으로서의 농어촌 구현’을 목표로 교육·복지·지역개발·산업 등 4대 분야 133개 과제를 추진하였다.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였으며, 지자체 또한 시·도, 시·군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 결과 '05년부터 '09년까지 5년간 22.3조원을 투융자 하여, 당초계획 20.3조원 대비 109.9%를 달성했다.

'09년 제1차 기본계획이 완료됨에 따라 정부는 농림어업인 복지실태조사 결과('08), 1차 기본계획 평가결과, 농어촌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고, 관계부처 협의, 지자체·전문가·농어업인 워크숍 등 의견수렴을 통해 '09.12월 제2차 기본계획을 마련하였고,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였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2009년도는 제1차 기본계획의 마지막해로서 2009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였으며, '10년부터 시행될 제2차 기본계획이 11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수립되었다. 제1차 기본계획의 추진으로 많은 성과가 나타났지만 한계를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농어촌 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제2차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삶의 질 향상 대책 선진화를 위한 2대 제도로서 농어촌서비스기준과 농어촌영향관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였다.

1) 제1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성과 및 한계

제1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은 농어촌 문제에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계획으로 농어촌의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계기를 바탕으로 농어촌의 복지, 교육, 주거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나타내었다. 연금·건강보험료 지원 확대, 농어촌 기숙형고교 육성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교육기회를 확대하였다. 또한 상하수도, 주택, 도로 등 기초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주도의 개발 방향을 도입하여 지역 주민의 발전 역량을 강화하였다.

하지만, S/W 제공, 접근성 개선 등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복지·교육 서비스 전달이 미흡하였고, 생활단위별(마을-읍·면-중소도시) 특성을 반영한 개발이 미흡하였다. 또 2·3차 복합산업화가 진전되고 있으나 다양한 산업 유치를 바탕으로 한 고부가가치 확보도 미흡하였다.

<표 2-7-7> 제1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주요 추진 실적

	'04	'09
1인당 건강보험료 경감액/비율	210천 원/30%	404천 원/50%
보건소·보건지소 신증축	1,170개소	2,276개소
취약농가 인력지원 실시	영농 및 가사도우미제 실시	96천 명
우수교 육성	7개교	86개교
농산어촌 연중돌봄학교 육성지원	-	378개소
농공단지 육성	314개소	339개소
면단위 상수도 보급률	36.2%	59.8%
체험마을 육성	152개소	732개소

2)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 및 2대 선진제도 도입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은 “기초생활인프라와 복지기반이 갖추어지고, 다양한 산업이 발전하며, 누구나 찾고 싶고 살고 싶은 농어촌, 삶터·일터·쉼터가 조화된 행복한 농어촌 구현”을 비전으로 하여 보건·복지 증진,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문화·여가여건 향상, 농어촌 환경·경관 개선, 지역발전 역량 강화 등 7대 분야로 수립되었다.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5년간 총 34.5조원을 투융자할 계획이고, 이는 1차 계획기간의 투융자실적 22.3조원 대비 55% 증가한 수준이다. 또한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투융자규모를 크게 늘렸을 뿐 아니라, 삶의 질 향상 대책의 선진화를 위한 2대 제도로서 농어촌서비스기준과 농어촌영향관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였다.

농어촌서비스기준이란 농어촌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요구되는 공공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로서,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운용을 통해 농어촌지역과 도시간의 공공서비스 수준 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어촌서비스기준은 주거, 교통, 교육, 보건의료, 사회복지, 응급, 문화여가, 정보통신 등 8개 분야 31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10.7.23.에 공포하였고, '11.1.24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제·개정 중이다.

농어촌영향관리 가이드라인은 정부정책이 농어촌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는 제도이다. 인구의 분산거주, 불리한 접근성 등 농어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정책을 추진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농어촌에 불리한 차별적 영향을 사전에 점검하고, 보완조치 등을 통해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이다.

<표 2-7-8>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 및 항목별 목표치(안)

부문	항목	목표치
주거	거주가능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저주거기준 이상 주택(거주가구) 비율을 90% 이상으로 제고한다. * '최저주거기준 이상 주택'은 주택법상에 명시하고 있는 최저주거기준(건설교통부 공고 제2004-173호)을 만족하는 주택을 말한다.
	난 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읍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을 50% 수준으로 높이고,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난방비 저감정책을 우선 추진한다.
	공동시설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로당, 마을회관 등 마을공동시설의 유지관리 및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안전한 마실 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을 75% 이상으로 높인다. 지자체는 원수 수질검사와 먹는 물 수질기준에 따른 수질관리를 해야 한다.
	오폐수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수도 보급률을 71% 이상으로 높인다.
교통	대중교통 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보 15분 거리 내 버스 정류장에서 노선버스, 순환버스 등 대중 교통을 하루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다. 수요 부족으로 대중교통 운행이 어려운 지역은 수요대응형 준 공공교통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여객선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서지역의 경우 모든 본도에 1일 왕복 1회 이상의 여객선이 운행된다. 도서의 주민은 여객선 운임의 일부를 지원받는다.
	인도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읍·면 소재지에 접근하는 주요 농어촌 생활도로 정비시 차도와 구분된 인도를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교육	유치원/초·중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여건에 맞는 적정규모학교를 육성하고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한다.
	고등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군에 1개교 이상 우수 고등학교를 육성한다.
	폐교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교 시 학생들의 통학 및 폐교시설의 재활용 대안에 대해 공청회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 과목, 특기 적성 등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참여 비율을 70%이상으로 제고한다.
	교육발전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군에 지자체와 교육청, 주민 등으로 구성된 교육발전위원회를 설치한다.
	평생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읍·면별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 거점시설이 1개 이상 운영된다.
보건 의료	1차진료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군내에서 내과, 한방과, 물리치료실 등 중요과목 의사 진료가 가능하다.
	순회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별로 월 1회 이상 보건소 등의 전문인력의 순회 방문을 받는다.
	의약품구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로 20분 내에 일반의약품 구입이 가능하다.
사회 복지	노 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움이 필요한 노인은 주 1회 이상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로 30분 내에 청소년센터에 도달할 수 있다.
	아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로 20분 내에 초등학생들을 위한 아동센터 등 방과후 돌봄시설에 도달할 수 있다.

	영유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한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는 자동차로 20분 내에 소규모 영유아 보육 시설에 도달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로 30분 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시설에 접근할 수 있다. 교통불편으로 센터이용이 어려운 경우 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응급	응급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환자 발생 시 기본적인 응급 장비가 마련된 구급차가 30분 내에 도착하여 응급처치를 한다.
	도서·벽지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도·벽지에 헬기·선박을 이용한 환자 이송체계를 구축한다.
	소방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 발생 신고 접수 후 5분 내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는 비율을 55% 이상으로 높인다.
	도난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난방지 등을 위한 방법용 CCTV가 주요 간선도로 길목에 설치되어 있다.
	경찰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2 신고 시 출동시간을 10분 이내로 한다.
문화여가	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 내에서 도서 열람 및 대출이 가능하다.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로 30분 내에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에 도달할 수 있고, 월 1회 이상 문화 프로그램과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다.
	찾아가는 문화공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과 지역 자체 문화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연 2회 이상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다.
정보통신	초고속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어디에서나 초고속망 접속이 가능하고, IPTV시청이 가능한 광대역 통합망 구축률을 80% 이상으로 한다.

다. 평가 및 향후계획

지난 7월 23일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운용근거를 포함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되었다. '11년도 1월 24일 특별법 시행일에 맞춰 하위법령 제·개정 절차를 밟고 있으며,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차질 없이 입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하위법령은 농어촌서비스기준 31개 항목과 목표치, 운용방법, 농어촌 서비스기준 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농어촌영향관리가이드라인 운용도 '10년도 말까지 시범적용 및 보완을 거쳐 '11년도부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정책 수립 시 적용토록 할 예정이다.

5. 농지연금 시행 준비

(농지과 사무관 안종락)

1) 추진배경 및 개요

농촌의 고령화는 전국의 3배가 될 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농촌의 고령농업인은 국민연금기능의 미흡 등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기가 어렵다. 이에 따라 고령농가의 경제적 충격완화 및 노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지연금이 도입되었다

- * 농촌고령인구 비중 : ('90) 11.6 → ('09) 34.2%, 전국 고령화율 : 10.6%
- * 65세 이상 농가 594천 가구 중 연금 미 수급농가 : 45.7%(272천 농가)

2) 추진내용 및 성과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농업분야 보완대책으로 농촌형역모기지 제도를 도입하기로 2007년도에 결정되었다. 2008년 10월에는 농촌형역모기지론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2008년 12.29일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개정하여 농지연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을 2009년 6.26일에, 시행규칙을 2009년 6.29일에 개정하여, 2009년 6.30일부터 법·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되었다.

농지연금은 일정한 소득이 없는 고령농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2011년도부터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으로 5년 이상 농업경력이 있는 농업인이 소유한 30,000㎡ 이하 농지가 가입 대상이다.

3) 평가 및 향후계획

2010년도에는 농지연금 상품모형 설계 및 운영시스템 구축을 위한 외부용역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연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고, 사업 초기 임을 감안하여 고령농업인과 자녀에 대한 홍보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6. 귀농·귀촌 종합대책 추진

(경영조직과 사무관 김희중)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정부는 국내 경제위기 탈출구를 제시하고 농촌에 새로운 인력 영입 등 경제, 사회적으로 다양한 기대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귀농·귀촌 종합대책」을 지난 4월 발표하고 총 19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그간의 귀농사례에서 나타난 경험을 바탕으로 귀농인 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성공적으로 농업과 농촌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귀농교육에서 창업자금까지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금번 「귀농·귀촌 종합대책」을 통하여 조기퇴직, 은퇴 등 새로운 직업을 찾는 도시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농식품산업 차원에서는 타 산업 경험 인력의 유입으로 농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농촌지역 관점에서 주민확보는 물론 문화, 관광·서비스 분야의 활력 증진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자 한다.

정부 대책 안은 무엇보다 귀농·귀촌 희망자의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귀농 정보 알선, 상담, 창업컨설팅 등 귀농자가 사전에 면밀한 준비와 신중한 결정을 도우면서 자립적인 귀농자의 창업, 정착 계획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귀농·귀촌종합센터 기능 강화

먼저 농협에 귀농·귀촌 종합센터 및 전용상담전화(1577-9597)를 설치하여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귀농준비부터 정착까지 상근인력을 배치하여 전문가 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정책, 지원 사업, 교육 등 각종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도록 귀농·귀촌 통합정보 시스템(www.returnfarm.com)을 구축하였다.

2) 온·오프라인 귀농·귀촌 교육운영 내실화

귀농자가 귀농을 구상하는 단계에 있어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귀농가정이 경험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실용적인 귀농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결이네 귀농일기, 창업농업 길라잡이 등 온라인 교육과 천안연암대(채소), 한국농수산대(버섯), 여주농전(과

수) 등 실습전문 합숙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귀농인 및 귀농희망자들 대상으로 실습교육 714명, 현장체험교육 2,513명을 실시하였다.

3) 예비귀농인의 기술연수 및 일자리 지원

귀농교육 이수자, 농업학교 출신, 제대 후 구직자 등 농업창업에 희망하는 자를 신지식농업인, 전업농 등 선도농가에 인턴으로 채용하여 농업현장에서 재배기술, 경영능력을 함양함으로써 젊고 우수한 인력의 귀농을 촉진해나가면서 성공적인 농촌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4) 주거마련 지원

가족단위의 귀농의 제일 큰 애로사항인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시군별로 귀농인의 집을 마련, 귀농희망자가 일시 거주하면서 영농기술을 습득, 주택과 농지 등을 준비하도록 귀농인의 집을 개소당 3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정착을 위해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는 구입자금을 2천만 원 이내에서 융자하고 수리비는 5백만 원까지 보조하고 있다.

5) 창업자금 융자 및 컨설팅·멘토링 지원

귀농자들이 현장 창업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이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농지, 축사 구입 등 창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귀농컨설팅·멘토링을 지원하고 사업계획 검토 후 영농정착자금을 1인당 1천만 원에서 2억 원까지 3% 금리로 융자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담보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귀농인의 채무를 보증하여 원활한 자금 지원을 위해 90%까지 농신보에서 보증하고 있다.

다. 평가 및 향후계획

귀농정책이 정부지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귀농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산되는 데 기여를 하고 있다. 2009년의 귀농·귀촌종합센터 구축, 상담전화 설치 등 귀농·귀촌 추진체계의 구축과 귀농지원 정책은 타 산업분야의 경영마인드를 보유한 우수 인력의 유입으로 지역 농산업 활성화 및 농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농식품부는 금년도 시책에 대한 적극적인 평가를 통해서 실질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해 나가며 지원 대상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각 시도에 귀농·귀촌 담당자를 지정하여 귀농자에 대한 지역별 상담 창구를 개설하는 등 귀농희망자에 대한 서비스에 만전을 기해 나갈 방침이다.

제2절

농업·농촌 생활 인프라 확충

1.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지역개발과 사무관 이수열)

가. 추진배경 및 개요

2000년대 들어 소득증가, 주5일근무제 시행 등 여건변화로 농촌을 단순 식량생산공간이 아닌 전원주거·휴양·전통문화 등 기능을 갖춘 쾌적하고 농촌다움을 지닌 미래형 복합 생활공간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아울러, 새로운 농촌개발수요에 대응하여 농촌어메니티 자원과 지역개발을 연계시켜 농촌다움을 유지하면서 농가 소득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종합개발사업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지방화·분권화시대에 맞게 주민·지자체가 스스로 지역발전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강화차원에서 실천을 통한 학습형 지역개발 추진방식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 따라 2004년부터 상향식의 주민참여형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동일한 생활권·영농권 등으로 동질성을 가지며, 발전 잠재력이 있는 수개의 마을을 소(小) 권역으로 설정하고 지역특성에 맞게 ‘권역발전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초생활환경정비, 경관개선, 소득기반시설확충, 지역역량강화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사업대상지 선정 시 부터 지역주민이 스스로 해당 지역의 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참여하고, 지역주민, 공무원, 지역 내 전문가 등이 파트너십(Partnership)을 형성하여 지역발전을 주도함으로써 소 권역별 잠재자원을 발굴·활용하여 지역특성에 맞도록 다양한 유형의 농촌공간을 정비하고자 한다. 지원 금액은 권역당 3~5년간 40~70억 원(국고 70%, 지방비 30%) 범위 내에서 행정리 수, 가구 수 등 권역의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다. 또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시 단계별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고 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2009년까지 총 5,821억 원(국고 4,541, 지방비 1,280)을 투입하여 176개 권역에 대하여는 사업을 추진하고, 45개 권역은 2010년도 사업 착수를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표 2-7-9>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

(단위 : 권역, 억 원)

구 분		합 계	2007년 까지	2008년	2009년
사업비 계		5,821	2,310	1,639	1,872
기본계획수립	사업량	221	136	40	45
	사업비	324	196	60	68
사업시행	사업량	176	96	136	176
	사업비	5,497	2,114	1,579	1,804

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별로 잠재자원을 발굴하여 다양하고 특색 있는 지역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가 민간전문가 또는 민간기관과 컨소시엄 및 위탁방식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권역개발 및 사업추진 방향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해 지역주민의 참여하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 권역별로 현장에서 자문회를 개최하였으며,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농촌마을개발 발전방향을 재정립하고, 사업 활성화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전문가 토론회, 사업 참여자 워크숍 등을 실시하여 사업의 발전방안을 토론하여 계획에 반영하였다.

2009년도는 2007년도에 착수한 20개 권역에 대하여 1단계(1~3년차) 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하였다.

다. 평가 및 향후계획

중간평가 결과 상향식 사업을 통해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열정적인 마을리더 등장과 쇠퇴하였던 지역공동체가 부활하고, 새로운 스타권역 등장과 소규모 상향식 사업 추진 경험을 인근 마을로 확산하는 분위기 조성파 지역을 아름답게 가꾸어 방문객 및 인구

증가로 권역이 활성화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주민 참여형 상향식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이해부족과 경험부족 등으로 성과가 미흡한 지역도 다수 있어 사업 참여 주체의 지속적인 역량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1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권역을 대상으로 중간평가를 통하여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함으로써 지역 간 경쟁력을 유도하여 사업시행주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며, 2010년도에는 처음 착수한 36개 권역이 2009년에 준공됨에 따라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성과를 분석하고 준공 후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마을운영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2010년부터는 지역발전위원회의 광역화, 특성화, 자율화를 기조로 한 신지역발전 정책에 따라 204개의 지역개발사업을 22개 사업으로 통합하여 예산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포괄보조금 제도가 도입될 계획이다. 따라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도 농어촌지역의 생활기반 확충을 위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포함되어 각 시·군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수립한 포괄보조사업 계획에 따라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지역개발과 서기관 김동권)

가. 추진배경 및 개요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도시화·산업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도로, 상하수도 등 기본적인 기반시설 및 마을·복지회관 등 문화복지시설을 정비·확충하여 농촌주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도시지역과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1990년부터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오지종합개발사업으로 나뉘어 추진해오다 2008년 관련법령을 정비하고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통합하여 추진하고 있다.

1) 정주면 개발

농어촌지역의 기초생활환경, 문화·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하여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타 분야 지역개발사업과의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국 1,205개 면지역 중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361개 오지면,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한 도서개발면 53개면 및 무인/무면사무소면 10개면을 제외한 781개면과 광역시 15개 준농어촌 자치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사업추진기간 및 지원액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9년간 23,910억 원을 투자하여 796개면(15개 준농어촌 자치구 포함)에 면당 3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 오지면 개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종합개발을 통하여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행정자치부에서 1990년부터 오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추진하여 왔으며, 제1차 10개년계획(1990년~1999년), 제2차 5개년 계획(2000년~2004년)을 거쳐 낙후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정주여건을 개선하였다. 2005년부터 361개 오지면을 대상으로 제3차 오지종합개발 5개년(2005~2009)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3) 정주면과 오지면 개발사업의 통합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으로 각 부처 간 유사·중복사업의 통폐합 및 구조개편 방안을 검토한 결과,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동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결론지었으며, 2006년도 8월 관계장관의 업무이관에 합의함에 따라 2007년부터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동 사업을 추진하면서 2008년 3월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통하여 「오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고 오지종합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농어촌정비법에 반영하여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정주면 개발)과 유사한 오지종합개발사업(오지면 개발)을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통합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농어촌지역의 기초생활환경, 문화·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하여 농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타 분야 지역개발사업과의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국의 농어촌 1,142개 면지역과 광역시내 15개 준농어촌 자치구를 대상으로 연차별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동 사업은 크게 마을 내·마을간 도로, 상·하수도시설, 교량, 주차장 등 생활기반시설

을 정비·확충하는 마을기반정비 부문, 세천 정비, 수변공원화, 소공원, 담장정비(식생담 조성 등), 빈집의 철거·정비 등 경관개선부문, 복지회관, 마을회관, 체육공원조성 등 문화·복지부문에 나누어 시행하고 있다.

2009년도에는 550개면지역에 3,149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마을내 도로 434km, 상수도시설 16개소, 하수도시설 85개소, 마을간 도로 267km, 교량 57개소, 승차장 3개소, 공동주차장 19개소, 마을·복지회관 등 95동, 공동이용시설 49개소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면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를 증진시켰다.

아울러, 사업성과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부여하여 지자체의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사업추진에 따른 효과를 제고하도록 사업의 평가·환류 시스템을 도입 시행하였다.

<표 2-7-10> 생활환경정비사업 추진실적

(단위 : 억 원)

구 분	단위	'90~'04	'05-'07	2008	2009	
투자 사업비	억 원	40,436	8,777	3,132	3,149	
주요시설	마을내 도로	km	3,421	820	1,014	434
	마을간 도로	km	10,171	981	438	267
	상수도	개소	467	78	20	16
	하수도	개소	1,205	162	118	85
	복지회관 등	동	2,781	250	190	95
	저온창고 등 소득시설	개소	576	182	140	49

다. 평가 및 향후계획

2009년까지는 농촌주민의 기초생활여건을 중소도시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전국 1,157개 면지역을 대상으로 국가기본수요 차원의 기초생활환경정비를 위주로 지원하였으나, 2010년부터는 현행 면 단위 균등지원방식을 일반농산어촌개발(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20개 시·군 단위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전환하여 시·군단위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계획수립 및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2010년도에는 408개 면지역에 2,359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마을 내 도로 569km, 상수도시설 9개소, 하수도시설 72개소, 마을간 도로 130km, 교량 45개소, 승차장 5개소, 공동주차장 34개소, 마을·복지회관 등 113동, 공동이용시설 31개소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면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를 증진해 나갈 계획이다.

3. 전원마을 조성사업

(지역개발과 서기관 김동권)

가. 추진배경 및 개요

1990년 이후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농촌의 정주여건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함에 따라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농촌인구는 1990년 25.6%에서 2000년에는 20%, 2005년에는 18.5%로 감소하였다. 2005년도의 농촌지역의 노령인구 비율은 도시지역의 7.2%를 크게 상회하는 18.7%를 나타내고 있으며, 86개 군 중에서 57개 군은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로 분류되고 있다. 이러한 농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농촌은 심각한 인구감소 및 고령화 추세로 지역사회 유지가 어려워진 한편, 농촌의 생태적·환경적 가치에 대한 관심 및 삶의 질 중시경향이 대두되면서 도시민의 농촌이주 수요가 증가되고 있어 농촌의 도시인구 유입수요를 연결하여 농촌인구를 증가시킬 시책이 필요하였고 이에 따라 귀농·귀촌 인구의 농촌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전원마을조성사업은 농촌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의 농촌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농촌지역사회 유지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3년까지 총 300지구를 조성하여 8,400세대를 유치 할 계획이다.

<표 2-7-11> 도시민의 연도별 귀농현황

(단위: 세대)

구 분	2001년	2003년	2005년	2007년	2009년
귀농세대 수	880	885	1,302	2,384	4,080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통계자료

나. 추진내용 및 성과

전원마을조성사업은 20호 이상의 가구가 농촌지역에 전원마을을 조성하고자 할 경우에 도로, 상하수도, 오폐수처리시설 등 마을기반시설을 정부가 보조 지원하는 사업으로, 마을의 규모에 따라 10~30억 원(국고 70%, 지방비 30%)을 보조지원하고 있으며, 대상지역은 인구밀집지역인 수도권과 광역시 지역을 제외한 면지역으로 하고 있다.

2009년도에는 국고 212억 원의 예산으로 농촌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농촌인구 유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전원마을계속사업 50지구와 신규착수 14지구를 포함한 64지구의 전원마을조성사업을 추진하였다.

1) 사업의 내실화 강화

사업의 내실을 강화하기 위하여 입주예정자들이 사업을 제안할 경우에는 전원마을조성 추진위원회 구성을 의무화 하고 종전에 20가구이상 49호 이하까지 추진 할 수 있던 것을 2009년 신규사업지구 부터 주택을 일괄건축하고 주택건축 관리, 시공회상의 사업이행 보험가입 등 사업의 안정성 담보계획을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50호 이상도 가능하도록 하고 마을기반조성과 주택건축이 연계되도록 하기 위해 입주자가 계획가구수의 2/3이상 확보된 이후에 마을조성공사를 착공하도록 하였다.

2) 제도개선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하여 전원마을조성사업시행자를 시장·군수에서 마을정비조합 등 민간에까지 확대하고 사업시행계획 승인권한을 시·도에서 시장·군수로 이양하여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구역 내 토지수용시기를 앞당겨 시행하도록 하였다.

<표 2-7-12> 전원마을조성사업 연차별 추진실적

(단위: 백만 원, 개소)

연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투자 사업비	1,682	27,710	26,000	23,063	10,272	21,177
조성마을 수	2(2)	22(24)	24(48)	11(59)	32(91)	14(105)

* (괄호) : 누계

다. 평가 및 향후계획

전원마을조성사업은 2013년까지 300개소 조성을 목표로 하여, 2004년부터 2009년까지 1,082억 원을 투자하여 전국에 105개소의 전원마을조성을 지원하였으며, 2010년에는 전원마을계속사업 42지구와 신규착수 17지구를 포함한 59지구에 223억 원을 투자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으로 농촌에서 전원생활을 원하는 도시민 등을 적극 유인하여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토록 할 계획이다.

1) 모니터링 추진

2010년부터 교수 등 민간전문가에 의한 사업추진상황 모니터링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한 지구는 사업을 취소하는 등 사업추진을 독려하여 전원마을조성사업 효과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2) 총괄계획가 제도 운영

시·군의 생활환경정비계획 수립 또는 농어촌마을정비계획 수립 전 과정을 총괄 진행·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총괄계획가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운영 등에 관한 세부업무, 자격, 임명,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할 계획이다.

4.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

(지역개발과 사무관 이수열)

가. 추진배경 및 개요

면단위 농어촌의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은 우물·계곡수 등 자연수에 의존하여 생활용수를 해결 의존하고 있으나, 우물·계곡수 등은 가뭄시 쉽게 건천화되고, 생활오수·축산폐수·기타 오염물질 유입으로 수질이 악화되어 양질의 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면단위 농어촌지역 자연마을에 암반지하수를 개발하고 정수시설, 송·배수관, 물탱크 등 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생활용수를 공급하면서 가뭄시 농업용수까지 공급하는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을 1994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2004년까지 50호 이상의 자연마을을 중심으로 제1단계(1994~2004)사업으로 4,751개소를 추진한 바 있으며, 2005년부터는 1단계 사업에서 소외된 20호 이상의 소규모 자연마을을 중심으로 2012년까지 2,309개소를 추가로 개발하는 제2단계(2005~2012) 사업계획을 수립·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농촌지역 자연마을 총 7,060개소의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는 367억 원(국고 294, 지방비 73)을 지원하여 219개소를 개발함으로써, 2009년까지 6,061개소를 완공, 388천 가구, 1,173천 명에게 생활, 농업용수 등 다목적 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또한, 농업용수 24,300ha에 공급할 예비 수자원을 확보하여 가뭄시 한해 대책용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표 2-7-13> 상수도 보급현황

(단위 : 천 명, %)

구 분		총대상인구	급수인구	보급률	
전 국		50,394	46,733	72.7	
도시	특광역시	22,825	22,762	99.7	99.1
	시지역	18,013	17,702	98.3	
농촌	읍지역	4,245	3,738	88.1	65.6
	면지역	5,311	2,531	47.7	

자료 : 환경부, 상수도통계연보, 2008년

다. 평가 및 향후계획

2010년부터는 지역발전위원회의 광역화, 특성화, 자율화를 기조로 한 신지역발전정책에 따라 204개의 지역개발사업을 22개 사업으로 통합하여 예산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포괄보조금 제도가 도입될 계획이다. 따라서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도 농어촌지역의 생활기반 확충을 위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포함되어 각 시·군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수립한 포괄보조사업 계획에 따라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5. 농어촌 뉴타운 조성

(지역개발과 서기관 김동권)

가. 추진배경 및 개요

현재 우리 농어촌 산업은 승계농의 비율이 낮은 상태에서 고령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젊은이들의 전입이 없으면 농가의 다음 세대가 사라져 농업 중심의 농어촌사회가 해체될 우려가 있어, 신규 인력 유입을 위해 창업후계농 육성을 추진 중이다. 지역연고와 경영기반이 취약하여 정착에 애로를 겪고 있고 또한, 농어촌 지역의 생활환경, 주거환경, 교육·의료 등 문화, 복지여건이 도시에 비해 열악하고, 농어촌 이주 의향이 있는 자는 많으나 생활여건·친교 등을 우려하여 실제 귀농으로 이어지지 않아 도시거주 젊은 인력의 농어촌 유치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8년 연두업무계획 보고 시 농어업 인력 확보대책 일환으로 도시의 젊은 인력 등을 농어촌에 유치하여 지역 농산업의 핵심 주체로 양성할 수 있도록 주거·자녀교육·맞춤형 영농기술 및 자금지원 등을 종합 지원하는 농어촌뉴타운 조성방안을 대통령께 보고하고, 새정부 국정과제 및 농정 5대 미래전략 과제에 포함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8년부터 실무 작업단 구성, 내부 토론회, 지자체·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시·군 수요조사 등을 거쳐 사업추진 기본방침을 수립하여 시범사업 5개소를 추진키로 하고, 2008년 10월에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을 공모한 결과 14개 시·군에서 시범사업을 신청하여, 현지실사 및 전문가 평가를 거쳐 2009년 1월에 시범사업 대상지 5개소를 선정하였다.

농어촌뉴타운 시범사업은 2009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0년에 세부설계 및 공사를 착공하여 2012년에 준공·입주를 목표로 추진 할 계획이며,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기숙형 고교가 있어 교육여건이 우수하고, 의료·문화·복지 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선정하여, 개소당 100~200세대 규모의 전원형 단독주택 또는 복층형 타운하우스 주택 형태로, 분양 또는 임대로 제공할 계획이다. 입주자격은 일정수준 이상의 경영규모를 갖추었거나 경영승계 등을 통해 갖출 것이 예상되는 25세 이상에서 55세 이하의 귀농인 등이다.

<표 2-7-14> 농어촌뉴타운조성 시범사업 대상지 및 사업규모

(단위: 세대)

구분	계	충북 단양	전북 장수	전북 고창	전남 장성	전남 화순
사업규모	700	100	100	100	200	200

나. 추진내용 및 성과

농어촌뉴타운조성사업의 단지 입지는 지역 내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시·군이 자율적으로 선정하고, 사업계획에 의하여 부지조성, 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 공원·녹지, 커뮤니티시설, 주차장 등 마을기반조성 시설 및 주택건설에 대해 보조 및 융자금을 지원한다. 2009년에는 농어촌뉴타운 입주 및 주택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군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입주자 모집·선정 및 주택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하였으며, 2,085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5개 지구 700세대의 기본계획 및 세부설계를 완료하였다.

<표 2-7-15>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 예산 지원율

(단위: %)

구분	계	보조		국고융자
		국비	지방비	
마을기반시설	100	70	30	-
임대주택	100	40	-	60
분양주택	100	-	-	100

* 표준사업비 한도내 지원

다. 평가 및 향후계획

농어촌뉴타운조성사업은 도시에서 농어촌으로 인구가 유입되면서 도시 과밀화 및 실업 등의 문제를 완화하는 기능을 발휘하고, 본 사업 추진을 통하여 농어촌뉴타운 53개소 조성 시 약 6,300세대의 20천 명이 도시에서 농어촌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생산위주의 고령·영세 농어업인 중심 인력구조에서 2·3차 산업 융복합화를 이룰 수 있는 젊은 농업경영주로의 세대교체가 가능해진다.

향후, 농어촌뉴타운조성 시범사업이 계획대로 원활히 진행되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및 사업 홍보를 강화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성공모델을 창출한 후 지역 수요 등을 고려하여 본 사업 추진여부를 검토 할 예정이다.

6.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지원

(지역개발과 사무관 김학조)

가. 추진배경 및 개요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1976년부터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낡고 불량인 주택의 개량을 촉진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낙후된 주거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2007년부터 농촌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부처 간 업무조정예 의해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되어 추진되고 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주거복지 실현 및 농어촌의 정주의욕을 고취하고,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지원을 통해 도시민 유치 촉진 및 농어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농어촌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2009년에는 총 7,000동(사업비 2,800억 원)의 농어촌주택에 대해 개량자금을 융자·지원하였다. 농어촌 주택개량자금은 전원마을조성 등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지역에서 주택 개량시 지원되는 농촌주택정비자금과 그 외의 지역에서 주택을 개량할 시 지원되는 농어촌주거환경개선자금으로 구분하여 공급하였다.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은 공급하는 자금의 종류에 관계없이 농어촌의 노후·불량 주택을 신축하거나 개축할 경우에는 세대당 4,000만 원 이내, 부분적으로 개량하는 경우에는 세대당 2,000만 원 이내의 자금을 5년 거치 15년 상환 연리 3%의 조건으로 융자하였다.

<표 2-7-16> 주택개량사업 지원 실적

(단위: 세대, %, 백만 원)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지원물량	5,600	6,000	7,000
세대당 융자한도액	40	40	40
융자재원	224,000	240,000	280,000

또한 농어촌 지역에서 주택을 신축할 때 설계비용을 절감하고, 건축기간 단축 등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 12종(24유형)을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는 농어촌이 가지고 있는 여러 요인을 분석하여 농어촌의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다. 평가 및 향후계획

2010년에는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융자한도액 및 지원물량을 확대하여 총 8,000동(사업비 4,000억 원)의 자금을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세대당 융자 한도를 확대하여 농어촌의 노후 또는 불량주택을 신축하거나 개축할 경우에는 세대당 5,000만 원 이내, 부분적으로 개량 또는 증축 시에는 세대당 2,500만 원 이내의 자금을 5년 거치 15년 상환 연리 3% 조건으로 융자할 계획이며, 향후 농어촌 주택개량 지원 물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농어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친환경 녹색성장을 지향하고 쾌적한 환경의 경제적인 주거문화 정착 및 농어촌 미래주택의 표준을 제시하기 위해 농어촌 저에너지 친환경주택 표준설계도 10종을 추가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7. 농업·농촌 정보화 기반 확충

(정보화담당관실 사무관 서봉열·박태철)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정보통신의 급속한 발달과 더불어 농어촌지역 정보이용환경 개선 등을 통해 농업·

농어촌 정보화 추진 상의 애로사항으로 작용하였던 인터넷망의 접근 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되었다. 앞으로는 초고속망의 접근 문제보다는 인터넷에 접속하여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가로 관심이 이동되고 있어 이와 같은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도·농간 정보 격차로 인해 농어업·농어촌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정보화 교육 및 다양한 정보 제공 등으로 정보화 능력을 갖춘 농어업인을 육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농어업·농어촌 정보화사업은 집합교육, 방문교육 및 온라인 교육 등으로 정보화 능력을 갖춰 정보화를 통한 소득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농수산물 가격, 시황·전망 정보, 해외 농어업관련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농어업인 스스로 다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농어업 관련 사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농어업인이 참여할 수 있는 지원 사업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1) 농업인 정보화 교육 추진

도시 소비자 또는 타 산업종사자보다 상대적으로 정보이용수단이 열악한 농업인에게 정보 활용기회를 제공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지식과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디지털 농업인 육성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98년부터 '09년까지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읍·면 지역농협, 농업계 대학 등 농업관련 기관을 통해 총 66만 명의 농업인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다.

'09년도에는 농업계대학 및 정보화선도자에 의존한 단발적인 농가 방문교육은 축소하고, 경영효율화와 소득창출로 연결되는 영농중심의 교육을 강화하였다. 정보화에 무관심한 농업인에 대해 인터넷뱅킹, 온라인쇼핑, 휴대폰·디지털카메라 사용법, 전자 민원서비스 등 정보화시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생활 밀착형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인터넷 활용능력이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밀착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소득창출과 연계되는 전문교육과정을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아울러 일손부족 등으로 집합교육 참여가 어렵거나 심화반복학습이 필요한 농업인을 위한 온라인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IPTV를 이용한 교육을 개발·시범운영하였고, 온라인 교육 전담제(e-Tutor)와 헬프데스크, 원격지원 시스템을 운영하였다. 또한, 피교육자의 수준별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농업인 정보화역량진단시스템을 개발·도입하여 피교육자의 교육 전후 정보화수준을 스스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9년까지의 농업인 정보화교육 실적은 다음과 같다.

<표 2-7-17> 정보화교육 실적(1998~2009)

(단위 : 명)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온라인 교육	5,882	6,842	7,814	7,859	7,761
기초교육(컴퓨터·인터넷활용)	7,144	7,047	5,289	6,901	3,210
중급교육(농업정보활용)	6,607	4,008	4,019	-	-
경영·회계 S/W	1,766	2,139	2,591	2,795	2,504
품목·분야별 전문교육	1,056	359	604	751	1,024
농업정보 119대학	12,074	10,044	10,044	10,836	2,537
이동버스 정보화교육	570	512	542	255	-
정보화선도자	23,943	29,858	32,608	35,068	34,563
총 계	59,042	60,809	63,511	64,465	51,599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정보화담당관실

2) 농업인과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콘텐츠 확충

'99년부터 농업·농촌 정보화 촉진 및 도·농간 정보격차해소 등을 위해 농림수산정보망(옥답, www.okdab.com)을 구축·운영해 오고 있다. 전국 농수산물 가격유통정보, 시황·전망정보, 뉴스, 검색 등을 농업인의 눈높이에 맞게 제공하여 농업경영 효율화 및 생산성 제고에 기여하고 도·농간 정보교류를 촉진하였다.

옥답은 '99년 구축된 이래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09년 말 현재 회원수 269천 명, 일평균 방문자수 18천여 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72개 유관기관의 one-stop 통합 검색을 제공하며, 농업인 상호간의 정보교류 및 도농교류를 위한 244여개의 동호회가 운영되고 있다.

옥답은 농업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네티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농업·농촌 대표 웹사이트(웹 분석사이트 랭키닷컴, www.rankey.com, 농학분야 1위, 2009년 말 기준)로 인정받음으로써 우리 농어업·농어촌 대표 웹사이트로 자리매김하였고, 초등학교 교과서(5학년 2학기 사회과 탐구, 68쪽)에도 농업정보 제공 웹사이트 우수사례로 소개되고 있다.

<표 2-7-18> 농림수산정보망 현황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회원수	196,198	218,323	239,726	257,646	269,113
연계기관 수	-	-	51	65	72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정보화담당관실

3) 농수산사업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농수산사업정보시스템(AgriX)은 농림사업의 신청·집행·사후관리를 온라인에서 처리하여 업무 효율화 및 자금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다. 2009년까지 5차에 걸쳐 50여개의 농수산사업에 대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에 있다.

2009년에는 맞춤형 농정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업경영체관리시스템을 비롯한 식량·농촌관련분야 12개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사업신청 농업인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해킹차단 솔루션 및 DB암호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국토해양부의 지적정보, 행정안전부의 주민정보, 농촌공사의 농지정보를 연계하여 관련정보의 공동 활용에 따른 공무원의 행정업무 편의성을 제고시키는 한편, 모바일기기(휴대폰, PDA 등)를 통해 정책정보 및 쇠고기 이력, 반려동물 관리정보 등을 서비스하여 민원업무의 편의성을 제고하였고, 농가기본DB를 활용하여 과거 자금집행실적, 교육이력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등 농가유형별 맞춤형농정 추진을 위한 시스템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을 행정안전부로부터 이관·구축하여 시스템을 통한 중복 및 자격검증을 통해 보조금의 부당신청·부당수령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 결과 쌀직불사업에서만 124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달성하였다.

다. 평가 및 향후계획

앞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농식품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제·경영·사회·문화 관련 지식정보서비스를 실시하고, 가격분석 서비스 등 정보수요가 높은 콘텐츠를 확충하여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해 나갈 것이다.

또한, 농업인의 학습여건을 개선하고 농가경영을 지원할 수 있는 온라인과정을 개발

하여, 영농에 정보화기술을 활용하는 농어업인 확산을 위한 정보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농수산사업정보시스템(AgriX)은 향후 농가기본 DB를 활용하여 과거 자금집행실적, 교육이력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등 농가유형별 맞춤형 농정 추진 및 소득안정계정 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제8장

농촌 활력 증진 및 농업생산기반 조성



1. 농촌 활력 증진사업

(지역개발과 사무관 이동홍)

가. 추진배경 및 개요

농촌 지역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부정책 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업 상호간에 연계성이 부족하고 지역단위의 혁신역량 및 자율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 접근도 미흡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여건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던 낙후지역 신활력지역지원 사업을 관계부처 협의(2006.8)를 거쳐 농림부로 이관(2007.1)하였고, 2009년도부터는 개별 사업으로 추진하던 신활력지원 사업, 향토산업육성사업, 특화품목육성사업 등을 “농촌활력증진사업”(균특회계 지역개발사업계정)으로 통합·체계화하여 시·군 단위 「농촌활력증진계획」(2008~2010)을 수립한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농촌활력증진사업의 평가·모니터링·컨설팅 및 성과관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내에 「농촌활력사업본부」를 발족(2008.1)하는 등 사업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재원·인력 등 지역의 자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 지향적인 사업추진 체계를 구축하였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농촌활력증진사업은 지역단위의 혁신역량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는 성과실현에 중점을 둔 목표관리 방식의 사업추진체계로서 지역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재양성,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선도산업 마케팅, H/W 보완투자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정책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모니터링, 컨설팅 기능은 강화하는 반면, 시·군단위의 자율성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농촌지역의 향토·특화자원 개발, 지역문화·관광자원 개발 등 1·2·3차 산업 간의 융·복합을 통해 농촌지역에 경제

적 활력을 불어넣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2009년도에는 관련예산(국고) 3,291억 원(신활력지원사업 1,882억 원, 향토산업육성사업⁸⁾ 136억 원, 특화품목육성사업 1,273억 원)을 142개 시·군에 대하여 지원하였다. 시·군 단위 「농촌활력증진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해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였고, 실제 사업 추진시에도 사업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로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조사·분석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사업추진에 대한 동기부여 및 역량강화를 위해 2008년도 사업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시·군에 대하여 인센티브 202억 원을 지원하였고, 지역단위에서 생산된 제품의 공동홍보 및 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2009년 6월에는 고양시 킨텍스에서 제1회 농어촌산업박람회를 개최하였다.

<표 2-8-1> 농촌활력증진사업비 지원 현황

(단위: 억 원)

연 도	2008	2009
○ 농촌활력증진사업(국고)	(3,474)	3,291
- 신활력지원 사업	1,882	(1,882)
- 향토산업육성사업	90	(136)
- 특화품목육성사업	1,502	(1,273)

* 향토산업육성사업비 중 균특회계 지역혁신사업계정에 편성된 예산 제외

다. 평가 및 향후계획

그동안 농축산물의 1차 생산에서 얻어지는 소득이 농촌 지역의 주요 소득원이 되어 왔으나, 농촌활력증진사업의 추진을 계기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농촌지역에 부존되어 있는 다양한 부존자원을 발굴하여 1·2·3차 산업을 연계·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졌고,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는 지역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전반적으로 사업 간의 상호 연계성이 부족하고 지역단위의 사업추진 역량도 미흡한 수준이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지역단위의 사업추진 역량을 제고하고 사업 간의 효율적인 연계 추진 등을 도모하기 위해 2010년도부터는 종전의 균특회계를 광특회계로 개편하여 종전의 농촌활력증진사업 중 “신활력지원사업”은 광특회계 지역개발계정의 포

8) 2007~2008년도 선정지구에 대한 마무리 지원 사업비, 2009년도 신규선정지구부터는 균특회계 지역혁신사업계정의 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 150억 원 별도로 반영

관보조사사업군 중 “일반농산어촌기초생활권종합개발사업”으로 통·폐합하고, “향토산업육성사업”과 “특화품목육성사업”은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으로 통·폐합하여 사업추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하였다.

이와 같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추진하는 포괄보조금 제도의 도입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포괄보조사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계획체계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 2010년도중 시·군 단위 「포괄보조사사업 5개년 계획」(2010~2014)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단위 포괄보조사사업군내 다양한 사업을 하나의 통합계획으로 수립하여 예산편성·집행, 모니터링 및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2. 농공단지 조성사업

(지역개발과 서기관 이낙휘)

가. 추진배경 및 개요

농공단지조성 지원제도는 탈농인구의 재촌 흡수, 농어촌지역의 농외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1983년 「농어촌 소득원 개발촉진법」 제정을 통해 도입되었으며, 1984년에 7개 시범단지 조성 이후 본격적으로 조성사업이 시행되었다.

농공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의 하나로서 지정·개발·관리 등의 권한은 시장·군수에게 있고, 지정 승인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다. 중앙정부의 지원시책은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및 환경부 등으로 다원화 되어 있으며,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촌지역의 지역별 구분 및 농공단지 조성 지원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표 2-8-2> 부처별 지원 현황

부처명	지원내용	관련법
지식경제부	농공단지 시책 총괄, 관리 및 입주기업 지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의 지역별 구분, 농공단지 조성 지원	농어촌정비법
국토해양부	농공단지 지정 및 입지기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환경부	환경기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 지원	환경정책기본법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정대상 농어촌지역을 낙후도(재정자립도, 산업집적도, 산업단지 면적 등)를 감안하여 일반농어촌, 추가지원농어촌, 우선지원농어촌 등 3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업종의 특화여부에 따라 농공단지 유형을 일반단지, 전문단지 및 지역특화단지 등 3개로 구분하여 조성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2014년까지 농공단지 400개소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09년도에는 신규사업 15개소, 계속사업 35개소 등 53개소에 598억 원을 지원하는 등 2009년 말 현재 339개소를 조성(완공)하였다. 또한, 농공단지 통합지침 개정을 통하여 전문단지 기준완화, 시·군별 지정면적 확대(166만㎡→200), 입지 선정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농공단지는 농어촌지역의 핵심 산업인프라로서 2009년 말 현재 5,632개 업체가 입주계약을 체결하였고, 5,239개 업체가 공장을 설립·가동 중에 있으며, 고용인원 123천여 명, 생산액 26조3565억 원(업체평균 73.4억 원), 연간 수출액 90억35백만 달러(184만1천 달러) 등 농어촌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다. 평가 및 향후계획

그동안 추진되어 온 농공단지 관련 정책들은 기본적으로 농촌지역에 저렴한 산업입지를 공급함으로써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농외소득원 제공 등 농어촌지역의 핵심 산업인프라로서 농어촌경제 활성화는 물론, 수도권이나 대도시 집중 산업의 지방분산 유도 등 국가 균형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농공단지 400개소 조성 목표도 조만간 달성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행 지원제도가 신규 단지 개발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어 기존 노후단지의 기능 향상과 농어촌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하는 기업 유치를 위해 지역특화단지의 육성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신규개발보다는 노후단지의 기반시설 개·보수를 중점 지원해 나가고, 지역산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지역특화단지의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3. 향토산업 육성사업

(지역개발과 사무관 이동홍)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정부는 시장개방 등으로 인한 농업 위축 → 일자리 축소 → 농촌 활력 저하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농촌자원의 산업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지원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역단위에서는 부존자원의 효과적인 발굴과 이를 산업화하기 위한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여건을 고려하여 농어촌지역에 부존되어 있는 다양한 향토자원을 발굴·산업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향토산업육성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였다. 2007~2008년에는 균특회계 지역개발사업계정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였고, 이후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보완한 후 사업체계를 개편하여 2009년에는 균특회계 지역혁신사업계정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향토산업육성사업은 2007년 및 2008년에는 시범사업으로 49개소를 착수하여 개소당 3년 이내에 총10억 원 내외의 사업비를 지원하였고, 2009년에는 사업체계를 개편하여 균특회계 지역혁신사업계정에서 30개소를 신규로 착수, 개소당 3년간 총 3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향토산업이 지역의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향토자원 개발을 위한 시설·장비 등 H/W분야와 함께 지적재산의 권리화, 연구용역·컨설팅, 디자인·브랜드 개발, 네트워크 구축 등 S/W 분야에 걸쳐 포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클러스터형 사업추진단 구성을 의무화함으로써 사업추진에 있어서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산·학·관·연간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사업추진 역량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2-8-3>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 실적 및 계획

구 분	계	2007년	2008년	2009년	비 고
사업량(개소)	79	19	30	30	* 목표: 2013까지 200
예산(억 원)	419 (269)	43 (43)	90 (90)	286 (136)	

* 2007~2008년도 선정지구에 대한 마무리사업비까지는 균특회계 지역개발사업계정에서 지원하고, 2009년도 신규 선정분부터는 균특회계 지역혁신사업계정에서 지원

다. 평가 및 향후계획

향토산업육성사업은 2013년까지 200개의 향토자원을 발굴·육성하는 것으로 목표로 매년 30개소씩 신규로 선정하여 지속 추진하되, 사업계획수립 단계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 전문가 컨설팅 및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사업추진 주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 체계를 구축하는데 더욱 중점을 둘 계획이다.

아울러, 시도발전연구원, 지역대학 등이 참여하는 향토산업지원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그동안 컨설팅 전문가에 의한 일시적 모니터링·컨설팅 지원에서 상시 모니터링·컨설팅 지원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추진에 대한 동기부여 및 역량강화를 위해 사업추진실적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부진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사업비 감액 등 페널티를 부과하도록 할 계획이다.

1.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농촌사회과 사무관 김춘기)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주40시간 근무제 등으로 도시민의 관광·여가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웰빙문화의 확산, 전원생활에 대한 동경 등으로 도시민들의 농촌에 대한 체험·여가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여건 변화 속에서 도시민의 여가수요를 농촌으로 유치하여 농외소득증대 등 농촌지역의 활력증진을 도모하고 도시민에게는 건전한 가족단위 체험·여가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2년부터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은 마을주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마련한 마을협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며, 도시방문객들이 농촌체험관광을 보다 유익하고 쾌적하게 누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코자, 마을 공동의 농촌체험기반시설, 생활편의시설, 마을경관 및 컨설팅 등 S/W 관련분야 등 조성을 지원(마을당 2억 원)하고 있다. 2009년에는 78개소를 신규를 조성하여 전국에 442개의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조성·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사업을 주도하는 마을리더·주민들의 사업추진·운영능력 배양 등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농촌체험관광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마을에서 전문가로부터 수시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영(50개 마을)하고 있다. 또한, 농촌체험활동 중 사고발생에 대비한 보험가입비를 지원(147개 마을)하였으며, 맞춤형 농촌관광 홍보책자(‘가족여행’) 제작·배포, 농촌문화체험기 공모전, 제8회 농촌마을가꾸기경진대회 개최, 농촌관광 포털사이트 운영 등 도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이후, 전국에서 다양한 성공모델이 나타나면서 도시민 및 농업인, 지자체의 농촌체험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09년 중 녹색농촌체험마을에 363만 명이 방문하고, 445억 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농법을 활용한 도시민 초청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와 연계하여 친환경 농산물을 직거래하며 소득증대에 기여한 사례, 행정과 주민 간 일체의 노력 및 기업과의 자매결연 등 활발한 교류활동을 전개한 사례, 마을주민·출향인·귀농예술인이 협력하여 농촌전통문화와 농사체험이 조화를 이루는 마을로 성장한 사례 등 다양한 성공모델이 나타나고 있다.

다. 평가 및 향후계획

2010년 239개 마을에 대한 체험마을 운영실태 평가를 실시하여 성공마을, 발전가능마을, 미흡마을로 유형을 구분하여 차별화된 관리방안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성공마을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홍보지원을 통하여 자립형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발전가능마을은 체험마을 운영컨설팅, 체험시설 유지보수 지원으로 성공마을로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미흡마을은 체험마을 리모델링 교육 등을 통하여 마을주민들의 인식변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지원하되 다음연도에 평가를 통하여 체험마을 운영과 관련된 지원의 계속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2년마다 주기적인 평가를 통하여 체험마을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을 통한 체험마을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2.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

(농촌사회과 사무관 이명남)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주5일근무제 정착, 소득증대 등 생활수준 향상 등의 영향으로 국내관광수요가 급격

히 증가하고 있고, 관광유형도 보고 듣는 수동형 관광에서 직접 체험하고 즐기는 능동형 관광으로 변화해 가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도시와 차별화된 농어촌 특유의 자연·문화·향토·사회자원을 주제로 한 다양한 형태의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농촌주민과 도시민에게 자연친화적인 휴식·레저·체험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도농교류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2007년도부터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2010년도 사업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시·군은 선정 시까지는 시·군에서 제출한 예비계획서에 대한 사업목적의 부합성, 투자계획의 적정성, 사업의 효과 등에 대한 전문가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성이 우수한 지구를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테마공원에는 진입도로·상하수도·전기·통신시설 등 기반시설과 지역특유의 체험시설 조성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4년에 걸쳐 100억 원(국고 50%, 지방비 50%)까지 지원하게 된다.

지역특산물과 자연환경을 테마로 2007년에 착수한 경기 안성, 충북 음성, 충남 서천, 전남 영광 등 4지구는 세부설계 및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현재 공사진행 중이며, 2008년에는 경기 이천, 충북 보은, 충남 금산, 전북 김제, 전남 구례, 경북 상주·울진, 경남 사천 등 8지구, 2009년에는 인천 강화, 경기 여주, 강원 양구, 충북 진천, 충남 예산, 전북 완주, 전남 진도·화순, 경북 봉화, 경남 함안 등 10지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설계 또는 공사 중에 있어, 이로써 2009년 말 현재 총 22개 지구가 추진 중에 있다.

다. 평가 및 향후계획

2010년부터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포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며, 2011년도 예산신청 전에 기본계획수립, 사전환경성검토 등 행정절차의 이행과 사업타당성 검토를 거치도록 예산신청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2009년에 이미 선정된 바 있는 2010년 사업 시·군으로는 경기 양주가평, 강원 고성, 충북 제천·청원, 전북 익산·무주, 전남 완도, 경북 청도, 경북 영양·고령, 경남 창원·의령, 제주 서귀포 등 14지구이며, 2010년에는 총 36지구가 추진될 예정이다.

3. 도시와 농촌의 교류 활성화

(농촌사회과 사무관 이태용·이명남·김준기·하지은)

가. 추진배경 및 개요

국민소득 증가와 주5일 근무제 확대 등으로 국민의 여가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관광 형태도 유명관광지 위주의 대중관광에서 가족중심의 체험관광·휴양 등의 형태로 변화되고 있는 추세다. 그리고 농촌의 생태적·환경적 가치에 대한 관심 증가, 웰빙(Well-being)생활 중시, 고품질의 안전농산물과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 등에 따라 도시민의 농촌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여건변화를 활용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농촌지역의 활력 증진 도모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도농교류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민의 여가수요 증가에 부응하는 농촌체험·휴양기반을 확충하고, 농촌체험관광 등 농촌지역개발을 주도할 지역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농촌체험관광 등 도농교류에 대한 범국민적 참여유도를 위한 다양한 홍보,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였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도시방문객들이 농촌체험관광을 보다 쾌적하고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마을공동의 농촌체험기반시설, 생활편의시설, 마을경관 및 컨설팅 등 S/W 관련분야 등 조성을 지원(마을당 2억 원)하고 있다. 2009년까지 442억 원(국고)을 지원하여 전국에 442개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조성하였다. 또한 농산어촌체험마을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사업 간 연계를 통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또한 도시민의 방문여건 개선을 위해 농촌체험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상품을 개발·보급하였다.

농촌체험관광 등 농촌지역개발을 주도해 나갈 지역의 역량 강화를 위해 ‘중장기 농촌지역개발 인력육성대책’을 수립하여 마을리더·주민 등을 대상으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09년에는 지역주민, 공무원, 도시민 등을 대상으로 농촌지역개발 리더십육성, 농촌마을·녹색농촌체험마을 동기화과정, 사업주제별 특화과정, 전원생활체험과정, 농촌마을종합개발 집체·

순회교육 등 15개 과정으로 8,340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다.

농산어촌체험마을을 운영하는 마을에 마을대표의 업무부담 경감과 체험프로그램개발, 방문객관리, 도시민유치 등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제도를 2006년에 도입하여 2009년까지 275개 마을을 지원함으로써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또한 농촌체험관광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마을에서 전문가로부터 수시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1인1촌 전문가 자문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2009년에 50개 마을(2008년 50개 마을)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된 농어촌여름휴가페스티벌에서는 체험마을과 지자체가 함께 농어촌체험관광을 홍보하고 다양한 도시민 유치활동을 실시하여 총 91천 명이 관람하였다. 농촌체험관광 등 도농교류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 제고 및 수요 창출을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TV, 신문 등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추진하는 한편, 웰촌포털(www.welchon.com) 운영을 통해 도시민들에게 체험관광, 정주정보 등 다양한 도농교류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1사1촌 자매결연 운동은 도시와 농촌이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하고 상생(win-win)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위해 기업·단체와 농촌마을이 자발적으로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하는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산되었다. 기업체와 사회단체 등의 적극적인 호응 속에 2009년에는 7,712건의 자매결연을 통해 농산물직거래, 농촌일손돕기 등 606억 원의 교류성공을 창출하였다.

다양한 농촌체험관광 등 도농교류 활성화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도시와 농촌간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농촌소득증대 등 농촌지역 활력 회복의 전기가 되고, 농촌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이 높아져 도농상생의 분위기가 조성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다. 평가 및 향후계획

농촌체험관광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농가소득증대 등 농촌지역 활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도농교류 활성화 시책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민의 여가수요 증가에 부응하는 농촌체험·휴양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농촌체험관광 등 농촌지역개발을 주도할 지역의 역량 강화를 위해 중장기 인력육성대

책에 따라 전문교육 등을 추진하며, 농촌체험관광 등 도농교류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 및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도시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농촌체험 휴양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녹색농촌체험마을을 2009년 78개(총 442), 2010년 74개(총 516)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산어촌체험마을사업을 추진하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사업 간 연계를 통한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도시민의 방문여건 개선을 위해 농촌체험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을 지원하고, 농촌체험관광 우수마을을 발굴·홍보하기 위한 농촌마을가꾸기 경진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상향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촌체험관광사업 등 농촌지역개발을 주도할 지역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확대 실시(2010년 3,740명 계획)하는 한편, 관련 지원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며 상향식 농촌체험관광 등 농촌지역개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식 확산을 위한 관련 교재를 개발하여 농촌마을 등에 보급할 것이다.

또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촉진을 위해 마을에서 농촌체험관광 사업추진과정에서 전문가로부터 수시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1인1촌 전문가 지원시스템을 개선한 종합컨설팅 자문 및 세무자문 신설·운영과 농촌체험관광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마을사무장 운영에 대한 지원도 계속할 것이다. 농촌체험관광 등 도농교류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및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1사1촌운동,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추진, 농어촌생활·체험기 공모, 마을가꾸기경진대회, 도농교류 정부포상 등 다양한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농촌체험관광 등 도농교류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근거로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시행(2008. 6) 중이며 동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수립한 「도농교류 5개년계획」을 '10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1. 대구형 경지정리사업

(농업기반과 사무관 이훈구)

가. 추진배경 및 개요

과거의 경지정리는 당시의 영농 수단인 경운기 등을 이용한 영농방식에 맞게 사업이 추진되어 필지 규모가 600~1200평으로 작고, 농로가 없거나 협소하며, 수로가 용수로 및 배수로를 겸하고 있어 대형 농기계 작업과 물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과거에 경지정리를 시행한 지역 중 농로, 용·배수로 시설이 취약하고 필지 규모가 작아 생산성 향상에 한계가 있는 평야부의 집단화된 우량농지를 재정비하는 대구형 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994년 농어촌특별세를 신설하여 예산을 지원했으며 2005년부터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010년부터는 시·도 자율편성인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농어업기반정비사업으로 통합하여 추진하고 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사업의 내용은 기존에 경지 정리된 우량농지를 주 대상으로 필지 규모를 3천 평 수준으로 대형화하고, 용·배수로 신설 및 구조물화를 하는 등 시설을 현대화하며, 농로를 3~7m폭으로 확장·포장하는 것으로 1994년 가을에 5천ha를 시작으로, 2009년 봄 마무리까지 국고 2조 2,438억 원, 지방비 6,884억 원 등 2조 9,322억 원을 투자하여 112.5천 ha를 완료하였다.

또한 지방재정 부담 및 지역 간 형평성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지방비로 사업을 추진했던 50ha 미만 지구를 대상지에 포함시켜 목표면적을 150.8천ha에서 169.6천ha로 조정('09.7월)하였다.

<표 2-8-4>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추진현황

구 분	목 표	2009년 까지		2010년 계획		2011년 이후
			누계(%)		누계(%)	
사업량(천ha)	169.6	112.4	66.4	3.8	68.4	53.4
사업비(억 원)	46,886	28,783	61.4	1,059	63.6	17,044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다. 평가 및 향후계획

그동안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으로 영농기계의 대형화에 맞는 영농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농업 경쟁력 향상 및 영농 편의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다. 향후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은 공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지자체의 자율성 향상을 위하여 단가를 정하지 않고, 지자체에서 선호하는 지역과 규모로 정비하도록 하는 등 농가 의향과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할 계획이다.

2. 밭 기반 정비사업

(농업기반과 사무관 이훈구)

가. 추진배경 및 개요

1970년대 일부 지역에서 밭용수개발사업이 시행되었으나 쌀 증산 및 고미가정책 등의 영향으로 우량 밭이 논으로 전환되어 밭 정비가 정착되지 않았다. 1990년대 들어 국민소득증대와 더불어 식생활이 변화하면서 신선채소, 과일 등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밭작물의 소비량이 급증하면서 밭 기반정비 여건이 성숙되어 1994년부터 전국 단위로 밭 기반정비를 시행하게 되었다. 2010년부터는 시·도 자율편성인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농어업기반정비사업으로 통합하여 추진하고 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을 위하여 농가소득 확충을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취약한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암반관정 등의 수원공개발, 농로개설, 밭 경지정리 등

을 시행하고, 2009년까지 2조 25억 원을 투입하여 1차 목표면적 110천ha 중 85.4천ha를 완료하였다.

<표 2-8-5> 밭 기반 정비사업 추진현황

구 분	목 표	2009년 까지		2010년 계획		2011년 이후
		누계(%)	누계(%)	누계(%)	누계(%)	
사업량(천ha)	110	85.4	77.6	4.1	81.4	20.5
사업비(억 원)	25,794	20,025	77.6	923	81.2	4,846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다. 평가 및 향후계획

그동안 밭 기반 정비사업으로 고소득 작물에 대한 영농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농업경쟁력 향상과 영농편의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다. 향후 밭 기반 정비사업은 공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지자체의 자율성 향상을 위하여 단가를 정하지 않고, 지자체에서 선호하는 지역과 규모로 정비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밭 기반 정비사업이 국민에게 신선한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농업경쟁력을 제고하는 등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주요 시책사업의 하나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3.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농업기반과 사무관 이훈구)

가. 추진배경 및 개요

농어촌지역의 도로 확장 및 포장사업은 1970년대 새마을사업 등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추진되었으며, 1985년부터는 농식품부가 농어촌 소득원도로사업을 추진하였으나, 1990년 12월 지방양여금법, 1991년 12월 농어촌도로정비법이 제정되면서 농어촌 소득원도로사업이 행정안전부(당시 내무부)로 이관되어 1991년부터 농어촌도로정비사업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이 농어촌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권 위주로 추진되어 농로 및 경작로 확·포장 수요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농식품부 주

관으로 기계화영농에 의한 영농편의 제공과 농산물 품질제고를 목적으로 1995년부터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2010년부터는 시·군 자율편성인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통합하여 추진하고 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기존의 농로 또는 경작로를 포장 또는 부분적으로 확장함으로써 농기계 통행 및 농산물 운반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산단지와 미곡종합처리장 등 생산, 가공, 저장, 유통시설간의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유통구조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다. 2009년까지 1조 7,453억 원을 투입하여 목표연장 35천km 중 21.2천km를 완료하였다.

<표 2-8-6>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현황

구 분	목 표	2009년 까지		2010년 계획		2011년 이후
		누계(%)	누계(%)	누계(%)	누계(%)	
사업량(천km)	35	21.2	60.6	1.1	63.7	12.8
사업비(억 원)	29,689	17,453	58.8	953	62.0	11,283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다. 평가 및 향후계획

향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공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지자체의 자율성 향상을 위하여 단가를 정하지 않고 추진하고, 농업경쟁력 향상 뿐 아니라 농어촌의 생활환경 개선에도 미치는 효과가 큰 점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4. 수리시설 개보수

(농업기반과 서기관 전경구)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최근 들어 집중호우, 태풍 등의 영향으로 인해 저수지, 양배수장, 취입보 및 용배수

로 등 수리시설에 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리시설의 경우 56%가 설치된 지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시설물이기 때문에 재해에 매우 취약하고, 용·배수로의 경우 구조물화 등 시설현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흙수로가 61%에 달하여 누수손실이 많고 유지관리가 어려운 상태이므로 재해에 미리 대비하고 안정적인 영농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후 수리시설에 대한 보수보강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노후 또는 파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에 대해 연차적으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표 2-8-7> 경과연수별 수리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저수지	양·배수장	취입보	집수암거	관정 등
계 (개소)	68,688	17,611	7,336	18,127	2,757	22,857
30년 이상	38,169	16,610	2,372	14,192	2,232	2,763
30년 미만	30,519	1,001	4,964	3,935	525	20,094

자료 : 한국농어촌공사, 2009년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통계연보

나. 추진내용 및 성과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전문기관이 실시한 안전진단 결과와 시설관리자가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보수보강이 시급한 시설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착공 이후 3~5년의 사업기간을 거쳐 완료된다. 2009년에는 4,67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410지구에 대한 개보수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그 중 83지구를 완료하였다.

<표 2-8-8>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추진현황

(단위 : 억 원, 지구)

구 분	총계획	'66~'08년까지	'09년	'10이후
사업비	109,323	44,301	4,670	60,352
사업량	8,769	5,808	83	2,878

다. 평가 및 향후계획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노후 수리시설에 대한 적기 보수보강을 통해 재해대비 및 안정영농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 수리시설 안전진단 결과 등을 토대로 재해에 취약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개보수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5. 배수개선사업 등 기타 기반정비사업

(농업기반과 서기관 전경구, 사무관 이훈구)

가. 추진배경 및 개요

매년 집중호우 및 태풍 등으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고 노후한 시설물의 붕괴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최근의 국지성 호우 등의 이상 기후로 인해 침수, 시설물 붕괴 등의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게 사실이다. 이러한 피해는 농경지 침수 뿐 아니라 인근 주택가는 물론 인명 사고와도 관련이 있어 그 중요성이 크다.

이에 따라, 집중호우 등으로 상습적인 침수피해를 겪고 있는 농경지에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안정영농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배수개선사업과 노후 또는 파손으로 기능이 저하된 방조제의 개보수를 시행하고 있으며, 배수개선은 2010년부터는 국가재난방지 차원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배수개선사업은 상습적인 침수피해를 겪고 있는 농경지에 배수장, 배수로 및 배수문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안정영농기반을 구축하고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2009년까지 3조 3,254억 원을 투입하여 145.1천ha를 완료하였다.

또한 최근 이상 기후 여건과 지방재정 부담 해소 등을 위해 지자체에서 지방비로 추진했던 50ha 미만 지구를 대상지에 포함시켜 목표면적을 188천ha에서 232천ha로 조정('09.7월)하였다.

<표 2-8-9> 배수개선사업 추진현황

구 분	목 표	2009년 까지		2010년 계획		2011년 이후
			누계(%)		누계(%)	
사업량(천ha)	232	145.1	62.5	4.3	64.4	83.1
사업비(억 원)	75,610	33,254	44.0	2,131	46.8	40,225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방조제개보수사업은 노후 또는 파손으로 기능이 저하된 방조제의 단면 보강, 배수갑문 교체 및 재도장, 부속시설의 사전 개보수를 하는 사업으로 방조제·배수갑문 등 3,490지구(국가관리 206지구, 지방관리 3,284지구)를 대상으로 개·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까지 총 1,467지구를 완료하였다.

다. 평가 및 향후계획

최근 기상여건 변화와 논에서의 작목 다양화에 따라 '0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밭(원예)작물 배수개선 시범사업(4지구)의 중간평가를 통해 재해대비 배수개선 설계기준 변경(강화) 방안을 검토하여 안정적이고 편리한 영농기반을 구축·보전할 것이다. 또한 배수개선 및 방조제개보수사업이 집중호우, 태풍, 해일 등의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중요 사업임을 감안하여 사업 효과가 조기에 발생할 수 있도록 준공위주로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6. 농촌용수 개발사업

(농업기반과 사무관 김현수)

가. 추진배경 및 개요

농촌용수개발은 영농에 기본이 되는 물을 확보·공급하는 사업으로, 물이 부족하여 상습적으로 가뭄이 발생하는 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보, 용수로 등의 수리시설물을 설치하여 안정영농기반을 구축하여 농업인의 영농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장래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국가로 지목되면서 이에 대비하여 농촌의 다양한 용수 수

요에 맞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그동안 꾸준한 용수개발사업을 통해 일시적 가뭄에 견딜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영농기반은 구축되었으나 여전히 저수지·양수장 등의 용수공급 능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연간 예산지원규모가 실제 소요보다 크게 부족하여 준공이 지연되고 사업효율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어 신규 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시행중인 지구를 준공위주로 추진하는 등 예산규모 확대를 통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논 면적은 1,010천ha로 농업용수개발에 의하여 용수공급이 가능한 수리답 면적은 806천ha(79.8%)이고, 비수리답(천수답) 면적은 204천ha이다. 또한 10년 빈도 가뭄에 견딜 수 있는 수리안전답은 504천ha(49.9%)에 불과하므로 용수개발사업을 통해 수리안전답 확충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표 2-8-10> 연도별 논 및 수리답 현황

연 도	단위	2000년	2003년	2006년	2009년
답 면 적(A)	천ha	1,149	1,127	1,084	1,010
수 리 답(B)	천ha	880	878	859	806
	(B/A)%	76.6	77.9	79.2	79.8
수리안전답(C)	천ha	421	440	478	504
	(C/A)%	36.6	39.0	44.1	49.9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통계연보

1) 중규모 농촌용수개발

물이 부족한 수해면적 50ha 이상 가뭄상습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의 수리시설물을 설치하여 농촌용수를 확보·공급함으로써 안정영농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09년에 80개 지구에 3,098억 원(추경 798억 원 증액 포함)을 투입하여 18개 지구(11개 조기준공지구 포함) 5,309ha를 준공하였고, 2010년도에는 67개 지구에 1,900억 원을 투입하여 347ha를 준공하여 농업용수 부족지역에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표 2-8-11> 중규모 농촌용수개발 추진 현황

구 분		총계획	2009년 까지	2010년 계획	2011년 이후
중규모	사업량(천ha)	107.5	61.0	0.3	46.2
	추진율(%)	100	56.7	57.0	

2) 소규모 농촌용수개발

수리시설이 미비된 수혜면적 50ha 미만 가뭄상습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의 수리시설물을 설치하여 농촌용수를 원활히 공급하여 안정영농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09년에 국고 108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였고, 2010년에는 국고 123억 원을 투입하여 239ha를 준공할 계획이다.

<표 2-8-12> 소규모 농촌용수개발 추진 현황

구 분		총계획	2009년 까지	2010년 계획	2011년 이후
소 규모	사업량(천ha)	11.0	1.1	0.2	9.7
	추진율(%)	100	10.0	11.8	

3) 지표수 보강개발

농업용수가 부족한 기존 수리시설을 확장·개발하여 저수용량 및 용수공급능력을 증대시킴으로써 물 부족지역 해소 및 안정적인 식량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09년에 국고 610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였고, 2010년에는 국고 548억 원을 투입하여 1,100ha를 준공할 계획이다.

<표 2-8-13> 지표수 보강개발 추진 현황

구 분		총계획	2009년 까지	2010년 계획	2011년 이후
지표수 보강	사업량(천ha)	31.9	26.7	1.1	4.1
	추진율(%)	100	83.7	87.1	

다. 평가 및 향후계획

농촌용수 개발사업을 통해 용수공급을 위한 수리시설이 80%정도 설치되어 안정영농 기반구축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여전히 10년 빈도 가뭄에 견딜 수 있는 수리안전담은 50%에 불과하고 자연강수에 의존하는 천수답이 20%정도여서 수리안전담 확충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농촌용수개발사업은 당초 논 농업에 필요한 수자원 확보에 주안점을 두었으나 현재는 논 뿐만 아니라 밭작물 등의 다양한 수요에 맞춘 농업용수 확보가 필요하고, 농업용 저수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관광·레저, 지역주민의 쉼터로서 농촌경관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 향상으로 농외소득원을 창출하는 부가적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강수가 계절적,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고, 21세기에는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사업의 목적이 다각화되고 새롭게 전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라 연간 강수량의 변동 폭이 커지고 홍수와 가뭄의 발생빈도와 규모가 점차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등 다양한 용수 수요의 증가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용수가 공급되도록 적정 수준의 예산 지원을 통해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7. 대단위 농업개발 및 간척사업

(4대강새만금과 사무관 한준희, 농업기반과 사무관 이형주)

가. 추진배경 및 개요

1960년대까지 우리나라의 농업기반을 개선하거나 정비하는 사업은 대부분 단일목적의 개별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었다. 농업용수개발, 경지정리, 배수개선, 간척, 기존 시설에 대한 재해복구 또는 개량 및 보수 등 단위사업으로 개발하는 것이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이 완료된 지구에는 경지정리사업 등이 후속사업으로 들어갔으나, 사업규모가 400ha이하 수준으로 그리 크지않고 예산지원도 한정되어 계획된 준공년도를 넘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1970년대부터 사업구역을 대단위로 권역화하고 개별적으로 시행하던 단위사업을 모

아서 추진하는 종합개발방식을 도입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는 대단위 농업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즉, 농업용수개발, 경지정리, 배수개선, 간척 등의 사업을 한 지구 내에서 동시에 계획하고 개발하는 방식이었다.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종전의 『농촌근대화촉진법』을 전면 개정한 『농어촌정비법』을 제정하여 공공기관(한국농어촌공사)이 국가사업을 위탁·시행하도록 하는 등 사업추진체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하였다.

이로써 대단위 농업개발사업의 유형은 육지부의 농업개발과 해안부의 간척사업으로 크게 구분하여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표 2-8-14> 대단위 농업개발사업 시행중 지구 개발유형

구 분	지 구 명	개 발 유 형	재 원
육지부 (4)	금강Ⅱ, 미호천Ⅱ 홍보, 영산강Ⅳ	기존 농지개발(육지부) - 용수개발, 배수개선, 경지정리 등	농 특 회 계
해안 + 육지부 (5)	영산강Ⅲ-1 영산강Ⅲ-2 화용, 시화, 새만금	간척농지 및 기존농지개발 - 간척농지조성, 용수개발, 배수개선, 경지정리 등 * 간척농지조성 ; 시화·화용 * 간척 및 육지부개발 ; 영산강Ⅲ-1, 영산강Ⅲ-2	농 지 관 리 기 금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970년대부터 도입된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은 총 24지구 293천ha를 추진하여 2009년까지 15지구 162천ha를 완료하고 현재는 금강Ⅱ지구 등 9지구 131천ha를 시행중에 있다.

시행중인 사업지구에 '09년까지 총 5,526억 원을 투입하여 급수면적 확대 15,712ha, 경지정리 10,089ha, 배수개선 1,320ha, 간척농지 7,353ha 조성 등 부분준공을 실시하여 한해·수해 등으로부터 안전한 농업생산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새만금 방조제는 '06년 최종 연결공사(물막이)를 완료한데 이어 방조제 완공을 위해 마무리 공사를 추진하면서 내부토지 활용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부토지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을 수립하기도 하였다.

한편, 정부는 쌀 소비 감소에 따른 쌀 공급과잉 및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함과 동시에 유리온실 및 축산 등 다양한 간척지 수요에 부응하여 체계적인 간척지 활용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전문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대규모 간척지 활용 기본구상」을 마련하였다. 여기에는 2008년도에 국토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공청회, 전문가 토론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된 새만금지구 토지이용계획도 반영하였다.

<표 2-8-15> 대단위 농업개발사업 완료지구

지 구 별	위 치		개발면적 (ha)	사업기간	총사업비 (백만 원)
	시도	시군			
계(15지구)			161,667		1,376,806
금 강	전 북	부여, 익산	12,148	'70~1976	16,823
평 택	경 기	평택, 화성	18,419	'70~1977	37,657
영 산 강(I)	전 남	나주, 담양	34,500	'72~1979	81,238
경 주	경 북	경주	1,140	'74~1977	4,916
계 화 도	전 북	부안	2,467	'74~1979	12,521
창 념	경 남	창녕	2,269	'75~1981	17,358
임 진	경 기	파주, 고양	7,185	'75~1983	45,807
남 강	경 남	진주, 함안	5,754	'77~1985	61,903
낙 동 강	경 북	안동, 예천	3,600	'78~1984	23,029
미호천(I)	충 북	음성, 진천	11,554	'77~1989	104,871
논 산	충 남	논산, 공주	9,938	'78~1990	94,035
금 강(II)	전 북	서천, 군산	하구둑	'83~1990	101,000
삼 교 천	충 남	아산, 당진	24,574	'75~1994	235,546
대 호	충 남	서산, 당진	7,419	'80~1996	185,630
영 산 강(II)	전 남	목포, 나주	20,700	'76~1998	354,472

다. 평가 및 향후계획

2010년도에는 금강II지구 등 시행중 9지구에 대해 국고(농특회계) 1,146억 원, 농지관리기금 1,947억 원 등 총 3,093억 원을 투입하여 새만금 방조제를 완공하고 시행중지구 부분준공을 통해 급수면적 확대 900ha, 신규 간척농지조성 895ha 등의 사업성과를 단계적으로 달성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새만금사업은 '10년도에 방조제를 완공하여 도로를 개통함으로써 내방객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하고, 33.9km 달하는 세계 최장의 방조제에 대해서는 국제공인(기네스월드레코드)을 받아 우리의 간척 기술력을 대내외에 널리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10년에 방조제 완공과 함께 농업용지 구간 방수제공사 착수를 통해 내부개발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표 2-8-16> 대단위 농업개발사업 시행중 지구

지 구 별	위 치		개발면적 (ha)	사업기간	총사업비(억 원)
	시도	시군			
계(5지구)			72,608		52,405
영산강Ⅲ-1	전 남	영암· 해남	13,160	'95~'15(21)	6,278
영산강Ⅲ-2	경 남	해남	7,840	'97~'14(18)	4,071
화옹	경 기	화성	6,212	'91~'12(22)	8,278
시화(대송)	경 기	안산	4,396	'98~'12(14)	4,288
새만금(외곽)	전 북	부안,김제,군산	41,000	'91~'10(20)	29,490

한편, 현재 시행중인 대단위 농업개발사업은 착수한지 14~22년이 경과하여 사업계획 및 추진방식의 효율성, 사업의 효과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객관적 중간성과 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향후에도 타당성 재조사, 심층평가 등 외부기관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사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으로 있다.

*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심층평가(2008~2009.7월 KDI 및 시장경제연구원) 및 화옹지구 타당성재조사(2009년 KDI)를 실시하여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당년도 사업시행계획에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이와 더불어 대단위 농업개발사업은 사업기간 장기화 방지를 위해 사업비 증액을 최소화하면서 지구별 부분준공 위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준공 간척지 또는 준공 후 미 처분된 간척지는 기존의 벼농사 위주에서 탈피하여 축산·원예 등 다양한 농업적 수요를 고려하여 미래 지향적 고소득 대규모 농업단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제9장

대외협상 및 국제협력 강화



1. WTO 활동

(다자협상협력과 사무관 임선정·임영조)

가. DDA 협상 출범에서 홍콩각료회의까지 추진경과('01~'05)

WTO는 UR 협상결과에 따라서 상품, 농업,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광범위한 대상에 대한 국제무역질서를 관할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제기구로서 1995년 1월 1일 공식출범하였다. WTO는 출범 이후 각국 무역정책의 개혁 및 자유화를 지속시키기 위하여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각료회의에서 새로운 다자 무역협상인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 DDA)”협상을 출범시켰다. 동 각료회의에서 DDA 협상은 2005년 1월 1일까지 모든 협상을 종료토록 일정을 정하였다.

이후 이렇게 정해진 협상시한을 지키기 위하여 각 분야별로 집중적인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당초 2003년 3월 및 5월말로 예정된 농업 및 비농산물 분야의 세부원칙(Modality) 합의에 실패하는 등 중간 일정이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5차 각료회의가 2003년 9월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되었다.

당초 칸쿤 각료회의는 미국과 EU의 농업협상 모델리티 수립에 관한 공동 제안서가 제시됨에 따라 성공적으로 타결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지만, 제2차 싱가포르 각료회의에서 의제로 채택한 싱가포르 이슈의 협상개시 여부에 대해 의견이 대립하여 결국 결렬되고 말았다. 그러나 대부분 협상 전문가들은 농업 분야에서 브라질, 인도 등 개도국 그룹이 국내보조 및 수출보조의 대폭 감축 및 철폐, 시장접근기회의 확대 등 선진국이 수용하기 어려운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등 농업분야에서의 합의실패에서 그 실질적인 원인을 찾고 있기도 하다.

제5차 각료회의 실패 이후 DDA 협상은 한동안 소강상태를 유지하다 2004년에 들어서면서 DDA 협상 진전 필요성에 대한 회원국 간 공감대가 강하게 형성되기 시작하

였으며, 우선적으로 2004년 7월말까지 세부원칙을 위한 기본골격(Framework)만이라도 합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04년에는 기본골격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거쳐 마침내 2004년 8월 1일 일반이사회에서 기본골격을 채택하였다. 이사회는 또한 2004년 말로 예정된 협상시한을 연기하고 2005년 12월 홍콩에서 제6차 각료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후 2005년에는 기본골격을 토대로 세부원칙 마련을 위해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가 지속 개최되어, 세부원칙 작성에 필요한 기술적인 쟁점들을 위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기본골격에서 합의한 구간별 관세감축을 위하여 비중가세의 증가세 상당치 전환문제 등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다.

각 분야별 쟁점들에 대한 기술적 논의들을 바탕으로 2005년 12월 13일부터 18일까지 제6차 WTO 각료회의가 홍콩에서 개최되었으며 각료선언문이 채택되었다. 홍콩 각료회의 직전까지 회원국 간 집중적인 협상이 있었으나 아직까지 핵심쟁점들에 대한 회원국 간 입장차가 매우 큰 상황이었는 바, 홍콩 각료회의에서는 관세와 보조금 감축에 관한 완전한 형태의 세부원칙 타결을 시도하지 않는다는데 회원국 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홍콩 각료회의의 가장 뚜렷한 성과는 향후 DDA 협상일정을 정한 것이다. 홍콩 각료선언문에 따르면 2006년 4월 30일까지 세부원칙에 합의하고, 2006년 7월 31일까지 국별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기로 하였다. 이외에도 농업분야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그동안 크게 EU와 미국, 수출국들간 입장 대립이 극심하였던 수출보조 철폐 시한을 정한 것도 하나의 성과로 볼 수 있다.

나. 홍콩 각료회의 이후 협상 추진경과('06~'09)

1) 농산물협상

2005년 홍콩 각료회의 이후 2006년 들어서 관세와 보조금 감축에 관한 세부원칙 타결을 위한 협상이 가속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관세와 보조금 감축을 둘러싸고 주요국 및 주요 그룹 간 입장차가 매우 컸으며, 홍콩에서 이루었던 합의와는 달리 2006년 4월말까지 세부원칙을 타결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라미(Lamy) WTO 사무총장은 각국 입장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지 않다면서 협상 진전을 위해서는 신축성을 좀 더 보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7월

15일부터 7월 17일까지 주요 8개국 정상회의가 개최되어 주요 8개국 정상들은 현 DDA 협상의 교착상황에 대해 우려를 같이하고 향후 1개월 내에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 하라고 촉구하였다. 정상들의 촉구에 힘입어 미국, EU, 일본, 인도, 브라질 장관들은 7월 17일 제네바에서 향후 협상 진전방향을 논의하였으며 7월말에 회동하여 3대 핵심 쟁점인 농산물 관세감축, 농업보조금 감축, 공산품 관세감축 등에 대한 타결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EU, 일본, 인도 등이 농산물 관세를 추가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반면 EU, 인도, 브라질, 일본은 미국이 국내보조를 더 감축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는 등 주요국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림에 따라 협상 돌파구 마련에 실패하였다.

이에 따라 7월 24일 라미 사무총장은 무역협상위원회를 긴급 소집하여 협상환경이 좋아질 때까지 DDA 협상을 일시 중단한다고 선언하며, 향후 협상일정을 제시하지 않고 협상이 재개되기 전까지 각국이 국내적으로 검토해 볼 것을 촉구하였다.

협상 중단이후 미국, EU 등 주요국 및 그룹 차원의 비공식 협상이 진행되었고, 라미 사무총장은 약 4개월간의 휴지기간을 가진 후 11월 16일 비공식 무역협상위원회 회의를 소집, 각 협상그룹 의장을 중심으로 “DDA협상 전반 재개를 선언”하였다. 협상이 정상화되었다고는 하지만 본격적인 협상보다는 주요국, 주요그룹 상호간 탐색전, 주요 그룹 내 기술적 협의 위주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2007년 1월 스위스에서 개최된 다보스포럼에서 주요국 각료들이 모여 DDA협상을 본격 재개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2007년 상반기 DDA협상은 세부원칙안 마련을 위한 집중 협상이 다시 진행되기 시작하였으며 농업협상분야에 있어서는 팔코너 농업협상그룹이 논의의 결과를 정리하여 4월 및 5월에 의장문서를 2차례 제시하였다. 이후 미국, EU, 인도, 브라질 주요 4개국은 6월 19일부터 6월 21일까지 장관급 회동을 통해 합의도출을 시도하였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여 합의에 실패하였다. 4개국 회동 결렬의 주요 원인은 농업분야보다 비농산물 분야의 관세감축 문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2007년 7월 17일 팔코너 농업협상그룹 의장은 그간의 논의들을 종합하여 관세와 보조금 감축에 관한 세부원칙 초안을 회원국에게 배포하고 각국의 적극적인 협상 참여를 촉구하였다. 7월에 배포된 초안은 그간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타결 가능한 합의점(Landing Zone)을 상당부분 좁혀서 제시하고 있다. 미국, EU, 인도, 브라질 등 대부분의 WTO 회원국들은 전반적으로 동 세부원칙 초안이 협상 진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이후 논의는 동 초안을 중심으로 진행할 것에 합의하였다.

7월 세부원칙이 배포된 이후 하반기 DDA 협상은 더욱 활발히 전개되었으며, 그룹 내 협상 및 주요국 고위급협상(약 30여 개국)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하반기 협상은 관세감축률 및 민감품목 개수 등 정치적으로 결정될 핵심내용에 대한 논의보다는 우선적으로 TRQ 증량방식 등 기술적인 사항과 그동안 논의가 미흡하였던 다양하고 구체적인 이슈들을 전반적으로 포괄하는 형태로 논의가 진행 되었는바, 이를 통해 각 이슈별로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되고 일부 의견접근을 이루는 등 논의의 진전을 이루었다.

2008년은 2월 팔코너 농업의장에 의해 세부원칙 수정안이 배포된 이래 5월에는 2차, 7월에는 3차 수정안이 배포되어 관세 및 보조금 감축수준 등에 대하여 집중적이고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3차 수정안이 배포된 7월에는 비공식 소규모 각료회의가 제네바에서 개최되어 세부원칙이 타결될 전망도 보였으나, 일부 잔여쟁점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견 대립으로 세부원칙 타결에 실패하였다.

이후 7월 각료회의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팔코너 농업의장은 12월에 4차 수정안을 배포하고 비공식 각료회의를 추진하였으나, 개최 날짜가 시기상 연도 말이고 미국 등 주요국들의 국내 일정상 참여가 불가능하여 개최되지 못했다. 그러나 2008년도 DDA 협상은 7월 각료회의 개최 등 주요내용에 대한 의견 접근이 상당 수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9년 1월 다보스 포럼에서 주요국 통상장관은 DDA 협상의 조속한 타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재확인하였으며, 4월 런던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도 각국 정상들은 세계 경제회복을 위하여 DDA 협상의 타결에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주요국들은 DDA 협상의 조속한 타결 필요성에는 공감을 표명하였을 뿐, 협상이 본격적으로 재개되지는 않았다.

미국 오바마 실행정부의 DDA 협상팀 구성이 갖춰지지 않았던 점도 상반기 협상진전이 없었던 큰 이유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9월초 인도에서 개최된 비공식 통상장관회담에서 주요국들이 하반기 DDA 협상진행과 2010년 협상 타결이라는 목표에 동의하자 WTO 라미 사무총장은 DDA 협상 타결의 목표 달성을 위해 9월말~12월간의 협상 계획을 마련하고 세부원칙 잔여쟁점 및 양허표 양식 등 논의를 가속화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본격적으로 협상에 참여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으로 향후 미국의 입장이 협상 진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각국의 정치적 의지가 협상의 조기 타결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 비농산물(NAMA) 협상

2003년 9월 제5차 WTO 각료회의(칸쿰)가 결렬된 이후 소강상태에 빠져 있던 도하 개발아젠더(DDA) 협상은 2004년 4월 들어 재개하였으며, 2004년 7월에 DDA 협상 전반에 대한 기본원칙을 담은 기본골격(Framework)을 합의하였다. 하지만 2005년 12월 홍콩각료회의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대립으로 관세감축에 대한 세부원칙(Modality) 타결에는 실패하고 2006년 4월 세부원칙을 합의하고 그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2006년 말까지 협상을 타결한다는 일정에만 합의를 하였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각 진영 간의 의견의 차이가 지속되어 2006년 7월 Lamy WTO 사무총장은 DDA 협상중단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2006년 11월 WTO 비공식 무역협상그룹(TNC) 회의에서 모든 회원국들이 협상 재개에 합의하여 2007년 1월말 다보스 소규모 각료회의에서 협상전면 재개를 공식선언하였다.

그 후 협상이 가속화되어 2007년 7월 세부원칙 초안이 회람된 이후 의장이 3차례에 걸쳐(2008년 2월, 5월, 7월) 1, 2, 3차 수정안을 순차적으로 제시하였고, 농업 및 NAMA 분야 세부원칙 타결을 위한 각료회의를 개최('08.7) 하는 등 협상 타결을 위한 노력이 있었으나, 주요 핵심쟁점에 대한 잠정타협안 도출 이후, 일부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결렬되었고, G-20 정상회담 선언을 계기로 세부원칙 4차 수정안이 제시('08. 12)되는 등 연말 각료회의 개최가 추진되었으나, 분야별 자유화(Sectoral) 관련 주요국간 이견 대립 등으로 각료회의 개최가 무산되는 등 협상 타결에 난항을 겪었다.

2008년 12월 DDA 협상 진전을 위해 농업 및 비농산물 시장접근 세부원칙에 대한 4차 수정안이 제시된 이후 2009년 1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DDA의 조기 재개가 논의되었으나 세계경제의 침체로 인해 DDA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DDA 협상은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세부원칙 4차 수정안에는 기존의 제안을 보다 구체화하여 개도국은 낮은 계수를 사

용하는 대신 더 많은 수준의 신축성을 사용하거나, 신축성을 사용하지 않는 대신 관세 감축공식 계수를 높일 수 있도록(Sliding Scale) 하고 있다. 의장 4차 수정안에 따르면 스위스 공식에 적용될 조정계수의 경우, 선진국은 8, 개도국은 부가 조건(신축성 적용 범위)에 따라 20, 22, 25 중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분야별 자유화와 관련하여, 자발적인 방식으로 분야별 자유화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에는 어느 정도 의견수렴이 이루어졌으나 참여여부와 관세감축공식 계수를 연계하는 방안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선진국과 개도국간 대립이 큰 상황이다.

그러나 '09. 9월 WTO·DDA 고위급 회의(SOM)에서 '10년 DDA 협상 타결을 목표로 '09년 말까지 각 협상 분야의 작업계획 마련 및 고위급 회의를 통해 매월 점검회의를 개최기로 합의함에 따라 분야별 자유화 협상에서도 각 분야별 제안국 주도의 양자 협의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다.

비관세장벽(NTBs) 관련 논의는 세부원칙 타결시까지 포함될 비관세장벽 제안서를 확정하고 타결 후 2~3개월 이내에 제안서 문안을 결정하도록 합의되었다. 그러나 제안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회원국들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2. OECD 활동

(국제협력총괄과 사무관 최수아)

가. OECD 농업·농촌 및 식품분야 활동 개요

우리나라는 1996년 OECD에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래 OECD 농업위원회, 농업정책 및 시장작업반회의, 농업위/무역위 합동작업반회의, 농업위/환경위 합동작업반회의 등 산하작업반회의, 각종 워크숍 및 전문가회의에 참여하여 논의에 대응하여 왔다. 농업위원회 및 산하작업반회의에서는 회원국 농업정책에 대한 점검·평가, 다원적 기능, 식품경제, 농업환경평가, WTO농업협상 쟁점에 대한 연구·분석, 농산물 시장 및 유통기능 향상에 관한 연구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OECD 회원국 농업정책 점검·평가활동을 위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가별 검토를 실시하여 회원국 농업관련 자료를 축적하고 있고, 회원국 농업정책 개선정도를 점검·평가하여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아울러, AGLINK라는 고유의 모형을 사용한 중기농업전망을 실시하여 농산물의 생산·소비·무역·가격 변화를 예측하고, 이를 보고서로 발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OECD와 FAO가 공동으로 세계농업전망을 발간하고 있다.

2009년도에 OECD에서 발간한 주요 보고서인 OECD 중기농업전망과 회원국 농업정책평가보고서의 주요내용과 농업위원회 및 관련 작업반의 활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나. OECD 중기농업전망

OECD-FAO는 2005년 공동발간을 시작한 이래 5번째로 “2009~2018 중기농업전망(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09~2018)”을 내놓았다. 동 보고서는 매년 급격히 부상하는 시장과 정책이슈에 대한 논의 증진을 위한 세계 주요 농산물 품목과 시장에 대한 중기적 평가를 담은 보고서로서, FAO의 품목적 전문성과 광범위한 대상국, OECD의 정책적 전문성이 조화되어 농정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면서 농업전망에서 개도국 입장을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한 시도로 평가되고 있다.

2009년도에 발간된 OECD 중기농업전망에 따르면, 2008년에 전 세계에 걸쳐 퍼졌던 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해 식량시장의 미래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그 이후 식량가격은 상당히 하락했지만 세계 금융시장의 몰락과 경제위기는 세계 식량시장과 농업생산에 더욱 큰 문제를 안기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면서, 거시경제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품목별 가격전망에 있어서는, 소고기, 돼지고기를 제외한 농산물의 실질가격은 대상기간 동안 1997~2006 수준의 평균가격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전의 시장 전망에서 보였던 수준보다 경제성장률과 에너지 가격이 낮아질 것이라는 예측에도 불구하고, 경상가격과 실질 곡물가격은 1997~2006 기간 동안에 관측 수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치즈, 탈지분유, 버터, 쌀, 밀은 2007~2008년의 수취가격보다 상당히 낮은 평균가격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다음 10년 간은 1997~2006년 기간 동안의 평균가격 수

준보다 더 높을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돼지고기를 제외한 모든 농산물에 대한 경사가격은 1997~2006년 평균 수준보다 20%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정도의 높은 가격 수준으로 회귀할 경우 곡물 가격은 추가적으로 20%에서 30%까지 상승할 것이지만 축산물 가격은 10% 정도 보다 낮게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 OECD 회원국 농업·농촌·식품 정책 평가

2008년 OECD 지역 내 생산자 보조는 PSE 기준, 미화 2,650억 불(1,820억 유로)로 추정된다. 이는 OECD 농업 생산자 총 수령액의 21%에 해당하며, 2007년 22%, 2006년 26%에 비해 감소한 수치이다. 현재 관찰되는 생산자지지 규모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최저수준이다.

2008년 보조금 감소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정부에 의한 직접적 정책 개혁보다는 세계 농산물 가격이 유례없이 높은 수준을 기록한 데서 기인한 바가 크다. 농산물 가격이 2008년 하반기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가격은 대체적으로 장기 평균치를 상회하는 수준을 기록하였다. 가격상승으로 인해, 가격지지 정책 및 경기 대응적 지지의 전환효과가 적었으며 전반적 생산자지지는 감소하였다. 하지만 과거와 최근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국제가격이 예외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감소하기 시작하면, 국경보호 및 가격과 관련된 국내 보조조치가 다시 활성화될 것이다.

검토기간동안 세계경제에 유례없는 변화가 있었다. 금융시장 상황이 2008년 하반기부터 급격히 악화되었다. 기업 및 소비자 신뢰, 주가가 세계전역에서 급락하였으며 산업생산과 교역이 축소되었고 실업률이 치솟았다. OECD 지역 경제성장률이 2008년 크게 낮아져 실질 GDP가 몇몇 국가에서 2008년 하반기 감소하였다. 지난 60년간 이 정도의 폭과 깊이를 가진 경제적 혼란은 없었다.

금융위기는 명목 상품가격이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시점에서 발발하였다. 상품 가격이 2007년 급격히 상승하였고 2008년 중반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가격상승으로 인해 상품시장이 불안정해질 때 어떠한 사회적 결과가 야기될 수 있는지가 분명히 드러났다. 식량가격상승이 기아 및 빈곤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가격추세는 2008년 중반 상품가격이 2007년 초반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갑작스런 반전세에 들어갔다.

금융 및 경제 위기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좀 더 지켜보아야 한다. 상당 부분, 금융위기가 특정부분에 미치는 영향은 해당 부분이 신용경색 및 수요 감소에 노출되어 있는 정도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OECD 국가 농업은 상대적으로 금융 노출도, 소득감소에 대한 수요탄력성이 낮으며, 기존의 지지 정책이 존재하고, 가격상승기 동안 축적된 소득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부문에 비해 위기를 잘 견뎌낼 것이다. 하지만 일부 하위 농업부문과 생산자들은 압력을 받게 될 것이며 금융 위기로 인해 구조 조정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비농업부문에서의 실업이 농촌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사료되며, 이로 인해 농가 및 농촌거주자들의 비농업 부문 취업 및 소득창출 기회가 줄어들 것이다.

OECD 회원국 정부는 상품가격 불안정성과 금융위기로 인한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책을 취하였다. 일부 국가는 가격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자 농식품에 대한 관세인하 및 수출장벽 부과를 단행하였다. 일부는 이에 더해 농업 투입재의 수입관세를 인하하고 투입재 보조금을 도입하거나 특정 농업 하위부문에 직접 보조금을 제공하였다. 다수 신흥국 및 개도국이 유사한 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조치의 실제적 결과는 불명확하다. 많은 국가의 조치는 특별히 빈곤한 소비자들을 타깃으로 한 것이 아니며 사실, 세계시장 불안에 일조할 것으로 여겨지는 부분도 있다. 2008년 말 금융 및 경제위기가 가시화되면서 몇몇 OECD 회원국은 농업부문의 부담으로 완화하기 위한 우선대출, 세금환급을 비롯한 특별조치 및 별도 직접 보조금을 도입하거나 실시하였다.

일부국가의 농정 체계에 중요한 변화도 있었다. EU에서는 CAP 중간점검(Health Check)이 완료되어 다수 부문별 체계 개혁에 성과가 있었다. 미국은 “식품, 보건, 에너지법”이라 명명된 새로운 2008~2012 농업법을 승인하였다. 캐나다는 2008-12 농업인 소득안정 프로그램(Growing Forward)의 사업 위험관리 부분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였다.

EU의 변화는 SPS로 대변되는 지지와 생산의 분리방향으로의 움직임을 보여준다. EU 회원국들은 SPS로부터의 일부 펀드 사용에 더 큰 자율성을 보장받았으며 이로 인해 이러한 조치의 목표설정을 개선해야하는 새로운 과제가 생겨났다. 미국의 새로운 농업법은 급격한 정책 변화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보조를 받을 수 있는 품목의 수를 늘려주며, 일부 대출이자율, 목표가격을 상승시키고, 선택적이며 소득에 기반한 경기대응적 프로그램 ACRE를 더해 준다.

EU는 보험 및 뮤추얼 펀드에 대한 공동출자 보조금의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여타 국가들 또한 위험관련 조치를 강화하였으며, 이 중에는 미국 농업법 내 경기대응적 프로그램, 몇몇 신규 EU 가입국의 보조금 지원 보험, 한국의 재해보험 확대, 뉴질랜드 국경에서의 위험관리 개선 등이 포함된다. 캐나다를 비롯한 다수 OECD 회원국들은 사후적 위기구호 조치가 널리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보다 안정적인 재난 구호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있다. 빈도, 보조금 액수, 생산왜곡 정도, 여타 위기 관리전략에 대한 잠재적 구축효과 등의 측면에서 새로운 위기관리 조치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체계적이며 심도 깊은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와 수자원 가용성은 OECD 회원국의 우려가 높아지는 사항이다. 일부국가는 기후변화 연구 및 모니터링을 위한 공공 펀드를 증액하거나 농업부문의 적응을 위한 전략 및 행동계획을 도입하였다. 다수 국가는 상품가격 및 용수사용에 미치는 영향, 온실가스 배출저감 효과의 증거 미비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을 재료로 하는 재생가능 에너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정책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 토지 보호 및 보존은 또 다른 정책 우선순위이다. 신규 농업 환경정책 일부는 물 관리 효율성 증가, 오염 저감, 생물 다양성, 경관보전을 다루고 있다.

WTO-DDA 협상 농업부문 추가적 이행의 세부원칙에 대한 집약적 작업이 2008년 동안 계속되었다. 현재까지 협상된 다자적 협상은 없으며 다수 OECD 회원국은 새로운 양자 및 지역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부문 총보조, 즉 PSE에 연구, 인프라, 검사, 유통 및 홍보 등의 농업부문 일반 서비스에 대한 보조, 소비자 보조를 합친 수치는 2006~08년 OECD GDP의 0.9%에 달하였으며 이는 1986~88년의 2.5%에서 감소한 수치이다. 농업보조로 인한 경제 전반에 대한 부담이 감소한 것은 OECD 회원국의 특징이며, 대부분 이들 국가 G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졌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상대적 보조수준의 감소와 더불어, 보조가 지급되는 방법 또한 변화하고 있다. 상품 생산량(commodity output)이나 사용된 가변 투입재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보조는 줄어들었으며 점차 면적, 가축수와 같은 다른 기준이 사용되고 있고 이러한 기준의 과거 실적 혹은 고정 수준을 고려하여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생산량기준 보조금 감소는 국내가격과 국경가격 사이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데서 분명히 드러난다. 국내가격과 국경가격 사이의 격차는 비록 국제가격 상승이 최근 몇 년간 큰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1987~1988년 50%에서 2006~2008년 16%로 감소하였다.

최근 일부 프로그램은 더욱 보조와 생산을 분리(decoupling)하고 있다. 농민에 대한 지급의 경우, 상품 군에, 혹은 품목에 상관없이 보조금 신청자격을 부여함으로써 특정 품목 생산에 제한받는 경우가 줄어들었다. 나아가, 2008~2006년 OECD 지역 총생산자보조의 1/4 가량이 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해 특정상품을 생산해야 한다는 조건 없이 이루어졌다. 특히 미국 내 직접지불이나 EU의 단일지불이 있었다. 하지만 상품특정 보조는 쌀, 설탕, 일부 축산품에 상당하였다. 쌀의 경우 이러한 보조가 2006~2008 총생산자 쌀 수령액의 60%에 달하였다.

보조는 점차 환경보존, 동물복지, 식품안전과 같은 보다 광범위한 목표 하에서 생산자가 특정 생산기업을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지급이 1986~1988년 OECD 총 PSE의 4%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지불의 대부분이 현재 EU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여타 OECD 국가 중, EU, 미국, 스위스가 투입재 제한조건을 가진 보조금 지급의 비중이 가장 높다(약 50%).

OECD 회원국 대다수에서 보조수준 뿐 아니라 왜곡을 초래하는 보조의 비중이 줄어들었지만 생산과 교역 왜곡정도가 가장 심한 정책들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가장 왜곡도가 큰 보조(생산량과 가변 투입재의 제한 없는 사용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가 2006~2008 OECD 총 PSE 보조의 56%를 차지하였다. 또한 개혁이 불균형하게 이루어졌다. 2006~2008년 OECD 회원국의 보조수준은 뉴질랜드의 1%에서 노르웨이의 62%에 이르기까지 차이를 보였다. 일부 국가가 보다 분리된(decoupled) 보조금 실시에 있어 앞서나가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은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

세계 경제위기, 희소자원에 대한 경쟁 고조, 가격 불안정성 증가 및 식품안보에 대한 우려로 인해 정책입안가들은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경제축진을 위한 정부 노력 또한 많은 국가의 재정정책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국가들이 침체를 벗어나게 되면서 정부들은 보다 어려운 재정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농업을 비롯한 많은 부문에서 부문별 정책 검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향후, 이러한 상황은 정부가 변화하는 경제, 사회, 환경 정책목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조정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 OECD 농업위원회 및 관련 작업반 활동

2006년 12월 1일자로 농업위담당 사무국이 개편되어 기존의 식량·농업·수산국이 무역국과 통합되어 무역농업국(Directorate for Trade and Agriculture)이 되었으며,

농업관련 조직은 농업정책·무역 및 조정과, 농업정책 및 환경과, 농업무역 및 시장과, 비회원국 농업정책과와 농업기술관련 협력 연구프로그램, 농업관련표준과 Scheme, 수산 관련 1개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계획은 향후 2년간의 OECD 분석활동의 청사진으로 각 회원국은 자국의 농정추진과 관련 시사점이 큰 분야의 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사업계획 확정 과정에서 수출입국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우리의 관심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사전준비로 수입국 공조모임, 의장단 활용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수출국들은 주로 OECD 논의가 WTO의 무역자유화를 선도하는 방향의 분석작업(무역자유화이점, 국내정책의 무역왜곡 등)을 유도하고, 수입국들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 지속가능성, 식품 안전, 농촌 개발 등 농업의 사회 환경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의 주요 작업은 크게 농업위원회 차원의 농업정책개혁, 농업무역쟁점, 농업의 환경지속가능성과 농촌지역개발 작업으로 대별하여 논의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바이오에너지 접근정책과 시장”, “금융과 경제위기에 대응한 전략과 대응”, “PSE 지표 및 분류체계 개선”, “기후변화와 농업” 등을 주제로 논의되고 있다.

2009년 농업위원회 및 산하작업반의 활동은 3개 작업분야(농정시장, 농업무역, 농업환경)에서 이루어졌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정시장 분야에서 ① 회원국 농업정책 점검·평가 ② 비회원국 검토와 정책평가 ③ 농식품 경제에 관한 종합보고서 ④ 농업정책이 농촌지역 복지에 미치는 영향 ⑤ 효율적 식품·농업정책 방안, 농업무역 분야에서 ⑥ 농식품분야 비관세 조치 평가 ⑦ 지역주의와 농업시장에 미치는 영향 ⑧ 가공품 무역의 변화 형태 농업환경 분야에서 ⑨ 농업환경 이슈관련 정책조치 실적 평가 ⑩ 농업정책과 환경효과의 연계성 분석 등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회원국 농정평가는 2009년도 2월 제48차 농정시장 작업반회의에서 일본의 농정개혁평가보고서가, 2009년 5월 EU의 농정개혁 평가보고서가 채택되었다. 특히 2009 농정시장 작업반에서는 PSE 구성분석, PSE품목 특정성 지표, PSE 계산의 대상(축산물, 신용양여)등을 논의하여 우리나라는 내년도 PSE 계산부터 우리의 PSE 계산방식과 관련하여 쇠고기 MPS는 관세차를 통해 이를 측정하기로 함으로써, 그동안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던 우리나라의 PSE 수준을 낮추는 데 계기를 마련했다.

이러한 노력이 국제기구를 통해 인정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며 향후 한국의 PSE 측정상 불합리한 부분을 더욱 적극적으로 제기하여 개선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금년도 농정시장 작업반에서는 바이오 에너지 접근정책과 시장 등에 대하여 회원국들과 논의를 진행하고 금년 10월 제50차 농정시장 작업반에서는 바이오열, 바이오 전력, 그리고 바이오 가스등을 중심으로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소개하였다. 농업무역합동 작업반에서는 금년 10월 제62차 회의에서 비관세장벽의 비용편익 사례로서 치즈, 새우, 철화 등을 가지고 비관세 장벽에 대한 효과 등을 논의하고 가공품무역의 변화하는 형태에 대해서 연구계획서를 발표하였다.

농업환경합동작업에서는 금년 7월과 12월 2차례 회원국 간 회의를 가지고 기후변화와 농업, 온실가스 완화, 시장에서 탄소계산 등 농업과 환경 간 정책이슈를 가지고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2010년에는 이 논의를 회원국의 의견과 논의를 거쳐 구체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금년도 152차 농업위원회는 금융과 경제위기에 대한 OECD의 전략적 대응이라는 세계적 이슈를 가지고 농업분야에서 논의를 하였으며 제153차 농업위원회에서는 칠레와 이스라엘의 회원국 가입을 검토하여 칠레를 내년 1월부터 정식 회원국으로 승인하였다.

특히 153차 농업위원회에서는 내년도 2월 농업각료회의 대하여 의제, 이슈보고서, 배경문서, 의견 등에 대하여 참가국들의 의견을 들어 최종 확정하여 각료회의에 대한 노력과 관심을 보여주었다. 1998년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OECD 농업각료회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농식품정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2030년까지 농업과 식품분야에 있어 OECD의 개혁 방향을 논의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OECD는 현재의 기후변화, 식량위기 등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여 세계 농식품시스템에 예상되는 기회와 도전에 대응하여 회원국과 OECD의 역할을 집중 논의할 것이므로 우리 정부도 이에 대응하여 의제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것이다.

3. FAO 활동

(국제협력총괄과 주무관 전지수)

가. 개요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모든 국민의 영양상태 및 생활수준의 향상, 식량(농산물)

의 생산 및 분배능률 증진, 영양·식량·농업에 관한 정보의 수집 분석 보급 및 국제 활동의 촉진과 권고를 목적으로 1946년 12월 14일 UN 최초의 상설전문기구로 설립되었다.

기구 소재지는 이태리 로마로 2009년 현재 191개 회원국이 가입하고 있으며, 매 홀수년도에 각 회원국 각료급 대표가 참석하는 총회를 개최한다. 49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이사회와 이사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8개 위원회로 구성되며 식량농업유전자원위원회, 국제미곡위원회 등 산하기구와 보조기구를 두고 있다. 사무국은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및 국제공무원으로 구성되며 2009년도 현재 3,743명이 근무하고 있다.

FAO의 재정은 회원국의 분담금으로 충당되는데 회원국 분담금 규모는 자국의 인구, 소득 등을 감안하여 UN이 결정한 UN 분담금 비율을 기준으로 총회에서 결정한다. 2009년도의 예산규모는 약 10억 달러 수준이다.

나. 주요활동

FAO의 기본적인 기능은 필요시 식량 및 농산물의 생산, 분배 및 소비에 관하여 회원국에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고 권고하며, 적절한 기술협조를 제공하는 것이다. FAO 사업은 FAO 회원국들의 분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정규사업(Regular Programmes)과 UNDP, WFP, UNICEF, FFHC, 신탁기금 등 관련 국제기구나 각국정부와의 협조를 통해 조성되는 재원을 바탕으로 실시하는 기타사업(Other Programmes)이 있다.

FAO는 창설 이래 농업, 수산, 임업 및 영양분야에서 유일한 국제정보 센터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전 세계에 걸친 수백 가지 상품에 대한 생산, 소비 및 교역에 관한 통계를 수집하여 이를 연감과 통계자료로 발간하고 식품 수급표를 발간하여 세계 식량의 수급현황을 제시하는 동시에 세계의 영양사정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세계 식량 및 농업개발에 큰 기여를 해왔다.

FAO는 농업, 수산 및 임업용 기자재 목록의 간행과 심지어는 동식물 질병의 통보 등 식량, 수산, 임업 및 영양분야에 대한 광범위하고 유익한 각종 기술정보자료를 제공하는 동시에 어분으로부터 생사에 이르는 각종 상품에 대한 경제적 관측연구를 실시하여 왔다.

FAO는 이와 같은 정보자료의 제공에 만족치 않고 세계식량농업개발의 장기적인 전략과 방향을 제시한 방대한 장기계획 지침서로서 “세계식량농업개발계획지표(Indicative World Plan for Agricultural Development)”를 주기적으로 발간하였고 그

외에도 “2015년의 세계농업(Agriculture Toward 2015)”, “2030년의 세계농업(Agriculture Toward 2030)” 등 각종 중장기 농업예측진망자료를 발간하며, 또한 매 10년마다 실시되는 “세계농업센서스(World Census of Agriculture)”를 주도하여 각 회원국들이 실시하는 방대한 조사사업에 대하여 전문가를 파견하는 등 기술적인 면을 적극 지원하여 왔다.

최근 FAO는 효율적인 국제기구로 거듭나기 위하여 본부의 조직을 축소하고 지역사무소의 기능강화를 골자로 하는 조직개혁안이 2005년 11월 제33차 총회에서 결정됨에 따라 본부의 조직개편과 함께 기존의 지역사무소와 소지역사무소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각 위원회 활동에 있어서는 농업·산림·수산분야의 바이오에너지 생산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대하여 다수의 회원국들이 바이오에너지개발에 따른 사회·경제·환경 및 식량안보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논의 강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지구촌의 환경문제를 반영한 물 부족, 생물다양성, 농업·산림·수산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또한, 동 기구의 효율화를 위하여 2005~2007년 기간 중 독립외부평가(IEE)를 추진하여 동 기구 조직, 기능 전반에 대한 평가 및 개선안 도출 후 2007년 11월 제34차 총회에 “성장을 동반한 개혁”이라는 핵심적 결론과, 109개 권고사항과, 300여개의 구체적인 조치계획을 보고하였으며 이의 이행을 위한 즉각적 행동계획(IPA)의 세부일정을 2008년도 특별총회에서 결정하였다. 이후 2009년 11월 제36차 총회와 세계식량안보 정상회의에서 그간 추진된 독립외부평가의 성과(행정절차 간소화, 관리급 감축, 분권화 추진 등)를 제시하고, '09년부터 '13년까지 지속적인 개혁을 수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우리나라와의 관계

우리나라는 1945년 11월 제5차 총회시 가입하여 활동 중이며 1966년 아태 지역총회를 개최하였고, 9회에 걸쳐 이사국으로 피선되어 FAO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제36차 총회에서 2009년 11월~2012년 6월까지 이사국 피선)

특히 2010년에는 제30차 FAO 아·태지역총회를 개최하면서 지역총회 의장국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2009년 현재 우리나라의 회원 분담금 규모는 약 10백만 불 수준이고 191개 회원국 중 11위이다.

2009년 11월 18일~23일 기간 중에 약 190개 회원국, 관련 국제기구, NGO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제36차 총회가 개최되었으며, 우리나라는 통상정책관을 수석대표로 동 회의에 참가하여 총회기조연설을 통해 빈곤퇴치와 식량안보의 중요성, G8 정상회의 해결방안에 기초한 문제의 접근을 강조하였으며, 캐나다 수석대표와 면담을 통해 FAO 개혁에 대한 회원국 간 컨센서스를 마련하여 개혁에 대한 공동대응이 필요함을 상호 재확인하였다.

총회에 앞서 11월 16일~18일 개최된 세계 식량안보 정상회의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수석대표로 참가하여 기조연설과 FAO 사무총장, 호주농업부 장관 등 각 회원국 수석대표와 양자면담을 실시하였다.

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세계 식량문제는 G8라퀼라 정상회의 연장선상에서 구체적인 해결책을 논의하자는 제안과 주곡자급문제를 해결한 한국의 경험을 전수할 용의가 있음을 언급하고, 지난 7월 G8라퀼라 정상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곡물가격 변동 요인 국제 공동연구’를 재차 제안하였다.

사무총장과의 면담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한국인의 FAO 진출확대에 대한 의견 교환과 함께 2010년 경주에서 개최예정인 제30차 아태 지역총회에 대한 사무총장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하였으며, 호주·뉴질랜드·칠레·노르웨이 농업부장과 실시한 양자면담에서는 각 농어업 통상현안을 조율하고 DDA 협상공조를 유도하였다.

36차 총회에서는 2010~2011 기간 FAO 예산 및 분담비율을 결정한 바, 2010~2011년 FAO 예산은 약 10억 불(2년)로 결정하였다. 이는 FAO 개혁과제 수행을 위한 비용 증가(약 4천만 불) 등이 예산증액의 주요원인으로, 전기 이월분(2.5백만 불)과 기타수입을 제외 시 회원국의 순수 분담금은 993백만 불이며 이는 전기(2008~2009) 대비 약 8.4% 증액된 규모이다.

분담금 비율은 UN 총회 분담비율 준용(우리나라 : 2.184%)하여 지난 기간과 변동이 없으며, 우리나라 분담금은 연간 약 10.8백만 불(2009년 현재, 10백만 불)이 된다.

우리나라는 36차 총회를 통해 '09.11월~'12.6월(2년 6개월) 임기의 이사국으로 피선되었다. 이로서 우리나라는 '89년 이후 8회 연속 이사국으로 진출하였으며, 이사국 수행은 1965년~1967년 임기 포함 총 9회에 이르게 되었다.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항구국 조치 협정 또한 금번 총회에서 승인되어, 국제기구가 선정한 IUU(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목록에 등재된 선박과 기타 IUU에 가담한 선박이 입항할 경우 항구국은 입항 금지, 항구서비스(양륙, 환적, 연료

공급 등) 사용 거부, 검색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FAO 헌장 및 규정의 개정에서는 사무총장의 최초 임기를 4년으로 조정(현행 6년) 하고, 사무총장 선출을 위한 특별총회는 임기 종료일로부터 120일 전(현행 90일 전) 개최하기로 변경하였으며, 식량안보위원회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여 식량안보위원회의 사업·예산 검토결과를 FAO 총회와 UN 총회에 직접 보고하도록 개정(현행, 이사회 심의를 거친 후 FAO 총회에 보고)하였다. 또한, 위원회를 WFP와 IFAD 등 관련 국제기구도 참가 가능토록 하여 FAO와 UN 회원국으로 한정되었던 위원회 구성을 보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방하였다.

분담금 인센티브 분담금 납부를 촉진하기 위해 당년 3.31까지 완납한 경우 할인을 적용 인센티브제도 도입하여, 달러화는 0.03%, 유로화는 0.43%의 할인을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정규 총회 개최시기를 매년 6월로 조정(차기 총회는 2011년 6월 25일~7월 2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사회 역할 강화를 위해 이사회 내 session을 현행 3개에서 5개로 늘리고, session 별 활동 기간을 현행 최소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여 업무의 신속을 기하는 한편, 이사회 소집 요구를 위한 최소 정족수는 현행 5개국에서 15개국으로 증가시켰다.

제34차 총회에서 채택된 독립외부평가(IEE) 보고서는 “성장을 동반한 개혁(Reform With Growth)”과 이를 위한 109개 권고사항과 300여개의 구체적인 조치들을 제안한 바, FAO는 동 권고안 이행을 위해 2008년도 하반기에 특별총회를 개최하고 매 기간 FAO 개혁을 중점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였고, 그 성과로 행정절차 간소화, 관리급 감축, 분권화 추진 등을 제시하고 향후 지속적인 개혁 작업 수행을 약속했다.

4. ASEAN+3 농림장관회의

(국제협력총괄과 전산사무관 문광규)

가. ASEAN+3 농림장관회의 개요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은 동남 아시아에 위치한 10개국(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

도네시아)의 회원국과 2개국(파푸아뉴기니, 동티모르)의 준회원국으로 구성된다.

ASEAN은 1967년에 설립되었으며 동남 아시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01년부터는 ASEAN과 한국·중국·일본 등 3개국이 참석하는 ASEAN+3 회의를 하고 있으며 이중 농림장관 회의를 AMAF+3(ASEAN Ministers on Agriculture and Forestry+한·중·일)라 한다.

ASEAN+3 농림장관회의를 통해 ASEAN 국가들과 한국의 협력 사업을 논의하고 미래 전략을 공동으로 구상하여 실행하여 나가고 있다. 2009년에 우리나라가 실시한 ASEAN+3 협력사업과 그 성과를 소개한다.

나. 빈곤극복 및 식량안보 강화

대한민국은 ASEAN+3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다음과 같은 논의를 하고 있다.

동아시아 비상 쌀 비축제(EAERR : East Asia Emergency Rice Reserve)를 준비하고 있다. 동 아시아 지역 내에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자국의 노력만으로는 쌀을 구할 수 없을 경우에 다른 국가에서 쌀을 공급하기 위하여 쌀을 비축하는 제도이다. 재해국가에 쌀을 지원하기 위해 약정된 쌀을 비축하게 되는데 약정(Earmark) 방식과 기여(Stockpile) 방식이 있다.

약정방식은 일정분량의 쌀을 보유하고 있다가 재해가 발생한 국가가 있을 경우 그 쌀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쌀을 제공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첫 번째 방식은 무역거래나 차관의 형식에 따른 것이다, 일반적인 상거래 방식인 Tier 1은 정상적인 상업 거래를 통해 쌀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인 국가 간 무역거래와 비슷하다. 차이가 있다고 하면 긴급을 요하는 쌀의 거래방식을 취해야 하므로 거래 조건, 방식, 가격 등을 신속하게 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는 점이다. 차관(Tier 2)은 장기저리 임대나 무이자 차관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2009.10.24 ASEAN+3 정상회의(태국)에서 쌀 15만 톤을 약정 발표하였다. 각국의 쌀 약정물량은 다음과 같다.

두 번째는 기여방식(Tier 3)으로 쌀을 사무국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그 쌀은 재해가 발생한 국가에 제공하게 되고, 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동아시아 지역의 빈민구호에 활용하게 된다.

<표 2-9-1> ASEAN+3 각국 쌀 약정물량

중국	일본	한국	태국	베트남 미얀마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 시아	싱가폴	라오스 브루나이 캄보디아	합계
300	250	150	15	각 14	각 12	6	5	각 3	787

또한 동아시아 쌀비축제 사무국 운영을 위해 한·중·일은 각각 100만 달러를 기금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다. 인적자원 개발

아세안 국가의 식량안보를 확고하게 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인적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 아세안 식량안보정보시스템 교육(농림수산식품부)
- AI 등 가축전염병 방역기술 연수 및 식물검역 연수(국립수의과학검역원)
- 농촌지도체제 개선을 위한 협력 연수(농촌진흥청)
- 농업 부문 중소기업을 위한 수확 후 관리기술 연수(한국식품연구원)
- 식물검역 연수(국립식물검역원)

아세안 식량안보정보시스템 교육(AFSIS : ASEAN Food Security Information System)은 아세안 지역 내의 식량안보에 기여하기 위해 식량과 관련된 정보(경지면적, 기상, 작황, 시장가격, 수출입, 재고 등)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은 이와 관련된 인적자원의 연수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표 2-9-2> 아세안 식량안보정보시스템 교육현황

	기 간	참가국수 및 참가자수	재 원	결 산
1차	2005. 10. 10 ~ 10. 15(7일간)	12개국 27명	KOICA	67백만 원(52천\$)
2차	2006. 8. 6 ~ 8. 20(14일간)	9개국 23명	KOICA	54백만 원(42천\$)
3차	2007. 8. 26 ~ 9. 4(10일간)	9개국 24명	KOICA	63백만 원(48천\$)
4차	2008. 11. 6 ~ 11. 21(16일간)	10개국 21명	KOICA/농식품부	57백만 원(44천\$)
5차	2009. 7. 30 ~ 8. 14(16일간)	8개국 18명	KOICA/농식품부	77백만 원(58천\$)

조류 인플루엔자는 방역과 질병 발생 시 차단이 어려워 대규모 피해를 볼 수 있고, 사람에게도 감염될 수 있는 질병이다. AI를 효과적으로 진단하고 방역하기 위한 절차와 기술, 진단키트 사용방법 등을 교육하고 있다.

연수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한국의 조류인플루엔자(AI : Avian Influenza) 방역체계 강의, 진단 실습 및 관련시설(축산 가공시설 및 동물병원 등) 견학 등
- 2) 한국의 가축방역체계 전반에 대한 강의 및 질병진단 실습
- 3) 한국의 동물용의약품 등 관리현황 소개 및 유관 산업체 견학
- 4) 한국의 동축산물 검역검사 소개 및 검역현장(공·항만) 견학
- 5) 아세안 국가(연수 참가국) AI 방역현황 국가별 보고
- 6) 아세안 국가 AI 공동 대응방안 토의 및 발표
- 7) 국내 유수의 산업체(포스코, 현대자동차) 시찰 및 문화체험(고궁, 박물관, 한국전통공연 등)

<표 2-9-3> AI 등 가축전염병 방역기술 연수현황

	기 간	참가국수 및 참가자수	재 원	결 산
1차	2007. 5. 7~ 5.12(16일간)	9개국 18명	농림부	37백만 원(30.6천\$)
2차	2008.10.20~11.05(17일간)	8개국 18명	KOICA	16.6백만 원(13.7천\$)
3차	2009. 5. 7~ 5.22(16일간)	7개국 12명	KOICA	13.3백만 원(11천\$)
4차	2010. 5.31~ 6.15(16일간)	8개국 15명	KOICA	15.8백만 원(13.1천\$)

농산물은 일반적으로 수확 후 소비자에게 도달할 때까지 손실률이 30~50% 수준이다. 특히 열대지방의 손실률은 매우 높다. 살아있는 생물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의 농도 등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대부분의 국가는 재배(생산)기술 중심의 연구개발 위주로 하고 있으며, 수확 후 관리기술은 낙후된 상태이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수확 후 관리기술 수준은 이제 시작단계라 할 수 있다.

유통업체의 대형화,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로 일정규격, 품질의 농산품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생산된 농산물의 수출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농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확 후 관리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

수확 후 관리기술 교육은 농산물의 생리작용, 수확 후 관리기술에 필요한 기자재 설명, 농산물의 취급에 필요한 전문기술 등을 교육한다. 수확 후 관리기술은 저온 저장고, 냉장실 등 시설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장방문, 현장 실습을 통해 교육효과를 높이고 있다.

<표 2-9-4> 농업부문 중소기업을 위한 수확 후 관리기술 연수현황

	시행년월 일~일(일간)	참가국(참가자)	재 원	결 산
1차	2008. 11. 23 ~ 11. 31 (8일)	5개국 21명	한·아세안 협력 기금	96.406백만 원 \$74,044
2차	2010. 1. 31 ~ 2. 7 (8일)	10개국 20명	한·아세안 협력 기금	86.023백만 원 \$76,465
3차	2010. 10. 10 ~ 10. 17 (8일)	10개국 20명	한·아세안 협력 기금	\$83,000

다. ASEAN+3 장관회의의 평가

ASEAN 국가의 지속가능한 농업발전과 농업 소득을 높이기 위해 ASEAN과 한국의 협력사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아세안 지역은 식량안보에 취약한 지역으로서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환경을 보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문기술과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ASEAN과의 협력 사업을 통해서 ASEAN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제2절

FTA 협상의 체계적 대응

1. 한·미 FTA 협상

(지역무역협정과 사무관 김정주)

가. 추진배경 및 개요

한·미 FTA는 2006년 2월 협상 개시 후 2006년에는 5차례 공식협상을 진행하였으며, 2007년에는 3차례의 공식협상(제6차~제8차 협상) 및 2차례의 농업분야 고위급 협상이 있었고 협상타결을 위한 최종 장관급 협상이 개최되어 2007년 4월 2일 정부 간 협상을 종료하였으며 6월 30일 공식 서명되었다. 한·미 FTA 협상은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한 국익차원의 결단에 의해 추진되었으나, 경쟁력이 취약한 농어업 분야는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우리 농어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협상 결과를 도출하는 동시에 국내 보완대책도 충실히 마련한다는 정부 전체의 공감대 하에서 협상이 이루어졌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한·미 FTA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양국 의회의 비준과 협정이행을 위해 필요한 관련 법령을 제·개정 후 양국 간 FTA 이행을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했다는 확인서한을 교환해야 한다. 양국 간 확인서한을 교환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 된 후 FTA가 실제 발효된다.

우리 정부는 한·미 FTA 국회 비준안을 2007년 9월 7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비준동의안은 2008년 2월 13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 절차에 들어갔으며 국회 통외통위는 한·미 FTA 찬반 양측 전문가들과 통외통위 위원들이 참여한 “한미 FTA 경제적 효과에 대한 공청회”를 2008년 2월 15일 개최하였다. 비준 동의안을 17대 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국회차원에서 농어촌 지원 대책을 추가 논의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의해 “FTA농어촌지원 대책특위”를 출범(2008년 2월 19일)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한·미 간 쇠고기 협상, 미국의 비준현황, 4월 총선 등의 영향으로 17대 국회에서는 처리되지 못했다.

비준동의안이 17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되어 18대 국회로 넘어감에 따라 정부 내 입법 절차 및 국회 비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게 되었다. 정부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에 대해서 정부 내 입법절차를 마친 후 2008년 7월 1일 국무회의 통과, 7월 3일 대통령 재가를 받은 후 2008년 10월 8일 18대 국회에 제출하였다. 국회의장은 비준동의안을 10월 10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회부하여 국회 내 비준 절차를 진행하였다.

다. 평가 및 향후계획

향후, 한·미 FTA 비준과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미국으로부터 구체적 요구가 온 것은 아니나, 만약 재협상 요구시에는 이미 체결된 협정을 재협상 또는 수정하는 것은 국가 신뢰도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해 나갈 것이다. 특히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확대 여부는 위생검역에 관한 사안으로 한·미 FTA와 별개라는 논리로 대응하고, 또한 우리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30개월령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도록 수입위생 조건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허용하려면 국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을 유념하여 대응(가축전염병예방법)할 계획이다. 국회의장은 비준동의안을 2008년 10월 10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회부하여 국회 내 비준 절차를 진행하였다.

한편, 한·미 FTA 이행에 관련된 24개 법률에 대해 제·개정을 병행 추진하고 있는데 17대 국회에서 이미 2개 법률이 처리되었고 농식품부 소관 법률인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을 포함한 19개 법률에 대해서는 18대 국회에서 제·개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2. 한·EU FTA 협상

(지역무역협정과 사무관 김정주)

가. 추진배경 및 개요

한·EU FTA는 여덟 차례 협상('07.5~'09.3)과 4차례 통상장관회담 이후 대통령 유

럽 순방을 계기로 최종합의안을 마련하였으며, 한·스웨덴 정상회담(7.13)에서 실질적 타결 후 가서명('09.10)이 완료되었다.

제1차 협상('07.5.7~11, 서울)은 협상일정, 협정문 작성방안, 양허방식 등 협상의 기본적인 틀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제2차 협상('07.7.16~20, 브뤼셀)부터 양허안, 원산지, 지식재산권, 위생·검역(SPS) 등 전 분야에 걸쳐서 본격적인 협상을 개시하였으며, 제3차 협상(9.17~21, 브뤼셀)에서는 우리 측이 수정양허안을 제시하고 EU측과의 품목별 협상을 시도하였다. 제4차 협상('07.10.15~19, 서울)에서는 민감품목에 대한 품목별 기술협의시 우리 측이 국내적으로 민감하게 다루는 이유를 설명하였고, 제5차 협상('07.11.19~23, 브뤼셀)에서는 자동차 표준과 공산품 원산지 문제도 양국이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로 부각되었다. 제6차 협상('08.1.28~2.1, 서울)에서는 상품양허, 자동차 기술표준 협상은 진행하지 않고 주로 협정문과 공산품 원산지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제7차 협상('08.5.12~5.15, 브뤼셀)에서는 상품 협상은 개최되지 않아 농수산물 양허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타 농수산업 관련 분야에서는 위생·검역(SPS), 품목별 원산지기준 및 지리적표시 등의 협상이 진행되었으며, 최종 제8차 협상('09.3.23~24, 서울)에서는 관세환급, 원산지, 농산물 양허 등을 중심으로 협의하였으나, 타결을 이루지 못하였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잔여쟁점에 대해서 대통령 유럽 순방을 계기로 최종합의안을 마련하였으며, 한·스웨덴 정상회담(7.13)에서 실질적 타결 후 가서명('09.10) 되었다. 한·EU FTA에서 농수산물은 주요 품목의 민감성 반영을 위해 양허제외, 현행관세 유지 등 예외조치 확보, 관세 존속기간 장기화에 노력하여 쌀은 양허제외, 고추·마늘·양파 등은 현행관세를 유지하고, EU에서 연간 2억 달러 이상 수입되는 냉동 삼겹살을 비롯한 돼지고기, 닭고기, 유제품 등 축산품목은 관세존속기간을 장기화하였다. 수산물은 대 EU 수입과 국내 생산이 많은 냉동 고등어, 냉동볼락 등의 관세를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관세를 철폐토록 하였다.

다. 평가 및 향후계획

EU측이 한·미 FTA와 동등한 수준의 양허를 요구한 데 대해 교역현황 등을 감안, 한·미 FTA와 차별화하는데 노력하여 돼지고기 양허기간·양허방식, 낙농품 TRQ 등에

서 한·미 FTA 결과보다 보수적 양허 결과를 도출하였다.

가서명 이후 법률검토와 22개국 언어번역 작업을 마친 한·EU FTA 협정문에 대해 정식서명은 당초 2010년 상반기에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유럽 재정위기, 일부 국가 이견 등 EU 내부 사정으로 인해 연기되어 2010년 하반기에 정식 서명될 전망이다. 정식 서명 후 양국 의회의 비준 절차를 거치면 잠정발효가 이루어지며, 협정발효를 위한 절차 이행에 대비, 전문가,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보완대책을 사전 준비할 계획이다.

3. 한·페루 FTA 협상

(지역무역협정과 주무관 강봉규)

가. 추진배경 및 개요

2005년 11월 APEC 정상회담시 톨레도(Toledo) 페루 대통령이 FTA 추진을 제안한 이후 2008년 5월 민간공동연구를 마무리하고, 2008년 11월 APEC 계기 양국 정상회담에서 FTA 협상개시를 선언하였다. 한·페루 FTA는 양국 간 교역규모 및 FTA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작지만 풍부한 에너지·광물 자원 보유량과 남미 시장으로의 다각적인 진출 필요성 및 시장 선점효과를 고려하여 추진하였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2009년 3월 협상을 시작하여 각각 공식협상 4회, 소규모회의 1회, 통상장관회담 2회를 개최하였다. 페루측은 2차 협상시 우리 측이 제안한 양허안에 대해 실망감을 표시하면서 자국 관심 농수산물에 대해 3~5년 내 철폐를 요구하였으나, 우리 측은 농수산물과 페루 측 공산품의 민감성을 동등하게 비교할 수 없음을 설명하고 페루측이 실질적 교역대상 품목이외에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수산물의 원산지 특혜관세 적용 기준과 관련하여서는 풍부한 어장을 보유한 페루는 연안국주의를, 우리는 기국주의를 주장하여 입장 차이를 보였다. 특히, 이번 페루와의 FTA에서 우리의 전체 협상의 이익 균형을 위하여 수산협력 분야를 신설, 수산협력약

정 체결을 위한 협의 기반을 마련하는 등 우리 이익 반영을 위해 노력하였다.

다. 평가 및 향후계획

원산지 등 대부분의 분과에서는 실질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상품양허와 관련 타결수준에 대한 입장차이가 상당하여 협상 진행이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한·페루 간 교역실적이 있는 농수산물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오징어 등 일부 수산물에 대해서는 향후 쟁점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 11월 한·페루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협상을 조속히 종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4. 한·콜롬비아 FTA 협상

(지역무역협정과 행정주사 이은경)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정부는 국가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FTA를 확대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연장선상에 콜롬비아와의 FTA를 추진하게 되었다. 한·콜롬비아 FTA는 특히 중·남미시장 진출 발판을 마련하고, 풍부한 에너지, 광물자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 공동연구('09.3~8월)를 종료하고, 여론수렴을 위한 공청회('09.10월)를 거쳐 '09.11.18 일 한·콜롬비아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하여 추진 중에 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정부에서는 민간공동연구('09.3~8월)를 종료하고, 여론수렴을 위한 공청회('09.10월)를 개최하고, '09. 12. 7~9일간 협상 기본 골격(TOR) 협의 및 분야별 양측 입장교환을 위한 한·콜롬비아 FTA 제1차 협상을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다. 평가 및 향후계획

한·콜롬비아 FTA는 향후 제2차 협상에서는 양측 관심품목 및 상품 양허안 작성 방

안과 문안을 바탕으로 논의하고, 제3차 협상부터는 기 교환한 상품양허안과 협정문을 중심으로 구체적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5. 한·GCC FTA 협상

(지역무역협정과 주무관 김순현)

가. 추진배경 및 개요

GCC(Gulf Cooperation Council)는 걸프협력이사회로서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6개국으로 이루어진 중동지역의 경제협력을 위한 지역협력기구이다. GCC 국가들로부터의 원유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을 확보하고, 성장하고 있는 이들 국가 내의 건설시장 진출과 여타 경쟁국에 의한 우리의 수출시장 잠식을 막기 위해 GCC와의 FTA를 추진하게 되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2007년 3월 노무현 대통령의 중동방문 시 한·GCC FTA의 추진 필요성에 양 측이 공감하였고 2007년 11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의 예비협의를와 2008년 1월 한·GCC FTA 추진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를 거쳐 2008년 1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협상 출범을 공식 의결하게 되었다.

양 측은 가급적 2009년 말까지 협상을 타결한다는 원칙 하에 2008년 7월 협상 개시 후 '09년 12월 현재 세 차례 본 협상과 한차례의 회기 간 협상을 개최하였다. 또한, 협상은 상품, 서비스·투자, 원산지·통관, 정부조달, 규범 등 5개 분야로 진행되고 있으며 상품분과의 경우 1차 협상 후 양허안을 교환, 2차 협상부터 본격적인 양허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다. 평가 및 향후계획

협상 전반적으로 분과별 양측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라, 연도 내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전망된다. 그 간의 다른 국가들과의 FTA와 달

리 GCC와의 FTA에서는 농업분야의 민감성은 높지 않은 편이다. 오히려 GCC와의 FTA는 이들 국가 내의 고소득층을 향해 우리 농식품의 수출확대를 모색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6. 한·호주 FTA 협상

(지역무역협정과 해양수산사무관 김종모)

가. 추진배경 및 개요

2006년 12월 양국 정상회담시 FTA 추진을 위한 민간 공동연구 시작에 합의한 이후 2008년 10월 공동연구결과를 토대로 정부간 사전 예비협의를 개최하였다. 2009년 3월 양국 정상은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하였다. 한·호주 FTA 협상은 호주의 여타 국가들과의 FTA 협정 체결에 따라 불리해진 호주 시장의 경쟁여건을 개선하고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서비스·투자 분야를 강화할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다만 농업분야에서는 기대이익이 낮고 개방수준에 따라서 FTA로 인한 영향 정도가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2009년 5월 호주 캔버라에서 제 1차 협상을 개최한 이후 2009년 12월 현재까지 세 차례의 공식협상을 가졌다. 호주는 협상 시작부터 우리나라 시장에서 미국, EU 등 경쟁국들과의 경쟁 여건을 동등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반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호주 측의 관심 품목에 대해서만 요구할 것을 주장하면서, 양국 간 교역 규모 및 구조, 관세율 구조 등이 미국, EU와 차이가 큰 만큼 동일한 양허는 불가하며, 또한 상대국마다 관심이 있는 품목이 다르므로 기계적으로 동일하게 양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특히, 우리나라는 농수산 분야에서 양국 간 기대이익 불균형이 심한 점을 지적하고, 이 분야에서의 기대이익 실현을 위해서는 농수산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인력 교류 및 연구개발 협력, 식량안보 관련 조항을

끝자로 한 ‘농림수산협력’ 협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편, 위생검역 분야, 원산지, 무역구제, 서비스 투자 분야의 경우에는 농수산 분야를 제외하고는 양국 간 의견 차가 상당히 좁혀져 가고 있다.

다. 평가 및 향후계획

공산품 분야에서는 호주가 수세적 입장인 반면, 농수산물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보수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이 두 분야에서의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협상 진전 속도는 양국 간 이익 균형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산업간 이익균형도 양국 발전에 중요한 이슈이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해법이 제시되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 수석대표는 2010년에 협상 타결을 목표로 공동의 노력을 하는데 합의하였다.

7. 한·뉴질랜드 FTA 협상

(지역무역협정과 행정사무관 박상희)

가. 추진배경 및 개요

2006년 12월 양국 정상회담시 FTA 추진을 위한 민간 공동연구 출범에 합의한 이후 2008년 9월 공동연구결과를 토대로 정부 간 사전 예비협의를 개최하였다. 2009년 3월 양국 정상은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하였다. 한·뉴질랜드 FTA 협상은 한국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휴대폰 등 전자제품 수출 확대 및 자원, 방송공동제작, 인력이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다만 농업분야에서는 기대 이익이 낮고 우리나라의 뉴질랜드 주요 수입품목이 몇 가지 품목에 집중되어 있어 개방수준에 따라서 FTA로 인한 영향 정도가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2009년 6월 서울에서 제1차 협상을 개최한 이후 2009년 12월 현재까지 3차례의 공

식협상을 가졌다. 뉴질랜드는 협상 시작부터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가 원칙임을 주장하며 특히, 미국, EU 등 경쟁국들과의 경쟁 여건을 동등하게 하는 수준의 양허를 강조하였다. 반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뉴질랜드 측의 관심 품목에 대해서만 요구할 것을 주장하면서, 양국 간 교역 규모 및 구조, 관세율 구조 등의 차이가 있는 만큼 특정국과의 동일한 양허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특히, 우리나라는 농수산 분야에서 양국 간 교역구조 및 관세율 구조의 차이로 인해 기대이익 불균형이 심한 점을 지적하고, 이 분야에서의 이익 균형을 위하여 농수산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력 교류 및 연구개발 협력, 식량안보 관련 조항을 골자로 한 ‘농림수산협력’ 협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상품분과 뿐만 아니라, 위생검역, 원산지, 무역구제 등의 분과의 경우에도 농수산 분야에서는 아직 양국의 입장 차이가 큰 상황이다.

다. 평가 및 향후계획

뉴질랜드는 높은 수준의 자유화에 기초한 포괄적 FTA를 계속 주장해 오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농수산물 분야에서 보수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양국의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까지 일부 분과(환경, 경쟁 등)의 경우 의견 일치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농수산 분야와 관련된 상품, 원산지, 무역구제, 위생검역, 농림수산분야 협력 등에서는 양측의 의견 차이가 큰 만큼 향후 협상 진전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8. 한·인도 CEPA 협상

(지역무역협정과 농업사무관 유진오)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우리나라는 인도의 정치·경제적 및 지정학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도와 경제협력 증진 방안의 일환으로 2004년 10월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을 위한 공동연구그룹의 구성에 합의하였다. 2006년 2월에는 실질적인 협상을 위한 공동작업반이 구

성되어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되었다. 2006년 3월 1차 협상 이후 열다섯 차례 협상을 통해 쟁점을 논의하여, 2008년 9월 제12차 협상에서 실질 타결되었다. 한·인도 CEPA 협상은 한국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휴대폰 등 전자제품 수출 확대 및 서비스교역, 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다만 농업분야에서는 기대이익이 낮고, 인도가 농산물 수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실제 농산물 교역 흑자를 시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였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한·인도 CEPA는 열다섯 차례 협상('06.3~'08.9) 중 제12차 협상에서 차관급 협상을 통해 실질 타결하였으며, 4차례 법률 검토를 거쳐 협상 발효('10.1)되었다. 한·인도 CEPA에서 농수산물은 주요 품목의 민감성 반영을 위해 기 체결된 FTA에 비해 낮은 개방수준으로 타결하여 농업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였다. 쌀, 육류, 과채류, 양념류 등 민감품목 포함 대부분의 품목을 양허제외 및 관세 부분감축 등 민감유형에 분류하였고, 사료용 박류, 종자류 등 수입이 필요하거나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품목은 단기 또는 즉시철폐 유형에 분류하였다.

다. 평가 및 향후계획

한·인도 CEPA에서 대부분의 민감한 품목은 양허 제외하는 등 낮은 수준으로 체결하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대인도 수입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대부분 수입이 필요한 품목이므로 무역창출효과 보다는 수입 전환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위생·검역, 원산지, 투자·서비스 분야도 우리 측 의견을 대부분 반영시켜 위생 관련 안전성 확보, 우회수입 방지 등도 제도적으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인도는 주요 농산물 수출국으로 농업 잠재력이 커 향후 한·인도 CEPA 이행 시 추가 양허 요구 등에 신중히 대응할 예정이다.

제3절

농업관련 국제기구 활동 및 국제농업협력 사업 확대

1. 세계식량계획(WFP)

(국제협력총괄과 주무관 전지수)

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은 개도국 기아해방을 위한 잉여농산물 원조목적으로 창설되어 FAO 및 유엔경제사회이사회와 긴밀히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WFP 재정지원 규모는 1981년 연 6만 불로 개시되었으며 1997년 54만 불 규모로 증액시켜오다가 IMF 사태 이후 지원규모를 줄여 2002년부터는 10만 불을 지원해 오고 있다.

2.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국제협력총괄과 주무관 전지수)

국제농업개발기금(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은 2009년 2월 18일~19일 기간 중 이태리소재 본부에서 165개 회원국, 관련 국제기구, NGO등이 참가한 가운데 제32차 총회를 개최하였다.

우리나라를 포함, 약46개국 대표들은 FAD의 더 강화된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FAD의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역할 수행을 위한 지속적 개혁을 요청하였다.

우리나라는 통상협력관을 수석대표로 동 총회에 참가하여 IFAD의 효율성 제고와 기아, 빈곤 극복을 위해 노력한 전임 총재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새로 선출된 후임 Nwanze 총재에게 리더쉽을 발휘해 주길 요청하였다. 또한 IFAD가 추구해 온 농촌빈곤 퇴치와 기아근절 노력을 적극 지지하고 제8차 IFAD 기금조성 증액목표 수준에 맞

추어 우리의 기여수준도 증액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요지의 기조연설을 하였다.

제8차(2010~2012년) 기금조성에서는 제7차 기금조성 대비 증액 목표(12억 불, 7차 대비 67% 증액) 수준에 합의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후임 총재로 1차 투표시 과반수 득표한 Kanayo F. Nwanze를 선출하였다.

2009~2011 이사국 선출에서는 우리나라를 교체이사국(2009)으로 선임하였으며, Republic of the Marshall Islands의 가입을 승인하고 제7차 기금조성 상황보고, 제8차 기금조성협의 최종결과 보고, 2007 재무감사보고 등 9개 안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였다.

최근 소농이 직면한 위기 극복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해 원탁 토론 회의를 개최하여 ① 근래의 예측 불가능한 시장과 가격 변동에 대한 소농의 대처방안 ② 경지수요 증가에 대한 농민의 대처 ③ 급격한 기후와 환경변화에 대응한 연구와 혁신 필요성 등 3개 주제에 대해 패널 발표 및 토론이 이루어졌다.

3. 아프리카·아시아농촌개발기구(AARDO)

(국제협력총괄과 주무관 전지수)

아프리카·아시아농촌개발기구(Afro-Asia Rural Development Organization)는 2007년 1월 8일~12일 기간 중 회원국에게 UN의 새천년개발목표(MDG)의 빈곤타파를 위한 새로운 농촌개발정책수립과 농촌개발노력을 촉구하기 위하여 농촌개발 연찬회 및 각료회의를 개최하고 “농촌개발에 관한 뉴델리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그 골자는 빈곤타파를 위한 적절한 자원배분, 여성의 권익보호, 빈곤타파를 위한 공동협력활동 약속 등이며, 우리나라는 농촌개발 연찬회에 참가하여 “한국의 농촌개발전망 : 교훈과 도전”이라는 주제로 농촌사회의 급속한 변화와 발전을 소개하고 1990년대 후반부터 가속되는 세계농업시장개방과 관련된 주요 정책들을 설명하였다.

2009년 11월 12일~11월 14일, 리비아 트리폴리에서 개최된 제59차 집행위원회에서는 Ms. S. Bahuguna 사무차장 임기를 1년 연장('10.12월 만료)하고, 제60차 집행위원회('10)를 오만에서 개최기로 결정하였다.

그 외 우리나라 관련사항으로는 제57차 집행위원회 권고사항인 극동지역사무소의 “아·태농정포럼” 초청대상을 전 회원국으로 확대할 계획임을 언급하여 회원국들의 긍정적인 참여의사를 이끌어내었다.

한편, AARDO극동지역사무소(우리나라) 주관으로 6월 18일~7월 3일까지 농진청에서 ‘지속가능한 농업개발 연수프로그램을 실시하여 19개국 22명이 이에 참가하였으며, 9월 1일~9월 2일에는 제주대학교에서 제8차 아·태 농정포럼을 개최하여 13개 회원국이 이 포럼에 참석하였다.

4. 국제농업협력 사업 확대

(양자협상협력과 사무관 흥만의)

가. 추진배경 및 개요

국가 간 상호의존도가 증대하고 있는 글로벌 시대에 국가 이미지 제고와 FTA/DDA 등 농업협상에서 우리나라의 입지 강화를 위해 국제협력은 필수 불가결한 과제이다.

최근 들어 동남아 및 아프리카 개도국을 중심으로 우리의 농업·농촌발전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려는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고, 농식품 수출시장 확대 등 우리 농업의 외연 확대를 위해서도 개도국과의 협력기반 조성이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국제농업협력 사업은 개도국에 대한 농업관련 기술전수, 물자지원 등을 통해 국제적인 기아 및 빈곤 감축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 개도국의 빈곤문제 해결 및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는 한편, 양자 간의 호혜적 협력기반을 조성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개도국들의 주된 산업이 농업이며,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우선 지원분야가 농업임을 감안할 때 국제농업협력 사업의 역할이 매우 크다 할 것이다.

국제농업협력 사업은 첫째, 개도국 농업·농촌개발 지원을 통한 빈곤퇴치 기여로 국가 이미지 제고, 둘째, 아국에 우호적인 세력 확보로 DDA/FTA 협상 측면 지원, 셋째, 농식품 관련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협력기반 조성 등을 목표로 삼고 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농식품부에서는 2006년부터 개도국과의 협력기반 조성 등을 위해 ODA 사업의 일환으로 국제농업협력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06년 7억 원, 2007년 10억 원, 2008년 14억 원, 2009년에 26억 원을 지원하여 개도국 농업관련 종사자 초청 연수, 전문가 파견 컨설팅 등 주로 인적자원 개발과 시범사업 위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연차적으로 지원규모를 확대해 왔다.

특히, 2009년도에는 베트남에 가공용 감자종서 생산시설 및 기술지원 사업, 한·몽골 농업협력약정 후속사업, 모잠비크 농업기술 보급체계 구축 시범사업, ASEAN 회원국 식물검역 전문가 초청 연수 및 워크숍 개최, ASEAN 회원국 간 축산물 안전관리 세미나, 캄보디아 주요동물 질병 역학 및 방제기술 지원 사업 등 22건의 협력 사업에 26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수원국가로는 몽골,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부탄, 네팔, 인도네시아, 라오스, 모잠비크, 파푸아뉴기니, CIS지역 국가, SEARCA 회원국, 아세안 회원국 등이 있다.

다. 평가 및 향후계획

개도국 농업·농촌발전을 위한 우리의 지원은 2006년도에 도입되어 추진기간이 짧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와 국가 위상에 비해 지원규모가 작은 편이고 지원내용도 농업관련 종사자 초청 연수, 전문가 파견 컨설팅 등 주로 인적자원개발과 소규모 시범사업 지원 중심으로 추진되어 아직은 양적·질적으로 많이 미흡하다.

따라서, 앞으로는 사업당 지원 규모 확대하여 중장기 사업을 추진함과 아울러, 지원내용도 다양화하여 개도국 요구에 부응하는 협력 사업을 발굴,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확대되는 사업을 전담하여 관리하는 실무기관의 설치 등 협력 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총괄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09.11월 가입), '10년도 G20 의장국으로서의 국가위상에 걸맞게 개도국의 농업·농촌발전을 통한 식량안보, 빈곤퇴치 등 글로벌이슈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개도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국제농업협력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제10장

녹색성장 및 新 성장동력 확충



1. 농림수산식품분야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전략 마련

(녹색미래전략과 사무관 신우식)

가. 추진배경 및 현황

지구온난화의 심화는 농림어업에도 큰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가뭄·홍수·폭염·산불·산사태 등 기상재해가 빈발하게 되며, 중장기적으로는 작물의 재배적지가 변화하고, 바다 사막화가 확산되고, 냉수성 어종의 어획량이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동·식물 병충해의 이상 발생과 농작물의 품질저하와 수량 감소 등 농어업 생산 활동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에너지 소비국으로 총에너지의 97%를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농림어업의 에너지 소비는 3,256천TOE('06에너지소비통계, 에너지관리공단)로 국내 총 에너지소비(173,584천TOE)의 1.8% 수준이다. 농림어업의 에너지 소비는 대부분 석유에 의존하고 있어 국제 유가(油價) 상승시 농어업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1.4%로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OECD 평균 6.7%).

또한 우리나라의 농림어업은 화학비료, 농약 다량투여 등 高환경 부하형태로 발전해 왔다. 농약 사용량은 2008년도 13.2kg/ha로 OECD 국가 중 1위로 2위인 네덜란드의 8kg/ha보다 5kg 이상 많이 사용하고 있다. 90년대 이후 기후변화협약 대응차원에서 친환경 농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전체 농산물 중 친환경 농산물 생산비중은 '08년 현재 3.6%로 미미한 실정이다.

지구온난화, 에너지 및 자원 고갈, 환경훼손 및 오염 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환경훼손과 오염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경제성장 패러다임을 경제적 효율성(Economic Efficiency) 중심에서

생태 비용의 내부화, 자원 효율성 최대화, 오염 영향의 최소화 등을 중시하는 생태적 효율성(Ecological Efficiency) 중심으로 전환하여 에너지·경제·기후·생태간의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발전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나. 저탄소 녹색성장의 개념과 농림수산식품분야의 대응

저탄소 녹색성장은 지속가능발전 즉 경제발전·사회적 형평·환경보호 통합 등의 추상성·광범위성을 정책실현 가능성면에서 보완하는 개념으로 경제성장을 하되, 경제성장의 패턴을 환경친화적으로 전환시키자는 경제성장과 환경파괴의 탈동조화(Decoupling)를 실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범국가적 발전 패러다임인 녹색성장을 정책적으로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녹색성장 위원회’가 출범되었으며(2009.2.16),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을 확정·수립하였다(2009.7.6). 또한, 2010년 4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추진 근거가 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공포되었다.

농림수산식품분야는 산업의 특성상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1차 생산물을 생산해야 하므로 타 분야에 비해 환경과 연계한 지속가능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러한 국가 경제발전의 패러다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농림수산식품산업을 자원순환형(자연친화적)산업으로 개편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시대의 新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분야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전략’을 마련(2010.2.3)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 농림수산식품분야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전략

농림수산식품분야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전략은 크게 3대 전략과 9대 추진과제 및 50개 실천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바이오매스 타운 조성, 녹색기술개발, LED집어등의 보급 확대 등 농림수산식품업을 저투입·고효율화 하는 것이고 둘째, 농산어촌을 녹색공간화하기 위해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등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고, 농산어촌 지역에 신재생 에너지 주택보급을 추진하며, 마지막으로 저탄소형 푸드시스템 기술을 보급하고, 소비자에게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저탄소 국가 식품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국격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표 2-10-1> 농림수산물분야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전략

비전	국민행복과 국가번영을 선도하는 농림어업 · 농산어촌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2 배출량 : ('05) 1,470만 톤CO2 → 국가 감축계획에 따라 설정 ■ 바이오에너지 공급비율 : ('07) 6.6% → ('13) 8.8 → ('20) 15.7 ■ 친환경농산물 비중 : ('07) 3.0% → ('13) 10.0 → ('20) 15.0 		
3대 전략	1. 저투입·고효율 녹색 산업화 2. 자연자원의 지속가능 이용 · 관리 3. 국민건강 증진과 국격 제고		
9대 추진과제	전략 1. ①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촉진 ② 녹색기술·장비 보급 확대 ③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전략 2. ④ 농산어촌 활력증진 ⑤ 탄소흡수 녹색공간 확대 ⑥ 고부가 생명산업 육성	전략 3. ⑦ 친환경 농산업 기반 육성 ⑧ 저탄소 국가 식품시스템 구축 ⑨ 녹색생활 실천 확산
실천과제	50개 실천 프로젝트		

자료 : 농림수산물분야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전략, 2010년

<표 2-10-2> 농림수산물분야 저탄소 녹색성장 50개 실천 프로젝트

50개 실천 프로젝트	담당부서
1-1-1. 가축분뇨 자원화·에너지화	축산정책과
1-1-2. 산림바이오매스 공급 확충	산림청 산림자원과
1-1-3. 목재펠릿 수요확대	산림청 목재생산과
1-1-4. 농산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과학기술정책과,농진청
1-1-5. 해조류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자원환경과
1-2-1. 녹색기술 R&D 투자 확대	과학기술정책과,농진청
1-2-2. 시설원에 에너지절감 장비 보급	채소특작과
1-2-3. 농업용 LED 이용효율성 향상	농진청
1-2-4. 유용미생물 이용기술 개발	농진청
1-2-5. 어선 유류비 절감	어업정책과,수산과학원
1-2-6. 소형 어선 전기시스템 개발	어업정책과,수산과학원
1-2-7. 지하해수 개발	자원환경과,수산과학원
1-2-8. 소수력 발전	한국농어촌공사
1-3-1.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녹색미래전략과
1-3-2.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녹색미래전략과
1-3-3. 농·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기술개발	농진청
1-3-4. 해양예측, 어족자원 변화 관리강화	어업정책과,수산과학원

1-3-5. 해외 농업정보 수집	국제협력, 양자협상, 농진청
1-3-6. 동·식물·수산물 병해 관리	축산경영, 검역원, 식검, 수검원, 농진청, 산림청
1-3-7. 농업경영체 정보화, 자동화	정보화담당관, 농진청
1-3-8. 산림 재해예방 및 생태계 모니터링	산림청
1-3-9. 농작물 재배보험 활성화	농업금융정책과
1-3-10. 개도국 조림, 국제기구 유치 등 해외협력	산림청
1-3-11. 북한 산림 및 공유하천 복구 지원	산림청
2-1-1. 체험·생태관광 인프라 확대	농촌사회, 수산개발, 농진청, 산림청
2-1-2. 새만금을 녹색성장 시범지역으로 육성	4대강새만금과
2-1-3. 농촌형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녹색미래전략과
2-1-4. 산촌형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산림청
2-1-5. 친환경 농어촌 주택 표준설계도 개발·보급	지역개발과
2-1-6. 농업용수 관리강화	농업기반과, 농진청
2-1-7. 도농교류 활성화	농촌사회과, 농진청
2-1-8. 팔도강산 금수강촌 만들기	4대강새만금과
2-2-1. 유희토지 조림 및 도시녹화 확대	산림청
2-2-2. 산림 생태계 보전강화(생태숲)	산림청
2-2-3. 해양 생태계 보전강화(바다숲)	자원환경과
2-2-4. 생활원에 실용화	농진청
2-3-1. 신소재 기능성 작물개발	과학기술정책과, 농진청
2-3-2. 수산 바이오산업 육성	국립수산과학원
2-3-3. 고부가 종자산업 육성	과학기술정책과, 농진청
2-3-4. 형질전환 가축 개발	농진청
3-1-1. 친환경 농산물 생산비중 확대	친환경농업과
3-1-2. 친환경 농자재 산업 육성	친환경농업과
3-1-3. 친환경 어구보급 확대	어업정책과, 수산과학원
3-1-4. 제2녹색혁명 추진	축산정책과
3-2-1. 첨단 식품클러스터 확충	식품산업정책과
3-2-2. 식품정보 제공 확대(원산지, 푸드마일리지 등)	식품산업, 소비안전
3-2-3. 고부가 저탄소 식품기술개발	식품산업정책과
3-2-4. 한식세계화	식품산업정책과
3-2-5. 농림수산식품분야 탄소표시제 도입	녹색미래전략과
3-3-1. 녹색식생활 운동 확대	식품산업정책과

자료 : 농림수산식품분야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전략, 2010년.

라. 평가 및 향후계획

‘농림수산식품분야의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전략’을 통해 불필요한 에너지를 절감하고, 신재생 에너지 이용을 활성화하여 농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기후변화의 시대에 농림수산업의 중요성과 가치를 재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장기 계획인 추진전략을 뒷받침 및 보완할 수 있도록 매년 ‘연도별 중점 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50개 과제 중 중점 추진과제를 매년 선정하여 집중 관리를 실시할 것이다. 연도별 중점 추진계획은 총리실의 특정평가와 연계하여 성과의 극대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녹색성장의 대국민 이해도를 높일 수 있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신규 녹색사업을 발굴 추진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정책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 농림기술개발사업

(과학기술정책과 서기관 박정훈)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지금은 지식·정보·기술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성장의 동력이 되는 지식기반 경제 시대이다. 개방화·세계화 시대에 우리 농업이 지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국제 경쟁력의 확보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1994년부터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장애로기술 및 첨단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농림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7년에는 국내외 환경 및 국가 R&D 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산업화·실용화 위주의 기술개발 추진, 기술분류체계 개편 등 사업체계를 개편하여 공모유형에 따라 기획과제(지정공모형)와 일반과제(자유응모형)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다.

2009년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첨단융복합 기술, 농식품 수출증대, 식품 연구개발 분야 등에 중점적으로 지원하였다. 2010년부터는 미래 新성장동력으로서의 식품산업 육

성을 위하여 '고부가 식품개발사업'을 분리하였고, 농산업을 견인할 핵심기술 확보 및 우수 연구집단 육성을 위한 장기 R&D 프로그램인 농업연구센터(ARC)를 신규로 추진하고 있다.

<표 2-10-3> 농림기술개발사업 유형

구 분	기획과제(지정공모형)	일반과제(자유응모형)
내 용	농정목표 달성을 위해 시급히 개발해야 할 기술과제 또는 기술수요가 많고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유망기술 등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사업내용 등을 지정하여 공모하는 과제	농림업관련 첨단기술, 부가가치 제고 기술 및 산업화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연구자가 자유로이 발굴하여 제안·응모하는 과제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연구과제 관리현황

농림기술개발사업으로 1994년부터 2009년까지 총 4,462개 과제 7,422억 원을 지원하였다. 2010년도에는 계속추진과제 255개 477억 원, 신규선정과제 95개 235억 원 등 총 350개 과제에 730억 원을 지원하였고, 그 중 신규로 선정한 농업연구센터에 30억 원을 지원하였다.

<표 2-10-4> 농림기술개발사업 과제관리 현황

(단위 : 개, 억 원)

구 분	1994 ~ 2009년		2010년			
	과제수	금 액	계속과제	금 액	신규과제	금 액
합 계	4,462	7,422	255	477	95	253
기획과제	198	1,552	47	215	15	94
일반과제	4,264	5,531	208	262	80	130
사업관리비		339				29

2) 완료과제의 성과활용 현황

2009년까지 농림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연구개발이 완료된 과제는 2,557과제이며, 이 중 339과제(13.3%)가 산업체 및 농가에 기술 이전되어 활용되고 있다. 또한 정책 활용에 379(14.8%), 기술교육 및 컨설팅에 753(29.4%), 지식기반조성(특허, 논문, 인력양성)에 965(37.7%), 타 연구 활용에 19(0.7%)과제가 활용되고 있다.

<표 2-10-5> 농림기술개발사업 완료과제 성과활용 현황(1994~2009년)

(단위 : 개)

구 분	농산업 기술사업화	정책 활용	기술교육/ 컨설팅	지식기반 조성	타연구 활용	성과활용 추진 중	성과 미활용	합 계
과제수 (%)	339 (13.3)	379 (14.8)	753 (29.5)	965 (37.7)	19 (0.7)	18 (0.7)	84 (3.3)	2,557 (100)

* (2009년 12월 31일 기준)

다. 평가 및 향후계획

2009년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 단위사업평가 결과 농림기술개발사업의 연구방향은 과학기술기본계획과 부합하고, 수출활성화·식품안전 등에 대한 연구증가는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농업생명공학기술 예산지원의 감소, 폭넓은 연구 분야와 많은 과제 수는 소액지원이라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1년부터는 농림기술개발사업을 생명산업분야의 중추 사업으로 확대하고자 '생명산업기술개발'로 명칭을 변경하고 '첨단생산기술개발', '수출전략기술개발', '융복합연구센터'사업으로 분리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농림수산식품 R&D 기획단」을 운영하여 신규 대형 과제를 발굴·기획할 계획이다.

3. 신성장동력 고부가 식품산업 추진

(식품산업정책과 서기관 최정록)

가. 추진배경 및 개요

급속한 세계화 추세와 함께 에너지·환경 문제, 기술혁신 가속화 등 경제발전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국가 차원의 새로운 경제성장 전략과 고부가·친환경 산업구조로의 이행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총리실 주관 범부처 차원에서 3대 분야 17대 신성장동력을 선정하고, '09.5월 이에 대한 비전과 발전전략을 발표하였다. 신성장동력은 '시장성', '과급효과', '녹색성장 연관성'을 기준 척도로 선정되었고, 농식품부는 첨단융합산업을 포함하여 있는 '고부가 식품산업' 추진을 담당하게 되었다.

<표 2-10-6> 3대 분야 17대 신성장동력 선정 결과

3대 분야	17대 신성장동력
녹색기술산업 ¹⁾	(6)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에너지, 고도 물처리, 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 그린도시
첨단융합산업 ²⁾	(6) 방송통신융합산업, IT융합시스템, 로봇 응용, 신소재·나노 융합,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고부가 식품산업
고부가서비스산업 ³⁾	(5)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 금융, 콘텐츠·소프트웨어, MICE·관광

주 : 1) 녹색기술산업 : 미래 성장의 바탕이 되고 기후변화·자원위기에 대한 해결능력이 큰 분야
 2) 첨단융합산업 : 세계시장규모가 크고 우리나라의 기술역량이 높아, 융합을 통해 기존 산업의 고도화와 신산업 창출이 가능한 분야
 3) 고부가서비스산업 :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크고, 기존 서비스업에 경제적 측면을 보강하여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분야

나. 추진내용 및 성과

전 세계적인 고급화, 웰빙·건강, 안전성 중시 등 식품선택 기준의 변화로 유기식품, 기능성식품 등 고부가 식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고부가 식품산업’은 「녹색성장을 견인하는 세계일류 식품산업」이라는 비전하에 세부과제로 1) 기술을 접목시킨 차별화된 고부가 전략품목을 개발하고, 2) 식품산업을 선도할 핵심 인프라를 조성하며, 3) 대내외 수요 창출을 유도하고 있다.

1) 고부가 전략품목 개발

세계 식품시장의 틈새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미래 유망식품 개발에 필요한 원천·응용 기술 개발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미래 유망 식품·식품소재’, ‘BT·NT 등 신기술 융합’, ‘식품 안전성’ 관련 기술을 집중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신성장동력 기술로드맵」과 '09.6월 수립한 「식품산업 R&D 중장기계획」에 따라 세부기술을 전략적으로 지원 중에 있다.

세계 5대 건강식품의 대부분이 발효식품인 만큼 전통·발효식품에 대한 산업화·현대화를 통해 발효기술을 응용한 다양한 고부가 식품의 생산 및 수출 확대를 도모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09년부터 전통식품 개발·판매·유통망 확충, 홍보 등 전통발효식품 업체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성분·효능 등에서 우수성을 가지고 있는 국내산 천일염의 세계 명품화를 위해 친환경적 생산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산 천일염의 우수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홍보하며, 다양한 가공용 소금, 기능성 소금 개발 및 수출상품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09.8월 '우리 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함으로써 우리 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2) 식품산업 발전을 선도할 핵심 인프라 조성

동북아 식품시장 선점을 위해 식품기업·연구소·대학 등이 집적된 약 239ha 규모의 국가 식품클러스터를 '13년까지 전북 익산에 조성할 예정이다. '09.11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11년 착공을 위해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비자 선정 등 후속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R&D 중심지로서 식품 전문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하고, 국가 식품클러스터와 지역 식품클러스터와의 연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발효제어, 저장연장 등 김치 관련 핵심기술 및 신개념 김치 개발 등을 통해 김치 세계화와 김치산업의 육성·발전을 선도할 세계 김치연구소 입지를 '09.7월 광주로 선정하였고, 세계김치연구소 설립을 위한 후속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3) 대내외 수요 창출 확대

한식은 한류열풍에 따른 세계인의 관심 고조와 함께 건강식으로서의 영양학적 우수성, 다양한 식재료와 조리법 등의 특성으로 인해 세계화 가능성이 높은 음식으로 각광받고 있다. 한식세계화는 세계인이 즐기는 우리 한식이라는 비전하에 한식의 산업화·세계화를 위해 '09.4월 인프라 구축, R&D 확대, 한식전문인력 양성, 한식당 경쟁력 강화, 한식 홍보 등 5개 분야 추진전략을 수립·발표하였다. 또한, 한식 세계화 정책 수립·자문 등을 위한 민·관 합동 '한식세계화 추진단'이 '09.5월 발족하였다.

이러한 세부 추진전략 및 민간추진체계 구축에 따라, 한식 전문교육 확대, 해외진출 지원 강화 및 국내외 한식 홍보를 추진하였다. 한식 전문교육의 경우 '09년 7개소에서 한식 전문가 과정을 운영하여 150명을 배출하였으며, 해외 진출에 필요한 지역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고 해외 한식당 개설자금을 지원하였다.

다. 평가 및 향후계획

'09년 국가 17대 신성장동력으로 '고부가 식품산업'이 선정되었다는 것은 식품산업을 신성장 동력화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영역 확대 및 가시적 성과 도출을 통해 식품산업을 새롭게 인식시킨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특히,

한식 세계화는 '09.9월 국민여론조사 결과 한식세계화 필요성에 93%, 실현가능성에 70%가 공감하는 등 한식 세계화 붐 조성으로 한식에 대한 국내외 인지도를 제고시켰다. 막걸리의 경우 2009년 히트상품 1위에 선정되면서 막걸리 바 등 새로운 시장 창출, 수출 확대 등에 따라 시장 규모가 급신장할 전망이다.

'10년부터는 식품분야에 대해 효율적인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고부가가치 식품기술 개발사업을 농림기술개발사업과 분리하여 추진하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소금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법 개정 등 전통·발효식품의 산업화·현대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국가식품클러스터 및 세계김치연구소의 '11년 착공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유기가공식품산업의 생산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유기농식품산업 육성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한식 세계화는 '한식 세계화 추진단'의 집행기구인 '한식재단' 및 해외한식당 협의체 설립 등을 통해 민간추진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한식 전문교육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한식 홍보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1. 농어업선진화위원회

(농업정책과 사무관 정용호)

가. 추진배경 및 개요

1) 출범배경

농어업과 농어촌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농어업계와 정부는 우리 농어업과 농어촌을 선진화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농어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고, 살기 좋은 농어촌 건설을 위해 민·관이 뜻을 모은 것이다. 농어업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해 농어업계, 학계, 소비자 대표 및 정부관계자 등 68명의 위원으로 ‘농어업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009년 3월 23일 공식적으로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2) 위원회 구성·운영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간 대표가 공동위원장이인 농어업선진화위원회는 총 6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사전 논의 기구로 5개 분과위원회와 기획위원회도 구성하였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 1) 우리나라 농어업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기회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해 농어업 선진화위원회에서는 그동안의 농어업 정책 추진체계와 시스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였다. 위원회가 논의를 통해 도출한 농어업 선진화의 기본적인 정책목표와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개방 확대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어가의 경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소득 안정장치를 확충한다. 둘째, 농어촌의 주거, 의료, 보육과 교육 등 기초서비스를 개선하여 삶의 질을 높인다.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 농어촌을 활력 있는 공간으로 바꾼다. 셋째,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강력하게 추진한다. 농어업을 새로운 미래 성장산업으로 키우고, 녹색성장시대에 부응하여 지속가능한 농어업 발전기반을 마련한다.

2) 위원회는 이러한 정책 방향에 맞게 54개 과제를 발굴·논의하여, 직불제·보조금 개편, 농어촌 복지향상 등 42개 과제를 2009년 7월 27일 다음과 같은 추진계획에 합의하였다.

가) 농어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현재 9개의 직접지불제를 「공익형 직접지불제」와 「경영안정형 직접지불제」로 체계화, 단순화한다. 직접 지불제가 시장을 왜곡하지 않으면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확대 개편한다. 고령농의 소득보전과 전업농의 규모화를 촉진하기 위해 경영이양직불제를 활성화하고, 농지담보 노후연금제도를 도입한다.

나)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촌 서비스 기준」을 올해 말까지 도입하여 교통, 주거, 교육 등 생활과 밀접한 8개 분야의 공공서비스 목표를 설정한다. 영세농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농어촌형 사회적 기업을 적극 육성한다.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농어촌 특례를 농어촌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

다)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업의 체질강화를 위해 농어업 보조금을 개편한다. 농어업 보조금 총액은 현 수준을 유지한다. 보조금은 공공성이 높은 사업 중심으로 전환하고 국제규범에 저촉되는 보조금은 개선해 나간다. 농어업 체질강화를 위한 보조금과 소득·복지지원을 위한 보조금은 구분하여 상호 효과를 높여 나간다.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분야의 보조금은 확대하고, 정기적으로 보조금의 성과를 평가하여 효율성이 낮거나 정책목표가 달성된 보조금은 축소하거나 폐지한다. 기업적 형태로 성장한 경영체에 대해 “보조금 졸업제”를 도입한다.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을 통폐합하고 보조율을 단순화한다.

라) 농어업을 미래 녹색성장의 기반산업으로 육성한다. 화학비료, 농약, 양식생 사료 등의 과다사용으로 토양 및 수질오염이 심각한 우리의 흙·물·바다를 살리고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지원체계를 바꾸어 나간다. 가축분뇨는 고품질 퇴·액비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안전성과 품질평가

기준을 설정한다. 목재 펄릿은 농산촌 난방, 시설원에 등의 친환경 에너지 원으로 사용함으로써 산림자원의 에너지 활용도를 높인다.

- 마) 주요 품목별로 선진국과의 경쟁력 격차를 점검하고, 생산에서 소비까지 단계별 비용발생 요인과 부가가치 창출요인을 분석하여 비용은 최소화하고, 부가가치는 극대화해 나간다. 품목별 대표조직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수급조절, 마케팅 등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미곡종합처리장(RPC)이 주축이 되어 쌀 수탁비율을 확대하는 등 쌀 산업 구조를 개편한다. 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의 관리를 강화한다. 종자·종축산업을 미래의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
- 바)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고려하는 국가 식품시스템의 관점에서 식량안보와 식품안전 목표를 설정한다. 국내 생산여건과 세계시장의 수급동향 등을 고려하여 주요 품목별로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설정·관리한다. 농식품의 위생안전은 「농·어장에서 식탁까지」, 「국경에서 가정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관리한다. 농식품의 위생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식품 위험평가에 대한 기술개발 등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한다.
- 사) 어업인의 자율을 바탕으로 강한 수산업을 육성한다. 연근해 어업은 구조조정 촉진으로 자원량 대비 최적의 어획능력을 유지한다. 양식 어업은 외해 진출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으로 전환한다. 원양어업은 생산·가공·유통·판매 등이 융·복합된 해외식량자원산업으로 육성한다. LED 집어등, 유류절감장치 등 저탄소 녹색 어업기술을 확대·보급하고 수산과 해양환경의 통합 시너지를 강화하여 수산업의 외연을 확대한다.
- 자) 농정 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농정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한다. 농어업인 단체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반영하고, 책임 있는 정책파트너로서 정책수립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농정협의체 설립 방안을 계속 논의한다.
- 차) 쌀 관세화 조기이행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농어업선진화위원회 내에 쌀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국제 쌀 가격 동향, 국내 쌀 산업에 미칠 영향 등을 충분히 검토한다. 농어업인과 소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적인 합의를 도출한다.

카) 위원회는 그동안 진행과정에서 구축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농어업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개선, 농어업 금융체계 개편, 부채 농어가의 경영회생 방안, R&D 효율화 등 주요과제를 계속 논의한다. 현장에서 제기되는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간다.

3) 또한, 정부는 1단계 선진화 위원회 합의정신에 입각한 중장기적인 농어업 정책 방향 마련, 논의가 완료되지 않은 12개 과제에 대한 논의 등을 위하여 2009년 하반기(10월)에 2단계 선진화위원회를 출범하여, 향후 10년간의 농어업 선진화 전략과 실천계획을 담은 『농어업·농어촌 비전 2020』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다. 평가 및 향후계획

농어업선진화위원회의 출범은 농어업인 단체가 중심이 되어 농어업 정책 추진 방향과 개선 과제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한 것으로 '94년 농업발전특별위원회가 학계 등 소수 농업전문가 중심이었다면, 이번 위원회는 생산자가 주체가 되어 각계각층의 의견을 취합하고 반영하여 대통합을 이룬, 정부 중심에서 벗어난 자율농정·자율어정의 출발점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그동안 농어업계가 꺼려왔던 쌀 관세화 문제 등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통해 농어업·농어촌의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였으며, 동시에 공론화되지 못했던 과제들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미래를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향후 우리 농어업 발전의 초석을 놓았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위원회에서 논의된 과제 중 미완료된 보조금·직불제 개편, 『농어업·농어촌 비전 2020』 마련 등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2. 농지제도 개선

(농지과 사무관 안종락)

가. 추진배경 및 개요

농업시장 개방 확대, 농가인구 감소, 고령농 증가 등에 따른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농지제도를 보완하였다.

2009년 5월 27일자로 「농지법」을 개정하고, 농지법시행령을 2009년 11월 26일, 농지법시행규칙을 2009년 11월 27일 개정·시행하였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첫째,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중심으로 소유 제한을 완화하여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요건을 완화하여 농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하였다.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인 한계농지 중 영농여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영농여건불리농지에 대해서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임대를 통해 해당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요건 중 대표자의 농업인 제한을 폐지하고, 업무집행이사의 농업인 비율을 1/2 이상에서 1/3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비축용 농지 소유를 인정하되, 취득 후 지체없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관리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둘째, 농지에 간이지장고의 부지를 포함하고, 농지에 모든 종류의 다년생식물의 재배를 허용하여 다양한 용도의 식물재배를 통해 소득을 올리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였으며, 비농업인 상속농지의 농지은행 위탁한도(2ha)를 폐지하여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셋째, 농지에 양어·양식장 등 간이 농수축산업용시설과 농수산물의 간이 처리시설의 타용도일시사용 허가기간을 현재 6년(3년 허가, 3년 연장)에서 10년(5+5)까지 확대하고, 경지 정리된 농지에도 타 용도 일시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입지선정의 어려움을 해소하였다. 또한,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폐쇄명령 등으로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경우 해당 축사부지에 대한 농지처분의무를 면제하여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넷째, 영농여건불리농지의 전용은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하여 해당 농지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농지관리위원회를 폐지하여 동 위원회가 농지전용시 확인하던 사항을 행정기관이 직접 확인·조치하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였다. 또한 농지전용 절차와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대상·비율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행정효율성을 제고하였는데, 식물원 부대시설, 건축면적 33㎡ 이하의 주말·체험 영농주택, 문화재 보존·정비 및 활용사업시설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을 재감면하고, 수도권에 설치하는 산업단지('10.1.1부터 2년간), 택지개발업자가 의무적으로 무상공급하는 학교용지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였다.

다. 평가 및 향후계획

농업인 및 일반 국민의 농지 관련 불편함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지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3. 농협개혁 추진

(농업금융정책과 서기관 이시혜, 사무관 최봉순)

가. 추진배경 및 개요

90년대 중반부터 농협이 신용사업에 치중하고 농축산물 판매 등 농업인이 원하는 경제사업은 소홀히 한다는 지적과 함께 농협중앙회 신용·경제사업 분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경제사업 활성화 및 신용사업 건전성 제고'를 위한 농협중앙회 신용·경제사업 분리방안이 마련(2007.3.29)되어 추진 중이었으나, 최근 농협중앙회의 신용부문 수익이 농협의 지속 성장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감소하게 되어 사업구조개편의 시급성이 대두되었다.

그리하여, 2008년 하반기부터 농협이 농업인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고, 농협 본연의 역할인 경제사업 활성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농협 운영구조 개선」 및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등 2단계에 걸쳐 농협개혁을 추진하였다.

농협중앙회장 선거제도 개편, 이사회의 실질적 의결기구화 등 농협의 운영구조를 개선

하기 위한 농협법 개정을 2009년 상반기에 완료하였고, 이에 이어 농협중앙회를 3개의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는 사업구조개편 농협법 개정안을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실질적인 농협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 농민단체, 농협, 전문가 등이 참여한 「농협개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각계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였으며, 농협개혁위원회에서 정부에 건의한 내용은 1·2차 개혁안의 기초가 되었다. 또한, 농민단체 주관의 전국 순회토론회, 권역별 설명회 등을 통해 농업계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였고,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용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농협개혁 1단계로, 조합원의 조합경영 참여 촉진과 조합의 운영구조 개선을 주요골자로 하는 농협법을 개정·공포(2009. 6. 9)하였다.

1단계 농협법 개정의 주요내용은, 규제완화 등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조합 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조합 및 중앙회의 운영구조와 선거제도를 개편하려는 것으로, 농협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농협 설립구역을 시·군 단위로 확대하고, 자산규모 2천5백억 원 이상인 조합의 조합장 신분을 비상임으로 전환토록 하였다.

아울러, 중앙회장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회장 선출방식을 직선제에서 대의원 간선제로 하고, 회장은 중임할 수 없도록 하며, 중앙회 이사회 기능을 강화하고 인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이사수를 감축(현 : 21명 이상→ 30명 이내)하고, 인사추천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감사의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원회가 아닌 상임 감사체제로 전환하고, 이사회로부터 독립시켰으며,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하여 감사를 선임하도록 하였다.

농협개혁 2단계로, 농협의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고 수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협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정부는, 농민단체, 농협,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농협개혁위원회에서 건의(2009.3.31)한 내용을 중심으로 사업구조개편에 대한 잠정안을 마련하고, 전국 권역별 설명회(2009.7) 등을 통해 농업인(조합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농협중앙회에서 제출한 건의안을 검토·반영하여 정부안(입법예고안)을 마련(2009.10.27발표)하였다.

이후,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통한 대국민 의견수렴,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였으며 2009.12.16일자로 국회에 제출하였다.

2단계 농협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현 농협중앙회를 3개의 별도 법인(농협연합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으로 분리하는 것으로, 농협중앙회는 「농협연합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산지 유통구조 개선 등 일선조합 경제사업 지원 및 정책사업,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토록 하였고, 농협중앙회 경제부문의 기존 13개 자회사와 함께 수익성 경제사업을 분리, 자회사화 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를 설립토록 하였으며,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을 분리하여 별도 법인인 농협은행, 농협보험(손해, 생명)을 설립하고, 이들 신설 법인과 기존 신용부문 자회사를 지배하는 「농협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도록 하였다.

또한, 농협연합회의 경제사업 및 교육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농업협동조합(NH)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제·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에 명칭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평가 및 향후계획

2008년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한 농협개혁은, 1단계 농협법 개정 이후 지체 없이 2단계 사업구조 개편을 추진함으로써 농협개혁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1·2차 모두 광범위한 의견 수렴 및 홍보 등으로 쟁점의 많은 부분에서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농협과의 견해차를 크게 줄였다. 특히 1단계 개혁에서 국회 여·야 모두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농협법 개정을 완료했다는 것이 가장 주목할 만 하다.

정부는 2009.12.16일자로 국회에 제출된 농협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농협, 농민단체, 국회 등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업구조개편의 필요성 등을 적극 홍보하여 농협법 개정에 대한 전반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본금·조세 등의 정부지원 관련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사업구조개편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산실사 등의 실무 작업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며, 농협은행, 금융지주회사 및 경제지주회사 설립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 시 실무 준비에 1년여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4. 일선조합 구조개선 추진

(농업금융정책과 사무관 박중신)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일선조합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는 부실(우려)조합에 대한 구조조정과 함께 부실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일선조합의 구조개선 추진목표를 조합의 부실정리 및 경영건전성 제고를 통한 조합원·예금자 보호역량 강화로 정하고, 경영부실 예방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구조개선 관련 고시와 훈령을 개정하여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을 경영개선요구 대상조합은 순자본비율 -7% 미만에서 0% 미만으로, 경영개선명령 대상조합은 순자본비율 -20%미만에서 -7%미만으로 상향 조정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며, 순자본비율 산정시 경제사업부문의 대손충당금과 부실채권이 포함되도록 하여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또한 적기 시정조치 대상조합이 편법으로 우선출자금을 조성하여 적기 시정조치를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5년 12월 농협구조개선업무감독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하였고 2010년부터는 적기 시정조치 경영개선권고 기준을 순자본비율 5%로 강화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정부와 농협중앙회는 부실조합 조기 정리 및 조합의 부실 예방을 위해 제정된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8년에 이어 2009년에도 전년 말 결산 및 경영상태평가결과 등을 기초로 7개 조합을 부실우려조합 등으로 신규 결정하고 경영개선조치 권고·요구·명령을 하는 등 일선조합의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하였다.

2008년도의 적기 시정조치에 따라 합병을 추진 중인 조합에 있어서도 합병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재무구조개선을 추진 중인 조합의 경영개선상황을 평가하여 이행상황이 미흡한 조합에 대하여는 추가 경영개선조치사항을 부과하는 등 제재조치를 하여 구조개선 추진에 박차를 가하였다.

또한, 부실조합 등의 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에도 23개 조합에 총 245억원(출연)의 자금을 지원하였는 바, 재무구조개선을 추진 중인 5개의 조합에 출연 21억

원을 지원하였고, 15개의 합병조합에 출연금 207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퇴출대상조합의 계약을 인수한 3개 조합에 계약이전 손실금 보전을 위해 17억 원을 출연하였다.

이와 같이 일선조합의 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추진한 결과 2009년도에도 1개 조합이 합병으로 정리되었으며 5개 조합은 정리 중에 있다. 또한 13개 조합이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정상화되었다.

2009년도 결산결과 조합 경영수지는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적자조합의 적자규모는 468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296억 원 증가하였으며, 적자조합 수는 전년에 비해 16개 조합이 늘어난 21개 조합이다. 그러나 전체 조합의 당기순이익은 12,285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1,668억 원이 증가하였다.

경제·신용사업도 활발하게 추진되어 전체 경제사업 실적은 38조 1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4% 성장하였으며, 예수금 평잔액은 168조 2,46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2% 성장하였고, 상호금융대출도 123조 4,067억 원으로 전년 대비 6.8% 성장하였다.

다. 평가 및 향후계획

부실예방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것이며, 앞으로도 적기 시정조치 기준을 엄격하게 운용하고, 경영진단을 통해 조합의 경영상태를 실사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부실 확대 등으로 퇴출이 불가피한 경우 부실이 건전조합에 전가되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계약이전·과산을 통해 정리하되, 합병실익이 있는 경우에는 합병기회를 부여하는 등 경영상황을 감안한 구조개선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경영약체 조합에 대해 사전부실예방조치를 강화하고, 경영정상화 가능조합에 대하여는 구조개선 지원을 강화하되, 경영개선계획을 불이행한 조합에 대하여는 임직원 징계요구, 임원 직무정지 등 제재조치를 강화하여 부실을 철저히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미 구조조정을 완료했거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의 부실원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부실에 책임이 있는 관련자에 대하여 조속히 부실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농협중앙회의 구조개선 전담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부실조사 대상조합에 대하여 대부분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조사결과 부실에 책임이 있는 관련자에 대하여 채권보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통해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서 지원한 자금을 회수하고 조합 임원의 경영책임을 강화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제3편

2009년 수산업 동향



제1장

수산업 경제 동향



제1절

어업구조

1. 어가인구

2009년 말 현재 전국의 어가는 69,379호로 2008년도의 71,046호보다 1,667호(2.3%)가 감소하였으며, 어가인구 역시 183,710명으로 2008년도의 192,341명보다 8,631명(4.5%)이 감소하였다.

〈표 3-1-1〉 어가호수와 어가인구

(단위: 호, 명, %)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09/'08년
어 가 호 수	79,942	77,001	73,934	71,046	69,379	97.7
어 가 인 구	221,132	211,610	201,512	192,341	183,710	95.5
· 여 성 인 구 (구 성 비)	110,474 (50.0)	105,270 (49.7)	100,527 (49.9)	96,485 (50.2)	92,136 (50.2)	95.5 -
호당평균어가인구	2.77	2.75	2.73	2.71	2.65	97.8

자료: 통계청, 어업조사

어업종사자는 2008년도에 비해 2.8% 감소된 115,532명으로서 성별로는 남자가 60,790명(52.6%), 여자가 54,742명(47.4)이며, 어업에 종사한 가구원 중 연령별 분포를 보면 60대 이상이 43.1%, 50대가 32.8%, 40대가 17.1%로 어업에 종사하는 연령이 고령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표 3-1-2> 어업종사자 성별·연령별 구성

(단위 : 명, %)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09/'08년
종 사 자		130,589	128,048	122,916	118,879	115,532	97.2
성 별	남 자	70,307 (53.8)	68,244 (53.3)	65,520 (53.3)	63,037 (53.0)	60,790 (52.6)	96.4 -
	여 자	60,282 (46.2)	59,803 (46.7)	57,396 (46.7)	55,843 (47.0)	54,742 (47.4)	98.0 -
연 령 별	30세 미만	2,456 (1.9)	3,044 (2.4)	2,407 (2.0)	1,964 (1.7)	2,068 (1.8)	105.3 -
	30~39세	9,684 (7.4)	8,396 (6.6)	7,698 (6.3)	7,010 (5.9)	6,120 (5.3)	87.3 -
	40~49세	31,067 (23.8)	29,250 (22.8)	26,543 (21.6)	23,630 (19.9)	19,689 (17.0)	83.3 -
	50~59세	40,084 (30.7)	40,580 (31.7)	38,877 (31.6)	38,506 (32.4)	37,901 (32.8)	98.4 -
	60세 이상	47,298 (36.2)	46,778 (36.5)	47,393 (38.5)	47,769 (40.2)	49,753 (43.1)	104.2 -

자료 : 통계청, 어업조사

<표 3-1-3> 전업·겸업별 어업가구

(단위 : 호, %)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09/'08년
합 계	79,942	77,001	73,934	71,046	69,379	97.7
전 업	25,342 (31.7)	23,932 (31.1)	22,407 (30.3)	20,938 (29.5)	20,923 (30.2)	99.9 -
겸 업	54,600 (68.3)	53,068 (68.9)	51,527 (69.7)	50,062 (70.5)	48,455 (69.8)	96.8 -

자료 : 통계청, 어업조사

<표 3-1-4> 어업형태별 어업가구

(단위 : 호, %)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09/'08년
총 어업가구	79,942	77,001	73,934	71,046	69,379	97.7
·어선 사용가구	36,733 (46.0)	36,088 (46.9)	34,691 (46.9)	32,481 (45.7)	30,569 (44.1)	91.1 -
·어선비 사용가구	19,134 (23.9)	16,924 (22.0)	15,896 (21.5)	16,464 (23.2)	16,218 (23.4)	98.5 -
·양식 어업가구	24,075 (30.1)	23,989 (31.2)	23,356 (31.6)	22,101 (31.1)	22,592 (32.5)	102.2 -

자료 : 통계청, 어업조사

2. 어업 총생산

2009년도 어업 총 생산량은 3,182천 톤으로 전년 3,363천 톤 대비 5.4% 감소하였으며, 어업 총생산액은 9.0% 증가한 6조 9,242억 원으로 나타났다.

<표 3-1-5> 어업생산 현황

(단위 : 천 톤, 억 원)

구 분	'08년		'09년		증 감	
	생산량	생산액	생산량	생산액	생산량	생산액
합 계	3,363	63,550	3,182	69,242	△181	5,692
연 근 해	1,286	32,297	1,227	36,404	△59	4,107
양 식	1,382	15,225	1,313	18,463	△69	3,238
내 수 면	29	2,753	30	2,738	1	△15
원 양	666	13,274	612	11,638	△54	△1,636

자료 : 농림수산물부 어업생산통계

<표 3-1-6> 어업총생산(부가가치) 현황

(단위 : 10억 원, %)

구 분	'08년	'09년(P)	증 감 율
국내총생산(GDP)	1,026,452	1,063,059	3.6
국내총부가가치(GVA)	919,688	958,231	4.2
○ 농 림 어 업	24,686	24,929	1.0
- 어 업	2,259	2,315	2.5
· GDP 구성비	0.22	0.22	-
· GVA 구성비	0.25	0.24	-

자료 : 한국은행

3. 어선등록 현황

(어업정책과 사무관 권용철)

2009년 어선등록 현황은 77,713척에 594,445톤으로 2008년 말에 비하여 척수는 3,053척(3.8%)이 감소하였고, 톤수는 26,565톤(4.3%)이 감소하였다. 전체 어선 중 동력어선은 75,247척으로 97%, 톤수는 592,445톤으로 99.6%를 차지하고 있으며, 어업별 척수는 연근해어선이 69.2%, 양식어선이 22.9%, 내수면어선이 4.9%, 원양어선이 0.55, 기타가 2.4%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표 3-1-7> 어선등록 현황

(단위 : 척, 톤, %)

구 분		'07년	'08년	'08년	'08 / '07년
합 계	척 수	85,627	80,766	77,713	96.2
	·동 력	82,796	78,280	75,247	96.1
	·무동력	2,831	2,486	2,466	99.1
	톤 수	663,869	621,337	594,772	93.6
	·동 력	661,519	619,098	592,445	93.6
	·무동력	2,350	2,239	2,327	95.3
연 근 해	척 수	63,100	57,177	53,799	94.1
	톤 수	308,512	280,708	257,292	91.6
양 식	척 수	16,352	17,104	17,786	103.9
	톤 수	25,226	28,270	31,077	109.9
내 수 면	척 수	4,000	4,040	3,824	94.6
	톤 수	3,354	3,728	2,874	77.0
원 양	척 수	470	448	370	82.5
	톤 수	249,952	242,666	188,174	77.5
기 타	척 수	1,705	1,997	1,934	96.8
	톤 수	76,825	65,965	115,255	174.7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

선질(船質) 별로는 합성수지선(FRP)이 전체 어선척수의 81.2%, 목선이 16.3%, 강선이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톤수에 있어서는 합성수지선(FRP)이 32.3%, 목선이 3.6%, 강선이 64.2%를 차지하고 있다.

<표 3-1-8> 선질별 어선등록 현황

(단위 : 척, 톤, %)

구 분		'07년	'08년	'09년	'09/ '08년
합 계	척 수	85,627	80,766	77,713	96.2
	톤 수	663,869	621,337	594,772	95.7
목 선	척 수	17,981	14,565	12,647	86.8
	톤 수	36,606	29,867	21,112	70.6
강 선	척 수	2,392	2,123	1,916	90.2
	톤 수	426,248	394,698	382,006	96.7
합성수지선 (FRP선)	척 수	65,254	64,078	63,107	98.4
	톤 수	201,015	196,772	191,688	97.4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

또한, 톤급별로 보면 5톤 미만 어선은 전체 척수의 87.8%로서 전체 톤수의 19.3%를 차지하고 있다. 5톤 이상 50톤 미만 어선은 척수와 톤수가 각각 10.2%, 16.1%를 차지하고 있으며, 50톤 이상의 대형어선은 척수와 톤수가 각각 2.09%, 64.6%를 차지하고 있다.

<표 3-1-9> 톤급별 어선등록 현황

(단위 : 척, 톤, %)

구 분	'07년		'08년		'09년		'09/ '08년	
	척수	톤수	척수	톤수	척수	톤수	척수	톤수
합 계	85,627	663,869	80,766	621,337	77,713	594,772	94.3	93.6
1톤 미만	28,839	18,873	27,118	17,874	25,855	17,141	95.3	95.8
1~5톤 미만	45,790	105,618	43,484	99,972	42,371	97,681	97.4	97.7
5~50톤 미만	9,141	110,924	8,461	102,865	7,922	95,660	93.6	92.9
50~100톤 미만	991	73,630	900	65,838	800	58,301	88.8	88.5
100~200톤 미만	341	49,848	311	45,347	273	40,072	87.7	88.3
200톤 이상	525	304,976	492	289,441	492	285,917	-	98.7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

4. 이용어장

가. 연근해어장

(어업정책과 사무관 이세오)

수산업법상 우리나라 연근해 어장의 해역범위는 동해·서해 및 동중국해와 북위 25도선 이북, 동경 140도선 이서의 태평양 해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 수역을 제외한 수역은 해외어장으로서 원양어선이 조업하는 어장으로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은 1960년대에 제주도 인근 수역에서 ‘소코트리어장’으로, 1970년대 이후에는 서해, 동중국해 및 동해의 ‘대화퇴어장’까지 조업어장이 확대되어 왔으며, 이들 어장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등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1994년 11월 「유엔 해양법협약」 발효로 한·중·일 3국이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 EEZ)을 선포함에 따라, 우리나라 주변수역은 “21세기 신해양질서”에 맞는 새로운 어업 질서로의 재편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은 1996년 5월 이후 17차에 걸쳐 어업협정 개정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1998년 11월 28일자로 새로운 「한·일 어업협정」에 서명하였고, 다음 해인 1999년 1월 22일 협정을 발효시킴에 따라 양국은 매년 EEZ 어업체제에 의한 상호입어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중국어선이 우리나라 연근해 수역으로 진출이 급증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속한 양국 간 어업협정 체결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우리 정부의 끈질긴 노력으로 중국정부와 협상한 결과, 2000년 8월 3일 「한·중 어업협정」에 서명하였고, 이어 상호 입어조건에 대한 교섭을 거쳐 2001년 6월30일 동 협정을 정식 발효시키게 됨으로써, 급증하고 있는 중국어선의 우리 EEZ내 조업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양국은 매년 EEZ 어업체제에 의한 상호입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울러 2005년 6월 30일부터 양국의 과도수역이 각각 EEZ로 편입되어 우리의 배타적 어업수역이 확대되었다.

한편, 중·일간의 어업협정에 있어서도 1997년 11월 11일 서명 이후 답보 상태에 머물다가, 2000년 6월 1일 발효함에 따라, 한·중·일 3국의 주변수역은 완전히 EEZ 어업 체제로 전환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연근해어장도 한·중·일 3국의 어업협정 체제에 의한 EEZ와 중간수역, 잠정조치수역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

나. 원양어장

(원양정책과 사무관 김성수)

원양어업은 1957년 인도양에 참치시험조업 진출을 시발로 1970년대 초반까지 꾸준한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2차에 걸친 석유파동과 1977년부터 미국·러시아를 비롯한 세계 연안국들이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함으로써 우리나라 원양어장은 급격히 축소됨은 물론, 연안국의 조업규제 강화로 원양어업은 막대한 타격을 받게 되었다.

1988년 미국수역에서 북양트롤어선이 철수하고 1993년 북태평양에서 오징어유자망 조업이 중지되었고, 1999년 11월 30일부터 일본 북해도수역에서 조업하던 트롤어선이 전면 철수하였으며, 「유엔 해양법협약」 발효와 1995년 8월 「유엔 공해어족보존협정」의 채택으로 공해조업도 해역 단위별로 공해자원에 대한 규제강화 및 다국 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지역수산관리기구가 2009년 말 현재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등 12개가 설립되었고, 남태평양수산관리기구(SPRFMO) 등 2개가 설립준비 중에 있는 등 공해 수산자원관리가 강화되고 있어 원양어업의 여건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다. 양식어장

(양식산업과 사무관 김중건)

우리나라의 해면 양식어장 개발은 1960년대의 김, 미역 등 해조류 중심에서 1970년대에 굴, 피조개 등 패류양식어업으로 발전되었고, 1980년대부터는 넙치, 방어, 돔 등 어류와 전복 등 고소득 어·패류양식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현재 양식되고 있는 품종은 넙치, 참돔, 조피볼락, 굴, 홍합, 고막, 전복, 김, 미역, 톳, 우렁챙이, 새우, 해삼 등 약 50여 종이며, 최근 새로운 품종의 적극적인 개발로 양식품종도 다양화 되었다.

<표 3-1-10> 품목별·연도별 양식어장 면허면적

(단위 : ha, %)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09/'08년
합 계	124,668	130,890	132,416	136,083	139,871	102.8
어 류	1,822 (1.5)	1,986 (1.5)	1,962 (1.5)	1,988 (1.5)	1,965 (1.4)	98.8
패 류	48,194 (38.7)	49,550 (37.9)	49,261 (37.2)	49,169 (36.1)	49,538 (35.4)	100.8
해 조 류	69,502 (55.7)	74,757 (57.1)	76,183 (57.5)	79,504 (58.4)	81,601 (58.3)	102.6
기 타 수산물	5,150 (4.1)	4,597 (3.5)	5,010 (3.8)	5,422 (4.0)	6,767 (4.8)	124.8

주 : ()는 구성비임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

2009년 말 현재 해면 양식어장 면허면적은 약 14만ha이며, 육상수조식 및 축제식양식 등 허가어업은 1.4천ha이다.

<표 3-1-11> 종류별·연도별 양식어업 허가면적

(단위 : ha, %)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09/'08년
합 계	2,017	1,971	1,735	1,641	1,382	84.2
육상수조식양식 (어류·패류 등)	299 (14.8)	268 (13.6)	276 (15.9)	271 (16.5)	261 (18.9)	96.3
축제식양식 (어류·새우 등)	1,718 (85.2)	1,703 (86.4)	1,459 (84.1)	1,370 (83.5)	1,121 (81.1)	81.8

주 : ()는 구성비임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

2009년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따라 적조, 이상조류 등 어업재해와 태풍 등 자연재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면의 개발제한, 수출용 패류의 지정해역 및 그 인근해역에 대해 어장개발 관리로 안전한 수산물 생산을 위해 노력하였

다. 그리고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하락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김, 어류, 굴, 등 적정한 생산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양식어장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또는 연장허가기간이 끝나 소멸된 수면에 대하여는 어장면적을(5% 이상 20% 이하) 축소 조정하여 관리하였다.

향후 양식어업의 발전을 위해 양식수산물 관측을 통하여 수요보다 공급이 초과될 우려가 있는 기존 품목에 대하여는 적정하게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안전한 수산물생산, 어장환경개선 등을 위해 2010년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어장개발을 이행할 계획이다.

5. 어업 경영체

가. 연안어업

(어업정책과 사무관 김옥식)

2009년 말 현재 연안어업 경영체 수는 총 193,296개로서 2008년도의 178,219개보다 15,077개가 증가하였다. 이를 어업별로 보면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은 각 61,388건 및 6,899건으로 전년에 비해 5,272건과 239건이 감소한 것으로 허가어선 감척사업, 어선단체 등으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면허어업은 3,556건으로 전년에 비해 119개 증가하였으며, 어장관리이용계획에 따라서 마을어업의 면허건수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고어업이 전년에 이어 2009년에도 전년대비 20,469개가 증가하여 121,453개가 되었다. 이 중 전남 14,034건, 전북 1,159건이 증가한 것으로 어업자원증대에 의한 증가보다는 어업피해보상 등과 관련하여 맨손어업인의 신고가 증가된 원인으로 추정된다. 신고어업은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를 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신고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연간 60일 이상 조업,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간 유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조업여부에 대해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의 엄격한 관리를 통해 적절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연안어업은 대부분이 가족단위로 운영되는 등 소규모 어업으로 겸업에 의해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어선감척사업으로 연안자망, 연안복합, 연안통발 등 허가어선이 감소하

고는 있으나, 어업자원에 비해 아직까지 적정 허가정수에는 미치지 못해 지속적인 감척사업의 추진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WTO체제 출범과 FTA체결 가속화로 인한 수산물 수입의 증가로 연안어업의 경영여건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되고, 기후변화에 의한 어업자원변동 및 수산자원 회복정도 등 어업여건과 환경의 변화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체제 구축을 위한 종합적 대책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3-1-12> 연안어업 경영체 추이

(단위 : 개, %)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09/'08년	
합 계	151,565	148,232	153,570	150,111	150,365	178,219	193,296	108.5	
허 가	소 계	91,466	89,760	88,394	83,334	79,202	73,798	68,287	92.5
	연안자망	25,473	25,034	24,825	23,320	22,151	20,629	19,254	93.3
	연안복합	43,422	42,263	41,703	39,374	37,161	34,507	31,468	91.2
	연안통발	10,344	10,248	10,161	9,436	9,088	8,559	7,946	92.8
	구획어업	8,242	8,292	7,876	7,611	7,446	7,138	6,899	96.7
	기타어업	3,985	3,923	3,829	3,593	3,356	2,965	2,720	91.7
면 허	소 계	3,095	2,926	3,279	3,279	3,390	3,437	3,556	103.5
	마을어업	2,539	2,447	2,726	2,726	2,835	2,897	3,020	104.2
	정치망어업	556	479	553	553	555	540	536	99.3
신 고	소 계	57,004	55,546	61,897	63,498	67,773	100,984	121,453	120.3
	맨손어업	51,535	49,954	56,348	57,561	61,631	94,768	114,557	120.9
	나잠어업	5,374	5,506	5,507	5,900	6,090	6,144	6,825	111.1
	투망어업	95	86	42	37	52	72	71	98.6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

나. 근해어업

(어업정책과 사무관 이세오)

근해어업 경영체는 2009년도에 3,404개로서, 전년도 3,957개보다 14%가 감소(553개)되었다. 이는 대부분의 근해어업이 수산자원보호와 어업조정 측면에서 업종별로 허

가정수가 설정되어 1992년 9월부터 새로운 허가의 전면 억제, 2003년 및 2007년 근해어업의 전체 업종에 대한 허가정수 재조정,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등에 기인한 바가 큰 것으로 풀이된다.

업종별 경영체를 보면, 근해쌍끌이·근해트롤·근해채낚기·근해자망·근해통발·근해형망·근해연승·근해붕수망어업 등이 10% 이상씩 감소하였다.

<표 3-1-13> 근해어업 경영체 추이

(단위 : 건, %)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09 / '08년
합 계	4,360	4,246	4,061	3,957	3,404	86.0
대 형 기 저	93	91	83	92	82	89.1
중 형 기 저	100	96	94	94	90	95.7
근 해 트 롤	98	97	99	99	89	89.9
근 해 선 망	85	84	82	79	74	93.7
근 해 채 낚 기	1,002	985	915	896	720	80.4
기 선 권 현 망	85	83	79	80	78	97.5
근 해 자 망	922	912	873	838	736	87.8
근 해 안 강 망	271	274	262	259	247	95.4
잠 수 기	237	236	236	235	236	100.4
근 해 통 발	437	421	401	389	331	85.1
근 해 형 망	143	136	138	129	101	78.3
근 해 연 승	809	753	743	709	575	81.1
근 해 붕 수 망	67	67	51	53	40	75.5
근 해 자 리 돛 들 망	11	11	5	5	5	100.0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

다. 양식어업

(양식산업과 사무관 김중건)

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및 양식산업 경영체 운영을 통하여 어장관리 및 양식어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최근 중규모(1ha 이상 3ha 미만) 양식업을 경영을 하는 어가수가 크게 줄고, 3ha 이상 대규모 양식을 하는 가구가 늘어나 경영의 규모화가 되고 있다

2009년 말 양식어업 면허건수는 9,709건이며, 품종별로는 굴 1,247(12.8%), 김 939(9.7%), 피조개 832(8.6%), 새고막 875(9%), 바지락 602건, 어류 568건, 미역 432건, 우렁챙이·복합양식 기타 4,214건이다.

그리고 허가어업은 총 3,527건으로 해상종묘생산어업이 880건, 육상양식어업 1,383건(육상수조식양식 1,065건, 축제식양식 318건), 육상종묘생산어업 1,264건이다

<표 3-1-14> 양식 면허어업 경영체 추이

(단위 : 개소, %)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09/'08년
합 계	9,110	9,297	9,352	9,555	9,709	101.6
김	944	971	948	960	939	97.8
굴	1,215	1,186	1,182	1,211	1,247	103.0
피 조 개	862	868	857	848	832	98.1
새 고 막	876	845	850	862	875	101.5
바 지 락	631	614	633	606	602	99.3
미 역	499	495	455	451	432	95.8
어 류	570	574	560	553	568	102.7
우 령 쉹 이	473	503	494	506	521	103.0
기 타	3,040	3,241	3,373	3,558	3,693	103.8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

품종별 경영형태를 보면 어류 및 기타 수산물양식은 개인과 협업경영체가 주로 경영하고 있으며, 해조류양식은 어촌계의 경영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김, 미역 등 해조류양식의 경우, 양식기술이 이미 보편화되어 있고, 자본 또한 적게 들기 때문에 어촌계 위주의 소득원으로 개발되어 저소득 어업인들이 주로 경영하고 있는 반면, 어류와 전복·진주조개·우렁챙이·새우·가리비 양식 등은 많은 자본과 양식기술이 요구되므로 개발능력이 있는 자가 주로 경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3-1-15> 소유자별·연도별 양식어장 면허면적

(단위 : ha)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09/'08년
합 계	124,668	130,890	131,439	136,083	139,867	102.8
어촌계 및 수협	100,208	106,649	108,242	111,800	115,166	103.0
개인 및 협업	24,460	24,241	23,197	24,283	24,701	101.7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

향후 소·중규모 개인 양식업을 WTO-DDA, FTA 체결에 따른 양식어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경영체를 구성하여 대규모 양식으로 유도하고 기존의 저가의 품종을 양식하는 어업경영체에 대하여는 고부가가치의 품종양식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신품종 개발에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마. 원양어업

2009년도 원양어업 경영체는 전년도 106개사보다 11개사가 감소한 95개사이며, 업체별 규모를 보면 2척 이하의 어선을 보유한 업체가 59개사로 전체의 62%를 차지하여 대부분의 경영규모가 영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9년도 원양어선 수는 전년도 380척보다 18척이 감소한 362척이며, 업종별로는 참치선 182척, 트롤선 106척, 오징어선 48척(봉수망 겸업 포함), 기타 26척이었다.

<표 3-1-16> 원양업체 경영규모 추이

(단위 : 개사, %)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09/'08년
합 계	112	109	110	106	95	89.6
1척	53	51	52	46	40	87.0
2척	21	20	22	25	19	76.0
3~5척	23	24	20	20	21	105.0
6~10척	6	6	9	8	8	100.0
11~20척	7	6	5	5	5	100.0
21척 이상	2	2	2	2	2	100.0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원양정책과

우리나라 원양업체 및 어선이 감소한 주요 원인은 연안국 및 국제수산물기구들의 조업 규제 강화와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인상 등 어업여건의 악화로 경쟁력이 약화 등이 주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제2절

어가 경제

1. 어가소득

(수산정책과 서기관 임영훈)

2009년 어가의 평균소득은 연간 33,945천 원으로 전년(31,176천 원)에 비해 8.9%(2,769천 원) 증가하였다. 어업소득은 17.5% 증가하였고, 어업외 소득은 10.0% 감소하였으며, 어가소득 중 어업소득의 비중이 47.8%로 전년에 비해 3.5% 증가하였다. 어가소득은 농가소득의 110.2%, 도시가계 소득의 72.7% 수준이다.

<표 3-1-17> 어가소득

(단위 : 천 원, %)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09/'08년
어 가 소 득	28,028	30,006	30,668	31,176	33,945	108.9
경 상 소 득	23,594	24,692	25,868	26,344	30,213	114.7
어업소득	11,950	11,603	11,975	13,801	16,220	117.5
어업외 소득	9,399	10,361	10,981	10,120	11,136	110.0
이전소득	2,245	2,728	2,913	2,423	2,857	117.9
비 경 상 소 득	4,434	5,315	4,799	4,831	3,732	77.3
농 가 소 득	30,503	32,303	31,967	30,523	30,814	101.0
도시가계소득	39,010	41,321	44,105	46,737	46,664	99.8

자료 : 통계청, 2009 어업기본통계조사

<표 3-1-18> 어업소득

(단위 : 천 원, %)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09/'08년
어 업 소 득	11,950	11,603	11,975	13,801	16,220	117.5
어업총수입	26,576	25,910	26,535	33,457	35,350	105.7
어업경영비	14,626	14,307	14,560	19,656	19,129	97.3

주 : 어업소득 = 어업총수입 - 어업경영비
 자료 : 통계청, 2009 어업기본통계조사

<표 3-1-19> 어업외 소득

(단위 : 천 원, %)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09/'08년
어업외 소득	9,399	10,361	10,981	10,120	11,136	110.0
겸업소득	4,559	5,082	5,689	4,860	5,189	106.8
사업외 소득	4,840	5,279	5,292	5,260	6,295	119.7

자료 : 통계청, 2009 어업기본통계조사

2. 어가 가계지출

(수산정책과 서기관 임영훈)

2009년도 어가 가계지출은 27,065천 원으로 전년에 비해 6.5%(1,660천 원) 증가하였다. 이 중 소비지출이 20,656천 원으로 전년(20,051천 원)에 비해 3.0%(605천 원) 증가하였고, 비소비지출이 6,409천 원으로 전년(5,354천 원)에 비해 19.7%(1,055천 원) 증가하였다.

<표 3-1-20> 가계지출

(단위 : 천 원, %)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09/'08년
가 계 지 출	22,896	23,885	22,963	25,405	27,065	6.5
소 비 지 출	17,682	18,156	18,263	20,051	20,656	3.0
비 소 비 지 출	5,214	5,729	4,700	5,354	6,409	19.7

자료 : 통계청, 2009 어업기본통계조사

3. 어가자산

(수산정책과 서기관 임영훈)

2009년 말 현재 어가의 평균자산은 257,094천 원으로 전년(225,992천 원)에 비해 6.3%(36,028천 원) 증가하였는데, 고정자산은 15.1%(24,382천 원), 유동자산은 19.6%(11,646천 원) 각각 증가하였다.

<표 3-1-21> 어가자산

(단위 : 천 원, %)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09/'08년
어 가 자 산	183,841	209,644	225,992	221,066	257,094	116.3
고정자산① (구 성 비)	127,397 (69.3)	147,247 (70.2)	153,483 (67.9)	161,720 (73.2)	186,102 (72.4)	-
유동자산② (구 성 비)	56,443 (30.7)	62,369 (29.8)	72,509 (32.1)	59,346 (26.8)	70,992 (27.6)	-

주 : ① 토지, 건물 및 구축물, 선박 및 기계·기구·비품, 대동물, 대식물, 무형자산
 ② 미처리농수산물, 사용중인어업용자재 등 재고자산 및 현금, 예금 등 당좌자산
 자료 : 통계청, 2009 어업기본통계조사

4. 어가부채

(수산정책과 서기관 임영훈)

2009년 말 어가부채는 가구당 35,864천 원으로 전년(33,587천 원)에 비해 2,277천 원 증가하였다. 어업용 부채는 4.6%(831천 원) 증가하였으며, 어업용 이외 부채도 9.4%(1,446천 원) 증가하였다. 어가의 「단기상환능력」 평가지표인 부채/당좌자산 비율은 56.3%로 전년(63.6%)에 비해 악화(7.3% 증가)되었다.

<표 3-1-22> 어가부채

(단위 : 천 원, %)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09/'08년
어 가 부 채(A)	34,531	34,422	34,407	33,587	35,864	106.8
어 업 용 부 채 (구 성 비)	18,560 (53.7)	17,275 (50.2)	16,690 (48.5)	18,207 (54.2)	19,038 (53.1)	104.6 -
어업용 이외 부채 (구 성 비)	15,971 (46.3)	17,148 (49.8)	17,717 (51.5)	15,380 (45.8)	16,826 (46.9)	109.4 -
당 좌 자 산(B)	47,608	53,865	64,341	52,782	63,648	120.6
단기상환능력[(A/B)×100]	72.5	63.9	53.5	63.6	56.3	7.3%p

주 : 어업용 이외 부채는 가계용+겸업용+기타용 부채임
 자료 : 통계청, 2009 어업기본통계조사

제2장

국내·국제 수산물 동향



제1절

국내 수산물 생산

1. 생산동향

(어업정책과 사무관 조성대)

2009년도 우리나라 수산물 총 생산량은 전년(3,363천 톤)보다 5.4%(181천 톤) 감소된 3,182천 톤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근해 어장에서 해파리 다량 발생에 의한 조업 장애와 김·미역 등 해조류 양식 작황 부진, 대서양 포클랜드 오징어 어획부진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도 우리나라 수산물 총 생산금액은 연근해 어장에서 상품성이 좋은 참조기, 꽃게, 대형고등어 어획과 양식어업에서 생산가격이 낮은 해조류(김, 미역 등) 생산은 감소한 반면 가격이 높은 전복, 넙치, 돛류 등의 생산이 증가하여 전년(6조3,550억 원)보다 9.0% 증가한 6조 9,242억 원으로 나타났다.

<표 3-2-1> 어업별 생산현황

(단위 : 천 톤, 억 원)

연도	2005년		2008년		2009년		증감('09/'08년)	
	생산량	생산금액	생산량	생산금액	생산량	생산금액	생산량	생산금액
합 계	2,714	50,493	3,363	63,550	3,182	69,242	△5.4	9.0
연근해어업	1,097	27,060	1,286	32,297	1,227	36,404	△4.6	12.7
양식어업	1,041	13,484	1,382	15,225	1,313	18,463	△5.0	21.3
원양어업	552	8,192	666	13,274	612	11,638	△8.1	△12.3
내수면어업	24	1,757	29	2,753	30	2,738	3.5	△0.5

자료 :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2. 연근해어업

(어업정책과 사무관 이세오)

2009년도 연근해어업(일반 해면어업) 생산량은 1,227천 톤으로 전년도 (1,286천 톤)보다 4.6% 감소하였으나, 생산금액은 3조 6,404억 원으로 전년(3조 2,297억 원)보다 12.7% 오히려 증가하였다.

부류별로 보면, 어류가 796천 톤으로 전년(878천 톤)에 비해 △9.3%, 해조류는 11천 톤으로 전년(14천 톤)에 비해 △21.4%(3천 톤) 각각 감소하였다. 반면, 갑각류는 1,001천 톤으로 전년(881천 톤)에 비해 13.6%(120천 톤), 패류는 90천 톤으로서 전년(81천 톤)에 비해 11.1%(9천 톤), 연체동물은 223천 톤으로 전년(216천 톤)에 비해 3.2%(7천 톤)가 각각 증가하였다.

<표 3-2-2> 부류별 생산현황

(단위 : 천 톤, 억 원)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증감 ('09/'08년)
합 계	1,097	1,109	1,152	1,286	1,227	△4.6
어 류	722	715	762	878	796	△9.3
패 류	81	80	74	82	90	9.8
갑 각 류	62	74	85	88	100	13.6
연체동물	212	220	206	216	223	3.2
해 조 류	15	14	18	14	11	△21.4
기타 수산동물	5	6	7	8	7	△12.5

자료 :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주요 어종별로 보면, 멸치(204천 톤, △22.1%), 고등어(175천 톤, △8.0%), 청어(38천 톤, △17.6%), 삼치(37천 톤, △9.8%)는 생산량이 감소하였고, 갈치(86천 톤, 18.3%), 참조기(34천 톤, 2.4%), 오징어류(189천 톤, 1.6%) 등은 생산량이 증가하였다.

<표 3-2-3> 연근해어업 주요 품종별 생산현황

(단위 : 천 톤)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증감 (‘09/’08년)
멸치류	249.0	265.3	221.1	261.5	203.7	△22.1
고등어류	135.6	101.4	143.8	190.5	175.3	△8.0
갈치	60.1	63.7	66.0	72.3	85.5	18.3
강달리류	15.5	19.4	13.8	11.0	12.1	10.0
전갱이류	42.6	23.2	19.1	22.8	22.1	△3.1
참조기	15.3	21.4	34.2	33.2	34.0	2.4
삼치류	33.8	36.5	42.2	40.8	36.8	△9.8
청어	7.6	12.5	28.3	45.5	37.5	△17.6
오징어류	189.1	197.1	174.5	186.2	189.2	1.6
문어	7.6	7.9	12.0	11.8	15.4	30.5
붉은대게	21.9	23.9	25.4	28.3	30.0	6.0
갯새우	7.4	7.8	12.6	14.9	13.7	△8.0
꽃게	3.7	6.9	13.6	17.8	31.3	75.8

자료 :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

가. 대형선망어업

대형선망어업은 50~140톤급 어선에 의해 남해안을 중심으로 동중국해, 소흑산도, 제주도 및 동해남부해역 등에서 고등어·정어리·전갱이·삼치 등을 주 대상으로 연중 조업이 이루어지는 연근해어업 중 비교적 규모가 큰 업종의 하나이다.

선망어업은 2005년도 이후 실시하고 있는 한 달간의 자체휴어기를 2009년에도 4월 중순부터 6월 초순까지 실시하였으며, 2009년에는 갈치·쥐치 어획량의 증가로 전년(234,525톤)에 비해 2.8% 증가한 241,052톤을 생산하였다.

나. 대형기선저인망어업

대형기선저인망어업은 60~140톤급 어선 1척이 조업하는 ‘외끝이 대형저인망어업’과 2척으로 조업하는 ‘쌍끝이대형저인망어업’으로 구분되며, 제주근해와 서해중부해역에서 주로 갈치·가자미·조기류 등을 어획하는 어업이다.

특히, 쌍끝이대형저인망어업은 멸치 어획량이 전년(7,159톤)에 비해 76.3%(1,700톤)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2009년 전체 생산량은 51,905톤으로 전년(53,464톤) 보

다 2.9%가 감소하였다.

다. 중형기선저인망어업

중형기선저인망어업은 20~60톤급 어선으로 동해 일원에서 오징어·가자미·도루묵·새우류 등을 어획하는 동해구 외끌이 중형저인망어업과, 서·남해에서 가자미·아귀·강달이·새우·갑오징어 등을 어획하는 서남해구 외끌이 중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 쌍끌이 중형저인망어업으로 구분되고 있다.

동 어업의 어획량은 2004년 일시 감소하였다가 2005년도부터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09년 생산량은 갈치, 민어, 밴댕이, 삼치 등의 어획량 증가로 전년(34,979)보다 5.6% 증가한 36,922톤을 생산하였다.

라. 근해채낚기어업

근해채낚기어업은 8~90톤급 어선으로 오징어·갈치·복어 등을 주로 어획하는 어업으로서, 주 어획대상이 되고 있는 오징어어장은 어군의 북상기에 따라 동·서·남해 전 해역에서 형성되고 있다.

어기를 해역별로 보면 남해안에서는 제주도~대마도간 해역을 중심으로 12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서해안에서는 격렬비열도를 중심으로 7~11월, 동해안에서는 동해남부해역으로부터 강원도 및 대화도 근해에 걸쳐서 6~12월에 어장이 형성된다. 이 중 동해안에서의 어획량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갈치어장은 주로 5~12월에 제주도 주변 및 제주도 동남해역에서 형성되고 있고, 복어어장은 1~4월에 중국과 일본의 어업협정에 의한 “중·일 잠정조치수역” 하단해역과 6~10월의 제주도 서남부해역에서 어장이 형성되고 있다.

근해채낚기어업의 2009년도 오징어의 생산량은 54,862톤으로 전년(54,484톤)보다 0.7% 소폭 증가하였으나, 콩치의 생산량은 68톤으로 전년(1,074톤)에 비해 93.7%(1,006톤) 감소하였다. 2009년도 어획량은 60,478톤을 생산하여 전년(61,343톤)보다 1.4% 감소하였다.

마. 연근해안강망어업

연근해안강망어업은 8~90톤급 어선으로 서해 및 동중국해에서 갈치·조기·멸치·병어·아귀·꽃게·젓새우 등을 어획하고 있으며, 계절과 조류의 흐름에 따라 남북방향으로 어장 분포 범위가 변동한다.

또한, 동중국해에서의 어획대상 자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그동안 대폭적인 어선감척으로 생산량은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09년 생산량은 젓새우 등의 새우류의 어획 불황으로 전년(76,278톤)보다 2.7% 감소한 74,197톤을 생산하였다.

바. 기선권현망어업

기선권현망어업은 연안에서 조업하는 어업종 규모가 가장 큰 선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0톤급 미만의 본선 2척을 비롯하여 어탐선·가공선·운반선이 1개의 선단을 이루어, 남해연안 일대에서 멸치를 주 어획대상으로 조업하고 있다.

멸치는 전형적인 연안 회유성 어종으로 해황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생산량은 해황여건에 따라 크게 변동을 나타내고 있는데, 2009년 생산량은 멸치 어획량이 크게 감소(33,597톤)하여 전년(150,394톤)보다 22.6% 감소한 116,464톤을 생산하였다.

사. 연근해자망어업

연근해자망어업은 동·서·남해에서 조기·멸치·가자미·꽃게 등을 주 대상으로 조업하고 있으며, 조기는 서해남부해역에 먹이생물이 풍부하여 어장이 형성되면서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9년도 생산량은 꽃게 어획량이 크게 증가(10,466톤)하여 전년(117,473톤)보다 15% 증가한 135,038톤을 생산하였다.

아. 근해트롤어업

근해트롤어업은 60~140톤급 어선으로 서·남해 및 동중국해에서 오징어·갈치·병어·삼치 등을 대상으로 조업하는 대형트롤어업과 20~60톤급 어선으로 강원, 경북, 울산 등 동해안에서 새우류·가자미·도루묵·청어 등을 어획하는 동해구 중형트롤어업으로 구분되어 있다.

대형트롤어업은 1990년대 초반까지 말귀치의 대량어획으로 호황을 이루다 이후 대상자원의 감소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그동안 어선감척으로 인해 최근의 단위 생산성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해구 트롤어업은 처음에는 새우트롤어업으로 번성하여 왔으나, 이후 대상자원의 지속적인 감소로 경영에 애로를 겪어오다가 최근 오징어를 대상으로 조업하는 어선이 늘어 생산량이 안정되어 가는 추세이다.

근해트롤어업의 주 어획대상 어종이 되고 있는 오징어 어획량은 99,528톤으로 전년(98,078톤)보다 1.5% 소폭 증가하였고, 2009년도 생산량은 119,578톤으로 전년(106,219톤)보다 12.6% 증가하였다.

자. 연근해통발어업

통발어업은 동해, 서해, 남해 및 동중국해 등 우리나라 주변수역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어업으로 소형의 연안 어선부터 대형의 근해어선까지 어선규모도 다양하다. 이 어업은 어획대상에 따라 근해장어통발, 연근해통발(어류·게류·고등류), 근해문어단지 등으로 구분된다.

근해장어통발어업은 통영지역을 중심으로 봉장어를 주 어획대상으로 하여 발전하여 왔고, 1990년대 들어 자원감소 및 어장축소로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최근 들어 점차 회복되는 기미를 보이다가 2008도부터 다소 감소추세에 있다.

근해통발 중 대형어선은 양자강 하류의 동중국해에서 꽃게를 대상으로 조업을 하여 왔으나, 한·일, 한·중 어업협정으로 우리 EEZ로 이동 조업을 하게 되어, 자망, 저인망, 연안어업 등 기존어업과 경쟁조업이 불가피한 실정에 놓여 있다. 2009년도에는 70,930톤을 생산하여 전년(68,727톤)보다 3.2% 증가하였다.

차. 근해연승어업

근해연승어업은 동해, 서해, 남해 및 동중국해 등 우리나라 주변수역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어업으로, 소형의 연안 어선에서 대형의 근해어선까지 어선 규모도 다양하다.

주 어획대상으로 갈치·옥돔·아귀·복어·가자미·장어·볼락류 등이며, 일반적으로 망어

구에 의한 조업이 불가한 암초지역에서 조업이 간단히 이루어져 기업형 보다는 선주 겸 선장 형태의 소규모 형태로 조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09년도에는 갈치, 붕장어 어황 불황으로 전년(24,510톤)보다 32.2% 감소한 16,614톤을 생산하였다.

<표 3-2-4> 연근해어업 업종별 생산현황

(단위 : 톤, %)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09/'08년
합 계	1,097,041	1,108,815	1,152,299	1,284,890	1,226,966	95.5
대 형 선 망	173,795	146,839	194,093	234,525	241,052	102.8
대형기선저인망	86,215	95,971	76,290	65,159	63,737	97.8
중 형 기 저	21,718	23,790	28,996	34,979	36,922	105.6
근 해 채 낚 기	62,891	66,082	62,657	61,343	60,478	98.6
안 강 망	67,691	74,496	72,553	76,278	74,197	97.3
권 현 망	132,146	142,618	108,934	150,394	116,464	77.4
자 망	99,891	102,874	114,025	117,473	135,038	115.0
근 해 트 롤	101,606	108,386	99,009	106,219	119,578	112.6
통 발 어 업	60,756	63,533	75,043	68,727	70,930	103.2
연 승 어 업	14,830	16,472	16,975	24,510	16,614	67.8
마을·구획어업	75,805	77,447	87,470	100,664	82,237	81.7
기 타	199,697	199,307	216,254	244,619	209,719	85.7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2009 어업생산통계

3. 양식어업

(양식산업과 사무관 김중건)

국내 수산물 생산량에서 양식생산물의 비중 증대로 양식어업의 중요성이 부각하고 있으며, 양식수산물이 국민의 중요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그 위치가 높아지고 있으며 중요 식량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2009년도 천해양식어업은 입식물량의 감소 및 작황 부진 등으로 전체 생산량은 전년도에 비해 4.9%가 감소한 1,313천 톤으로 나타났다.

어류양식의 경우, 넙치·참돔 등 대부분은 경영비 절감을 위한 조기 출하와 고환율에 따른 대일 수출확대 영향으로 생산이 증가하였으나, 송어는 지난해 사육량 감소로 생산량이 감소하여 2009년도에는 전년도 6,149톤보다 9% 감소한 5,581톤을 생산하였다. 한편, 주요 생산어종은 넙치·조피볼락·돔·송어·농어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패류양식의 경우, 양식작황 부진으로 굴, 홍합, 고막, 피조개, 가리비 등의 생산 감소로 2009년도 생산량은 전년도 344천 톤보다 5%(17천 톤)가 감소한 327천 톤을 생산하였다. 품종별로는 굴이 241천 톤으로 패류 생산량의 73.8%를 점유하고 있으며, 그 외 홍합(55천 톤), 바지락(18천 톤), 전복(6천 톤)의 순을 보였다.

<표 3-2-5> 양식어업 품종별 생산현황

(단위 : 톤)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09/'08년
합 계		1,259,274	1,385,804	1,381,003	1,313,361	95.1
어류	소 계	91,123	97,663	99,006	109,522	110.6
	넙 치	43,852	41,171	46,432	54,674	117.8
	조피볼락	27,517	35,564	32,992	32,996	100.0
	기 타	19,754	20,928	19,582	21,852	111.6
패류	소 계	391,060	478,646	343,704	326,544	95.0
	굴	283,296	321,276	249,976	240,911	96.4
	홍 합	81,617	98,121	67,442	55,035	81.6
	바 지 락	14,327	18,819	15,541	17,905	115.2
	전 복	3,050	4,350	5,146	6,207	120.6
	피 조 개	2,064	3,015	1,903	1,714	90.1
	기 타	9,756	37,415	3,696	4,772	129.1
해조류	소 계	764,913	792,953	921,024	858,659	93.2
	미 역	322,371	309,097	381,076	309,155	81.1
	다 시 마	201,919	250,049	285,221	306,183	107.3
	김	217,559	210,956	224,242	210,405	93.8
	기 타	23,064	22,851	30,485	32,916	108.0
기타수산 동물		12,178	16,542	17,269	18,636	107.9

주 : 기타 수산동물은 대하, 우렁쟁이, 미더덕 등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2009 어업생산통계

미역과 김·다시마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해조류양식은 전년도(921천 톤) 대비 6.8%(62천 톤)가 감소한 859천 톤을 생산하였다. 이 중 미역이 309천 톤으로 36%를 차지하였고, 다시마는 35%인 306천 톤, 김이 24.5%인 210천 톤을 생산하였으며, 기타 톳·파래·청각 등은 전년도 22.9천 톤보다 43.7% 증가한 32.9천 톤이 생산되었다.

한편, 기타 수산동물 양식은 우렁챙이·미더덕·새우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우렁챙이의 생산량 증가에 따라 2009년도에는 전년(17.3천 톤) 대비 7.9% 증가한 18.6천 톤이 생산되었다.

다. 평가 및 향후계획

국내 수산물 생산량에서 양식생산물의 비중 증대로 양식어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을 위하여 소비자 선호도가 적은 어종에 대하여는 적정생산을 유지하고, 국제 경쟁력 있는 품목, 수출 전략형(참다랑어), 수입 대체형(돔류, 농어), 부가가치 제고형(고등어, 능성어) 등에 대량생산 등을 위해 확대할 계획이다.

4. 내수면어업

(자원환경과 서기관 임남철)

2009년도 내수면어업 생산량은 전년도 29천 톤에 비해 3.1%가 증가한 30천 톤이었다. 이 중 어로어업 생산량이 12천 톤 수준으로 전체의 38.9%, 양식어업 생산량은 18천 톤으로 전체의 61.1%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뱀장어 품종은 현대식 고밀도 순환여과식 양식시설에 대한 지원으로 점차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3-2-6> 내수면어업 품종별 생산현황

(단위: 톤, %)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합 계	23,839	24,843	26,760	29,180	30,071
어로어업	7,500	7,139	5,803	11,098	11,707
가 물 치	13	14	28	46	42
메 기	229	214	149	232	218
미꾸라지	1	0	0	0	0
뱀 장 어	35	46	40	96	145
붕 어	1,145	1,051	1,295	2,447	2,561
송 어 류	0	0	0	31	0
잉 어	1,211	961	825	1,379	1,777
피 라 미	21	46	47	113	156
패류(재첩 등)	1,400	1,171	829	1,068	1,393
기 타	3,445	3,636	2,590	5,686	5,415
양식어업	16,339	17,704	20,957	18,082	18,364
가 물 치	252	287	285	187	259
민 물 돔	268	272	798	388	336
뱀 장 어	5,775	7,966	10,557	6,480	6,621
잉 어	429	320	269	492	224
향 어	973	706	800	1,028	929
송 어 류	3320	1,878	2,882	2,780	2,737
기 타	5322	6,275	5,366	6,727	7,258

자료 : 통계청, 2009 어업생산통계

5. 원양어업

(원양정책과 사무관 박영호)

1957년 인도양에 처음 출어한 참치연승어선 지남호가 참치류 223톤을 어획한 이래, 1990년 선박 보유척수 810척, 생산량 약 1백만 톤을 정점으로 연안국 및 국제기구의 조업 규제강화 등으로 조업선 및 생산량이 점차 감소 추세에 있다.

2009년 원양어업 생산은 612천 톤으로 전년도 666천 톤에 비해 8.1%가 감소하였다. 이 중 참치선망 및 참치연승 어선이 어획한 참치류 생산량은 327천 톤으로 전체의 53.5%, 원양오징어는 85천 톤으로 13.8%, 명태 39천 톤으로 6.4%,꽁치 22천 톤으로 3.6%를 차지하였다. 전년 대비 생산량이 감소한 주요 원인은 원양오징어 최대 생산어장인 대서양 포클랜드 수역의 어획부진 때문이다.

<표 3-2-7> 원양어업 어종별 생산현황

(단위 : 톤, %)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09/'08년
계	552,096	639,249	712,832	666,182	611,950	91.9
참치류	258,062	295,440	300,268	286,889	326,649	113.9
명 태	26,004	26,269	20,109	27,980	38,996	139.4
오징어	81,172	170,211	223,338	181,780	84,652	46.6
꽁 치	40,509	12,009	16,976	29,591	22,001	74.4
기 타	146,349	135,320	152,141	139,942	139,652	99.8

자료 : 농림수산물부, 2009 어업생산통계

제2절

국내 수산물 수출·수입

1. 수 출

(원양정책과 사무관 유민석)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은 1980년대 이후 꾸준히 성장하여 2000년까지 15억 불 이상을 유지해 왔다. 이 후 국내외 수출환경의 악화로 2001년도에 12억 불로 감소한 이래 2008년까지는 11억 불~14억 불 내외의 정체를 보여 왔으나, 2009년도에는 15억 불을 초과 달성하였다. 2009년도에 수출실적이 호조를 보인 이유는 참치, 넙치, 고등어 등 주력품목의 수출호조에 기인되었다. 이에 따라, 수산물 수출은 전년 대비 물량은 38천 톤이 증가(6.3%)하였고, 금액도 56백만 불 증가(3.8%)하였다. 2009년도에 우리나라 총 수출액에서 수산물 수출이 점유하는 비율은 0.4%로서 전년대비 다소 증가하였다.

<표 3-2-8> 수산물 수출현황

(단위 : 백만 불, %)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09/'08년
총 수 출	325,465	371,489	419,083	361,200	86.2
수 산 물	1,089	1,226	1,455	1,511	103.8
구 성 비	(0.3)	(0.3)	(0.3)	(0.4)	-

자료 : 관세청 수출입통관자료

가. 품목별 수출현황

2009년도 활어 수출은 전체 수산물 수출실적의 4.7%를 차지하고 있으며, 넙치, 봉장어 등의 수출호조에 힘입어 전년도 대비 11.0% 증가한 72백만 불을 수출하였다. 신선냉장품은 전체 수산물 수출실적의 11.5%를 차지하고 있으며 꽁치, 게아지살, 굴 등

의 수출호조에 힘입어 2008년 대비 15.1% 증가한 174백만 불을 수출하였다. 또한 수출주력 품목인 냉동품은 전체 수산물 수출실적의 59.4%를 차지하고 있으며 참치, 새우살, 전갱이 등의 수출실적이 호조를 보임에 따라 2008년 대비 2.7% 증가한 898백만 불을 수출하였다.

<표 3-2-9> 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톤, 천 불, %)

구 분	'07년		'08년		'09년		'09/'08년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합 계	536,009	1,225,832	613,823	1,454,635	652,214	1,511,230	106.3	103.9
활 어	5,281	62,965	5,961	64,516	6,686	71,624	112.2	111.0
신선·냉장	18,896	111,870	27,139	151,525	30,744	174,345	113.3	115.1
냉 동	419,623	741,135	462,341	873,682	499,151	897,662	107.9	102.7
기 타	92,209	309,862	118,382	364,912	115,633	367,599	97.7	100.7

자료 : 농림수산물부, 2009 수산물수출입통계연보

나. 국가별 수출현황

2009년도 우리나라 전체 수산물 수출실적의 48.6%를 일본으로 수출하였으며, 수출 상위 10개국 중 중국은 2008년도에 이어 2009년도에 제2위의 수출대상국가로 부상하였다. 또한, 미국은 전년도에 비하여 수출이 소폭 증가(12.3%)하여 제3위로 한 단계 올랐다. 이처럼 일본, 미국, 태국, 뉴질랜드, 스페인 등 국가로의 수출은 증가하였으나 중국, 대만, 이탈리아, 러시아, 멕시코 등으로의 수출은 감소세를 나타냈다.

한편, 2009년도에 우리나라가 수산물을 수출한 실적이 있는 국가는 116개국이며, 국별 비중은 일본 48.6%, 중국 9.6%, 미국 8.5%, 태국 8.4%, 뉴질랜드 4.7% 등으로 이들 5개국에 대한 수출이 전체 수출의 79.9%를 차지하고 있다.

<표 3-2-10> 국가별 수출현황

(단위 : 천 불, %)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09/'08년
합 계	1,088,948	1,225,832	1,454,635	1,511,230	103.9
일 본	659,523	572,908	687,471	734,134	106.8
미 국	95,613	98,876	114,799	128,885	112.3
중 국	75,414	156,565	193,461	145,711	75.3
태 국	61,688	87,678	122,943	127,733	103.9
뉴질랜드	39,383	68,293	60,623	70,461	116.2
스 페 인	28,167	58,655	40,474	41,437	102.4
대 만	18,453	17,540	18,734	18,208	97.2
홍 콩	12,514	11,331	9,546	12,963	135.8
이탈리아	11,620	25,346	25,247	23,231	92.0
러 시 아	8,015	11,072	7,069	4,666	66.0
캐 나 다	7,247	7,065	8,848	11,818	133.6
멕시코	6,834	6,336	11,937	1,353	11.3
인도네시아	6,466	9,011	11,080	13,551	122.3
베 트 남	5,194	8,812	19,320	22,407	115.9
기 타	52,817	86,344	123,083	154,672	125.7

자료 : 관세청 수출입통관자료(2008년부터 소금이 수산물로 분류됨)

<표 3-2-11> 주요 어종별 수출현황

(단위 : 천 불, %)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09/'08년
합 계	1,088,948	1,225,832	1,454,635	1,511,230	103.9
참 치	227,964	275,153	293,189	314,373	107.2
김	61,730	59,728	75,313	81,507	108.2
굴	55,508	40,145	46,260	42,247	91.3
넙 치	51,969	44,154	43,369	51,812	119.5
오 징 어	47,399	123,768	126,536	108,052	85.4
캐비아(대용)	44,019	13,097	16,691	24,526	146.9
붕 장 어	43,009	37,938	44,168	39,382	89.2
계 살	36,210	32,275	43,484	41,986	96.6
룻	23,773	24,525	36,379	28,904	79.5
미 역	21,761	17,667	20,584	16,811	81.7
한 천	18,535	10,784	10,261	8,004	78.0
바 지 락	17,766	12,662	19,219	34,763	180.9
전 복	17,123	15,040	20,997	33,751	160.7
삼 치	15,535	26,869	45,464	45,361	99.8
피 조 개	14,379	13,998	15,103	11,832	78.3
새 우	14,012	8,340	11,407	12,072	105.8
이 빨 고 기	11,653	13,471	15,808	23,437	148.3
전 갱 이	11,035	12,946	29,242	21,117	72.2
돔	10,940	21,250	14,155	17,551	124.0
새 꼬 리 민 태	9,565	13,281	16,689	13,967	83.7
기 타	335,063	408,741	510,317	539,775	105.8

자료 : 관세청 수출입통관자료

2. 수 입

(원양정책과 사무관 유민석)

우리나라 수산물 수입은 국내생산량의 한계 및 수요증가, 1997년도 수입자유화의 영향 등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여 왔다.

2001년도를 기점으로 수산물이 무역수지 적자로 전환된 이래 최근 7년간 연평균 182백만 불씩 수입증가 추세를 보여 왔으나, 2009년도에는 국내경기 영향 등으로 전년 대비 6.5%(202백만 불) 감소한 2,895백만 불의 수입실적을 기록하였다. 국가 전체 수입액 대비 수산물 수입 점유율은 큰 변화없이 1%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표 3-2-12> 수산물 수입현황

(단위 : 백만 불, %)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09/'08년
총 수 입	309,383	356,846	435,275	323,085	74.2
수 산 물	2,769	3,056	3,097	2,895	93.5
구 성 비	(0.9)	(0.9)	(0.7)	(0.9)	

자료 : 관세청 수출입통관자료

가. 품목별 수입현황

수산물 수입의 약 62%를 점유하는 냉동품은 2008년까지는 증가경향을 보여 왔으나, 2009년도에는 전년대비 2.1% 감소한 1,789백만 불의 실적을 나타내었다. 활어는 전년대비 40.0% 감소한 171백만 불을 기록하였으며, 신선·냉장 수산물도 9.1%, 기타 수산물도 3.1% 감소하였다.

제품유형별 수입액 점유율을 보면, 냉동품(61.8%), 기타수산물(10.4%), 신선·냉장(9.8%), 조제품(8.5%), 활어(5.9%), 건조(2.2%)등의 순이다.

<표 3-2-13> 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천 불, %)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09/'08년
합 계	2,769,348	3,056,368	3,097,450	2,895,495	93.5
활 어	197,501	224,675	285,320	171,377	60.0
신선·냉장	374,837	408,278	313,504	284,904	90.9
냉 동	1,660,663	1,872,942	1,827,640	1,788,739	97.9
기 타	535,135	550,473	670,986	650,475	96.9

자료 : 관세청 수출입통관자료

나. 국가별 수입현황

2009년 우리나라 전체 수산물 수입액의 29.5%는 중국이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은 러시아, 베트남, 일본 순이다. 2009년도 국가별 수입증가율을 보면, 인도, 노르웨이, 러시아, 칠레에서 수입액이 각각 33.3%, 30.3%, 13.3%, 5.2% 증가하였다. 반면에 태국, 러시아, 일본 및 베트남은 각각 25.3%, 16.1%, 13.3% 및 12.0% 감소하였다.

<표 3-2-14> 국가별 수입현황

(단위 : 천 불, %)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09/'08년
합 계	2,769,348	3,056,368	3,097,450	2,895,495	93.53
중 국	1,034,192	1,070,862	1,018,678	854,256	83.9
러 시 아	347,079	423,392	384,434	435,537	113.3
일 본	224,311	273,477	224,990	195,063	86.7
베 트 남	206,482	267,964	305,841	305,151	99.8
미 국	150,544	144,242	140,273	123,453	88.0
태 국	144,463	149,270	113,910	85,141	74.7
대 만	85,698	83,342	85,479	88,136	103.1
칠 레	83,513	80,050	77,369	81,407	105.2
캐 나 다	50,157	52,544	46,431	47,045	101.3
노 르 웨 이	41,609	61,615	53,401	69,571	130.3
페 루	36,977	37,416	46,316	40,259	86.9
인 도 네 시 아	35,645	55,280	76,445	67,470	88.3
인 디 아	27,350	21,497	24,524	32,693	133.3
필 리 핀	26,788	21,729	19,429	15,222	78.3
영 국	23,594	21,543	21,705	18,227	83.9
기 타	250,946	292,145	458,225	436,864	95.3

자료 : 관세청 수출입통관자료

2009년도에 우리나라가 수산물을 수입한 국가는 104개국으로 전년도 105개국에 비해 1개국이 감소하였으며, 국가별 수입액 점유율은 중국(29.5%)에 이어, 러시아 15.0%, 베트남 10.5%, 일본 6.7%, 미국 4.3%로 상위 5개국의 수입액 합계가 66.0%를 기록했다. 전년도의 70.0%에 비해서는 감소추세를 보였다.

<표 3-2-15> 어종별 수입현황

(단위 : 천 불, %)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09/'08년
합 계	2,769,348	3,056,368	3,097,450	2,895,495	93.5
명 태	289,204	363,836	326,488	330,383	101.2
새 우	219,122	246,759	211,255	188,273	89.1
조 기	147,873	164,644	143,654	110,780	77.1
갈 치	102,892	109,767	89,813	98,202	109.3
오징어	85,971	86,192	75,751	62,822	82.9
꽃 게	82,359	82,249	66,222	54,269	81.9
낙 지	81,993	125,526	128,506	118,480	92.2
어 란	79,405	70,231	49,811	63,429	127.3
아 귀	72,062	77,425	74,740	57,597	77.1
새우살	60,496	83,003	87,033	94,293	108.3
참 치	60,455	93,633	115,294	111,307	96.5
돔	57,941	58,464	66,558	50,008	75.1
연 어	56,853	71,509	63,693	67,317	105.7
문 어	51,775	6,191	4,362	9,339	214.1
계	49,068	49,033	39,243	41,791	106.5
캐비아	43,210	34,483	25,638	14,934	58.2
고등어	42,358	56,609	34,663	45,431	131.1
꽁 치	37,938	36,509	36,517	46,198	126.5
쥐 치	34,778	38,113	37,963	41,912	110.4
대 계	33,782	42,888	33,627	29,702	88.3
기 타	1,079,813	1,159,304	1,386,619	1,259,028	90.8

자료 : 관세청 수출입통관자료

제3절

국내 수산물 수급 및 가격

1. 수 급

(수산정책과 서기관 김종실)

2009년도 우리나라 수산물 수급동향은 수입 감소로 총 공급량은 전년에 비해 2.9% 감소한 5,935천 톤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국내에서 4,071천 톤을 소비하였고, 1,366천 톤은 수출하였으며, 나머지 528천 톤은 2010년도 재고물량으로 이월되었다.

공급측면에서는 연근해어업에서 1,227천 톤, 천해양식어업 1,313천 톤, 원양어업에서 612천 톤 등 3,182천 톤이 생산되었다. 국내소비는 4.9%로 감소했으며, 공급 부족분은 수입 2,186천 톤과 전년도 재고량 567천 톤으로 충당하였다.

<표 3-2-16> 수산물 수급동향

(단위 : 천 톤, %)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공급	생 산	2,486	2,519	2,714	3,032	3,275	3,360	3,182
	수 입	2,268	2,477	2,557	2,646	2,604	2,135	2,186
	전년재고	769	573	531	512	575	618	567
합 계		5,523	5,569	5,802	6,190	6,454	6,113	5,935
수요	국내소비	3,578	3,922	4,169	4,568	4,625	4,280	4,071
	수 출	1,202	1,116	1,121	1,047	1,211	1,266	1,336
	차년이월	743	531	512	575	618	567	528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

2. 소 비

(수산정책과 서기관 김종실)

2008년도 기준 연간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54.9kg으로, 전년보다 2.8% 감소한 소비 형태를 보이고 있다.

<표 3-2-17> 연간 1인당 수산물 소비현황

(단위 : kg/연간, %)

구 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합 계	44.7	44.9	48.9	49.5	56.6	56.5	54.9
어 패 류	36.3	38.5	41.1	39.9	43.5	42.1	39.1
해 조 류	8.4	6.4	7.8	9.6	13.0	14.4	15.8

주 : 1인당 소비량은 순식품 기준임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2008)”

<표 3-2-18> 동물성 단백질 공급현황

(단위 : g/1인당 1일, %)

구 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합 계	45.85	46.11	46.66	45.43	48.14	48.46	46.67
축 산 물	28.06	27.54	26.61	26.29	27.39	28.59	28.30
어 패 류 (점 유 율)	17.79 (38.8)	18.57 (40.3)	20.05 (43.0)	19.14 (42.1)	20.75 (43.1)	19.86 (41.0)	18.37 (39.4)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2008)”

3. 가 격

(수산정책과 서기관 김종실)

2009년도 우리나라 수산물 생산량은 일반 해면어업 등의 조업부진으로 전반적으로 감소하였고, 이와 함께 수산식품의 생산자물가(도매물가)도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는

주요 대중성 해면어종인 오징어 등의 생산량이 감소되어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19> 소비자 물가동향

(단위 : %)

구 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총 소비자물가	90.8	93.9	97.3	100.0	102.2	104.8	109.7	112.8
수 산 식 품	93.6	95.8	98.6	100.0	100.8	100.9	106.4	118.8
- 신선어개류	94.9	98.2	101.6	100.0	100.1	100.4	106.7	121.2
- 해 조 류	86.2	103.1	100.7	100.0	109.6	110.1	106.8	-

주 : 기준년도(2005년) 대비 등락률임
 자료 : 통계청 소비자물가 조사자료

2009년도 수산식품의 소비자 물가는 대중성 어종인 고등어, 명태, 갈치, 오징어 등의 경우, 생산부진 및 소비확대로 전년대비 12.7%, 37.1%, 17.6%, 15.8% 상승하는 등 전반적으로 가격 상승세를 지속하였다.

1. 어 황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연구소 강수경)

가. 해역별

2009년 동해의 오징어채낚기어업은 어군의 남하회유가 시작되는 9월 이후 동해안에 밀도 높은 어장이 형성되어 평년수준의 어황을 회복하였다. 봄철 복상하는 꽁치를 대상으로 하는 꽁치유자망어업도 상반기 고수온 지속현상으로 평년수준의 어황을 나타내었다. 한편 동해구 중형외끌이어업은 가자미류, 도루묵, 대구류 등을 대상으로 조업이 이루어졌으며, 어황은 평년수준을 유지하였다.

남해에서는 대형선망, 멸치어업, 기선저인망어업, 대형트롤어업의 조업이 활발하였다. 대형선망의 어황은 상반기 고등어 어군의 내유량 급증으로 평년비 순조로웠으며, 멸치어업도 멸치유자망은 평년비 순조로웠으며, 기선권현망은 평년수준을 유지하였다. 대형트롤은 갈치와 살오징어 등을 대상으로 조업을 하였으며, 전체적으로 평년수준의 어황을 유지하였다.

서해 및 동중국해에서는 근해안강망, 기선유자망, 기선저인망의 조업이 활발하였으며, 참조기, 갈치, 아귀류 등을 대상으로 전년 및 평년수준의 어황을 나타내었다.

나. 어종별

고등어는 대형선망어업에 의해 봄과 여름철에는 남해와 제주 주변해역에서 중심어장이 형성되었으나, 가을철에는 서해 및 제주도를 포함한 남부해역에서 어장이 형성되었다. 상반기 동안 남해안에서 지속된 고수온 현상과 대마난류 수송량 증가로 인해 고등어의 어황은 전년 및 평년비 순조로웠다. 멸치는 기선권현망 및 유자망어업에 의해 남해동부 및 동해남부해역에서 평년수준의 어황을 보였다. 참다랑어는 대형선망어업에

의해 주로 남해동부 및 제주도 주변해역에서 조업이 이루어졌으며, 전년비 저조했지만 평년수준의 어황을 나타내었다. 최근 낮은 자원량으로 인해 어획이 저조하였던 말귀치는 가을 이후 어획량이 증가하여 평년비 순조로웠다.

갈치는 내유 자원량의 감소로 연초부터 어황이 부진하였으나, 성어기인 8월 이후에는 어획량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는 평년수준의 어황을 나타내었다. 참조기는 평년비 순조로운 어황을 나타내었으며, 8월 이후 어획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동해안의 대표어종인 도루묵은 동해구기선저인망어업에 의해 동해 연안 해역에서 조업이 이루어졌으며, 전년 및 평년비 순조로운 어황을 나타내었으나, 명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의 어획량을 나타내었다. 살오징어는 여름철 이후 동해 및 서해 일부해역에서 조업이 이루어졌으나 평년비 다소 저조한 어황을 나타내었다. 주로 봄철에 동해 연안에서 어획되는 콩치의 어황은 평년수준을 보였다.

2. 자원동향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연구소 이재봉, 김두남)

가. 연근해 어업자원

연근해 부어 및 저어류에 관한 어획량 변동조사는 대형선망, 대형기선저인망어업 등 8개의 근해어업과 꽃게 연안유자망 등 5개의 연안어업을 대상으로 해구별, 어종별 어획량 및 어획노력량을 조사하여 자원밀도지수와 자원분포역의 변동을 분석하였다.

생물학적 조사는 고등어, 전갱이, 정어리, 삼치, 참다랑어, 갈치, 참조기, 말귀치, 붕장어 등 9개 주요 어종에 대하여 어체 측정과 체장조성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재생산력의 변동과 연급군 분석을 통하여 자원수준을 평가하였다.

또한 2009년도 TAC 대상 자원인 고등어, 전갱이, 붉은대게, 키조개, 개조개, 소라, 대게, 꽃게, 오징어, 도루묵, 참홍어 등 11종에 대한 자원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책자료로 제공하였다.

붉은대게, 대게, 꽃게, 도루묵, 참홍어의 자원동향은 최근 증가경향에, 개조개, 제주

소라의 자원은 최근 감소경향에 있었으며, 키조개, 오징어는 평형상태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어종별 자원수준은 오징어와 대게는 높은 자원수준에 있으며, 키조개, 개조개, 제주소라, 꽃게, 도루묵, 참홍어는 낮은 자원수준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나. 원양 어업자원

원양어업자원의 지속적 이용과 효율적인 국제적 어업 관리의 기초를 위해 원양 주요 어업(트롤 등 6개 어업) 및 주요 어종(가다랑어 등 9개 어종)에 대한 생물특성연구 및 자원평가를 실시하여 어업별 해역별 어종별 자원상태를 파악하였다. 또한, 이들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들은 23회에 걸친 국제수산기구 회의에 국별 보고서로 제공되어 원양 어장의 지속적 확보에 기여하였다.

2002년부터 국제옵서버 양성사업을 추진하여, 2009년까지 국제옵서버 25명을 양성하였다. 양성된 옵서버는 2009년에 지역수산기구관할수역 및 공해에서 총 16척 16명이 승선조사하였으며, 이 중 의무 승선조사는 남빙양 저연승 3척, 남동대서양 저연승 2척, 지중해 다랑어선망 1척, 대서양 다랑어연승 1척 등이었다. 과학 승선조사는 중서부태평양 다랑어선망 2척과 중서부태평양 다랑어연승 1척을 이용하여 각각 인공유목 시험조사와 연승어장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외 다랑어관련 수산기구 관할수역 연승조사 3건과 베트남, 남서대서양 및 인도양에서 3회에 걸쳐 실시하여 어획량 통계, 부수어획 종 혼획 상태, 어업대상종의 분포 밀도 및 생물학적 특성치 등을 분석하였다.

3. 연안어장 및 환경변화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연구소 심정희, 황재동, 윤원득)

가. 연안어장의 오염

우리나라 연안의 구조상 특징을 보면 동해안은 해안선이 단조롭고 수심이 깊어 외해와의 해수교환이 활발한 지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남해안은 수심이 낮으며, 반폐쇄적인 내만들이 산재하고 있어 해수교환이 상대적으로 불량하나 생산성이 높은

어장이 형성되어 있어 양식어업이 발달되어 있다. 그러나 남해안은 전라남도 서부 일부해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연안에 대규모 임해공업단지와 도시화로 산업 및 생활 오염수의 영향이 다른 해역에 비해 많은 수역이다. 서해안은 조석간만의 차가 커서 조간대가 잘 발달되어 있으며, 생산성 역시 높은 해역이나 동해안과 남해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육수의 영향이 많다. 특히 지속적인 연안개발 행위로 인하여 해양환경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다.

해수와 해저퇴적물의 2009년도 화학적산소요구량 (COD)을 기준으로 해역의 상태를 평가하면, 동해의 경우 포항 신항에서 해역수질기준 III등급(4mg/L 이하)으로 오염우려 감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체적으로 수질기준 I(1mg/L) 및 II(2mg/L)등급 수준으로 양호한 수질 상태를 나타내었다. 남해는 5개의 항만(부산 신항, 대변항, 감천항, 마산항, 옥포항, 장승포항)과 환경관리해역(부산 신항, 행암만, 마산만, 진해만, 광양만)에서 수질기준 III등급 수준으로 불량한 상태를 나타내었으며, 그 외 연안은 I, II등급 수준으로 나타났다.

서해안에서는 환경관리해역인 함평만, 인천과 시화호연안에서 III등급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목포와 군산연안에서는 III등급을 초과하여 저감대책을 수립하거나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한 해역으로 나타났다. 그 외 연안에서는 I, II등급 수준으로 나타났다.

해저퇴적물의 화학적산소요구량은 빈산소 수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진해만, 마산만, 행암만과 환경관리 해역인 부산, 시화호, 광양만, 그리고 천수만 등의 해역에서 오염퇴적물 기준(20mg/g.d, 일본 수산자원보호협회)을 초과하였다. 그 외 해역에서는 기준치 이하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나. 적조 발생

2009년 적조발생은 총 32건으로 무해성 27건, 코클로디니움(*Cochlodinium polykrikoides*) 6건, 차토넬라(*Chattonella*) 4건이 발생하였다. 1995년 이후 최초로 여름철에 코클로디니움 유해적조의 대량발생이 없었으나, 10월 28일에 전남 여수시 돌산에서 250 cells/ml로 발생하여 경남 남해와 통영을 거쳐 고성군에 이르는 해역에서 11월 15일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2009년도 여름철에 코클로디니움 적조생물은 저밀도로 출현하였으나 증식 및 확산에 의한 적조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는 7월의 집중강우와 8~9월의 낮은 일조량으로

인해 평년에 비해 7월 저수온과 8월 저염분이 발생되어 코클로디니움 밀도증가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늦가을에 발생한 코클로디니움 유해적조는 수온하강으로 소멸하였다.

다. 해파리의 대량 출현

대형 독성해파리인 노무라입깃해파리(Nemopilema nomurai)는 2009년도 5월에는 관찰되지 않았으나, 6월 말 소흑산도와 진도 사이에서 최대 약 50만 개체/10,000m²의 밀도로 출현하였다. 7월 제주해역에서 평균 18개체/10,000m²가 출현하였고, 8월에는 서해에서 평균 28 개체/10,000m², 남해서부 평균 126개체/10,000m²로 조사되었다. 10월에는 평균 12개체/10,000m²로 출현하였다.

중형의 약한 독성의 보름달물해파리는 4월부터 시화호, 마산만 및 새만금에서 대량 출현이 시작하여 8월까지 지속되었다.

대량출현 해파리에 의한 수산업피해는 안강망 등 거의 모든 어구에서 발생하였고, 어획량감소는 권현망, 낭장망, 안강망, 정치망과 호망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상품 가치하락은 권현망, 낭장망, 안강망, 자망, 정치망과 호망에서 크게 나타났다. 어구과손은 양식과 끌망, 낚시, 선망과 잠수어업에서 없는 것으로 보였고, 작업시간은 모든 어구어법에서 발생하였다.

제5절

국제 수산업 동향

1. 세계 수산물 생산

(국제기구과 사무관 김기환)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의 2008년 수산통계에 의하면 세계 수산물 총 생산량은 159,113천 톤으로, 2007년도의 156,372천 톤보다 2,741천 톤(1.8%)이 증가하였다.

나라별로 보면 중국이 전년보다 3.0% 증가한 57,826천 톤을 생산, 전년에 이어 수산물 생산량 1위를 차지하였고, 인도네시아(Indonesia)는 전년보다 9.0% 증가한 8,794천 톤을 생산하여 2위, 인도(India)는 전년보다 3.7% 증가한 7,583천 톤을 생산하여 3위를 차지하였으며, 뒤이어 페루, 필리핀, 미국, 칠레, 베트남, 태국의 순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7년도의 3,275천 톤보다 76천 톤(2.3%)이 증가한 3,351천 톤을 생산하여 세계 수산물 총 생산량의 2.1%를 점유하며 세계 12위를 차지하였다.

<표 3-2-20> 주요 수산물 생산국 현황

(단위 : 천 톤, %)

순위	국 가	'05년	'06년	'07년	'08년	'08/'07년
1	중 국	52,466	54,265	56,161	57,826	103.0
2	인 도 네 시 아	6,841	7,308	8,064	8,794	109.0
3	인 도	6,658	7,014	7,308	7,583	103.7
4	페 루	9,419	7,049	7,261	7,419	102.1
5	일 본	5,750	5,684	5,596	5,541	99.0
6	필 리 핀	4,168	4,414	4,717	4,968	105.3
7	미 국	5,474	5,377	5,296	4,855	91.6
8	칠 레	5,452	5,303	4,996	4,809	96.2
9	베 트 남	3,397	3,664	4,316	4,584	106.2
10	태 국	4,119	4,106	3,859	3,831	99.2
:	:	:	:	:	:	
12	대 한 민 국	2,714	3,068	3,275	3,351	102.3
세계 총 생산량		151,149	152,261	156,372	159,113	101.7
비율	한 국 / 세 계	1.8%	2.0%	2.1%	2.1%	

자료 : FAO, Fishstat Plus(Total Fishery Production 1950-2008)

2. 세계 수산물 교역

(국제기구과 사무관 김기환)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에 의하면 2007년 세계 수산물 수출액은 94,064백만 불로 2006년도 수출액 86,573백만 불에 비해 8.7%가 증가하였다. 나라별 수출추이는 중국이 전년에 비하여 3.3% 증가한 9,451백만 불로 1위, 노르웨이가 6,290백만 불로 2위, 태국이 5,722백만 불로 3위이며, 우리나라는 전년도 1,051백만 불 보다 12.8%가 증가한 1,186백만 불로 25위에 머물렀다.

<표 3-2-21> 세계 수산물 수출추이

(단위 : 백만 불, %)

순 위	국 가	'05년	'06년	'07년	'07/'06년
1	중 국	7,674	9,150	9,451	103.3
2	노 르 웨 이	4,922	5,544	6,290	113.5
3	태 국	4,053	5,275	5,722	108.5
4	미 국	4,287	4,190	4,499	107.4
5	덴 마 크	3,695	3,999	4,145	103.7
6	베 트 남	2,765	3,380	3,790	112.1
7	칠 레	3,043	3,639	3,770	103.6
8	캐 나 다	3,615	3,683	3,732	101.3
9	네 덜 란 드	2,837	2,827	3,300	116.7
10	스 페 인	2,603	2,872	3,258	113.4
11	러 시 아	1,960	2,129	2,374	111.5
12	독 일	1,518	1,844	2,295	124.5
13	영 국	1,890	1,960	2,190	111.7
14	인 도 네 시 아	1,846	2,020	2,171	107.5
15	아 이 슬 란 드	1,794	1,823	2,035	111.6
16	페 루	1,636	1,773	1,967	110.9
17	프 랑 스	1,601	1,692	1,953	115.4
18	스 웨 덴	1,221	1,604	1,722	107.4
19	일 본	1,291	1,457	1,704	117.0
20	인 도	1,598	1,769	1,679	94.9
:	:	:	:	:	:
25	대 한 민 국	1,154	1,051	1,186	112.8
	총 수출량	79,072	86,573	94,064	108.7
비율	한 국 / 세 계	1.5%	1.2%	1.3%	

주 : 수산물 수출순위 21~24위 : 대만(21위), 모로코(22위), 유카도르(23위), 벨기에(24위)
 자료 : FAO, Fishstat Plus(Commodities Production and Trade 1976-2007)

한편, 세계의 수산물 수입액은 99,423백만 불로서 전년에 비하여 9%가 증가하였다. 나라별로는 미국이 13,756백만 불로 전년 대비 2.7% 증가하여 1위, 일본이 13,440백만 불로 2위, 스페인이 7,005백만 불로 3위를 각각 차지하였다. 우리나라는 전년의 2,791백만 불에서 2007년에는 3,125백만 불로 12% 증가하여 세계 9위를 차지하였다.

<표 3-2-22> 세계 수산물 수입추이

(단위 : 백만 불, %)

순 위	국 가	'05년	'06년	'07년	'07/'06년
1	미 국	12,090	13,400	13,756	102.7
2	일 본	14,729	14,259	13,440	94.3
3	스 페 인	5,649	6,378	7,005	109.8
4	프 랑 스	4,604	5,109	5,415	106.0
5	이 탈 리 아	4,250	4,746	5,174	109.0
6	중 국	4,031	4,189	4,587	109.5
7	독 일	3,263	3,779	4,324	114.4
8	영 국	3,209	3,752	4,184	111.5
9	대 한 민 국	2,382	2,768	3,125	112.0
10	덴 마 크	2,627	2,939	3,028	103.0
11	네 덜 란 드	2,093	2,297	2,629	114.5
12	스 웨 드	1,600	2,030	2,534	124.8
총 수입량		82,859	91,231	99,423	109.0
비율	한 국 / 세 계	2.9%	3.1%	3.1%	

자료 : FAO, Fishstat Plus(Commodities Production and Trade 1976-2007)

제4편

2009년 수산업 정책



제1장

총론



(수산정책과 서기관 임영훈)

서론

우리나라의 수산업은 1950년대에 수산업 성장의 기초가 마련된 이후, 1970~1980년대까지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세계 선진수산국으로 도약하면서, 국민 식량공급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주요 수출품목으로서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여 왔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와 국제적으로 WTO 체제의 출범과 수산물의 전면 수입 개방, 「유엔 해양법협약」의 발효(1996년 11월)에 따른 새로운 「한·일 어업협정」 체결(1998년 11월) 등으로 우리나라의 수산물 교역여건과 공해조업 여건이 크게 악화되었고, 연근해어장의 축소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또한, 한중 간에도 2000년 8월 「한·중 어업협정」이 체결되어 2001년 6월 발효되었고, 러시아가 자국의 EEZ 내 어업자원 보호를 명분으로 명태 등의 어획쿼터를 점차 줄여 나가는 등 우리나라 주변수역은 본격적인 EEZ가 적용되는 신 해양질서체제로 진입하게 되었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는 수산물의 국내 수요증가와 우리 수산물의 국제 경쟁력 약화로 우리나라가 수산물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전환되는 등 대내·외적인 여건이 크게 변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01년 11월 출범한 WTO-DDA 협상에서는 면세유 등 수산보조금을 대폭 금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현실화될 경우 우리나라 수산업에 큰 충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평균 17% 수준인 우리나라 수산물 관세도 DDA 협상결과 약 6%로 인

하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미국, EU, 페루, 호주, 뉴질랜드 등 전 방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FTA와 맞물려 수산물 관세는 더욱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리나라와 인접한 중국 및 일본과의 FTA가 체결될 경우 동북아 수산물 교역구도에 근본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탄소배출 경감에 대한 국제적 압력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부터 적용되는 포스트 교토 프로토콜에서는 우리나라에도 탄소 감축 의무가 지워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수산업은 어선을 사용하는 산업 특성상 유류소비가 많아 탄소경감 압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국제유가도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수산업 경영에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국내적으로도 그 간 매립·간척에 의한 연안어장의 축소와 산업화에 따른 연안오염의 심화, 수산자원의 남획 등으로 수산자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왔으나, 수산자원의 적극적인 조성과 불법어업의 집중 단속 등에 힘입어 2007년도의 연근해 어업 생산량이 1,152천 톤으로 전년 1,109천 톤 대비 약 3.9%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전 세계적인 지구온난화로 어장환경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어종의 변화와 어획량의 증감 등 어로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는데, 수온상승에 따른 해파리 출현과 갯녹음, 고수온 피해 등으로 수산업에 위협이 되고 있는 반면 참다랑어 등 고가의 아열대성 어종이 출현하고 있어 새로운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국·내외의 급격한 여건변화로 수산업 발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나 우리나라 수산업은 수산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소득·고용기회의 제공, 해양환경 보전, 어촌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담당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어려운 어업현실과 환경변화를 슬기롭게 대처·극복하고 21세기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으로 실천 가능한 다각적인 대응방안 강구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新 수산 정책 추진

2008.2월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통합부처 출범을 계기로 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친환경 녹색성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수산분야의 제도, 시스템을 개선하고 선진화된 제반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09년도에는 “新수산 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였다.

즉, 수산이 정책의 기본방향과 수단이 유사한 농업과 통합되고 식품산업도 보강되어 농림수산식품부가 발족함으로써 국민의 먹을거리를 총괄하는 통합부처의 시너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수산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농업과 잘 조화되고 식품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차원의 수산발전 전략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특히, 그간의 수산정책이 어업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하여 어업인의 고질적인 민원제기가 반복되는 등 어업인의 눈높이와 정서에 맞는 수산행정이 미흡한 데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어업현장의 어려움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실용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관련 법령 및 제도에 반영하여 개선해 나감으로써 어업인을 위한 실사구시의 수산행정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新수산 정책”은 기존의 수산정책에 비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차이점이 있다.

첫째, 자율·자립·자강이라는 3대 정책이념을 제시하고 있다. 어업인에 의한, 어업인을 위한 정책으로서 자율과 어업인, 어촌경영체 및 수협이 자립능력 강화를 위한 자립과 수산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자강을 그 이념으로 하고 있다. 즉 정부의 지원은 한계가 있으며 아무리 지원을 해도 어업인의 희망과 의지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어촌과 수산업의 발전이나 장기적인 비전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철저한 현장 위주의 정책이다. 어업현장에서 어업인들이 느끼는 고충이 어떤 것인지, 불합리한 제도는 없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셋째, 구체적 실천방안으로서 6대 전략과제 및 30개의 핵심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신수산 30대 프로젝트”로 명명하고 각각의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정책포럼과 전문가 미팅 등 실무협의를 개최하여 세부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新수산 정책”의 핵심인 “30대 프로젝트”의 내용을 개략하면 다음과 같다.

<표 4-2-1> 신 수산정책 30개 프로젝트 개요

6대 전략	30대 프로젝트	주요 내용
1. 연근해 어업정비 및 재편	1)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체계 개편	특별법 제정으로 어업구조조정 시스템 체계화, 단체협약에 의한 감척시스템 도입, 폐업지원금 탄력적용 및 실직어선원 지원 등
	2) 지역별 해역별 맞춤형 자원관리	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 설치, 맞춤형 연안어업 관리를 위해 지자체로 권한위임 추진 및 어업자 협약에 의한 자원관리 활성화 등
	3) TAC 제도 발전	한국형 TAC 제도 모색, 소진율 파악시스템 등 현행 제도 개선 추진
	4) 고래자원 활용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고래자원의 합리적 이용 체계 구축, 고래포획금지고시 등 관련제도 개선 및 고래관광산업 진흥 등
	5) 기후변화대응 어업규제 완화	금어기, 산란기, 조업기간 등 조업규제 완화 기후변화에 따른 타 어업과의 영향 고려
	6) 동해 북한수역 입어 추진	남북관계 진전에 맞추어 입어방안 마련, 북한·러시아수역 연계 조업으로 활성화 등
	7) 어업허가 일제 정비	어업허가 일제갱신제도 도입 검토 등
2. 친환경 녹색 양식	8) 친환경 어업 육성	친환경 어구어법 인증제 검토, 주요품목별 친환경대책 마련 및 「친환경양식어업 육성법」 제정 검토 등
	9) 외해양식 발전	참치치어 이식방안, 가두리 개발 및 참치 부어초 개발, 외해양식 면허절차 제도개선 등
	10) 어장환경관리시스템 개선	어장환경평가제 도입, 휴어·휴식 등 환경보전직불제 도입검토, 어장환경정화사업 시행 등
	11) 유희 갯벌어장 활용관리제도	갯벌 양식어업단지 지정 육성 세발낙지, 바지락 등 전략품목 개발 등
	12) 내수면어업 진흥	4대강사업과 연계한 내수면어업 진흥방안 어도살리기 사업추진 및 논생태양식 지원 등
	13) 불법양식어업 정비체계 개선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업무협조체계 개선 등
3. 해외어업 진출 확대	14) 해외수산자원 개발	연해주 지역 수산가공업 진출, 동남아지역 해외양식어업 개발 및 아프리카지역 어패류 양식기술 이전 등 협력강화
	15) 어선건조시스템 개발	원양어선 신규 건조, 선망어선 등 연근해어선 신조 추진 등
	16) 수산분야 전략적 ODA 확대	한·PNA 8개국간 경제협력 약정체결 추진 ECCF활용 해외어장 건설 및 물자공여확대

4. 수산식품 개발 및 유통 개선	17) 수산식품산업 진흥	수산물 인증제도 및 브랜드화 촉진 기능성 수산가공제품 개발 확대 및 수산식품 안정성 제고 등
	18) 산지위판제도 개선	의무상장제의 장점을 보완하여 임의상장제도 개선방안 마련 추진
	19) 공동어시장 및 국제수산물 도매시장 발전	부산공동어시장 시설개선 및 운영 현대화 국제도매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20) 소금산업 연구지원시스템	염전환경을 어장관리 차원에서 관리 육성, 소금연구소 설립, 소금성분분석 연구기반 구축 등
5. 어촌활력 증진	21) 어촌계 선진화	어촌 신규진입장벽 완화, 어촌계 지원사업 개선 및 어촌계 운영상 제도개선 추진
	22) 수산분야 직불제 도입	조건불리, 자원보호 등 공익형 직불제 우선 검토 및 경영안정 직불제도 장기검토 등
	23) 어촌관광 활성화	어촌의 브랜드화, 어촌관광 디자인 및 컨설팅 추진, 어촌관광업 제도 도입 등
	24) 어업인 교육문화복지재단 설립	지식기반 어촌사회 구축, 문화체험, 건강관리 지원 등 어업인 삶의 질 향상, 안전조업 지원 등
	25) 어업인력 육성 활성화	신규우수인력 진입 촉진, 현장밀착형 단기교육과정 육성 및 여성인력 육성 등
6. 수산 거버넌스 개편	26) 수산자원조성 전문법인 설립	종묘방류, 인공어초 등 전담조직 신설 추진
	27) 수산업 지도단속체계 개편	지도사무소 개편 및 어업조정기능 강화 등 대어민 서비스 강화
	28) 수산보조금 개편	WTO-DDA 수산보조금 협상에 대응하여 보조금 체계 전면 개편
	29) 어업정책보험 효율화	보험확대 및 내실화를 위한 민간참여 검토 보험제정 건전화, 소형어선 가입률 제고 등
	30) 자율관리어업 선진화	자율관리협의체를 자율경영협의체로 확대, 어업외소득원 개발, 자율관리 인센티브 개선 등

이러한 지속가능한 수산업 실현을 위해 매 5년마다 수산진흥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금년부터 시행된 『제3차 수산진흥종합대책(’10-’14)』에 “30대 프로젝트”를 반영하여 新수산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농어업 농어촌 비전 2020』과 연계하여 수산분야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였다.

제2장

수산업의 자생력 확보 및 관리체계 구축



1. 수산자원 회복정책의 체계화

(자원환경과 서기관 차태황)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우리나라의 대내외 수산업 여건은 동북아 EEZ 체제 개편으로 한·일, 한·중 어업협정체결로 인하여 전통적인 조업어장이 축소되고 과도한 자원남획으로 인하여 어업경영악화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연근해 어업생산량은 과잉어획, 환경오염 등으로 인하여 1980년대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로 연근해 수산물 생산은 한계에 봉착하였으나, 지속적인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및 자원회복사업 노력에 힘입어 2002년을 저점으로 다시 수산자원은 회복되고 있으나, 과잉어획이 계속될 경우에는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수산자원의 감소가 우려된다.

연근해 수산자원의 적정생산 가능량을 추정하고 회복대상 수산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자원조성, 자원회복 및 어장환경개선 사업을 통하여 연근해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이행방안의 강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수산자원회복계획 단계별 이행

(자원환경과 사무관 이병웅)

수산자원회복계획은 해역별·어종별 과학적인 조사·평가를 실시하여 명확한 회복목표를 설정한 후, 정부·지자체·어업인·학계 등 관계자가 공동 참여하여 회복대상자원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체계적인 자원회복방안 마련을 위하여 개별정책들을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그 결과를 다시 자원회복계획에 수정·반영하여 조치하는 체계적·종합적인 자원관리계획이다.

동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수산자원회복계획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수산자원회복 세부실적계획을 2005년 12월에 마련하고 수산자원회복 사업을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이 계획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수산자원관리법”을 제정·공포(2009.4.22, 시행일 2010.4.23)하였고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2010.4.23.)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2010.5.31.)을 제정하였다.

2006년부터 수산자원회복계획의 조기정착과 자원회복사업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역별로 꽃게(서특), 도루묵(동해), 낙지(남해-무안), 오분자기(제주-성산)를 대상으로 자원회복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참홍어(서해), 참조기(서남해), 대구(동남해) 등 3개 어종을 추가하고 2008년에는 말쥐치(남해), 기름가자미(동해), 개조개(남해) 등 3종을 추가하고, 2009년도에는 갯장어(남해), 갈치(남해) 등 2종을 추가하여 총 12종으로 대상어종을 확대하였다.

한편, 동 계획의 성패는 어업인 등 관계자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수적이므로 분야별 관계전문가를 어종별 수산자원관리위원회로 구성·활용하는 한편, 설명회, 간담회, 워크숍 등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산과학위원회(수산과학원)에서 제시된 권고안(관리방안)을 기초로 어종별 자원회복계획을 발전·보완하여 나갈 계획이다.

2) 총허용어획량제도 확대

(자원환경과 사무관 이병웅)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 : TAC) 제도는 개별어종에 대한 연간 총 허 용어획량을 정하여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어업자원관리제도로서 어획량을 규제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정착시키고, 어업여건 및 주변상황 등을 고려하여 TAC제도 실시대상 업종 및 어종을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

2009년도 TAC 사업은 고등어·전갱이·붉은대게·개조개·키조개·제주소라·대게·꽃게·오징어·도루묵·참홍어 등 11개 어종을 대상으로 407천 톤의 TAC를 정하여 12개 업종에 약 1,221여척(통), 100개 어촌계가 참여하였다.

어종별 TAC 산정은 국립수산물과학원의 자원평가 결과를 기초로, 사회적·경제적 요인 등을 감안하여 총허용어획량심의위원회와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허용어획량을 설정하였으며, 배분량의 할당은 과거 조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도에서 어선별로 배분량을 할당하도록 하였다.

또한, TAC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2009년까지 판매장소를 118개소로 확대하였고, TAC 제도에 참여하는 어업인과 시·도에는 TAC 경영개선자금과 연근해침적폐기물 수거사업 예산의 지원 등을 통하여 TAC 제도의 정착과 어업인의 참여의식이 고취되도록 도모할 계획이다.

<표 4-2-2> 2009년도 어종별 총허용어획량

(단위 : 톤)

대상업종	대상어종	TAC	비 고
합 계		407,600	
대 형 선 망	고 등 어	159,000	'09. 1. 1~'09. 12. 31
	전 갱 이	18,000	"
근 해 통 발	붉은대게	29,000	"
근 해 통 발 · 근 해 자 망	대 계	1,400	'08. 11. 1~'09. 5. 31
잠 수 기 어 업	개 조 개	1,700	'09. 1. 1~'09. 12. 31
	키 조 개	3,100	"
마 을 어 업	제주도소라	1,320	'08. 9. 1~'09. 5. 31.
연 근 해 자 망 및 통 발	꽃 게	7,380	'09. 1. 1~'09. 12. 31
대 형 선 망 · 동 해 구 트 롤 대 형 트 롤 · 근 해 채 낚 기	오 징 어	185,000	'08. 7. 1~'09. 6. 30
동 해 구 기 저 · 동 해 구 트 롤	도 루 묵	1,500	'09. 1. 1~'09. 12. 31
근 해 연 승 및 연 안 복 합	참 홍 어	200	'09. 1. 1~'09. 12. 31

자료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자원환경과

3) 인공어초 시설

(자원환경과 서기관 차태황)

수산자원을 증강시켜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1971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인공어초사업은 어초시설의 지속적인 확대와 건설시공의 정착, 해역별·어종별·기능별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어초의 개발과 시설, 어초어장의 시설보전과 기능제고를 위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09년도부터는 갯녹음(백화)현상이 발생한 동해안과 제주 연안을 중심으로 바다 숲 조성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연안 어장의 생태계를 복원함은 물론 탄소 저감원으로 활용하는 등 해조류를 녹색성장의 新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다.

<표 4-2-3> 시·도별 인공어초 시설

(단위 : ha)

구 분	기 시설(1971~2008)	2009년	누 계
합 계	202,141	4,359	206,500
부 산	2,562	96	2,658
인 천	10,059	492	10,551
울 산	2,310	60	2,370
경 기	4,293	388	4,681
강 원	22,880	204	23,084
충 남	16,783	564	17,347
전 북	13,869	496	14,365
전 남	41,842	831	42,673
경 북	22,996	132	23,128
경 남	35,722	164	35,886
제 주	28,825	932	29,757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

이를 위해 2009년에는 사업비 41,065백만 원을 투입하여 약 4,359ha에 인공어초를 시설하고, 약 12,350ha의 어초어장에 대한 위치·상태 확인 및 폐그물 수거, 어초어장도 작성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였으며, 갯녹음(백화) 발생어장에 국비 10,000백만 원을 투입하여 246ha의 바다 숲(해중림 포함)을 조성하였다.

4) 종묘방류 어종의 다양화

(자원환경과 서기관 차태황)

방류어류의 생존율 향상 등 종묘방류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방류어종 크기를 적정하게 조정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고부가가치의 수산종묘를 방류토록 하여 어업 생산성을 높였으며 방류어종의 다양화를 기해 2009년에는 56종(해면43종, 내수면 13종)으로 품종을 확대하였다.

또한, 수산종묘방류 총사업비의 5%를 방류효과조사 사업비로 편성하여 체계적인 효과조사를 실시하고, 방류대상 품종에 대한 질병유무확인 등을 실시토록 하여 형질이 우수하고 건강한 종묘가 방류되어 생존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수산종묘방류 사업에 대한 민간 감시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방류어종 검수 및 방류시 종묘생산자 등 민간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제1단계('07~'09/ 넙치 등 4종)로 실시한 수산종묘방류효과조사 결과 넙치 2.61배, 전복 2.97배, 불락 3.8배, 다슬기 1.6배의 경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앞으로 종묘방류 효과조사 및 대상 품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어업인의 주요 소득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5) 바다목장 조성

(자원환경과 사무관 장귀표)

1998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통영 바다목장 조성사업이 2006년까지 총 2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07년도에 완공되었고, '12년까지 4개소(여수, 울진, 태안, 제주) 완공을 목표로 연차별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해양관광·레저를 접목한 해역별 테마형 바다목장으로 조성한다.

2001년 시작한 전남(여수) 다도해형 바다목장은 2010년까지 총 30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으로 2008년 57억 원, 2009년 40억 원이 투입되어 2010년에 사업을 완료하게 된다

아울러 2006년부터 본격적인 시설사업이 시작된 동해(울진), 서해(태안), 제주(북제

주) 3개소에 대하여 2009년에는 90억 원을 투입하였다

특히 관광형 바다목장으로 조성되는 동해와 제주 바다목장은 2009년부터 체험관 건립 설계, 수중해양공원, 바다체험장 조성 등을 본격 추진하였다.

연안(소규모)바다목장 사업은 연안 시·군·구 68개소 중 개발 잠재력이 높은 50개소를 대상으로 1단계(2011년 까지) 20개소, 2단계(2012~2020년까지) 30개소 등 총 50개소를 조성할 계획인데, 2008년 9개소에서 2009년 부산(기장), 전남(신안) 및 제주(강정) 등 3개소가 추가되어 총 12개소로 사업을 확대하여 연안 해역에서 효율적인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추진하였다.

다. 평가 및 향후계획

수산자원회복계획의 성패는 어업인 등 관계자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수적이므로 분야별 관계전문가를 어종별 수산자원관리위원회로 구성·활용하는 한편, 설명회, 간담회, 워크숍 등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산과학위원회(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제시된 권고안(관리방안)을 기초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어종별 자원회복계획을 보완·발전하여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현행 수산자원관리 정책별 목표 설정 후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연차별 개선·발전 방안을 도출, 개별 관리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각 정책별 심사·평가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다시 자원회복계획에 수정·반영하여 추진할 것이다.

또한, 수산자원조성 전문법인으로 출범할 예정인 '수산자원사업단'에서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고 연구·개발·보급하도록 기능을 부여하여 체계적인 전문기관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2. 유어산업 육성

(자원환경과 사무관 유원상)

가. 추진배경 및 개요

국민소득 향상과 주 5일 근무제 정착으로 인한 여가 선택기회 확대로 국민들의 레

저수요가 증가하면서 대표적 레저산업인 낚시 역시 그 향유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약 573만 명(민물낚시 378만 명, 바다낚시 195만 명)으로 추정되는 낚시 인구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어업인들의 어업외 소득 증대를 위한 대표적 산업으로서 낚시 산업의 중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표 4-2-4> 국내 낚시 인구 현황

(단위 : 천 명)

구 분	계	1년에 한두 번	1년에 서너 번	1년에 대여섯 번	한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계	5,736	2,144	1,082	1,311	787	312	100
남 자	4,393	1,403	833	1,096	700	281	80
여 자	1,343	741	249	215	87	31	20

자료 :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낚시면허제 모델개발 및 시행방안(한국수산회, 2005년)

낚시 산업의 중요성 확대와 더불어 낚시 산업으로 인한 위험 관리 필요성 역시 커지고 있다. 낚시인구가 증가하면서 낚시로 인한 어획량 역시 상당한 규모로 증가하여 수산자원 고갈 우려가 대두되고 있으며 쓰다 남은 낚추, 투기된 쓰레기 등으로 낚시터 주변 환경이 오염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해마다 꾸준히 낚시인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표 4-2-5> 낚시행위에 의한 조획량(추정)

(단위 : 천MT, %)

구 분	추정인구수 (천 명) [A]	평균출조획수/ 년 [B]	총출조획수 (천회) [C]	1회당조획량 (kg) [D]	조획량 (톤) [E]
잠재낚시인구	3,222	3.5	11,277	2.2	24,809
일반낚시인구	2,097	25	52,425		115,335
전문낚시인구	411	100	41,100		90,420
총낚시인구	5,730	128.5	104,802		230,564

자료 :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낚시면허제 모델개발 및 시행방안(한국수산회, 2005년)

나. 추진내용 및 성과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낚시 및 낚시산업을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여 수산자원의 남획을 방지하고, 낚시로 인한 환경오염 및 낚시인의 안전문제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낚시를 건전한 국민레저 활동으로 육성하여 이를 어촌의 발전과 어업인 소득 증대에 연계하고자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낚시제한기준의 설정(안 제5조)

낚시인구가 늘어나고 낚시도구와 방법이 발전하여 수산자원이 남획되고 토종어류의 개체 수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하여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 마릿수나 크기 등을 제한

2) 유해 낚시도구의 제조 등의 금지(안 제8조 및 제50조)

누구든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에 지장을 주는 등 유해한 낚시도구를 사용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단속하기 위하여 제조·수입·판매·보관 장소의 낚시도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

3) 낚시인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도입(안 제9조)

시장·군수·구청장은 낚시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이나 위험지역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함.

4) 낚시터업의 허가·등록 제도의 도입(안 제10조부터 제24조까지)

무분별한 낚시터의 개발은 수산자원의 남획, 수산환경의 오염, 농경지의 훼손 및 농어업인과의 갈등 등을 유발할 수 있음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수면에서 낚시터업을 할 경우에 허가나 등록을 받도록 의무화

5) 낚시터업자 등에 대한 전문교육 제도 도입(안 제48조)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인의 안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와 직결되는 사업을 영위함에도 이와 관련된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안전사고나 환경문제 등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전문교육을 실시

「낙시 관리 및 육성법」은 현재 국회 법사위 심사대기 중이며,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 평가 및 향후계획

낙시 및 낙시산업을 제도권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육성함으로써 이를 농어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낙시 관리 및 육성법」의 제정은 낙시 및 낙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농림수산식품부는 건전한 낙시 문화의 조성 및 낙시 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낙시 산업 주무부처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3. 내수면 산업 육성

(자원환경과 서기관 임남철)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우리나라 내수면어업은 1980년대 뱀장어, 송어, 향어 등 다양한 양식어종과 기술개발로 성장기를 맞이하였으나, 1990년대 정부의 수질환경 보호정책으로 가두리양식업이 규제를 받으면서 급격히 생산량이 감소하였으나 최근 육상양식업을 중심으로 점차 회복추세에 있다. 점차 양식수산물의 양식기술개발과 양식시설의 현대화로 생산량도 늘리고 국제적 기준(HACCP)에 맞는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믿고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무분별한 자원남획과 수질오염, 골재채취 등 난개발로 수산자원이 감소하여 토속어류가 멸종위기에 있다는 자각으로 주요 하천 등에 치어를 방류하여 자원을 회복시키고, 내수면 레저 수요의 증대와 낙시인구의 증가로 어업의 장소보다는 레저활동의 공간으로써 내수면의 역할이 변화되어 내수면 이용객들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여건변화로 향후 내수면 이용객들이 농어촌 체험관광과 연계하여 전 국민이 내수면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자원조성을 하여 내수면 어종의 산업화와 휴식공간으로써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표 4-2-6> 낚시어업권 현황

(단위: 건)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허 가	550	522	498
신 고	192	175	211
무신고	146	137	144
합 계	888	834	853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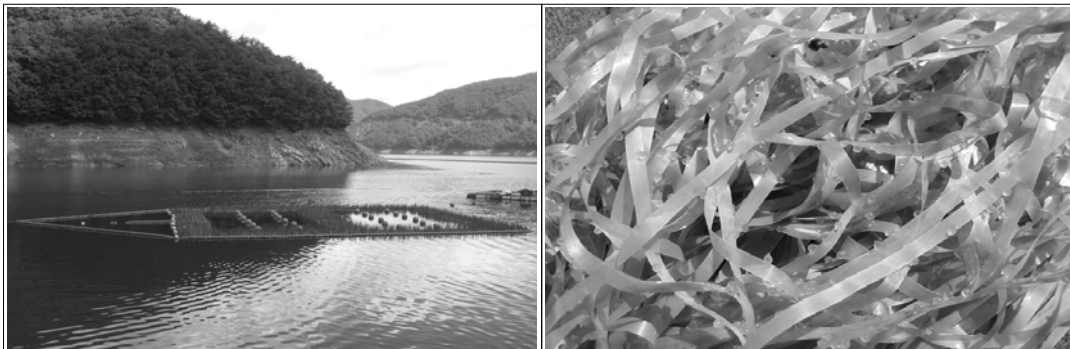
나. 추진내용 및 성과

내수면 자원조성사업은 내수면에서의 어업기반시설을 지원하여 멸종위기에 처한 토속어류를 복원하고 내수면을 찾는 방문객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생태계를 보존·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가공시설 지원, 토종종묘보급을 통하여 어업활성화를 유도하고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보조금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

내수면 어류의 주 산란기인 봄철에 갈수기 등으로 자연 산란장이 파괴되어 산란된 알이 말라죽는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댐·하천 등에 인공산란시설을 설치하여 원활한 산란을 유도하고 산란한 알을 보호함으로써 수산자원 증강과 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2009년도에 4개도 15개 시·군에 인공산란장을 조성하였다.

<그림 4-2-1> 인공산란장 조성현장 및 어란 부착 모습



인제군 남면 상하수내리(소양호)

어소에 어란이 부착된 모습(제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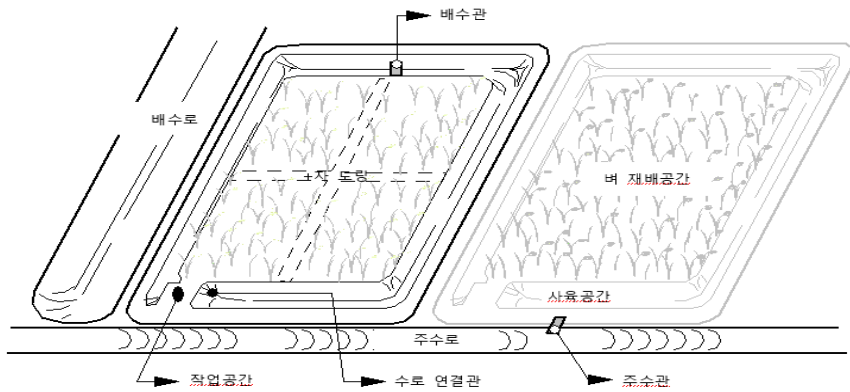
2) 내수면 가공시설 설치 지원

회·매운탕 등 1차 소비에 한정된 내수면 수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훈제, 분말, 죽 등 다양한 가공제품을 개발하여 소비자들에게 민물고기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어업인들의 안정된 소득을 보장함과 더불어 우리나라 식품산업 육성정책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2009년도에 전라북도 익산에 자라가공공장 건립을 추진하였고, 향후 메기, 뱀장어 등의 가공제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3) 토종종묘보급사업 추진

수입산 종묘에 대한 의존율이 높은 어류에 대하여 외국산과의 가격우위를 점하고 양식어가에 저렴한 종묘를 공급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여 양식 어류의 안정된 가격과 생산으로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민물고기를 접하고 어업인은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종묘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우선 미꾸라지 종묘생산을 위한 개발을 시작으로 참게, 붕어 등으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친화적인 미꾸라지 논생태양식을 시범 추진하여 물고기를 키우면서 친환경농업을 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림 4-2-2> 논 생태 양식 개념도



2007년부터 내수면 자원조성사업을 시작하여 매년 새로운 사업을 발굴함으로써 예산을 늘려가고 있으며, 강·하천의 레저인구가 늘어나고, 내수면 어류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어 자원조성사업으로 인한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향후 수산자원 증강 및 복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며, 내수면 양식기술의 지속적인 개발로 더욱더 고

품질의 양식어류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 기대한다.

다. 평가 및 향후계획

내수면 자원조성사업은 난개발, 수질오염 등으로 민물고기의 멸종위기까지 초래하였고, 과거 우리 선조들이 건강보양식으로 선호한 민물고기가 소비가 부진하고 소비층이 다양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생태계를 복원하고 건강보양식인 민물고기 명성을 회복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향후에는 내수면어업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욱더 체계적인 지원근거를 보완하고, 미비한 제도는 과감히 개선하여 어업인과 국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제2절

수산업의 관리체계 구축

1.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체계적 관리

(자원환경과 서기관 차태황)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연안생태계 및 수산생물의 산란·서식지 보호를 위하여 '75년부터 경남·전남·충남 등 10개만(21개 시·군) 4,204km²(육지부 1,243, 해면부 2,625)에 해면과 인접한 육역을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후 30여년이 지남에 따라 주변 어업환경 및 지역개발 여건 등 많은 변화가 있었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규제개선 요구가 제기되어 2006년 전문기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조정기준을 마련하여 2009년 말 현재 육지부 중 68%인 843km²를 해제하였다.

<표 4-2-7>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현황('09년 말)

(단위 : km²)

구 분	계	해 수 면			내수면
		계	육지	해면	
지 정	4,204	3,868	1,243	2,625	336
조 정	965	965	843	122	-
존 치	3,239	2,903	400	2,503	336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

또한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허용행위 완화, 국가·지자체의 구체적인 투자계획 수립시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개발을 위한 투

자유치가 가능토록 하였다.

다. 평가 및 향후계획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변경 및 관리를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하게 됨으로써 기존 개발위주의 정책방향이 환경과 개발이 상호 조화를 이루어 지속 가능한 국토의 이용과 관리를 가능케 하였다.

그러나, 수산자원보호구역내에서의 행위 규제에 의한 주민생활불편 및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앞으로 지정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의 합리적인 제도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2. 자율관리어업 지속 확산 및 내실화

(자원환경과 사무관 서영일)

가. 추진배경 및 개요

그 동안 정부 주도의 수산자원 관리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투자되어도 자원회복에 한계가 있어 어업인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안정적 어업생산이 곤란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수산자원관리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함께 어장 및 자원의 이용주체인 어업인 스스로 어장 및 자원의 자율적 관리가 필요하여 2001년부터 자율관리어업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자율관리어업은 2001년 2월부터 자율관리공동체 63개소가 신청하여 본격 추진되었으며, 시행 10년차인 2010년 8월 현재 참여공동체수가 833개소까지 확대되어 기반조성 단계에서 본격적인 확산·심화 단계로 도약하였다.

<표 4-2-8> 자율관리 참여공동체수

(단위: 개소, 명)

연도	2007년	2008년	2009년	비고
공동체(개소)	579	659	758	
마을어업	294	341	391	
양식어업	72	78	80	
어선어업	102	115	135	
복합어업	94	102	124	
내수면어업	17	23	28	
참여어업인(명)	44,061	50,728	56,100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

나. 추진내용 및 성과

2009년도에는 추진실적이 우수한 공동체 242개소에 230억 원(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의 육성사업비를 차등 지원, 공동체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자율관리어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였다.

1) 자율관리어업 분쟁 조성

자율관리어업 확산의 장애요인인 공동체 또는 업종·지역 간의 분쟁 및 갈등에 대하여 민간주도의 자율조정협의회를 통한 당사자 간 협의와 토론에 의하여 자체 해결토록 유도하여 2009년까지 23건의 분쟁을 해결, 자율조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참여공동체에 대하여는 수산사무소의 전담 어촌지도공무원을 지정하여 자율관리공동체에 대한 기술지도 및 조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2) 전문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 추진

자율관리어업의 활동이 부진하거나 새롭게 참여한 신규공동체에 대하여는 어촌지도 공무원 만의 지도·교육으로는 한계가 있어 수산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갖춘 민간컨설턴트(10명)로 하여금 공동체 특성에 맞는 찾아가는 1:1 맞춤형 교육을 통해 공동체별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내실화를 유도하였다.

3) 다각적 홍보활동 전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지도자들로 구성된 전국지도자협의회 활동(2회), 자율관리어업

추진기관 담당자들의 이해증진을 위한 권역별 광역워크숍(5회), 지방수산물사무소 중심의 지역단위 현장집합 교육, 우수공동체 견학 및 미 참여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도자양성교육을 실시하였고 우수공동체 지도자를 대상으로 수산 선진국(유럽 및 일본)의 어촌현장 방문을 실시하였다.

4) 어가소득 증대 및 어촌관광 활성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를 대상으로 최근 2개년('07~'08) 소득을 조사한 결과 2007년 1,094백만 원, 2008년 1,128백만 원으로 소득이 매년 3~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수산자원 회복에 따른 어획량 증가, 일정크기 이상 채포에 따른 판매단가 상승 및 공동판매 등으로 어가소득이 증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동체에서는 바다 낚시터, 체험어장 운영 및 지역 특산품을 대상으로 한 수산물 축제 행사 등 어촌관광 활성화로 이어져 어업의 소득도 증대하였다.

2009년도 말 공동체는 총 758개소로 이 중 풍요등급 7개소, 모범등급 114개소, 협동등급 538개소, 참여등급 99개소를 선정하여 등급별 차등 지원하였다.

<표 4-2-9> 2009년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 지원 현황

(단위: 개소, 천 명, 억 원)

구 분	합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공동체수	758	18	36	16	24	58	12	63	41	236	78	134	42	
육성사업	지원수	242	5	5	4	3	29	3	18	18	57	29	52	19
	사업비	230	4.9	4.6	3.7	3.2	25.5	3.5	18.5	17.9	56.0	28.4	46.3	17.5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

다. 평가 및 향후계획

정책의 성공도를 측정하는 여러 방법 가운데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가 정책 수혜자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참여어업인의 80%가 넘는 분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어업인 스스로가 불법어업을 방지하고 분쟁도 스스로 조정해 가는 모습들을 보면 성숙단계에 들어서 자율관리어업 참여 분위기 확산 및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마을어업공동체 중심으로 어업인의 약 40% 정도가 참여하고 있는데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어선어업이나 복합어업 등 다양한 유형의 공동체 참여를 유도하여 자율관리어업 참여율을 전체어촌계의 60% 수준까지 늘려나갈 계획이다. 또한, 어업인 스스로 수산자원을 조성·관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확산하고 불법어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등 어촌사회가 새롭게 변화할 수 있도록 선도적 중심체로 육성해 나가겠다.

제3장

연근해어업 구조개편 및 어업질서 확립



1.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어업정책과 사무관 권용철)

가. 추진배경 및 개요

1980년대 이후 과잉어획에 따른 연근해 어업자원 감소, 어업 자재비, 인건비, 유류비 등 출어경비 상승으로 경영수지가 악화되어, 연근해어업의 지속적 발전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악화된 연근해어업의 경영수지 개선과 감소추세에 있는 연근해 어업자원의 회복을 위해 1994년부터 어업구조조정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은 감척어선을 폐선하고 어업허가를 취소하는 어업인에게 어선·어구 잔존가치 평가액 및 폐업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연근해어선 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과 어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1994년부터 2009년까지 1조 4,711억 원을 투입하여 연근해어선 15,399척을 감척사업을 추진한 결과, 수산자원량과 연근해 어획량이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나, 어선세력은 아직도 어업자원량에 비해 10~37% 정도 과도한 실정에 있다.

수산동·식물의 주산란·서식지 보호와 연안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일반감척사업으로 연안어선을 1994년부터 2009년까지 4,706억 원을 투입하여 12,896척을 감척하였고, 근해어선은 3,562억 원을 투입하여 2,503척을 감척하였으며, 한·중·일 어업협정 체결에 따라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을 제정하여 1999년부터 2002년까지 6,443억 원을 투입, 1,308척의 근해어선에 대하여 국제감척사업을 추진하였다.

어선세력은 감척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2000년 이후 꾸준히 감소 추세에 있으나, 아

직도 어업자원량에 비해 과도한 실정인 반면, 감소추세에 있던 어업자원량과 연근해 어획량은 증가세로 전환되어 1994년 이후 적당 어획량 및 어업소득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 * 연근해어선 척수 : ('00) 68,629척 → ('09) 53,799척으로 21.6% 감소
- * 자원량 (만 톤) : ('90)835 → ('94)801 → ('00)768 → ('05)783 → ('09)831
- * 어획량 (만 톤) : ('90)154 → ('94)149 → ('00)119 → ('05)110 → ('09)123

적당 생산량은 2000년도에는 적당 생산량이 17.3M/T이었으나 2009년에는 22.9M/T으로 32.3% 증가하였으며, 적당 어로수입은 2000년도 3,390만 원이었으나 2009년도에는 6,770만 원으로 99.7%로 대폭 증가하였다.

- * 적당 생산량 및 어로수입 증가
 - 적당 생산량 : ('00) 17.3M/T → ('09) 22.9M/T
 - 적당 어로수입 : ('00) 33.9백만 원 → ('09) 67.7백만 원

다. 평가 및 향후계획

1994년부터 2009년까지 14,711억 원을 투입하여 연근해어선 15,399척을 감척하였으며, 감척에 따라 감소 추세에 있던 수산자원량과 연근해 어획량이 증가세로 전환되고 적당 어획량 및 어업소득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앞으로 국내의 어업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어업생산량 증대를 위해 연근해어선의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을 유지할 때까지 지속적인 감척을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어업구조조정 참여 촉진을 위한 체계적인 감척제도 마련과 업종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원방식 도입을 위해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표 4-3-1>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소요

(단위 : 척)

구 분	연 안	근 해	계
총어선 척수('93년 기준)	63,046	5,564	68,610
적정 어선세력	37,995	2,342	40,337
적정 감척 척수*	25,051	3,222	28,273
'10년 이후 필요 감척수	12,000	719	12,719

주 : 적정 감척 척수 : 연구용역 이전 실제 감척수 + 연구용역 이후 필요 감척수

1) 연안 필요 감척수 : 13,771척('08년 말 53,792척의 26%) 감척 필요('10년 연구용역)

2) 근해 필요 감척수 : 1,280척('06년 말 3,622척의 35%) 감척 필요('07년 연구용역)

2. 자원관리형 어업생산구조 정착

(어업정책과 사무관 이세오)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의 어선척수는 약 78천여척이며, 이 중 자망·통발어업의 어선척수는 전체어선의 36%인 28천여척이 연중 조업을 하고 있으며, 자연 생태계에서 분해되는데 수백 년이 소요되는 나일론 재질의 어구를 연간 30,000여 톤을 소비하고 있다. 자망·통발어업은 바다에서 1주일 이상 투망하였다가 양망하는 수동적인 어구이기 때문에 타 어업에 비해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에 의해 어구의 유실률이 매우 높으며, 이들 어구가 바다에 유실되면 해류에 의해 흘러 다니면서 그물코에 의해 물고기가 얽혀 죽게 되고, 해저 바닥에 쌓여서 수산생물의 서식장·산란장을 파괴할 뿐 아니라, 유령어업(Ghost fishing)을 발생시켜 수산자원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유실어구·폐어망에 의한 해양생태계 및 수산자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수중에서 분해되는 생분해성 어구를 개발하고, 생분해성 어구의 사용 확대를 위해 시범사업을 하게 되었다.

<표 4-3-2> 유실률이 높은 어업별 평균 어구사용량

구 분	통 발**	자 망*	안강망	정치성어망
어선척수	7,573	17,859	809	4,936
어구사용량 (척당)	26,505천개 (3,500개)	178,590km (10km)	4,045통 (5통)	4,936통 (1통)

* 자망은 척당 연간 40~60폭⁹⁾ 유실(약 1,900톤, 서울~부산 100회 왕복거리)

** 통발은 척당 연간 250~500개 유실(약 2~4백만 개) 어구사용량의 7~14%

나. 추진내용 및 성과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은 생분해성어구를 사용하고자 하는 연근해통발, 자망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을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적격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어업인들의 친환경 의식 제고 및 상용화 기반 구축을 위하여 생분해성어구 표준단가와 나일론어구

9) 폭 : 자망의 수량단위(보통 높이 2m, 완성된 길이 70m, 무게 2km)

표준단가의 차액을 보조하고, 어업인 자부담 중 기존어구 가격의 20%를 추가 지원하여 어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유실이 많은 자망과 통발을 대상으로 강원도 등 7개 시도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는 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경북도 대게자망어업 60척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착수하였다. 2008년도에는 43억 원을 지원하여 대게자망, 봉장어통발어업 212척, 2009년도에는 39억 원을 지원하여 대게·꽃게·조기자망, 봉장어·연안통발어업 253척을 대상으로 생분해성어구를 확대 보급함으로써 어업인들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또한, 자망과 통발을 대상으로 대상어종별 생분해성 어구 8종을 개발하고, 그에 따른 어획성능 시험을 실시한 결과 기존 어구와 어획성능에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신속한 공급체제 구축을 위해 수협중앙회를 사업대행기관으로 참여시켰으며, 어구의 성능검사 및 인증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하도록 하여 어업인 참여율을 확대하였다.

<표 4-3-3>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추진실적 및 투자계획

(단위: 억 원, 척, 개수)

연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친환경어구 시범사업 투자계획	20	43	39	40	43	53
친환경어구 사용 척수	60	200	250	250	286	420
친환경어구 시범사업 지원시도	1	2	5	5	7	7

다. 평가 및 향후계획

생분해성어구의 어구의 어획성능은 현재 어업인이 사용하고 있는 나일론자망과 대등하며, 2년 정도 지나면 해양의 미생물에 의하여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고, 분해과정에서 생성되는 부산물은 독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수산생물의 산란·서식장 보호 및 유령어업 발생 저감으로 수산자원의 회복을 기여하여 어업인의 소득향상에 이바지하고, 수중에서 완전 분해되므로 폐어구 수거 및 처리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생분해성 대게자망 시범사업은 국내에서 개발된 생분해성 수지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방사, 편망 및 열처리과정을 거쳐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내 제망업계 등 관련 산업의 활성화 도모 및 고용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4-3-1> 유실된 통발·자망의 유령어업 및 서식장 파괴



3. 연근해어업 총조사

(어업정책과 사무관 김옥식)

가. 추진배경 및 개요

국내 수산자원은 세계적으로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수산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는 어법도 매우 다양한 실정이다. 또한, 지역별·해역별 다양한 해양환경에 따라서 현행법으로 적정한 어업관리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한 지역 간, 업종 간 어업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며, 수산자원이용과 관련한 어업별 건의도 폭주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의 현실이다. 이에 연근해어업의 실태와 자원의 상태를 파악하여 어업구조개선 시책과 그 지원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정부에서 어선감척, 자율관리, 총어획허용량제도, 수산자원회복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고, 어업자원과 어업경영 실태파악 등을 위한 연근해어업 총조사를 지난 '97년부터 매 5년마다 추진 중에 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연근해어업 총조사는 변화하는 어업여건을 고려하여 국내 연근해어업의 대상자원, 사용어구 및 경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미래지향적인 연근해어업 발전방향에 대한 기초자료제공 및 연근해어업 구조개선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어업의 실태와 자원의 상태 등에 관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어업구조개선 등의 시책에 반영하고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 간 23억 원을 투입하여 「연근해어업 총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 동 조사에서는 시도별·어선규모별·어업별 어획실태, 어장이용 수준 및 어기별 어획상황에 대한 조사와 어종별 주 조업어장, 어업별 사용어구 규모, 어구·어법 변화상황, 어획물 체장조성, 생식소 속도지수, 생물학적 허용어획량 추정(ABC) 등의 어업전반에 대한 기초 조사를 실시한다.

다. 평가 및 향후계획

연근해어업 총조사가 완료되면, 연근해어업 허가정수 조정, TAC(총허용어획량) 실시, 어업구조 개선(감척사업 등) 등 중요 정책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되며, 주요 어종별 어획강도 및 어획수준에 따라 허가정수를 재설정하고, 동 조사의 자원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TAC 산정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또한, 현장 어구·어법의 발달에 따른 관련제도를 보완하고, 어업현안 발생(자원량 증감 논란 등)시 판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한·일, 한·중 어업협정, FTA·DDA체결 등 국제 어업관련 협상시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등 어업정책방향 설정의 근간 자료로 활용된다.

4. 연근해어업 경쟁력 강화

(어업정책과 사무관 김육식·이세오)

가. 추진배경 및 개요

국내외 어업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어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현재의 어업구조를 과감하게 개편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2008년부터 ‘연근해어업 체질개선을 위한 핵심전략연구사업’을 추진하여 수산자원 및 어린고기 보호, 혼획을 저감방안 등 어종별 관리방식에 의한 자원관리형어업으로 전환으로 추진코자 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별·해역별 해양환경특성이 적합한 연안어업의 적정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기후변화대비 탄소저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연근해어업을 대상으로 탄소배출량 실태파악 및 배출량 기준을 설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연근해어업 체질개선을 위한 연구는 낭장망, 연안개량안강망, 기선권현망, 통발, 자망, 정치망어업 혼획 등 어업실태조사와 해역별·업종별 혼획, 치어포획, 어획물 해상투기 실태조사, 연안 생태계 보전 및 관리방안, 국제어업 정책동향 등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동 연구조사를 토대로 자원관리를 위한 제도개선방안도 고려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동·서·남해 지리적 어장환경과 특성이 다양하고 지역여건과 해역 특성에 따라 어구와 어법도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 제도에 의해 운용하고 있어 효율적 관리에는 다소 한계성이 있는 실정임에 따라서 연안·구획·마을·정치망 어업을 대상으로 지역 및 해양환경 특성에 맞게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지자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다만, 제도개선이후 어업분쟁 및 지역 간 갈등이 우려되는 부분은 별도 보완책을 마련하고, 단계별 이양을 통해 선진국형 어업제도를 마련코자 전문기관, 지자체, 관련업계 의견 등을 수렴하여 점진적으로 추진코자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면밀한 검토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최종 제도개선안이 마련되면 어업제도개선협의회 및 중앙수산조정위원회 등의 검토, 심의를 통해 추진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급속한 기후변화와 생태계보호를 위해 2004년 11월 러시아가 국제 기후변화 협약인 교토의정서를 비준함으로써 2005년에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노력이 본격화되어 선진국은 1990년대 수준으로 탄소배출량을 저감하는 방향으로 협약하고, OECD 국가 중 탄소배출량이 높은 10개국에 포함하는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받아 2013~2017년까지 탄소배출량 기준을 설정하고 의무감축국에 편입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탄소배출 실태를 '10년부터 조사를 통해 이행준비에 도입하여 2013년까지 어업별 탄소배출량을 산정하여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 평가 및 향후계획

연근해어업 체질개선을 위한 연구 사업은 2012년까지 연구조사를 추진하여 치어·혼획을 저감을 위한 어구·어법을 개발하고, 어구·어법 규제방식에서 어종별 자율관리방식으로 전환을 모색할 계획이다. 연안어업의 적정관리를 위한 제도개선방안도 관계기관과 관련업체 및 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선진국형 어업제도를 마련하여 효율적 어업

관리를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연근해어업대상 탄소배출량 산정 및 기준설정도 2013~2017년까지 마련하여 어업분야 탄소저감대책마련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5. 어업분쟁조정 기반 강화

(어업정책과 서기관 이영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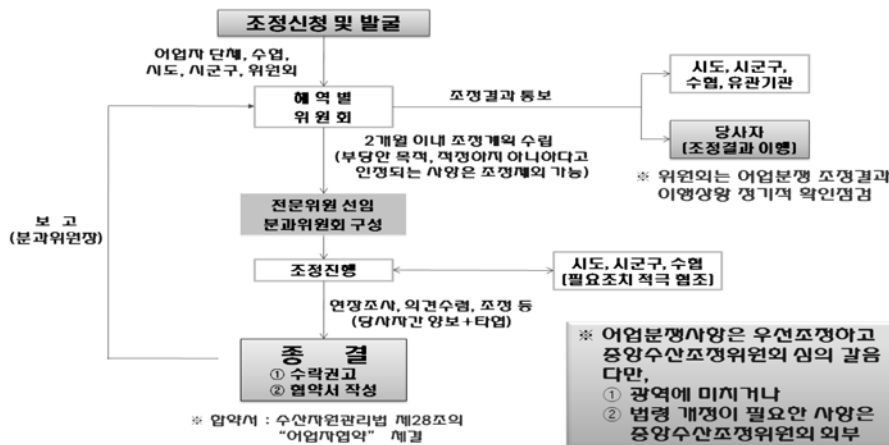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연근해어업 41개 업종 약 54천척의 어선이 한정된 어장에서 수산자원의 선점을 둘러싼 어업경쟁으로 업종 간, 지역 간 갈등과 분쟁이 심화되고 있지만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수산조정위원회'는 그 분쟁조정 기능이 미약하고, 조정에 한계가 있어 그동안 어업분쟁 기능을 사실상 수행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해역별 어업특성에 따라 발생하는 어업 간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조정해 나가기 위해 동·서해어업지도사무소에 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를 설치(동해 '09.10.13, 서해 '09.11.3)하였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그림 4-3-2> 분쟁조정 절차



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 출범 이후 9개 안건을 선정하여 분과위원회 구성, 현지조사, 당사자 간 타협을 통한 조정에 적극 노력 중에 있으며 일부 성과도 도출되고 있다.

1) 효율적인 분쟁조정 노력 경주

조정중인 분쟁안건의 조정방향 설정 및 Know-how 공유를 위한 협의회 개최, 원활한 분쟁조정위 위한 훈령 개정 3회, 본 위원회 5회, 분과위원회 10회, 현장방문 간담회 30회 등 효율적인 분쟁조정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서해 어업조정 위원회에서 ‘진도해역 새우조망어업과 자망어업자간 조업구역 분쟁’을 조정완료('10.7.14)하는 등 소기의 성과도 거두고 있다.

2) 찾아가는 홍보활동 전개

11개 시·도 담당공무원, 수협, 어업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10회에 걸쳐 현장교육 실시 및 홍보 브로슈어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출범 초기인 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의 홍보 및 분쟁조정 안건 발굴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다. 평가 및 향후계획

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 출범은 해역별로 발생되고 있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다만, 어업분쟁은 어업자간 이익과 직결된 문제로 조정에 어려움이 있어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고, 위원회가 법적 근거없이 설치되어 조정결과를 담보할 권한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향후 가칭 「어업분쟁조정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을 통해 보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분쟁조정이 기대된다.

제2절

어업질서 확립

1. 어업지도단속 내실화

(지도안전과 사무관 하두식)

가. 추진배경 및 개요

2004년 12월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2개년(2005~2006년) 사업으로 826억 원을 투입, 2,467척을 매입·폐기 처분한 이후 2단계 지도단속의 일환으로 허가어선의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주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어업인 및 업종 간 어장확보와 이용을 위한 경쟁이 심해지고, 허가어선이 선형과 어구·어법의 개량 및 변형조업으로 불법어업 및 조업갈등의 형태가 복잡·다양화되고 있으며, 조업금지구역 위반 등으로 자원남획과 지역 간·업종 간 분쟁이 심화되어 불법어업 단속건수는 2006년 3,015건에서 2007년 3,773건, 2008년 4,449건, 2009년 4,868건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표 4-3-4> 연도별 불법어업 단속현황

(단위 : 척)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합 계	4,054	3,015	3,773	4,449	4,868
대형기저	70	48	113	60	167
중형기저	23	30	7	41	10
소형기저	201	61	42	18	9
잡 수 기	98	73	67	120	154
기선형망	192	194	203	136	261
기 타	3,470	2,609	3,341	4,074	4,267

그리고, 한·일,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한·일간은 조업질서가 정착되고 있는 반면, 한·중 간은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 강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EEZ 입어 중국 어선의 불법어업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표 4-3-5> 연도별 중국어선 불법어업 단속현황

(단위 : 척)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합 계	584	522	494	432	381
영해침범	41	23	26	12	27
특정금지구역침범	47	38	47	32	34
무 허 가	146	133	70	76	91
조업조건위반	350	328	351	312	229

나. 추진내용 및 성과

불법어업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어패류 산란기와 성육기인 5, 10월에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조하여 전국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하였고, 이와 병행하여 불법어업 예방 대국민 합동담화문(농식품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발표 및 방송매체(TV, 라디오)를 통하여 불법어업예방 공익광고 캠페인과 다큐멘터리 등을 송출·방영함으로써 불법어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전환의 계기로 삼았다.

또한,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방지를 위하여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단속을 강화하고, 한·중 지도단속실무회의 등을 통해 중국정부로 하여금 불법조업 방지를 촉구함은 물론 어업교섭시 조업조건 강화 등 제도적 대응도 강구해 나가고 있다.

다. 평가 및 향후계획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대표적 불법어업인 소형기선저인망어선의 일제정비 및 재진입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감시활동과 대국민 홍보로 수산자원이 회복되는 계기가 되었다. 다만, 어장확보를 위한 조업경쟁과 선형·어구변형 불법어업 행위 등으로 지역 간·업종 간 분쟁이 심화되고 이로 인한 불법어업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실정이다.

향후, 조업분쟁 방지를 위한 제도 정립과 단속방법을 전략화하고 자율어업질서 정착



을 유도하는 등 선진 어업질서 구축 및 지도단속 내실화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2. 어업지도선 건조 및 장비 확충

(지도안전과 사무관 전길권)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연근해어선의 안전조업과 불법단속을 위해 어업지도선을 운영하고 있으며 '66년부터 '99년까지 517억 원을 투입 20척을 확보하여 운영하였다.

'94.11월 유엔해양법협약 발효, '99.1월 한·일 어업협정, '01.6월 한·중 어업협정 발효에 따라 관할수역이 영해에서 EEZ까지 광역화에 따라 관할수역은 88천km²에서 361천km²로 4.1배, 활동거리는 1,143마일에서 1,952마일로 809마일 증가하여 국가 어업지도선을 '09년 20척 수준에서 38척까지 추가 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우선 '02~'03에 감척된 트롤어선 5척(139톤)을 인수하여 55억 원을 투입 국가 어업지도선으로 개조하여 활용하였고, '02~'06년까지 730억 원을 투입, 500톤급 8척 확충, '07~'08년 113억 원 투입, 500톤급 노후지도선 1척 대체, '09년 국립수산과학원의 시험조사선 탐구1호를 지도선으로 전환하여 34척까지 증척하였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0년도에는 선령 25년 이상의 노후어업지도선 대체를 위하여 219억 원을 투입 150톤급 2척, 500톤급 1척을 준공하고 1,000톤급 1척을 착공하여 어업지도선 안전 확보는 물론 안정적인 지도단속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 평가 및 향후계획

'10년 현재 국가어업지도선은 100~2,000톤급 34척으로 지속적으로 노후대체와 신규확충을 추진하여 EEZ 해역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EEZ 해역관리를 위해서는 EEZ수역 24척, 중간수역 12척, 제주도 주변수역 2척 총 38척이 필요하나 선령 25년 이상 노후어업지도선 대체가 시급하여 우선 노후대체 완

료 후 신규 확충할 계획이다.

앞으로 '11년에 1척, '12년에 1척을 대체하여 '12년까지 노후어업지도선 대체를 완료하고 '13년에 1척, '14년에 2척, 15년에 1척을 건조하여 38척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3. 어업인 자율어업질서 참여 유도

(지도안전과 사무관 하두식)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사업 이후 이들 어선의 재진입 방지와 불법어업 근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어업인의 자율 어업질서 참여 유도를 위해 불법어업 신고포상금 제도를 '07.8.14 도입하였으나 신고대상이 소형기저 및 공조조업 등으로 제한되어 신고실적이 저조하였다.

또한 지역에서 모범적으로 활동하는 어선을 수산자원보호 명예감시선으로 지정하여 불법어업 합동단속에 참여하게 하고, 매년 불법어업 없는 우수마을을 발굴하여 포상하는 등 어업인 자율어업질서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불법어업에 대한 어업인의 자율참여를 유도하고 불법어업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신고대상을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행위로 확대하는 규정을 개정('10.4)하여 시행 중에 있고 동 제도 홍보용 포스터를 제작, 전국 관련기관에 배포하여 주요 항포구 및 어업인들의 왕래가 많은 장소에 게시하였다. 또한, 수산자원보호 명예감시선으로 지정된 어선을 일제 정비하여 709척을 재지정하고 활동실적에 따른 개별적인 포상기회도 마련하였다.

한편, 불법어업 근절 우수 어촌계·단체를 선정(최우수, 우수, 모범 등급으로 구분)하여 포상함으로써 어촌사회에 준법의식을 장려하고 어업인의 자율적인 참여에 의한 자원회복 및 선진적 어업질서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표 4-3-6> 2009년도 불법어업 없는 우수마을 선정현황

구분	어촌계(단체)	대표자	선정결과
인천(1)	소래어촌계(옹진군)	윤석빈	모범
경기(1)	진곡어촌계(화성시)	황대훈	“
강원(3)	금진어촌계(강릉시)	윤상기	“
	대진어촌계(동해시)	최장명	“
	오호어촌계(고성군)	손영주	우수
전남(2)	동풍어촌계(고흥군)	이성엽	“
	복길어촌계(무안군)	이진일	모범
경남(3)	학산어촌계(거제시)	장상사	“
	원천어촌계(남해군)	문운민	“
	지족어촌계(남해군)	오봉섭	“
제주(1)	성산포어선주협회(서귀포시)	김영철	최우수

* 선정기준 : 시·도지사 추천 → 현장실사 → 심의·의결 → 선정

다. 평가 및 향후계획

신고포상금 제도 확대시행, 수산자원보호 명예감시선의 불법어업 합동단속 자율적인 참여, 불법어업 없는 우수마을 포상 등을 통한 어업인 자율어업질서 참여를 유도하여 어업인 자율 어업질서 확립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향후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 수산자원보호 명예감시선 활용 및 불법어업 없는 우수마을 포상제도 개선 등을 통해 자율 어업질서 확립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4. 연근해어선 안전조업지도 대책 추진

(지도안전과 사무관 전길권)

가. 추진배경 및 개요

기관사고 등 설비관련 해난사고 증가로 '08년 464척에서 '09년 519척으로 11.8% 증가하였으며 인명피해를 수반한 충돌·침몰 등 대형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08년 37

명에서 '09년 63명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09년도 해난사고 원인은 운항과실이 196척(38%), 57명(90%)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형별로는 표류(기관고장 등) 359건(69%), 충돌(견시소홀) 83건(16%)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지속적인 안전조업 지도가 필요한 실정이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10 연근해어선안전조업대책”을 수립하여 해난사고 예방활동 강화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체점검 생활화, 해황정보 문자서비스 제공, 현장 안전교육 및 어선검사 강화 등 안전조업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어업정보통신국을 통한 기상특보 방송 강화, 어선안전의 날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어업인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였다.

다. 평가 및 향후계획

지속적인 홍보강화로 해난사고는 둔화되었으나 충돌사고 증가로 인명피해가 증가하였으므로 '11년도에도 “2011 연근해어선안전조업대책”에 충돌 등 예방을 위한 대책을 보완하여 시행하는 등 어업인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 등을 통하여 어선 해난사고 감소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제4장

수산업·어업인 경영지원 대책 마련



1. 수산업협동조합 개혁 추진

(수산정책과 사무관 전성래)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수협은 부실경영으로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등 자생력 부족으로 어업인 지원 등 본연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과 함께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국제회계기준 적용('14년부터) 등 금융여건 변화에 능동적 대응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변화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급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따라 수협 경영정상화를 위해 시대적 흐름에 맞게 경영구조 개편 등 제도개선과 부실수협 구조조정 등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 추진

수협의 경영구조 개편과 어업인 지원기능을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수협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09.4)된 후 '10. 4월 공포(시행 '10.10.13)되었다.

개정 수협법의 내용은 중앙회의 경우 회장 비상임화와 연임을 제한하면서 교류협력사업 등 상징적 대외적 역할에 전념토록 하되 실질적인 경영권을 배제하여 전문경영인 체제를 확립하였다. 또한, 임원선출의 공정성 확보와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인사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사회에 인사추천위원회의 구성과 대표이사의 경영평가 및 해임 요구권 등을 부여하는 등 기능강화로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조합원에 대한 교육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위원회를 설치하였고, 중앙회 공적자금을 출자에서 출연의 방법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중앙회의 자본 확충을 위해 일선수협이 중앙회에 배당권만 가지는 우선출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일선조합의 경우 경영 정상수협은 조합장 비상임 여부에 대해 선택권을 부여하고, 경영개선이행약정(MOU) 목표를 2회 연속 미 이행한 조합장은 비상임화를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상임이사 선출과 관련하여 정상조합은 현행 선출방법(조합장이 이 사회의 동의를 거쳐 총회에서 선출)과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를 총회에서 선출하는 방법 중에서 선택하여 상임이사를 선출하도록 선출절차를 개선하였다. 또한 상임이사 자격을 종전에는 비조합원만이 상임이사 자격을 부여하던 것을 경영능력이 있는 조합원도 자격을 부여하여 상임이사 자격을 완화하였다. 아울러, 수협 등 금융기관에 일정규모 이상의 금융채무 연체자와 조합사업 이용실적이 없는 자는 임원자격을 제한하여 책임경영을 강화하였다.

2) 중앙회 경영혁신 추진

중앙회 인력·조직 감축 및 부실사업장 폐쇄 등 경영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상경비 20% 절감과 임직원 급여반납(3~20%), 7개 조직 축소(특판사업부, 경영지원부, 홍보실, 조합리스크관리실, 외환사업실, 카드사업실, 수매사업단) 및 8개 부실사업장(바다마트 2곳, 신용영업점 6곳)을 정리하였다. 아울러, 신용사업부문에서 IB 영역 확대 및 자산운용업 진출을 통한 미래 新성장동력 확보, 저원가성 예금 증대 및 고비용 시장성 예금 감축을 통한 예수금 조달 구조 개선, 적극적 프로모션을 통한 비이자 사업이익 증대, 고객관리시스템(CRM)의 업무활용도 증가 및 고객유치 프로모션을 통한 고객관리 역량 제고, 자산건전성 제고를 통한 선제적 위험관리 강화를 5대 핵심전략으로 선정하여 적극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당기순이익 330억 원, 예수금 10조 3,731억 원, 대출금 13조 1,621억 원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3) 일선수협 경영평가 실시

93개 일선수협에 대하여 2008년 12월말 기준으로 3개월간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순자본비율 산출 등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 이행여부 평가 및 적기 시정조치 이행점검 등 전반적인 경영평가와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경영상태평가 결과를 감안한 종합평가결과 40개 조합을 부실우려조합(경영개선권고/요구)으로, 5개 조합에 대해서는 부실조합(경영개선명령)으로 지정하고 임직원 제재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 목표 등 적기 시정조치를 시달하여 일선수협 경영정상화를 지속 추진하였다.

4) 부실수협 구조조정 추진

2009년 6월 10일 개최한 「상호금융 예금자보호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토대로 5개 부실조합 중 흑산도수협은 순자본비율과 이월결손금의 지속적 악화로 조합의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하고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을 미 이행하였으므로 2008년도 적기 시정조치(조건부합병)에 의거 관리인선임 및 합병을 추진토록 하고 나머지 4개조합중 장흥군수협은 2008년도 말 경영평가 결과 2002년 9월 대비 순자본비율과 이월결손금이 악화되어 조건부합병 및 구조조정 추진시까지 부실우려조합에 준하는 최소 이행목표 부여 등 자구노력 목표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동해시수협은 이월결손금과 순자본비율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경영개선 정도가 미미하고,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은 상호금융사업 미 취급으로 사업규모가 영세하고 채권부실화 위험이 상존하여 자체 경영정상화가 곤란함에 따라 조건부합병 및 자구노력 목표를 부여하여 경영정상화를 추진토록 하고 회계법인의 부실조합 지속가능성 평가용역결과(2009년 7월)에 따라 사업구조개편 등 경영정상화 추진 또는 합병, 사업양도, 계약이전 등의 결정 및 추가조치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5) 일선수협 경영개선자금 지원

일선수협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2008년 말 기준으로 경영평가 결과 부실조합 등 34개 조합과 MOU를 체결하여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였다.

2009년도 34개 조합에 총 483억 원의 경영개선자금 이자를 지급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였다.

6) 부실책임조사 실시

일선수협의 부실 책임이 있는 부실관련자에 대한 엄격한 민형사상 책임추궁을 통하여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조합의 손실보전과 예금자보호기금의 안정적 관리를 목적으로 구조조정 및 경영개선자금 지원조합(조사대상 : 52개 조합)을 대상으로 부실원인을 분석하고 임직원의 법령위반 등 귀책사유를 규명하는 등 부실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중 11개 조합 임직원 245명(부실책임액 589억 원)에 대하여는 기금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손해배상청구를 추진함으로써 일선수협의 조기 경영정상화와 책임경영체제를 더욱 공고히 확립하였다.

다. 평가 및 향후계획

수협이 협동조합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회는 인적·조직 축소 및 부실사업장 정리 등 구조조정과 공적자금 조기 상환을 위한 자구노력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일선수협은 순자본 비율 및 경영상태평가를 통해 그 결과에 따라 부실조합 등에 대해 지정·해제 및 강력한 적기 시정조치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일선수협 경영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조합별 취약부문을 집중 개선하기 위하여 자기자본 잠식 해소 및 확충을 위한 자본적정성 목표, 무수익 채권 감축을 위한 자산건전성 목표, 자본 고정화 방지를 위한 유동성 목표, 장기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수익성 목표를 신설하여 경영상태에 따라 차등 부여하였으며, 경영개선목표 이행률에 따라 추후 견책, 감봉, 상임임원 직무정지 등 제재조치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2009년 말로 대다수 조합의 MOU가 해지됨에 따라 MOU 해지 조합 중 MOU 약정상의 순자본비율 목표 미달 조합의 경우, 순자본비율 0%를 조기 달성할 수 있도록 경영정상화계획 목표를 별도 부여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2. 수산보전제도 도입

(어업교섭과 사무관 권오정)

가. 추진배경 및 개요

농업분야에서 1997년 직불제를 본격 도입한 이후 어업인 소득보전 대책으로 수산직불제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자유무역협정(FTA) 체결확대 등으로 어업인들은 직불제 도입·시행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2001년부터 시작된 WTO·DDA 수산보조금 협상 결과가 우리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수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새로운 수산보조금 정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WTO·DDA 보조금 협상이 진전됨에 따라 수산분야 금지보조금의 범위 확대 논의가 진행되는 등 직불제 확대를 위한 대외여건은 낙관적이지 않은 상황이었다.¹⁰⁾

10) 수산보조금이 논의되는 규범(Rules) 협상그룹 의장이 대부분의 수산보조금(면세유, 영어자금, 어선건

이에 WTO·DDA 체제하에서도 지원 가능한 새로운 유형의 어가소득 보전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타 분야에서 시행하는 직불제를 참고하여 시장개방 체제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허용가능 보조금을 수산직불제 형태로 발굴하여 추진하고자 하였다.

수산직불제는 정부가 예산(국고 보조)을 어항정비, 유통시설 확충, 기반정비 등에 투입해도 어업인의 직접적 소득 증대와 연결되지 않는 점을 보완하여 시혜적이고 무조건적인 보조금 지급을 지양하고 수산업의 구조개선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 어장환경개선, 구조조정, 어업인·어촌 복지 증대 등을 목적으로 발굴한 정책이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수산직불제의 원활한 시행을 통한 어업인 경영 안정과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견인하기 위해 자원보전형, 환경친화형, 공익기능 유지형의 수산직불제 사업 6개를 발굴하였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08년 어업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세부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D/B 구축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국내대책과 연계된 소득보전직불 및 폐업지원을 위한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다.

2009년 수산분야 직불제 관련 예산은 2008년도 524억 원 대비 18% 증가한 616억 원으로, 이는 어선사고 등 재해로 인한 보상 등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어선원 및 어선보험, 친환경 어구보급 사업 예산이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표 4-4-1> 수산분야 직접지불제 예산 현황

(단위:억 원, %)

사업명	2008년	2009년	'09/'08년	비 고
계	524	616	117.6	
FTA피해보전직불	51	15	29.4	
FTA폐업지원	80	90	101.1	
수산물재해보험	26	26	100.0	
어선원 및 어선보험	265	364	137.4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	72	70	97.2	
친환경어구보급	30	49	163.3	
조건불리지역보전	-	2	-	연구용역비

조, 어항건설 등)을 금지대상으로 분류한 의장안 발표('08. 7)

다. 평가 및 향후계획

현재 기존사업인 수산물재해보험, 어선원 및 어선보험,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 친환경어구보급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는 신규 사업으로 친환경기자재(부표) 사용 직불제를 도입하여 실시중에 있으며, '09~'12년까지 60억 원을 투융자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경쟁력있는 농어업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어가단위 소득안정 직불제 도입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어가단위 소득안정 직불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도입을 위한 지침 등 도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향후 시범사업을 통해 본 사업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3. 수산업 경영자금 지원 확대

(수산정책과 서기관 임영훈)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수산업 경영자금 중 영어자금은 수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어업활동에 필요로 하는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자금으로 어업경영을 지원하는 대표적 수산정책자금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중이며, 수산발전기금은 일본, 중국 등 주변국과의 어업협정 체결을 비롯한 국제어업질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속가능하고 경쟁력있는 수산업의 육성·발전을 도모하고자 설치한 수산분야의 유일한 자금으로 2001년 7월부터 운용을 개시하였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영어자금은 대 정부 상환분 510억 원 신규 투입 및 수협 신용자금 4,000억 원을 신규로 투입하여 2008년에 비해 4,000억 원 증액된 1조 9,050억 원으로 운용되었으며, 이 중 연근해어업 분야에 1조 4,250억 원, 원양어업 분야에 800억 원이 공급되었다. 수산발전기금 운용 실적은 5,996억 원으로 전년도 실적 5,910억 원 대비 1.0% 증가하였다. 이러한 수산업 경영자금의 안정적 지원으로 2009년도 어업생산액은 지난해 대비 8.9% 증가하였다.

<표 4-4-2> 연도별 어업별 생산금액 동향

(단위 : 톤, 백만 원, %)

구분 \ 연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증감률 (’09/’08년)
합 계	4,731,322	5,049,321	5,285,860	5,751,945	6,345,058	6,910,561	8.9
연근해어업	2,609,717	2,705,955	2,751,251	2,939,109	3,222,256	3,640,378	13.0
천해양식	1,217,104	1,348,407	1,443,169	1,599,542	1,520,122	1,846,871	21.5
원양어업	737,289	819,232	891,031	990,205	1,327,395	1,149,801	△13.4
내수면어업	167,212	175,727	200,409	223,089	275,285	273,511	△0.4

자료 : 통계청

1) 영어자금의 안정적 공급

전체 공급자금 1조 9,050억 원 중 1,000억 원은 어선조난, 흉어, 재해, 기타 특수한 상황 발생 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영어자금으로 운용하였고, 특히, 특별영어자금 1,000억 원 중 250억 원은 2007년 12월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의 어업경영안정을 위해 지원되었다.

2009년도 영어자금 공급재원별로는 정부의 재정자금(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5,636억 원, 수협중앙회의 신용자금에서 8,433억 원, 수협중앙회 회원조합의 상호금융자금에서 4,981억 원을 공급하였으며, 영어자금의 안정적 공급과 더불어 대출된 자금에 대한 연체감소 등을 통해 자금운용에 있어서도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표 4-4-3> 2009년 영어자금 공급현황

(단위 : 억 원, %)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소 요 액	38,920	41,199	41,299	41,685	44,223
공 급 액	14,050	15,050	15,050	15,050	19,050
공 급 륜	(36)	(37)	(37)	(36)	(43)
연근해					
소 요 액	33,854	36,088	36,364	36,668	39,210
공 급 액	13,400	14,250	14,250	14,250	17,850
공 급 륜	(40)	(40)	(39)	(39)	(46)
원 양					
소 요 액	5,066	5,111	4,935	5,017	5,013
공 급 액	650	800	800	800	1,200
공 급 륜	(13)	(16)	(16)	(16)	(23.9)
재원별					
재정자금	5,636	5,636	5,636	5,636	5,636
수협자금	3,933	4,433	4,433	4,433	8,433
상호금융	4,481	4,981	4,981	4,981	4,981

자료 : 농림수산물부 수산정책과

2) 수산발전기금의 생산적 운용

수산발전기금의 조달실적을 보면 '04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원된 장기 융자사업의 거시기간 종료로 정기상환 융자원금이 일부 회수되면서 융자원금 회수액이 증가하고 법정부담금, 이자수입 등으로 자체수입이 확대 편성되었으나, '08년도 사업비가 확대 지원되면서 여유자금 회수액이 축소 편성되었다. 또한, 정부내부 수입(정부출연금)은 FTA피해 지원을 위해 200억 원, 해양환경개선사업 지원을 위해 191억 원으로 총 391억 원 편성되었다.

기금운용은 크게 기금운영비, 사업비, 여유자금 운용으로 분류되며 가장 비중이 큰 사업비의 규모는 전년도 계획 5,479억 원 보다 다소 증가한 5,617억 원으로 융자사업비가 전체 사업비의 87.3%를 차지하고 있다.

기금 사업비는 해양환경개선추진, 정부가격안정, 자원관리형어업육성 및 어업경영지원, 품목별경쟁력강화 및 직접피해지원, 민간가격안정, 유통가공시설개선, 산지 및 소비자유통개선 등의 분야에 지원하여 어업생산성 향상 등 수산 사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표 4-4-4> 2009년 수산발전기금 운용 총괄표

(단위 : 백만 원)

구 분	계 획		실적(B)	증△감	
	당초	변경(A)		(B-A)	%
합 계	588,019	590,019	599,576	9,557	1.6
• 경상사업	71,253	80,453	68,809	△11,644	△14.5
- 폐기물해양배출종합관리시스템구축	2,300	2,300	2,225	△75	△3.3
- 해양폐기물정화사업(민간보조)	18,400	22,346	22,515	169	0.8
- 해양폐기물정화사업(자치단체보조)	2,400	3,654	3,654	-	-
- 해양배출오염물질에대한해양환경개선 부담금부과연구	100	100	-	△100	△100.0
- 다기능청소선운영지원	509	509	509	-	-
- 연안어장 및 내수면환경개선	20,000	24,000	23,800	△200	△0.8
• 비축사업	12,000	12,000	11,571	△429	△3.6
- 출하조절	4,200	4,200	4,200	-	-
- 수산물동물질병관리	370	370	-	△370	△100.0
- (경)수산물동물질병관리	335	335	335	-	-
- 생계소득 및 안정	99	99	-	△99	△100.0

구 분	계 획		실적(B)	증△감	
	당초	변경(A)		(B-A)	%
- 활어수출확대를위한특수차량등구입지원	40	40	-	△40	△100.0
- 소득보전직불금	1,500	1,500	-	△1,500	△100.0
- 폐업지원금	9,000	9,000	-	△9,000	△100.0
• 용자사업	490,405	488,405	482,705	△5,700	△1.2
- TAC참여어업인경영개선자금	12,500	12,500	12,500	-	-
- 양식어업지원	8,105	8,105	8,105	-	-
- 어망생산운영 및 어구제작비지원	600	600	600	-	-
- 어선기관 및 장비개량	600	600	600	-	-
- 노후원양어선대체지원	4,000	4,000	4,000	-	-
- 어업인정책보험지원	8,000	8,000	8,000	-	-
- 원양어업관리회사지원	5,000	5,000	-	△5,000	△100.0
- 원양어선설비현대화	1,000	1,000	1,000	-	-
- 순환여과식양식시설지원	700	700	-	△700	△100.0
- 수산물수매지원	131,800	131,800	131,800	-	-
- 우수수산물지원	140,000	140,000	140,000	-	-
- 가공시설 및 운영지원	29,600	29,600	29,600	-	-
- 해외수산시설지원	1,000	1,000	1,000	-	-
- 산지 및 소비지유통개선	147,500	145,500	145,500	-	-
• 기금운영비	1,545	1,545	1,299	△246	△15.9
• 여유자금 운영 등	24,816	19,616	46,763	27,147	138.4

다. 평가 및 향후계획

수산업 경영자금 지원정책은 WTO·DDA 협상, FTA 체결로 피해가 우려되는 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수단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더불어, 내실 있는 경영자금 지원을 통해 정책자금 연체율도 감소추세로 전화되고 있어 앞으로도 정책자금 지원에 대한 정부 부담은 감소하고, 정책자금을 통한 수산업의 발전은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도 수산업 경영자금에 대한 관리 강화와 실효성이 있는 사업 발굴·지원 확대를 통해 수산업 발전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제2절

어업활동 지원

1. 어업보험 내실화로 어업경영 안전장치 확충

(수산개발과 사무관 양진문)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연근해 어선원 및 어선이 재해발생 시 신속·공정한 보상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을 2003년 3월 19일 제정(법률 제6866호)하고 보험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수협중앙회에 위탁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2009년도에는 어선원보험에 가입한 37,283명의 어선원과 어선보험에 가입한 6,518척에 대하여 33,767백만 원을 지원하였다.

<표 4-4-5> 어선원 및 어선 보험료 국고보조금 지원 실적

(단위 : 명, 척, 백만 원, %)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09/'08년
○ 어선원보험료							
- 인 원	35,658	36,431	36,846	35,815	37,116	37,283	100%
- 보 조 액	6,546	7,958	8,573	9,829	11,968	15,612	130%
○ 어선보험료							
- 척 수	2,753	4,925	5,015	5,397	5,704	6,518	114%
- 보 조 액	2,058	1,491	2,007	2,615	3,897	6,002	154%
○ 위탁운영사업비							
- 보 조 액	5,241	5,502	7,420	7,683	10,675	12,153	114%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

1) 가입률 제고 추진

소형어선의 어선원 및 어선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보험가입 전산안내장 140,000부, 캠페인 안내장 20,000부, 포스터 1,000매, 어선원보험 법령요약 및 보상절차 안내서 5,000부,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계약안내를 위한 안내서 19,000부, 만화로 알아보는 어재보험 안내서 5,000부를 제작·배부하였고, 어업무선방송을 연중실시(연 500회)하는 한편 수산전문지 및 정책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홍보를 한층 강화하였다.

2) 어선사고예방 및 현장서비스 강화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지정 선박수리소 199개소, 지정병원 449개소를 확보하여 운영 중이며, 어선사고 예방을 위하여 기관무상 점검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3) 어업인 지원 및 제도개선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금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적용할 '09년 어선원보험의 기준임금을 고시하여 선원의 기초생계 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강화하였다.

어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보험운영실적을 감안하여 어선원 및 어선보험의 업종별 할인, 할증요율을 조정함으로써 업종 간 보험료 부담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제고하였다.

어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과거 3개년 보험실적을 기초로 산출된 요율조정요인(용역결과 전체평균 14.6% 인상)의 일부만 반영하여 급격한 보험료 인상을 방지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였다.

재해보상보험에 대한 수지균형 유지 방안의 일환으로써 '09. 1. 1이후 책임이 개시되는 어선원 및 어선보험 계약에 대하여 코리안리(주)와 특약(50% 비례재보험)을 갱신하여 지속적인 위험분산을 통한 사업 안정화를 추진하였다.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개정('09.5.27 공포)에 따른 신설조항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면 개정에 따른 어재법령 내 준용규정 정비 및 현행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다.

다. 평가 및 향후계획

2010년도에는 정책보험 도입 7차년도로서 가입증대, 체납보험료 감축 등 정책보험 사업 재정건전화를 도모하여 대 어업인 지원기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어선원 및 어선보험 가입증대 캠페인을 통한 보험사업 확대, 체납보험료 감축을 통한 보험재정 안정화를 도모하여 재해율이 높은 어업의 재해보상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2. 허베이 스피리트 유류오염사고 피해어업인 지원

(허베이스피리트 피해어업인지원단 사무관 김봉현)

가. 추진 배경 및 개요

2007.12.7 충남 태안군 만리포해수욕장 북서방 5마일 해상에서 발생한 유류 유출사고는 삼성중공업 소속 예인선의 예인줄 절단으로 3천 톤급 크레인을 적재한 부선이 밀리면서 대산항으로 입항 대기 중이던 유조선(Hebei Spirit호)과 충돌해 12,547kl (10,900톤)의 원유가 유출되어 3개 도(충남, 전남·북의 11개 시·군)에 걸쳐 대규모 유류 오염피해가 발생하였다. 구체적 사고 경위는 2009년도 연차보고서에 수록한 바 있다.

나. 추진 내용 및 성과

대규모 유류 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 등을 위해 우리 부는 유류오염피해지역에 대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는 한편, 관련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¹¹⁾)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는 등 신속·정당한 배·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활동을 추진하였다,

11) IOPC Fund :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The International Oil Pollution Compensation Fund)

1) 유류오염 피해어장의 환경개선 및 복원사업

200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유류 오염피해지역의 오염정도 확인 및 복원사업 시행을 위한 “태안어장 정밀조사 및 복원사업” 관련 2차년도 연구가 2009년도 농특회계 예산 5억 원을 투입해 피해지역의 어장환경 및 복원사업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조사를 우리 부 소속의 서해수산연구소에서 수행하였다.

또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사고로 인한 오염어장의 수산자원 회복 등 어장환경개선을 위해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 2,000백만 원을 확보해 수산발전기금에 편입하여 피해가 가장 우심하였던 태안지역에 전액 배정하였으며, 그 중 1,500백만 원은 어장에 침체되어 있는 어망·어구류·고철류·목재류 등 239톤을 수거하였으며, 500백만 원은 마을어장 환경복원사업으로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모래살포(3,000 m²), 어장바닥 경운(123ha), 잡석채집·운반(1,977m³), 패각채집·운반(534m³) 및 표토 제거(300m³)를 하는 등 수산자원 보호 및 자원회복으로 유류 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의 생계지원은 물론 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소득증대에 기여하였다.

2009년 7월에는 유류오염 피해어장에 대한 어장환경개선 및 복원을 위한 “어장환경 복원계획(2010~2019년 1,577억 원)”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2010년도 소요예산 216억 원을 반영하였다.

2) 선주 책임제한채권 신고

선박으로부터 유출된 유류 오염손해에 따른 선박소유자의 책임에 대해 선박의 규모 별로 제한하고 있는 「유류오염 손해배상보장법」 및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절차에 관한 법률」에 의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2009.5.8 신고 종료된 ‘선주책임제한 채권’ 현황을 보면 총 126천여 건에 3조 5,400여억 원으로 이 가운데 수산분야가 110천여 건(전체 신고의 88%)에 1조 8,800여억 원(53%)이 차지하였다.

<표 4-4-6> ‘선주 책임제한 채권’ 신고 현황(2009.5.8 현재)

(단위 : 건, 억 원)

구	분	계		수 산		비수산	
			%		%		%
선주 책임제한 채권	건 수	126,313	100	110,558	88	15,755	12
	신고액	35,444	100	18,816	53	16,628	47

주 : 채권신고 후 수정·변경 신고가 가능함에 따라 건수 및 신고액 변동이 있음

<표 4-4-7> 수산분야 세부업종별 신고내역

(단위 : 건, 억 원)

구 분		계	양 식	어 선	맨손어업	기 타
합 계	건 수	110,558 (100%)	6,509 (5.9)	8,974 (8.1)	88,632 (80.2)	6,443 (5.8)
	신고액	18,816 (100%)	4,431 (23.6)	3,012 (16.0)	8,208 (43.6)	3,165 (16.8)
충 남	건 수	57,687	2,970	5,046	47,019	2,652
	신고액	13,141	3,290	2,338	5,150	2,363
전 남	건 수	29,042	2,867	1,897	21,523	2,758
	신고액	3,371	613	244	1,847	667
전 북	건 수	22,953	410	1,924	19,907	712
	신고액	2,165	491	405	1,187	82
기 타	건 수	1,476	262	110	183	321
	신고액	139	36	25	24	54

3) 피해지역 특별영어자금 등 지원

유류 오염사고 피해지역의 피해어업인에 대해 특별영어자금 273억 원('07년 100, '08년 120, '09년 53)을 배정하여 '09년 말까지 누계기준 24,875백만 원을 공급(연리 3%, 1년, 1년 범위내 연장 가능)하였고, 피해발생일 현재 이미 사용 중인 일반영어자금 75,982백만 원(누계 기준)에 대해서는 최장 2년간 상환기일 연장 및 이자를 감면(연리 3%)하였다.

4) 유류오염 손해에 대한 배·보상 청구 및 사정 동향

2009.10월 제46차 IOPC Fund 집행위원회에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 피해액을 최대 5,770억 원으로 추정(향후 변동 예상)하였다. 한편, 유류 오염사고에 따른 손해에 대해 IOPC Fund 서울사무소인 허베이스피리트센터(HSC)에 접수된 청구 및 사정 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09.5.8 종료된 '선주책임제한채권' 신고를 마치고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청구하게 되었는데 이에 따른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2009년 상반기까지 손해 배·보상 청구가 저조하였으나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청구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표 4-4-8> 허베이 스피리트호 피해 배(보)상 추진 현황(2009.12.31 현재)

(단위 : 건, 억 원)

구 분	클레임접수 (a)	피 해 사 정				지 급	
		계 (b)	b/a (%)	인 정	반 려		
수 산	건 수	2,159	193	8.9	145	48	142
	금 액	15,681			93	-	92
방제, 예방조치	건 수	253	179	70.8	166	13	127
	금 액	1,932			681		569
관 광	건 수	6,138	1,879	30.6	728	1,151	657
	금 액	1,476			76		71
재 산 손 해	건 수	18	9	50.0	8	1	6
	금 액	28			3.5		3.4
환경손해, 연구	건 수	1	-	0.0	-	-	-
	금 액	22					-
기 타	건 수	2,732	41	1.5	1	40	1
	금 액	618			0.03		0.03
계	건 수	11,301	2,301	20.4	1,048	1,253	933
	금 액	14,184	-		853	-	735

<표 4-4-9> 접수, 사정 및 지급 추이

(단위 : 건, 억 원)

	기준일	접 수		피 해 사 정				지 급	
		건수	금액	계	인정	금액	반려	건수	금액
계	'09. 6월말	5,459	6,149	1,424	677	666	747	247	479
	'09.12월말	11,301	14,184	2,301	1,048	853	1,253	933	735
어획어업	'09. 6월말	197	24	1	-	-	1	-	-
	'09.12월말	694	7,209	1	-	-	1	-	-
양식어업	'09. 6월말	549	1,878	178	138	89	40	1	7.6
	'09.12월말	1,465	2,897	192	145	93	47	142	92
비수산	'09. 6월말	4,713	3,348	1,245	539	577	706	246	472
	'09.12월말	9,142	4,077	2,108	903	760	1,205	791	643

* 기준일의 누계 기준임

5) 맨손어업 피해 배(보)상 지원활동

정부는 수산분야 ‘선주 책임제한 채권’ 신고자의 약 80%가 맨손어업(88천여 건)임을 감안하여 IOPC Fund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피해발생일 이전부터 신고필증을 보유하고 있는 31,145명(업무 편의상 I 그룹)과 어업 신고필증이 없으나 IOPC Fund와 합의된 “맨손어업 피해보상 조사대상 선정기준”에 의거 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정한 19,479명(II 그룹)의 우선 조사대상자 총 50,624명에 대해 인터뷰를 통해 피해내용에 관한 사전조사를 실시토록 하였다. 그 결과 IOPC Fund측 국내 조사업체인 협성검정은 2009년 말 현재 33,146명(65.5%, I 그룹 26,900, II 그룹 6,246)에 대해 피해사정을 위한 현지 피해어업인 면담조사를 마쳤다. 이는 다른 피해어업인과 동일하게 맨손어업자도 정당한 배·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IOPC Fund측과 긴밀히 협의한 결과에 따른 것이며, 위 기준에는 포함되지는 않으나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자는 피해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IOPC Fund 서울사무소에 청구할 경우 피해사정을 통해 손해가 인정되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6) 기타 피해지역 지원 사항

유류 오염사고 피해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축산발전기금 및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을 활용하여 「2009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개최 지원(균특 20억 원)」, 「홍성 해변관광 승마타운 조성사업(축발기금 3.44억 원)」과 「농림수산식품부장관배 전국 바다낚시대회 개최(특별적립금 0.7억 원)」 등으로 피해지역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였다. 그 외 피해지역에 대한 기존 예산사업 등으로 연근해구조조정사업으로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비 10,487백만 원을 지원하고, '0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보령시·서천군의 수산물 위판장과 홍성군의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사업에 '09년 예산 649백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전북 부안군 위도 국가어항 정비 사업에 2,000백만 원을 지원하였다.

7) IOPC Fund측과 수산분야 각종 회의 추진

가) 비공식 및 양자회의

수산분야 손해청구에 따른 IOPC Fund측의 피해사정은 ‘한국정부의 어업활동 자체 및 재개 조치’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2009년도에 총 6차례의 비공식 및 양자회의를 가졌다.

3.25~27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제44차 IOPC Fund 집행위원회에서 한국정부에서 피해사정(査定) 전문가를 추가 확보하여 수산분야에 대한 조속한 사정(査定)을 요구하자 국제기금측은 피해사정 근거자료로 활용코자 한국정부의 어업활동 자제 및 재개 조치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였다.

그 첫 번째 회의는 4월22일 ITOPF¹²⁾ 관계자가 우리 부를 방문함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국정부에서 제공한 자료는 방대(500여쪽)하여 이를 ITOPF측이 검토·번역·활용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피해사정 지연을 우려한 피해 어업인 등은 한국정부가 영문화 작업 지원과 ITOPF 관계자에 대해 직접 이해·설득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요망하였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와 국립수산물과학원 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번역작업을 하여 5월 25일 런던을 방문해 합동으로 두 번째 설명 및 회의를 한 바 있다.

세 번째 회의는 6월18일 런던의 비공식 회의를 통해 피해사정이 지연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이에 적극 대응코자 국제기금측에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상호 긴밀한 협력을 위해 한국정부와 IOPC Fund 서울사무소(HSC) 사이에 3~4주 간격으로 개최되는 정례회의 외에 별도 양자회의를 통한 협력방안에 대해 협의키로 합의하였으며, 당시 국제기금은 국립수산물과학원의 “태안어장 정밀조사 및 복원사업” 연구보고서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해 옴에 따라 HSC를 통해 제공키로 하였다.

네 번째 회의는 9월11일 HSC에서 있었는데 국제기금측에서 유류 오염사고로 인한 수산분야 미조업 피해 인정기간에 대한 자료를 처음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청취할 수 있었다.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한국정부가 취한 조치와 적어도 2~7개월의 피해(미조업) 인정기간이 짧아 이에 우리측은 제시된 자료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원칙적으로 국제기금측 의견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함은 물론, 이는 매우 민감한 사항으로서 내부입장 조율 등이 요구되어 추후 양자협약에서 우리측 입장을 표명키로 하였다.

다섯 번째 회의는 9.28~9.29 우리 부를 비롯한 한국정부 대표단이 런던 소재 IOPC Fund 사무국을 방문하여 정부가 취한 조치에 대해 명확한 근거 위주로 집중 설명하였던 바, 국제기금측은 감사의 뜻과 재검토 의사를 표명하면서 시간이 필요함을 들어

12) ITOPF : 국제유조선선주연맹(International Tanker Owners Pollution Federation. IOPC Fund측 피해사정 자문기구)

'09.10월 집행위원회 회의 때 추가 협의기로 하였다.

여섯 번째 회의는 10월 13일 영국 런던 소재 IMO¹³⁾회의실에서 있었는데 IOPC Fund 사무국은 어업활동 자제 및 재개와 관련한 어업피해 인정기간을 조정해야 할 어떠한 증거도 찾지 못했으며 과학적 자료만 고려해 피해 인정기간을 산정한다고 지속 주장하고 이와 같은 사항은 집행위원회 결정문과 전문가의 경험에 따른다고 하는 등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집행위원회에 불만사항을 제출할 것을 우리 측에 밝힘에 따라 차기 집행위원회에서 제기하기로 하였다.

나) IOPC Fund 총회 및 집행위원회 참여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 오염사고에 따른 최대 피해는 수산분야에서 발생되었으며 이에 따른 피해어업인에 대한 신속하고 정당한 배·보상을 위해 한국정부 대표단의 일원으로 2009년도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IOPC Fund 총회 및 집행위원회에 3차례 참석하였다.

제44차 집행위원회(3.25~3.27), 제45차 집행위원회(6.15~6.18), 제14차 총회 및 제46차 집행위원회(10.12~10.16)에 참석하여 유류 오염사고 후 한국정부의 조치 및 지원사항을 설명하는 등 한국정부가 취한 조업자제 기간과 IOPC Fund 사무국이 제시한 기간과의 이견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다) IOPC Fund 서울사무소와 정례회의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 오염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원활한 피해 배·보상업무 등을 위해 IOPC Fund측은 서울사무소(HSC)를 개설하고, 피해 배·보상과 관련되는 각종 현안사항의 해소와 의견 교환을 위해 한국 정부측과 3~4주 간격으로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기로 합의하고 2008년 7월에 첫 회의를 가졌으며 양측이 번갈아 가며 회의를 주재하기로 함에 따라 2009년에 총 10회(2008년에도 10회)의 회의를 통해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대지급금 및 대부금 관련사항, 맨손어업 피해청구의 신속한 접수·처리, 그룹 청구 건에 대한 신속한 사정 촉구, 전남지역 김양식장 피해배상 진행경과 확인, 서산지역 굴양식 시설 철거비 처리 및 수산분야 조업자제 관련 양자협의를 촉구하는 등 현안사항에 대해 협의하고 설명하는 등 양측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를 가졌다.

13) IMO :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다. 평가 및 향후 계획

2009년에 모든 유류 오염피해지역을 모니터링 지역으로 선정하여 지속 관찰하였다. 아울러, 우리 부 「허베이스피리트피해어업인지원단」¹⁴⁾은 관련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유류 오염피해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 지원과 함께 IOPC Fund측과 긴밀히 협의하는 등 피해어업인 배·보상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한다.

1) 유류 오염피해지역 지원 사업

유류 오염피해 「어장환경복원계획」을 수립하여 특별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 사고로 해양환경이 훼손된 지역과 생태계 변화 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생태계 복원을 위한 장기적인 생태계 모니터링 및 환경복원계획을 수립·시행하려는 목적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한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지정·고시에 반영하였고, 우리 부 어장환경복원계획은 '10년부터 '19년까지 「유류피해지역 지원사업」의 신규 예산으로 총 1,577억 원을 연차적으로 확보·투입하여 피해어장 복원프로그램 개발과 어장환경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 태안어장 정밀조사 및 복원사업

정부는 3개년 목표로 실시 중인 「태안어장 정밀조사 및 복원사업」 연구용역을 통해 '08년에 5억 원의 예산으로 유류 유출사고로 인한 서해연안의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태안 인근의 주요 양식장에 대한 환경영향 조사를 실시하였고, 2차년도인 '09년에는 같은 규모의 예산으로 피해지역의 어장환경 및 복원사업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인 '10년에는 7억 원으로 환경조사, 갯벌 생태조사, 태안어장 수산자원 밀도 변동조사 및 굴·바지락에 대한 양식품종별 복원시험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

3) 유류오염 피해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유류오염 피해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이미지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각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사업 중 사업 부서를 통해 유류 오염피해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이 있는 사업 위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4) 농림수산식품부 허베이스피리트피해어업인지원단 : 8명(별도정원 5, 비별도정원 3)

4) 피해지역 특별영어자금 등 간접 지원

유류오염 피해 어업인을 대상으로 '07.12월부터 지원된 특별영어자금(연리 3%, 2년 상환)의 상환기일 연장 등을 요청해 올 경우 그 필요성을 검토하여 연장 여부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5) IOPC Fund측과의 협의 추진

정부는 유류 오염사고에 관한 보상주체인 IOPC Fund측과 각종 회의를 통해 신속하고 정당한 배·보상을 지속 촉구하고, 특히 '10년도는 4월, 6월, 10월에 개최 예정인 집행위원회 및 총회에 참석하여 신속한 보상을 촉구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피해민 대표 등도 총회 및 집행위원회 회의에 참여토록 하여 피해 배·보상 활동에 대한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모든 배·보상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피해 어업인을 위한 역할을 다할 것이다. 특히, 필요할 경우 조업 자제기간 등에 관한 사무국과의 이견에 대해 IOPC Fund 집행위원회 주요 이사국을 직접 방문하여 한국정부 조치의 합리성에 대한 설명을 통해 정당하고 신속한 피해 배·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하는 노력도 병행해 나가고자 한다.

3. 수산직불제 도입기반 마련

(수산개발과 사무관 김병욱)

가. 추진배경 및 개요

WTO·DDA 협상결과 수산물 시장개방과 수산보조금 일부감축 또는 폐지에 따른 어가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 도입에 대한 어업인들의 요구는 강해지고 있으나 2005년 11월 홍콩각료회의에서 “과잉어획능력 및 과잉어획물유발 수산보조금을 금지” 하도록 결의함에 따라 농업분야의 쌀 직불금처럼 모든 어업인들에 골고루 수산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오히려 자원 남획형 직불금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와 접근이 필요한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2007년 어업인 소득보전대책으로 ① ('99)해양폐기물 정화(폐어구 수

거) 지원, ② ('04)친환경배합사료 지원 ③ ('07)생분해성어구 지원 ④ ('09)친환경부표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왔으나 이는 보조금 성격의 기타 직불성 사업으로 향후 도입하고자 하는 수산직불제와는 차이가 있다.

또한 수산분야는 WTO 일반보조금 협정에 포함되어 있어 공산품과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는 반면, 농업분야는 농산물만 협상대상으로 하고 있어 WTO 출범이후 1997년부터 경영이양, 쌀 직불제등을 도입하였고 직불제간 상충되는 문제점이 있어 현재 공익형과 경영안정형의 2개 유형으로 통합·개편을 추진 중에 있다.

<표 4-4-10> 직불제(순직불제) 사업별 현황

농업분야 직불금 (1조 4,944억)	경영안정(6,201억)	쌀변동직불, FTA피해보전직불
	구조조정(999억)	경영이양직불, 폐업지원
	공익형소득안정(,7744억)	쌀고정직불, 친환경농업직불, 경관보전직불,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 조건불리지역직불
수산분야 직불금 (65억)	FTA피해보전직불(15억)	
	FTA폐업지원직불(50억)	

나. 추진내용 및 성과

정부에서는 공익형인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시범도입을 목표로 345개 도서, 461개 어촌계, 2만7천 가구에 대하여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개년에 걸쳐 연구용역(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추진하였으며, 농업분야에만 국한되어 있던 경영체등록제 육성법 개정을 통해 어업경영체도 등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1) 2008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도입을 위한 연구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개념검토와 어업활동 및 생활상에 있어 조건불리성 실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대상자 선정의 합리적 기준 설정 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2) 2009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실태조사 및 DB구축 연구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시행을 위한 실태조사, 구체적인 시행방안 마련, 실태조사 결과 DB구축 및 어업경영체등록제 도입을 위한 기본방향 수립, 도입목적, 정책적 활용

가능성, 등록대상, 등록방법, 등록내용, 등록절차, 관리체계 등을 연구하였다.

3) 어업경영체등록제 법적근거 마련

어업경영체 등록추진에 필요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09.4.1), 시행령('09.10.8), 시행규칙('09.12.9)을 제정하여 어업경영체등록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다. 평가 및 향후계획

중장기적으로 수산분야 직불제는 자원을 남획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익형인 '조건 불리지역 수산직불제'를 우선 시행하고, 경영안정형인 어가단위소득안정직불제도는 우선, 도입방안 사전연구를 실시하여 구체적 도입가능성 및 방안 등에 대하여 검토를 거친 다음 농가단위소득안정제에 맞춰 도입할 계획이다.

제5장

수산 전문인력 양성 및 살기 좋은 어촌개발



제1절

어촌 전문인력 양성

1. 수산경영 전문인력 양성

(수산개발과 사무관 이군승)

가. 어업인후계자 육성

1) 추진배경 및 개요

어업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FTA협상에 따른 대외 경쟁력확보를 위하여 어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층에게 경영기술지도 및 사업기반 조성자금을 지원하여 미래의 수산업을 이끌어갈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있다.

어업인후계자는 시·도(수산사무소 등)로부터 자격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기술지도와 자문을 받아 지역실정에 적합하고 사업성이 있는 업종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에 착수한 어업인후계자에 대해서는 경영기술지도·교육 및 각종 수산관계 정보 보급 등을 통하여 단계적(일반후계자 → 전업경영인 → 선도우수경영인)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전담공무원을 배치운영하고 있다.

<표 4-5-1> 어업인후계자 육성실적

(단위: 천 명)

구 분	합 계		'07 까지		'08 지원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합 계	17,804	425,799	17,380	410,100	424	15,699
일반후계자('81부터)	15,179	287,275	14,829	275,526	350	11,749
전업경영인('92부터)	2,559	132,799	2,490	129,349	69	3,450
선도경영인('95부터)	66	5,725	61	5,225	5	500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행정통계자료

또한, 사업 추진시에는 장기저리의 육성자금이 지원되고 있으며, 사업 계획에 따라 일반후계자의 경우 1인당 ~40백만 원, 전업경영인의 경우 1인당 ~50백만 원, 선도우수경영인의 경우 1인당 ~100백만 원을 지원하여 1981년부터 2008년까지 17,804명에게 총 425,799백만 원이 지원되었다.

2) 추진내용 및 성과

어업인력 육성을 위해 2009년도에 200억 원(442명)을 5년 거치 10년 균분으로 지원하였으며, 선정된 사람은 융자금 대출여부와 상관없이 어업인후계자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수산업에 의욕이 있는 자를 선도우수경영인 사업장에 인턴으로 고용하는 수산업인턴제와 수산신지식인 등 수산분야 전문가를 활용한 창업어가 후견인제를 두어 어업인후계자의 지속적인 확보와 안정적인 창업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표 4-5-2> 어업인후계자 지원실적

(단위: 천 명)

구 분	합 계		'08 까지		'09 지원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합 계	18,246	445,799	17,804	425,799	442	20,000
일반후계자('81부터)	15,413	294,875	15,179	287,275	234	7,600
전업경영인('92부터)	2,727	141,199	2,559	132,799	168	8,400
선도경영인('95부터)	106	9,725	66	5,725	40	4,000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행정통계자료

3) 평가 및 향후계획

어촌사회 고령화에 따라 적극적인 신규후계인력 유도를 위해 일반후계자의 경우 대상연령을 40세에서 45세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어업인후계자는 1인당 지원규모를 ~40백만 원에서 50백만으로 확대하고 전업경영인은 1인당 ~50백만 원에서 70백만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귀어를 희망하는 도시민에 대해서도 정착자금지원(2억 원/인) 및 주택구입비(4천만 원/인)를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으로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나. 수산계고교 특성화 사업 지원

(수산개발과 사무관 이군승)

1) 추진배경 및 개요

세계화·개방화로 수산업의 위축과 함께 어촌사회도 초고령화 사회진입과 함께 양질의 후계인력 양성이 한계에 직면함에 따라 2008년부터 어촌을 선도 해 나갈 정예인력 구축방안의 하나로 수산계 고등학교(전국 9개교)에 특성화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해 오고 있다.

2) 추진내용 및 성과

2009년에도 수산전문 신규진입인력 양성 및 전문계고교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수산계고등학교(9개교)에 취업·창업과 연계한 현장중심의 공통프로그램(종합승선실습, 산업잠수, 현장산업체 근무 등) 13억 원, 학교자체프로그램(현장체험, 해외연수, 수상레저프로그램 등) 9억 원을하여 지원, 학생, 학부모, 교사로부터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학교별 추진이 어려운 해기사양성과정인 종합승선실습훈련을 통해 5급 항해사 및 기관사를 양성하여 인력난으로 어려운 원양업계의 3등 항해사 및 기관사로 취업·연계 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3) 평가 및 향후계획

수산계고교 특성화 사업을 산업 현장 수요에 부응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종합승선실습, 산업잠수, 산업체 현장교육, 해외인턴·연수 등)으로 확대 개발·지원할 계획이며, 수산계고교 학생 중 수산분야 정작 희망자를 중심으로 선발, 집중적으로 지원·육성하여 창업과 취업을 유도할 계획이다.

향후 승선예비역 제도 확대, 산업체별 취업설명회를 통한 취업알선 등을 통해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신규인력육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2. 어촌지역 개발 전문인력 양성

(수산개발과 사무관 김병욱)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어촌의 국내외 여건변화는 어촌주민의 생산의욕과 생활의욕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으며, 도시보다 빠른 어촌인구의 고령화는 어촌의 활력 저하와 어촌지역 개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어촌의 기능적 변화측면에서 볼 때에도 이제 어촌은 어업생산 활동의 전초기지 차원을 넘어 어촌관광, 해양레저, 휴양·정주 등 다기능 복합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추세이며, 새로운 차원의 어촌모델 개발이 조기에 성공하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어촌개발리더 양성이 절실히 필요하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어촌주민에게 어촌 비전을 제시하고 어촌주민이 지역개발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어촌지역리더를 육성하기 위하여 2007년 12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통하여 「어촌지역리더 육성과 지원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어촌개발리더의 육성실태 및 문제점, 국내외 지역리더 육성사례와 시사점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한 후 어촌개발리더육성방안을 마련하였다.

2008년부터 지역개발리더의 역량을 집중적으로 강화시켜 낙후된 어촌개발을 주도할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어촌지역개발리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조조직인 어촌사랑주부모임을 활성화시켜 사회·문화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여성어업인의 위상을 제고하고 권익신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수산인력개발원에 「어촌관광가이드」, 「어촌종합개발사업」 및 「여성어업인지도자 양성」의 3개 전문인력 양성반을 개설하여 지역 어업인 및 어촌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어촌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질 개발을 위해 교육훈련 및 활동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1) 어촌지역개발리더사업

어촌종합개발, 어촌체험마을, 어촌관광단지의 어촌계장, 어촌계사무장, 어촌계운영위원 등 어촌지역의 개발을 선도할 핵심적 리더에 대한 전문능력을 강화·육성하고자 2008년부터 전국에서 약 40명을 선발, 학습단위별로 4개 세부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하고 있다.

- 세부교육 프로그램 구성 : 리더동기화, 실천리더, 혁신리더, 리더양성워크숍

2) 여성어업인육성사업

2008년부터 여성대의원, 어촌사랑주부모임 임원 및 회원 등 약 60명을 대상으로 어촌사랑주부모임을 활성화하여 여성어업인 전국단위 단체결성을 유도하고, 사회·문화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위상을 제고하고 여성권의 신장 및 역량강화에 힘쓰고 있다.

3) 어촌관광가이드과정

어촌계장, 이장, 어촌관광리더·가이드 등 약 60명을 대상으로 관리기법 및 특색있는 어촌만들기 아이디어개발 및 마케팅 전략을 습득하는데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4) 어촌종합개발사업과정

어촌계장, 어촌계임직원 공무원 등 약 60명을 대상으로 사업추진 권역별 협조체제 구축 및 정보교류를 도모하고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올바른 이해와 사업추진 능력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5) 여성어업인지도자 양성과정

여성어업인의 경우, 어촌여성들의 실정상 집체교육이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현장 방문교육으로 확대 운영하여 교육성과 제고

- (당초) 집합교육 1회 30명 → (변경) 현장교육 2회 129명(4.3배 증)

다. 평가 및 향후계획

어촌개발 전문인력 육성은 전문가 및 지역주민들의 역량과 의견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창의적인 모델로 효율적인 어촌지역개발이 가능하고, 어촌개발과 개발 후 시설운

영 과정에서도 살기 좋은 어촌만들기에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유도가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2절

살기 좋은 어촌모델 개발 기반 구축

1.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로드맵 마련

(수산개발과 사무관 최덕부)

가. 추진배경 및 개요

'04.3월에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삶의질향상특별법”）」을 제정하고, “제1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05.4)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표 4-5-3> 사업별 사업개요

구분	사업주체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업규모	지원형태	사업내용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 지원	농식품부 (수협 위탁)	2004년~ 계속	-	연근해 어선원등	국비 14% ~ 70%	어선주부담 보험료 일부지원
어촌종합개발사업	지자체	1994년 ~ 2013	8,795억 원	230개권역	국비70%, 지방비30%	생산기반 및 소득 기반시설 등
소형어선(다목적) 인양기 설치	지자체	2006년~ 계속	-	전국 향,포구 2,1947개소	국비80%, 지방비20%	인양기 설치
양식어장정화사업	지자체	'86~계속	-	약 68만 ha	국비 80% 지방비10% 자부담10%	연안 양식어장의 퇴적물 수거·처리, 바닥갈이, 객토 등
디지털어촌 구축사업	수산인력개발원, 지자체등	2006년~ 계속	125억 원	어촌지역 정보화수준 100%	국비 100%	원격영상시스템 지원 등
어촌체험마을 조성	지자체	2001년 ~ 2013	731억 원	112개소	국비50%, 지방비50%	관광안내소, 샤워장, 화장실 등
어촌관광 활성화 사업	지자체	2004년 ~ 2013	1,040억 원	18개소	국비50%, 지방비50%	관광안내센터, 주차장, 해안산책로 등

나. 추진내용 및 성과

수산분야 7개 과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어촌복지기반 확충을 위한 어선원재해보상보험 지원사업은 '08년도 어선원보험 가입률이 전년 76%보다 2% 상향 달성하였고, 어촌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한 어촌종합개발사업, 소형어선(다목적)인양기 설치, 양식어장 정화사업, 디지털 어촌구축사업 등을 실시하여 현장의 수요를 실질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하였으며, 어촌관광을 통한 어촌지역 부가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어촌체험마을 조성 및 어촌관광활성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였다.

<표 4-5-4> 사업별 성과지표 실적 현황

사 업 명	성과지표	'09목표	실 적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지원	보험가입률	12.2%	12.2%
어촌종합개발사업	연평균 어가 소득증가율	3.3%	5.3%
소형어선(다목적) 인양기 설치	설치대수	105대	105대
양식어장 정화사업	사업추진 진척도	6,730ha	7,722ha
디지털어촌 구축사업	어업인 정보화교육	5,000명	6,087명
어촌체험마을 조성	마을조성수	7개	7개
어촌관광 활성화 사업	사업비 지원액	93억 원	93억 원

다. 평가 및 향후계획

그 동안 수산분야 7개 과제가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해당 사업별로 추진함에 있어 지속적인 사업비 확대 투자와 더불어 정기적인 점검·평가를 통하여 제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별사업의 효율성 제고 방안 모색 및 사업 간 연계 등을 추진하여 실질적으로 어업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 어촌 종합개발사업 체계개편

(수산개발과 사무관 최덕부)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우리 어촌은 정주여건이 매우 열악하여 젊은 어업인력이 도시로 유출됨에 따라 노동력의 질적 저하 및 어촌의 공동화가 가속화되어 어촌사회 유지 및 국토의 균형발전 저해는 물론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어업인 정주를 위한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국토균형발전 차원과 잘사는 어촌을 건설하고자 중앙정부에서는 1994년부터 낙후어촌의 생산·소득기반시설 확충 및 정주생활환경개선, 어업인 복지증진을 위해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4-5-5> 어촌종합개발사업 사업개요

사업주체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업규모	지원형태	사업내용
지자체	1994~2013년도	8,795억 원	230개권역	국비 70%, 지방비30%	생산기반 및 소득기반시설 등

나. 추진내용 및 성과

어촌종합개발사업은 낙후어촌의 항·포구를 축으로 개발 잠재력과 협업능력이 있고 개발 후 인근 어촌에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지역에 소재하는 수 개의 어촌계를 대상으로 권역을 정하여 개발하며, 생산기반시설, 소득기반시설, 생활환경개선 및 복지시설 등을 중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08년부터 자치단체에서 지역여건에 맞게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상향식으로 사업추진 체계를 개편하였다. 1994년 농특세 신설 및 농어촌정비법 제정 등으로 어촌종합개발장기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총사업비 8,795억 원 중 2009년까지 6,266억 원(국고지원 3,635억 원)을 투자하여 170개 권역은 완공하고 13개 권역은 사업추진(완공률 74%)중에 있다.

<표 4-5-6> 어촌종합개발사업 지원 실적 및 계획

(단위 : 권역, 백만 원)

구 분		2007년 까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이후
어촌종합 개발사업	사 업 량	152(24)	8(12)	10(13)	2(13)	58
	사 업 비	562,062	38,653	25,831	21,224	231,761

* ()내는 계속 지원대상 권역수임

사업의 지원규모를 보면, 1단계 사업 160권역은 1994~2007년까지 권역당 평균 35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2단계 사업 70권역은 2007~2013년까지 대·중·소 권역으로 구분, 권역당 최대 50억 원까지 증액하여 어촌소득증대를 위한 어촌관광기반시설이 가능토록 하였다.

다. 평가 및 향후계획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어촌사회를 유지하는 가장 기초적인 지원사업이면서 어업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업으로 그 동안 어촌지역의 소득증대 및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많이 기여하고 있으며, 2013년까지 지역별 특성에 맞게 230개 권역에 대한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완료하고 어촌을 생산과 휴양이 가능한 『어촌복합생활공간』으로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3. 어촌관광 S/W 지원 강화

(수산개발과 사무관 최덕부)

가. 추진배경 및 개요

국민들의 소득 및 주 40시간 근무확대에 따른 여가시간 증대, 교통여건 개선 등으로 증가하는 관광수요를 어촌으로 흡수하여 어업인에게는 어업의 소득증대와 도시민에게는 새로운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어촌관광 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관광 기반시설 조성에 치중되어 국내 관광수요를 어촌관광으로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어 체험·휴양·

관광 등의 어촌관광 수요증대를 위한 프로그램 및 홍보 등의 어촌관광 활성화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표 4-5-7> 어촌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

사업주체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업규모	지원형태	사업내용
지자체, 민간보조 (어촌어항협회 등)	2005년 ~ 계속	- 억 원	어촌체험마을 102개소, 어촌계 1,978개소, 자매결연체결 772개소	민간보조 국비100%, 지자체 국비 50%	홍보, 사무장 채용 및 컨설팅 지원 등

나. 추진내용 및 성과

바다와 어촌의 보편적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아울러 도시와 어촌간 활발한 교류를 통한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우수어촌체험마을 경진대회, 컨설팅 제공, 도시-어촌교류축진 및 어촌전통문화 재현(체험)행사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 지원과 바다와 어촌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오프라인 및 대중화된 방송 매체 등을 통해 일반국민에게 적극적인 홍보로 어촌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1)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체험객 안내, 체험프로그램 운영, 홈페이지 관리, 마을홍보 등 어촌체험마을 업무를 전담하는 사무장 채용을 지원하고 있다.

2) 1인1촌 컨설팅 추진

어촌체험마을 운영과 관련하여 마을주민 관광 마인드 제고 및 갈등요인 해소, 마을에 적합한 체험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한 맞춤형 1인1촌 컨설팅 시스템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3) 우수어촌체험마을 선정 포상금 지급

우수어촌체험마을 선정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마을에 인센티브 부여 및 여타 마을에 우수 운영기법 제공으로 체험마을 운영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4) 다각적 홍보활동 전개

2009년에는 ‘어촌체험마을별 홈페이지 구축’, ‘전국 해안선 자전거 1만 리 길 화보집 발간’, ‘이달의 어촌 포스터 제작’, ‘아름다운 어촌 찾아가기’, ‘바다와 어촌체험 학습서 제작’, ‘잡지 기획연재’ 등 다양한 형태의 어촌관광 수요 진작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어촌체험마을운영의 경우 체험객 수에 있어 2008년 583천 명에서 2009년 745천 명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체험소득도 2008년 1,117억 원에서 2009년 1,168억 원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표 4-5-8> '08~'09년 어촌체험마을 운영실태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 분	'08년	'09년	증(△)감('09-'08)	비 율
체험마을개소	92	102	10	10.8%
방문객(천 명)	5,938	7,631	1,693	28.5%
이용객(천 명)	583	745	162	27.7%
직접소득	11,746	16,759	5,013	42.6%
간접소득	30,260	31,500	1,240	4%

* 직접소득은 체험이용료, 민박, 식사, 수산물판매에 한정

다. 평가 및 향후계획

어촌관광 S/W 지원강화로 국민들이 어촌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어 어촌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홍보 프로그램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마케팅 추진으로 ‘고품격의 어촌관광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규모를 확대하여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국민들이 어촌을 찾도록 다양하고 차별화된 형태의 ‘어촌 자전거여행’, ‘외국인 초청행사’, ‘어촌을 배경으로 하는 소설 창작’, ‘초·중등학생 체험학교 개설·운영’, ‘바다관광 해설사 육성’, ‘유명인사 조형물 건립 및 어촌 문화 발굴 등 축제 행사지원’ 등 어촌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확대 및 신규사업을 개발하여 어촌관광을 Boom-up할 계획이다.

4. 어항시설 확충

(수산개발과 사무관 진충남)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수산업의 근거지가 되는 어항은 어촌·어항법에 따라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으로 구분하여 지정권자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어항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표 4-5-9> 어항지정 현황

(’09.12월말 기준)

구 분	항수	지정권자	투입재원	비 고	
법정항	국가어항	110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국 비 100%	
	지방어항	284	시·도지사	국 비 80% 지방비 20%	
	어촌정주어항	574	시장·군수·구청장	”	
비법정항	소규모항	1,322	시장·군수·구청장	지방비 100%	육지 545개항 도서 777개항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국가어항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개발하는 국가어항은 1972년 최초로 62개 항을 지정하여 개발에 착수한 이후 110개 항을 지정하여 개발 중에 있다. 총사업비 36,049억 원 중 2009년까지 총사업비의 73.9%에 해당하는 26,651억 원을 투입하여 91개 항을 완공하였으며 82.7%의 완공율을 보이고 있다.

2009년에는 30개 항에 1,259억 원을 투입하여 그 중 인천 선진포항을 완공하였다.

<표 4-5-10> 시·도별 국가어항 현황

(단위 : 개항)

구 분	합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항 수	110	3	5	2	1	14	8	6	31	15	19	6
완공항	91	2	5	2	-	13	5	5	25	14	15	5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

2) 지방어항

시·도지사가 지정·개발하는 지방어항은 1972년에 최초로 255개 항을 지정한 이후 2009년 말 현재 284개 항을 지정하여 개발 중에 있으며, 1972~1994년까지 일반회계, 1995~2004년까지 농특회계, 2005~2009년까지 균특회계, 2010년부터 광특회계 재원을 투입하여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2009년에는 42개 항에 586억 원(국비 469억 원, 지방비 117억 원)을 투입하여 13개 항을 완공함으로써, 전체 284개 항 중 158개 항이 완공(완공율 55.6%)되었다.

<표 4-5-11> 시·도별 지방어항 개발현황

(단위 : 개항)

구 분	합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항 수	284	13	15	4	5	14	28	12	91	23	61	18
완공항	158	10	10	4	5	6	19	4	41	11	38	10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

3) 어촌정주어항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개발하는 어촌정주어항은 2002년에 최초로 213개 항을 지정한 이후 2009년 현재 574개 항이 지정되어 있으며, 2010년부터 광특회계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표 4-5-12> 시·도별 어촌정주어항 개발현황

(단위 : 개항)

구 분	합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항 수	575	5	31	9	9	24	16	5	79	7	344	46
완공항	141	1	9	7	5	9	-	-	-	-	110	-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

다. 평가 및 향후계획

어업활동의 근거지가 되는 국가어항과 지방어항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는 바, 2009년도에는 이들 어항시설 확충을 위해 국가어항 30개항에 1,259억 원을 투자하여 계속사업 및 유지·보수사업을 추진하였고, 지방어항 42개항에 586억 원(지방비 117억 원 포함)을 투자하여 계속사업을 추진하였다.

향후, 어항시설 투자방향은 완공위주의 집중 투입으로 완공시기를 단축하고 재해방지를 위해 긴요한 시설을 제외하고는 유지보수사업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투자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5. 어촌·어항 관광개발

(수산개발과 사무관 최덕부)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최근 들어 경제성장, 교통의 발달, 주5일 근무제 실시 등의 사회적 여건 변화와 더불어 WTO-DDA, FTA 진전과 어장축소와 어업자원의 감소 등으로 어촌지원방안강구 및 어업의 소득원 개발이 절실하게 되었고, 또한 생산위주의 직접지원보다는 자원관리·어촌관광 등 간접지원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도시와 소득 격차 등으로 침체된 어촌의 자연경관, 전통문화, 어업자원 등을 관광 자원을 통해 어업의 소득증대로 어촌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표 4-5-13> 어촌어항 관광개발 사업개요

구분	사업주체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업규모	지원형태	사업내용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지자체	2001년~2013	731억 원	112개소	국비50%, 지방비50%	관광안내소, 샤워장, 화장실 등
어촌관광모델개발사업	지자체	2004년~2013	1,040억 원	18개소	국비50%, 지방비50%	관광안내센터, 주차장, 해안산책로 등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어촌체험마을조성

도시민들이 어촌과 바다에서 가족단위로 체험과 휴양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자 어촌체험마을을 선정, 2001년부터 2013년까지 112개 마을조성(총사업비 731억 원)을 목표로 지원하고 있다.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전북 고창 하전 등 전국 102개소에 681억 원을 투자하여 주민주도의 참여식 관광으로 어촌관광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관광안내소 등 체험기반시설을 조성하였다.

<표 4-5-14> 시·도별 어촌체험마을 배정 및 지원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총 계	부산	인천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9년 까지	102	2	5	9	9	8	4	31	7	18	9
2010년 계획	3	-	-	-	-	1	1	-	1	-	-
장래조성계획	7	-	-	1	-	2	1	-	2	-	1
계	112	2	5	10	9	11	6	31	10	18	10

2) 어촌관광모델개발

어촌만이 가지고 있는 자연경관, 어업자원, 역사·문화·생활방식 등의 고유한 특성과 기존 어항시설을 연계하여 어촌을 생산·주거·관광이 어우러진 종합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어촌관광진흥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어촌·어항 복합공간형, 어촌관광단지형 등 2종의 시범사업으로 어촌관광 모델개발 18개소 선정, 2005년부터 2013년까지 1,04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2009년도까지 기본설계용역 17개소를 완료하고 635억 원을 투자하여 16개소(5개소 완료, 11개소 진행 중)에 대한 시설투자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표 4-5-15> 어촌어항관광개발사업 지원 실적 및 계획

(단위 : 개소, 백만 원)

사 업 별	목표	2006년 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이후
어촌체험 마을조성	사업량	112	76	11	8	7	3
	사업비	73,110	49,722	8,100	5,988	4,300	2,100
어촌관광 모델개발	사업량	18	(5)	2(8)	1(11)	2(8)	4(6)
	사업비	104,025	9,075	24,244	15,964	14,268	10,088

* ()은 계속사업

<표 4-5-16> 어촌관광모델개발 사업내용

구 분	어촌·어항복합공간형(Ⅰ모델)	어촌관광단지형(Ⅱ모델)
개 념	• 기존어항·어촌 + 관광기능 ⇒ 어촌·어항복합공간	• 기존어촌 + 관광기능 ⇒ 어촌관광단지
사업기간	• 6개년(2004~2013)	• 6개년(2004~2013)
사업주체	• 농림수산식품부/지자체	• 지자체
대상지역	• 배후어촌과 연계가 가능한 국가어항	• 연안에 국가어항이 없고 관광잠재력이 풍부한 어촌
사업 대상지	• 7개소(2004.12.15선정) 어유정항(인천시 강화군) 정자항(울산시 북구) 안목항(강원도 강릉시) 마량항(전남 강진군) 양포항(경북 포항시) 맥전포항(경남 고성군) 모슬포항(제주도 남제주군)	• 11개소(2004.12.15선정) 대항(부산시 강서구), 초지(인천시 강화군) 대송(울산시 울주군), 전곡(경기도 화성시) 대진(강원도 동해시), 무창포(충남 보령시) 야미도(전북 군산시), 방축(전남 신안군) 전촌(경북 경주시), 학림(경남 통영시) 법환(제주도 서귀포시)
사업규모	• 7개소 1,089억 원 - 개소 당 150억 원 - 기본·실시설계비 29억 원	• 11개소 702억 원 - 개소 당 60억 원 - 기본설계·홍보비등 36억 원

다. 평가 및 향후계획

2001년부터 추진해온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등 어촌어항관광개발을 통해 어업인들의 어업외 소득이 조금씩 증가추세에 있어 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어촌체험마을조성은 2013년까지 계획된 I 단계 112개 어촌체험마을 조성을 조기완료하고 II 단계 추진대상마을을 선정하여 개발함과 더불어 4계절 특화프로그램 개발 등 질적 관리중심으로 개선하며, 어촌관광모델개발도 2013년까지 18개소 시범사업을 완료하여 어업환경 변화에 맞춰 어업과 관광을 접목, 실질적인 어업의 소득증대로 어촌경제 활성화 도모와 편안하고 정감있는 관광어촌을 조성할 계획이다.

6. 어촌·어항 관광 기반 조성

(수산개발과 사무관 이상기)

가. 추진배경 및 개요

기존의 어항은 수산업, 특히 어선어업의 활동지원에 역점을 두고 개발이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 우리의 어촌은 WTO-DDA, FTA 협상진전에 따른 시장개방 및 보조금 제한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직면하고 있어 이에 대응한 어촌지원 방안 강구가 매우 절실한 실정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주 5일 근무제 실시 등으로 어촌관광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이를 어촌소득으로 연계할 방안 모색도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어업의 소득증대의 일환으로 자연경관 등 관광여건이 구비된 어촌을 대상으로 어촌관광 대중화를 위해 『가고 싶은 바다, 살고픈 어촌, 다시 찾는 관광어촌』을 모토로 우선 어촌관광모델 개발을 통한 어촌관광기반시설을 확충코자 어촌관광진흥 종합대책(2004년)을 수립하고 다기능어항 13개항을 지정 개발하고 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어항을 수산업 기반시설로서의 역할 및 어항기능 활성화를 통한 어업인의 소득창출 기회제공, 해양관광, 유통 등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다기능어항으로 개발함으로써 급증하는 관광객 수요대처 및 지역주민의 생활편익을 제공코자 대포, 격포 등 13개소의 다기능어항을 지정 개발하고 있다. 2004년부터 2009년까지 1,441억 원을 투자하여 5개항을 완공하고 7개항을 지원 중에 있다

<표 4-5-17> 다기능어항개발사업 지원 실적 및 계획

(단위 : 개소, 백만 원)

구분	목표	2006년 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이후
사업량	13	1(3)	1(5)	1(9)	2(7)	4(3)	4
사업비	228,822	24,967	37,229	51,119	30,758	41,390	43,359

* ()은 계속사업

<표 4-5-18> 다기능어항개발 사업내용

구 분	어촌·어항복합공간형	다기능종합어항형
개 념	기존어항·어촌 + 관광기능	기존어항 + 관광기능
대상지역	배후어촌과 연계가 가능한 국가어항	배후에 어촌이 없어 연계가 곤란한 국가·지방어항
사업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7개소('04.12.15선정) - 어유정항(인천 강화군) - 정 자 항(울산 북구) - 강 룡 항(강원 강릉) - 마 량 항(전남 강진) - 양 포 항(경북 포항) - 맥전포항(경북 고성) - 모슬포항(제주 남제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6개소('04.10.25선정) - 대변항(부산 기장) - 대포항(강원 속초) - 흥원항(충남 서천) - 국동항(전남 여수) - 격포항(전북 부안) - 지세포항(경남 거제)
사업기간	'04~'13(10개년)	'04~'13(10개년)
사 업 비	(항당) 100억 원	(항당) 500억 원(민자200억 원 포함)

다. 평가 및 향후계획

2004년부터 추진해온 다기능어항개발은 기존의 국가어항 개발과는 달리 정부투자 이외에 민간투자부문이 추가되어 있으며, 정부투자부문도 기본시설 외에 친수공간 및 조경시설에 대한 투자도 포함되어 있다

2006년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한 국가어항건설사업에 대한 심층평가(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98년 이후 수산업기반시설 위주의 국가어항개발이 어촌계 소득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다기능어항개발이라는 어항개발방식의 도입은 시의적절한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농식품부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13개항에 대한 다기능어항개발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사업효과에 대한 평가 등을 실시하여 확대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제6장

수산물 생산·관리·공급체계 개선



1. 국내 수산물 위생관리기반 구축

(양식산업과 사무관 방종화)

가. 추진배경 및 개요

국민 소득향상 및 웰빙문화 확산으로 수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국내생산량 증가 추세는 둔화되거나 감소하고, 수산물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아울러 소비자의 수산물 소비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수산물의 위생 및 품질관리에 대한 체계적 관리에 대한 요구가 한층 더 높아져 가고 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어장에서부터 비위생적인 수산물의 생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시작된 주요 수산물 생산 60개 해역에 대한 등급설정을 위한 위생조사·평가가 마무리 되고, 주요 생산해역 등급화 고시가 마련되었다. 유해수산물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안전성검사를 강화하고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공급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국내 양식장에 대하여 국제적 위생관리기준인 HACCP 적용을 추진하여 7개의 양식장에 등록이 이루어졌다. 또한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안전관리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수산물 이력추적관리체도는 2005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08. 8월 전 품목으로 시행하는 법제화가 이루어지고 16개 품목(굴, 넙치, 김, 건미역, 염장미역, 다시마, 멸치, 바지락, 전복, 굴비, 갈치, 옥돔, 참돔, 메기, 뱀장어, 오징어)에 대해 1,000여개의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표 4-6-1> 수산물 이력제 등록현황

(’10.11.30 기준)

구 분	계	생 산	가 공	유 통	관 매
등록업체	1,090	152	74	19	845

<표 4-6-2> 양식장 HACCP 등록현황

어종명	넙치	송어
양식장 소재지	제주시2, 서귀포시2, 완도1	경북 상주1, 충북 청원1

다. 평가 및 향후계획

수산물 이력제의 홍보활동 강화로 참여율이 제고되고 수산물 이력제에 대한 생산, 유통업체 관계자들의 의식변화가 눈에 띄게 향상되고 있으나, 전통시장 등의 재래 상거래 시장에서는 수산물 이력제 보급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수산물 이력제의 전통 시장내 보급을 위해 중소기업청이 추진하는 전통시장 현대화사업과의 접목을 추진하기 위해 부처형 협력 방안을 모색하여 수산물 이력제 저변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양식장 HACCP 보급사업은 HACCP 등록과 등록업체의 매출과의 비연계성, 등록에 따른 관리비용 문제 등으로 사업수요 신청이 낮은 편이며, 2010년부터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사업관리 애로까지 겹쳐 사업추진 둔화가 전망되나, 사업관리 방식변경 등 사업관리 체제를 정비하고, HACCP 등록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생산해역 등급화 설정에 따른 체계적 관리를 위해 등급별 어장관리, 기관별 및 이해관계 단체별 역할 부여 등 세부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2. 수출·수입 수산물 위생관리 강화

(양식산업과 사무관 방중화)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수산물 수입의 완전자유화로 국가 간 교역이 증가함에 따라 초래되는 저질·위해 수

산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수입수산물식품의 안전성 확보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또한, 부산 냉동공장 및 창고시설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환적수산물의 유치물량이 2007년 15만 톤 이었던 물량이 2009년에는 11만 톤까지 감소하고, 해외 바이어까지 부산 감천항을 대체할 물류기지를 물색하는 등 수산물류 허브로서의 위상 추락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2009년부터 환적수산물의 적극적 유치 및 EU 수입위생조건 충족을 위해 환적수산물에 대한 위생관리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2009년도에는 신종 유해물질 관리 강화를 위해 액체질량분석기 등 41종 106대의 최신 정밀분석장비를 확보하는 한편 수산물 정밀검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유기독성·항생물질·어류질병 등 14개 분야 56명을 국내 전문기관에 위탁 또는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정밀분석 검사원간의 신뢰성 오차범위 축소와 본원·지원간의 표준화 유지를 위해 중금속 항생물질 등 5개 분야 17개 항목에 대한 정기숙련도 향상시험을 실시하였다.

또한, 환적수산물 수출검사 체계마련을 위해 감천항내 지정 하역장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하역, 보관, 선적에 이르는 단계별 위생관리 매뉴얼을 수립·시행함으로써 환적수산물 처리방식에 따라 정부가 보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위생증명서를 발급하였다. 환적수산물에 대한 위생증명서 발급으로 위생증명서 구비요건 관련 교역장애 문제를 일소하였다.

다. 평가 및 향후계획

2009년도에는 수입수산물에 대한 정밀검사 확대와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로 불량수입수산물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였으며, 환적수산물 수출검사 체계마련으로 환적수산물 유치물량의 안정적 확보로 감천항의 수산물 허브로서의 입지가 더욱 강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수입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08년 현재 30개 항목인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검사를 2010년까지 44개 항목까지 확대하고 과거 부적합 이력이 많은 품목을 중점관리 대상품목으로 지정하여 매건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국내·외에서 문제가 제기된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련기관과 수산물 안전관련 협의회

를 통해 기준·규격 설정 전이라도 필요한 경우 신속한 검사를 실시하여 국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아갈 계획이다.

또한 주요 수산교역 국가(러시아, 뉴지, 대만 등)와의 위생약정 체결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위생약정 체결 국가를 대상으로 현지점검을 강화하여 불량 수입수산물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관세청과 불법유통, 위장수입 등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업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수입수산물 부정통관을 방지하며 수입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부정유통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원산지 판별 DB구축을 추진하여 국내 유통 투명성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3. 수출·수입 수산동식물 검역기반 구축

(검역정책과 사무관 주두만)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수산동물 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고자 수입되는 수산동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는 등 수산동물 질병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수산동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과 국민건강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산동물질병관리법』이 제정 시행(2008.12.22)되었고 이에 따른 수산동식물 검역대상은 종전의 이식용에서 식용, 관상용, 시험·연구조사용 등으로 확대되는 등 안정적인 국경검역 업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09년에 인천, 부산, 통영, 강릉 등 주요 수산물 수입검역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수산물품질검사원 각 지원에 유전자분석장비 등 24종 79대의 최신 검역장비를 추가로 설치하고 TV, 인터넷과 지하철, 버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국경검역 업무의 조기정착을 위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국제수역사무국(OIE) 미등재 수산동물전염병 등 수입위험분석 대상 질병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수산동물 검역관의 전문성 제고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미국,

프랑스, 호주 등 OIE 표준실험실에 연수를 실시하고 수산물 검역정보시스템 확대 구축 및 관세청과의 정보연계를 통해 민원신청부터 검역결과 통보까지 온라인화하여 대민서비스에 기여하는 등 보다 빠른 민원행정처리를 위해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다. 평가 및 향후계획

2009년도에는 156명의 수산동물검역관을 확보하고 국경검역 검사방법 및 검사항목 자동분류 전산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수산동물국경검역 체계를 구축하였다. 2010년도에는 관세청 등 유사 업무기관 간 업무협조 공조체계를 마련하고 여행자 휴대물품에 대한 검역을 위해 검역장비를 일선에 배치하는 등 여행자 휴대물품 검역강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수입위험분석 실시요령 세부지침 마련 등 수입위험분석을 한층 강화하여 수산동물 검역업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제2절

친환경 양식 확대 및 수급조절 기능 강화

1. 친환경 양식 생산

(양식산업과 사무관 김종건)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세계 양식어업의 패러다임이 지속가능하고 책임있는 개발, 생태계 기반 양식어장 관리로 바뀌면서 연안의 소규모 양식어업이 쇠퇴하고 외해의 대규모 양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 같은 국제적인 흐름에 맞추어 내만중심의 가두리양식장을 외해로 이동한 새로운 양식기술과 체도를 도입하여 연안어장의 환경을 개선하고 고부가가치 품종 집중육성으로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외해양식어업을 도입하기 위해 제주도(2005년부터)와 경상남도(2006년부터), 전라남도(2007년부터), 강원도(2008년부터), 경상북도(2009년부터), 전라남도(2010년부터)에서 민·관 합동으로 총 6개소 시험어업을 추진하였으며, 이 중 2개(전남, 제주)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경제성·안전성 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12월 「친환경 고부가가치 외해육성 방안」을 마련하여 2010년까지 외해양식어업 6개소(참다랑어 4개소, 일반어류 2개소)를 개발하고 참치 완전양식을 위하여 종묘 생산 기술 등 연구기반을 만들었다.

한편, 친환경 양식산업을 육성하여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생사료 사용 등으로 야기되는 연안 양식어장의 환경 악화 방지 및 연근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2009년도에 42,958백만 원(일반회계 7,313 농특회계 18,502, 광특회계 4,034, 수발기금 13,109)을 지원하였다.

농특회계 사업내용은 환경친화형배합사료지원 7,000백만 원, 친환경양식기반시설구

축지원 5,100백만 원, 기타 수산물 위생관리 등 18,502백만 원이었다.

광특회계 사업내용은 김육상채묘 및 냉동망보관시설 1,000백만 원, 웰빙표고넙치브랜드개발지원 550백만 원, 적조방제사업 808백만 원, 친환경양식 기반조성 626백만 원 등 4,034백만 원이었다.

수발기금 사업내용은 양식어업시설지원 8,105백만 원, 생계소득 및 안정자금 99백만 원, 출하조절 4,200백만 원 등 13,109백만 원을 지원하였다

다. 평가 및 향후계획

내만과 외해양식의 차별화를 통한 윈-윈 전략으로 내만은 친환경적으로 해조류, 패류 위주의 양식과 천혜의 해양레저 공간으로 활용하고, 외해는 고부가가치 참다랑어 등 어류를 양식하는 수면으로 활용함으로써 WTO-DD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고 국내 핵심전략 산업으로 육성·발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2010년도에는 친환경 양식산업의 육성 및 연안 양식어장의 환경 악화 방지 등을 위하여 55,628백만 원(일반회계 9,742 농특회계 30,268, 광특회계 4,039, 수발기금 11,579)을 투입, 지원할 계획이다.

농특회계 사업내용은 환경친화형배합사료지원 6,300백만 원, 친환경양식기반시설구축지원 15,400백만 원, 기타 지하해수 조사사업 등 30,268백만 원이다.

광특회계 사업내용은 김육상채묘 및 냉동망보관시설 1,000백만 원, 웰빙표고넙치브랜드개발지원 250백만 원, 적조방제사업 1,030백만 원, 친환경양식 기반조성 등 11,579백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 양식수산물 수급조절 강화

(양식산업과 서기관 이찬복)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양식수산물 수급조절사업은 WTO-DDA 및 FTA 등 시장개방화에 대비하여 정부 주

도에서 민간 주도의 자율적인 수산물 수급조절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4년도부터 농안법 및 어업인지원특별법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는 수산발전기금으로 수산업관측사업, 유통협약사업, 자조금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4,200백만 원을 지원하였다.

수산업관측사업은 수산물 생산 및 가격, 유통, 수·출입, 해외동향 등 정보를 분석하여 생산자, 유통인 및 소비자 등에게 제공하여 적정생산 및 적정가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리고 유통협약·자조금지원은 수산물 수급동향을 고려한 적정 생산 및 출하를 통하여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 유도하는 한편, 수산물 판로확대, 소비촉진 및 시장개척 활동 등을 통한 생산자단체의 시장 교섭력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2008년도부터 2009년도 사이에 주요 양식 품목(넙치, 전복, 김)에 대한 대표조직이 우선 설립되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수산업관측사업은 주요 양식품목(김, 미역, 넙치, 조피볼락, 전복, 송어, 굴)에 대한 관측정보를 어업인, 유통인, 소비자에게 매일 제공하여, 양식어업의 합리적인 경영과 소비안정을 도모하여 왔다. 그리고 대표조직을 위시한 생산자 단체 등에 대한 유통협약, 자조금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양식수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한 어업인의 자율적인 대응능력을 배양하여 왔다.

앞으로, 자율 수급조절사업인 수산업관측 및 유통협약·자조금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수산업관측사업은 2011년까지 육상수조식, 가두리식, 축제식양식업 주요품목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관측 내실화를 기하는 한편, 관측자료 관리 및 정확한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정보시스템(DB, DW) 구축, 수산물 수급 조기경보체제 구축, 수산물 수급전망모형 구축, 수산물 수출입관측 및 해외동향조사를 강화하여 관측 기능을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양식수산물의 적정량 수급조절을 위해 양식장의 불법양식시설에 대한 정비단속을 실시하여 왔는데, 효과적인 정비단속을 위해 2009년도부터 인공위성 관측 자료를 활용하여 김, 어류, 전복 양식장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고질적 민원사항인 불법 전복 줄가두리식 양식, 축제식 양식장에서의 불법 종묘생산·판매행위, 불법 혼합양식 행위에 대해서도 정비단속을 추진하였다.

정부의 불법시설에 대한 확고한 정책의지와 방침에 따라 일선의 자치기관과 어업인

들의 인식이 전환되면서 자율적인 정비노력이 돋보였다.

특히, 인공위성 촬영영상 판독결과를 이용한 김 양식장의 정비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났으며, 불법 전복 줄가두리 및 어류가두리 불법 양식시설 철거 추진 등 강력한 단속으로 기타 불법양식시설이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동안 불법양식행위가 심한 김, 어류, 전복 양식어업을 중심으로 양식장 불법양식시설 정비단속을 추진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타 업종에 대한 확대여부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따라서 불법양식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단속을 통해 적법한 양식시설에서 적정량의 양식수산물 생산됨으로써 양식수산물의 수급조절 기능이 점차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 평가 및 향후계획

양식수산물 수급조절사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업계의 자율적 출하조절 등 수급조절에 의한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시장개척, 소비촉진을 통한 생산자단체의 시장교섭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2010년도에는 양식수산물 수급조절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2009년도까지 지원하여 오던 유통협약사업을 자조금사업으로 통합하여 수산발전기금에서 3,781백만 원(관측사업 2,040백만 원, 자조금지원 사업 1,741백만 원)을 투입·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하여 관측 및 자조금지원 사업 내실화를 기하고, 품목별 대표조직을 위시한 생산자 단체가 자율적 수급조절기능을 높여 나가도록 하여 양식수산물에 대한 민간주도의 시장 지향적 자율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3. 양식어장 환경 개선

(자원환경과 사무관 강거영)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우리나라 양식어장의 입지적인 특징은 어장 설치·관리의 용이성, 태풍 등의 자연재

해 예방성, 풍부한 먹이생물 등에 의해 주로 반 폐쇄성만을 중심으로 개발됨에 따라 오염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특히, 특정해역에서는 육상기인 오염원과 양식어장 자가오염부하량 증대로 어장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WTO-DDA 체제 출범 및 수산물 전면 수입 개방 등 국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우리 수산물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 및 친환경 수산물 인증 등을 위해 깨끗한 어장환경을 조성하고 보전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어장환경의 보전·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1986년부터 양식어장 정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9년도에는 장기간 양식 등으로 어장이 노후하여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는 양식어장, 마을어장 등을 대상으로 61억 원을 투입하여 5,979ha에 대해 퇴적물 수거·처리, 바닥갈이, 해적생물 구제 등 정화·정비를 추진하였다.

<표 4-6-3> 어장정화사업 추진실적(누계)

연 도	1986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09년
어장정화 누계면적(ha)	14,756	60,164	177,844	346,502	456,934	495,806

또한, 전국 연안 양식해역의 어장환경실태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양식어장의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을 제공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남해안을 시작으로 연차별·지역별로 전국적인 어장환경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09년에는 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국립수산물과학원 주관으로 남해안(고성·자란만, 가막만, 여자만)의 굴·진주담치·새고막 양식어장을 대상으로 수질환경, 퇴적물 환경, 양식생물 생태, 어장환경 수용력 등의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기존 연안 양식장에서 주로 사용하였던 부표(스티로폼)는 값싼 저밀도 제품이 대부분으로 태풍·파도에 쉽게 파손되고 쓰레기 수거도 어려웠던 것을 감안하여, 2009년도 신규 사업으로 경기도 등 8개 연안 시·도의 양식어장을 대상으로 고밀도부표 보급지원 사업을 추진하였다. 2009년에는 81억 원(국고 20%, 지방비 20%, 자부담 60%)을 투입하여 어장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격제품(고밀도 등) 133만개를 양식어장에 교체·보급하였다.

한편, 정부는 남해안에서 대량 양식되어 생산되는 굴의 박신(굴 까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각을 친환경비료 등으로 자원화함으로써 연안환경의 2차 오염을 저감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신규로 굴폐각 친환경처리지원 사업을 실시하였다. 2009년에는 폐각 14만여 톤의 친환경처리를 위하여 28억 원(국고 20%, 지방비 60%, 자부담 20%)을 투입하였다.

다. 평가 및 향후계획

양식어장 환경개선 정책은 어업인의 어장청소 등 연안 양식어장 환경개선·보전 및 어업생산기반 조성으로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하절기 지속적인 적조와 이상조류 등 어업재해 피해예방 및 최소화로 양식어업인의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향후 농림수산식품부는 어장환경개선 관련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어장환경실태조사를 통하여 연안환경관리를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어장관리의 근거법인 어장관리법 개정을 추진하여 어장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제3절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유통체계 개선

1.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수산정책과 사무관 이명준)

가. 추진배경 및 개요

국민들의 소득 증대와 웰빙문화 확산으로 수산물의 소비가 증가하고 간편하고 편리한 수산가공품 등으로 소비패턴이 변화하면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식품을 요구하는 실정에 있어 수산물 가공산업의 활성화와 고품질 수산식품산업 육성이 절실한 실정이다. 특히, 국내 수산물가공품의 생산원가 상승에 따른 국제 경쟁력이 점차 하락하고 있어 수산물 가공업계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WTO-DDA 체제 출범 및 수산물 전면 수입 개방 등 국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우리 수산물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가공품 공급을 위해 수산물 가공시설의 현대화를 통하여 수산가공품의 위생·안전 확보는 물론,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통해 국내 수산물가공업계의 국제경쟁력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1987년부터 산지에 수산물 가공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는 수산물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 Cold Chain System을 구축하고, 또한, 동북아 수산물류 거점 확보를 위한 수산물종합가공단지 지원 및 어촌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산물의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을 내실화하고 특히 부가가치가 큰 지역특산품 중심으로 산지가공시설을 지역별로 선정하여 지원(39개소, 137억 원), 수산물처리·저장시설(7개소, 105억 원), 젓갈타운 조성(3개소, 20억 원), 김 가공공장 현대화(14개소, 12억 원) 및 전북진주산업센터(1개소 4억 원)를 중점 지원하는 등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산가공품 생산을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지역별 고품질의 수산식품 개발 및 브랜드화로 지역특화산업을 발전·육성하기 위해 목포 고기능수산식품지원센터 건립(33억 원), 포항 과메기산업화가공단지조성(30억 원), 부산 수산식품가공 산업산학관연구센터(5억 원) 등 6개소 97억 원을 지원하여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을 추진하였다.

또한, 우수수산물 확대보급을 위한 친환경수산물인증 대상품목을 기존 양식수산물 7개 품목에서 단순가공 3개 품목을 포함하여 10개 품목으로 확대함으로써 수산분야의 경제발전과 식생활 향상으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욕구충족을 위해 노력하였다.

<표 4-6-4> 친환경수산물 인증대상 품목

구 분	수 산 물 명
양 식 어 류 (2)	넙치, 무지개송어
양 식 패 류 (2)	굴, 홍합
양식해조류 (3)	김, 미역, 툇
해조류가공품(3)	마른김, 마른미역, 간미역

아울러, 전국에서 명성이 높고 지리적 특성을 가진 우수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 향상과 함께 이를 지역 특화사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만족시키고 보호하기 위해 보성벌교꼬막, 완도전복, 기장미역, 장흥키조개 등 7개 품목의 수산물이 수산물 지리적표시 등록을 하였다.

<표 4-6-5> 수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현황

등록번호	등록일	등록명칭	등 록 자
제1호	'09. 2. 25	보성벌교꼬막	보성벌교꼬막영어조합법인
제2호	'09. 2. 25	완도전복	완도전복협회영어조합법인
제3호	'09. 2. 25	완도미역	(사)완도군미역협회
제4호	'09. 2. 25	완도다시마	(사)완도군다시마생산자협회
제5호	'09. 2. 25	기장미역	기장해조류연합회영어조합법인
제6호	'09. 2. 25	기장다시마	기장해조류연합회영어조합법인
제7호	'09. 2. 25	장흥키조개	정남진장흥키조개영어조합법인

다. 평가 및 향후계획

수산물 가공산업을 수산업의 신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여 고소득 창출과 어촌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 안전한 수산물 생산·공급체계 구축 및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는 수요개발, 우수브랜드 육성·지원으로 경쟁력을 제고하는 등 고품질의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가공할 수 있는 공급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현행 동일·유사한 인증제도를 통합하여 소비자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개선하고, 수산물 가공업을 등록 및 신고토록 되어 있는 것을 신고제로 전환하는 한편, 수산물을 고차가공품으로 개발하여 고부가가치 창출로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2. 수산물 유통체계 개선

(수산정책과 사무관 이상영)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수산업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산지의 “위판장”과 지방자치단체가 개설·운영하는 “도매시장”이 주도하여 온 수산물 유통체계가 강제 상장제에서 임의 상장제로 전환된 1995년을 기점으로 사매매 및 대형유통업체 등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으나, 불안정한 대금결제와 영세어업인의 가격 교섭력 부족 및 생산통계 부정확 등의 문제점 노정으로 공공유통 기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공공성이 있는 위판장과 도매시장 등 수산시장 기능을 유지하는 동시에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 및 전자상거래 확대 등 과거의 생산자 위주 유통정책을 소비자 위주로 재편하여 생산어업인의 판로기반을 늘려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유통체제 구축하기 위한 「수산물유통체계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수산물유통의 주요 기능인 위판장 건립은 1963년부터 지원해 오고 있으며, 1993년

부터는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위한 수산물직매장 시설 지원을 시작하였으며, 2002년부터 도매시장의 패류 및 선어의 실질경매제를 조속히 정착시키기 위해 도매시장법인에 직수탁하는 출하자에게 어상자 구입비용을 지원해 오다가 실질 경매제가 정착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하여 2009년부터는 지원을 중단하였다. 2005년도 말라카이트 그린 사건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에 관심이 높아지고 같은 해 하반기부터 주 5일제 본격 시행에 따라 어촌을 찾는 도시민들이 많아졌으나, 산지위판장의 시설노후화 등으로 생산에서 유통으로 전환되는 산지 위판장에서의 위생적인 유통처리가 되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2007년부터 수산시장시설개선 사업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같은 해 새로운 유통시설인 먹거리·볼거리·즐길거리가 어우러진 다기능 유통시설인 Sea-Food Town 조성사업을 지원해 오고 있다.

2009년도에는 수산물 유통시설 기반 확충을 위해 군특예산 세부사업인 수산물유통시설건립 사업으로 27개소 141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역으로는 수산물위판장 건립(10개소, 41억 원), 수산물직매장시설(7개소, 12억 원), 수산물유통물류센터(1개소, 20억 원), 해양수산복합공간조성(3개소, 31억 원) 및 전복일류화상품기지개발 등 기타 유통시설(6개소 37억 원) 건립 사업비로 지원되어 출하주인 어업인의 안정적인 판로 기반시설을 확충하였다. 특히, 농특예산으로 수산시장(위판장, 공판장, 도매시장) 시설개선 사업비 56억 원을 투입하여 16개소에 대한 시설개선을 통해 보다 위생적인 유통시설로 탈바꿈하는 성과를 보였다.

다. 평가 및 향후계획

수산물 유통시설 확충 및 시설개선을 통하여 생산어업인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수취가 제고 및 소비자에게 보다 위생적인 유통시설에서의 수산물 공급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유통시설을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노후화된 유통시설 개선과 부족한 시설 확충을 지원할 계획이다.

3. 정부 수산물 비축사업

(수산정책과 서기관 김종실)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하여 명태, 오징어, 고등어 등 대중성 어종을 주 생산시기에 산지수협을 통해 적정량을 수매하여, 성수기 주요 소비지에 방출함으로써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하고, 소비자에게는 가격안정으로 원활한 구매를 지원해 오고 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2009년에는 냉동오징어·냉동고등어·냉동명태 등 3개 품목 3,312톤을 수매할 계획이었으나, 대품규격 냉동고등어 생산량 저하 및 하반기 냉동명태 국내 반입 물량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계획대비 81% 수준인 총 2,677톤(116억 원)을 수매하여 수급조절 및 시장 활성화를 기하였다.

<표 4-6-6> 2009년도 정부비축사업 실적

(단위 : 톤, 백만 원, %)

구 분	계 획 (A)		실 적 (B)		대 비 (B/A)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합 계	3,312	12,000	2,677	11,571	80.8	96.4
냉 동 고 등 어	1,787	6,700	2,010	6,354	112.5	94.8
냉 동 오 징 어	842	2,000	191	1,875	22.7	93.8
마 른 오 징 어	154	2,000	135	2,115	87.7	105.8
냉 동 명 태	529	1,300	341	1,227	64.5	94.4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

다. 평가 및 향후계획

전반적인 수산물 물가 상승기조 속에서도 설, 추석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에 비축물량 방출로 수산물 물가안정에 기여하였다. 정부비축 예산의 축소에 따라 비축물량 감

소로 물가안정 대책 추진에 애로가 있었으나, 방출시기, 방출방법 전환 등으로 물가안정 대책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방출방법 측면에서 예전에 소비지 도매시장에 상장하여 방출하던 것을 마른 오징어에 한해 B2B(온라인 도매시장)로 판매함으로써 방출효과를 극대화한 것은 특히 평가할 만하다. 서민물가안정을 위한 물가대책용 비축물량 확보를 위해 예산증액, 갈치 등 추가 비축품목 선정, B2B, 직판시스템 등 방출방법 개선 등은 향후 보완되어야 할 과제이다.

4. 민간 가격안정사업

(수산정책과 서기관 김종실)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수산물 물가안정 및 수급안정을 위하여 저장 또는 가공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수산물 가격안정 기금을 융자하여 어류, 패류, 해조류 등을 수매토록 해오고 있다. 정부 비축사업은 정부가 직접 수매하여 방출하는 것과는 달리, 민간 가격안정사업은 수협중앙회, 회원수협, 유통·보관업체 등에 자금을 융자하여 수매토록 하는 것으로 차이가 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2009년에는 민간 가격안정사업으로 1,318억 원을 지원하여 오징어·명태·조기·갈치·김 등 306천 톤을 수매하였다.

부문별로는 원료수매 지원사업에 1,199억 원을 지원하여 247천 톤을 수매하였고, 유통보관 지원사업에 118억 원 59천 톤을 수매함으로써 가격안정 및 수산물 유통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산지 수산물유통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위판장과 소비지에서의 수산물의 집하·분산역을 담당하는 수산부류 도매시장에서의 출하주에게 안전한 대금결제를 위한 위·공판장출하촉진자금 1,020억 원과 도매시장출하촉진자금 50억 원 등 총 1,070억 원을 지원하여 총 1,736천 톤(위판장 거래량 1,324천 톤, 도매시장거래량

412천 톤)의 수산물을 원활히 유통되도록 하였다.

다. 평가 및 향후계획

정부비축 수산물의 비축물량 감소에 따라 민간가격안정사업이 갈수록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특히, 민간보유물량의 설·추석 등 물가안정특별대책기간 중 방출은 물가대책 수단으로 큰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수매 및 방출을 민간자율기능에 맡김에 따라 필요한 시기에 수매 및 방출이 더딘 면도 일부 있었다.

민간수매물량에 대해 일정부문 방출의무를 부여하고 물가안정에 기여한 만큼의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민간가격안정사업이 수산물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등을 개정하고, 특히, 산지가격안정에 충분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수매시기, 수매방법, 수매가 등에 대한 보완작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제7장

대외협상 및 해외 수산자원 확보



1. WTO-DDA 수산분야 협상대응

(다자협상협력과 사무관 안치국)

가. 추진배경 및 개요

2001년 11월 출범한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 Doha Development Agenda)는 농업, 비농산물시장접근, 규범, 서비스 등 9개 협상분야에 걸친 다자간무역협상으로 2003년 칸쿤 각료회의 결렬, 2006년 협상중단 등의 사례에서 보듯 각국의 참여한 이해관계 대립으로 어려운 협상과정을 거쳐 왔다.

2008년 7월에는 제네바에서 소규모 각료회의를 개최하여 핵심 분야인 농업과 비농산물시장접근의 협상세부원칙 타결을 시도하였으나 개도국 특별긴급관세(SSM), 미국의 면화보조금 및 분야별 자유화 등 민감한 쟁점을 둘러싸고 입장대립이 계속되어 결국 실패하였고,

2009년 1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DDA의 조기 재개가 논의되었으나 세계경제의 침체로 인해 DDA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DDA 협상은 현재까지 큰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2008년 12월 DDA 협상 진전을 위해 농업 및 비농산물 시장접근 세부원칙에 대한 4차 수정안이 제시된 이후, “WTO 체제하에서의 미국의 약속 준수”¹⁵⁾ 입장을 밝힌 미 오바마 행정부의 DDA 조속 타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Two-track approach) 제안과, '09. 6월 중순 케언즈그룹 각료회의(인도네시아, 발리), OECD 각료회의 계기로 주요국 통상장관들 사이에 DDA 재개 및 타결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15) 2009 Trade Policy Agenda and 2008 Annual Report, USTR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 수산보조금

수산보조금 협상은 2001년 11월 DDA 출범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2005년 12월 홍콩각료회의에서 과잉어획능력 및 과도어획을 야기하는 수산보조금을 금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07년 11월 규범 협상분야의 Valles Galmes 의장은 어선건조, 어항시설, 면세유 등 우리나라 수산보조금의 대부분을 금지하는 내용의 의장안 초안을 발표하였다.

이후 미국·호주·뉴질랜드 등 수산자원 보호 주장국들은 수산보조금의 광범위한 금지를 주장하였고, 중국·인도 중심의 개도국들도 의장안을 지지하면서 개도국 특별대우 확대를 요구한 반면, 우리나라·일본·대만·EU 등은 의장안의 기본골격에 반대하고 금지보조금의 범위 축소를 주장함에 따라 의장은 의장안 초안을 일단 유보하고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하기 위하여 2008년 12월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2009년도에는 6차례의 수산보조금 협상이 진행되어 의장 로드맵에 대한 논의는 거의 종료되었으나, 회원국 간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다. 2009년 12월 이후부터는 회원국이 제출한 제안서에 대한 논의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엄격한 자원관리시스템(Fisheries Management System, FMS)을 전제로 금지보조금의 예외 인정을 주장하는 제안서를 2009년 11월 제출하였으며, EU, 일본, 대만 등 일부 입장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공조하여 금지보조금의 범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상에 대응하고 있다.

2) 수산물 관세

수산물 관세감축은 공산품 관세감축과 같이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 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협상분야에서 논의된다. NAMA의 주요 쟁점은 크게 관세감축공식, 개도국 신축성 및 분야별 무세화이다.

관세감축공식은 흔히 스위스공식이라 불리는 것으로 관세감축 계수 이하로 최종관세가 떨어지는 구조로 되어있다. 2008년 12월 의장 4차 수정안에 따르면 스위스 공식에 적용될 조정계수의 경우, 선진국은 8, 개도국은 부가 조건(신축성 적용 범위)에 따라

20, 22, 25 중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도국 신축성 적용문제를 놓고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선진국 계수 8을 적용할 경우 최종관세는 8% 이하로 떨어진다. 개도국은 관세 인하 신축성(관세감축폭의 50%만 적용 또는 관세감축 면제)을 사용할 수 있는데 계수 20을 사용할 경우 제일 높은 수준의 신축성이 부여되고 계수 25를 사용하면 신축성을 사용할 수 없다. 개도국 신축성은 또한 특정 HS chapter에서 일정 부분에 사용할 수 없는 등 신축성 제한요건(ACC : Anti-Concentration) 적용을 받는다.

분야별 무세화는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자동차, 전기전자제품, 보석, 화학약품, 수산물 등 14개 분야가 제안되었다. 수산물 무세화는 뉴질랜드, 아이슬랜드, 태국, 중국 등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우리나라와 EU, 일본 등은 이에 불참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다. 2008년 7월 소규모 각료회의에서는 미국 등 선진국들이 분야별 무세화 참여를 강조함에 따라 중국 등 개도국과 심각한 대립이 있었다.

그러나 '09년 9월 WTO-DDA 고위급 회의(SOM)에서 '10년 DDA 협상 타결을 목표로 '09년 말까지 각 협상 분야의 작업계획 마련 및 고위급 회의를 통해 매월 점검회의를 개최기로 합의함에 따라 분야별 자유화 협상에서는 각 분야별 제안국 주도의 양자협의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다.

다. 평가 및 향후계획

정부는 DDA 협상결과로 인한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외협상과 국내 보완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수산업계, 연구기관 및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WTO-DDA 협상대책단"을 지난 1999년부터 운영하면서 협상전략의 투명성과 적시성을 제고하여 왔으며, 농림수산식품부로 직제개편 후에는 WTO/FTA 협상포럼을 통해 협상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수산통상 전문가로 구성된 "협상자문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현안사항에 대한 대응방안을 협의해 오고 있다.

수산보조금은 금지대상 보조금의 범위를 최소화하고 유예기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DDA 타결에 따른 충격이 완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EU, 일본, 대만 등 우리와 입장이 유사한 국가와 긴밀히 공조하는 것 외에도 공조세력을 다변화하여 협상력을 제고하고, 미국, 호주 등 입장이 반대되는 국가는 개별 양자 협의를 통해 우리 입장이 협상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적으로

는 협상 진전 상황을 보아가며 수산보조금 지원의 틀을 WTO 규범에 저촉되지 않는 방향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어업구조조정, 고효율 연료장비 개발 등을 통하여 우리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수산물 관세협상에서는 신축성 확보에 전력할 계획이다. DDA 협상체계상 수산물 관세는 공산품 관세와 같이 논의된다. DDA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주요 목표는 공산품 수출 확대인데, 이를 위해서는 공격적인 협상을 펼쳐는 동시에 취약한 수산분야를 보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우리나라는 일부 민감한 수산물에는 신축성(낮은 수준의 관세감축을 적용)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대응해 오고 있다. 일부 민감한 수산물에 신축성이 부여될 경우 관세감축 폭이 작아져 시장개방으로 인한 충격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질랜드 등 일부 국가들이 주장하는 수산물 무세화에는 불참한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할 예정이다.

2. FTA 수산분야 협상동향 및 대응

(지역무역협정과 사무관 이윤숙)

가. 추진배경 및 개요

WTO-DDA 타결이 지연되는 가운데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으로 대표되는 지역주의는 지속적인 확산추세이다. 2009년도 기준으로 약 457개의 지역무역협정이 WTO에 통보되었고 그 중 266개가 발효된 것으로 WTO에 통보되었고, 이중 절반 이상이 WTO 출범(1985년) 이후 체결되었으며, 세계 총 무역 중 지역 협정 내 무역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추세에 맞추어 세계 각 국과의 FTA 체결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09년 10월 현재 한·EU FTA 타결로 미국, 아세안, 싱가포르 등 FTA 발효 또는 타결중인 국가가 45개국이다. 칠레, 싱가포르,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ASEAN과의 FTA 협정이 발효되었고 금년 11월 인도와의 포괄적 경제동반협정(CEPA)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2010년 1월 발효 예정이다. 한미 FTA는 국회비준을 기다리고 있으며, 한·EU FTA는 '10년 하반기 정식서명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또한 현재 페루,

호주, 뉴질랜드, GCC(걸프협력회의), 콜롬비아 등 자원부국 및 주요 거점 경제권 중심의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 캐나다, 멕시코, 일본 등과는 농수산물 개방수준 등 상호간의 입장차이로 협상이 잠정 중단된 상태다. 한편 중국과는 산관학 공동연구가 진행 중이며, 터키 메르쿠스르(MERCOSUR), 러시아 등과는 협상 준비 중에 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한·미 FTA는 2006년 6월 협상이 시작되어 8차례의 실무협상과 2차례의 고위급 회담을 거쳐 2007년 4월 최종 타결되었다. 수산분야 협상에서는 명태, 민어, 고등어 등 주요 민감 품목에 대하여 최장 15년까지 이행기간 부여와 TRQ 도입을 통해 민감성을 반영하였고, 미국의 고관세 품목인 참치 통조림(35%)에 대한 단계적인 관세철폐와 양식산 활넙치 체장제한을 해제하는 등 향후 수출 확대의 길을 열었다.

한·EU FTA는 2007년 5월 협상 출범 이후 8차례의 협상을 거쳐 2009년 10월 15일 브뤼셀에서 가서명이 이루어졌으며 '10년 하반기 정식서명 절차를 남겨 두고 있다. 수산분야 협상은 우리측의 민감품목 보호에 중점을 두되, 우리 수산업의 수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였다. 오징어, 민어, 명태, 고등어 등 생산자가 많거나 대 EU 수입이 많은 품목은 현행관세 유지 또는 10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도록 하였다. 한편, 우리측 수출이 많은 다랑어류, 대구, 바지락 등 대 EU 수출액의 95%에 대해서는 EU측 관세(11%)를 3년 내 조기철폐토록 함으로써 유럽대륙에 우리 수산물의 수출 확대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인도 CEPA는 2006년 2월 협상개시 이후 2008년 9월 실질적 타결을 이루었으며 2009년 2. 9일 인도 뉴델리에서 가서명이 이루어졌다. 인도와의 협상은 농수산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으며 냉동갈치, 냉동꽃게, 냉동새우 등 대인도 주요 수입품목 대부분(수입액 기준 82.9%)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다. 한·인도 CEPA는 우리나라가 기존에 체결한 여타 FTA에 비해 낮은 개방수준으로 타결되어 국내 농수산업에 미치는 충격은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 평가 및 향후계획

FTA를 통해 관세가 인하되면 외국산 수산물의 수입이 증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 수산업은 최근 고유가 및 자원고갈 등으로 인해 매우 어려운 여건에 있는데, 수산물 수

입이 증가할 경우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정부는 수입 증가시 국내에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들은 관세인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장기간에 걸쳐 관세를 인하하는 등 보호 장치를 강구하고 있다. FAT는 또한 수산물 수출 확대의 기회도 제공한다. 현재 협상이 중단된 일본은 우리 수산물 수출시장의 60%를 점유하는데 FTA 협상이 재개될 경우 수입쿼터(IQ) 및 과도한 위생검역 등 비관세장벽을 완화하여 우리 수산물 수출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나라 농어업에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과의 FTA 추진이 가능성이 강하게 제기됨에 따라 우리나라 농어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보호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3. 연안국 협력 및 국제 수산기구 활동 강화

가. 연안국과 어업협력 강화

(국제기구과 사무관 김성원)

1) 추진배경 및 개요

우리나라 연근해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연근해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조업활동 지원을 위해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수산협력을 강화하고, 원양어선의 조업수역 확보를 위한 대외 어업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우리나라에 가장 중요한 어장을 갖고 있는 PNA 8국이 OPEC과 같은 국제적인 자원카르텔 구축을 위한 ‘코로르선언’(Koror Declaration)을 채택('10.2.25, 팔라우)하여 PNA에 투자하지 않는 국가의 선박에 대하여는 조업권 부여 제외 및 향후 중서부 태평양내 조업척수 감축시 우선 감축대상임을 재확인하는 등 국제적으로 자국 자원 보호주의가 심화되고 있어, 연안국과 조업국간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주요 어장 확보를 위하여 PNA 국가를 비롯한 남태평양 도서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2) 추진내용 및 성과

이를 위해 한·일, 한·중, 한·러 어업협정의 안정적인 이행을 통해 적정한 어획할당

량을 확보함과 아울러 조업수역 등 조업조건 개선의 적극 추진하고, 한·중·일 3국간 자원조성 및 관리를 위한 협력 방안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 원양어선의 주요 입어국인 러시아, 중서부태평양 제도서국, 서부 아프리카 연안국 등에 대해서는 고위급 수산당국자의 초청, 수산과학·기술 전문가의 상호교류를 통해 전통적인 어업협력 관계를 더욱 확대·발전시킴과 아울러, 연안개발도상국에 대한 해양수산분야에 특화된 경제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도에 태평양 도서국 및 아프리카 연안국에 대해 400백만 원 상당의 물자를 공여하였다.

특히, 우리나라 참치어업의 주요 어장인 중서부태평양 도서국의 경제협력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PNA(Parties to the Nauru Agreement, 나우루협정당사국) 8개국(파푸아뉴기니, 마이크로네시아, 키리바시, 마셜군도, 나우루, 솔로몬 아일랜드, 투발루, 팔라우)과의 경제협력 협의회를 개최하여 양·다자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참치자원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오고 있다.

아울러 미국 해양대기청과의 수산해양과학기술협력 사업을 통해 수산자원관리, 양식 기술 및 해양데이터 등의 분야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전개해오는 등 다각적으로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3) 평가 및 향후 계획

'10년까지의 연안국 협력을 위한 물자공여 사업은 연안국 요청 위주로 진행하여 양국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관계를 긴밀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국제 사회에서 자원 전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연안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주요 연안국과 협력 강화를 위해 '11년도에는 물자공여 사업을 확대, 개편할 예정이다. 소규모 지원을 줄이고, 실질적인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설 투자 위주로 진행할 예정이다. 키리바시 수산부 청사 건설, PNA 사무국 건설, 솔로몬 군도 어항개발 등의 사업을 시작할 것이다.

또한 지역별로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 접근해 나갈 계획이다. 남태평양 도서국은 도서국들이 소국됨을 감안, 지원 효과 극대화를 위해 도서국 공동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사업 발굴하여 추진하고, 아프리카 연안국에 대해서는 기아해소 및 단백질 공급

을 위한 수산양식기술 지원을 추진(알제리, 세네갈, 튀니지 등)해 나갈 것이다. 남미의 주요 연안국에 대해서는 국부(國富) 창출을 위한 수산기술 지원을 추진할 것이다.

<표 4-7-1> 양국 간 수산협력약정 체결현황

국가별	체결 부처	체결(발효)	비 고
합 계			6개국
노 르 웨 이	수산부	'02. 1.24	2년마다 정례회의 개최 등
베 트 남	수산부	'02. 4.23	양국 EEZ내 어업활동 상호 지원 등
아 르헨티나	경제생산부 농축수산식품처	'03. 9.1	수산·양식 기술의 공동개발 등
알 제 리	수산어로자원부	'07. 10.22	수산·양식업의 공동개발 등
우 루 과 이	농축수산부	'08. 9.2	수산분야 정보교환 등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국제기구과

나. 국제수산기구와의 협력

(국제기구과 사무관 하종수·김기환)

1) 추진배경 및 개요

1982년의 유엔해양법협약의 채택(발효 1994년 11월), 1995년의 유엔공해어업협정의 채택(발효 2001년 12월) 및 1995년 FAO의 책임 수산업 규범 채택 등으로 국제수산자원관리에 있어 지역수산관리기구를 통한 국가 간 협력과 책임있는 어업이 강조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주요 상업어종에 대한 남획이 증가함으로써 자원남획을 규제하기 위한 국제수산기구의 노력 또한 강화되고 있다.

2006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지속수산업에 관한 결의(61/105)」는 해산(海山) 등에서 행해지는 공해상 저층어업으로부터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2008년 말까지 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 및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UN, FAO 및 각 지역수산관리기구를 통하여 그리고 지역수산관리기구가 없는 수역에서는 각 국가 간 협력을 통하여 저층어업을 규제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다. FAO는 2008년, 공해상 저층어업 관리 지침(Guideline)을 발간했으며, 각 지역수산관리기구별로 해

산 등에서의 저층어업 활동이 해양생태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2009년 UN은 2006년 결의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유엔총회 「지속수산업에 관한 결의(64/72)」를 통해 FAO 지침에 근거한 보다 강력하고 조속한 보존관리조치 채택 및 이행을 촉구하였다.

전 세계의 참치자원은 5개의 지역수산물관리기구인 중서부태평양수산물위원회(WCPFC),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 인도양참치위원회(IOTC)가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일본과 함께 이 5개 기구에 다 가입되어 있다.

참치는 고가 상업어종이라는 특성 때문에 집중적으로 어획이 되고 있어 전반적으로 남획이 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참다랑어는 더욱 집중적으로 남획이 되고 있어 어획쿼터량 축소, 어업세력 감소 등 참치자원 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규제 강화방안이 집중 논의되고 있다.

「남극해양생물보존위원회(CCAMLR)」등 기존 기구에서도 “어종별 총 허용어획량(TAC)제도”, “선박감시체제(VMS)” 및 “어획증명제도” 도입 등 자원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조치들을 도입하거나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신 국제어업질서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여 우리 원양어업의 지속적·안정적 조업 보장과 책임있는 원양조업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해, 기존에 설립되었거나 설립중인 지역수산물관리기구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새롭게 채택된 국제어업규범의 이행을 위해 국내적으로 어업관련 법규 정비 및 후속조치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였다.

2) 추진내용 및 성과

가) 신설 또는 미 가입된 국제기구에의 참여 및 가입추진

해양생물자원의 보존관리를 위한 국제적인 어업규제 강화와 지역수산물기구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앞으로 지역수산물기구에 참여하지 않고는 공해조업이 곤란해지고 있는 추세에 있으므로, 신설 또는 미 가입된 국제기구의 동향을 상시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설립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가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남동대서양 공해상의 어류, 연체류, 갑각류 및 정착성 어류자원 관리를 위해 2001년 설립된 남동대서양수산물기구(SEAFO : South East Atlantic Fisheries

Organization)와, 남인도양 공해상의 비참치어업을 대상으로 하는 저연승 및 트롤어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2006년 채택된 남인도양수산협정(SIOFA : Southern Indian Ocean Fisheries Agreement)의 가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남태평양 공해상의 비참치어종, 특히, 전갱이 자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중인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 설립협상과 북서태평양의 저층어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중인 북서태평양저층어업관리기구(NWPRFMO ; North Western Pacific Regional Fishery Management Organization) 설립협상에도 적극 참여하였으며, 동 기구설립협상 제2차(2007), 제6차(2009), 회의를 부산에서 개최한 바 있다.

또한 그동안 비준을 미루어온 유엔공해어업협정을 2008년 2월 1일자로 비준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조업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였다.

나) 국제수산기구에서의 주요활동 상황

우리나라는 그 동안 기 가입한 16개 수산기구 뿐만 아니라, 현재 가입 추진중이거나 우리나라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수산관련 국제기구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우리 어선의 안정적인 조업도모는 물론 장기적인 어장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09년도에는 6개 지역수산관리기구(5개 참치관리기구,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관리기구) 관할 수역에서 전체 원양생산량 612천 톤의 59%인 359천 톤을 어획하였으며, 이중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가 관리하는 수역에서는 참치 303천 톤(원양생산량의 50%, 참치생산량 327천 톤의 93%)을 어획하였다.

특히, 2008.12월 부산에서 제5차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연례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국제기구에서의 우리나라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참석 국가와의 양자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참치어장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UN, OECD, FAO 등 수산 전반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국제기구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FAO 수산위원회(Committee for Fisheries)관련해서는 FAO 공해상 저층어업 관리 지침(2008) 이행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2010, 부산)함으로써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동시, 관련 논의에 대한 국내 수산업계의 관심과 참여를 증진시켰고, 동 회의를 계기로 한·FAO 고위급 양자회담을 통해 양자 간 협력방안이 논의되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FAO 산하 아·태 수산위원회(APFIC) 의장으로서 제72차 APFIC 집행이사회(2009, 서울), 제3차 지역자문포럼 및 제31차 총회(2010, 제주)를 개최해

지속가능한 수산업과 역내 능력배양 논의에 적극 기여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8년 이후 OECD 수산위원회(Committee for Fisheries) 부의장국으로서 수산자원회복, 기후변화, 양식 부문 등 주요 사업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특히 OECD 기후변화 워크숍(2010, 부산)을 개최해 향후 수산부문 기후변화 논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국제수산기구 중 우리나라와 관계가 있는 주요 기구의 활동 상황을 살펴보면 <표 4-7-2>와 같다.

<표 4-7-2> 우리나라의 국제수산기구 활동현황

(2009년 12월 기준)

번호	기구명	본부 (설립일)	가입일	회원국	주요활동
1	FAO 수산위원회	로 마 (1965. 5)	1965.12	일본, 미국 등 190개국	세계 수산업 발전을 위한 회원국 간 협력방안 논의
2	OECD 수산위원회	파 리 (1961. 9)	1996.12	OECD 가입 30개국	회원국 수산전반에 관한 정보교환
3	APEC 수산실무그룹	싱가포르 (1991. 3)	1991. 3	APEC 회원국 21개국	역내 수산자원관리 기술이전 등
4	국제포경위원회(IWC)	케임브리지 (1946.12)	1978.12	일본, 미국 등 88개국	고래자원의 보존 및 관리
5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 위원회(CCAMLR)	호 주 (1982.4)	1985. 4	칠레, 아르헨티나 등 25개국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 이용
6	중부베링공해명태자원 보존관리협약(CBSPC)	시 애 틀 (1995.12)	1995.12	미국, 러시아 등 6개국	중부베링해 명태자원보존
7	북서대서양수산위원회 (NAFO)	캐 나 다 (1979. 1)	1993.12	캐나다, 러시아 등 12개국	북서대서양 수역 수산 자원 보존 관리 및 이용
8	중동대서양수산위원회 (CECAF)	로 마 (1967. 9)	1968. 1	미국, 일본 등 34개국	중동대서양 수역 수산 자원 보존 관리 및 개발
9	중서대서양수산위원회 (WECAFC)	로 마 (1973.11)	1974. 1	이태리, 스페인 등 35개국	중서대서양 수역 수산 자원 보존 관리 및 개발
10	아시아·태평양 수산위원회(APFIC)	방 록 (1948.11)	1950. 1	일본, 베트남 등 20개국	회원국의 합리적 수산정책 수립 지원
11	대서양다랑어보존위원회 (ICCAT)	스 페 인 (1969. 3)	1970. 8	스페인 등 48개국	대서양 다랑어자원 보존 및 이용
12	인도양다랑어위원회 (IOTC)	세 이 셸 (1996. 3)	1996. 3	호주, 인도 등 24개국	인도양 다랑어자원 보존이용
13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 (CCSBT)	호 주 (1994. 5)	2001.10	일본, 호주 등 6개국	남방참다랑어 자원 보존관리

번호	기구명	본부 (설립일)	가입일	회원국	주요활동
14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WCPFC)	마이크로네시아 (2004. 6)	2004.10	호주, 뉴질랜드 등 25개국	태평양 수역 고도회유성 어종 보존관리
15	북태평양소하성 어족위원회(NPAFC)	벤쿠버 (1993. 2)	2003. 5	캐나다 등 5개국	연어자원의 보존관리
16	남동대서양수산기구 (SEAFO)	나미비아 (2003. 4)	가입 추진 중	앙골라 등 6개국	남동대서양 수산자원 최적이용
17	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 (IATTC)	미국, 라호야 (1950.3)	2005.12	미국, 일본 등 16 개국	동부태평양 수역 다랑어자원 보존관리
18	아·태지역 양식기구 (NACA)	방콕 (1990. 1)	미가입	북한, 중국 등 14개국	양식기술 정보교환 등
19	태평양공동체사무국 (SPC)	뉴칼레도니아 (1947. 2)	"	프랑스 등 27개국	다랑어관련 자료수집, 과학조사
20	남인도양수산약정 (SIOFA)	미정 설립준비	가입 추진 중	호주, 뉴질랜드 등	남인도양 수산자원의 보존관리
21	북서태평양저층어업관리기구(N WPRFMO)	일본(임) 설립준비	가입 추진 중	러시아, 일본, 미국 등 6개국	북서태평양 저층생태계 관리 등
22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 (SPRFMO)	뉴지(임) 설립준비	가입 추진 중	EC, 중국 등 약 25개국	남태평양 비참치어종관리 및 잠정조치 채택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국제기구과

다) 책임 있는 어업의 이행 및 기타 사항

책임 있는 원양 조업국으로서 국제기구에서 채택한 각종 국제어업규범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어업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또한 지역수산기구를 비롯하여 각 연안국에서는 관할 수역내 조업어선들의 불법조업방지를 위해 어선위치 확인 등 인공위성을 통한 선박감시체제(VMS) 구축을 의무화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 어선들의 안정적인 조업을 도모하고 조업 위반여부와 관련한 분쟁발생 시 명확한 증빙자료 확보와 선박조난 발생 시 수색구조 등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999년에 VMS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고 필요한 장비를 설치하여 2008년 원양어선 382척 및 러시아수역에 입어하는 근해채낚기 어선 38척 등 총 420척의 어선 위치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표 4-7-3> 선박자동위치감시시스템(VMS) 설치 실적

(2009년 12월 기준)

구분	계	북양 트롤	꽂치 봉수망	원양 선망	참치 연승	해외 트롤	원양 오징어 채낚기	기타
어선척수	362	5	17	29	153	101	31	26
설치현황	362	5	17	29	153	101	31	26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원양정책과

특히, 지역수산기구에서는 규제조치 준수여부 감독 및 자원관리에 필요한 생물학적 정보 수집을 위해 조업어선에 읍서버 승선을 의무화하는 추세에 따라 외국인 읍서버 승선에 따른 우리 어선의 조업불편을 최소화하고 책임있는 원양 조업국으로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해 2002년에 국제읍서버 양성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2008년까지 국제읍서버 20명을 양성하였다. 양성된 읍서버는 2008년에 국제읍서버 승선과학조사를 위해 7개 해역에서 총 13척에 13명이 승선하여 과학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3) 평가 및 향후 계획

급변하는 국제어업 동향에 대한 신속한 정보 수집 및 분석의 필요성과 국제회의에서 논의되는 전문적인 사항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01년부터는 별도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국제기구별로 지정된 민간전문가와 함께 국제회의에 참석함으로써, 국제회의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의제에 대해 사전에 심도있는 분석 및 회의 참석시 대표단 자문 등으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극 반영할 수 있게 되었으며, 회의 참석 후에도 결과 보고서를 통한 feedback으로 향후 정책방향에 반영토록 하였다.

4. 주변국간 입어협상 및 민간 간 어업자원 협력

가. 한·일 어업협정

(어업교섭과 서기관 정동근)

1) 추진배경 및 개요

'94년 UN해양법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각국이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경쟁적으로 선포하면서 인접국과의 새로운 어업질서 구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연안국의 관할권이 12해리 영해에서 200해리 EEZ로 확대되었다. 한·일 양국은 '96년 각각 자국의 EEZ를 선포하였으나, 한·일 양국의 관련 수역인 동·남해 및 제주 남부수역의 양국 간 거리가 400해리가 되지 않아 양국의 EEZ가 중첩되고 EEZ 기점에 관한 양국 간 입장 차이로 인해 EEZ 경계획정이 곤란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우선 어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97년과 '98년 15차례의 회의를 거쳐 양국은 영해기선을 기준으로 약 35해리 이내의 EEZ를 설정하고, 나머지 수역은 2개의 중간수역으로 하여 EEZ 경계획정이 되기 전까지의 잠정적인 성격의 신 한·일어업협정을 체결('98.11)·발효('99.1)하였고, 매년 다음 연도의 상대국 EEZ에서의 입어규모, 조업조건 등에 관해 협의·결정하는 한·일 어업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2) 추진내용 및 성과

한·일 양국은 2009년 2월 20일 일본에서 「제11차 한·일 어업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2009년도 양국 EEZ내 상호 입어규모를 940척, 60,000톤으로 합의하고, 각 업종별 조업조건 등을 결정하였다.

가) 입어규모

2009년도 총 어획할당량은 전년도와 동일한 60,000톤이고, 총 입어척수는 940척으로 전년보다 60척 감소하였으나 1척당 어획할당량은 전년(60톤/척)보다 높은 수준(63.8톤/척)으로 확보하였다.

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규칙

협상과정에서 일본은 우리 연승, 중형기저, 선망 등을 비롯한 주력업종의 조업금지기간 및 조업금지수역 확대와 어구부설규제 도입 등 조업을 규제하는 내용을 다수 제안하

였으나, 우리 측은 새로운 조업규제의 추가 도입에 강력 반대하여 '08.12.31까지 타결이 어렵게 되자 해를 넘기는 협상을 하여 '09.2.20에 전년도와 거의 동일한 조업조건을 유지하는 것으로 관철시켰으며, 우리 어선의 지속적인 조업을 유지하기 위해 '09.4.15까지 2008년도 조업일지를 계속 사용토록 하여 2009년도의 조업일지 교체를 위해 조업 중 귀항하거나 조업 중인 어선에 2009년도 조업일지를 전달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였다.

우리 연승어업의 갈치 어획할당량은 2,080톤으로 하되, 향후 3년간('09~'11) 유지하고 주년 어기를 당해 연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로 조정하였다.

GPS 항적기록보존 실시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 선의의 피해방지를 위한 실시요령을 제정하고, 2010년도에 시범실시 및 위반시 경고조치, 2011년도에 본격실시 및 위반시 나포라는 3단계 실시를 함으로써 우리 어업인으로 하여금 적응기간을 확보하게 함으로써 불안감을 해소하였다.

또한,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내의 해양생물자원 중 2010년도 어획할당과 관련한 어종의 어획동향자료, 자원상태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위해 한·일 해양생물자원전문가 소위원회를 2009년 중에 개최하고, 또한 양국 어선 간 안전 조업질서 유지 및 해상에서의 어선사고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민간어업자 단체에 대한 적절한 지도·지원 등을 통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2009년도 한·일 양국 EEZ내 총어획량은 우리나라가 30,667톤으로 할당량 대비 51.1%, 일본은 15,066톤으로 할당량 대비 25.1%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약 2배 더 어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업척수는 우리나라가 560척으로 허가척수 대비 59.6%, 일본은 118척으로 허가척수 대비 12.6%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약 4.7배 더 조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어선은 다양한 업종에 의해 다양한 어종을 어획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7-4> 2009년 한·일 EEZ 입어실적 비교(총괄)

구 분	합 의 사 항		실 적		대 비(%)	
	할당량(A)	입어척수(B)	어획량(C)	조업척수(D)	C/A	D/B
한 국(a)	60,000톤	1,000척	30,667톤	560척	51.1	59.6
일 본(b)	60,000톤	1,000척	15,066톤	118척	25.1	12.6
대 비 %(a/b)	100	100	203.6	474.6	-	-

어종별 조업실적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고등어류, 꽁치, 살오징어 등 다양한 어종을 대상으로 어획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고등어류가 약 12,195톤으로 전체 어획량의 80.9%를 차지하였다.

<표 4-7-5> 2009년 한·일 EEZ 어종별 어획실적 비교

(단위 : 톤)

구 분	계	꽁 치	전갱이	고등어류	살오징어	가자미류	참 돔	갈 치	붕장어	기 타
한국(A) (%)	30,666.8 (100)	6,756.1 (22.0)	1,187.2 (3.9)	11,472.6 (37.4)	3,860.5 (12.6)	989.7 (3.2)	9.3 (0.0)	1,426.9 (4.7)	117.6 (0.4)	4,846.9 (15.8)
일본(B) (%)	15,066.2 (100)	-	807.0 (5.4)	12,194.6 (80.9)	45.1 (0.3)	21.5 (0.1)	51.8 (0.3)	5.1 (0.0)	22.3 (0.2)	1,918.8 (12.8)
A - B	15,600.6	6,756.1	380.2	-722.0	3,815.4	968.2	-42.5	1,421.8	95.3	2,928.1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어업교섭과

그리고 어종별로 어획할당량에 대한 소진실적을 보면, 우리 측은 꽁치, 가자미류, 갈치, 고등어류, 살오징어 등 다양하게 어획하고 있으며, 특히 꽁치, 가자미류는 90%이상 소진한 반면, 일본 측은 참돔 및 가자미류는 50%이상 소진한 것에 비해 주어종인 고등어류는 32.8%에 그쳤다.

<표 4-7-6> 우리어선의 일본수역 어종별 어획실적

(단위 : 톤)

구 분	계	꽁 치	전갱이	고등어류	살오징어	가자미류	참 돔	갈 치	기 타
할당(A)	60,000	7,000	3,500	23,385	8,750	1,100	220	2,080	13,965
어획(B)	30,667	6,756	1,187	11,473	3,861	990	9	1,427	4,964
A/B(%)	51.1	96.5	33.9	49.1	44.1	90.0	4.2	68.6	35.6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어업교섭과

<표 4-7-7> 일본어선의 우리수역 어종별 어획실적

(단위 : 톤)

구 분	계	전갱이	고등어류	살오징어	가자미류	참 돔	갈 치	붕장어	기 타
할당(A)	60,000	3,000	37,814	3,150	40	78	50	50	15,818
어획(B)	15,066	807	12,195	45	21	52	5	22	1,919
A/B(%)	25.1	26.9	32.8	1.4	53.8	66.4	10.2	44.6	12.1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어업교섭과

3) 평가 및 향후계획

2009년도 어획할당량은 2008년도와 동일한 60,000톤이고, 총 허가척수는 940척으로 2008년보다 60척 감소하였으나 1척당 어획할당량은 증대됨으로써 조업실익을 도모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일본 측은 매년 자국 어업인과의 조업분쟁, 자국수역의 자원관리 등을 이유로 우리나라 연승, 중형기저, 선망 등 주력업종의 조업조건을 강화하려고 하는 바, 이에 대한 면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여 우리 어업인들이 원활하고 경제적인 조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나. 한·중 어업협정

(어업교섭과 사무관 김학기)

1) 추진배경 및 개요

한·중 어업협정은 '92년 8월 한·중간에 외교관계가 수립됨을 계기로 양국 간 최대 현안 사항인 어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93년 12월부터 정부간 어업협정 체결을 위한 실무회담을 진행하여 '98년 11월까지 19차례의 협상을 거쳐 '98.11.11일 가서명을 하였다.

그러나 중국 측은 가서명 후인 '99년 3월 중국의 양자강 주변수역에 연중 조업금지 수역을 설정하고 이를 우리 어선이 준수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장기화 되면서 국내적으로는 한·중 어업협정 조기발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조기발효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정부에서는 어업인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양자강 보호수역 문제를 어업의 실리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기로 하고, 양자강 연안에서 우리 어선의 조업권을 협정발효 이후 2년간 확보하는 내용으로 받아들여 2000.8.3일 정식 서명하였다.

정식서명 이후 양국의 EEZ 상호 입어규모와 현행조업유지수역의 범위에 대하여 양측이 의견을 조정한 결과 2001.4.5일 양국 수산당국 차관급 회담에서 최대 쟁점 사항이었던 현행조업유지수역의 범위와 업종별 세부 조업조건을 최종 타결하고, 외교공한을 상호 교환함으로써 2001.6.30일 한·중 어업협정이 공식 발효하게 되었다.

2) 추진내용 및 성과

한·중 어업협정의 발효로 한·일 어업협정('99년 1월 발효)과 중·일 어업협정('00년 6월 발효)에 이어 한·중·일 3개국 간의 양자 간 어업협정이 완성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94년 발효된 UN해양법협약에 의한 새로운 어업질서체제가 동북아에 형성하게 되었다.

<표 4-7-8> 한·중·일 어업협정 개요

구분	어업협정 가서명	어업협정 정식서명	어업협정 발효	협정 유효기간	협정 효력상실
한·중	1998.11.11	2000. 8. 3	2001. 6.30	5년	1년 전 서면통보
한·일	1998.10. 9	1998.11.28	1999. 1.22	3년	통지 후 6개월 이후
중·일	1997.11	1997.11.11	2000. 6. 1	5년	6개월 전 서면통보

가) 관련 통계자료 확보 및 어업실태 파악 등을 통해 성공적인 입어교섭 추진
 한·중 어업협정으로 인한 어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업인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시로 수렴하여 정확한 통계자료를 확보하였다. 이를 위해 '99년도에는 조업실태 전수조사('99.4~11월), 어업무선국 조업위치보고자료 D/B화('99.4~'00.10월), 수협 위판 및 어획량 분석조사('99.1~6월) 등을 실시하였고, 2000년도에는 중국 측 수역 조업실태와 전 어업인에 대한 입어희망 조사 실시('00.2~4월)와 어업인 검증작업('00.5~7월)을 거쳐서 입어교섭(안) 마련에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또한, 중국어선의 우리수역에서의 정확한 조업실태 파악과 중국 통계의 검증을 위하여 중국 어업실태 현지조사 실시('99.10월), 중국어선의 우리나라 주요 항구내 긴급피항 척수 조사('99년), 어업지도선 및 해경 경비정을 통한 매일 관측('99.7월) 및 위성영상사진 판독 실시('00.2월)는 물론 현장에서 조업하는 어업인으로부터 매일 중국어선의 동태파악('00.3월)을 실시하였다.

나) 한·중 어업협정 부재로 중국어선의 무분별한 조업에 따른 우리 어업인 피해 방지
 '80년대 후반이후 우리 연근해에서 중국어선의 무질서한 조업으로 수산자원 남획문제 대두와 양국 어업인과의 빈번한 조업분쟁 발생 등으로 우리 어업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였으나 한·중 어업협정 체결로 이러한 피해를 근원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다.

다) 중국어선 조업척수 감축 및 현행조업유지수역 확보로 우리어선 조업활동 지원
 한·중 어업협정의 발효로 인한 가장 큰 성과는 그 동안 우리수역에서 무차별하게 남획하였던 중국어선의 조업척수를 협정 전 12,000여척에서 '10년 현재 1,750척으로 대폭 감축하여 우리 수역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조업질서를 확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해특정해역 등에서의 중국어선 조업금지 및 중·일 잠정조치수역 상부수역의 현행조업유지수역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EEZ 경계획정시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우리 어선의 어획증대 및 조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라) 우리 EEE 자원관리방안 마련 및 중국어선 조업질서 확립

우리 EEZ에서 중국어선의 남획에 의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수산자원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자원관리를 위해 '04년부터 지속적으로 중국 측에 어종별·업종별 어획할당제 도입을 촉구하여 2010년부터 우선적으로 선망어업에서 어획하는 고등어에 대해 어종별 어획할당제를 시범실시하고,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의 자원조사를 각자 실시하되, 상호 전문가를 파견하게 되었다. 또한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무허가조업, 영해침범조업, 폭력저항 어선에 대해서는 3년간 어업허가 처분을 제한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방지를 위한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3) 평가 및 향후계획

한·중 어업협정을 통해 우리 EEZ에서의 자원보호, 중국어선의 조업질서 확립 등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으나 우리 EEZ내 중국어선의 조업실적에 비해 중국 EEZ내 우리 어선의 조업실적이 저조하여 실질적인 입어규모에 있어서 등량·등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한·중 잠정조치수역의 공동자원조사 실시 및 어종별·업종별 어획할당제 확대 실시 등 과학적인 자원관리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과 어업인과의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산하 해양생물자원전문분과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어종별·업종별 어획할당제 확대 실시 추진 및 어업지도단속실무협의를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다. 한·러 어업협정

(원양정책과 사무관 조성남)

1) 추진배경 및 개요

'70년대부터 미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해 오던 우리나라 북태평양 트롤어선들은 1989년부터 미국의 상업적 어업활동 중단 방침에 따라 새로운 어장의 확보가 절실하게 되었다.

'91년 9월 「대한민국 정부와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 연방정부 간의 어업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91.10 발효)함으로써 우리나라 북태평양 트롤어선이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초기의 조업형태는 정부 간 협력사업과 민간 협력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최대 34척까지 조업하였으나, '01년부터 민간쿼터 배정을 경쟁입찰제도로 전환하였고, 이마저 '03년부터 없어짐에 따라 민간쿼터에 의한 조업은 합작사업으로 형태를 변경하여 조업하고 있다.

러시아는 자국민의 수산물 불법 어획 및 교역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나라 정부에 수산물 불법교역 방지협정 체결을 요구하여, '09년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 연방정부 간의 해양생물자원의 불법, 비보고 및 비규제어업(IUU어업) 방지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러시아는 러시아 극동지역 수산분야 투자와 우리나라의 러시아 수역 명태쿼터를 연계 추진하고 있으나, 러시아의 인프라, 노동력 등 투자환경이 열악하여 민간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2) 추진내용 및 성과

가) 러시아수역 안정적인 어획쿼터 확보

한·러 어업협정에 따라 양국 정부는 우리나라 어선이 러시아 수역에서의 조업에 대한 어업협력을 추진하게 되었다.

협정발효 초기에는 정부쿼터와 민간쿼터로 구분하고 정부쿼터는 어종교환과 상업쿼터로 구분되고, 민간쿼터는 직접어로, 공동어로, 합작사업으로 구분되는 등 다양한 방

법의 협력이 이루어졌다.

'92년의 경우 명태, 대구저연승 게통발 등 3개 업종이 정부 또는 민간협력에 의해 109천 톤 정도 어획되었고, 이와 별도로 오호츠크 공해에서 206천 톤 등 총 319천 톤 정도 어획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오호츠크 공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93.4.25부터 조업을 자제하였고, 게통발어선은 러시아연방 대륙붕법 공포(95.11.30)에 따라 러시아수역에서 통발어선의 조업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러시아수역은 북해도에서 조업하던 북태평양 트롤어선들이 '99년 모두 철수함에 따라 우리나라 명태어선이 조업할 수 있는 유일한 어장이 되었다.

정부 간 협력에 의한 명태쿼터(상업쿼터) 확보는 '93년 150천 톤으로 최고의 물량을 확보한 후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04년에는 20천 톤까지 감소하였으나 러시아 측과 IUU어업 방지협정 체결 및 이행, 러시아 극동지역 수산분야 투자 추진 등 적극적인 협력추진으로 명태쿼터는 다시 증가하여 '10년에는 47천 톤까지 확대되었다.

민간쿼터에 의한 명태조업은 직접어로 분야는 매년 19천 톤~164천 톤 정도 어획하여 왔으나 러시아가 '01년부터 불법 어획 및 교역 방지를 위해 경쟁입찰(옥션) 방식으로 하여 민간쿼터에 의한 조업은 종료되었고, 공동어로도 매년 17~58천 톤 정도 어획하여 왔으나 '00년을 마지막으로 종료되었다. 합작사업은 협정체결 초기부터 1~2개 업체가 추진하여 왔으나, 민간협력에 의한 직접조업 및 공동어로가 불가능해진 어선들이 합작형태로 협력방법을 전환하여 최근에는 13개사 21척이 합작사업을 하고 있다.

<표 4-7-9> 러시아수역 명태쿼터 확보 동향

연도별	'93년	'95년	'99년	'01년	'04년	'06년	'08년	'10년
쿼터량(천 톤)	150	77	56	35	20	26	29	47

나) IUU어업 방지협정 이행 추진

러시아는 제7차('97년)부터 제11차('01년) 한·러어업위원회까지 우리나라 항구에 입항하는 러시아 선박의 입항정보 등의 자료제공을 요청하였으며, 우리나라는 동 자료를 '03. 1/4분기부터 러시아 측에 제공하였다.

우리나라가 '02년부터 러시아수역 명태 민간조업쿼터를 확보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특별쿼터 배정을 요청('02.5)한데에 대하여 러시아 측은 동 문제는 러시아 수산물 교역정보 제공 문제와 연계되어 있음을 언급하였다.

'03.10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APEC 회담에서 러시아 측은 러시아 수산물 불법교역 방지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언급하였고, '04. 9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양국 정상 회담에서 양국은 러시아 수산물 불법교역 방지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제13차('03)부터 제17차('07) 한·러어업위원회에서 양측은 러시아 수산물 불법교역 방지협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계속 협의하였으며,

제18차 한·러어업위원회('08)에서 러시아 측은 러시아 수산물 불법교역 방지협정 체결이 명태 쿼터와 연계되어 있음 통보하였고, 양측은 '09년 1/4분기 중에 동 협정관련 실무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09년에 5회에 걸친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협정의 세부내용을 협의한 후 '09.12월 서울에서 개최한 제19차 한·러어업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해양생물자원의 불법, 비보고 및 비규제 어업 방지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다) 러시아 극동지역 수산분야 투자활성화 추진

우리나라는 '03년 서울에서 개최한 제13차 한·러어업위원회에서 한·러 수산협력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러시아 측이 한국에 명태쿼터를 향후 10년간 매년 5만 톤씩 제공할 경우 한국 측은 매년 5백만 불씩 10년간 러시아 극동에 냉동창고·가공공장 건설 등의 어업협력 사업을 추진할 의향을 밝혔다.

'08.9월 러시아에서 개최한 한·러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러시아 수역 명태 쿼터를 과거(4만 톤) 수준으로 회복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수산분야에 대한 투자진출과 한·러 수산물 불법 수출방지 협정의 조기체결을 희망하면서 우리 측의 요구사항을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제19차 한·러어업위원회('09)에서 양측은 러시아 극동지역 수산물가공공장, 어선 건조 및 수리소 투자진출을 협의하기 위한 실무그룹 구성을 합의하였다.

이후 '10년 4월 및 9월 2차에 걸쳐 블라디보스톡에서 실무회의를 개최하였으나, 러시아의 인프라, 노동력 등 투자환경 열악과 관련기관의 열의 부족 등으로 민간투자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 평가 및 향후계획

러시아 경제수역은 우리 명태어선의 유일한 조업어장이므로 안정적인 조업쿼터를 확보하기 위해 '09.12월 IUU어업 방지협정을 체결하고 '10.7월부터 동 협정 발효를 위한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 통합고시를 제정 고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제19차 한·러 어업위원회('09.12)에서 2010년도 명태쿼터 4만 톤을 확보하였고, '10년8월 명태쿼터 6,800톤을 추가로 확보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꽁치 7,500톤, 오징어 6,50톤, 대구 4,450톤, 청어 700톤, 가자미 500톤, 가오리 800톤, 복어 115톤 등도 확보하였다. 앞으로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한 투자진출 등 한·러 간 수산분야 교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10.7월 발효한 "IUU어업 방지협정"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추진하여 러시아수역 명태 어획쿼터를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5. 남북 수산협력사업 추진

(어업교섭과 사무관 정상윤)

가. 추진배경 및 개요

동·서해 북한수역에서 중국 어선들이 수년간 계속해서 입어하여 조업하는데 대해 우리 어업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또한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남북 수산물 교역의 안정적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북한 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지원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남북 수산당국은 서해 평화정착 및 남북 어업인들의 공동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수산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여러 차례의 회담을 가졌었고 몇 가지 사항에 대해 합의도 하였다.

그러나 2008년 들어 북한의 핵실험,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과 최근 천안함 폭침사건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그동안 남북 당국 간 추진키로 합의한 수산협력사업이 진전되지 못하고 중단된 상태에 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남북 당국 간의 2000년 제1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 수산협력사업의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05.6)과 제10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05.7)에서 남북 수산실무회담 개최 문제에 합의하고, 이에 따라 제1차 남북 수산협력실무협의회('05.7)에서 ① 서해에서 남북 공동어로수역 설정·이용 ② 서해상 제3국 불법조업 통제협력 ③ 수산물 생산·가공·유통분야 협력사업 추진 ④ 우량품종개발 및 수산분야 기술교류 추진 ⑤ 제3국 어장 공동진출 등 5가지 사항에 합의하여 추진하여 왔으나,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 및 북핵문제 등의 다양한 요인으로 실질적인 진전을 거두지는 못하였다.

<표 4-7-10> 남북수산협력 사업 주요 추진경과

일 자	회 담	주요 회담내용 및 결과
2005. 6. 24 ~ 6. 24	제15차 남북 장관급 회담	수산협력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합의
2005. 7. 9 ~ 7. 12	제10차 남북경제 협력추진위원회	제1차 남북수산실무협의회(7.25~27)를 개성에서 개최하기로 합의
2005. 7. 25 ~ 7. 27	제1차 남북수산 협력실무협의회	서해상 공동어로 등 5개 사항에 대해 합의 및 합의서 채택
2006. 3. 2 ~ 3. 3	제3차 남북 장관급군사회담	북측이 서해해상군사분계선의 근본적인 재설정을 주장하여 서해공동어로 및 바다목장 사업 등이 논의되지 못함
2006. 3. 15	남북수산실무 회담 개최제의	군사회담과는 별개로 동해공동어를 위한 수산 실무회담(실무접촉 포함)을 제의하였으나 북측은 군사회담과 서해공동어로의 선행을 주장하며 거부
2006. 5. 16 ~ 5. 18	제4차 남북 장관급 군사회담	제3차 군사회담과 동일하게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서해공동어를 비롯한 남북경제협력 사업이 논의될 수 없다는 주장을 반복하여 회담이 결렬
2006. 6. 3 ~ 6. 6	제12차 남북 경제협력추진 위원회	남북은 수산협력실무협의회 실무접촉 일정을 문서 교환방식으로 협의·확정하기로 합의했으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등으로 개최 지연
2007. 2. 27 ~ 3. 2	제20차 남북 장관급 회담	북핵 6자회담 타결로 남북장관급회담이 재개되었으며, 남북은 4.18~21일까지 평양에서 제13차 남북경제추위를 개최하기로 합의
2007. 5. 8 ~ 5. 10	제5차 남북 장관급 군사회담	서해 공동어를 실현하기로 하고 공동어로 수역설정 등과 관련한 문제를 계속 협의하기로 함
2007. 7. 24 ~ 7. 26	제6차 남북 장관급 군사회담	공동어로 수역에 대한 별다른 합의 도출없이 종료 · 남측은 NLL기준으로 동일 면적에서 시범적 설정 주장 · 북측은 NLL이남 수역에 설정 주장
2007. 10. 2 ~ 10. 4	제2차 남북 정상회담	6.15 공동선언의 적극 구현,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한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 추진, 남북 경제협력사업 적극 활성화 등 2007남북 정상선언문 채택
2007. 12. 4 ~ 12. 6	제1차 남북경제 협력공동위원회	북측 동해의 일정한 수역에서 입어 및 어로, 수산물 가공 및 우량 품종 개발, 양식협력 사업 등을 협의 추진
2007. 12. 14 ~ 12. 15	제1차 남북농수산 협력분과위원회	'08년 중 북측 동해수역 입어 추진, 수산물 생산·가공·우량품종 개발, 양식분야협력을 위해 '08년 상반기 내에 현지조사 합의
2007. 12. 28 ~ 12. 29	제1차 서해평화 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	공동어로는 남북 장관급군사회담에서 어로구역이 설정되는데 따라 추진, 공동어로 실시방안 및 수산협력방안의 협의를 위해 '08년 상반기 공동어로협력분과위 개최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어업교섭과

이후 2007년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북한의 해주지역과 주변 해역을 포괄하는 서해 공동어로와 평화수역 설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2차 남북 국방 장관급회담('07.11) 및 제7차 남북 장성급군사회담('07.12)을 개최하였으나, 북한이 현재의 NLL을 해상경계선으로 인정하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제1차 서해평화특별 지대추진위원회('07.12)의 「남북 장성급군사회담」에서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공동어로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제1차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07.12)에서는 지금까지의 합의사항을 포함하여 ① 남측어선의 북측 동해수역 입어협력 ② 수산물 생산·가공·우량품종개발·양식분야 협력 ③ 수산물 유통분야 협력을 재차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동해수역 입어는 '08년 중에 실시하고 기타 분야에 대해서는 2008년 상반기 내에 현지조사 실시 및 협력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2008년도 들어 남북관계가 경색됨에 따라 기 합의된 사항이 실행단계까지 옮겨가지 못하고 지금까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다. 평가 및 향후계획

남북 수산협력사업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남북 간의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받는 등 남북관계라는 업무 특수성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어 지금까지 실질적인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향후 남북 협력사업 추진 여건이 마련될 경우에는 호혜적인 남북 수산협력 사업으로써 2007년에 합의한 수산협력사업 중 「우리어선의 동해북측수역 입어」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등 남북 상호간 실질적 효과가 있는 실용적 남북 수산협력사업을 중심으로 남북 어업인들의 공동이익을 실현하여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평소 관계기관과의 세미나 등을 통해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및 협의를 통해 남북 수산협력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제2절

해외 수산자원 확보

1. 원양어업의 경쟁력 강화

(원양정책과 사무관 박영호)

가. 추진배경 및 개요

FTA 체결 등으로 시장개방이 가속화되고 있고, 주변국가와의 경쟁심화, 어업에 대한 국제 규제강화 및 인프라 약화로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외수산시설 투자 지원, 명예수산물 지정·운영, 원양산업종합지원시스템 구축 및 원양산업 통계업무 등을 수행해 오고 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2009년도에는 원양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수산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한 『원양산업발전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어업인프라 확대를 통해 원양생산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남태평양, 아프리카 등 연안국과 정기협의회를 개최하여 연안국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는 등 맞춤형 자원외교를 실시하였다.

또한, 해외식량자원 거점 확보를 위한 해외수산시설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에 새우양식장 건설을 용자 지원하였으며, 원양산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요 연안국에서 원양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현지교민 4명을 명예수산물관으로 위촉하여 연안국의 각종 수산정책 및 투자여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였다.

다. 평가 및 향후계획

그동안 일부업체들에 의해 소규모 해외수산자원개발 등이 추진되었지만 생산·가공·유통이 융·복합화된 해외수산자원개발은 미흡한 상황이며, 보유 원양어선의 수도 계속 감소되고 있고, 원양어선들의 노후화도 심해 경쟁력 제고를 위한 보다 효과적인 대책

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2010년도에도 2개소의 해외수산시설을 용자 지원할 계획이며, 명예수산물관을 확대·운영하여 어업자원보유 연안국들에 대한 수산정보를 수집·제공하는 한편, 원양산업에 대한 현황, 생산량, 종사자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2011년 실시될 원양산업 총조사에 대비할 계획이다.

2. 해외어장의 지속적 확보

(원양정책과 사무관 조성남)

가. 추진배경 및 개요

해외어장의 개발은 원양어업을 시작한 이래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동안 연구기관, 원양업체 등에서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무릅쓰고 해외어장 개발을 추진하여 왔다.

'94년 해양법협약 발효에 따라 150여개 연안국 중 130여 개국이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고, 국제수산기구의 공해상 조업규제, 연안국들의 자원 자국화 정책 강화 등에 따라 원양어선의 조업어장은 날로 좁아져 새로운 어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원양어업을 유지하고, 공해어장의 장기적인 이용을 위하여 해외어장개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국제질서에 부합된 환경친화적인 어구·어법개발, 첨단장비를 통한 정확한 자원량 파악 등 종합적인 자원조사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1957년 지남호에 의해 인도양 다랑어 연승어업 시험조업을 실시한 것이 우리나라 해외어장 개발의 효시이며, 동 시험조업의 성공으로 원양어업 해외어장 개발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를 계기로 사모아, 인도양 등 다랑어어장 개발, 북태평양, 캄차카, 러시아수역, 베링공해, 북해도 등 명태어장 개발, 뉴질랜드, 포클랜드, 페루, 북태평양 오징어 어장개발, 북태평양 꽁치어장 개발 등을 통해 본격적인 원양어업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최근 들어서는 2003년 「해외어장개발 장기 정책방향 연구」를 실시하여 해외어장개발 장기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러시아 및 일본수역에서 주로 조업해 온 꽁치붕수망 어선의 조업쿼터 확보 어려움이 대두되자 2002년 북태평양 서경어장에 대한 자원조사를 실시하여 주변국의 조업쿼터 확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 예비어장으로서의 가치를 확인한바 있다. 2003년에는 남태평양 동부공해 전갱어어장을 개발하여 상업적 조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9년 현재 2척이 15천 톤을 어획하고 있다. 이후에도 2004년에는 북태평양 중부 돔어장 개발, 2006년 FAO 47해구의 이빨고기 어장을 개발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2009년에는 FAO 51해구에 대한 이빨고기 및 체르네 어장에 대해, FAO 41해구에 대한 민대구류 어장에 대해, 베트남 조기류 어장에 대해 자원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4-7-11> 해외어장자원조사 추진실적

조사기간	조사선	업종	조사수역	대상어종	예산
'01~'02	과학원(탐구1호)	트롤	인도양 심해	오렌지라피	18
'02.8~10	연수원(갈매기)	붕수망	북태평양 서부공해	꽁치	3
'03.4~6	연수원(갈매기)	붕수망	북태평양 동부공해	꽁치	4
'03.4~6	연수원(갈매기)	붕수망	북태평양 서경어장	꽁치	3
'03.8~12	과학원(탐구호), 상업어선 2척	트롤	남태평양 중부공해	전갱이	24
'04.6~9	과학원(탐구호) 상업어선 2척	트롤	북태평양 중부공해	돔	29
'05.7~10	상업어선 7척	채낚기	북태평양	빨강오징어	24
'05.8~10	상업어선 1척	채낚기	NAFO 동부	오징어	4
'06.4~6	상업어선 2척	근해통발	마살수역	장어류	8
'06.12~'07.5	상업어선 2척	연승	47해구 공해	메로	10
'07.9~'08.2	상업어선 3척	참치연승	북태평양 미드웨이	참치	9
'07.8	상업어선 2척	트롤	중부베링	명태	6
'09.12	상업어선 1척	트롤	FAO 41해구	민대구류	6.5
'09.9	상업어선 1척	트롤	베트남 EEZ	조기류	6.5
'09.9	상업어선 1척	저연승	FAO 51해구	이빨고기	7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원양정책과

2001년부터 2009년까지 18개 수역(200억 원 투자)에 대한 자원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6개 수역에서 상업조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9년에는 새로운 어장에서 24척이 조업하여 25천 톤을 생산, 260억 원의 어획고를 올렸다.

다. 평가 및 향후계획

2001년부터 정부주도로 추진된 해외어장 자원조사사업으로 매년 콩치, 전갱이 등 22,000톤을 어획하고 있으며 매년 260억 원의 생산고를 올리고 있다. 아울러 공해상에서 조업실적을 미리 쌓아 놓아 계속 설립되고 있는 지역수산관리기구 관할수역에서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0년도에는 총 16억 원을 투입하여 인도양 서남부(FAO 51해구)에 대해 '09년에 이어 이빨고기 및 체르네 어장, 기니아수역에 대한 그루과 어장, 그리고 SEAFO수역의 전갱이 어장 등 3개 수역에 대한 신 어장 자원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지 공관을 통한 주요연안국과 입어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새로운 어장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사전 어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해외어장 진출이 이루어지도록 지원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3. 원양업체 경영 지원

(원양정책과 서기관 김동욱)

가. 추진배경 및 개요

해외 수산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원양업체의 경영안정과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1974년부터 원양어업의 출어경비 일부를 영자금에서 공급하기 시작하였으며, 1992년부터는 연근해어업과 달리 원양어업에서만 특별히 소요되는 입어료, 항만 제경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융자금인 '해외자원생산지원자금(2004년 '원양어업경영자금'으로 명칭 변경)'을 신설하여 지원해 오고 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원양어업 출어자금 운용규모를 보면 2009년에는 전년도보다 400억 원이 증가한 2,680억 원(원양어업경영자금 1,480, 영어자금 1,200)을 지원하여 원양업체의 경영개선으로 해외어장에서 지속적인 조업과 주요국가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였다.

다. 평가 및 향후계획

원양업체의 경영개선 자금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해외수산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원양업체의 안정적인 조업지원을 위해 2010년에는 2,682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해외어장의 개발 및 수산자원의 확보, 원양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지원액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4. 노후 원양어선 신조 대체

(원양정책과 사무관 박영호)

가. 추진배경 및 개요

2009년 말 현재 우리나라 참치 원양어선 182척 중 21년 이상 노후선이 144척으로 노후선 비중이 80%에 이르고 있다. 선박 노후화는 경영비 상승은 물론 냉동능력 저하에 따른 어획물의 품질하락으로 이어져 제품가격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원양 참치어업은 헛감용 및 가공용 참치를 주로 태평양 중서부수역에서 연간 약 30만여 톤을 생산하여 원양어획물 수출액의 51%를 점하고 있는 수출주력업종이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위와 같이 원양어업 중 경쟁력이 있고 수출전략 및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참치어업을 주력업종으로 육성하고,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2003년부터 수산발전기금에서 노후원양어선 신조대체 사업비를 반영하여 2004년도와 2006년도에 선망어선 1척씩 총

2척을 건조하였고, 2009년도에도 선망어선 1척을 건조하였다. 또한 2009년까지 총 5척의 참치 연승어선의 중고선 도입자금도 용자 지원하였다.

다. 평가 및 향후계획

동 사업의 추진으로 향후 WTO-DDA 협상결과에 따라 어선 건조에 대한 보조금의 감축 및 폐지 이전에 생산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2010년도에는 참치선망어선 1척(2차년 소요예산 106억 원)의 완공자금과 참치선망어선 2척(1차년 소요예산 58억 원)의 신조자금을 용자 지원할 계획이다.

5. 수산물 수출 진흥

(원양정책과 사무관 유민석)

가. 추진배경 및 개요

국제적으로 수산물의 영양학적 우수성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고조와 아시아권의 소비 증가로 전 세계 수산물 교역량이 1996년부터 큰 폭으로 성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수산물 수출을 통해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고, 정체 상태에 있는 국내 어업에 새로운 희망과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 수출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이다.

수산업을 둘러싼 내외 환경을 보면, WTO협상의 진전과 함께 각국과의 FTA협정 체결 등 국제무역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물론, 수출용 원자재의 부족, 수산인력의 감소 및 인건비 상승, 국내수산물 소비증가 등의 여건 하에 놓여있다. 또한, 최근에는 유가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 및 동남아국가와 일본의 강력한 수출드라이브 정책으로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이러한 여건을 극복하고 수산물 수출을 활성화 시켜 수출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2009년도에는 수산물 수출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산물 해외시장개척지원을 위하여 6개 사업에 1,452억을 투·융자하여 수출확대방안을 수립·추진한 결과, 수산물 수출은 2000년 이후 처음으로 15억 불을 초과 달성하였다.

세부 추진내용으로는 첫째 수산물 수출업체에 대한 원료구매 자금 등 운영자금 1,400억 원을 저리로 139개 업체에 융자하여 666백만 불의 우수수산물 수출에 기여하였다. 또한 해외 마케팅 다변화 및 전문화를 위하여 미국, 일본, 중국 등에서 국제박람회 8회, 로드쇼 3회, 판촉전 2회를 개최하였다. 둘째 수산물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해외 시장 정보 입수가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본 등 주요시장에 대한 수산물 생산·유통·소비 등 시장조사 내용을 연중 수출업계에 홍보하였다. 또한, 수출업체와 간담회 6회 및 협의회 8회 등을 실시하여 업계 의견을 수렴 하였으며, 우리나라 수산물의 해외 홍보를 위하여 재외공관 및 수입바이어에게 수출 카탈로그 송부, 해외수산전문지, 공항 광고 등을 위하여 3억 원을 지원하였다. 셋째 수출 인프라구축을 위하여 김 이물질선별기 및 금속탐지기 등 68대의 기기 구입비 6억 원을 수출업체에 지원하였다. 또한, 수출수산물 공급기반 구축을 위하여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중소 수산물 수출업체의 수산물 생산·가공을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수산물 수출가공선진화단지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2009~2012년까지 1,390억 원을 투자목표로 2009년에는 기본설계비 등 3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하였다. 넷째 수출이 제일 많은 국가인 일본의 수산물 수입 할당(IQ, Import Quota) 등 수출 여건 개선을 위하여 상·하반기에 각 1회씩 한·일 무역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수요자 할당 김에 대한 수입대행사 제도와 보증금 폐지, 다시마 조제품의 쿼터량 소진 등 통상협력을 추진한 바 있다.

다. 평가 및 향후계획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소비위축 등 수산물 수출여건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수산물 수출확대 기반조성 추진 및 수출업계의 애로사항 반영 등 적극 대응한 결과, 2009년도 국가전체 수출은 361,200백만 불로 전년대비 13.8% 감소하였으나, 수산물 수출은 전년대비 3.8% 증가한 실적을 기록하였다. 수산물 수출 증가는 어업인 수취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어업인 소득증대는 물론 어촌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기여 하였다.

앞으로도 수산물해외시장 개척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한편, 2010년부터는 우리나라 공항인근에 수출용 활어·패류 항공물류센터가 부족하여 수출에 애로가 많은 수출업체 건의를 수용하여 넓치, 전복 등 수출용 활어·패류 항공물류센터를 건립 운영하여 수출증대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6. 체계적인 수입수산물 관리

(원양정책과 사무관 유민석)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우리나라가 1986년부터 3년간 국제무역수지 흑자를 실현함에 따라, 1989년 10월 26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GATT 국제수지(BOP)위원회」는 우리나라에 대해 “국제수지를 이유로 한 수입제한 허용”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이후, 정부는 수산물 수입자유화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개방을 실시하여 1997년 7월 수산물 수입을 자유화하였다.

이와 같은 전면적인 수입자유화로 우리 어업인이 입게 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저가 수산물 수입으로 초래되는 시장질서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년 수입이 급증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조정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조정관세는 1992년부터 3개 품목에 대해 부과를 시작한 이래 연도별로 대상품목 및 조정관세율을 조정·시행해 왔으며 2009년 현재 조정관세 부과품목으로 활뱀장어, 활돔, 냉동오징어 등 9개 품목을 지정·운영하는 등 합리적인 수산물 수입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나. 추진내용 및 성과

한·아세안 FTA 체결에 따른 새우류, 갑오징어 등 5개 품목, 9,300톤에 대한 관세율 할당(TRQ : Tariff Rate Quota) 제도 이행을 위해 2009년도 한·아세안 관세율할당물량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TRQ물량의 수입권공매 절차를 통하여 공매납입금 85억 원을 징수 후 수산발전기금에 불입하여 수산업 경쟁력에 제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수산물수출입조합과 협력하여 TRQ 품목의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관리·운영함으로써 교역

당사국간의 안정적인 수산물 통상협력을 원활히 추진하였다.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HS)을 기초로 우리나라에서 수출·입되는 수산 품목에 대한 품목분류(HSK)를 정비하였고, 수입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에 대비하여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도입된 조정관세 품목의 운영으로 국제교역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였다. 또한, 국내 수산물 수출업체 및 유관단체 관계자에게 수출입통계를 월별로 제공하는 등 수산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충실히 제공함으로써 수산통계행정 구현을 통한 수산정책의 신뢰도 제고에도 기여하였다.

다. 평가 및 향후계획

국내시장 및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관리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한 결과 2009년도 수산물 수입은 2,895백만 불로 전년도 3,097백만 불 대비 6.5%(202백만 불)가 감소되어 무역수지 개선에 기여하였다. 금후에도 체계적인 수입관리제도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조정관세 등 수산물 탄력관세의 지속적인 유지를 통한 국내 생산자 보호수단을 확보해 나가고, FTA 협정별 TRQ물량에 대한 효율적 관리방안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TRQ 수입에 따른 부담금을 국내 어업인 등에 환원해 나갈 계획이다.

끝으로 주요 수입수산물의 국내 유통가격 및 해외 현지 가격 조사를 확대하여 저가 신고 방지를 통한 투명한 과세 정착, 실효성 있는 가격심사로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2009-2010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2010년 월 일 인쇄

2010년 월 일 발행

발 행·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과

주 소·427-71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전 화·(02)500-1709

디자인 및 인쇄·크리커뮤니케이션 (02)2273-1775
